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S o c i a l S e c u r i t y F a c t b o o k

# 2016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우리나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 기존의 사회적 위험에 더하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범 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응으로 복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의 사회보장 욕구 실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우리의 복지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사회보장의 현재와 미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회보장통계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이 자료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책자를 발간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은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회보장통계 수집·관리 작업의 네 번째 결과물입니다. 본 발간물은 국가승인통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행정통계를 담고 있어 정부의 정책 추진실적과 우리의 복지수준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 연령, 지역별 등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표, 그림 등 시각자료로 제시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상에 대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영문 지표명을 추가하여 국제비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우리의 사회보장정책을 세세히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발간에 협조해주신 각 부처,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발간물이 사회보장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한층 성숙해지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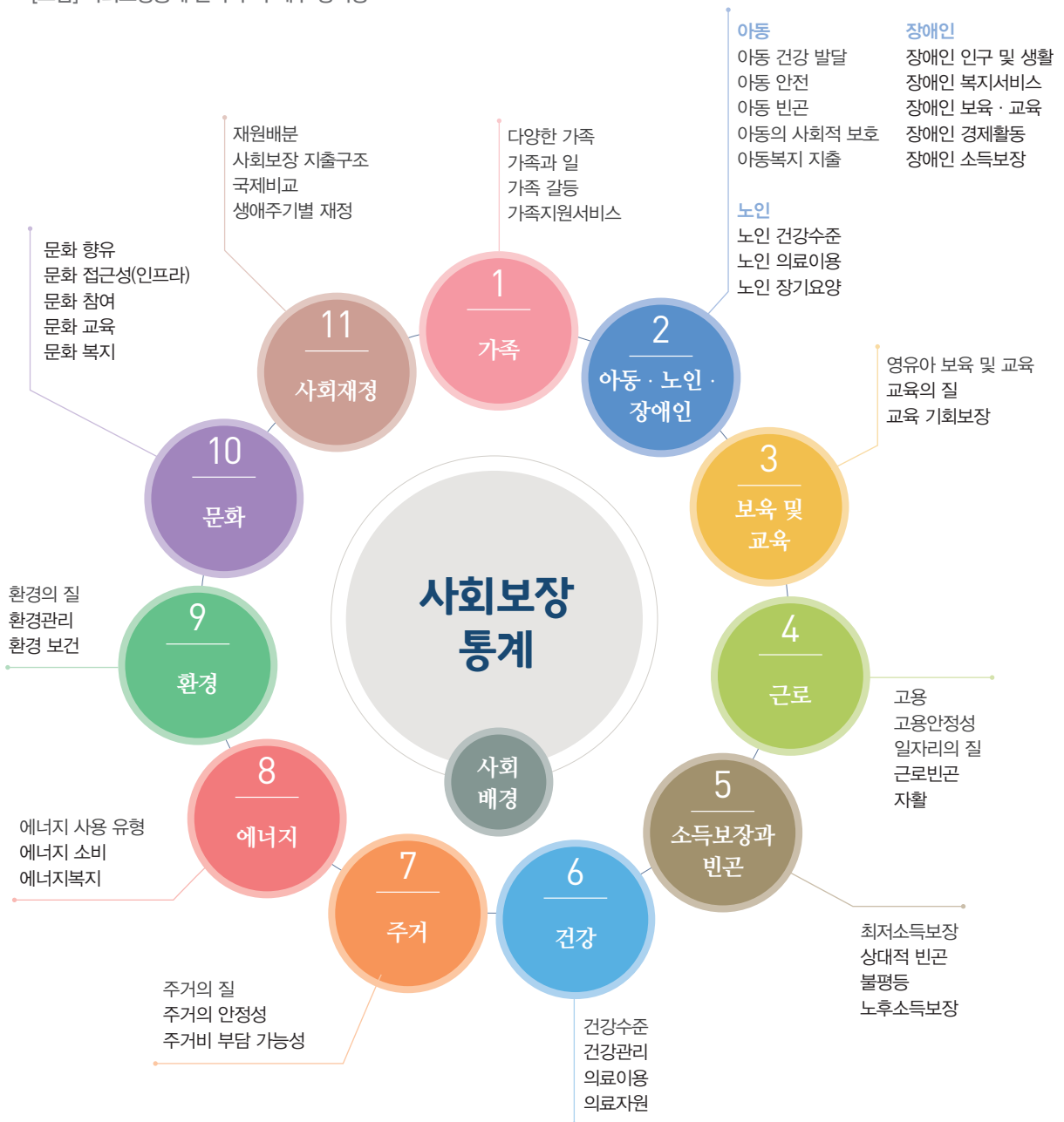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이용자를 위하여

-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등의 제출기관이 작성한 승인 및 미승인 통계들을 분석하여 발간한 통계연보임.
- 본 발간물은 사회보장의 실태와 정책의 배경여건이 되는 사회배경 분야와 주요 사회보장정책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음.
- 사회보장통계 지표는 사회보장 관련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 및 연관지표로 제시되었으며, 주요 사회보장 정책분야별 세부 영역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됨.

[그림] 사회보장통계 분야와 각 세부 영역명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의 각 지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0

대 표

## 지표명

영문지표명

• 지표 번호 분야별로 대표지표의 일련번호가 있으며, 연관지표의 경우에는 관련 대표지표와 연동되어 있음.

10-1

연 관

**지표 정의**

이용자들이 지표의 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념을 서술하였으며, 관련 정책의 내용도 함께 소개함.

**측정 산식**

-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을 수식으로 표기함.

유의사항 동일한 지표 또는 통계의 중복이거나 동일한 지표명이지만 통계출처가 상이한 경우, 그리고 동일 지표에서 국제비교자료 제출과 국내 공포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 등의 특이사항을 명시함.

본문 서술 현황 및 추이를 설명하는 등 통계표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정책분야 간에도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작성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생산주기 등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함.				

**Checkpoint** 전년도 대비 또는 정책적 함의 등 특이점 등을 요약함.

**참고문헌** • 본문에 인용하였거나 참고가 되는 주요 자료의 발행기관, 문헌명, 발행연도를 정리하여 소개함.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은 다음 기준으로 작성함.

- 통계표 중 전년도 연보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번 연보에서 정정한 것임.
- 자료수치는 반올림 처리 등으로 인해 세부항목의 합계와 총계(전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수록된 통계의 대상은 사회보장통계 운영지침에 따라 제출기관이 2015년 12월말 현재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집계하였으며, 중앙부처의 내부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의 미승인 통계(행정자료 등)는 2016년 기준 작성도 포함되어 있음.
  - ※ 통계청의 장래인구(가구)추계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추계자료로 관련 통계들이 작성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계분석 지표는 각 부처가 발간하는 통계연보들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제비교의 사회보장통계는 부록에 해당 지표를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을 작성함.

- ▶ 본 발간물의 각 지표에 대한 대표 수치(표) 및 발간기준일 이후 최신 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http://www.ssc.go.kr), 사회보장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연보 책자 표지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되어 통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통계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함.

인포그래픽	016
사회배경	028
 1 가족	042
 2 아동 · 노인 · 장애인	084
 3 보육 및 교육	212
 4 근로	254
 5 소득보장과 빈곤	302
 6 건강	340
 7 주거	416
 8 에너지	452
 9 환경	472
 10 문화	498
 11 사회재정	538

사회  
배경

01. 인구성장률	030
02. 총인구	031
03. 인구피라미드	032
04. 부양비	033
05. 합계출산율	034
06. 국내총생산	036
07. 1인당 국민총소득	037
08. 경제성장률	038
09. 소비자물가지수	039
10. 국민부담률	040
11. 조세부담률	041

1

가족

01. 1인가구	044
02. 노인가구	046
03. 한부모가구	048
04. 다문화가구	050
04-1. 북한이탈주민	053
05.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055
06.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057
07.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059
08.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061
09. 조이혼율	063
09-1. 조혼인율	065
09-2.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066
10. 의사상자 수	067
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9
1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072
12.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74
13.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77
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79
1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81

2

아동 ·  
노인 ·  
장애인

<b>아동</b>	
01. 아동 수면시간	087
02. 아동 인터넷 등 과의존위험군 비율	089
03. 아동 자살률	091
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093
04-1. 아동 손상 경험률	096
05.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097
05-1.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100
06.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102
07. 아동 빈곤율	105
07-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108
07-2. 아동급식 지원자 수	110
08. 나홀로 아동 수	111
08-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113



09. 요보호 아동 수	116
09-1.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118
09-2.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120
09-3. 아동공동생활가정보호 아동 수	122
10. 국내외 입양아동 수	123
10-1. 입양아동 관련급여 수급자	125
10-2.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127
11. 아동·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130
<b>노인</b>	
12. 65세 기대여명	133
13. 노인의 ADL 제한율	135
14. 노인의 운동 실천율	137
14-1.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138
15. 노인의 학대경험률	139
16. 노인 진료비	141
16-1. 노인의 1인당 외래방문 횟수	143
17.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144
17-1.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146
18.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147
18-1. 노인의 장기요양 수검률	149
19. 장기요양기관 수	151
19-1. 장기요양 기관의 전문인력	153
<b>장애인</b>	
20. 등록장애인 수	156
20-1. 장애출현율	159
21.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160
21-1.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162
22. 장애인복지시설 수	163
22-1. 장애인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165
22-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167
22-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169
2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171
24.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73
2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76
25-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179
26.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181
27. 특수교육 대상자 수	183
28-1.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185
28.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187
29. 장애인 교육수준	190
30.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192
30-1. 장애인 고용률	194
30-2. 장애인 실업률	196
3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97
32.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199
3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01
33-1. 장애수당 수급자 수	203
33-2.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205
34.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207
35.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210

### 3

#### 보육 및 교육

0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214
01-1. 0~5세 아동보육공급율	216
0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18
03.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	220
03-1.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222
0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225
05. 학교급별 취학률	227
06. 학급당 학생 수	229
07.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232
08. 교원 1인당 학생 수	234
0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37
09-1.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239
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241
10-1.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243
11.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245
12.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247
13. 고등교육 이수율	249
1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251

### 4

#### 근로

01. 경제활동 참가율	256
02. 고용률	258
03. 실업률	260
04. 실업급여 수급자 수	262
0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264
06. 총 근로시간	266
0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269
08.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271
09. 사회보험 가입률	274
10. 산업재해율	276
11. 저임금근로자 비율	278
12. 시간급 최저임금	280
12-1. 최저임금 영향률	283
13. 시간당 임금액	284
1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286
15. 자활사업 대상자 수	288
15-1. 자활사업 참여자 수	291
16.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94
16-1.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297
17.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300

### 5

#### 소득보장과 빈곤

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304
01-1.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306
01-2.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308
01-3.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309
01-4. 의료급여 수급자 수	312
01-5. 교육급여 수급자 수	314
02. 우선돌봄 차상위수급자 수	316
03. 상대적 빈곤율	319

04. 상대적 노인 빈곤율	321
05. 소득5분위배율	323
06. 지니계수	325
0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327
08.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330
09.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333
09-1.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336
10.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337
01. 기대수명(평균수명)	342
01-1. 건강수명	344
01-2. 주관적 건강인지율	345
02. 조사망률	347
02-1. 연령표준화사망률	349
02-2. 영아사망률	351
02-3.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352
03. 저체중아 발생률	353
03-1. 조산율	355
04. 자살률	357
04-1. 정신장애 유병률	360
04-2. 우울장애 유병률	361
05. 10대 다빈도 상병	362
05-1. 암 발생률	364
05-2.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	365
05-3. 고혈압 유병률	366
05-4. 당뇨병 유병률	367
06. 현재 흡연율	369
06-1.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371
06-2.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372
06-3. 청소년 현재 흡연율	373
07. 고위험 음주율	374
07-1. 연간음주율	376
07-2. 청소년 현재 음주율	377
07-3. 1인당 알콜소비량	378
08. 비만율	379
08-1. 청소년 비만율	381
08-2. 걷기실천율	382
09.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383
09-1. 건강식생활실천율 추이	385
10. 평균 채용일수	387
11. 1일 외래환자 수	389
11-1. 1인당 의사진찰 건수	390
11-2. 1인당 의료이용 현황	391
11-3. 산전수진율	392
12.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394
12-1.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3세 대상	396
12-2.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만1~18세	397
13.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398
13-1.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400

14. 의료보장 적용 인구	401
15. 의사 수	403
15-1. 면허의료인 현황	405
16. 병상 수	406
16-1. 의료기관 현황	408
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409
17-1.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411
17-2. 건강보험보장률	412
18.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수급자 수	413

## 7 주거

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18
02.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421
03.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423
03-1. 비주택 거주 가구 수	426
04.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428
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430
05-1.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432
06.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434
07. 노숙인 수	436
08.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438
09.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441
10.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용자가구 수	444
10-1.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446
11.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448
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450

## 8 에너지

01. 가전기기 보급률	454
02.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456
03. 도시가스 보급률	459
04. 연탄사용 가구 현황	461
05.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463
06.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465
07.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467
08. 에너지복지사업 지원가구	470

## 9 환경

01. 상수도 보급률	474
02. 하수도 보급률	476
02-1.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478
02-2. 하수도 설치율	479
0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480
03-1.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482
03-2.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483
04.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484
04-1.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486
04-2.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487
05. 주요 대도시 소음도	488

06.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490
06-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492
07.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494
07-1. 환경예산 비율	495
08. 환경성질환자 수	496

## 10 문화

0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500
01-1.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502
02. 연간 독서량	504
02-1. 연간 독서율	506
03.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509
03-1. 인구 100만 명당 유형별 문화시설의 수	511
0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513
05.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515
06.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	517
07. 생활체육 참여율	519
07-1.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521
08.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522
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524
10.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526
11.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528
1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530
1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532
14. GDP 대비 문화예산	534
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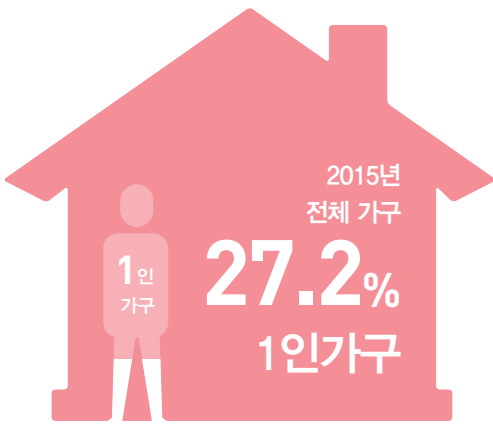
## 11 사회 재정

01.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540
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542
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544
04.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546
05. 공적연금수지	547
06. 고용·산재보험수지	549
0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550
08. 사회복지·보건 조세지출 규모	552
09.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554
09-1.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557
10. 지방교육재정 유아 보육·교육지출	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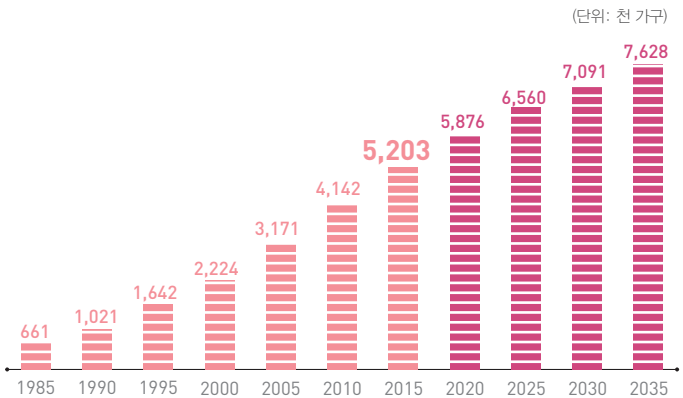
# 가족

## 1인가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처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연도별 1인가구 수 및 추계: 1985~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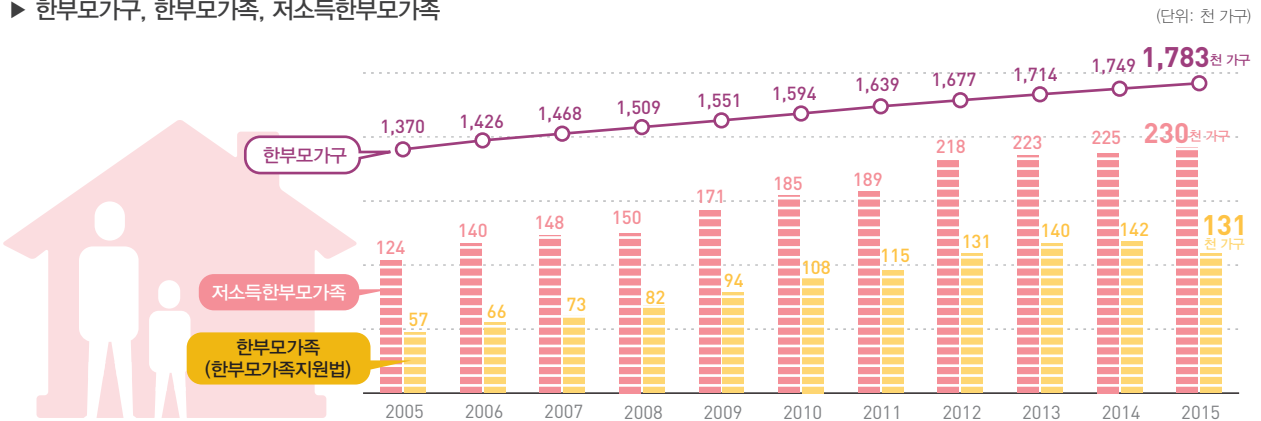


주: 1985~2015년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2020~2035년은 장래가구추계에서 발표된 1인가구 추계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2

## 한부모가구

한부모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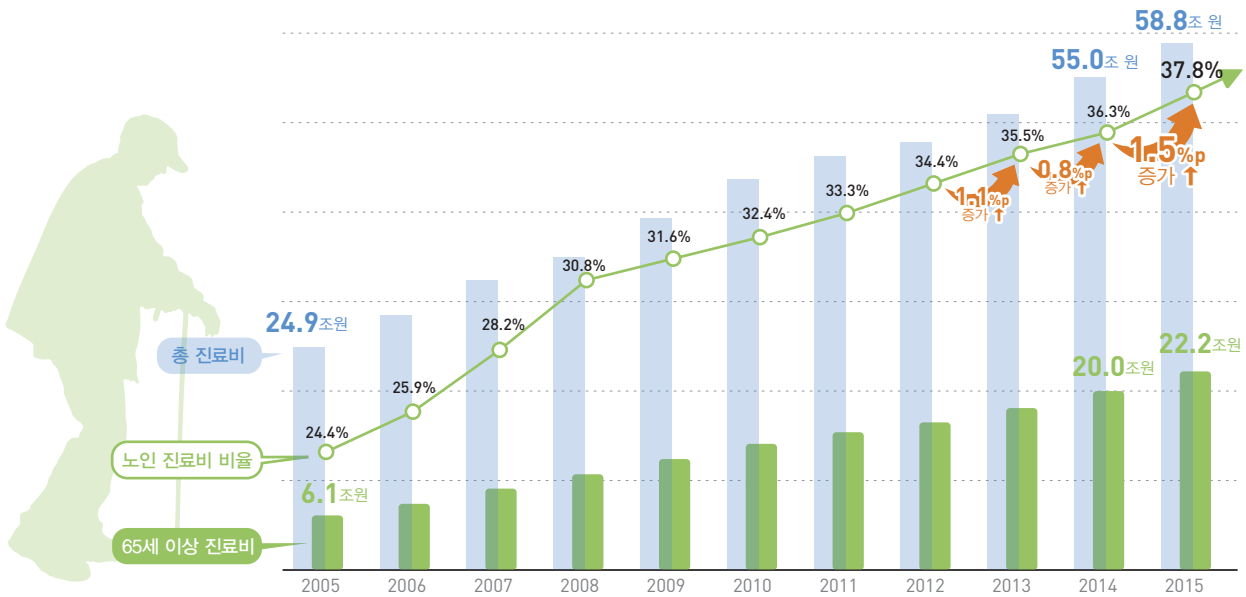
주: 1)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주말부부 등이 포함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대상 + 국가보훈처저소득대상(11년까지) 한부모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한부모가구를 합한 수를 의미함.  
3)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각 연도; 여성가족부, 2016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6

## 노인 의료비

노인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

▶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및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 2005~2015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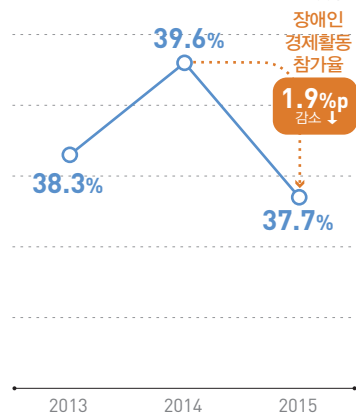


주: 1)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  
 2) 전체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진료비/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12  
 3)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연도말 건강보험 적용인구)/12  
 4) 2012년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연평균 적용인구 적용  
 5)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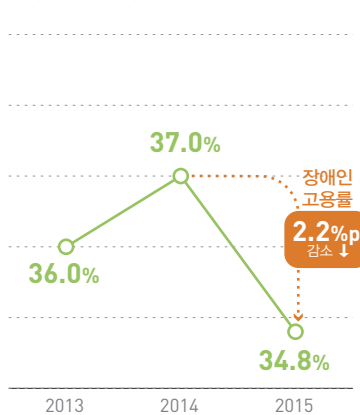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5년에 감소한 반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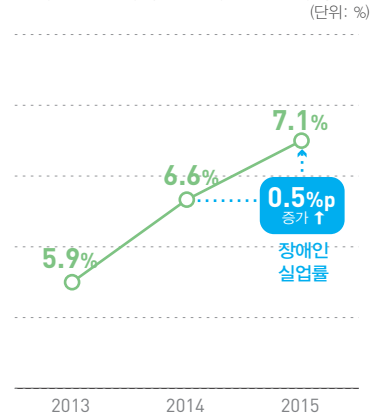
▶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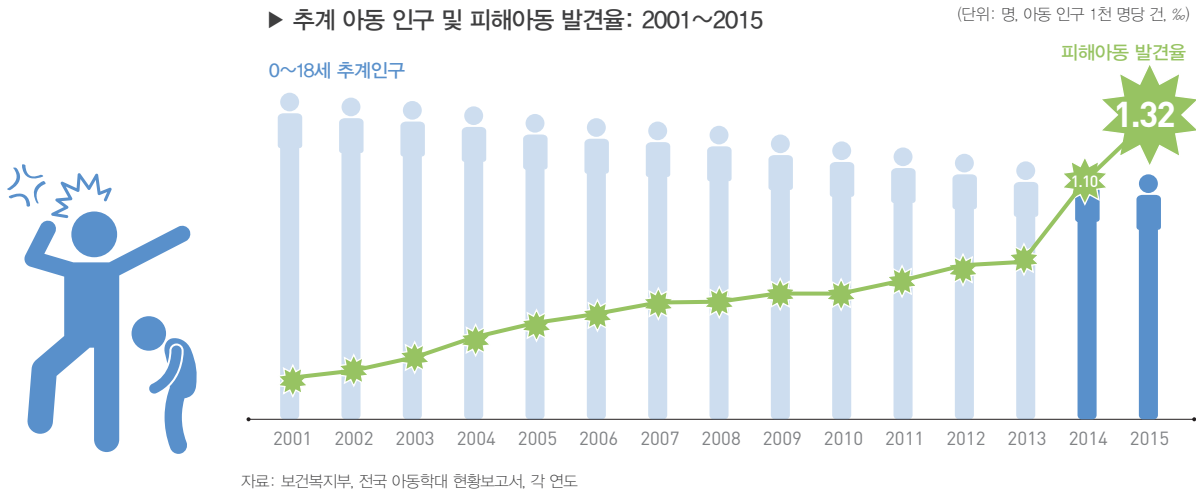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5

# 아동 · 노인 ·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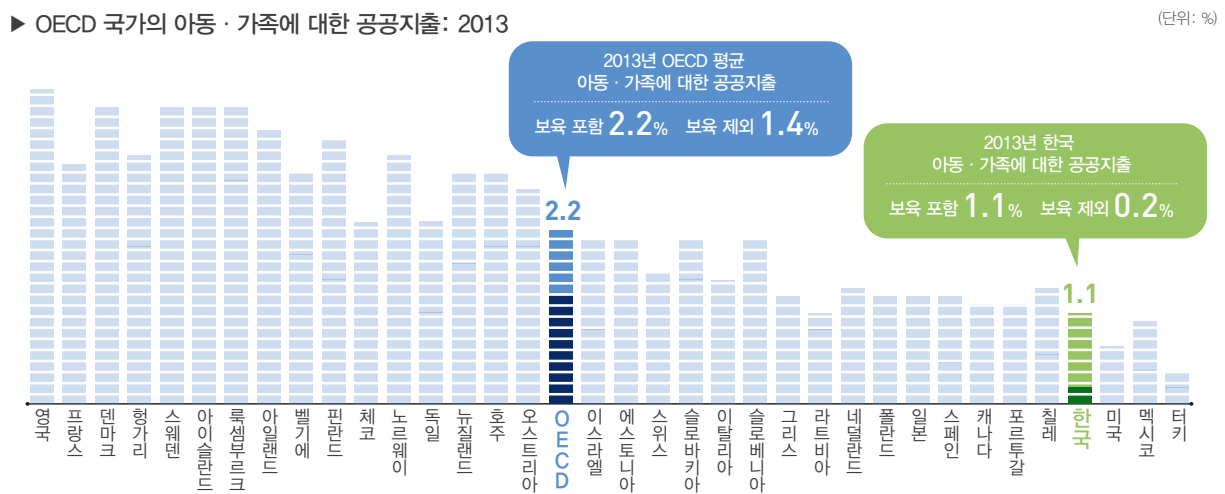
##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

법 개정 및 국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2014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은 크게 증가



## 아동복지지출 비중

보육을 제외한 아동 · 가족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13.3%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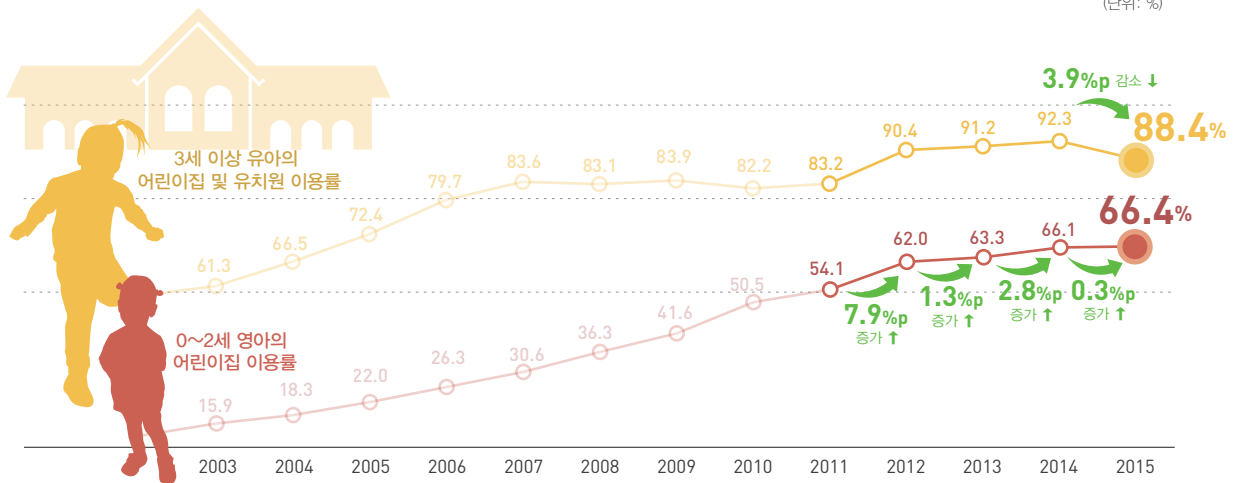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15년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 증가 추세 둔화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0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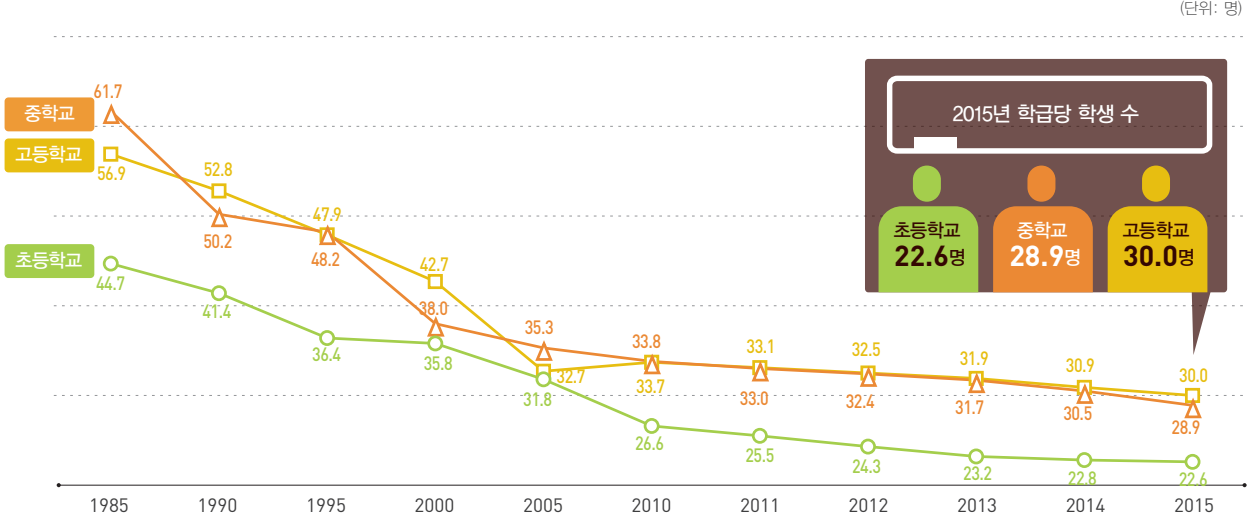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현황, 각 연도

### 학급당 학생 수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연도별·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1985~20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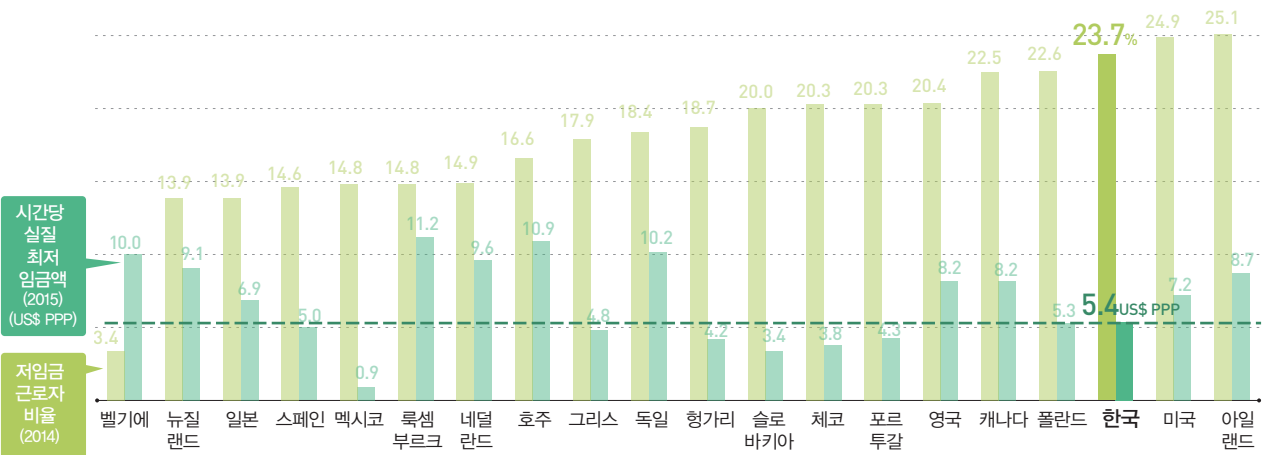
## 근로

###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미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가장 높아

▶ OECD 주요국가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액(2015)과 저임금근로자 비율(2014)

(단위: US\$ PP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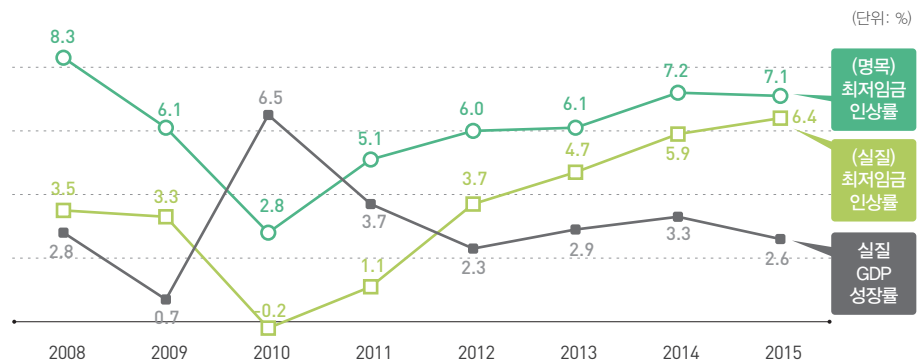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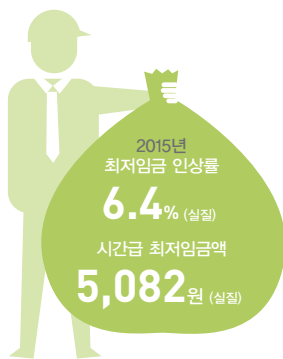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6. 9. 25. 08:07 UTC (GMT))

### 최저임금 증가율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높아져

▶ 실질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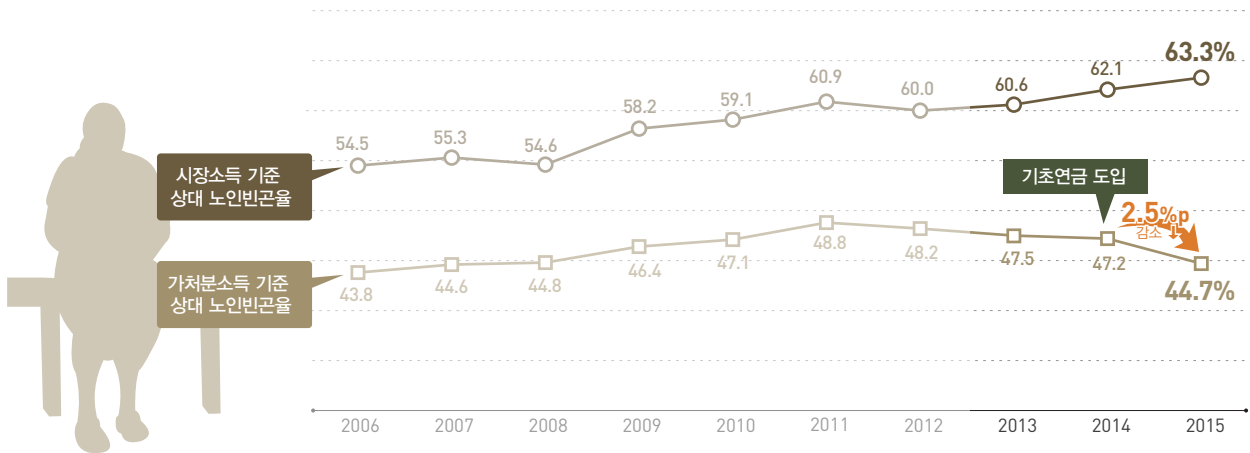
주: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실질화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소득(자료 다운로드 2016. 9. 25.)

### 노인빈곤율

시장소득 기준 65세 이상 상대 노인빈곤율(중위 50%)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정부의 공적 이전지출이 노후소득보장 및 노인빈곤 감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담당

▶ 중위 50% 기준 소득별 상대적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2006~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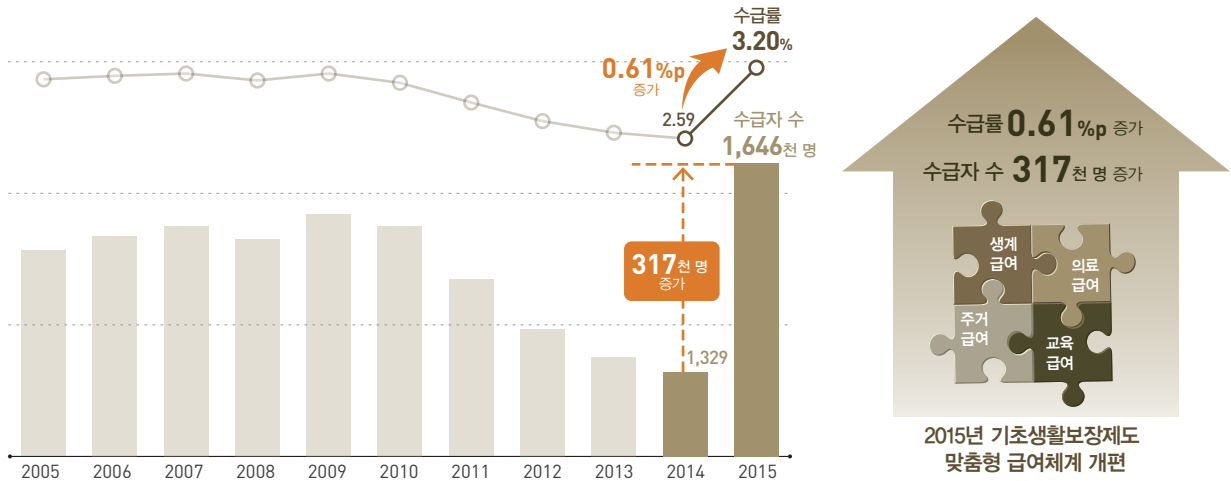
주: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빈곤통계연보, 2016.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규모 및 수급률이 크게 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5~2015)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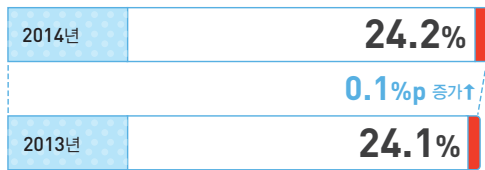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6

#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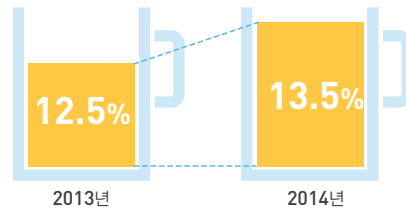
##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현재 흡연율은 거의 변화없으나, 고위험 음주율은 남녀 모두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

▶ 현재 흡연율 (2013~2014)



▶ 19세 이상 고위험 음주율 (201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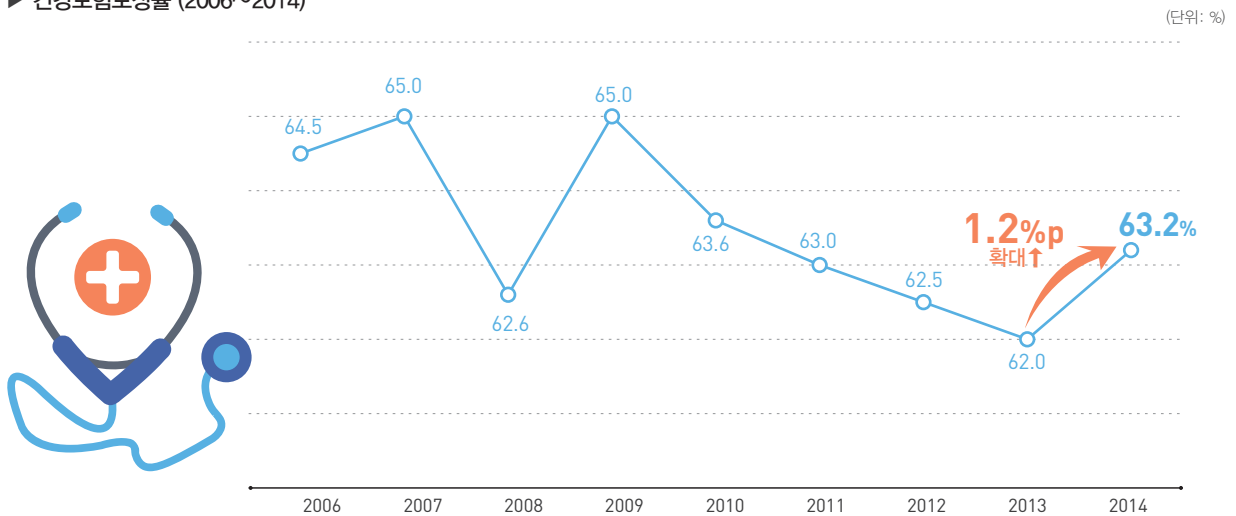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건강보험보장률

건강보장 적용비율은 100%(건강보험 97%, 의료급여 3%)인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 수준에 불과. 그러나,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에 1.2%p 확대

▶ 건강보험보장률 (2006~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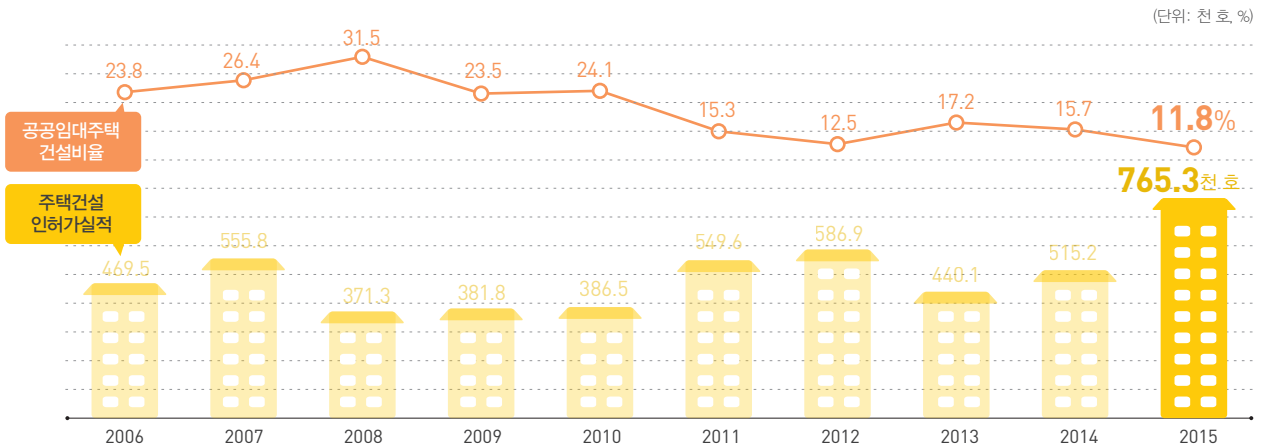


주: 현금지급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 공공임대주택비율

2015년도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이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반면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1.8%로 가장 낮아

▶ 신규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추이 (200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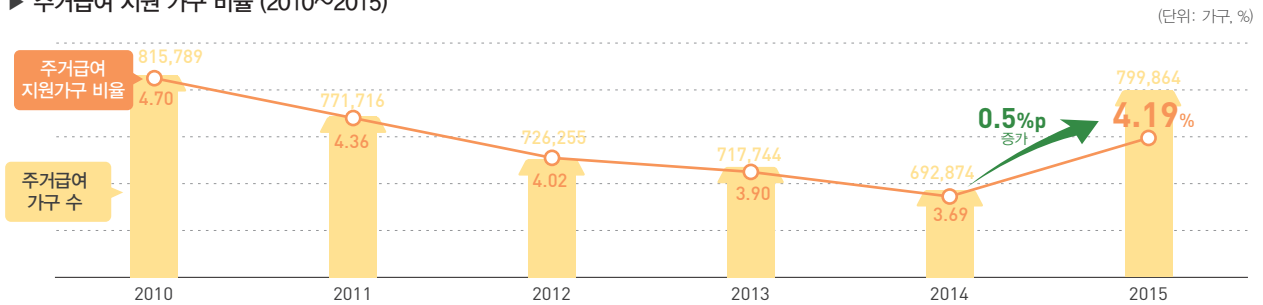


주: 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 기준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주거급여 지원가구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큰 폭으로 증가

▶ 주거급여 지원 가구 비율 (2010~201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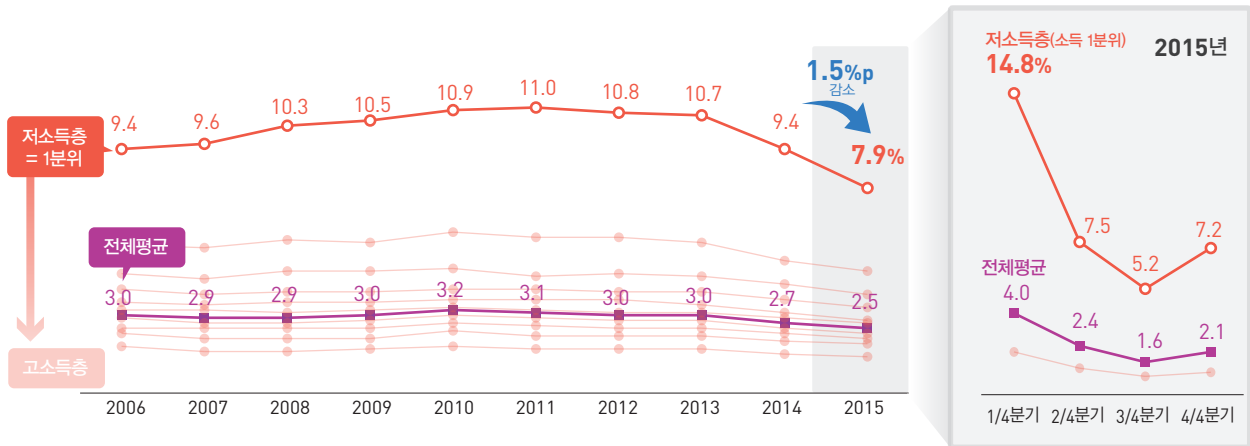
# 에너지

## 저소득층의 연료비 비율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최근 다소 낮아졌으나, 다른 계층에 비해 여전히 높으며 특히 동절기인 1분기에 가장 높음

▶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 (2006~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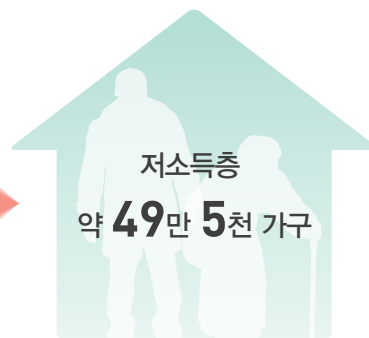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에너지바우처 도입

2015년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층 약 49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452억 원의 연료비를 지원



2015년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452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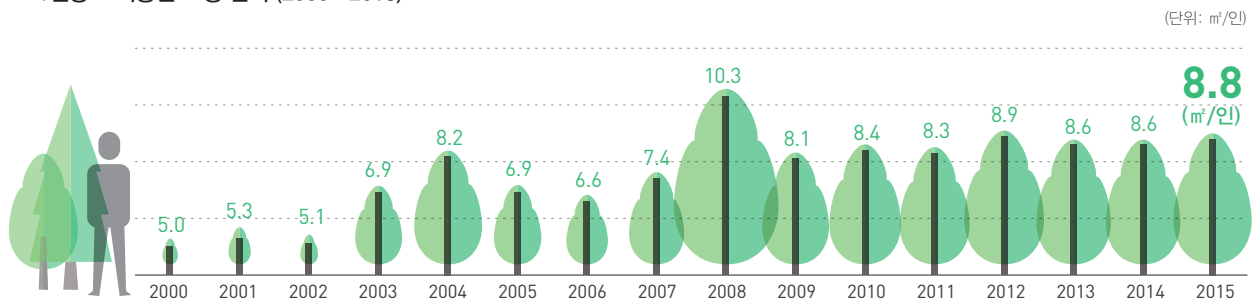
저소득층  
약 **49만 5천** 가구

자료: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2016.1)

###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2015년 다소 증가함

▶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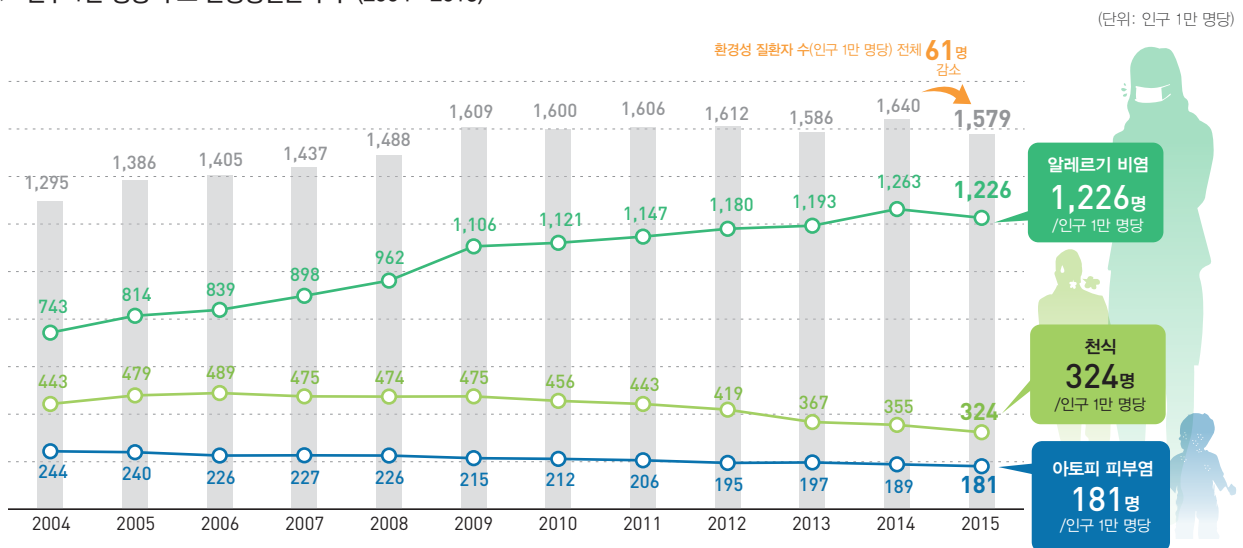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각 연도

### 환경성 질환자 수

인구 1만 명당 환경성 질환자 수는 2015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레르기 비염 질환자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 다소 감소함

▶ 인구 1만 명당 주요 환경성질환자 수 (20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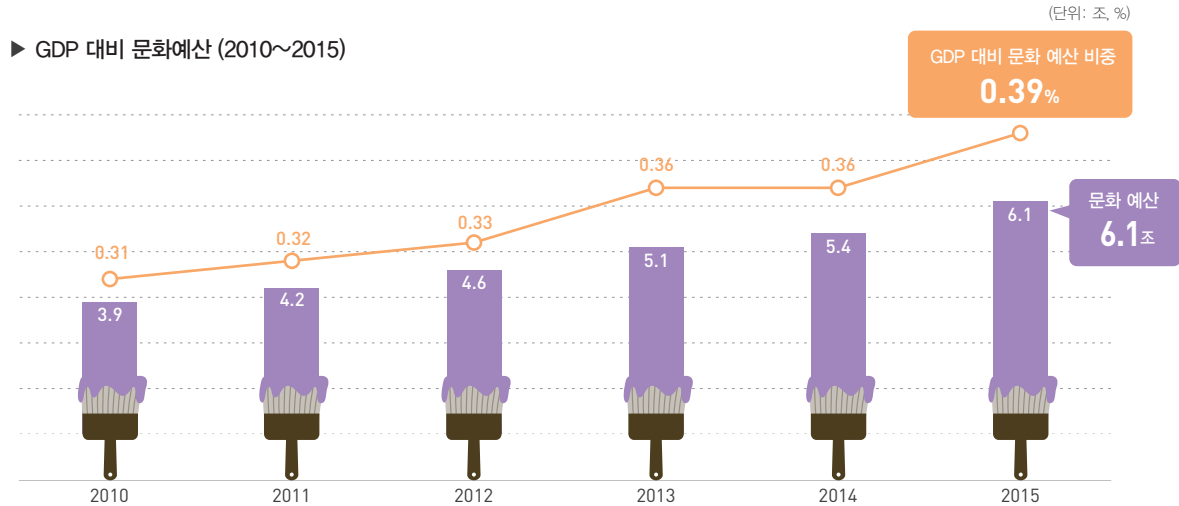
주: 1) 1만 명당 환자 = 환자 수/건강보험 연말 적용인구 × 10,000

2) 순계 =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수(내부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GDP 대비 우리나라 문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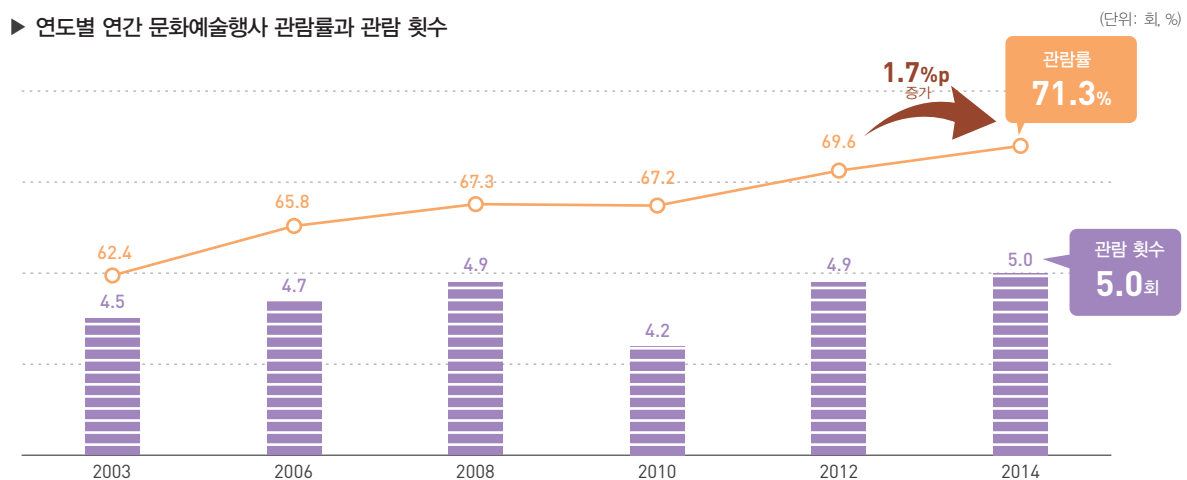
GDP 대비 우리나라 문화예산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자료: 기획재정부 분야별 예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문화향유 기회 증가로 인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71.3%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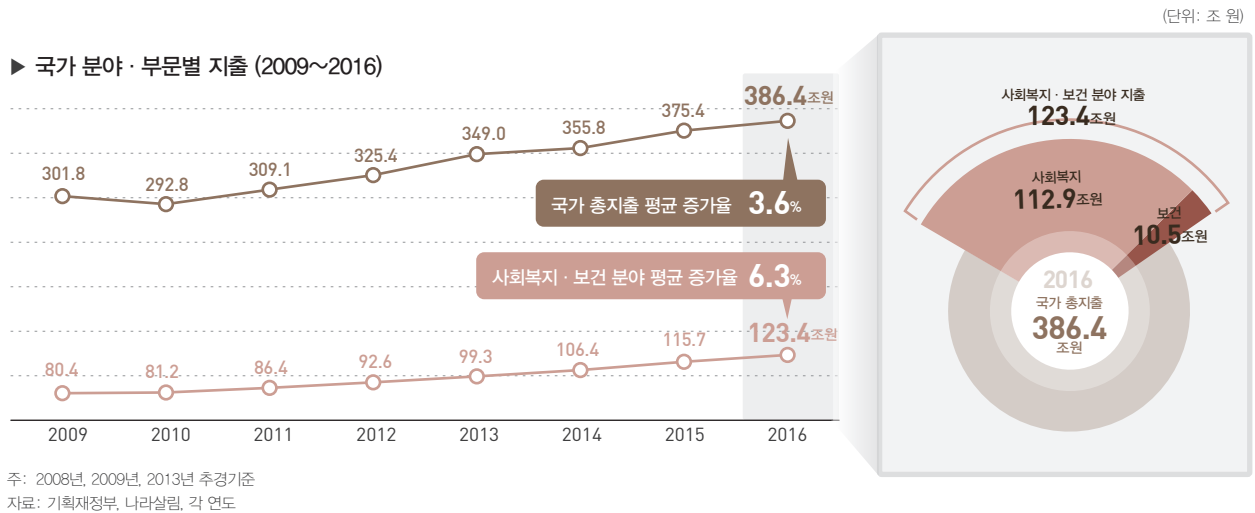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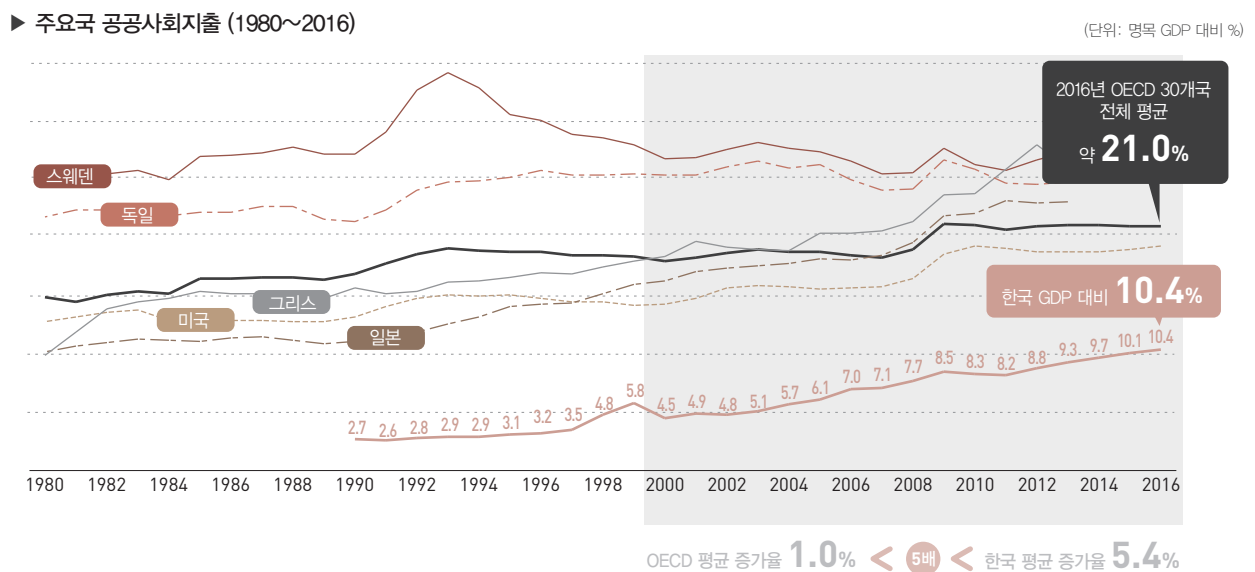
###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2016년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은 123.4조 원(사회복지 112.9조 원 & 보건 10.5조 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1.9%를 차지하며, 2009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6.3%로 국가 총지출(3.6%)보다 빠르게 증가



### OECD SOCX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OECD SOCX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30개국 전체 평균(약 21.0%)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낮지만,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 5.4%로 OECD 평균 증가율(약 1.0%)에 비해 5배 이상 빠르게 증가



# 사회배경

- 01 인구성장률
- 02 총인구
- 03 인구피라미드
- 04 부양비
- 05 합계출산율
- 06 국내총생산
- 07 1인당 국민총소득
- 08 경제성장률
- 09 소비자물가지수
- 10 국민부담률
- 11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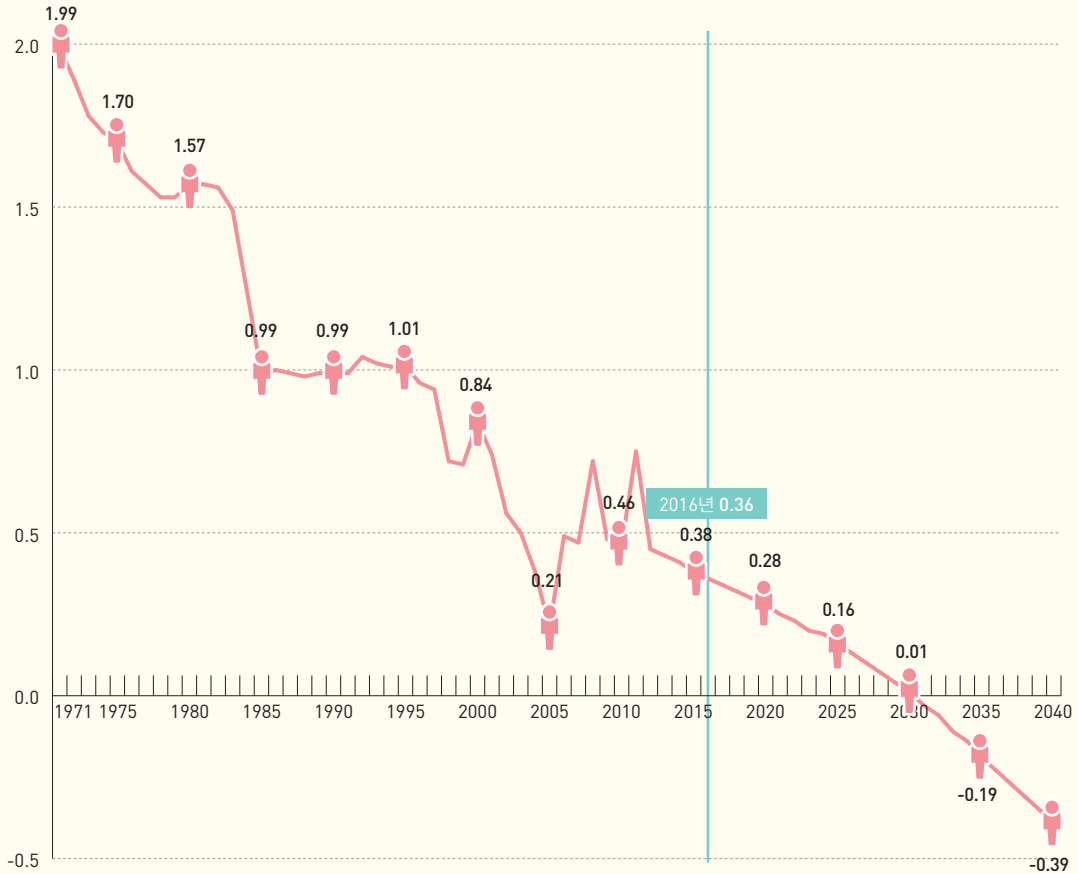
세부영역	지표	
인구	인구성장률	
	총인구	
	인구피라미드	성별 연령별 인구수 연령별 인구변화
	부양비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평균초산연령	
거시경제적 여건	국내총생산	
	1인당 국민총소득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국가재정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인구성장률

Population Growth Rate

그림 1 인구성장률 (1971~2040)

(단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표 1 인구성장률 (1971~2040)

(단위: %)

	1971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20	2025	2030	2035	2040
인구성장률	1.99	1.70	1.57	0.99	0.99	1.01	0.84	0.21	0.46	0.38	0.36	0.28	0.16	0.01	-0.19	-0.3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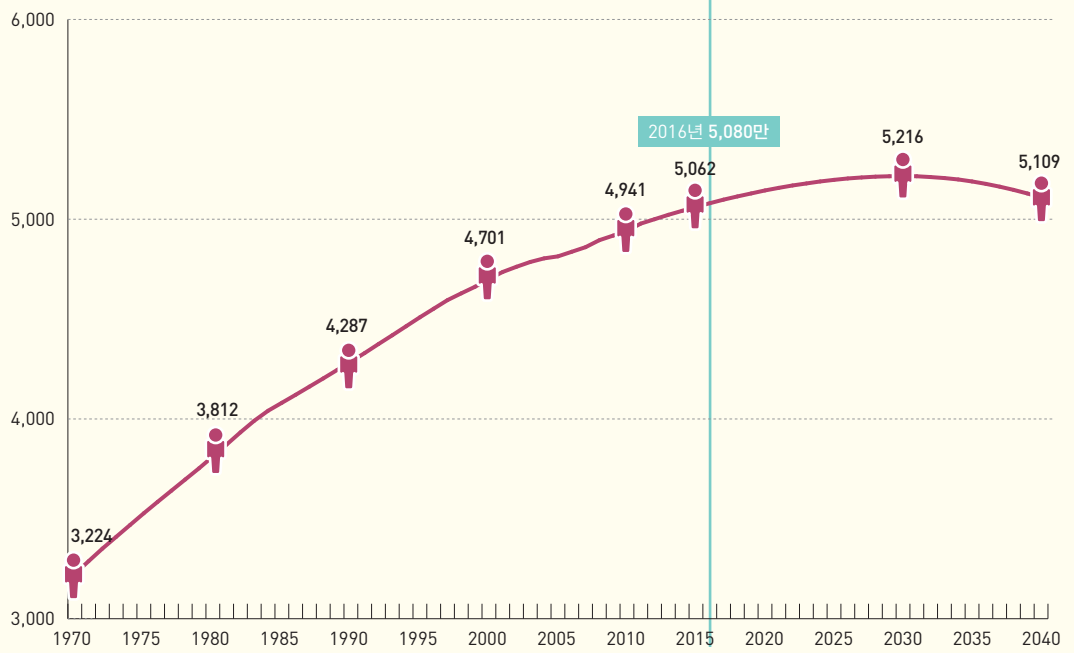
02

# 총인구

The Total Population

그림 2 총인구 (1970~2040)

(단위: 만 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표 2 총인구 (1970~2040)

(단위: 만 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20	2025	2030	2035	2040
총인구	3,224	3,528	3,812	4,081	4,287	4,509	4,701	4,814	4,941	5,062	5,080	5,144	5,197	5,216	5,189	5,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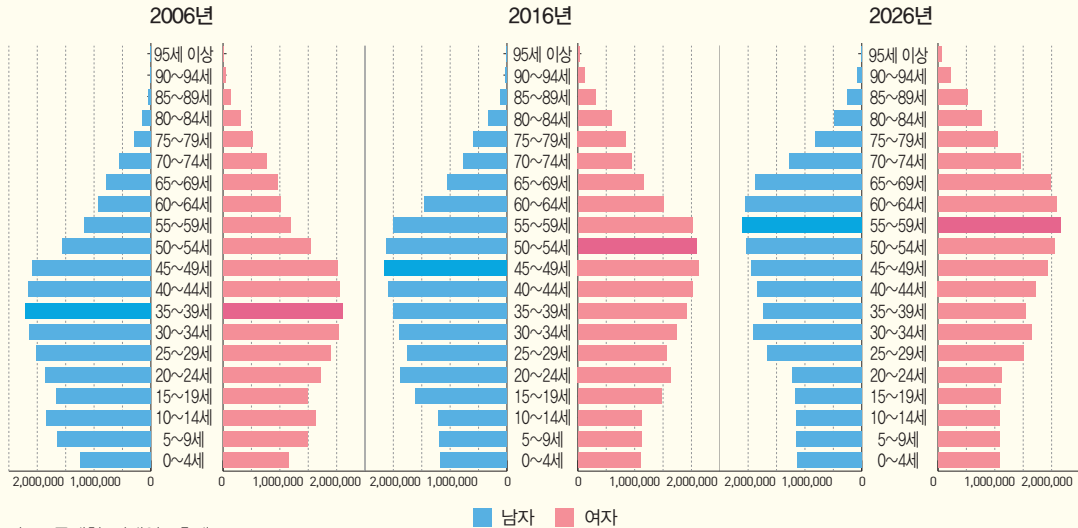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인구피라미드

Population Pyramid

그림 3 인구피라미드 변화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표 3 성별·연령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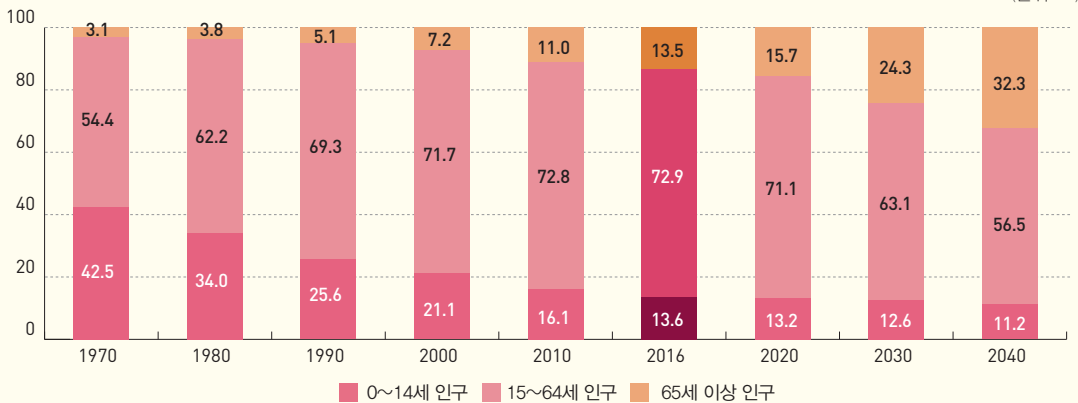
(단위: 명)

	2006			2016			2026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계	48,371,946	24,302,796	24,069,150	50,801,405	25,380,152	25,421,253	52,042,140	25,882,236	26,159,904
0~9세	5,512,560	2,874,796	2,637,764	4,579,995	2,361,984	2,218,011	4,465,137	2,295,112	2,170,025
10~19세	6,633,411	3,508,388	3,125,023	5,401,406	2,811,234	2,590,172	4,497,976	2,313,099	2,184,877
20~29세	7,483,181	3,868,933	3,614,248	6,843,635	3,640,824	3,202,811	5,509,324	2,888,993	2,620,331
30~39세	8,483,435	4,345,588	4,137,847	7,534,072	3,880,020	3,654,052	6,833,468	3,639,977	3,193,491
40~49세	8,302,627	4,230,986	4,071,641	8,399,979	4,245,498	4,154,481	7,423,872	3,779,420	3,644,452
50~59세	5,432,282	2,715,799	2,716,483	8,223,311	4,119,815	4,103,496	8,343,370	4,138,666	4,204,704
60~69세	3,670,700	1,709,225	1,961,475	5,157,081	2,491,288	2,665,793	7,990,802	3,917,392	4,073,410
70~79세	2,134,630	837,772	1,296,858	3,156,386	1,357,378	1,799,008	4,588,141	2,090,688	2,497,453
80세 이상	719,120	211,309	507,811	1,505,540	472,111	1,033,429	2,390,050	818,889	1,571,16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4 연령별 인구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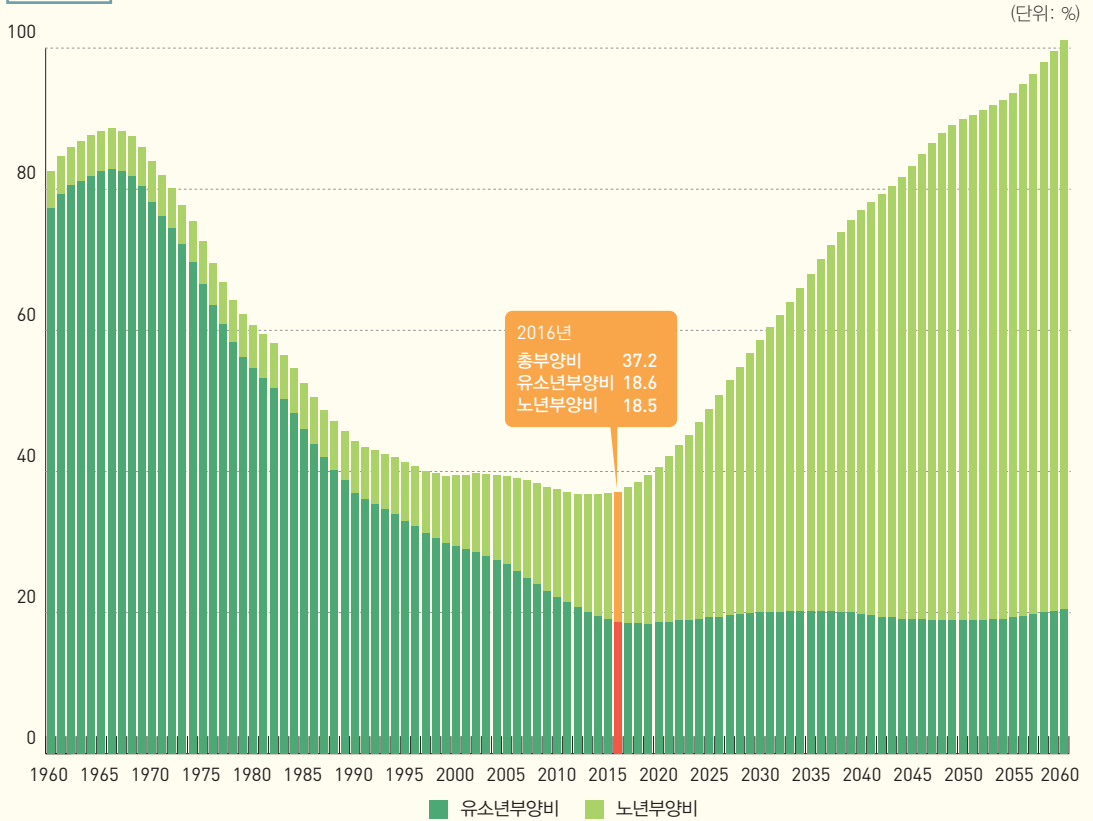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4

# 부양비

Dependency Ratio

그림 5 총부양비 (1960~2060)



주: 1) 중위가정  
 2)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 100  
 3)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표 4 부양비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총 부양비	82.6	88.3	83.8	72.5	60.7	52.5	44.3	41.4	39.5	39.4	37.3	37.0	37.2	40.7	48.9	58.6	68.0	77.0	83.3	89.8
유소년 부양비	77.3	82.5	78.2	66.6	54.6	46.0	36.9	33.0	29.4	26.8	22.2	19.0	18.6	18.6	19.3	20.0	20.2	19.8	19.0	18.9
노년 부양비	5.3	5.8	5.7	6.0	6.1	6.5	7.4	8.3	10.1	12.6	15.2	17.9	18.5	22.1	29.6	38.6	47.8	57.2	64.3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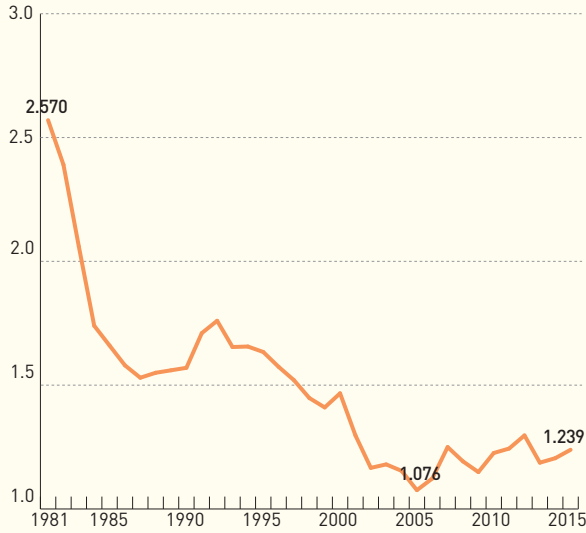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그림 6 합계출산율 (198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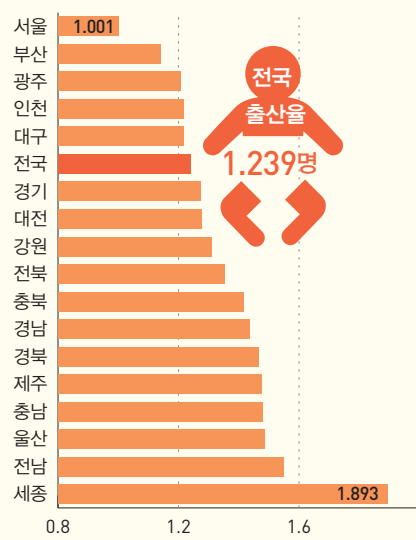
(단위: 가입기 여자 1명당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7 시도별 합계출산율 (2015)

(단위: 가입기 여자 1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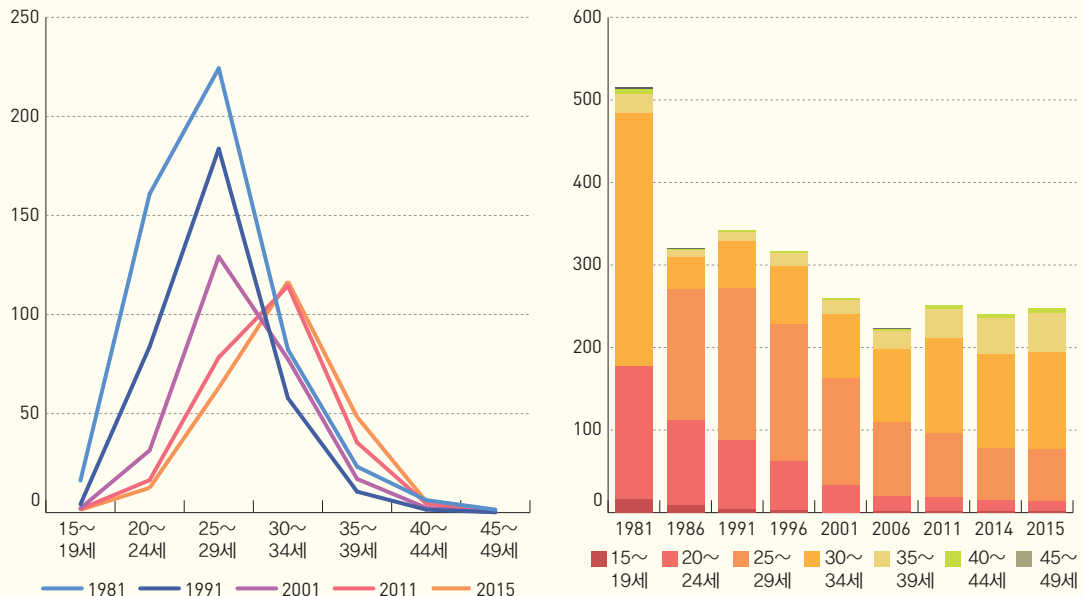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5-1. 연령별 출산율

그림 8 모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해당 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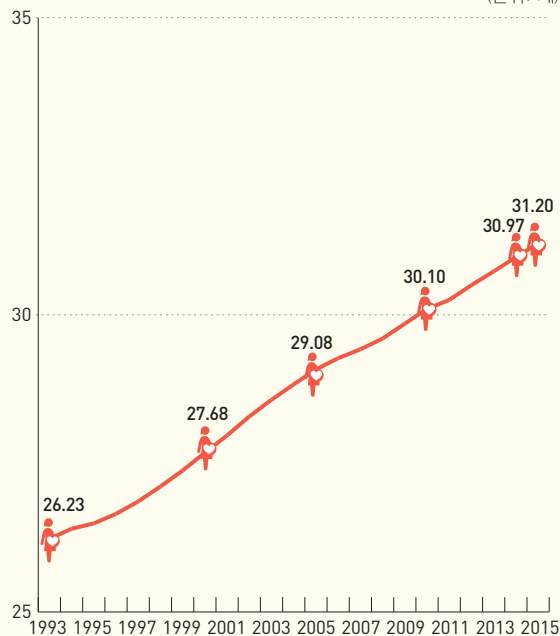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5-2. 평균초산연령

그림 9 모의 첫째아 평균출산연령 (199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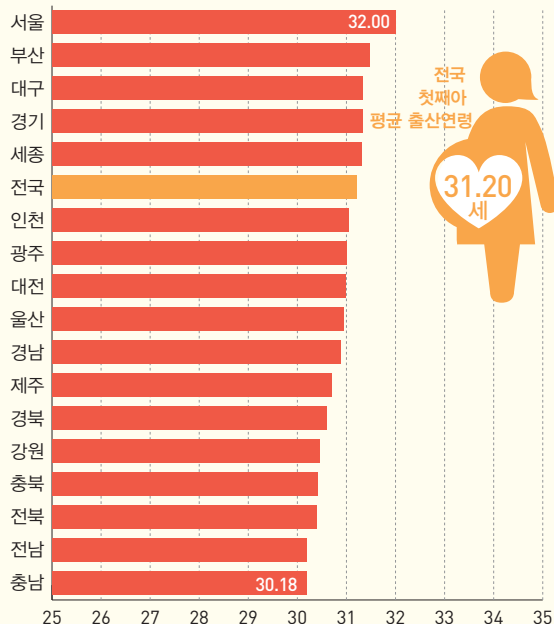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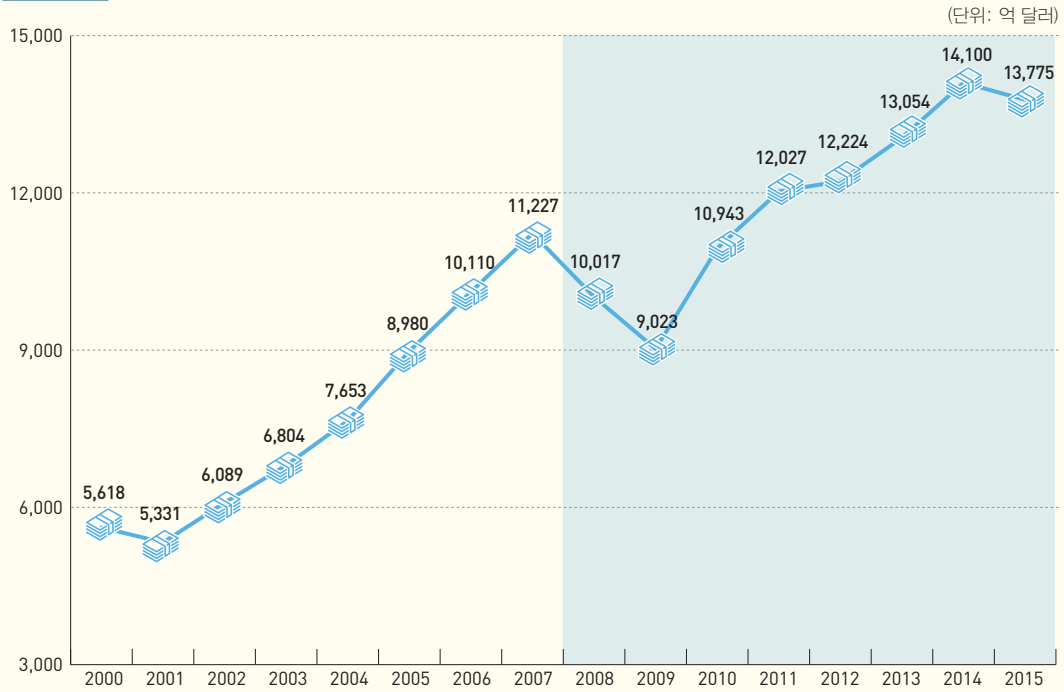
그림 10 시도별 모의 첫째아 평균출산연령 (2015)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11 국내총생산 (2000~2015)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5 국내총생산 (2000~2015)

(단위: 억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총생산	5,618	5,331	6,089	6,804	7,653	8,980	10,110	11,227	10,017	9,023	10,943	12,027	12,224	13,054	14,100	13,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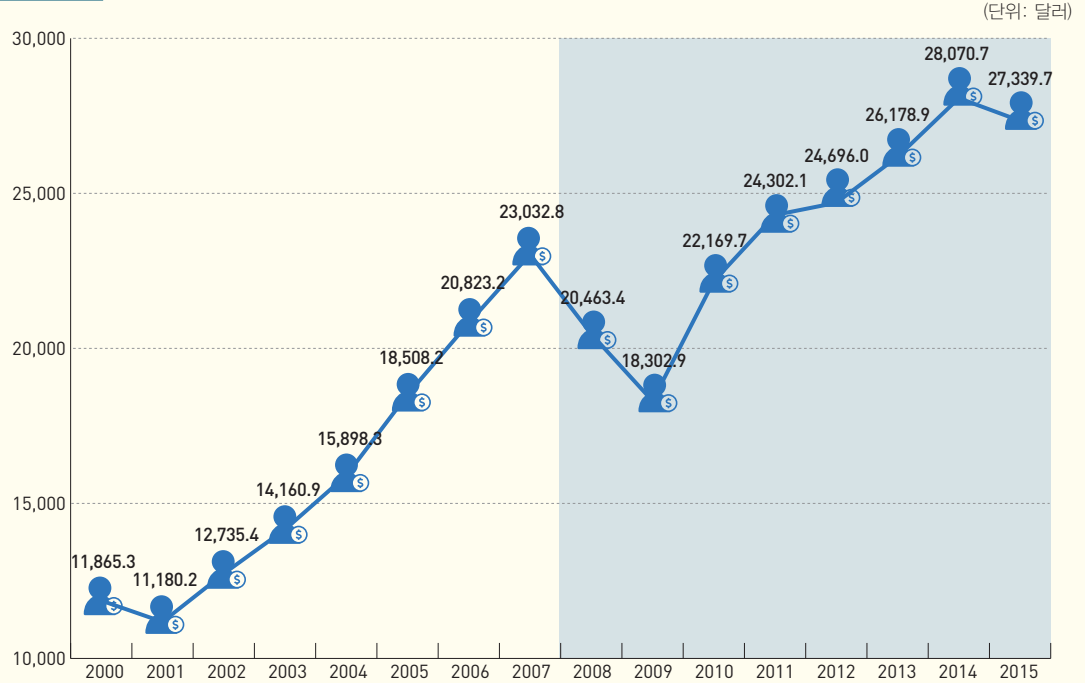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07

# 1인당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그림 12 1인당 국민총소득 (2000~2015)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6 1인당 국민총소득 (2000~2015)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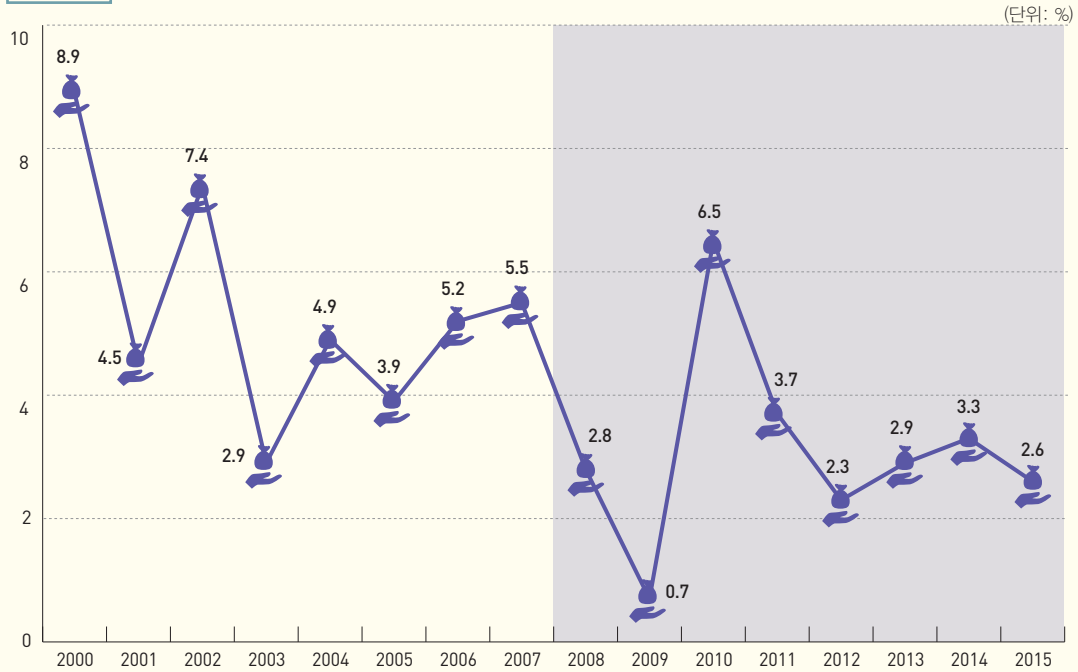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국민총소득	11,865.3	11,180.2	12,735.4	14,160.9	15,898.3	18,508.2	20,823.2	23,032.8	20,463.4	18,302.9	22,169.7	24,302.1	24,696.0	26,178.9	28,070.7	27,339.7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경제성장률

Rate of Economic Growth

그림 13 경제성장률 (2000~2015)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7 경제성장률 (2000~2015)

(단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 성장률	8.9	4.5	7.4	2.9	4.9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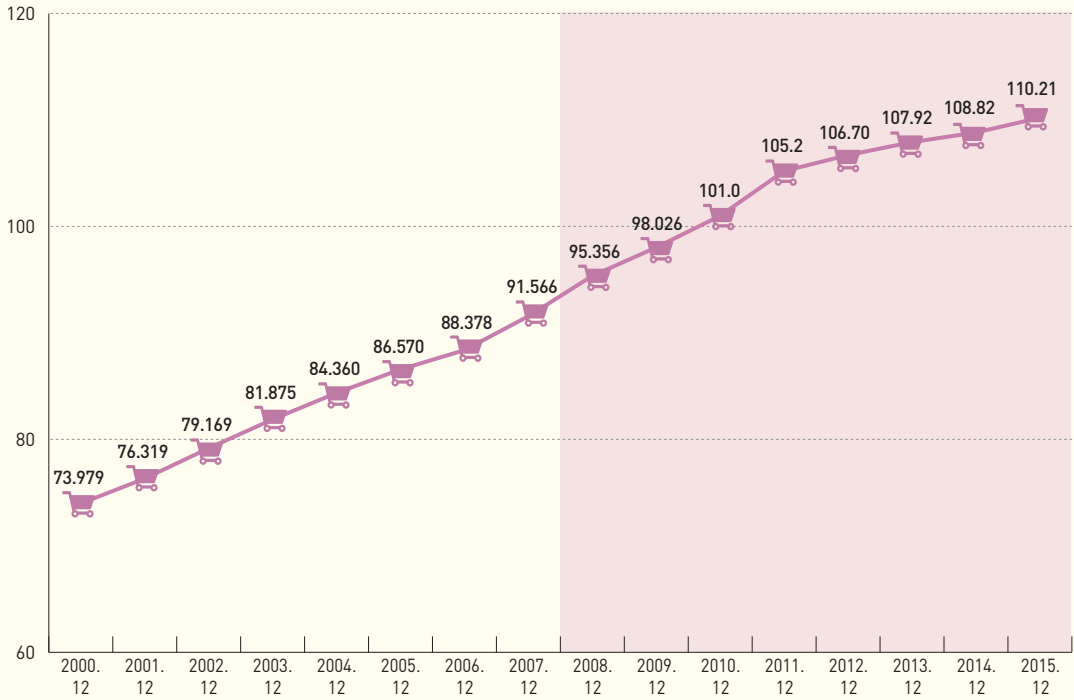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09

#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그림 14 소비자물가지수 (2000~2015)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표 8 소비자물가지수 (2000~2015)

연도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12	2012.12	2013.12	2014.12	2015.12
소비자물가지수	73.979	76.319	79.169	81.875	84.360	86.570	88.378	91.566	95.356	98.026	101.0	105.2	106.70	107.92	108.82	110.21

주: 1)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2010=100)의 총지수

2) 2009년 이전 지수는 3자리, 2010년 이후 지수는 1자리, 2012년 이후 지수는 2자리로 작성됨.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 국민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 of GDP

표 9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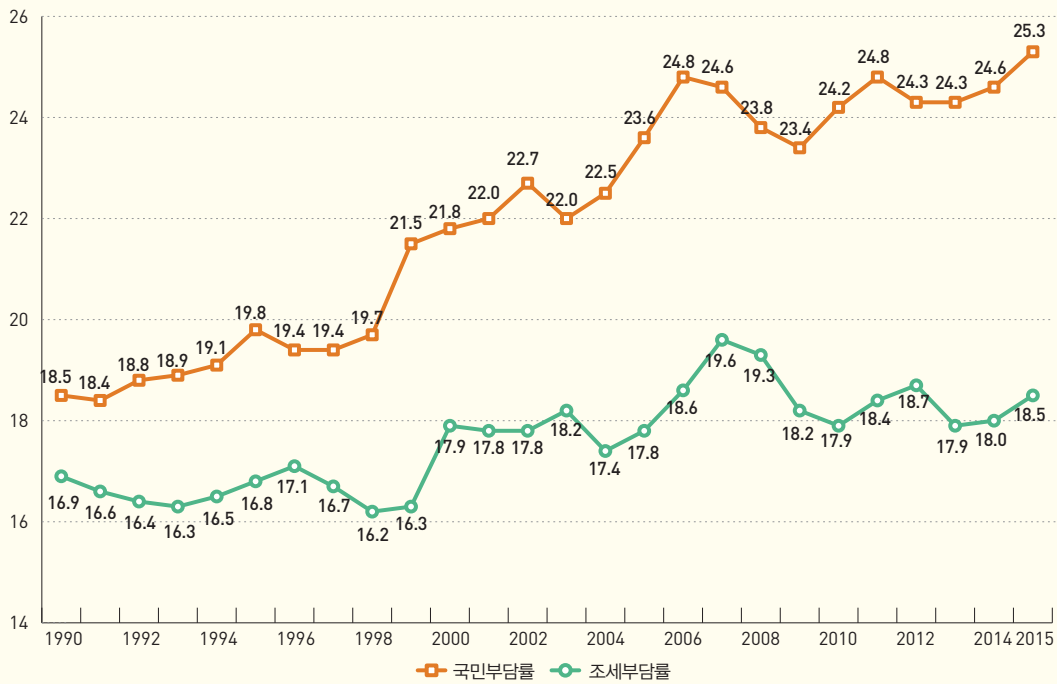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민부담률	21.8	22.0	22.7	22.0	22.5	23.6	24.8	24.6	23.8	23.4	24.2	24.8	24.3	24.3	24.6	25.3
조세부담률	17.9	17.8	17.8	18.2	17.4	17.8	18.6	19.6	19.3	18.2	17.9	18.4	18.7	17.9	18.0	18.5

주: 2015년 수치는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 다운로드 2016.11.21, 11:31 UTC (GMT))

그림 15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1990~2015)

(단위: %)



주: 1) UN 2008 SNA 적용 및 기준연도 변경(2005 → 2010)에 따른 국민계정 계열 개편 결과 경상GDP 대비로 나타내는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의 절대수치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4' 보고서에 제시된 값과 다름.  
 2) 2015년 수치는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 다운로드 2016.11.21, 11:31 UTC (G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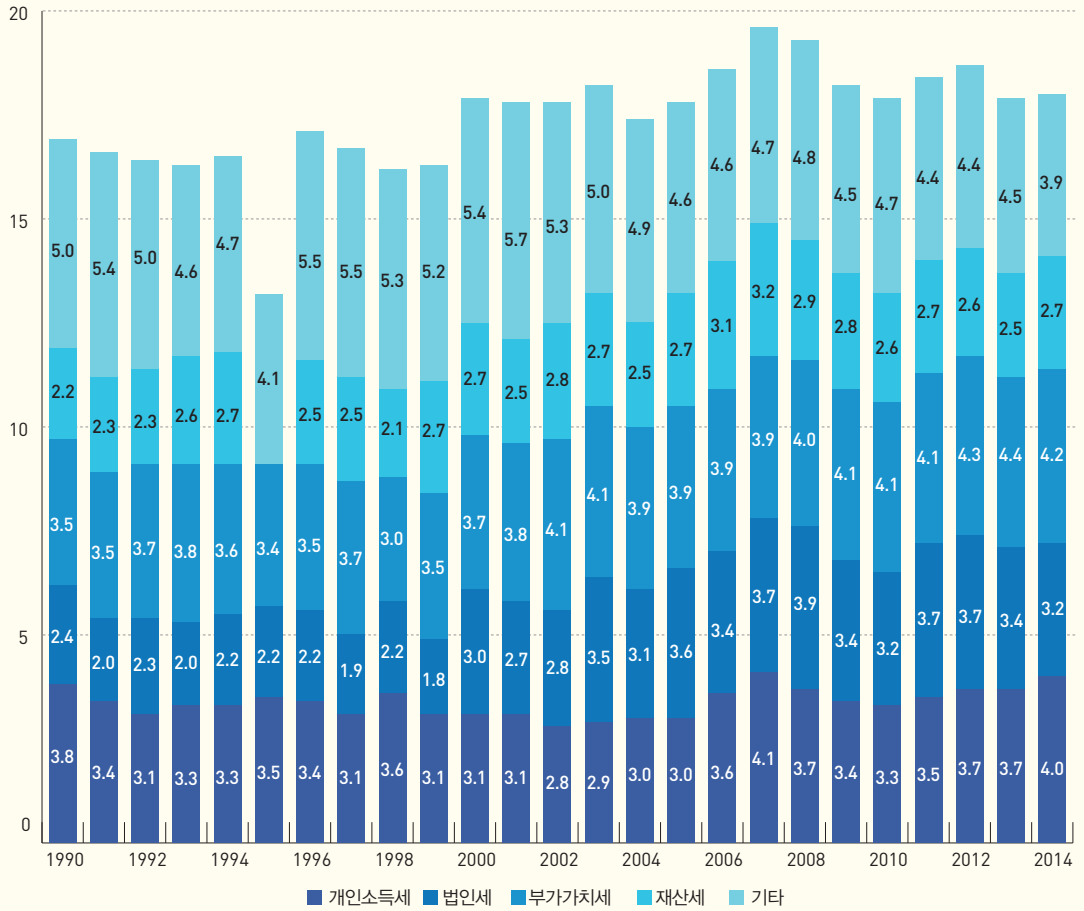
11

# 조세부담률

Total tax revenue(excluding social security) as % of GDP

그림 16 조세부담률 추이 (1990~2014)

(단위: 경상GDP 대비 %)



주: WoRLD 기초로 조세항목 재구성  
 자료: IMF, World Revenue Longitudinal Data(WoRLD) (자료 다운로드 2016.11. 21. 20:56 UTC (GMT))

# 1

## 가족

- 01 1인가구
- 02 노인가구
- 03 한부모가구
- 04 다문화가구
- 05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 06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 07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 08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 09 조이혼율
- 10 의사상자 수
- 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12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13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1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통 계 로 보 는 사 회 보 장

# 2016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다양한 가족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가족 갈등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조이혼율	조혼인율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가족지원서비스	의사상자 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가시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1인가구

Single-person household

## 지표 정의

1인가구란 일반가구 중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 측정 산식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된 1인으로 구성된 가구 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구의 규모는 축소되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7.2%로 나타났다. 1995년 164만 가구였던 1인가구는 2015년 520만 가구로 약 3.2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장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는 약 7백 6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 1인가구의 수가 남성 1인가구 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2015년 남성 1인가구 수는 259만여 가구인 반면 여성 1인가구 수는 261만여 가구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는 70세 이상에서 가장 많고, 남성 1인가구는 30~39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1인가구는 만혼 및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구 규모의 축소 경향은 전통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된 가족정책을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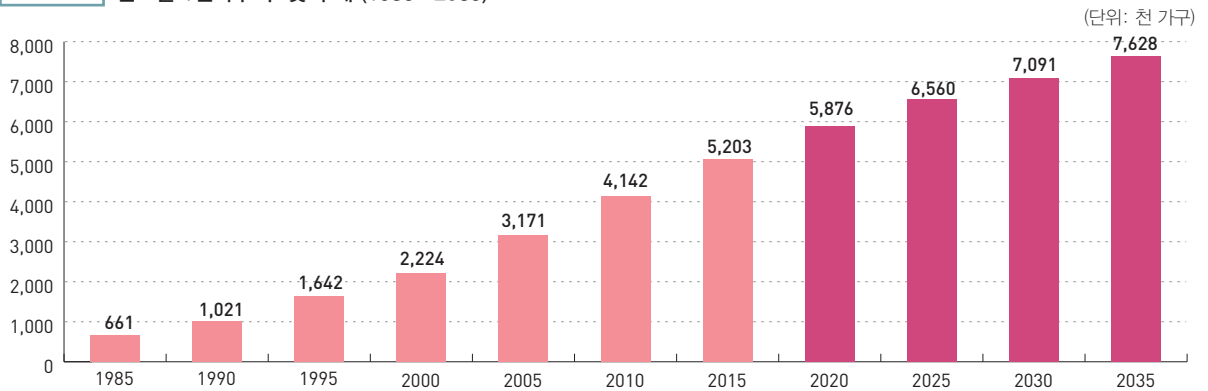
### Checkpoint

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61천 가구였던 1인가구는 2015년 5,203천 가구로 약 8배 정도 증가하였다. 남성 1인가구는 2010년 1,924천 가구에서 2015년 2,593천 가구로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2010년 2,218천 가구에서 2015년 2,610천 가구로 증가했다. 1인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 현황 및 특성(보도자료), 2012

그림 1-1 연도별 1인가구 수 및 추계 (1985~2035)



주: 1985~2015년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2020~2035년은 장래가구추계에서 발표된 1인가구 추계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2

표 1-1 연도별·성별 가구유형 및 1인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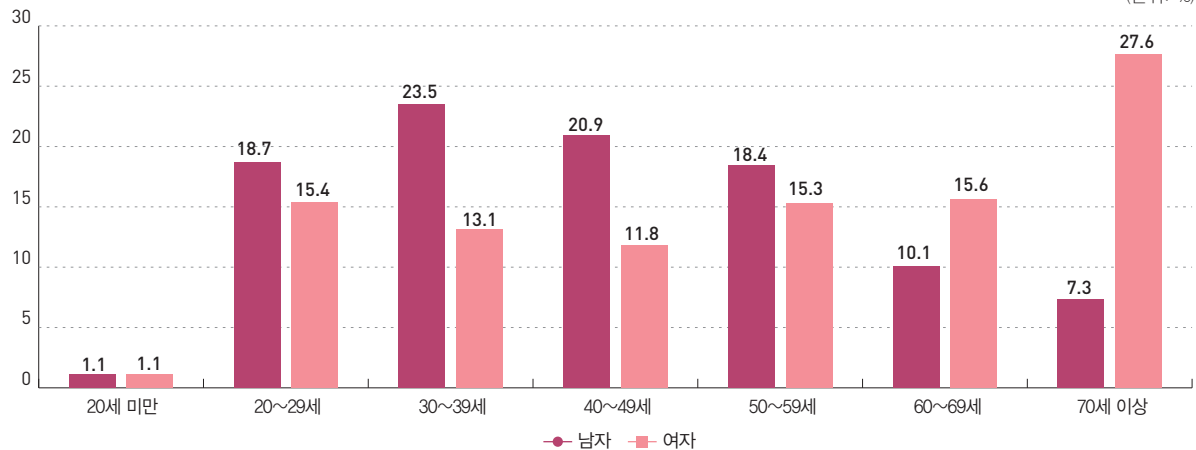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

구분	일반가구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2000	전체	14,312	2,224	15.5
	남자	11,659	945	8.1
	여자	2,653	1,279	48.2
2005	전체	15,887	3,171	20.0
	남자	12,402	1,418	11.4
	여자	3,485	1,753	50.3
2010	전체	17,339	4,142	23.9
	남자	12,842	1,924	15.0
	여자	4,497	2,218	49.3
2015	전체	19,111	5,203	27.2
	남자	13,461	2,593	19.3
	여자	5,650	2,610	46.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1-2 성별·연령별 1인가구 비율 (2015)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 노인가구

Elderly household

## 지표 정의

노인가구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본 지표는 해당 문항에 응답한 가구형태를 토대로 전체 응답자 대비 각 가구형태별 응답자 수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노인가구는 노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독거가구, 부부 중 1인 이상이 노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동거가구, 그 외의 기타 다양한 가구형태로 구분하여 파악되고 있다.

## 측정 산식

- $$\text{가구형태별 노인가구 비율} = \frac{\text{노인의 가구형태별 노인 수}}{\text{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 \times 100$$
- 조손가구=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6,569천명(13.2%)으로 2010년 5,360천명(11.0%)보다 1,209천명(22.5%) 증가하였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여성노인이 3,806천명(58.2%)으로 남성노인 2,763천명(41.8%)보다 많으며 남녀 격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44.5%)이며, 그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28.4%), 노인독거가구(23.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가구형태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된 노인단독가구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전체 노인가구 중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67.5%로 1994년에 비해 큰 폭(27.1%p)으로 증가하였다.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은 84세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85세 이상이 되면서 감소하는 한편, 85세 이상에서는 자녀동거가구형태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의 기능상태 저하로 인해 독거에서 자녀 동거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는 1995년 25,194가구에서 2005년 58,101가구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5년 43,314가구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4	3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 Checkpoint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가구 중 노인단독가구와 조손가구는 사회적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 특히, 조손가구 중 유일한 보호자로서 조부모가 양육을 책임지며 동거하는 형태의 경우 손자녀의 양육에 있어서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표 1-2 연도별 노인인구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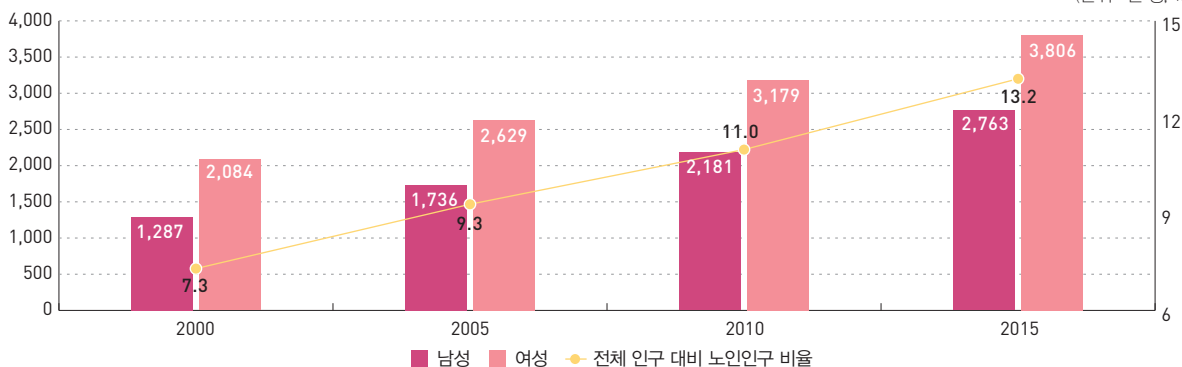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연도	노인인구	(전체인구 대비 비중)	성별	
			남성	여성
2000	3,372	(7.3)	1,287	2,084
2005	4,365	(9.3)	1,736	2,629
2010	5,360	(11.0)	2,181	3,179
2015	6,569	(13.2)	2,763	3,80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1-3 연도별 노인인구 및 남녀 비율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1-3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구형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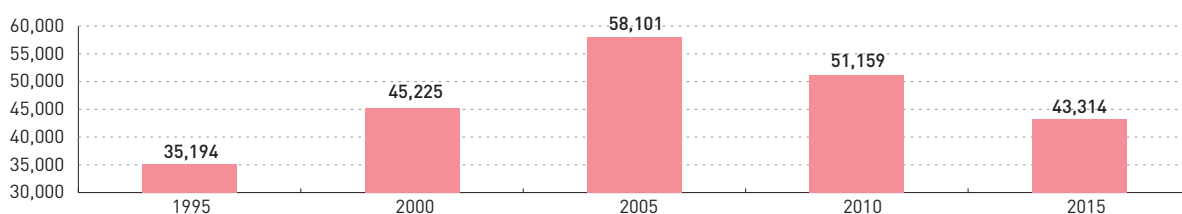
(단위: %)

특성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계
합계		23.0	44.5	28.4	4.0	100.0
성	남자	10.0	61.4	24.6	4.0	100.0
	여자	32.3	32.5	31.2	4.0	100.0
연령	65~69세	14.5	51.7	28.5	5.2	100.0
	70~74세	20.9	48.0	27.2	4.0	100.0
	75~79세	27.7	44.3	24.8	3.1	100.0
	80~84세	35.5	33.9	27.9	2.7	100.0
	85세 이상	32.2	21.8	42.8	3.2	100.0
지역	동부	21.9	43.5	30.4	4.2	100.0
	읍·면부	26.8	48.0	21.8	3.3	100.0
1994년도		13.4	26.8	54.7	4.9	100.0
2004년도		20.6	34.4	38.6	4.4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4

그림 1-4 연도별 조손가구 수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한부모가구

Single-parent household

## 지표 정의

한부모가구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일반가구 중 주말부부 등이 포함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 측정 산식

「장래가구추계」를 통해 집계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

## 유의사항

1.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및 국가보훈대상 중 한부모가족을 의미한다.

한부모가구의 전체적인 규모는 2005년 전체 15,887천 가구 중 1,370천 가구(8.6%)로 집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413천 가구가 증가한 1,783천 가구(9.5%)로 나타났다. 이들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및 국가보훈처 소득대상자(2011년까지)를 합한 저소득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의미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소득한부모가족은 2005년 124천 가구였다가, 2015년에는 230천 가구로 지난 10년간 106천 가구 증가하였다. 이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5년에는 2012년 수준인 131천 가구로 감소하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2	2015	5년

## Checkpoint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가구 외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과 저소득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전체 한부모가구 수는 2014년 대비 2015년에 248가구 증가하였고, 이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은 11가구 감소한 반면 저소득한부모가족은 5가구 증가하였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으로 빈곤에 노출되기 쉽고 이는 곧 이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과 직결되므로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2016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6

표 1-4 전체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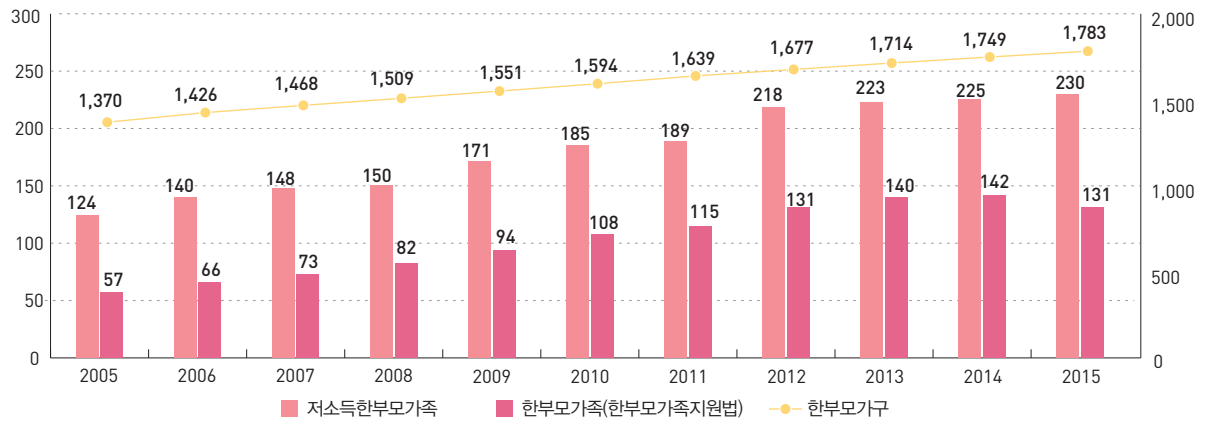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

연도	전체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계	전체가구 대비 %		
2005	15,887	1,370	8.6	124	57
2006	16,289	1,426	8.8	140	66
2007	16,543	1,468	8.9	148	73
2008	16,791	1,509	9.0	150	82
2009	17,052	1,551	9.1	171	94
2010	17,339	1,594	9.2	185	108
2011	17,687	1,639	9.3	189	115
2012	17,951	1,677	9.3	218	131
2013	18,206	1,714	9.4	223	140
2014	18,457	1,749	9.5	225	142
2015	18,705	1,783	9.5	230	131

주: 1)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주말부부 등이 포함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 + 국가보훈처 저소득대상('11년까지) 한부모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한부모가구를 합한 수를 의미함.  
 3)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각 연도: 여성가족부, 2016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6

그림 1-5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2005~2015)

(단위: 천 가구)



주: 1)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주말부부 등이 포함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대상 + 국가보훈처저소득대상('11년까지) 한부모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한부모가구를 합한 수를 의미함.  
 3)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각 연도: 여성가족부, 2016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6

# 다문화가구

Multicultural household

## 지표 정의

다문화가구는 귀화 등 출생 이외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본 지표는 다문화가구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측정 산식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 취득자 등 출생 이외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의 수

유의사항 다문화가구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통계청, 2015)이며, 외국인주민과 자녀 수, 지역별 통계는 외국인 주민현황 기준(행정자치부, 각 연도)임에 유의한다.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로 다문화가구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구는 2015년 기준 299천 가구로 집계되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결혼이민으로 인한 다문화가구가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귀화 26.0%, 다문화 자녀 12.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 취득자로 구성된 외국인주민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7년 142,015명, 2010년 221,548명, 2015년 305,44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 또한 2007년 44천명에서 2015년 207천명으로 약 5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007년과 2015년 수치를 비교했을 때,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07	2015	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 Checkpoint

외국인주민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 취득자 등 모든 유형에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87,964명이었던 결혼이민자는 2015년 147,382명으로 증가했고 혼인귀화자는 2007년 38,991명에서 2015년 92,316명으로 증가했다.



표 1-5 다문화가구형태별 현황 (2015)

(단위: 천 가구, 천 명, %)

특성	가구	구성비	가구원	
			남자	여자
내국인(귀화 등)	41	13.7	21	42
내국인(출생) + 내국인(귀화)	78	26.0	136	145
내국인(출생) + 외국인(결혼이민자)	107	35.8	170	179
내국인(출생) + 다문화 자녀	38	12.7	65	56
내국인(귀화) + 외국인(결혼이민자)	10	3.5	14	15
기타	25	8.3	13	32
합 계	299	100.0	419	468

주: 1) 내국인(귀화 등) : 국적법상 출생 이외의 방법(귀화, 인지 등)에 의한 국적 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내국인(출생) : 국적법상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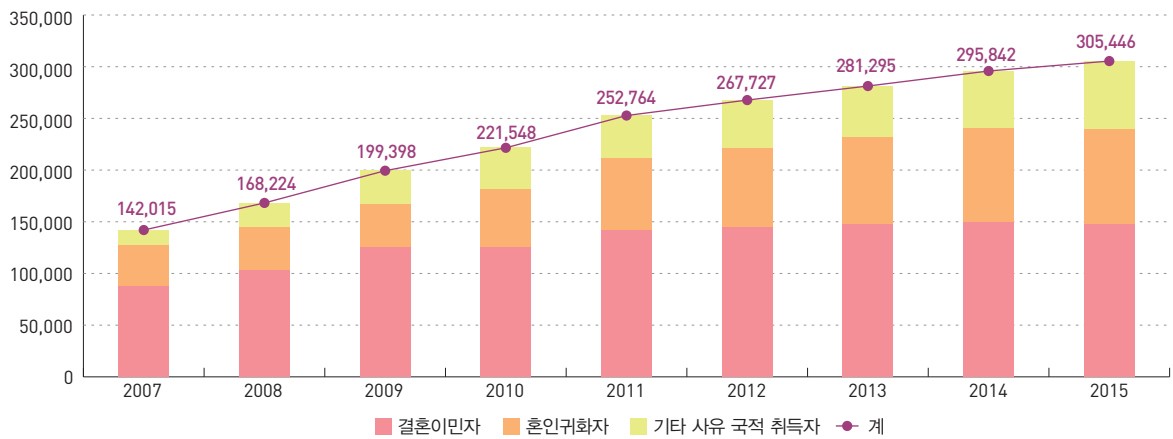
3) 내국인(출생) + 다문화 자녀: 내국인(출생) 가구주와 다문화 자녀

4) 기타: 결혼이민자 + 기타 외국인, 결혼이민자 + 다문화 자녀 등 그 외 다문화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그림 1-6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현황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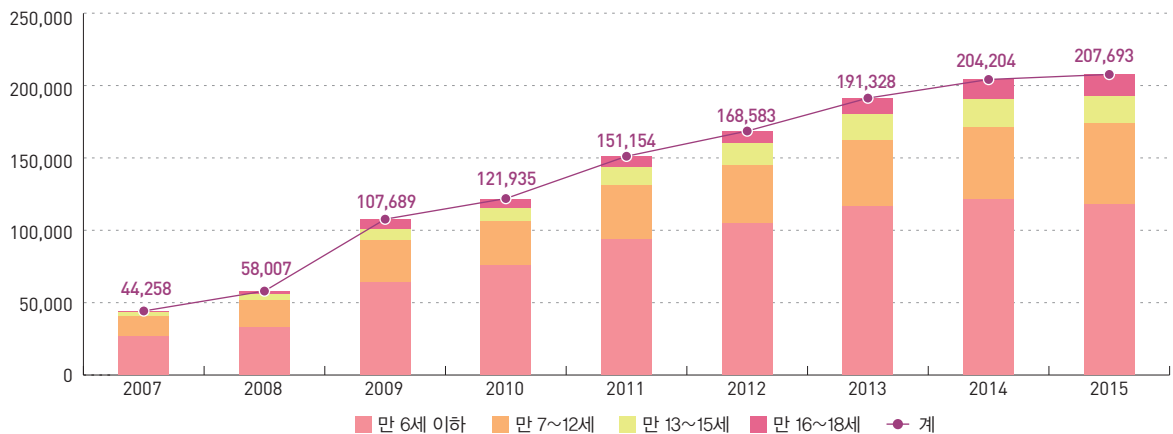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 각 연도

그림 1-7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2007~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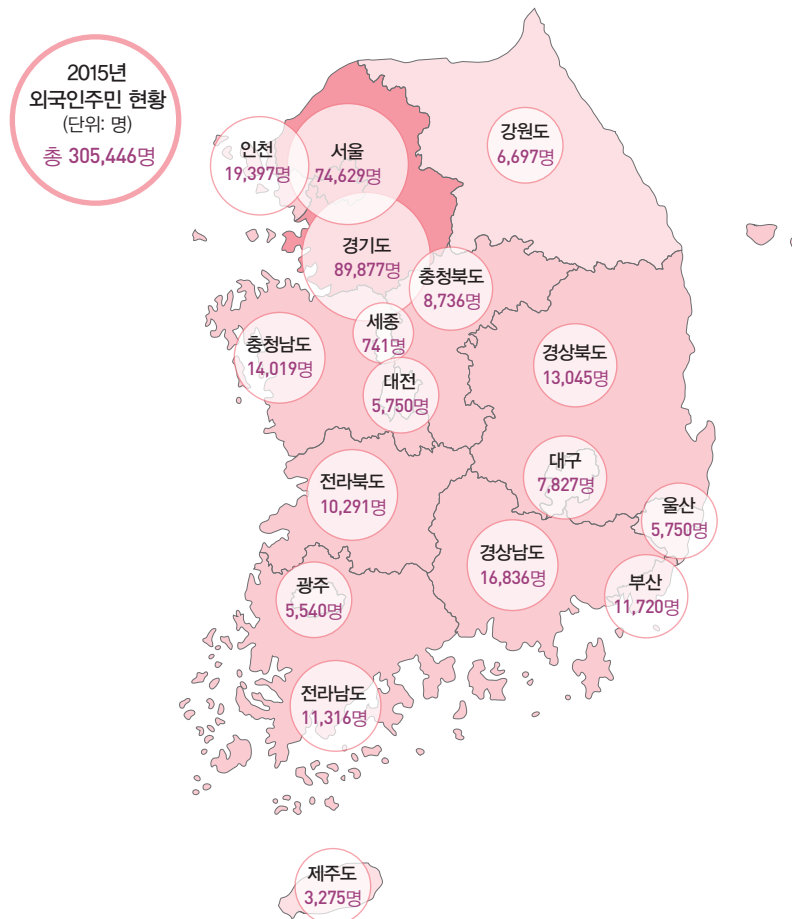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 각 연도

표 1-6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2007~2015)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305,446
서울	45,601	49,480	57,281	63,364	69,694	70,381	71,364	73,801	74,629
부산	6,556	7,654	7,973	8,314	9,705	10,305	10,915	11,529	11,720
대구	3,980	4,666	5,170	5,599	6,261	6,664	7,131	7,580	7,827
인천	8,059	9,659	11,872	13,235	14,939	16,029	17,026	18,222	19,397
광주	2,548	2,909	3,384	3,705	4,283	4,590	4,960	5,336	5,540
대전	2,630	3,175	3,849	4,117	4,758	5,123	5,337	5,575	5,750
울산	2,183	2,604	3,301	3,755	4,225	4,561	5,049	5,497	5,750
세종	-	-	-	-	-	-	653	650	741
경기	35,461	46,837	53,998	61,447	71,174	77,128	81,731	86,337	89,877
강원	3,357	3,764	4,449	4,809	5,793	6,103	6,381	6,590	6,697
충북	3,881	4,307	5,165	6,023	6,982	7,417	7,941	8,370	8,736
충남	5,351	5,970	8,614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14,019
전북	4,479	5,042	6,940	7,197	8,523	9,068	9,626	9,951	10,291
전남	5,106	5,982	7,452	8,142	9,489	10,115	10,657	11,129	11,316
경북	5,558	6,719	8,333	9,232	10,461	11,067	11,856	12,620	13,045
경남	6,301	8,216	10,107	11,345	13,062	14,443	15,352	16,217	16,836
제주	964	1,240	1,510	1,720	2,121	2,385	2,667	2,978	3,275

자료: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 각 연도



# 북한이탈주민

North Korean defectors

## 지표 정의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수

**유의사항** 현재 북한이탈주민가구에 대한 가구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구 수를 파악하는 대신 가구원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를 제시함. 해당 연도의 통계는 국내에 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년도 6월 말에 작성됨(입국조사 과정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임이 확인되는데 약 4~5개월 소요).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한 해 동안 2,000명을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성별로 보면 2001년을 제외하고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04년부터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졌으며, 2015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4배 이상까지 벌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 40대, 10대, 50대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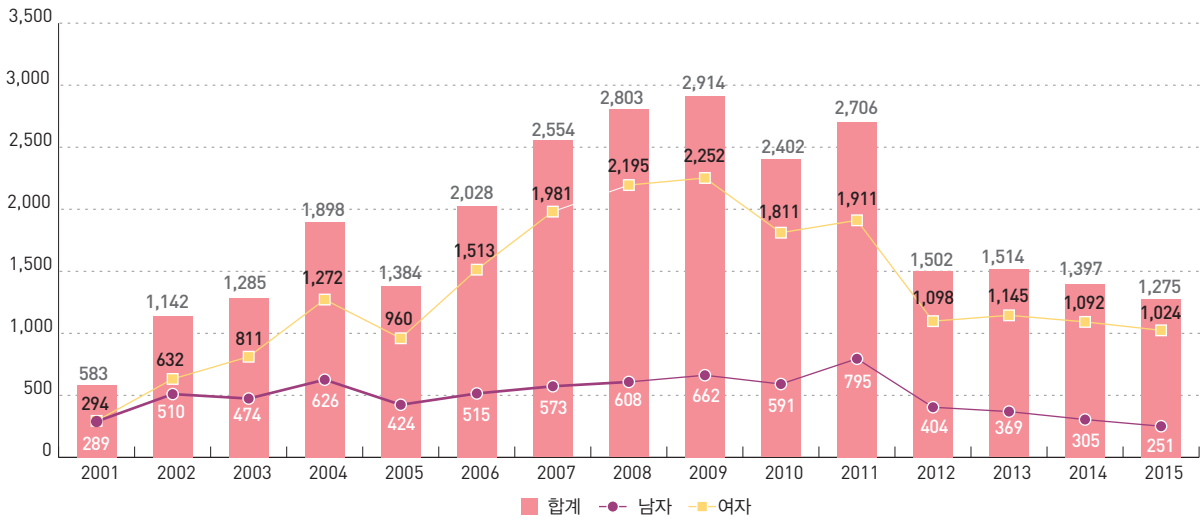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현황(내부자료)	1998	2015	1년

### Checkpoint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 2천 9백여 명으로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2011년까지 2천 명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2012년 1천 5백여 명으로 급감한 이후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림 1-8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0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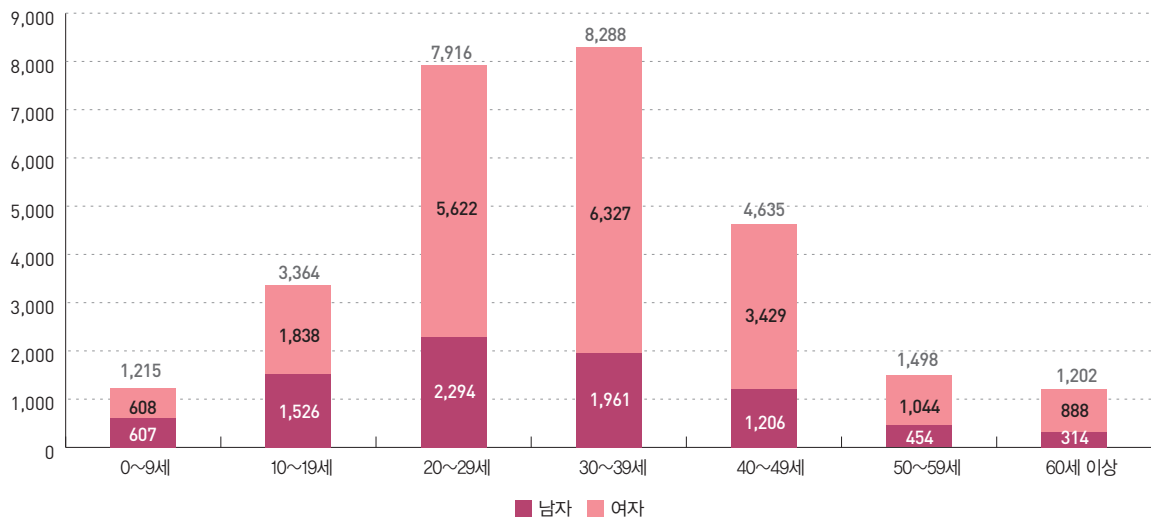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현황(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9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입국 현황 (2015)

(단위: 명)



주: 2015년 입국자 중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현황(내부자료), 2016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benefits

## 지표 정의

출산전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산전후휴가'라는 명칭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보장된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 90일(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405만 원 한도(다태아인 경우 540만 원 한도)내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인 경우 75일)동안에는 사업주를 통해서,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 측정 산식

출산전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2005년(41,104명)부터 2012년(93,397명)까지 꾸준히 증가한 이후 2013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나 2015년 95,257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수급자 비중은 감소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부터 최근까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15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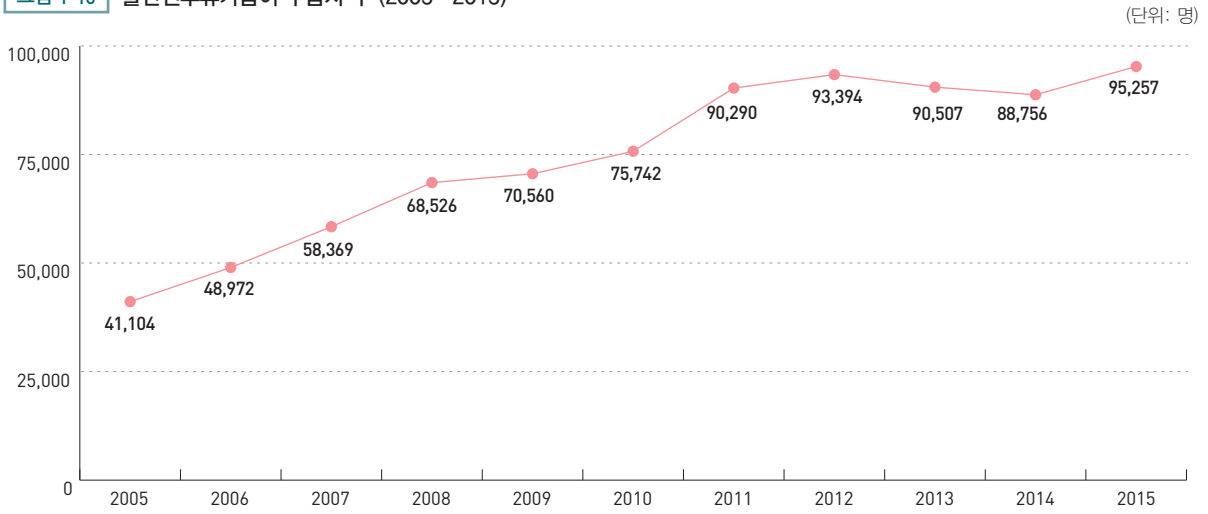
### Checkpoint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선 후 2015년 다시 증가하였다. 2005년 4만여 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2012년은 9만 3천여 명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4년에는 8만 8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9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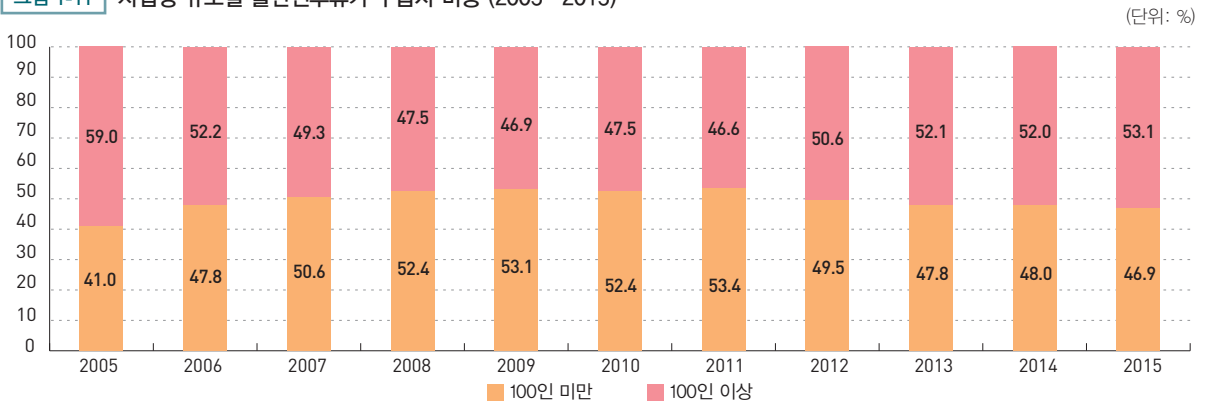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DB), 각 연도

그림 1-10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2005~201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연도

그림 1-11 사업장 규모별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비중 (2005~201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연도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care leave benefits

## 지표 정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1항에 의해 규정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범위 안에서 통상임금의 40%에 해당되는 급여로 육아휴직급여 중 85%는 매월 지급되지만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무지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게 된다.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측정 산식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유의사항 육아휴직자 수의 중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년도부터 당해 연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년도 휴직자로 정의하고 당해 연도 휴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육아휴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87,372명으로 2004년 9,303명과 비교하여 9배 이상 증가하였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수에 비해 매우 낮으나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각각 3,421명, 4,874명에 이른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15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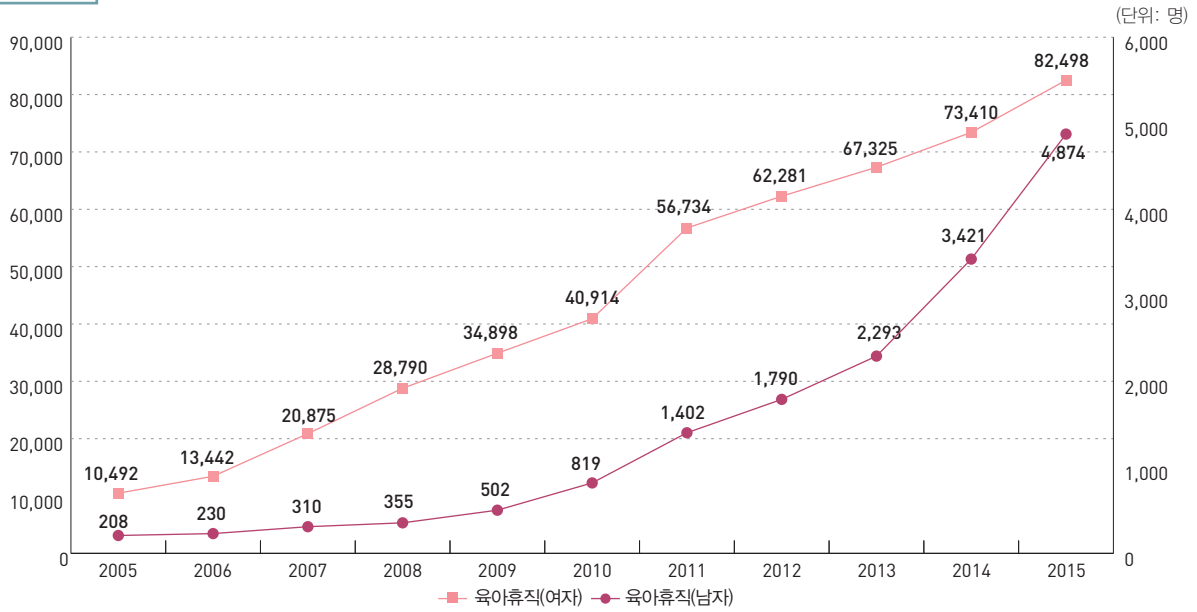
## Checkpoint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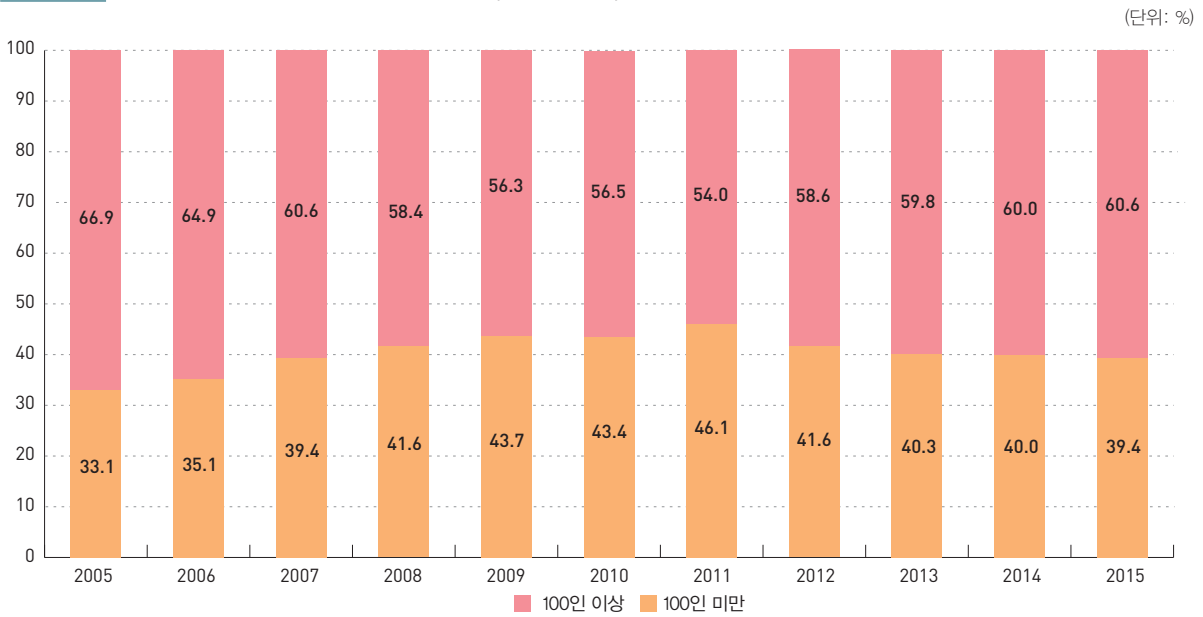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DB), 각 연도

그림 1-12 성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2005~201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연도

그림 1-13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 (2005~201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연도



#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Housework and Family Care

## 지표 정의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은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구분	1999~2009	2014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물품 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동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가족돌봄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그 외 가족 돌보기

## 측정 산식

- 전체 평균시간 : 전체 집계대상자(특정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 포함)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행위자)의 비율
- 행위자 평균시간 : 특정행동을 한 사람(행위자)들의 평균시간

2014년 생활시간 조사는 가구형태별로 가구를 구분(맞벌이, 외벌이(남편), 외벌이(아내))하여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에 대한 행위자 비율 및 사용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정관리에 대한 요일 평균 사용시간의 경우, 외벌이(남편) 가구의 아내가 가장 많았고, 맞벌이가구와 외벌이(아내)의 가정관리 시간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자신의 취업여부만이 가정관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볼 때 부부의 취업 상태와 별개로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에 있어서 아내의 행위자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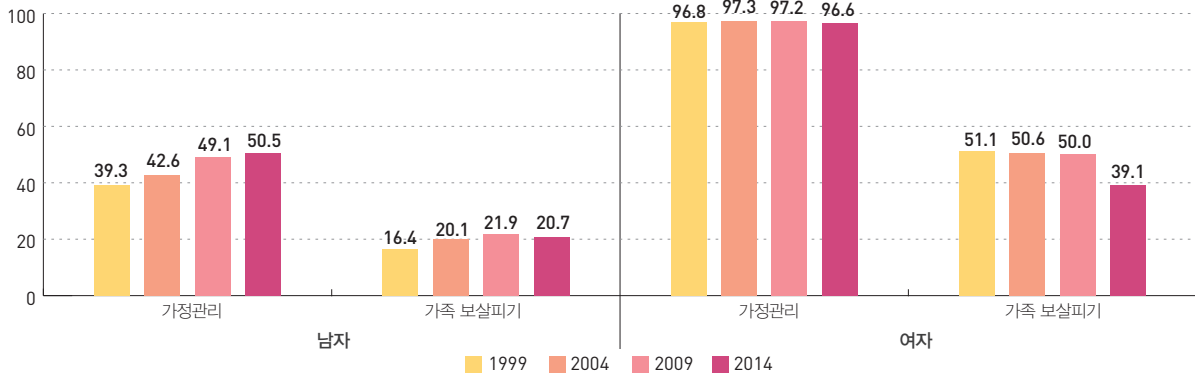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1999	2014	5년

### Checkpoint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에 있어서 기혼여성은 기혼남성과 비교하여 행위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행위 시간도 절대적으로 많다. 다만, 남성의 경우 가정관리 행위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 가족 보살피기 행위자 비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1-14 연도별 20세 이상 기혼자 행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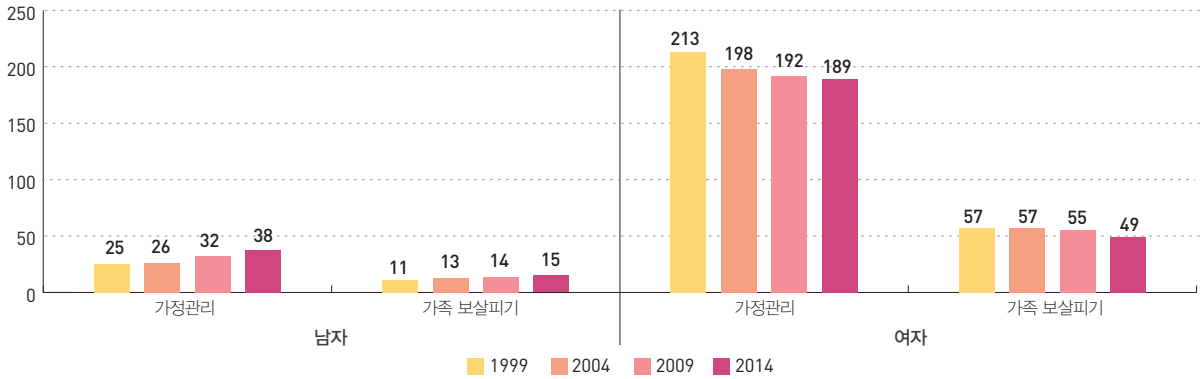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도

그림 1-15 연도별 20세 이상 기혼자 평균 시간(요일 평균, 1일 기준)

(단위: 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도

표 1-7 가구유형별 요일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2014)

(단위: 시간:분, %)

가구유형별	행동분류별	요일 평균 시간(시간:분)			요일 평균 행위자 비율(%)		
		평균	남편	아내	평균	남편	아내
맞벌이가구	가정관리	1:31	0:28	2:38	70.7	46.0	97.1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24	0:13	0:35	30.0	19.9	40.8
외벌이(남편)가구	가정관리	2:15	0:27	4:13	69.0	41.4	99.3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01	0:19	1:47	44.1	26.5	63.4
외벌이(아내)가구	가정관리	1:59	1:26	2:25	87.3	78.6	94.0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14	0:13	0:14	19.4	15.9	22.2

주: 평균시간과 비율은 초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상위분류의 값이 하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2014년도 생활시간 조사보고서, 2015

#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Rate of Domestic violence and Reporting rate

## 지표 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지난 1년간 전체 가구 중 가정폭력(부부폭력)이 발생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가정폭력 신고율은 가정폭력 발생 건수 중에서 경찰에 신고한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은 가족 해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본 지표를 통해 여성,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bullet \text{ 가정폭력 발생률} = \frac{\text{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 가구}}{\text{조사 대상 가구}} \times 100$$

$$\bullet \text{ 가정폭력 신고율} = \frac{\text{경찰에 신고한 건수}}{\text{가정폭력 발생 건수}} \times 100$$

우리나라 가정폭력 발생률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2004년 44.6%였던 가정폭력 발생률은 2007년 40.3%로 감소했다가 2010년 53.8%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3년 기준으로는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인 45.5%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율을 살펴보면, 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신고한 비율이 폭력 피해자인 남편이 신고한 비율보다 약 2배~7배 더 높다. 가정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방임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조사 연도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부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폭력 발생률을 감안했을 때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통한 보호에 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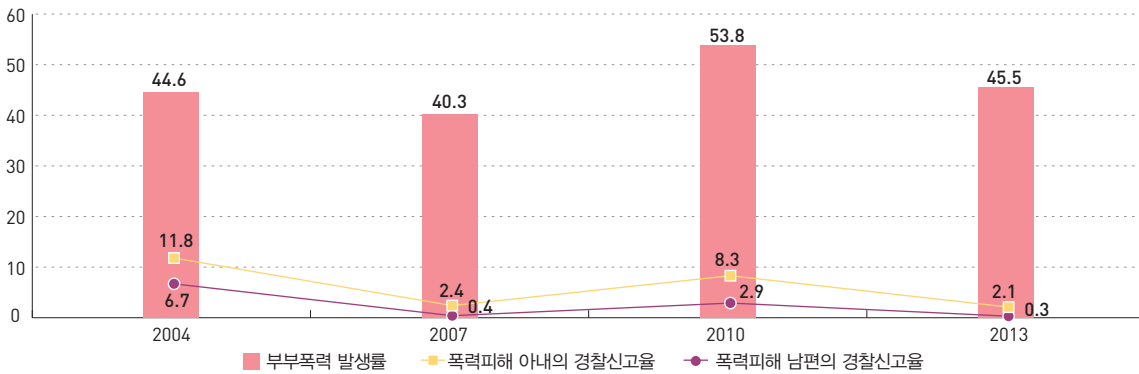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	2013	3년

### Checkpoint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면 2010년 53.8%로 비교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3년 45.5%로 나타났다. 경찰신고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8.3%, 남편의 경우는 2.9%이었다가 2013년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2.1%, 남편 0.3%로 급감하였다. 가정폭력의 예방뿐만 아니라 신고를 통한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그림 1-16 연도별 가정폭력 발생률 및 경찰신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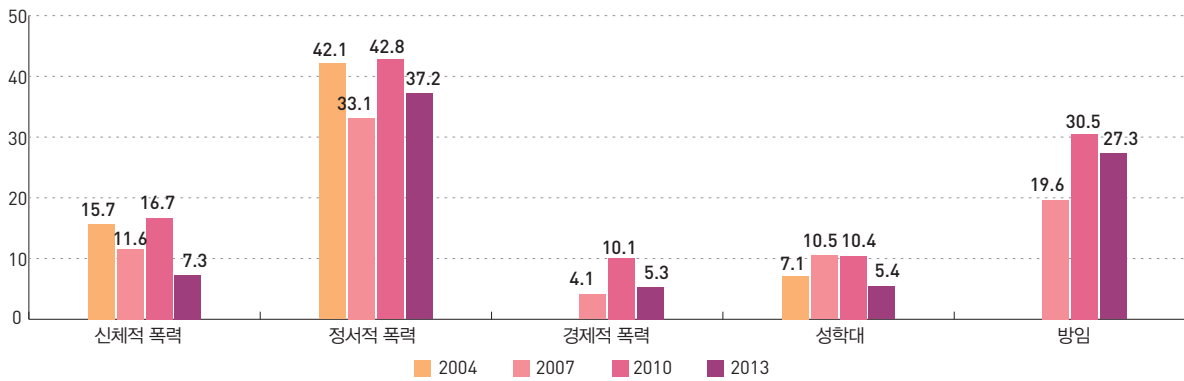
주: 1) 2004년 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개념이며,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임.

2) 2010년 조사에서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은 제외함.

자료: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17 연도별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단위: %)



주: 1) 중복응답이 반영된 값임.

2) 신체적 폭력은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을 모두 포함함.

3) 2004년 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개념이며,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임.

4) 2010년 조사에서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은 제외함.

자료: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

## 지표 정의

1년간 신고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 건수}}{\text{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유의사항 조이혼율은 특정 연도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조이혼율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은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이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인구(2010년 이후는 거주 불명 등록자 제외)를 사용한다. 이혼 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해(1. 1. ~ 12. 31) 동안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한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대체로 감소추세로 2005년 2.6건에서 2015년 2.1건으로 0.5건 감소하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조이혼율 변화의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녀 모두 10년 동안 상승하여 남자의 경우 2005년에 42.1세에서, 2015년에 46.9세로 10년간 4.8세 정도 상승하였다. 여자의 경우, 2005년 38.6세에서 2015년 43.3세로 10년간 4.7세 정도 상승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특히 과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숙려제도의 도입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예정)부부를 대상으로 숙려기간 동안 ‘자녀양육안내’와 같은 부모교육이 실시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5	1개월

## Checkpoint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5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2010년 천 명당 2.3건이었던 조이혼율은 2013년, 2014년에 모두 동일한 수치로 유지되다가 2015년 2.1건으로 감소하였다.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구성비를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이혼의 경우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통계청, 2015년 혼인·이혼 통계, 2016.4.7. 보도자료

표 1-8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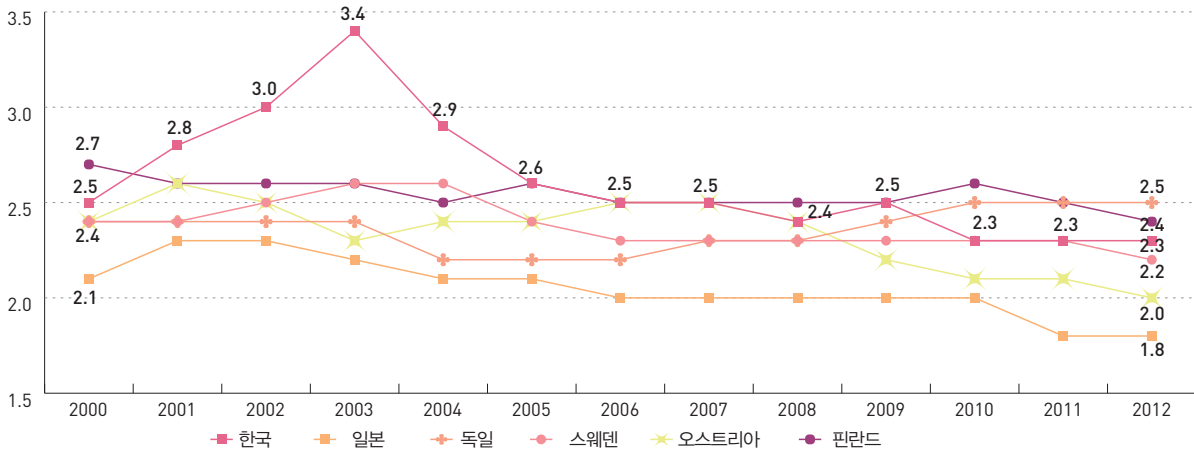
(단위: 인구 천 명당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혼 건수(천 건)	128	124.5	124.1	116.5	124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조이혼율	2.6	2.5	2.5	2.4	2.5	2.3	2.3	2.3	2.3	2.3	2.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1-18 국가별 조이혼율 변화 비교 (2000~2012)

(단위: 인구 천 명당 건)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각 연도

표 1-9 평균 이혼연령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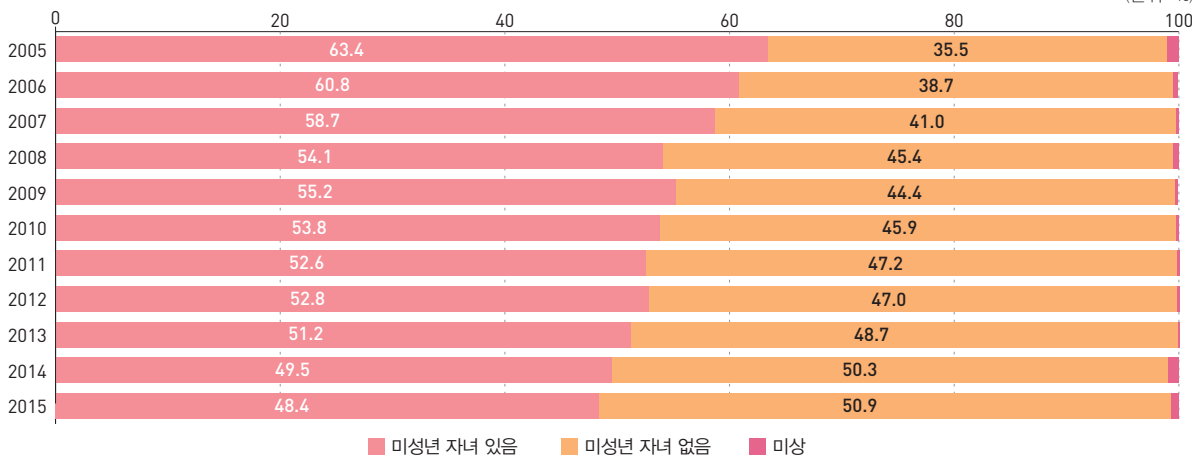
(단위: 세)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자	42.1	42.6	43.2	44.3	44.5	45	45.4	45.9	46.2	46.5	46.9
여자	38.6	39.0	39.5	40.5	40.7	41.1	41.5	42.0	42.4	42.8	43.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1-19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구성비 (2005~2015)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조혼인율

Crude marriage rate

## 지표 정의

1년 동안에 발생된 혼인 건수를 해당 연도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한다.

##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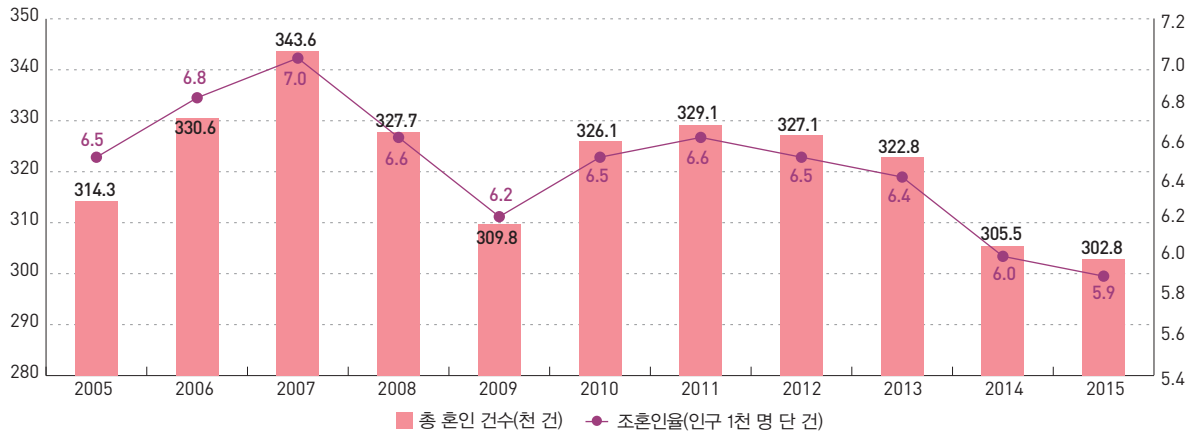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혼인 건수}}{\text{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유의사항 혼인 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해(1. 1. ~ 12. 31.)동안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05년 31만 4천 3백 건에서 2015년 30만 2천 8백 건으로 1만 건 이상 감소하였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의 경우도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조혼인율은 5.9건으로 공식 통계가 작성(1970년)된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혼과 비혼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20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2005~2015)

(단위: 천 건, 인구 1천 명당 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5	1개월

#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Number of divorces with a foreign spouse

09-2  
연 관

## 지표 정의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 측정 산식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유의사항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즉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이혼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비율은 2005년 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도 정점에 달했다가 2015년 8.2%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이혼 중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과의 이혼의 비중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이혼보다 높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폭에 있어서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이혼의 감소폭(17.9%)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이혼의 감소폭(9.5%)보다 크다.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이혼은 2005년보다 3천 3백 건 증가한 반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이혼은 2005년보다 7백 건 증가하였다. 전체 혼인 중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표 1-10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2005~2015)

(단위: 천 건,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이혼 건수	128.0	124.5	124.1	116.5	124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외국인과의 이혼	4.2	6.1	8.3	11.0	11.5	11.1	11.5	10.9	10.5	9.8	8.2
(총 이혼 중 비중)	3.3	4.9	6.7	9.4	9.3	9.5	10.1	9.5	9.1	8.4	7.5
한국남성 + 외국여성	2.4	3.9	5.6	7.9	8.2	7.9	8.3	7.9	7.6	7.0	5.7
한국여성 + 외국남성	1.8	2.2	2.7	3.1	3.2	3.2	3.1	3.0	2.9	2.8	2.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5	1개월

## Checkpoint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2009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2014년 9천 8백 건, 2015년 8천 2백 건 등 1만 건 이하로 감소하였다. 특히 전체 이혼 중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이나,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다문화가구 전체의 이혼 건수를 모두 포함하지 않고, 다문화가구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의사상자 수

Number of persons killed or wounded for a righteous cause

## 지표 정의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인정절차를 거쳐 최종 의사상자로 선정된 자를 의미한다.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자는 의사자, 부상한 자는 의상자로 선정되며, 의사자는 유족이 지원 대상이 되며 의상자는 자신과 가족이 지원 대상이 되고 상해 정도에 따라 1~9급으로 세분화된다.

## 측정 산식

### · 의사상자 보상금과 기타 지원을 받은 사람의 수

- ※ 보상금: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일시금 형태로 제공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책정·고시한 금액
- ※ 기타 지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준하는 지원이 제공되는데,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유족들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제공되고 이 외에도 낮은 급수의 의상자(7급 이하)의 경우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금액	기타 지원
의사자	'15년 기준 202,913천 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대상자와 동등한 자격 부여
의상자	급수(1~9급)에 따라 차등지급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대상자와 동등한 자격 부여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의사상자 인정자 수를 살펴본 결과 2006년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가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에는 의사자가 11명(55.0%), 의상자가 9명(45.0%)으로 총 20명이 인정되었다. 2006년 이후 의사상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 의사상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DW 상에 집계된 의사상자를 사고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익사사고로 인한 의사상자가 5명(25.0%), 교통사고 3명(15.0%), 범죄사고 1명(5.0%), 화재사고 1명(5.0%) 순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의사상자 지원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0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 의사상자는 20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사자와 의상자로 구분해보면 의사자의 경우 2014년 19명에서 2015년 11명으로 8명 감소한 반면, 의상자는 2014년 5명에서 2015년 9명으로 4명 증가하였다.

그림 1-21 의사상자 현황 (2003~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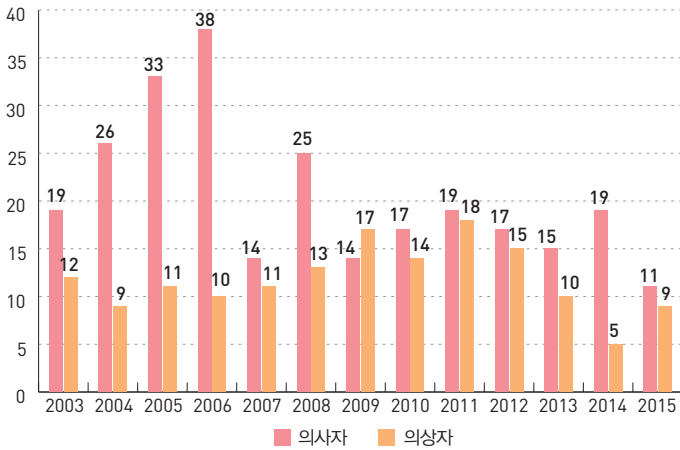


그림 1-22 의사상자 비율 (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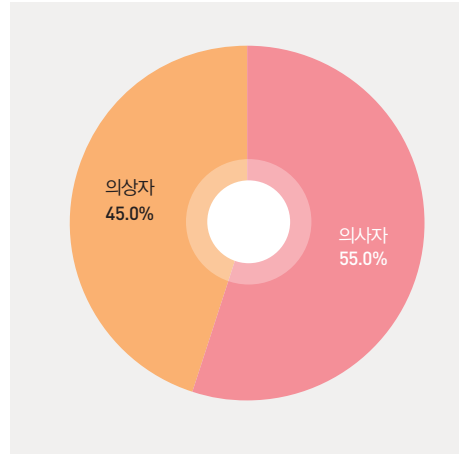


표 1-11 의사상자 현황 (2003~2015)

(단위: 명, %)

연도	의사자		의상자		계
	명	비율	명	비율	
2003	19	61.3	12	38.7	31
2004	26	74.3	9	25.7	35
2005	33	75.0	11	25.0	44
2006	38	79.2	10	20.8	48
2007	14	56.0	11	44.0	25
2008	25	65.8	13	34.2	38
2009	14	45.2	17	54.8	31
2010	17	54.8	14	45.2	31
2011	19	51.4	18	48.6	37
2012	17	53.1	15	46.9	32
2013	15	60.0	10	40.0	25
2014	19	79.2	5	20.8	24
2015	11	55.0	9	45.0	20

그림 1-23 사고유형별 의사상자 비율 (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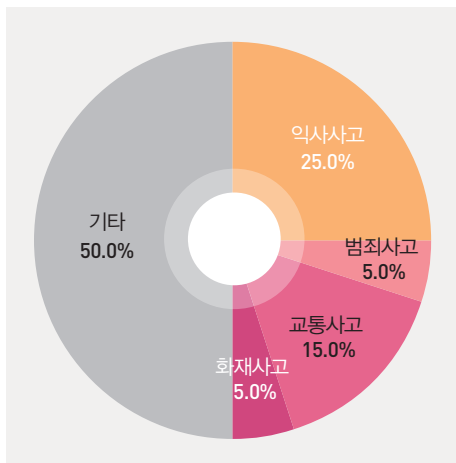


표 1-12 사고유형별 의사상자 수 (2015)

(단위: 명, %)

계	익사사고		범죄사고		교통사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	5	25	1	5	3	15
계	화재사고		수재, 조난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	1	5	0	0	10	50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Comprehensive Elderly Care Services : Users and Expenditure

## 지표 정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독거 노인 또는 고령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1)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등급에 해당하고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2)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노인가구 중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의사진단서가 있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 (3)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가구
- 지원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36시간)	월 193,200 ~ 352,800원	무료 ~ 월 64,000원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12일)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월 193,200 ~ 352,800원	무료 ~ 월 84,0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범위 내)	일 29,880 ~ 36,380원	무료 ~ 일 6,500원

2015년 2월에서 12월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의 집행실태를 살펴 본 결과 경기도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약 4,07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연인원도 약 44,793명으로 나타났다. 이용액도 경기도가 총 12,785천 원으로 가장 높은 이용액을 보였으며, 전남, 전북, 경북 순으로 이용액이 높게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자는 12월 말 기준 32,873명, 이용액은 9,892백만 원으로 전년 동월의 34,897명, 10,428백만 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액 비중은 자기부담금 6.3%, 정부지원금 93.7%로 2014년(각각 6.4%, 93.6%)과 유사한 수준이다.

\* 1인가구 기준 월 2,307천 원 이하, 2인가구 기준 월 4,648천 원 이하(2015년 기준)

\*\* 소득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표 1-13 연도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2월말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이용자 수	31,397	34,897	32,873
이용액	8,867,832	10,428,219	9,891,669

표 1-14 시도별 · 월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2015)

(단위: 명)

지역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2,202	2,250	2,243	2,254	2,282	2,298	2,309	2,264	2,267	2,276	2,272
부산	2,337	2,383	2,364	2,351	2,341	2,319	2,274	2,248	2,244	2,278	2,272
대구	1,368	1,405	1,379	1,336	1,303	1,261	1,227	1,212	1,202	1,250	1,256
인천	1,227	1,224	1,224	1,183	1,164	1,151	1,123	1,122	1,129	1,139	1,154
광주	2,108	2,165	2,125	2,067	2,038	2,010	1,975	1,931	1,900	1,977	2,016
대전	959	973	976	952	942	942	914	910	883	878	869
울산	365	357	345	348	344	340	318	326	322	323	314
세종	60	62	59	59	57	56	56	58	59	59	61
경기	4,137	4,203	4,168	4,134	4,164	4,138	4,079	4,021	3,939	3,916	3,894
강원	1,795	1,831	1,855	1,830	1,803	1,797	1,790	1,822	1,850	1,863	1,861
충북	1,150	1,184	1,167	1,154	1,150	1,139	1,107	1,102	990	1,032	1,033
충남	1,830	1,868	1,854	1,823	1,842	1,834	1,797	1,761	1,755	1,763	1,815
전북	3,722	3,766	3,767	3,757	3,767	3,725	3,669	3,708	3,696	3,669	3,638
전남	3,824	3,930	3,999	4,052	4,111	4,056	4,012	4,043	4,010	3,943	3,889
경북	3,258	3,286	3,247	3,170	3,116	3,045	2,960	2,997	3,053	3,184	3,170
경남	3,022	3,103	3,114	3,116	3,121	3,104	3,064	3,046	3,007	3,010	2,996
제주	385	388	378	365	365	354	343	354	367	355	363
계	33,749	34,378	34,264	33,951	33,910	33,569	33,017	32,925	32,673	32,915	32,873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표 1-15 시도별 · 월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액 (2015)

(단위: 천 원)

지역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629,302	697,775	681,845	669,727	680,169	687,299	673,539	653,185	651,965	660,662	690,302
부산	667,723	730,306	711,715	694,913	712,538	705,184	673,858	666,003	674,897	672,358	705,051
대구	402,109	447,586	423,703	404,049	404,622	392,544	370,969	369,641	372,101	386,728	403,260
인천	335,395	360,410	354,579	334,258	339,781	341,040	323,385	318,054	320,739	316,800	358,415
광주	580,537	646,388	619,894	585,584	598,525	586,393	555,920	537,114	533,522	559,394	589,142
대전	285,445	311,199	306,314	290,183	298,753	298,533	282,309	275,022	271,798	276,120	284,822
울산	101,881	105,139	101,665	98,755	102,694	77,342	76,082	91,042	93,203	91,875	93,688
세종	16,846	18,404	17,699	16,797	17,679	17,464	16,734	17,326	17,905	18,355	19,678
경기	1,119,400	1,232,781	1,201,328	1,164,867	1,209,305	1,204,685	1,140,779	1,109,002	1,105,543	1,113,329	1,184,663
강원	461,080	518,008	515,823	492,038	512,844	506,327	487,423	487,477	508,713	511,438	539,265
충북	316,785	356,186	346,734	331,108	348,684	346,327	329,422	327,428	294,588	301,634	315,207
충남	524,903	586,824	573,682	553,729	573,966	563,250	543,508	527,617	535,536	541,107	586,212
전북	983,146	1,054,000	1,034,223	1,015,603	1,037,840	1,030,720	992,622	989,913	989,584	980,417	1,035,566
전남	1,040,339	1,177,695	1,174,486	1,171,370	1,210,697	1,189,656	1,157,944	1,147,369	1,125,540	1,094,542	1,099,055
경북	920,240	988,399	961,307	925,086	926,512	901,963	858,926	863,419	904,888	927,095	961,478
경남	850,900	933,568	924,150	906,039	940,178	931,921	896,950	879,883	885,602	887,356	921,602
제주	98,500	113,891	108,672	102,239	107,952	102,582	95,570	98,701	105,223	100,754	104,262
계	9,334,529	10,278,559	10,057,818	9,756,346	10,022,739	9,883,227	9,475,939	9,358,196	9,391,345	9,439,963	9,891,669

주: 1)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2)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그림 1-24 시도별·계층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2015.12 기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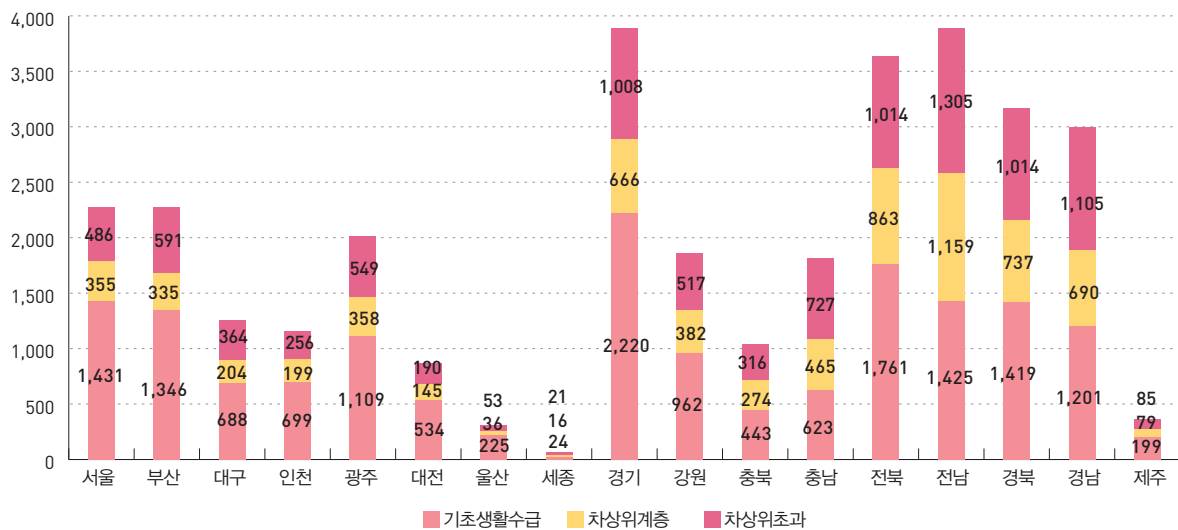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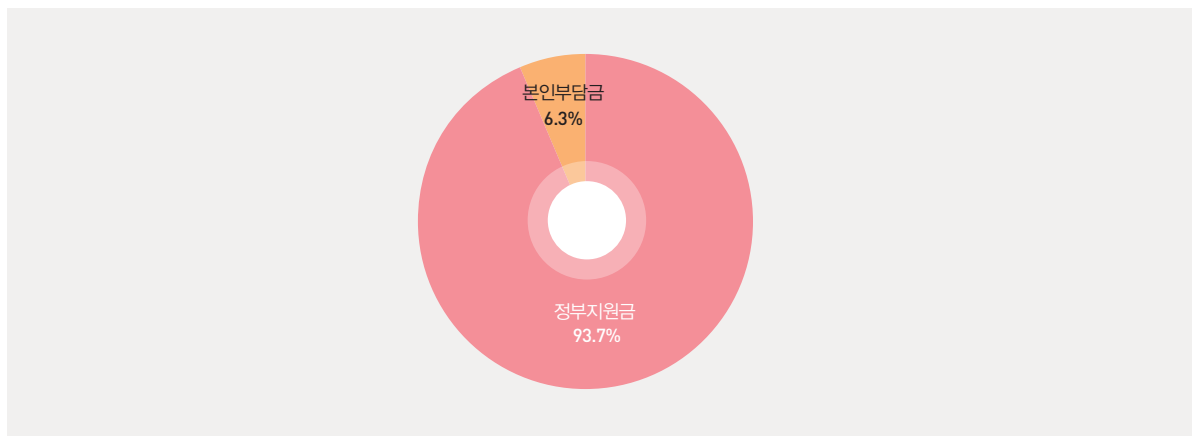


그림 1-25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액 비중 (2015.12 기준)

(단위: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An Overview of Comprehensive Elderly Care Services : Providing organization and provider

## 지표 정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그리고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 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령과 노인복지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직과 인력구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제공인력도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 지표의 목적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단,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았다.

## 측정 산식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결제이력이 있는 제공기관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제공인력 수

2015년 2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전국 1,580개소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남이 192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북 183개소, 경북 182개소, 서울 182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공인력은 전국 23,933명으로 집계되었다. 경기의 제공인력이 3,2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495명, 경북 2,405명, 경남 2,32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공기관의 수치는 2013년 1,458개에서 2014년 1,358개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2015년 1,453개로 확충되었다. 제공인력은 2013년 12,970명, 2014년 15,554명, 2015년 15,83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5	1년

### Checkpoint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평균 92.9개소로 경남, 전남, 서울, 경북, 경기, 전북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공인력은 전국 평균 1,407.8명으로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서울, 전북, 부산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공기관 대비 제공인력은 전국 평균 15.2명으로 제주, 서울, 경남, 경북, 전남, 울산, 광주를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6 연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수 (2015)

(단위: 개소, 명)

구분	제공기관 수			제공인력 수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계	1,458	1,358	1,453	12,970	15,554	15,839

표 1-17 월별·시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수 (2015)

(단위: 개소)

구분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82	143	145	148	148	154	158	153	156	158	162	166
부산	88	79	81	81	82	82	82	82	82	83	85	83
대구	63	60	59	59	59	59	58	57	57	58	58	59
인천	46	44	44	43	44	42	43	43	43	43	43	44
광주	89	73	75	75	75	76	75	75	75	75	80	80
대전	57	53	53	52	52	53	54	53	54	54	53	53
울산	16	16	16	16	16	15	15	15	15	15	15	15
세종	3	3	3	3	3	3	3	3	3	3	3	3
경기	163	146	148	151	153	153	154	150	149	146	147	149
강원	61	57	57	57	57	59	59	58	58	59	60	60
충북	53	45	46	47	49	51	51	51	51	49	51	52
충남	68	64	63	65	65	65	65	65	65	65	64	65
전북	103	93	96	97	96	96	96	97	99	98	100	99
전남	183	155	161	162	169	171	169	168	169	167	167	168
경북	182	148	158	159	162	160	161	155	157	157	162	162
경남	192	151	158	160	164	164	167	167	166	164	163	170
제주	31	28	28	28	28	28	28	28	28	26	25	25
합계	1,580	1,358	1,391	1,403	1,422	1,431	1,438	1,420	1,427	1,420	1,438	1,453

주: 월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1건 이상 결제이력이 있는 기관수이며, 합계는 2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기관수의 합임.

표 1-18 월별·시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수 (2015)

(단위: 명)

구분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2,098	1,151	1,213	1,215	1,226	1,247	1,258	1,270	1,246	1,244	1,284	1,294
부산	1,464	985	1,008	1,009	1,004	995	994	969	971	969	985	995
대구	1,085	697	723	719	708	692	674	646	642	635	648	657
인천	862	559	560	556	542	542	539	524	522	520	529	550
광주	1,307	880	911	912	887	888	869	862	834	832	868	900
대전	885	534	558	559	551	556	551	543	545	538	544	541
울산	234	170	170	162	165	163	165	155	162	158	153	146
세종	63	39	41	38	37	39	35	37	37	37	38	38
경기	3,258	1,980	2,068	2,042	2,032	2,110	2,085	2,047	2,038	2,003	2,000	2,034
강원	1,266	754	795	799	787	795	814	809	803	826	823	813
충북	804	504	526	540	534	561	553	534	532	494	522	527
충남	1,377	888	926	936	924	941	929	919	910	915	930	959
전북	1,802	1,270	1,297	1,309	1,308	1,335	1,328	1,318	1,329	1,329	1,348	1,345
전남	2,495	1,595	1,663	1,697	1,738	1,780	1,773	1,766	1,793	1,787	1,781	1,762
경북	2,405	1,567	1,626	1,616	1,563	1,556	1,530	1,492	1,527	1,559	1,607	1,610
경남	2,327	1,389	1,461	1,477	1,489	1,511	1,508	1,498	1,493	1,498	1,511	1,508
제주	297	177	188	176	175	182	183	172	183	189	184	175
합계	23,933	15,131	15,721	15,746	15,649	15,868	15,767	15,542	15,553	15,518	15,739	15,839

주: 월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수는 1건 이상 결제이력이 있는 제공인력수이며, 합계는 2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인력수의 합임.

#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Nursing and Home Care Visiting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 지표 정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하여 방문형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이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월 24시간		월 27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	월 228,000원	월 210,480원	월 247,050원	월 236,790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17,520원	월 9,450원	월 19,710원

2015년 월평균 이용자 수는 8,818명을 기록한 가운데, 3월 이용자 수가 8,946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이용자 수가 8,692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시도별로는 전북이 1,20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904명, 전남 82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유형별로는 월 24시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2.1%, 월 27시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3.4% 순으로 나타나 차상위계층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가사간병방문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5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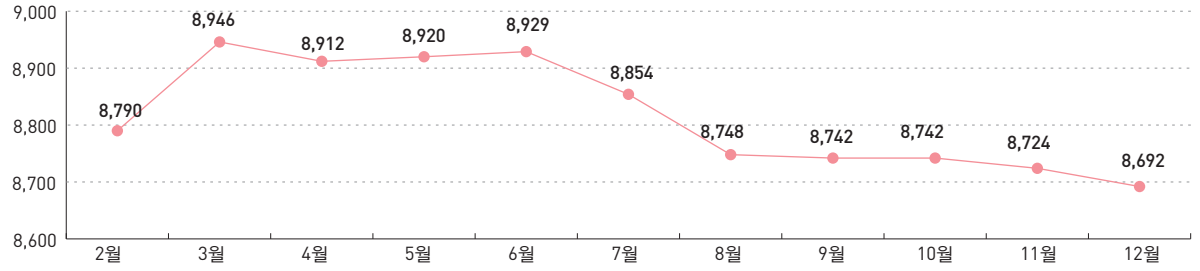
2015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의 월평균 이용자 수는 8,819명으로 전년대비 0.05%(8,823명) 감소한 반면, 월평균 이용액은 2,01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0.40%(2,011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유형별로는 2015년 월 24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비중은 82.1%로 전년대비(81%) 소폭 증가한 반면, 다른 유형의 이용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9** 연도별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2월말 기준) (단위: 명,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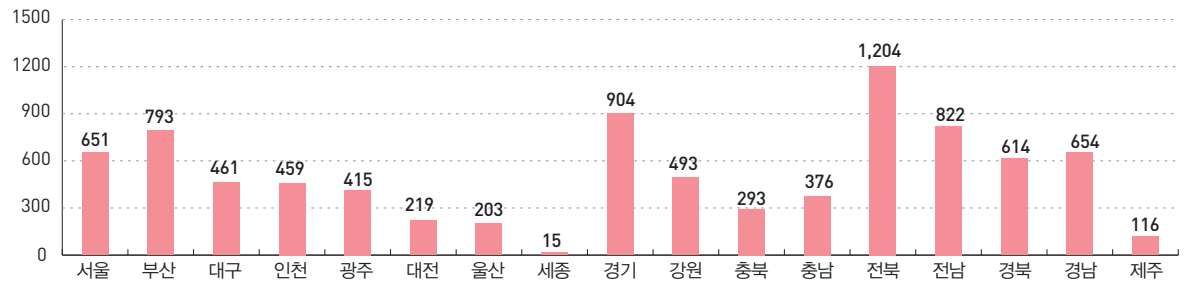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이용자 수	8,823	8,961	8,692
이용액	2,036,135	2,059,491	2,069,551

**그림 1-26** 월별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2015) (단위: 명)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그림 1-27** 시도별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2015.12 기준) (단위: 명)



**표 1-20** 시도별 · 월별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2015) (단위: 명)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671	692	688	678	682	683	688	683	675	666	651
부산	831	833	832	822	831	829	821	803	809	807	793
대구	447	460	451	453	462	460	459	460	459	457	461
인천	446	454	460	460	465	455	454	452	451	453	459
광주	408	422	421	413	408	396	393	405	409	413	415
대전	214	219	220	211	208	207	206	211	216	216	219
울산	207	206	202	199	203	204	201	202	210	207	203
세종	15	17	17	16	15	15	15	15	16	17	15
경기	951	954	965	988	984	960	929	926	912	907	904
강원	503	514	510	508	505	501	498	496	505	492	493
충북	282	277	280	284	285	288	284	284	286	290	293
충남	391	404	396	385	393	386	378	382	377	379	376
전북	1,146	1,172	1,166	1,162	1,162	1,184	1,181	1,178	1,180	1,184	1,204
전남	855	871	861	870	868	854	838	842	849	842	822
경북	626	641	652	665	650	636	625	619	614	612	614
경남	678	688	676	687	688	677	664	667	656	663	654
제주	119	122	115	119	120	119	114	117	118	119	116
합계	8,790	8,946	8,912	8,920	8,929	8,854	8,748	8,742	8,742	8,724	8,692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그림 1-28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자 비중 ('15.12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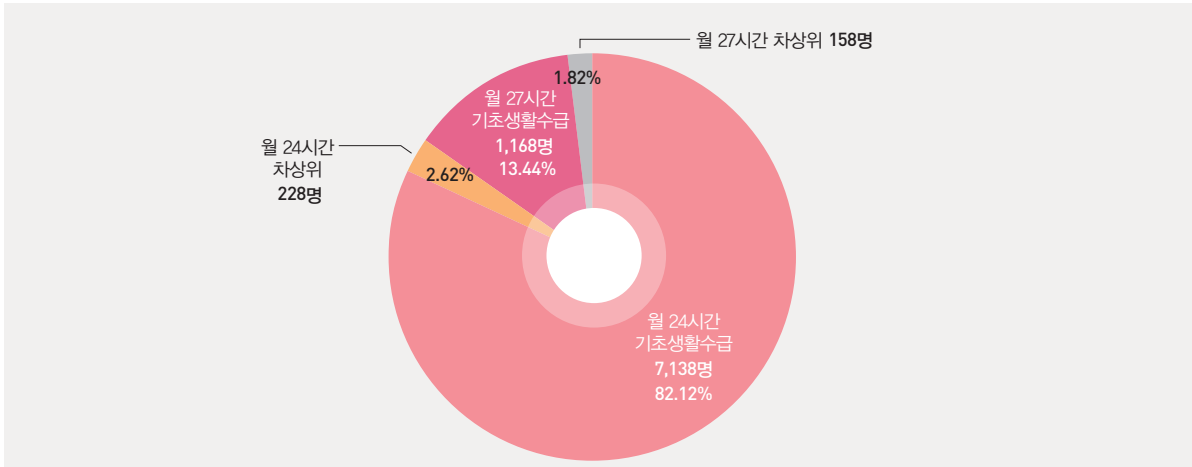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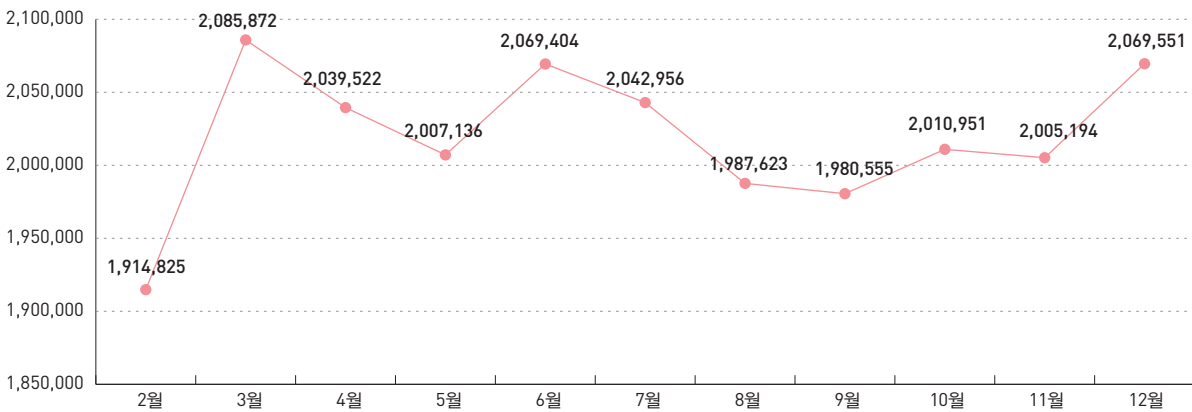


그림 1-29 월별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액 (2015)

(단위: 천 원)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표 1-21 이용유형별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이용액 (2015)

(단위: 명, 천 원)

구분	이용자 수						합계	이용액
	월 24시간			월 27시간				
	소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소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2월	7,351	7,123	228	1,439	1,270	169	8,790	1,914,825
3월	7,496	7,257	239	1,450	1,278	172	8,946	2,085,872
4월	7,478	7,247	231	1,434	1,258	176	8,912	2,039,522
5월	7,487	7,250	237	1,433	1,256	177	8,920	2,007,136
6월	7,499	7,263	236	1,430	1,246	184	8,929	2,069,404
7월	7,451	7,219	232	1,403	1,226	177	8,854	2,042,956
8월	7,381	7,154	227	1,367	1,197	170	8,748	1,987,623
9월	7,381	7,155	226	1,361	1,196	165	8,742	1,980,555
10월	7,393	7,165	228	1,349	1,184	165	8,742	2,010,951
11월	7,384	7,152	232	1,340	1,173	167	8,724	2,005,194
12월	7,366	7,138	228	1,326	1,168	158	8,692	2,069,551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Language Development Supporting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 지표 정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등 간접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놀이, 수화 등 각종 지도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대상 중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이며,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 지원 금액: 소득별로 상이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지원금	월 22만 원	월 20만 원	월 18만 원	월 16만 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 원	월 4만 원	월 6만 원

2015년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이용자 수 및 이용금액은 매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월평균 이용자 수는 370명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11월에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용액은 70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12월에 이용액이 7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2015년 12월 기준 이용자 수는 서울이 8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70명, 전남 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용액은 서울 15백만 원, 경기 12백만 원, 전남 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1-22 연도별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12월말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이용자 수	947	313	398
이용액	180,220	60,183	75,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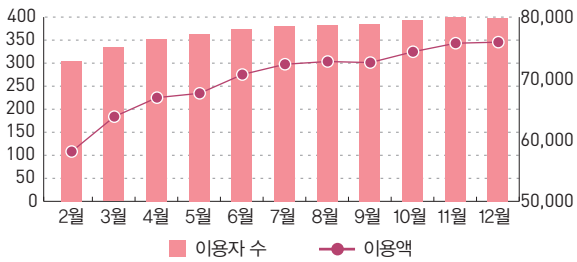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5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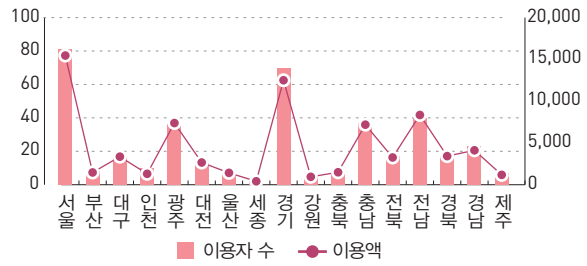
### Checkpoint

'15년 언어발달지원사업 12월말 기준 이용자 수는 39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313명) 증가하였으나, '13년 947명 대비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이는 '14년 이후 지원 대상자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낮아졌고, 규모가 큰 제공기관이 해당 사업을 중단한 것에 기인한다.

**그림 1-30** 월별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5)  
(단위: 명, 천 원)



**그림 1-31** 시도별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5.12 기준)  
(단위: 명, 천 원)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표 1-23** 시도별 · 월별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2015)

(단위: 명)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63	63	76	80	74	78	79	79	79	82	81
부산	8	7	7	7	7	7	5	7	9	8	8
대구	13	14	14	15	16	17	18	18	17	17	17
인천	10	10	9	8	10	11	11	11	11	10	10
광주	29	31	32	34	33	32	32	34	36	36	36
대전	10	12	12	12	13	12	13	13	14	13	13
울산	2	2	2	4	5	5	3	5	3	7	7
세종	1	1	1	1	1	1	1	1	1	2	2
경기	52	58	61	62	67	65	65	64	68	70	70
강원	5	5	5	3	4	4	5	4	4	5	5
충북	8	8	9	10	8	8	8	8	8	8	8
충남	32	34	37	38	37	38	39	37	38	37	37
전북	29	30	29	30	39	38	39	38	40	40	40
전남	6	15	15	15	15	16	17	17	17	17	17
경북	14	16	15	15	14	17	19	19	19	19	17
경남	16	19	19	20	21	21	21	22	22	21	23
제주	7	9	10	10	10	10	8	8	8	8	7
합계	305	334	353	364	374	380	383	385	394	400	398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표 1-24** 시도별 · 월별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액 (2015)

(단위: 천 원)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1,929	11,723	14,625	14,500	14,028	14,863	14,725	14,631	14,799	15,622	15,459
부산	1,560	1,370	1,370	1,370	1,370	1,370	940	1,280	1,471	1,469	1,469
대구	2,480	2,740	2,740	2,909	3,160	3,192	3,504	3,426	3,336	3,356	3,356
인천	1,815	1,658	1,695	1,341	1,655	1,781	1,823	1,911	1,547	1,452	1,307
광주	5,860	6,480	6,493	6,928	6,642	6,537	6,468	6,977	7,303	7,453	7,380
대전	1,966	2,500	2,203	2,375	2,543	2,366	2,578	2,640	2,840	2,660	2,660
울산	430	440	440	780	1,009	1,040	600	1,040	600	1,180	1,420
세종	180	160	160	138	191	191	191	191	191	411	411
경기	9,105	10,538	10,672	11,007	11,839	11,631	11,764	11,334	12,305	12,291	12,501
강원	952	952	881	326	759	759	891	726	726	738	946
충북	1,500	1,560	1,675	1,900	1,540	1,500	1,500	1,480	1,460	1,512	1,492
충남	6,229	6,620	7,220	7,287	7,240	7,396	7,644	7,240	7,322	7,220	7,186
전북	5,747	6,173	5,850	5,820	7,878	7,800	8,031	7,655	8,285	8,345	8,345
전남	1,240	2,920	2,920	2,920	2,655	3,100	3,280	3,280	3,233	3,187	3,260
경북	2,970	2,976	3,020	2,819	2,800	3,460	3,785	3,840	3,863	3,840	3,423
경남	2,920	3,408	3,280	3,540	3,720	3,720	3,700	3,785	3,840	3,700	4,120
제주	1,227	1,571	1,640	1,628	1,615	1,615	1,345	1,156	1,232	1,310	1,181
합계	58,108	63,789	66,884	67,588	70,644	72,320	72,767	72,591	74,353	75,745	75,916

주: 1)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2)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 Users and Expenditure

## 지표 정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으로 시도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로 사업이 분류가 되며, 사업분류 기준에 따라 사업유형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 신규 사업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된다.

##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예외 기준 적용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20%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기준 없음
장애인·노인(만 65세 이상) 대상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대상 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

- 지원 금액: 각 사업별로 최소 10%의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 가격 대비 10~40%로 차등화하여 본인부담금을 설정하도록 권장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월평균 이용자 수와 이용액은 각각 126,310명, 16,883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월에는 각각 전월대비 24.3%, 37.5%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이용자 수는 9월 이후로 13만 명을 초과하였다. 2015년 12월 기준 시도별 이용자 수는 경기도 20,0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2,509명, 대전 11,681명, 대구 10,4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이용액을 살펴보면 경기 2,887백만 원, 대전 1,945백만 원, 대구 1,539백만 원, 전남 1,389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5 연도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이용자 수	262,263	157,588	139,852
이용액	17,639,566	13,813,390	19,959,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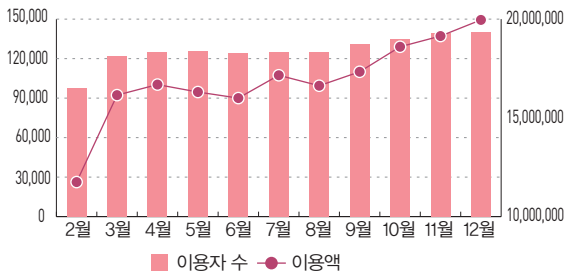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5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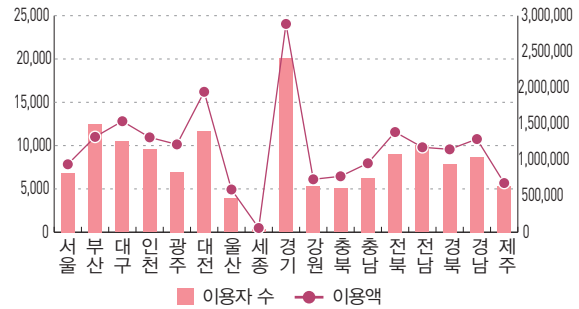
2015년 12월말 기준 이용자 수는 139,852명으로 2014년 157,588명에 비해 11% 감소하였다. 월별 추세로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한 이후 2015년 3월부터 소폭씩 증가하는 모습이다. 한편, 2015년 12월말 기준 이용액은 19,96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4.5%(13,813백만 원) 증가하였다.

**그림 1-32 월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5)**  
(단위: 명, 천 원)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그림 1-33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5.12 기준)**  
(단위: 명, 천 원)



**표 1-26 시도별·월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2015)**

(단위: 명)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5,952	7,702	8,662	8,900	8,626	8,382	7,982	7,873	7,727	7,643	6,820
부산	14,884	16,141	16,615	16,264	15,467	15,593	14,757	14,762	14,198	13,139	12,509
대구	3,314	7,805	8,059	7,766	7,677	7,399	7,318	8,233	8,619	9,755	10,463
인천	7,105	7,703	7,755	7,851	7,464	7,227	6,861	7,414	8,037	7,735	9,535
광주	1,951	2,972	3,267	4,974	4,792	5,110	5,362	5,616	6,318	6,978	6,954
대전	5,395	7,684	6,715	6,509	8,630	8,590	8,524	11,326	11,521	11,991	11,681
울산	1,918	2,483	2,536	2,455	2,272	2,748	2,930	3,022	3,310	3,739	3,920
세종	372	440	337	316	274	262	265	281	282	281	285
경기	14,850	18,571	17,725	17,149	16,627	16,614	16,661	17,034	17,589	19,268	20,048
강원	3,756	4,508	5,083	5,387	5,529	5,739	5,682	5,806	5,638	5,416	5,352
충북	3,857	4,898	4,928	4,668	5,059	5,081	4,935	5,015	5,732	5,646	5,055
충남	5,395	6,016	6,308	6,309	6,037	6,320	6,271	6,409	6,711	6,815	6,274
전북	5,817	6,610	6,896	6,940	6,869	7,374	7,907	8,201	8,359	8,617	9,016
전남	8,876	9,492	10,013	9,935	9,529	9,533	9,637	9,608	9,571	10,156	10,005
경북	3,102	5,995	7,461	7,521	7,007	6,866	6,925	8,164	8,244	8,249	7,876
경남	6,117	7,016	7,279	7,298	7,373	7,491	8,043	8,108	8,538	8,804	8,707
제주	5,181	5,547	5,468	5,507	5,124	4,922	4,583	4,461	4,243	4,822	5,352
합계	97,842	121,583	125,107	125,749	124,356	125,251	124,643	131,333	134,637	139,054	139,852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표 1-27 시도별·월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금액 (2015)**

(단위: 천 원)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751,861	1,068,638	1,196,021	1,181,761	1,143,543	1,131,809	1,071,185	1,028,964	1,059,584	1,044,290	941,203
부산	1,438,278	1,763,469	1,719,723	1,641,297	1,557,067	1,679,670	1,534,792	1,508,867	1,505,919	1,368,378	1,320,649
대구	459,162	1,063,647	1,141,623	1,058,645	998,487	1,055,373	996,582	1,090,737	1,200,265	1,333,449	1,537,827
인천	890,559	1,074,998	1,036,255	997,819	966,379	974,182	912,655	957,749	1,086,679	1,037,004	1,314,129
광주	290,523	443,922	536,421	760,292	735,456	799,611	834,290	894,400	1,045,196	1,180,943	1,216,576
대전	613,659	988,585	1,007,382	950,529	1,271,127	1,391,318	1,342,031	1,762,004	1,888,038	1,951,248	1,945,352
울산	223,938	377,699	360,138	317,697	299,800	384,308	380,165	392,403	469,945	511,829	592,005
세종	50,478	81,258	68,756	65,289	57,015	53,364	57,576	54,589	55,139	57,682	58,241
경기	1,735,619	2,416,464	2,409,454	2,286,862	2,160,250	2,323,419	2,230,709	2,248,865	2,437,488	2,663,288	2,885,697
강원	435,791	573,404	649,269	685,484	691,496	783,808	742,979	750,747	746,649	708,745	733,132
충북	535,052	813,733	723,043	685,438	721,218	782,798	733,219	734,398	858,745	852,319	774,785
충남	720,899	896,835	878,582	856,016	818,481	903,171	894,476	867,316	962,675	992,052	955,476
전북	809,884	1,016,764	1,041,192	1,003,105	981,742	1,128,476	1,177,471	1,205,579	1,260,544	1,275,159	1,387,761
전남	968,723	1,082,829	1,138,179	1,131,822	1,004,037	1,153,151	1,120,537	1,101,519	1,119,610	1,176,084	1,176,745
경북	383,286	802,327	1,079,825	1,010,462	945,041	963,984	941,827	1,095,544	1,174,433	1,159,541	1,148,323
경남	818,267	995,875	1,035,162	1,012,228	1,040,845	1,045,892	1,108,465	1,119,777	1,225,697	1,244,193	1,290,661
제주	622,012	690,378	664,686	663,067	609,328	602,964	548,060	519,615	502,778	586,832	681,178
합계	11,747,990	16,150,823	16,685,713	16,307,810	16,001,311	17,157,297	16,627,021	17,333,072	18,599,383	19,143,033	19,959,739

주: 1)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2)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Postpartum Women and Infants Health Care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 지표 정의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에 대한 필요성,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가격을 토대로 최대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기준가격	660,000원	1,214,000원	1,798,000원
최대가격	800,000원	1,500,000원	2,200,000원

##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
- 지원 금액: 출생아동 수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2015년 기준)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정부지원금	462,000원 ~ 594,000원	855,000원 ~ 1,098,000원	1,260,000원 ~ 1,620,000원
본인부담금	책정가와 정부지원금의 차액		

2015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의 월평균 이용자 수는 8,802명으로 나타났고, 매월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뚜렷한 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는 2015년 월별 출생아 수의 차이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한편, 월평균 이용액은 3,536,705천 원으로 나타났다.

표 1-28 월별 전국 출생아 수 (2015)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41,914	35,709	40,329	38,072	36,534	35,520	36,612	35,207	36,444	36,702	33,467	31,91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5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이용자가 1,980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183명, 경남 599명 순으로 이용자 수가 많았다. 반면에 울산과 제주는 각각 181명과 122명으로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이용자 수가 적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 월평균 이용자 수는 8,802명으로 2014년 월평균 7,739명 대비 13.7%의 큰 증가를 나타냈다. 이에 비례하여 2014년 월평균 이용액도 3,323백만 원에서 2015년 월평균 3,537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또는 산모)는 예외

\*\*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 65%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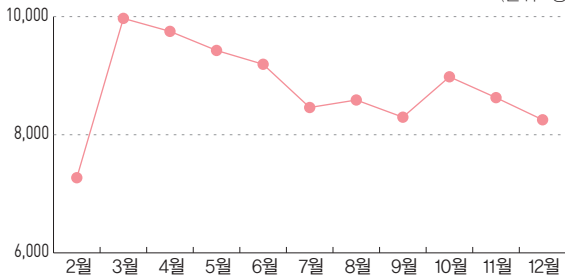
표 1-29 연도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2월말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이용자 수	7,886	7,135	8,253
이용액	3,314,373	3,103,393	3,439,509

그림 1-34 월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2015)

(단위: 명)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그림 1-35 시도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15.12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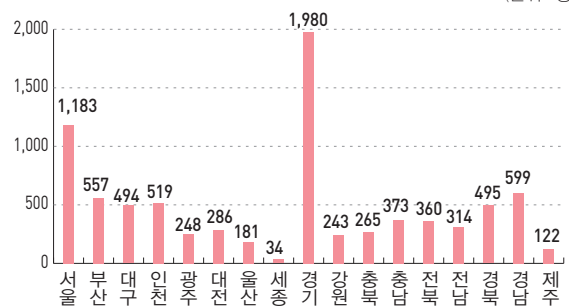


표 1-30 월별 · 시도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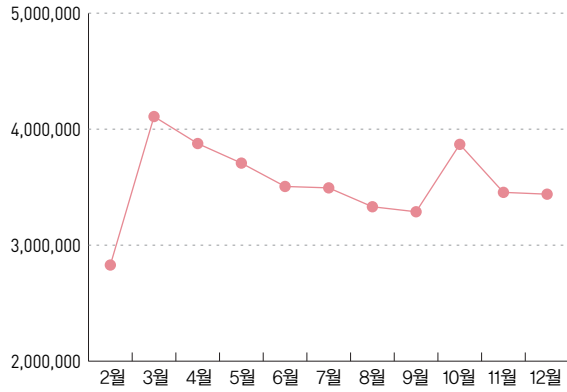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050	1,433	1,407	1,391	1,361	1,168	1,243	1,219	1,285	1,224	1,183
부산	393	599	646	610	546	497	548	547	553	553	557
대구	416	534	538	534	510	513	526	476	546	493	494
인천	482	685	650	634	645	559	567	551	594	547	519
광주	231	318	307	269	287	265	265	257	292	260	248
대전	253	349	360	348	334	308	331	283	324	341	286
울산	160	220	195	229	210	179	191	200	204	179	181
세종	36	42	42	37	44	36	28	33	38	34	34
경기	1,707	2,400	2,362	2,321	2,297	2,129	2,171	2,031	2,187	2,106	1,980
강원	171	267	282	225	263	237	212	198	232	240	243
충북	191	318	333	321	309	267	277	291	296	286	265
충남	397	524	472	417	404	389	406	382	417	416	373
전북	439	530	412	413	363	338	361	344	375	342	360
전남	337	395	386	379	371	330	323	326	368	333	314
경북	439	589	598	553	513	501	471	495	544	510	495
경남	478	635	627	631	605	618	566	554	615	647	599
제주	92	132	133	115	131	127	102	110	111	117	122
합계	7,272	9,970	9,750	9,427	9,193	8,461	8,588	8,297	8,981	8,628	8,253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그림 1-36** 월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액 (2015)  
(단위: 천 원)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표 1-31** 월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액 (2015)  
(단위: 천 원)

구분	이용금액
2월	2,828,698
3월	4,108,762
4월	3,876,145
5월	3,707,427
6월	3,506,093
7월	3,493,851
8월	3,331,153
9월	3,287,945
10월	3,868,955
11월	3,455,219
12월	3,439,509

# 2

아동 · 노인  
· 장애인

# 2016

- 01 아동 수면시간
- 02 아동 인터넷 등 과의존위험군 비율
- 03 아동 자살률
- 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 05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 06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 07 아동 빈곤율
- 08 나홀로 아동 수
- 09 요보호 아동 수
- 10 국내외 입양아동 수
- 11 아동·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 12 65세 기대여명
- 13 노인의 ADL 제한율
- 14 노인의 운동 실천율
- 15 노인의 학대경험률
- 16 노인 진료비
- 17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 18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 19 장기요양기관 수
  
- 20 등록장애인 수
- 21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 22 장애인복지시설 수
- 2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 24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2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26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27 특수교육 대상자 수
- 28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 29 장애인 교육수준
- 30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 3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32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 3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 34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 35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 2 아동·노인·장애인

## 아동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아동 건강 발달	아동 수면시간	
	아동 인터넷 등 과의존위험군 비율	
	아동 자살률	
아동 안전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아동 손상 경험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 빈곤	아동 빈곤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아동급식 지원자 수
아동의 사회적 보호	나홀로 아동 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요보호 아동 수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아동공동생활가정보호 아동 수
	국내외 입양아동 수	입양아동 관련급여 수급자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아동복지 지출	아동·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 아동 수면시간

Child Sleeping Hours

## 지표 정의

아동·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학교 등교 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기초로 초중·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을 산출한다.

아동의 적정 수면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아동 1일(평일) 수면시간의 합}}{\text{전체 아동의 수}} \quad (\text{평일 평균})$$

충분한 수면을 취할 권리는 아동·청소년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에 속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의 평균 수면시간은 초등학생이 8시간 24분, 중학생이 7시간 12분, 고등학생이 6시간 6분이었다. 최초 조사가 이루어졌던 2009년 이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2011년 평균 수면시간은 중학생의 경우 0.4시간, 초등학생의 경우 0.6시간 상승하였으며 2013년 0.6시간~0.8시간 감소한 이후 2015년까지 커다란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 반면, 고등학생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년 처음으로 6.1시간으로 36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2009년 이후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면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규칙적인 운동실천율과 아침식사 섭취율을 살펴보면 아침식사를 섭취하는 아동의 비중은 2006년 64.8%에서 2012년 73.2%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2006년 25.0%에서 2016년 35.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09	2015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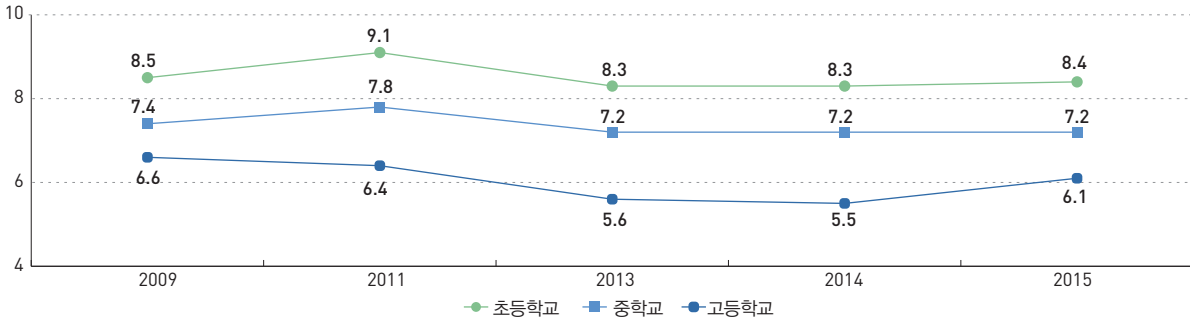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2014년 대비 같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등학생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2014년 5.5시간에서 2015년 6.1시간으로 36분 증가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수면시간의 증가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참고문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보고서 Ⅲ, 2015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2-1 연도별 평균 수면시간

(단위: 시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각 연도

표 2-1 연도별·학령별 평균 수면시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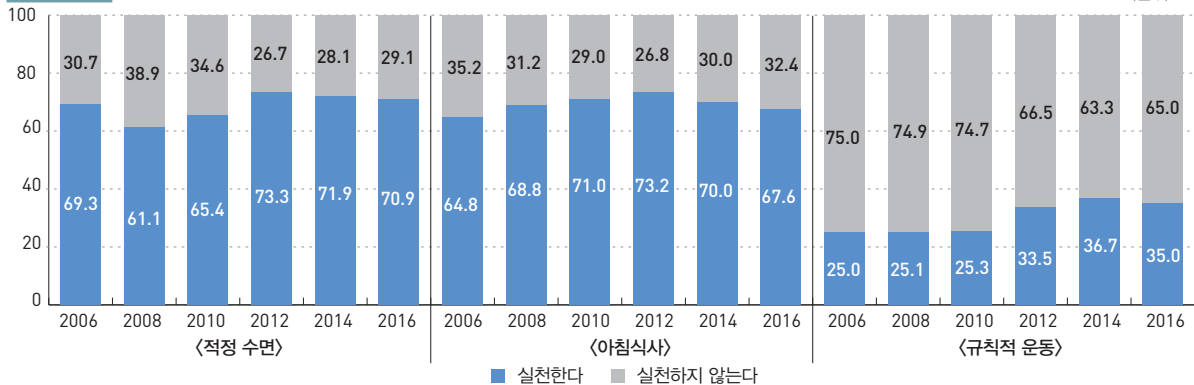
연도	구분	5시간 미만	5~6시간	6~7시간	7~8시간	8시간 이상
2010	전체	7.2	18.2	23.3	25.7	25.3
	초등학교	3.8	4.8	16.3	32.8	41.7
	중학교	4.1	15.4	34.5	30.8	15.0
	고등학교	16.1	44.9	26.6	8.4	3.9
2011	전체	3.0	8.1	15.1	21.3	52.4
	초등학교	0.0	0.3	1.2	8.7	89.8
	중학교	0.9	4.0	12.2	32.5	50.4
	고등학교	일반계	9.9	24.3	36.1	22.7
	전문계	5.2	14.7	30.3	29.8	20.0
2013	전체	6.6	14.5	19.5	24.7	34.7
	초등학교	0.6	0.6	3.1	17.1	78.5
	중학교	1.8	6.0	19.8	42.8	29.7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7.5	36.8	33.1	11.1
	특성화	11.4	22.3	32.3	26.4	7.6
2014	전체	5.6	15.7	20.8	24.6	33.4
	초등학교	0.3	0.7	3.8	17.2	78.0
	중학교	1.3	6.0	20.9	42.0	29.6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5.0	40.4	33.0	10.1
	특성화	7.9	19.0	37.0	30.1	5.9
2015	전체	4.1	12.9	20.6	26.0	36.3
	초등학교	0.2	0.6	3.3	13.8	82.0
	중학교	1.1	6.6	18.1	41.6	32.6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0.9	31.5	36.1	17.5
	특성화	5.7	12.5	35.4	34.7	11.7

주: 2012년도는 조사결과 없음.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2-2 연도별 건강관리 실천 여부

(단위: %)



주: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 아동 인터넷 등 과의존위험군 비율

Rate of Internet Overdependence and Others Overdependences in Children

## 지표 정의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등 과의존위험군은 인터넷 과의존위험군과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으로 구성된다.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위험군은 유·무선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등 이용에 대한 금단·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금단·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인터넷 중독 위험군(상담개입 또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집단) 수}}{\text{조사대상(10~19세) 청소년 수}} \times 100$$

$$\frac{\text{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상담개입 또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집단) 수}}{\text{조사대상(10~19세) 청소년 수}} \times 100$$

## 유의사항

-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전체 인터넷 이용자(만 3~59세, 18,500명)중에 유아동(만 3세~9세), 청소년(만 10세~19세)의 대상별 표준화된 인터넷 중독척도(각 15문항)를 활용하여 산출함.
-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스마트폰 중독척도(각 15문항)를 활용하여 산출함.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등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인터넷 과의존위험군과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을 포함한다. 2015년 아동·청소년 인터넷 과의존위험군은 유아동이 5%(163천 명), 청소년이 13.1%(761천 명)로, 특히 청소년은 성인(5.8%)보다 2.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유아동의 경우에는 2011년 7.9%를 기록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5년 5.0%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령별 구성에 따라 살펴보면 2015년 초등학교생의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9.6%, 중학생은 15.4%, 고등학생은 13.2%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특히 중학생의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등학생보다 높았다는 점은 학령별 집단 중 중학생의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인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31.6%로 성인(13.5%)보다 약 2.3배 이상 많았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011년 25.2%에서 11.4%로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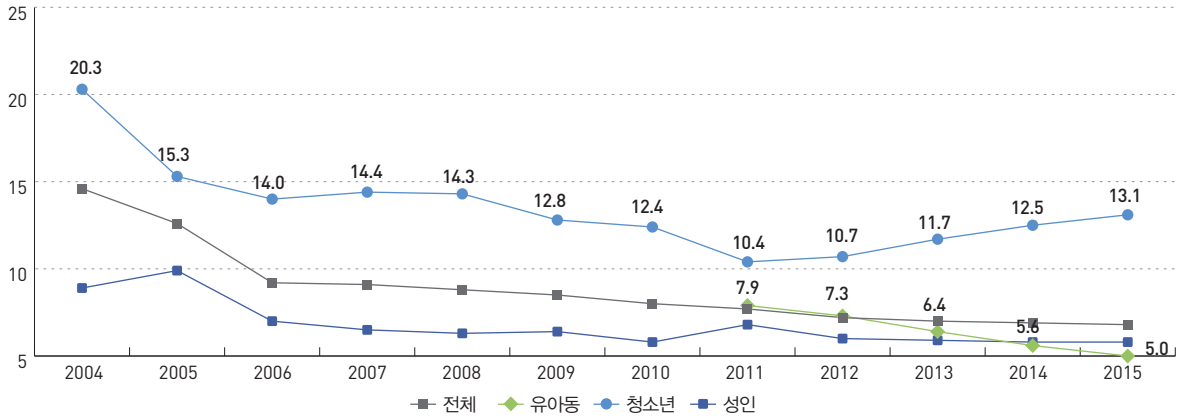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과의존실태조사	2004	2015	1년

## Checkpoint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004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3.1%로 전년대비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13.1%로 나타나 전년대비 2.2%p 증가하였다.

그림 2-3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비율 (2004~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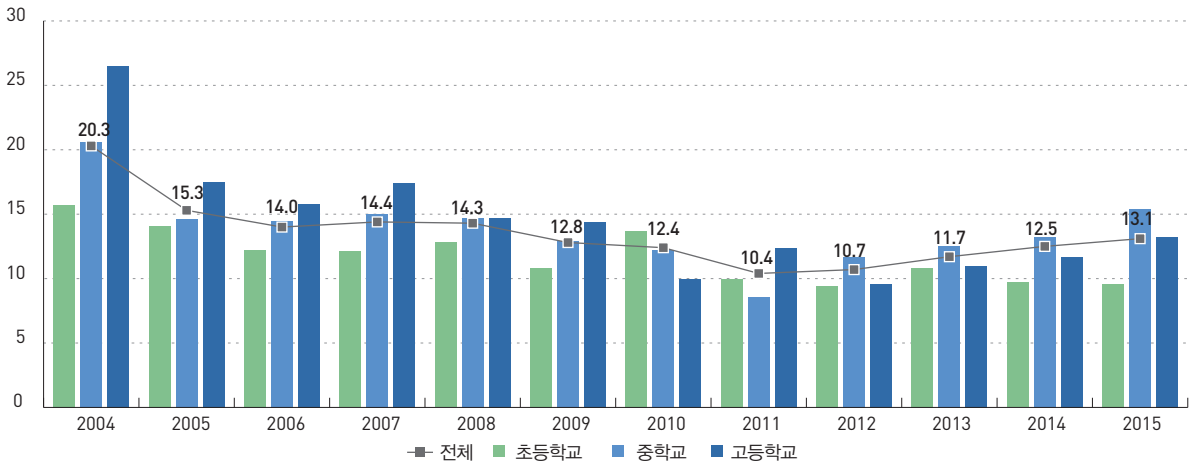


주: 연도별 조사대상자 연령 다름. 2014년 만 3~59세(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2013년 만 5~54세(유아동 만 5~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4세), 2011년~2012년 만 5~49세(유아동 만 5~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49세), 2004년~2010년 만 9~39세(청소년 만 9~19세, 성인 만 20~39세)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과의존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2-4 학령별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비율 (20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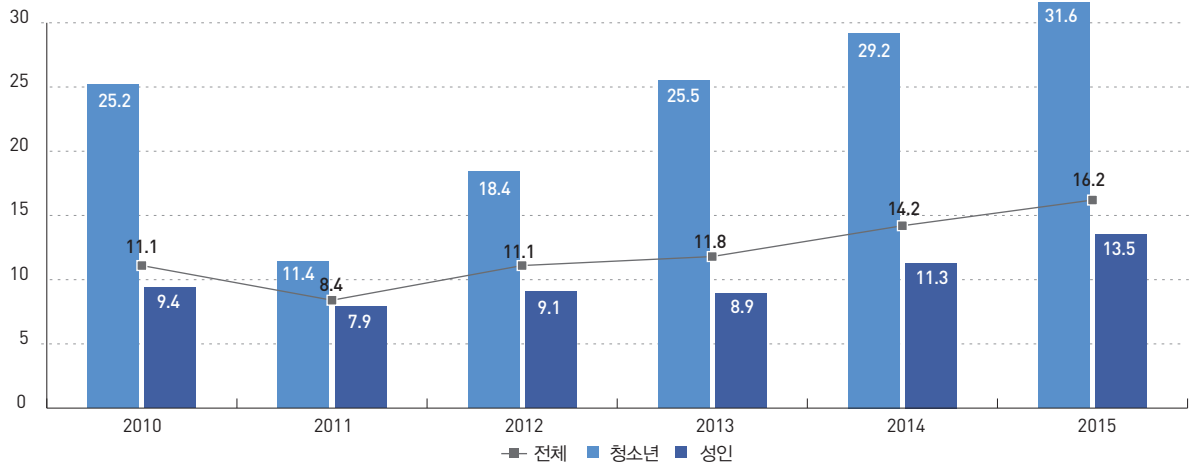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과의존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2-5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2010~2015)

(단위: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과의존실태조사, 각 연도



# 아동 자살률

Child Suicide Rate

## 지표 정의

아동·청소년 자살률(자살사망률)은 연간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사망자의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연앙인구는 당해 연도의 중간인 7월 1일 기준의 주민등록인구를 의미하며,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사용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아동·청소년 사망자의 수}}{\text{당해 년도 아동·청소년 연앙인구}} \times 100,000$$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는 2000년 인구 10만 명당 3.8명에서 2009년까지 6.5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 5.2명, 2015년 4.2명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모든 해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2015년의 성별 자살자 수는 약간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여자청소년의 경우 2014년 대비 3.4명에서 3.8명으로 증가했던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5.5명에서 4.6명으로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를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15~19세 청소년의 자살률이 5~14세까지의 저연령 아동들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15~19세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2015년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10~14세 아동의 자살률 1.2명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10~14세 아동의 경우 0.1명이 증가했고 15~19세 청소년의 경우 0.7명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자살충동 여부를 살펴보면, 2016년 13~19세의 청소년 중 5.7%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살충동은 2006년 10.1%에서 2012년 12.1%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2016년 청소년들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성적 및 진학 문제가 48.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가정불화,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친구 따돌림 등의 순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5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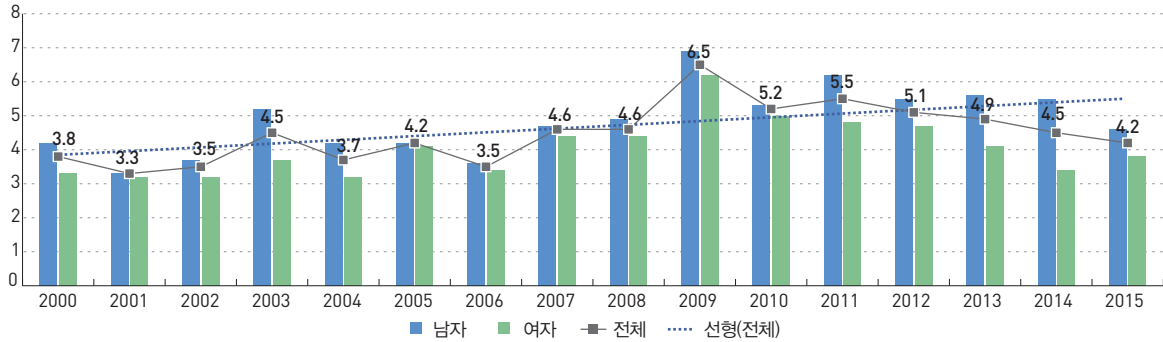
10대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000년 3.8명에서 해마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2009년 6.5명까지 증가했다.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2013년 인구 10만 명당 4.9명, 2015년은 4.2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면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10대 남자는 5.5명에서 4.6명으로 감소한 반면, 여자는 3.4명에서 3.8명으로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2-6 성별 10대 자살률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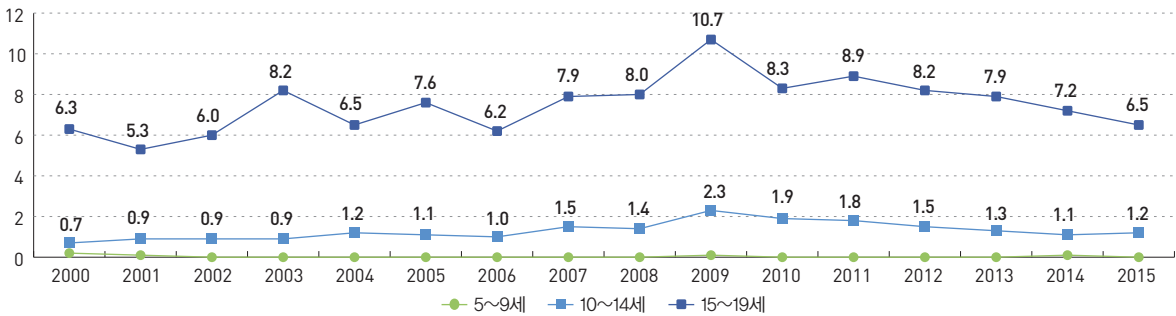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주: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10대 사망자 수 및 사망률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2-7 연령별 아동·청소년 자살률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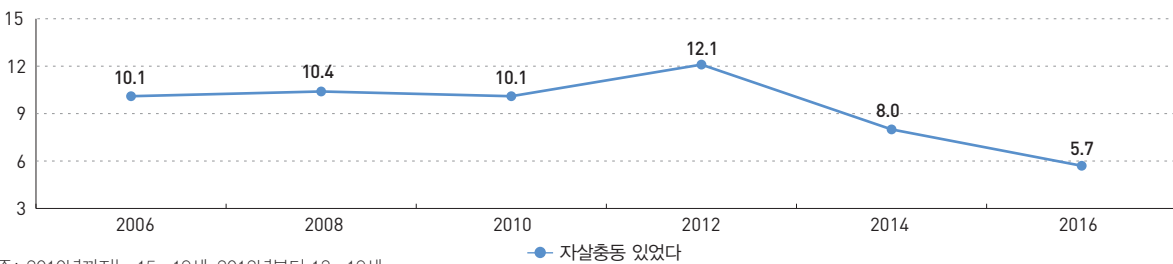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주: 1)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 0~4세 자살자 수는 집계되지 않거나 0명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2-8 청소년 자살충동 여부 (2006~2016)

(단위: %)



주: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표 2-2 청소년 자살충동 여부 및 이유 (2006~2016)

(단위: %)

구분	자살충동 여부		자살충동 이유							
	자살충동 있다	자살충동 없다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	직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및 진학문제	이성문제, 친구 및 동료와의 불화	기타
2006	10.1	89.9	6.2	1.4	1.0	10.1	15.5	56.1	8.2	1.6
2008	10.4	89.6	8.8	3.5	1.7	13.6	10.1	51.0	8.6	2.9
2010	10.1	89.9	10.5	2.2	1.6	11.2	12.6	53.4	5.7	2.8
2012	12.1	87.9	16.7	2.0	0.4	12.5	16.9	39.2	8.5	3.7
2014	8.0	92.0	19.5	2.1	0.8	9.8	10.5	39.3	12.9	5.2
2016	5.7	94.3	10.6	3.0	1.0	11.1	11.9	48.1	10.0	4.3

주: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Number of safety accident death in children

## 지표 정의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년 동안 외부요인에 의한 안전사고(운수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로 사망한 14세 이하의 아동의 수 및 10만 명당 비율을 말하며 자살, 타살, 질병에 의한 사망은 제외한다.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사고 중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사고를 근거로 산출한다.

## 측정 산식

$$\bullet \text{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 = \frac{\text{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 수}}{\text{14세 이하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00$$

유의사항 본 지표에서 교통사고는 사망원인통계(통계청)와 교통사고통계(경찰청)에서 각각 공표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음. 사망원인통계의 교통사고는 육상·해상·항공 등 모든 교통기관 사고 및 트랙터 사고 등 비도로상의 사고를 포함함. 교통사고통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 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의 통계를 의미하며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교통사고를 근거로 작성됨.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은 아동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1~6세 학령전기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은 8,507억 원에 해당하는 커다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며(질병관리본부, 2013),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은 아동보호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2003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수립 이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약 79% 감소했으나,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대비 0.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 안전사망사고의 사망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원인은 교통사고로 전체 사망자 225명 중 103명(46%)의 아동들이 사망했으며, 기타 56명(24%), 익사 및 추락이 각각 28명(12%)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또한 통계청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001년 사망자 수는 460명에서 2014년 5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65명으로 25%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 OECD 평균(1.0명)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0.4명 높았으며, 2013년 사망자 수가 집계된 29개 OECD 회원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5	1년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976	2015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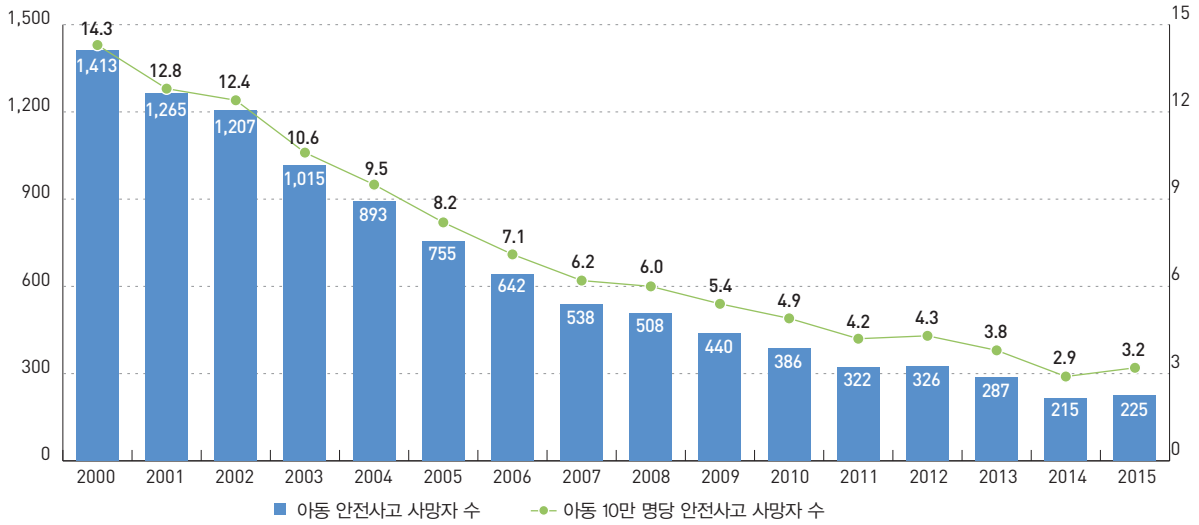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1년 460명이었으나 2003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수립 이후 2004년 265명, 2007년 179명, 2011년 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 들어 전년대비 안전사고 사망 아동의 수가 10% 증가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교통사고 사망 아동의 연도별 추이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교통사고 사망 아동 수도 2001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5년 전년대비 25%하여 66명의 아동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 참고문헌

- WHO, Mortality Database, 2008
- 질병관리본부 · 이화여대, 어린이 및 청소년 손상예방지표 및 조사문항 개발 연구, 2013
- 국제교통포럼 홈페이지 (<http://internationaltransportforum.org/IRTADUsers>)

그림 2-9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및 10만 명당 사망자 수 (2000~2015)

(단위 : 명, 아동인구10만 명당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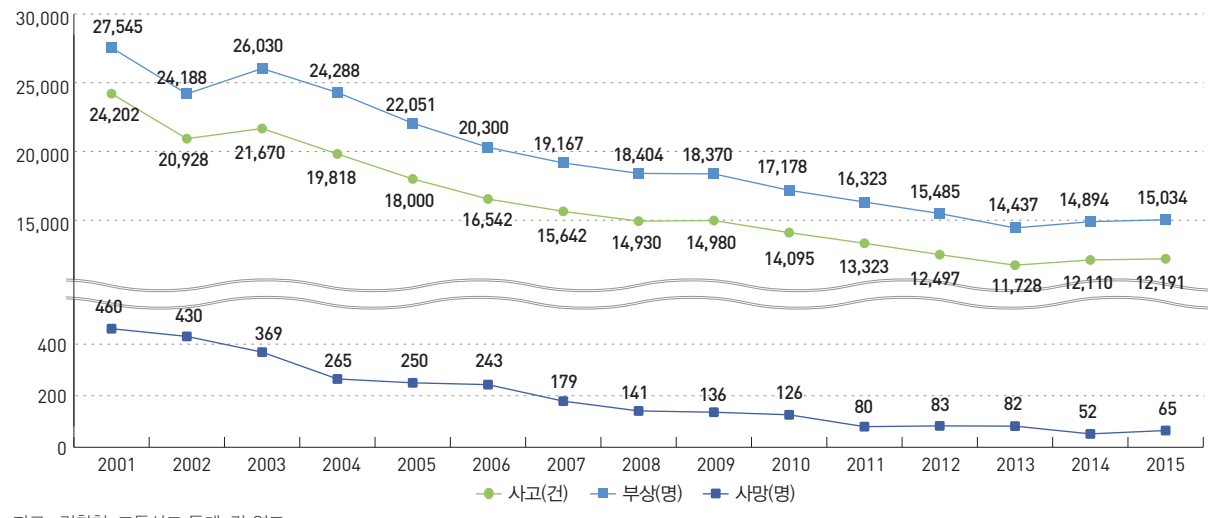
표 2-3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 (2000~2015)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413	1,265	1,207	1,015	893	755	642	538	508	443	387	322	326	287	215	225
교통사고	726	614	594	496	377	339	316	259	214	201	194	137	131	121	80	103
익사	304	236	197	156	184	156	78	78	78	62	44	50	53	41	36	28
추락	155	138	133	108	88	67	58	58	50	40	42	37	36	37	31	28
화재	40	73	54	63	42	19	42	7	19	10	15	15	14	15	5	10
중독	13	7	6	4	7	4	5	4	2	5	3	1	1	2	2	0
기타	175	197	223	188	195	170	143	132	145	125	89	82	91	71	61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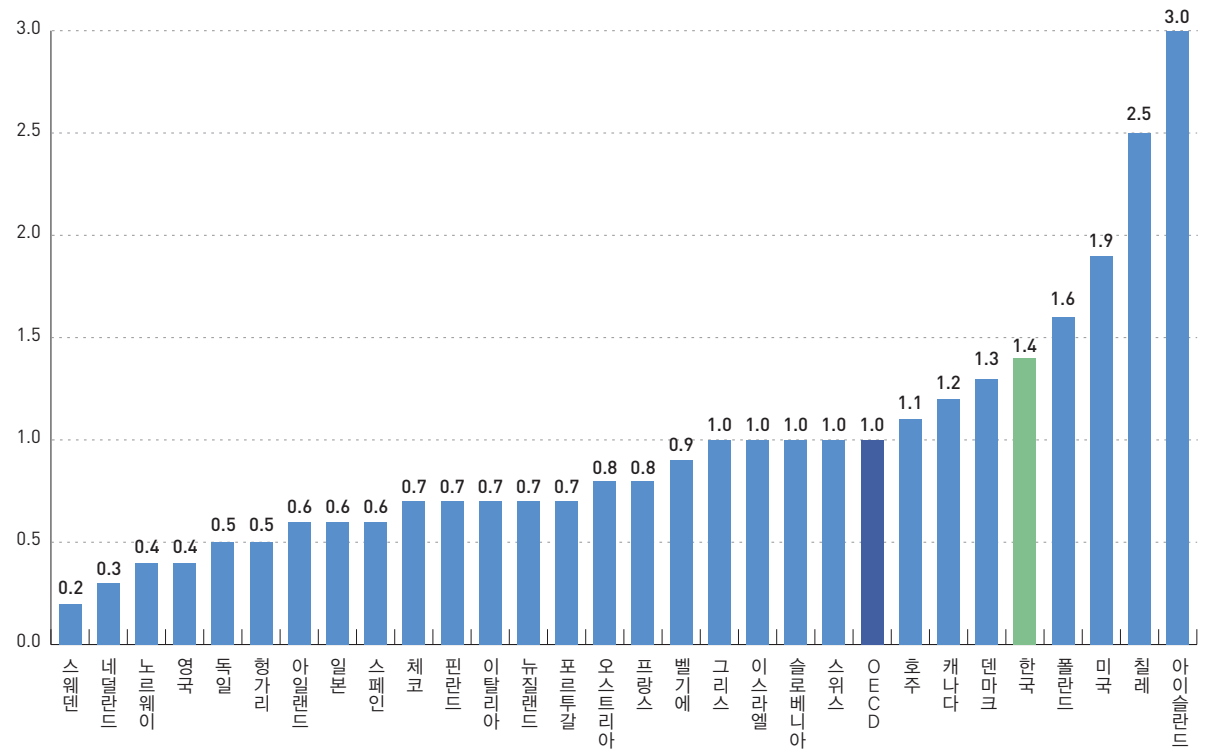
주: 통계청 사망통계자료(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서 자살·타살·질병 제외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2-10 어린이(13세 이하) 교통사고 건수, 부상자 수, 사망자 수 (2001~2015) (단위: 건, 명)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각 연도

그림 2-11 아동(14세 이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국제비교 (2013)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5년판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2015

# 아동 손상 경험률

Child Injury Rate

## 지표 정의

아동의 손상 경험률은 만 18세 이하의 아동 중 최근 1년간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아동 분율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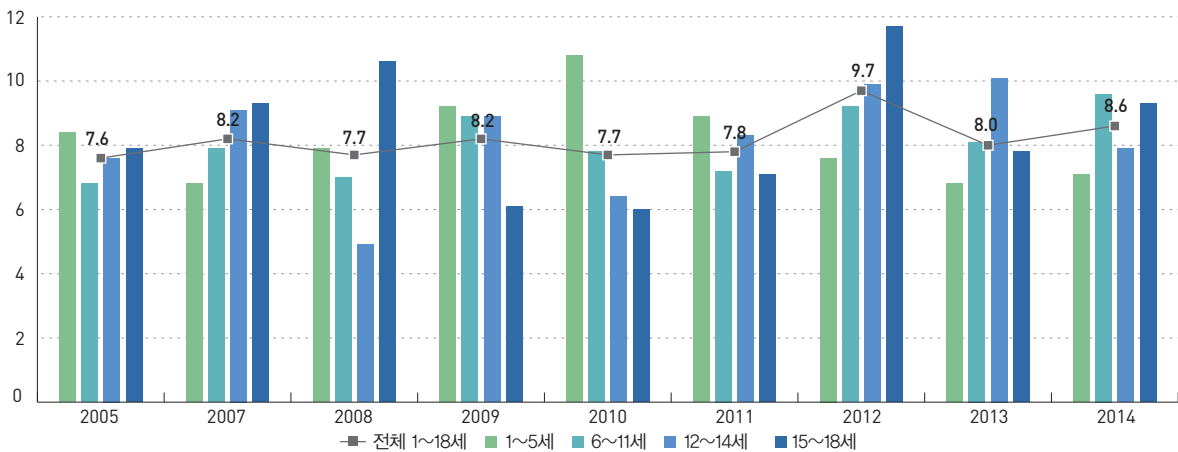
$$\frac{\text{만 18세 이하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사람}}{\text{만 18세 이하 인구}} \times 100$$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감소하였지만 아동·청소년의 비의도적 손상입원율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동 손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동 손상의 추세, 손상의 유형별 발생현황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만 18세 이하 아동의 연간 손상 경험률은 2014년 8.6%로 2013년의 8.0%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2005~2014년에 걸친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연도별로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5세는 2009~2011년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12~2014년에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15~18세는 2009~2011년까지 가장 낮았다가 2012년과 2014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연령은 모든 연도에서 대부분 중간 수준의 수치를 보였지만 2012년에는 15~18세의 손상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12 아동 연간 손상 경험률 (2005~2014)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Substantiation rate of Child Abuse

## 지표 정의

아동학대란 신체, 정신, 성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 아동학대 사례 피해 아동 발견율은 추계아동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로 판정된 피해 아동 수를 의미한다.
- 학대피해아동 서비스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에게 취한 최종조치와 제공된 서비스의 횟수를 포함하는데, 최종조치 결과는 전년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년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 결과를 의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만 0~17세 아동학대판정 피해 아동 수}}{\text{만 0~17세 아동 수}} \times 1,000$$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추계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아동학대처벌법의 강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증가에 따른 결과로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사례가 2014년 36%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2001년 0.18%에서 2015년 1.32%로 7.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4년 대비 0.22%p 증가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11,715명의 아동이 학대피해아동으로 판단되어 보호받았다.

2015년 학대행위자의 79%가 부모였으며 이중 친부모가 75%를 차지하였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2.2%로 전년도의 11%보다 1.2%p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분포는 중복학대가 4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서학대와 방임·유기가 각각 17.5%, 17.2%를 차지했고 신체학대가 16.1%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치 결과는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지속적 보호를 받는 원가정보호 사례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어 재학대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취해지는 분리보호 사례, 가정복귀, 사망으로 나누어진다. 2015년 학대피해아동의 초기조치 결과는 원가정보호가 73.3%(8,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보호의 경우는 3,110건(26.6%), 사망 17건(0.1%)으로 나타났다. 최종조치 결과는 2015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2015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 결과를 의미하며 2015년 11,715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는 2,348건(20%)이고, 진행 중인 사례를 합한 최종조치 결과는 원가정보호가 7,760건(66.2%), 분리보호가 2,772건(23.7%), 초기분리 이후 가정복귀 사례가 1,164건(9.9%), 사망이 19건(0.2%)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006	2015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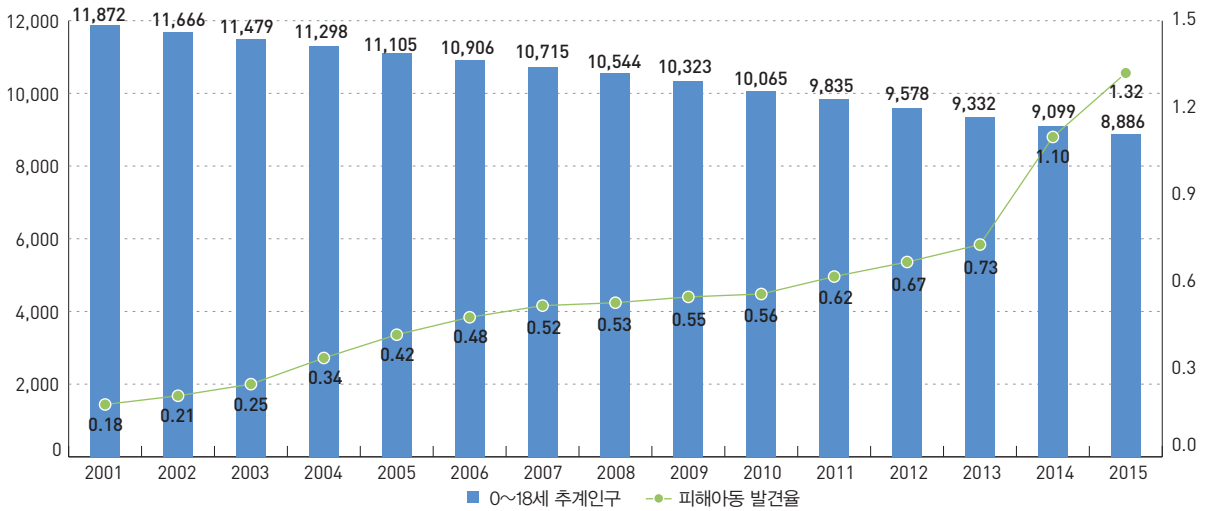
2001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율 및 피해 아동 발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인구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2001년 0.18%에서 2015년 1.32%로 증가하였다. 2014년 대비 0.22%p 증가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11,715명의 아동이 학대피해아동으로 발견·보호되었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그림 2-13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 아동 발견율 (200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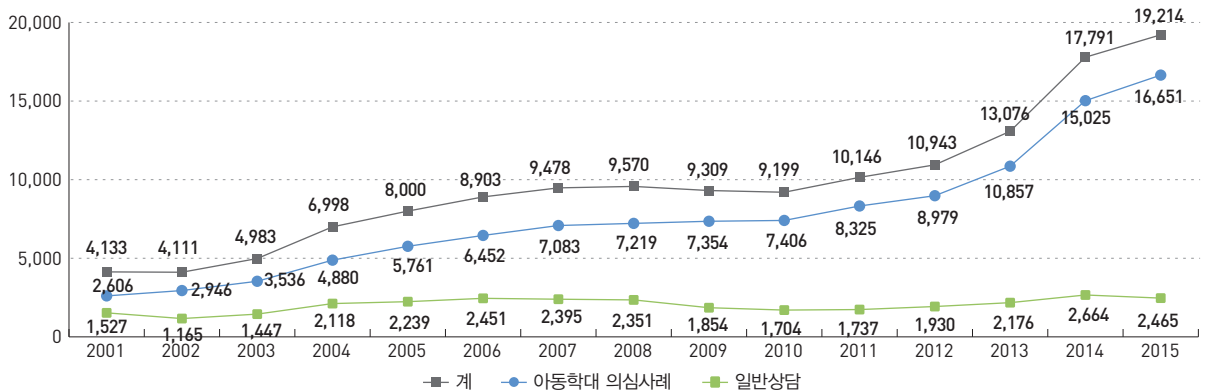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아동 인구 1천 명당 건, %)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그림 2-14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00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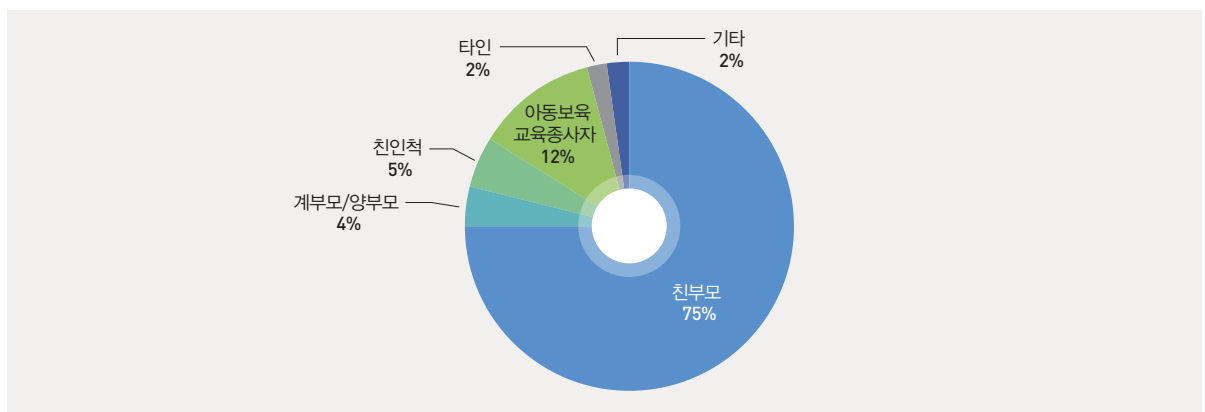
(단위: 건)



주: 2009년부터 집계된 중복신고는 그래프에서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그림 2-15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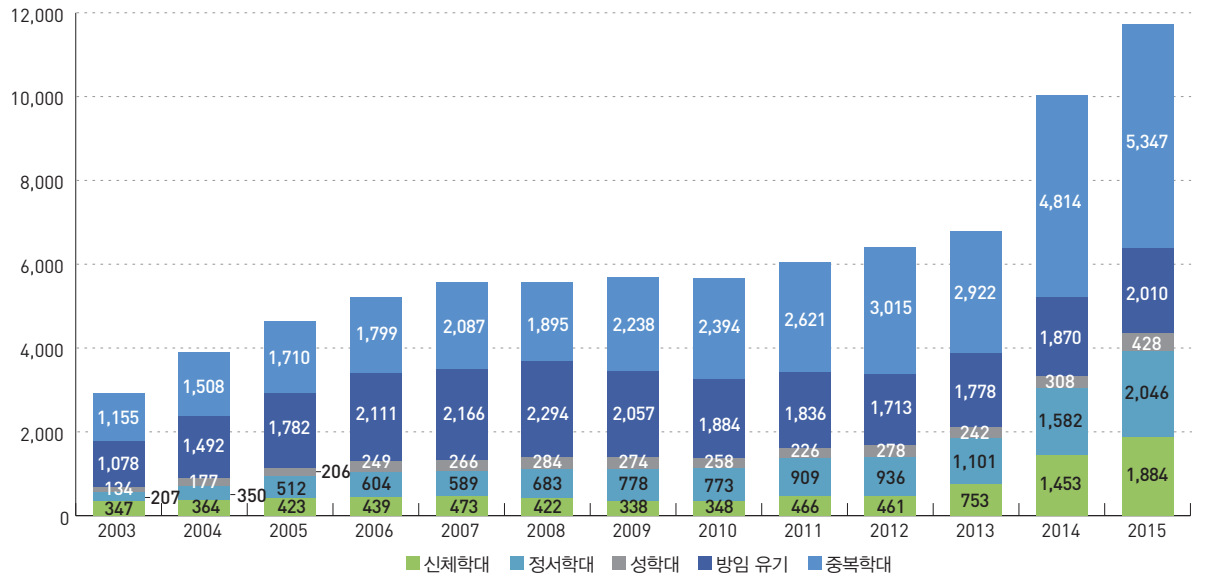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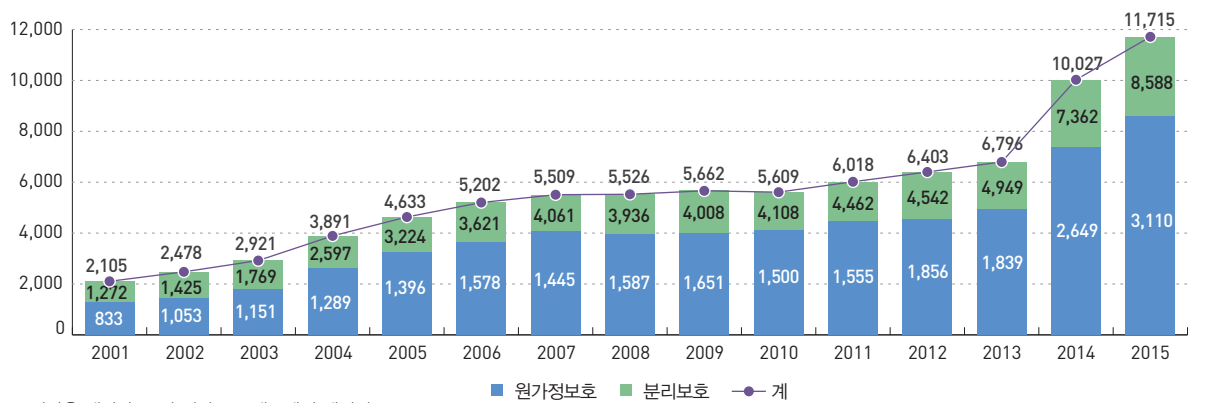


그림 2-16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200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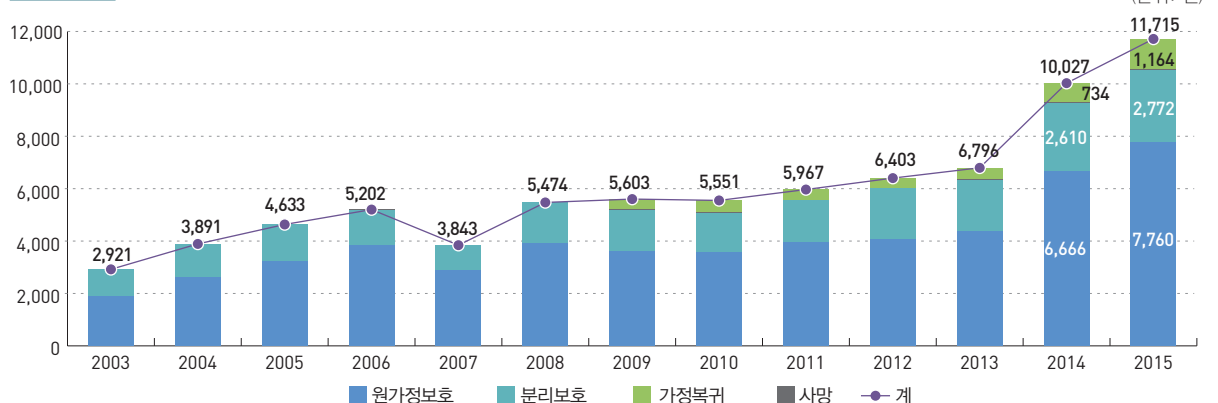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그림 2-17 피해 아동 초기조치 결과 (2001~2015)



주: 사망은 해마다 20건 이하로 그래프에서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그림 2-18 피해 아동 최종조치 결과 (2003~2015)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Number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 지표 정의

1년간 발생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발생 수를 의미하며,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폭력범죄의 규모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측정 산식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발생 건수 + 강제추행범죄 건수의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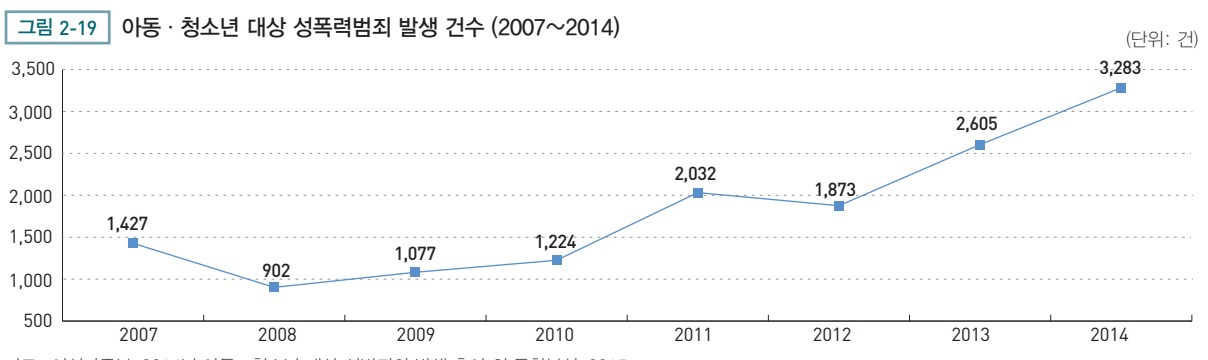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제 8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제9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제외한 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를 의미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범위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1,428건에서 2008년 902건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4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3,283건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2,413건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강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즉, 2007년 61.8%를 차지했던 강제추행이 2014년 72.2%까지 증가했으며 2007년 성폭력범죄의 38.2%를 차지했던 강간은 2010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점차 줄어들어 2014년 27.8%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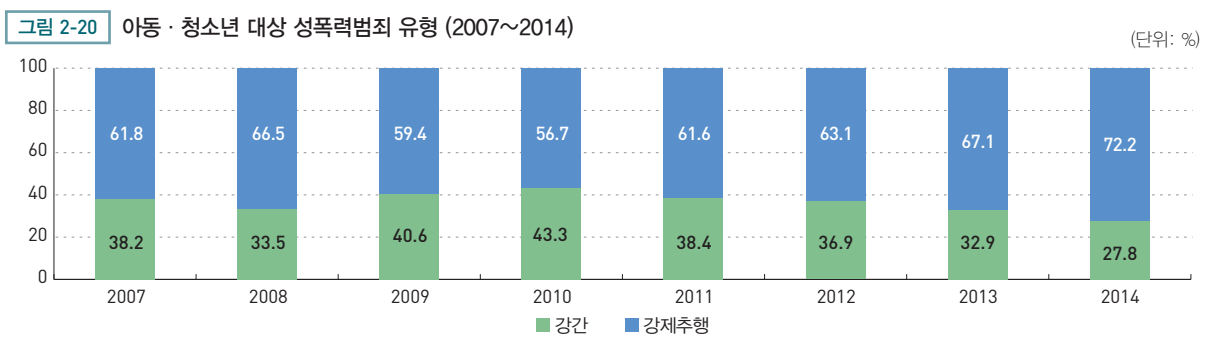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 구분에 관계없이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13세 이상의 여자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은 2012년 이후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2,374명으로 2012년 1,215명, 전년도 1,735명에 비해 각각 36%, 9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령분포에 따라 성폭력 피해경험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2014년 6세 이하의 아동은 92명이 성범죄 피해경험이 있는 반면, 16세 이상 아동은 1,389명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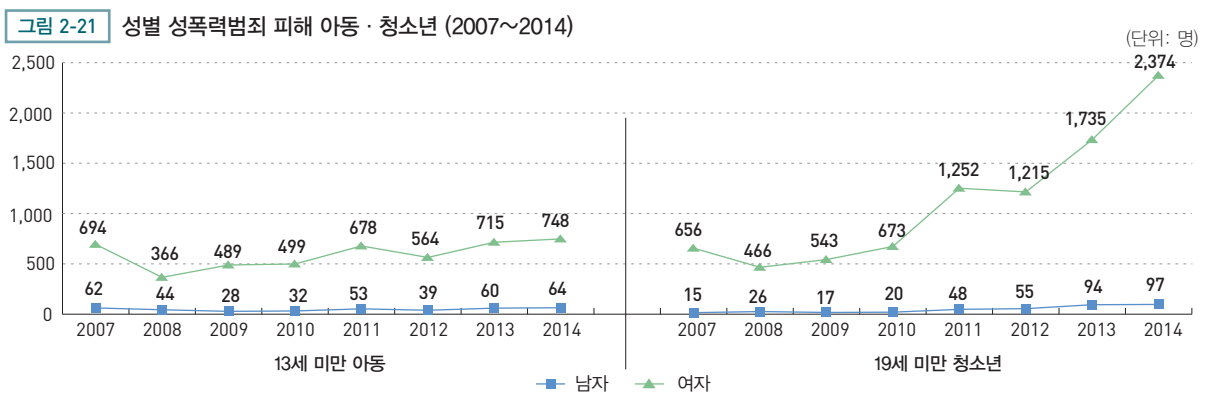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내부자료)	2007	2014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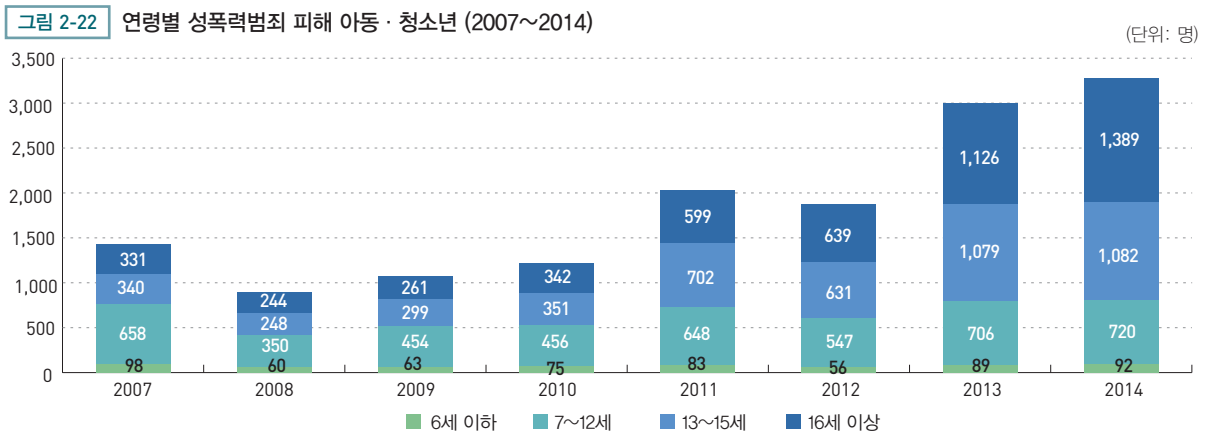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1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이 외 동향분석, 2015



자료: 여성가족부, 201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이 외 동향분석, 2015



자료: 여성가족부, 201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이 외 동향분석, 2015



주: 2013년의 경우,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 등 포함 (미상 7명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201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이 외 동향분석, 2015

#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Rate of School Violence

## 지표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측정 산식

-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

2014년 기준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8.5%로 2012년 조사결과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폭력 피해의 이유에 대하여 53.3%의 청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남자청소년(47.4%)보다 여자청소년(58.9%)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두 번째로 많은 이유를 보면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격 때문(13.9%)에, 남자청소년의 경우 몸이 작거나 힘이 약했기 때문(14.4%)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변했다.

주된 폭력의 유형은 욕설 및 폭언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따돌림(35.9%), 금품갈취(29.9%), 구타(25.5%)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유형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욕설 및 폭언(47.6%), 구타(41.4%)가 집단 따돌림(24.7%)에 비해 많았던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집단 따돌림(46.5%)과 욕설 및 폭언(46.3%)이 구타(10.8%)에 비해 많았다. 주로 폭력을 당한 장소는 교실 안이 46.4%, 학교 교실 밖이 13.3%로 나타나, 학교 공간(59.7%)이 학생청소년들이 주로 폭력을 경험하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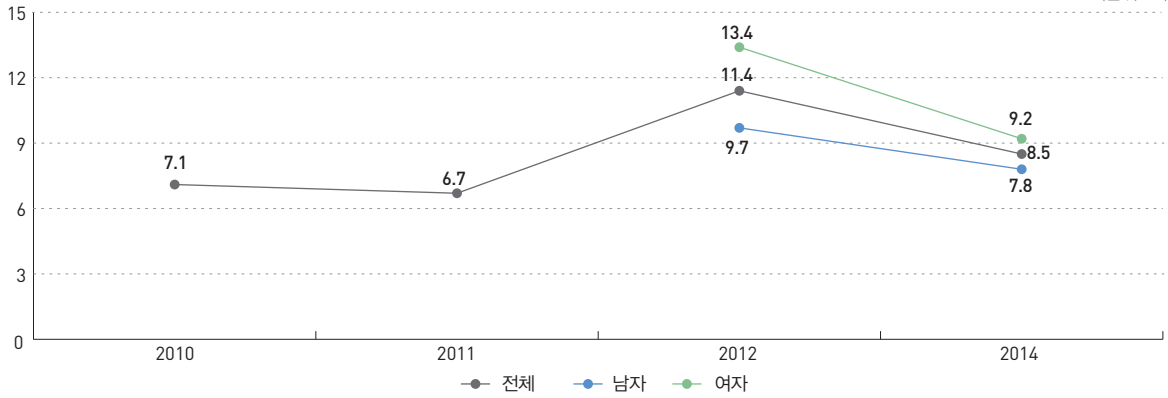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1999	2014	부정기

### Checkpoint

2014년 중·고등학생의 최근 1년간 폭력 피해 생애경험률은 8.5%로 2012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2012년 9.7%에서 7.8%로 감소, 여자청소년은 13.4%에서 9.2%로 감소했다.

그림 2-23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표 2-4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이유

(단위: %)

연도	폭력 피해 경험률		폭력 피해를 당한 이유							
			계	특별한 이유 없다	몸이 작거나 힘이 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외모나 장애 때문	성격 때문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타
2010	7.1		100.0	43.5	13.6	11.4	4.4	10.8	7.0	9.3
2011	6.7		100.0	42.5	14.2	9.6	3.7	10.5	6.2	13.2
2012	전체	11.4	100.0	51.8	9.5	9.6	3.7	12.4	2.4	10.5
	남	9.7	100.0	54.1	16.1	7.0	2.3	7.7	2.7	10.2
	여	13.4	100.0	50.2	4.7	11.6	4.8	15.8	2.2	10.7
2014	전체	8.5	100.0	53.3	9.9	6.7	6.3	12.4	3.5	7.9
	남	7.8	100.0	47.4	14.4	8.7	71.0	10.8	5.2	6.4
	여	9.2	100.0	58.9	5.7	4.9	5.6	13.9	2.0	9.0

주: 기타는 모름 혹은 무응답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표 2-5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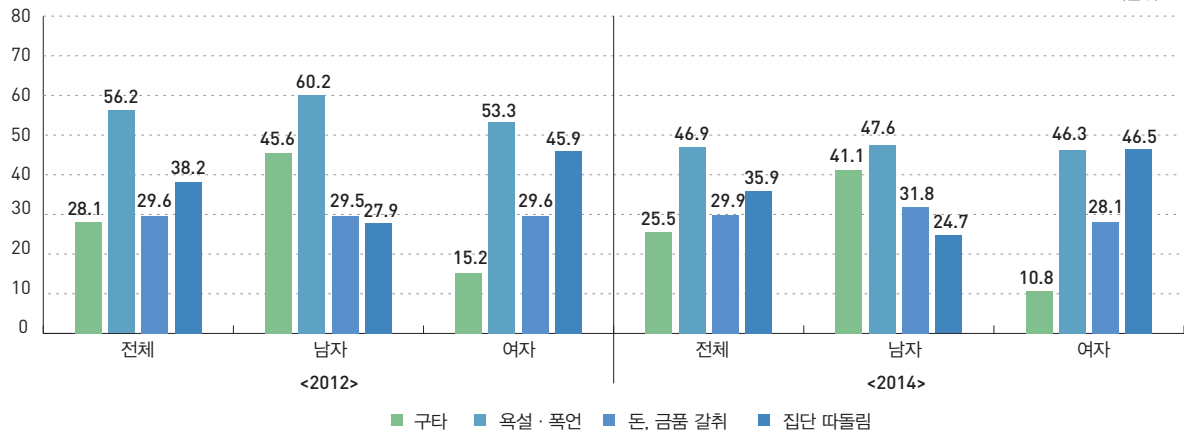
연도	신체적 상처는 없었다	신체적 상처가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욕, 동영상 촬영을 억지로 당했다	기타
2010	34.9	19.6	33.7	6.3	0.6	4.1
2011	31.1	17.6	26.8	6.1	0.7	17.7
연도	구분	구타	욕설, 폭언	돈,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2012	전체	28.1	56.2	29.6	38.2	
	남	45.6	60.2	29.5	27.9	
	여	15.2	53.3	29.6	45.9	
2014	전체	25.5	46.9	29.9	35.9	
	남	41.1	47.6	31.8	24.7	
	여	10.8	46.3	28.1	46.5	

주: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유형 구분이 달라졌으며,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그림 2-24 연도별·성별 학교폭력 피해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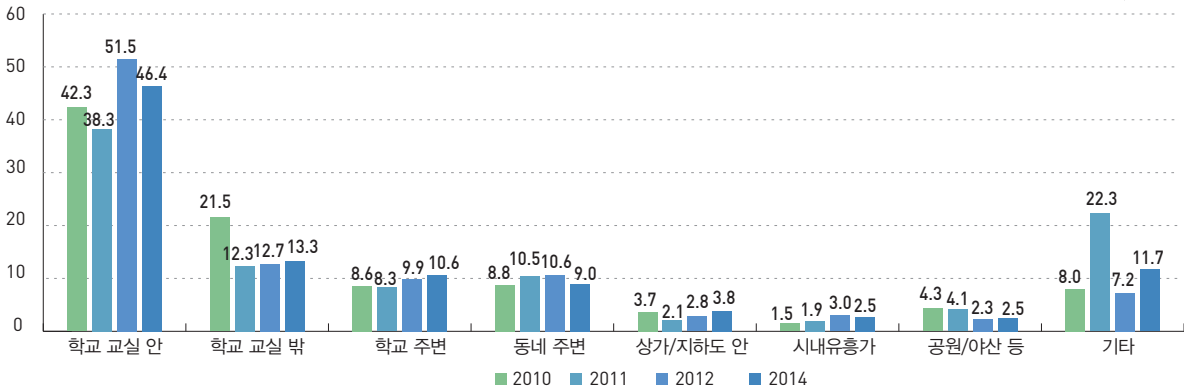


주: 피해유형은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그림 2-25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장소

(단위: %)



주: 기타는 모름 혹은 무응답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 아동 빈곤율

Child Poverty Rates

## 지표 정의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전체 아동 중 절대적 빈곤선(최저생계비) 미만인 아동(만 18세 미만)의 비율로 정의한다.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전체 아동 중 상대적 빈곤선(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인 아동의 비율로 정의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아동 수}}{\text{전체 아동 수}} \times 100$$

유의사항 절대적 아동 빈곤율 추정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 추정의 기준이 되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며,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OECD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절대적 빈곤율에 따라 아동 빈곤의 수준을 살펴보면, 농어촌가구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2006년 5.9%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4년 3.3%를 기록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공부조 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절대 빈곤율은 완화되었으나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상대적 빈곤선을 사용하여 아동의 빈곤 수준을 진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대적 아동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3년 10.0%에서 2007년 11.0%로 증가한 이후 200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4년 7.5%로 감소하였다.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의 평균 아동 빈곤율 13.3%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7.1%로 더 낮게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5	분기,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05	2014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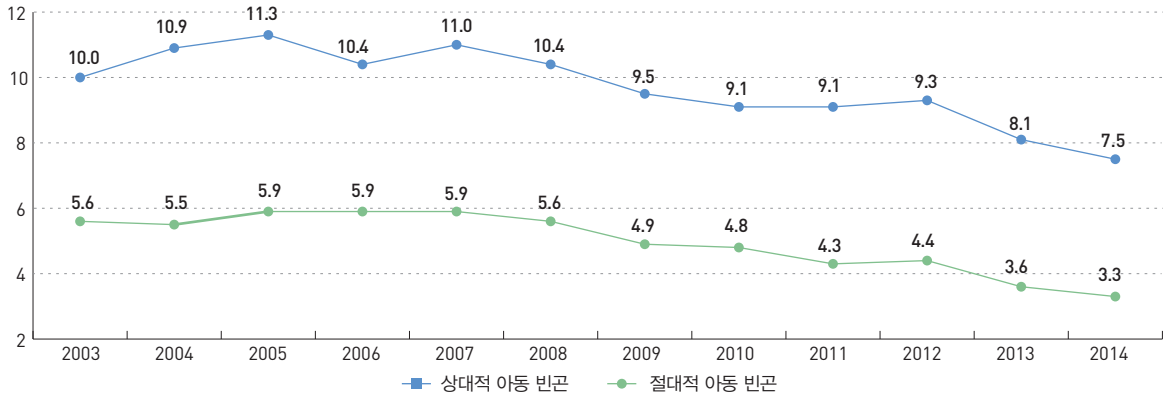
아동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모두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2014년 아동의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적용시 4.7%로 전년대비 0.6%p 하락하였으며 가처분 소득의 경우 4.0%로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다.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은 시장소득 적용 시 8.4%로 전년대비 0.7%p 하락하였으며, 가처분 소득 적용 시 7.5%로 전년대비 0.6%p 하락하였다.

###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2014

그림 2-26 절대적 아동 빈곤율과 상대적 아동 빈곤율 (2003~2014)

(단위: %)



주: 1) 농어가가구 제외, 1인가구 제외

2)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경상소득 기준이며,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표 2-6 아동 절대적 빈곤율 (전 가구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2003~2014)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 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6.7	5.6	6.4	7.8	3.9
2004	7.0	5.5	6.4	7.7	3.8
2005	8.3	5.9	7.2	9.0	4.7
2006	8.1	5.9	6.5	8.8	4.7
2007	8.2	5.9	6.7	8.5	5.4
2008	8.2	5.6	6.3	8.4	4.8
2009	8.3	4.9	5.9	9.8	5.3
2010	7.5	4.8	5.5	7.0	3.4
2011	7.1	4.3	5.2	6.5	3.2
2012	6.1	4.4	5.1	6.3	2.9
2013	5.3	3.6	4.2	7.8	3.3
2014	4.7	3.3	4.0	8.7	3.7

주: 농어가가구 제외, 1인가구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표 2-7 아동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 지출 50%, 전 가구 기준, 200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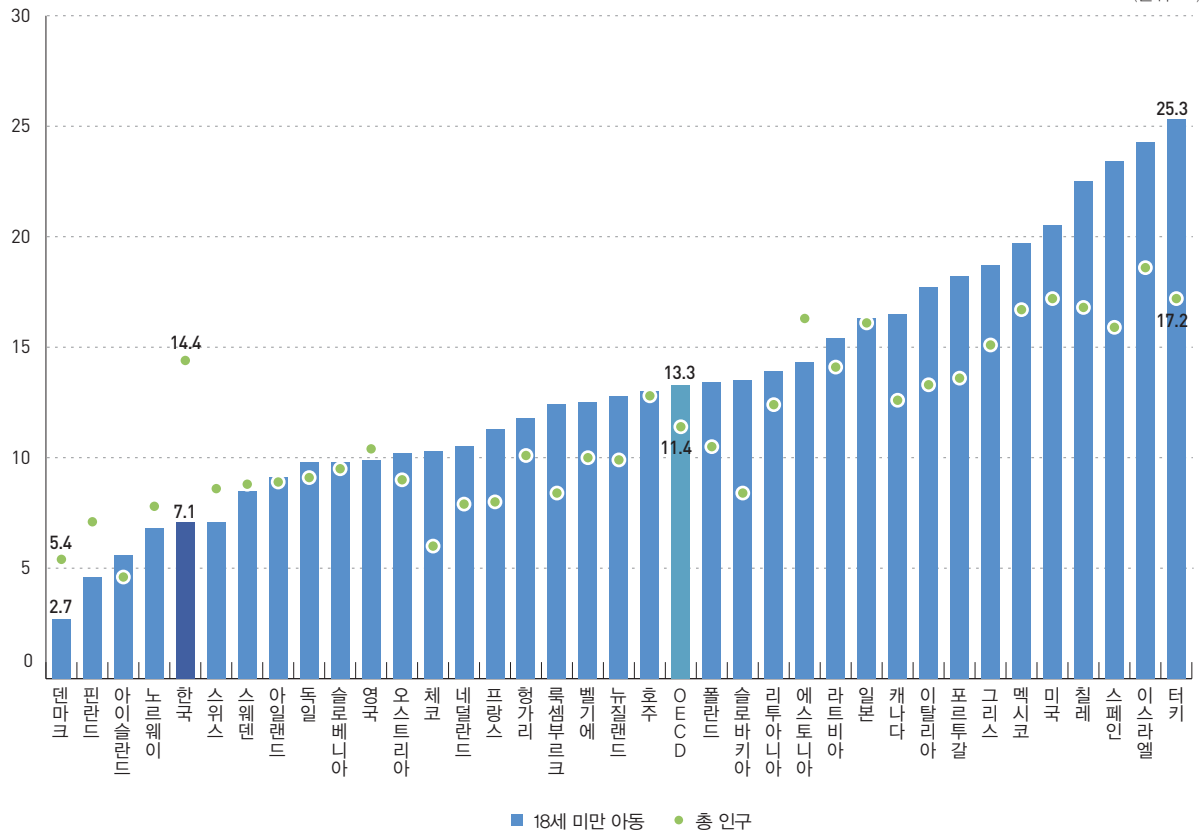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 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11.1	10.4	10.0	3.6	4.9
2004	12.4	11.0	10.9	3.8	5.4
2005	13.0	11.7	11.3	4.1	5.7
2006	12.4	11.1	10.4	4.4	6.0
2007	12.9	11.5	11.0	4.7	6.8
2008	12.1	10.8	10.4	3.8	5.9
2009	12.4	10.2	9.5	4.0	5.3
2010	11.3	9.3	9.1	3.3	5.0
2011	11.1	9.7	9.1	3.2	5.0
2012	10.5	9.4	9.3	2.7	4.5
2013	9.1	8.5	8.1	2.6	4.2
2014	8.4	7.9	7.5	3.8	4.4

주: 농어가가구 제외, 1인가구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27 OECD 국가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아동 빈곤율 비교 (2013)

(단위: %)



주: 1) 일본, 뉴질랜드는 2012년, 호주, 헝가리, 한국, 멕시코는 2014년 자료  
 2) 측정산식과 자료의 차이로 OECD 공표 수치와 빈곤통계연보 수치 간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11.15.추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 지표 정의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아동·청소년을 지칭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계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애급여를 수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는 2001년 395,110명에서 2003년 366,519명으로 감소한 이후 2006년 422,260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을 기점으로 수급 아동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졌다. 2014년 251,835명까지 감소한 수급 아동은 2015년 450,946명으로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의 자격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교육급여 수급 아동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연령별 수급자 아동의 분포를 살펴보면 학령기 청소년 연령대인 15~19세 아동 수급자 수가 125,294명에서 216,066명으로 72% 늘어났으며, 10~14세가 2014년 71,185명에서 137,462명으로 93%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청소년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 아동 수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경기(77,185명)와 서울(64,747명)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부산, 대구, 전북, 경남 순으로 수급 아동의 수가 많았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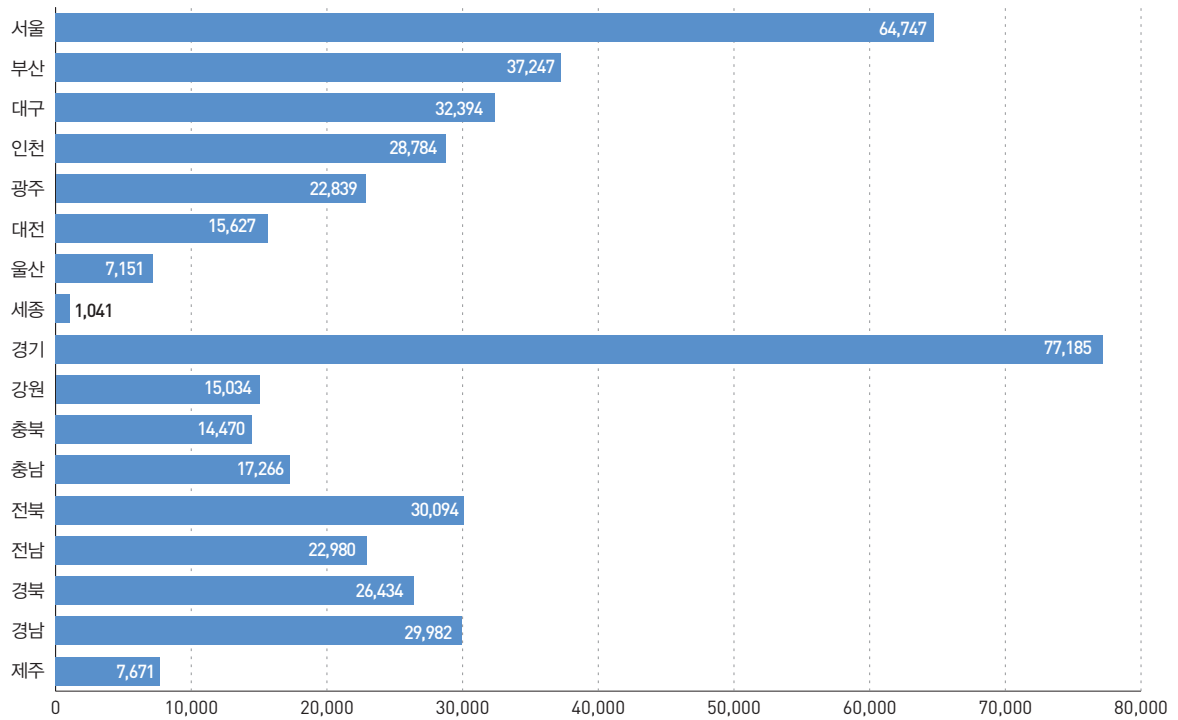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977	2015	1년

## 참고문헌

- e-나라지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2015.12.08.)

그림 2-28 시도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수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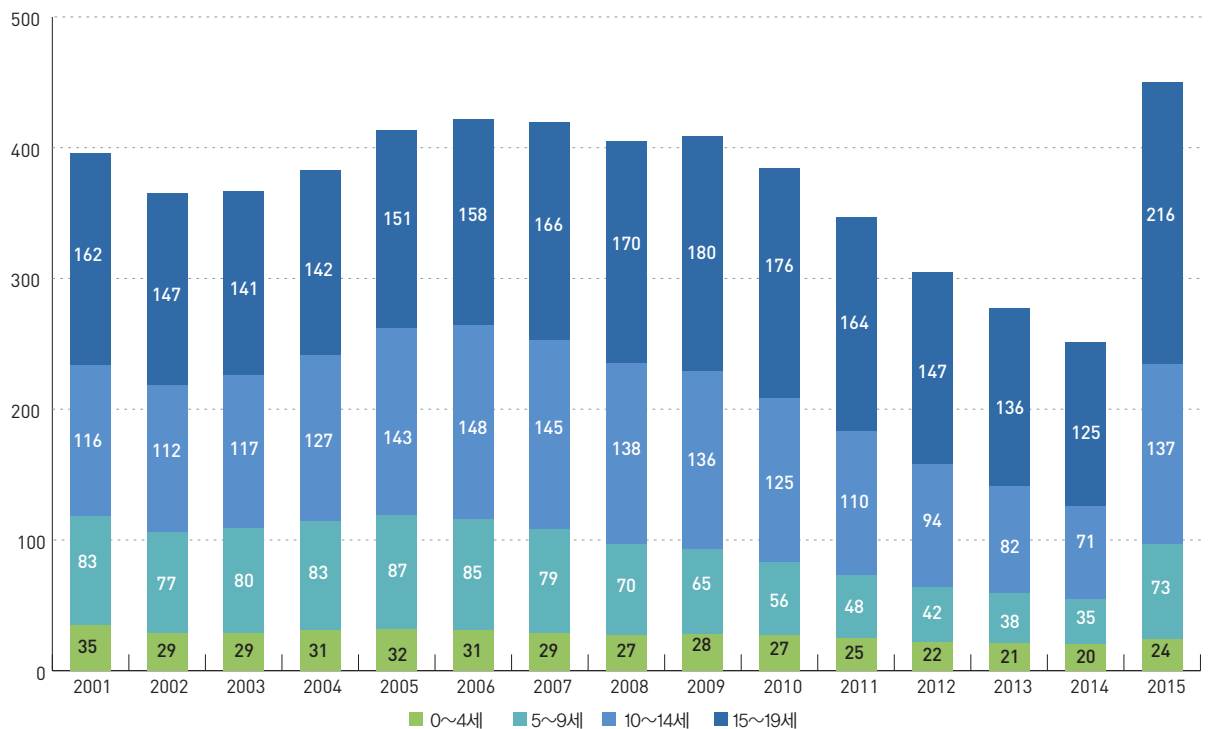
(단위: 명)



주: 0~19세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5

그림 2-29 연령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수 추이 (2001~2015)

(단위: 천 명)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각 연도

# 아동급식 지원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School Meals

07-2  
연 관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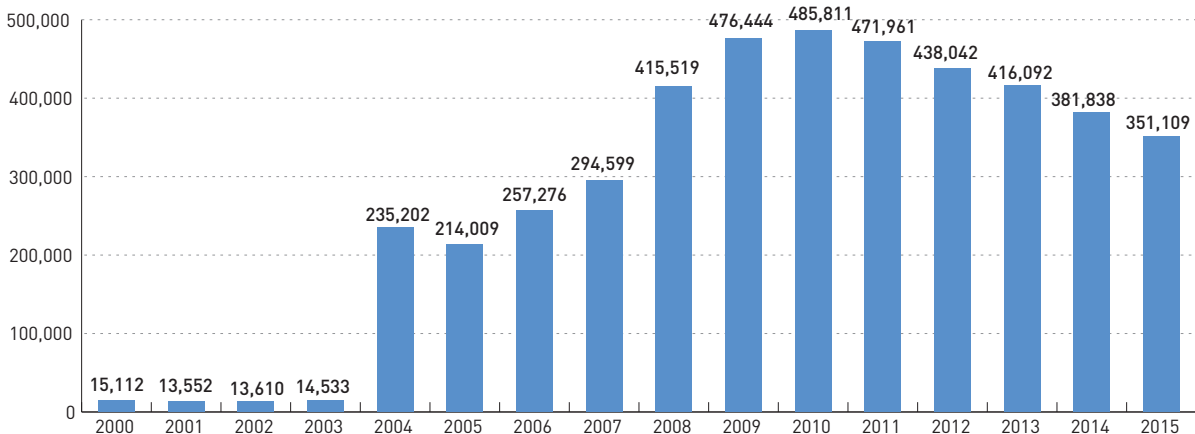
아동급식은 빈곤,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 질병, 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 방임, 유기, 부양기피 및 거부, 그 밖에 여러 가지 가정 사유로 발생하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식사를 제공받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포함하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미취학아동을 위한 조·중·석식, 취학아동을 위한 조식과 석식을 사회복지관과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공해 왔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대상 아동 1만 5천 명에게 우선적으로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방학과 토요일·공휴일 중 취학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이와 동시에, 급식지원 대상 아동을 확대하여 차상위아동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지원아동 수가 2003년 14,533명에서 2004년 235,202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8년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급식지원 아동의 증가 또한 두드러졌는데, 2007년 대비 12만 여명 증가하여 2008년 415,519 명의 아동이 급식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회복 지원에 따라 급식지원 아동 수는 201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 416,092명, 2015년 351,109명의 아동이 급식을 지원받았다.

그림 2-30 아동급식 지원 현황 (2000~2015)

(단위: 명)



주: 매년 12월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내부자료),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내부자료)	1965	2015	1년

# 나홀로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staying home alone

## 지표 정의

나홀로 아동이란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한다.

방과 후 기관 이용 초등학생 중 나홀로 아동은 방과 후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 중 기관 이용 이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 방과 후 기관 이용 이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방치된 아동(초등학교 자녀)의 수

2015년 3월 기준 방과 후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가 기관 이용 이후에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거의 없음이 63.0%, 1시간 이상은 37%로 나타나 조사대상 초등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1시간 정도 16.8%, 2시간 정도 10.3%, 3시간 정도 5.6%, 4시간 이상 4.3% 순이었다.

가구 대표 성별로 보면 3시간 이하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4시간 이상은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자녀 돌봄에 공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가구 대표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상에서는 '거의 없다'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세~30세 미만에서는 3시간 정도(38.1%)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층의 부모가 상대적으로 자녀 돌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을 보면 한 부모가족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의 비율(63.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한부모가족 자녀의 돌봄 공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05	2015	5년

## Checkpoint

2차 가족실태조사에서 '보호자 없이 초등학교 자녀가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거의 없다'는 의견이 56.6%, 나머지 43.4%는 1시간~4시간 이상까지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3차 조사(2015년)보다 방과 후 성인의 보호없이 방치되는 아동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3차 조사의 경우 방과 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2010

**표 2-8** 가구 대표 성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일평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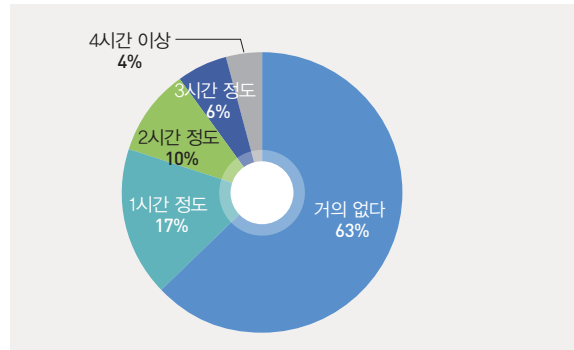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거의 없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이상	전체
남성	528 (64.4)	133 (16.2)	93 (11.3)	47 (5.8)	19 (2.3)	820 (100.0)
여성	530 (61.7)	149 (17.4)	81 (9.4)	47 (5.4)	53 (6.1)	860 (100.0)
전체	1,059 (63.0)	282 (16.8)	174 (10.3)	94 (5.6)	71 (4.3)	1,68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그림 2-31**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표 2-9** 가구 대표 연령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일평균, 2015)

(단위: 천 명, %)

구분	거의 없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이상	전체
20세~30세 미만	3 (32.1)	3 (29.8)	0 0.0	4 (38.1)	0 0.0	11 (100.0)
30세~40세 미만	465 (69.5)	122 (18.1)	33 (4.9)	32 (4.8)	18 (2.7)	670 (100.0)
40세~50세 미만	510 (57.5)	141 (15.9)	134 (15.1)	53 (6.0)	49 (5.5)	887 (100.0)
50세~60세 미만	21 (41.8)	13 (24.7)	8 (14.8)	5 (10.3)	4 (8.5)	51 (100.0)
60세~70세 미만	41 (100.0)	0 0.0	0 0.0	0 0.0	0 0.0	41 (100.0)
70세 이상	17 (82.4)	4 (17.6)	0 0.0	0 0.0	0 0.0	21 (100.0)
전체	1,059 (63.0)	282 (16.8)	174 (10.3)	94 (5.6)	71 (4.3)	1,68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표 2-10** 가구 구성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일평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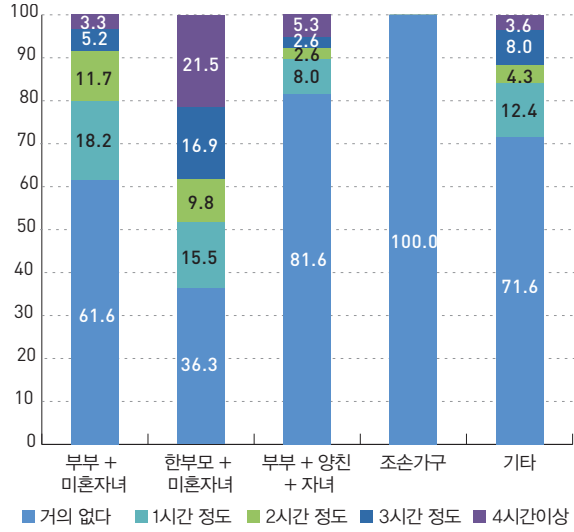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거의 없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이상	전체
부부 + 미혼자녀	837 (61.6)	248 (18.2)	159 (11.7)	70 (5.2)	45 (3.3)	1,358 (100.0)
한부모 + 미혼자녀	27 (36.3)	11 (15.5)	7 (9.8)	12 (16.9)	16 (21.5)	73 (100.0)
부부 + 양친 + 자녀	113 (81.6)	11 (8.0)	4 (2.6)	4 (2.6)	7 (5.3)	139 (100.0)
조손가구	11 (100.0)	0 0.0	0 0.0	0 0.0	0 0.0	11 (100.0)
기타	71 (71.6)	12 (12.4)	4 (4.3)	8 (8.0)	4 (3.6)	99 (100.0)
전체	1,059 (63.0)	282 (16.8)	174 (10.3)	94 (5.6)	71 (4.3)	1,68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그림 2-32** 가구 구성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Number of uses of Community Child Cen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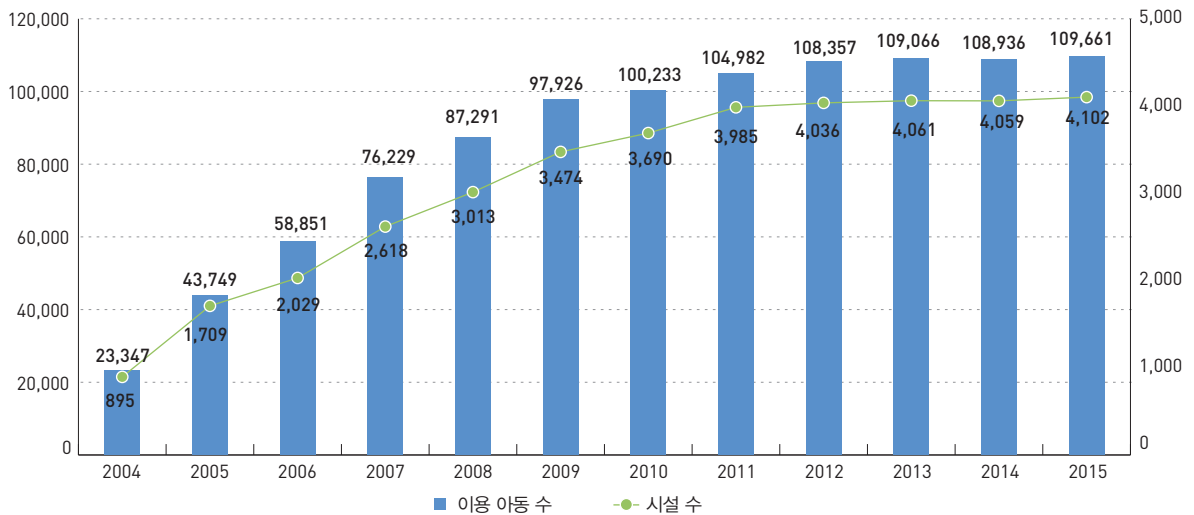
## 지표 정의

18세 미만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 등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과거의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고 전면 지원되기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방과 후 돌봄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5년 4,102개소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용 아동 수도 2004년 23,347명에서 2015년 109,66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령별 분포를 보면 75.1%가 초등학생, 17.8%가 중학생이었으며, 고등학생(4.0%)과 미취학아동(2.9%)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경제상황별로는 기초생활수급권 아동이 17.0%, 차상위계층 아동이 20.6%, 일반아동이 1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3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및 시설 수 (2004~2015)

(단위: 명,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08	2015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5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15

표 2-11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0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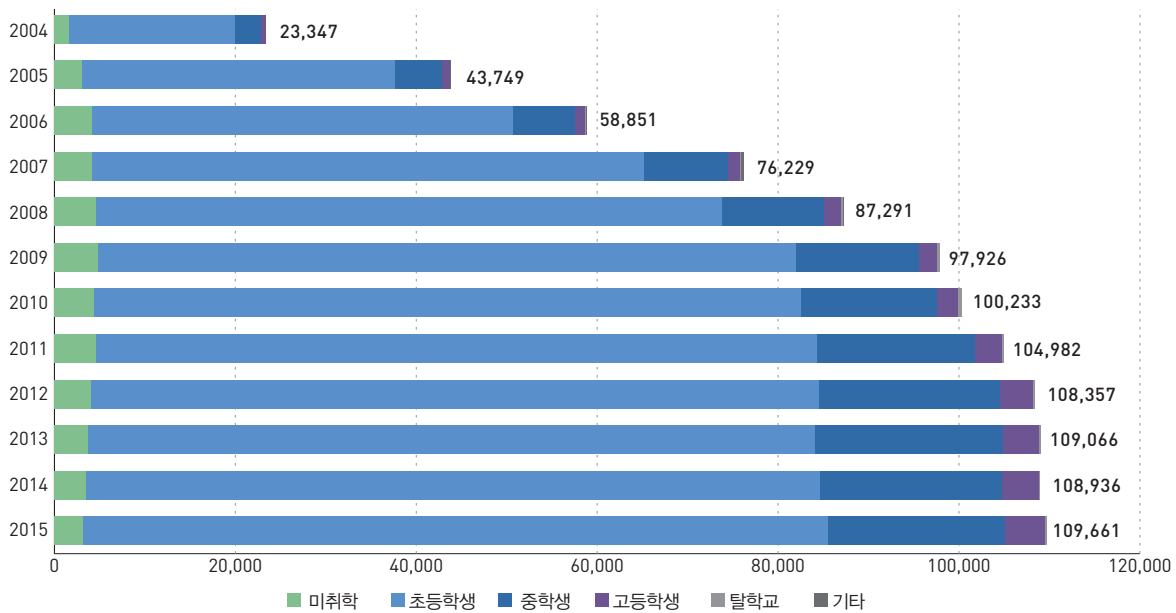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서울	104	157	210	262	302	354	367	395	404	405	409	414
부산	43	95	110	134	155	171	185	194	196	200	200	205
대구	21	28	35	60	75	115	147	171	177	188	191	200
인천	58	105	117	143	157	175	174	182	187	186	181	179
광주	39	80	92	143	164	201	218	272	278	285	292	300
대전	24	62	83	122	133	139	144	149	146	147	147	146
울산	17	33	41	49	51	54	52	56	57	58	56	56
세종	-	-	-	-	-	-	-	-	11	9	10	11
경기	192	336	402	534	601	656	679	722	735	728	751	757
강원	41	94	102	114	139	159	159	164	164	162	163	166
충북	56	102	118	137	156	176	185	201	202	199	190	188
충남	39	79	87	125	151	181	200	216	214	221	224	232
전북	59	130	147	173	212	255	267	286	288	287	281	281
전남	87	182	216	279	307	343	368	399	392	392	383	387
경북	34	91	108	143	164	206	232	252	256	261	257	259
경남	66	106	128	158	189	219	244	254	257	260	255	253
제주	15	29	33	42	57	70	69	72	72	73	69	68

주: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2-34 학령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2004~2015)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2** 학령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2004~2015)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미취학	1,564	3,023	4,133	4,127	4,585	4,838	4,376	4,578	4,028	3,714	3,533	3,133
초등학생	18,348	34,617	46,575	61,044	69,135	77,085	78,098	79,731	80,426	80,318	81,087	82,380
중학생	2,880	5,129	6,846	9,224	11,380	13,600	15,075	17,374	20,017	20,817	20,121	19,566
고등학생	555	958	1,095	1,413	1,862	2,072	2,346	3,014	3,663	4,006	4,035	4,418
탈학교	-	-	103	104	133	331	338	285	223	211	160	164
기타	-	22	99	317	196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3** 경제상황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2009~2015)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전체	명	97,926	28.2	100,233	27.2	104,982	26.3	108,357	26.8	109,066	26.9	108,936	26.8	109,661	26.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급권 아동	명	27,191	7.8	26,657	7.2	26,237	6.6	24,684	6.7	22,058	5.4	20,043	4.9	18,601	4.5
	%	27.8		26.6		25.0		22.8		20.2		18.4		17.0	
차상위 아동	명	31,792	9.2	37,801	10.2	40,147	10.1	34,627	9.6	29,824	7.3	25,566	6.3	22,558	5.5
	%	32.5		37.7		38.2		31.9		27.4		23.5		20.6	
기타 승인 아동	명	17,526	5.0	21,942	6.0	24,004	6.0	35,301	10.7	42,887	10.6	48,327	11.9	52,735	12.9
	%	17.9		21.9		22.9		32.6		39.3		44.3		48	
일반 아동	명	21,417	6.2	13,833	3.8	14,594	3.7	13,745	5.4	14,297	3.5	15,000	3.7	15,767	3.8
	%	21.8		13.8		13.9		12.7		13.1		13.8		14.4	

주: 기타 승인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아동과 차상위 인정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 중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으로, 전국 평균소득가구 70% 이하 가구 중 시·군·구청장 승인한 아동을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 요보호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Needing Protection

## 지표 정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을 말한다.

## 측정 산식

- 시·군·구청에서 보고받아 사회적 보호를 하게 된 아동의 총합

요보호 아동 수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에 의해서 1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경제가 안정화됨에 따라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5년에는 9,420명, 2010년에는 8,590명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 현재 요보호 아동은 총 4,503명으로 나타났다.

요보호 아동의 발생 원인은 주로 미혼모 발생, 부모 이혼, 학대, 아동 비행·가출 및 부랑, 부모 사망, 실직 등이다. 2015년 요보호 아동 수를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빈곤, 실직, 학대가 63.6%로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미혼모 20.7%, 비행·가출이 8%, 미아 및 기아가 7.6%를 차지했다. 과거 요보호 아동의 주요 원인이었던 미혼모가 2000년 4,000명에서 2015년 930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빈곤·실직·학대의 경우 2008년까지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으나, 빈곤·실직·학대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요보호 아동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나타난다.

요보호 아동은 시설보호를 하거나 가정보호를 하게 된다.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2008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가정보호의 비율이 높고 2008년 이후 시설보호와 가정보호가 모두 감소했으나, 이 기간 중 가정보호보다는 시설보호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아동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비중의 변화가 예상된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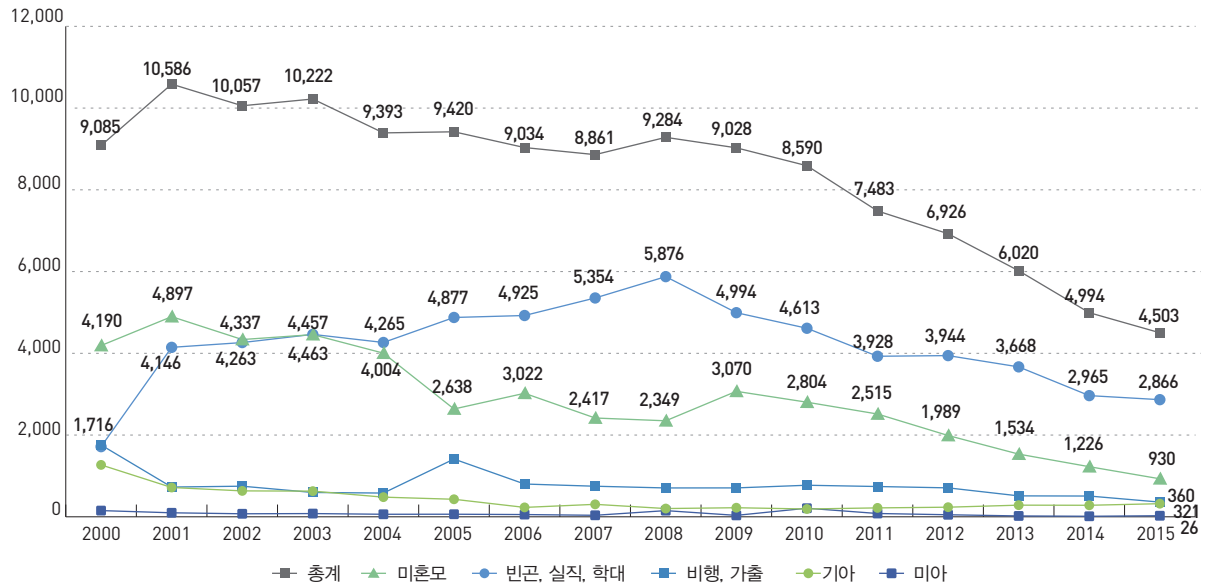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1994	2015	1년

### Checkpoint

요보호 아동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5년 요보호 아동의 수는 4,503명으로 전년대비 491명이 감소하였다. 요보호 아동의 발생 원인은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등이 63.6%, 미혼모가 20.7%로 나타나 빈곤과 가족해체, 학대 등이 주요한 발생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35 발생 원인별 요보호 아동 현황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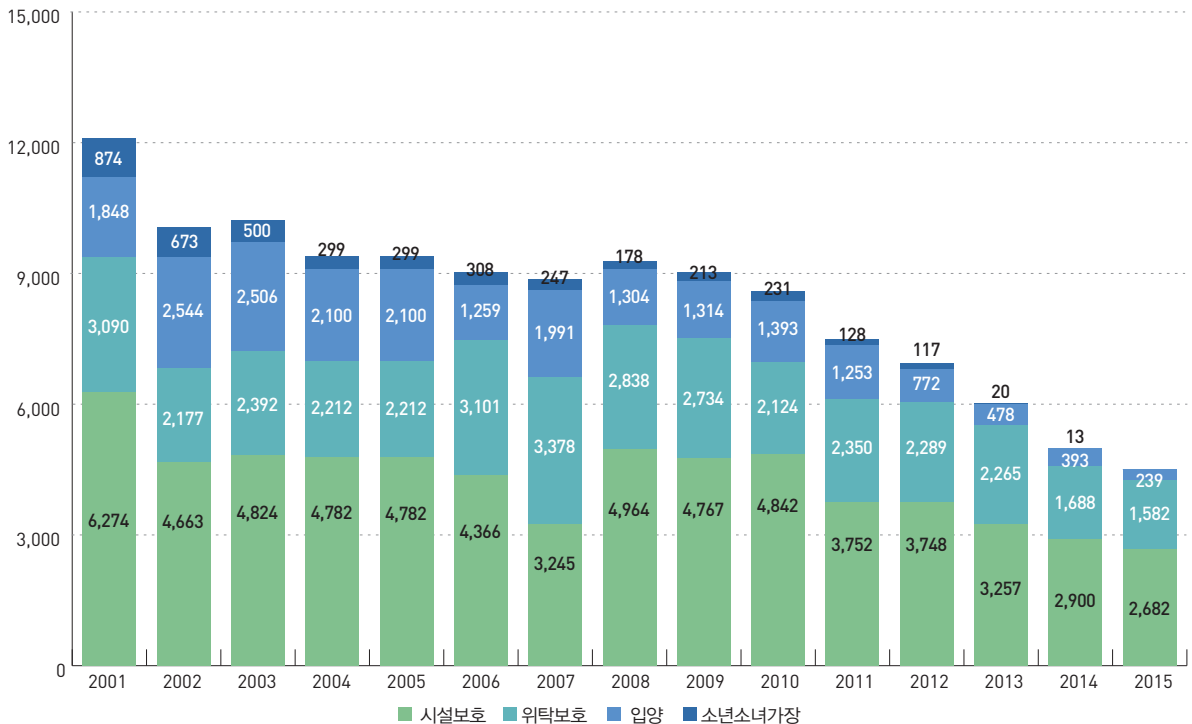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각 연도

그림 2-36 요보호 아동 조치현황 (2001~2015)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각 연도

#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Number of uses of Children Welfare Institutions

## 지표 정의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수는 생활,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아동종합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총합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2014년 기준 278개소가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2014년 전국 242개소를 설치하여 전체 아동복지시설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80.2%를 차지하던 아동양육시설의 비중은 2014년 87%로 증가하였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신설되고, 2008년에는 아동종합시설이 5개소 신설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수의 추이를 보면 1990년 23,450명에서 2014년 14,630명으로 62.4% 감소했다. 시설 유형별 보호 아동 수는 아동양육시설은 1990년 85.9%에서 2014년 91.8%로 5.2%p 증가하였고 보호치료시설 보호 아동은 2.5%에서 3.2%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아동자립지원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은 큰 변화 없이 증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증사자 현황 보고	1996	2014	반기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표 2-14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수

(단위: 개소)

	총계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1990	278	223	10			
1995	269	215	13			
2000	269	235	12	6	8	
2005	282	242	13	8	15	
2006	282	243	13	8	15	
2007	282	243	13	8	13	
2008	285	242	12	10	14	5
2009	280	239	12	11	13	3
2010	280	238	12	11	14	3
2011	280	242	12	10	12	3
2012	281	243	12	11	12	3
2013	281	243	13	11	11	3
2014	278	242	12	10	11	3

주: 1)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종합시설을 포함하며, 위 표에서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집계되지 않음.

2) 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표 2-15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수

(단위: 명)

	총계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1990	23,450	20,147	471			
1995	18,074	15,105	620			
2000	17,720	16,293	222	460	387	
2005	19,151	17,729	229	457	626	
2006	18,817	17,517	235	436	554	
2007	18,426	17,161	269	404	365	
2008	17,992	16,706	257	477	341	142
2009	17,586	16,239	262	514	368	138
2010	17,119	15,787	235	495	402	131
2011	16,523	15,313	249	455	361	113
2012	15,916	14,700	256	497	335	128
2013	15,239	14,038	250	486	359	106
2014	14,630	13,437	252	481	336	124

주: 1)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종합시설을 포함하며, 위 표에서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집계되지 않음.

2) 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under Foster Care

## 지표 정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보호받는 요보호 아동 수를 의미한다.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아동복지법 제3조).

## 측정 산식

-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총합

우리나라에서는 시설 위주의 아동보호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시설 내에서 아동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가정을 통한 아동의 보호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시설보호보다 환경적 심리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아동보호방식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 원칙에 기초하여 정부는 2005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가정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각종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왔다.

가정위탁의 유형은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관계에 따라 대리양육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아동양육), 친인척 가정위탁(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 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 2014년 기준, 11,077세대 14,385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 중 대리양육 가정의 아동이 9,550명으로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66.4%를 차지했으며 친인척 위탁가정이 26.5%, 일반 위탁가정의 아동은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17~19세 아동이 5,272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14~16세는 4,151명(28.9%), 11~13세는 1,971명(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에 비해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2009년 이후 1세~16세 연령구간의 아동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17~19세, 20세 이상 구간의 아동 및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중사자 현황 보고	1996	2014	반기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3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합업무매뉴얼, 2013

**표 2-16** 위탁가정 유형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09~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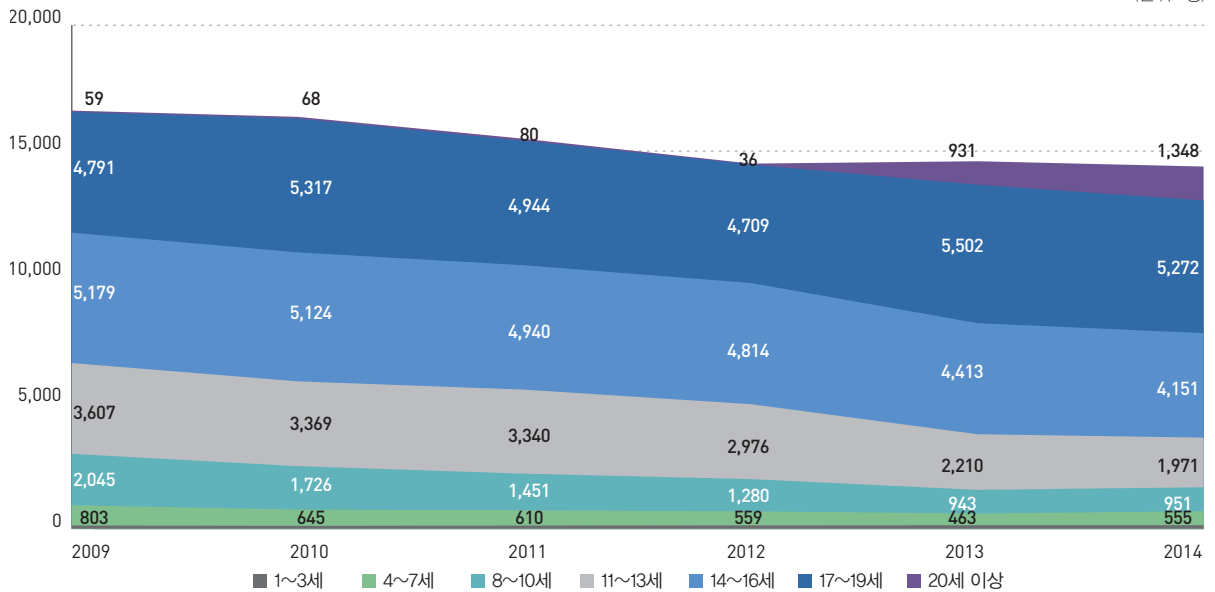
(단위: 세대, 명)

연도	구분	계		위탁가정유형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2009	세대 수	12,170	(100.0)	7,809	(64.2)	3,438	(28.2)	923	(7.6)
	아동 수	16,608	(100.0)	10,947	(65.9)	4,503	(27.1)	1,158	(7.0)
2010	세대 수	12,120	(100.0)	7,849	(64.8)	3,365	(27.8)	906	(7.5)
	아동 수	16,359	(100.0)	10,865	(66.4)	4,371	(26.7)	1,123	(6.9)
2011	세대 수	11,630	(100.0)	7,463	(64.2)	3,351	(28.8)	816	(7.0)
	아동 수	15,486	(100.0)	10,205	(65.9)	4,260	(27.5)	1,021	(6.6)
2012	세대 수	11,030	(100.0)	7,230	(65.5)	3,037	(27.5)	763	(6.9)
	아동 수	14,502	(100.0)	9,732	(67.1)	3,831	(26.4)	939	(6.5)
2013	세대 수	11,169	(100.0)	7,294	(65.3)	3,086	(27.6)	789	(7.1)
	아동 수	14,596	(100.0)	9,776	(67.0)	3,843	(26.3)	977	(6.7)
2014	세대 수	11,077	(100.0)	7,162	(64.7)	3,089	(27.9)	826	(7.5)
	아동 수	14,385	(100.0)	9,550	(66.4)	3,816	(26.5)	1,019	(7.1)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2-37** 연령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09~2014)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표 2-17** 연령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09~2014)

(단위: 명)

연도	계	보호 아동 연령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2009	16,608	124	803	2,045	3,607	5,179	4,791	59
2010	16,359	110	645	1,726	3,369	5,124	5,317	68
2011	15,486	121	610	1,451	3,340	4,940	4,944	80
2012	14,502	128	559	1,280	2,976	4,814	4,709	36
2013	14,596	134	463	943	2,210	4,413	5,502	931
2014	14,385	137	555	951	1,971	4,151	5,272	1,348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 아동공동생활가정보호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in Grouphomes

09-3  
연 관

## 지표 정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복지시설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

## 측정 산식

-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총 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5~7인의 소규모 단위의 가정과 같은 생활시설(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숙사)에서 보호를 제공한다. 1995년 기존의 대규모 시설에 의한 아동보호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보호형태로써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제도적 도입이 처음으로 논의되었으며,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10개 공동생활가정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공동생활가정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 348개소의 그룹홈이 2014년 476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보호 아동의 수도 2008년 1,664명에서 2014년 2,588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18 아동공동생활가정 수 및 연령별 보호 아동 현황 (2008~2014)

(단위: 개소, 명)

연도	시설 수	보호 아동 재학 유형						
		계	0~7세 (미취학)	8~13세 (초등)	14~16세 (중등)	17~19세 (고등)	20세 이상 (대재)	기타
2008	348	1,664	183	708	435	287	21	30
2009	397	1,993	230	842	518	300	23	80
2010	416	2,127	195	894	543	388	42	65
2011	460	2,241	254	843	619	402	51	72
2012	489	2,438	291	848	682	481	50	86
2013	480	2,481	280	884	670	546	59	42
2014	476	2,588	300	878	661	640	79	3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중사자 현황 보고	1996	2014	반기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 국내외 입양아동 수

Number of Adopted Children

## 지표 정의

국내 및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의미하며, 국내입양의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 국내 및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총 합

우리나라는 2000년에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정책 추진,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등으로 전체 입양아동에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입양의 비율은 국외입양의 비율을 앞지르고 있다. 전체 입양아동 수는 2000년 4,046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1,057명이었으며 이중 국내입양은 683명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전체입양의 감소폭과 추세는 국외입양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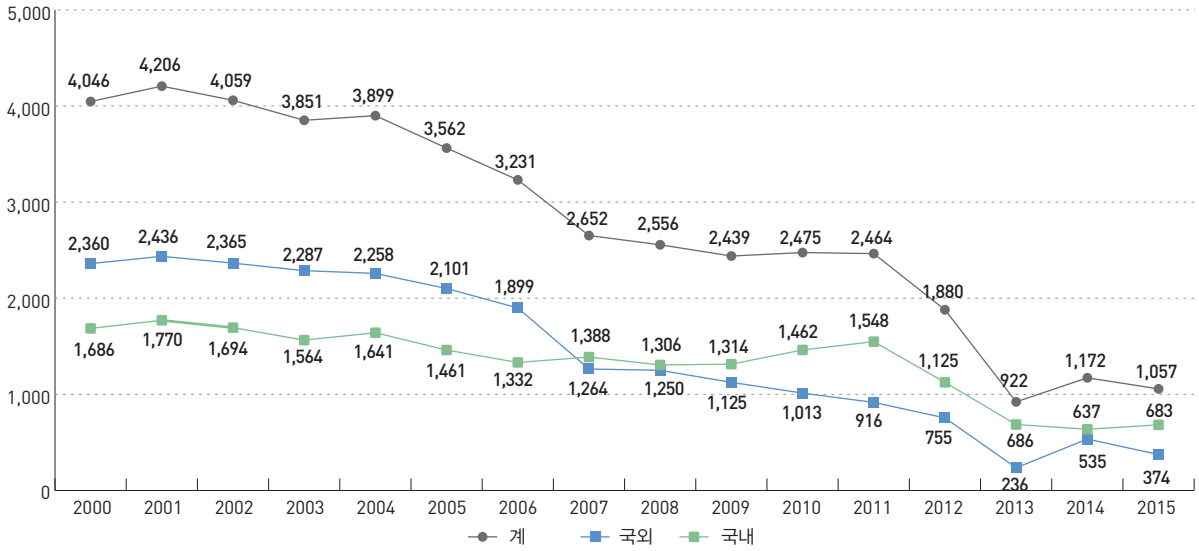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1994	2015	1년

## Checkpoint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입양아 수 감소 현상은 2013년 922명에서 2014년 1,172명으로 반등세를 보였으나 2015년 1,057명으로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입양아 성별 비율의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남자 아이의 경우 661명으로 2013년 397명에 비해 1.7배 증가했으며 여자아이의 경우 511명으로 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8 국내외 입양아동 수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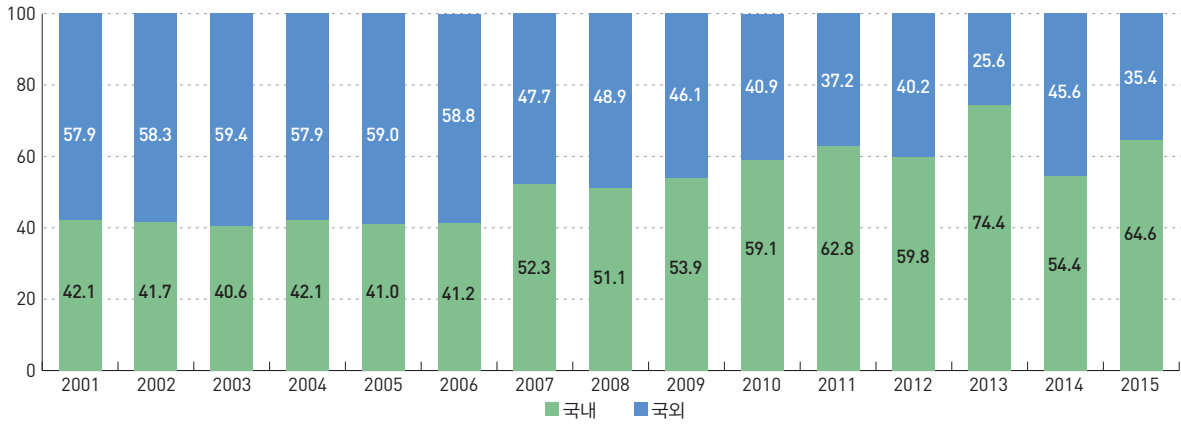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2015

그림 2-39 국내외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2001~2015)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2015

# 입양아동 관련급여 수급자

Number of Recipients of Benefits related to Adopted Children

## 지표 정의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 15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입양아동 관련급여 수급자는 입양 관련급여 수급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측정 산식

- 입양 관련급여 수급자의 총합

2015년 12월 기준 입양관련급여 수급자의 수는 12,872명으로 2014년의 12,255명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장애유무별로는 2015년 12월 기준 입양된 비장애아동 급여 수급자 수(12,510명)가 장애아동 급여 수급자 수(362명)보다 약 3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입양아동 관련급여 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Checkpoint** 2015년 입양관련 월평균 급여 수급자의 수는 약 12,562명으로 2014년의 약 11,947명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 2015

표 2-19 연도별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계	11,583	12,255	12,872

주: 시설수급자 포함

표 2-20 월별·시도별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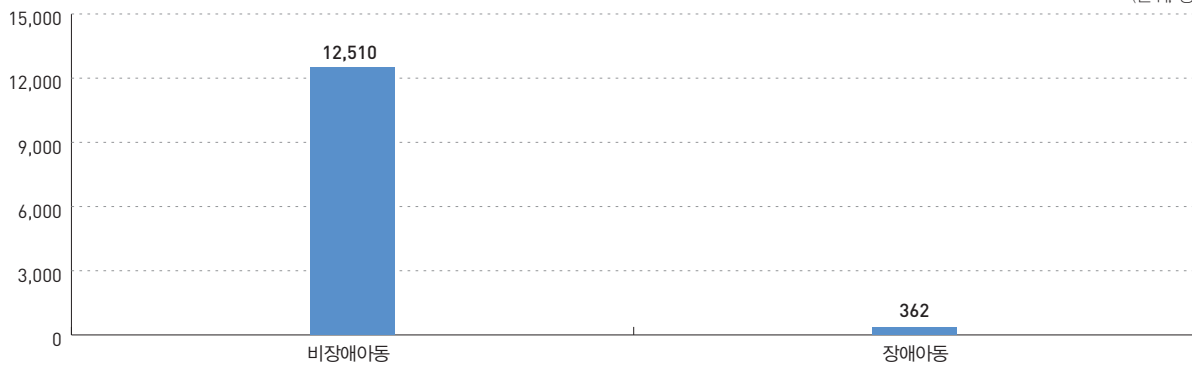
(단위: 명)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680	1,669	1,677	1,681	1,689	1,695	1,703	1,710	1,715	1,712	1,722	1,724
부산	628	628	638	643	644	647	651	655	661	665	669	671
대구	404	403	406	410	416	422	422	424	427	429	433	431
인천	823	826	823	820	818	819	818	821	828	836	843	845
광주	399	400	402	403	403	401	408	408	407	406	408	410
대전	351	352	351	353	354	356	355	355	357	355	354	354
울산	220	218	221	222	222	221	222	222	222	223	219	221
세종	63	67	68	69	70	71	75	78	80	84	85	89
경기	3,402	3,427	3,439	3,457	3,470	3,481	3,502	3,520	3,530	3,543	3,552	3,580
강원	455	460	463	467	467	469	469	473	473	476	478	479
충북	403	403	401	398	400	398	400	402	409	411	415	419
충남	636	630	634	637	636	640	642	640	641	643	647	648
전북	656	665	668	671	671	677	679	680	683	688	688	693
전남	527	528	536	540	540	540	541	541	545	550	549	553
경북	578	578	581	584	587	594	604	610	617	621	624	634
경남	852	860	862	863	865	869	875	884	883	891	899	904
제주	211	213	211	212	212	216	216	216	217	218	217	217
계	12,288	12,327	12,381	12,430	12,464	12,516	12,582	12,639	12,695	12,751	12,802	12,872

주: 시설수급자 포함

그림 2-40 장애유무별 입양 관련급여 수급자 수 (2015.12 기준)

(단위: 명)



주: 시설수급자 포함

#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care Service related to Adopted Children

## 지표 정의

입양특례법에 의거하여 만14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지표는 입양아동 관련급여 수급자 중 만 5세 이하 아동 중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이용 현황을 보여준다.

## 측정산식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양아동 관련급여 수급자 중 만 5세 이하 아동의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수급자 수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게 양육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수급자 중 만 5세 이하 아동의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를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보육료의 평균 수급자 수가 37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양육수당이 342명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08명 중 양육수당을 이용한 입양아동은 412명, 보육료를 이용한 수급자는 450명 그리고 유아학비는 46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때의 시도별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양육수당 112명, 보육료 148명 그리고 유아학비 11명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가 120명으로 양육수당 59명, 보육료 53명 그리고 유아학비 8명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입양아동의 보육관련 복지급여의 수급변화를 살펴보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를 이용하는 입양아동 수는 2013년 460명에서 2014년 687명 그리고 2015년 908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수급자가 급증하였다. 입양아동 중 양육수당 수급자는 2014년 157명에서 2015년은 412명으로 증가하였다. 보육료 수급자는 2013년 188명, 2014년 272명, 2015년 450명으로 급증하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3	2015	1년

### Checkpoint

입양아동 중 만 5세 이하의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월평균 수급자 수는 769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급여별 월평균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보육료 375명, 양육수당 342명, 그리고 유아학비 51.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 5세 이하의 입양아동 수급자들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의 수급자 평균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이 103명으로 나타났다.

표 2-21 만 5세 이하 입양아동 관련 수급자 중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수급자 수 (2013~2015)

(단위: 명)

구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서울	75	22	36	17	99	43	42	14	120	59	53	8
부산	27	9	8	10	33	16	12	5	49	23	24	2
대구	15	10	3	2	22	10	11	1	36	20	16	-
인천	28	11	13	4	45	28	13	4	53	27	23	3
광주	11	8	2	1	24	13	10	1	27	12	15	-
대전	12	4	5	3	17	7	8	2	25	11	13	1
울산	10	2	4	4	15	7	5	3	20	11	6	3
세종	0	0	0	0	1	0	1	0	13	7	6	-
경기	137	42	58	37	209	98	85	26	271	112	148	11
강원	19	6	10	3	25	10	13	2	31	14	16	1
충북	10	6	2	2	22	13	7	2	34	19	14	1
충남	15	6	8	1	27	16	8	3	32	13	17	2
전북	37	10	14	13	38	17	12	9	58	28	24	6
전남	25	9	8	8	49	25	19	5	69	33	33	3
경북	21	6	8	7	33	15	13	5	36	12	21	3
경남	15	5	8	2	21	8	11	2	25	9	14	2
제주	3	1	1	1	7	5	2	0	9	2	7	-
합계	460	157	188	115	687	331	272	84	908	412	450	46

표 2-22 만 5세 이하 입양아동 관련 수급자 중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서울	103	102	90	95	97	99	100	102	107	110	115	120	103
부산	33	35	33	36	37	38	40	43	45	46	48	49	40
대구	22	22	19	22	27	31	32	32	34	34	35	36	29
인천	46	48	43	44	44	44	47	47	48	50	52	53	47
광주	26	28	28	30	28	31	29	29	28	27	27	27	28
대전	17	18	18	19	18	18	19	20	20	21	23	25	20
울산	15	15	14	13	14	14	16	17	17	19	20	20	16
세종	1	3	3	3	5	6	7	7	8	10	12	13	7
경기	211	212	201	206	219	219	227	239	250	256	263	271	231
강원	26	27	23	24	25	25	25	28	28	30	31	31	27
충북	22	22	20	20	20	21	25	26	29	29	29	34	25
충남	26	26	22	23	24	28	29	30	29	29	31	32	27
전북	37	39	35	39	43	44	45	49	52	53	55	58	46
전남	55	58	53	54	58	60	61	63	64	64	67	69	61
경북	33	33	27	28	28	32	33	33	34	37	37	36	33
경남	22	21	21	21	21	21	21	20	21	23	23	25	22
제주	8	8	8	8	8	9	9	9	9	9	9	9	9
합계	703	717	658	685	716	740	765	794	823	847	877	908	769

표 2-23 만 5세 이하 입양아동 관련 수급자 중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서울	47	41	15	44	43	15	41	44	5	46	44	5	45	47	5	44	50	5
부산	16	12	5	18	12	5	16	15	2	19	15	2	19	16	2	18	18	2
대구	9	11	2	8	12	2	7	12	-	10	12	-	12	15	-	17	14	-
인천	28	14	4	24	18	6	21	19	3	22	19	3	21	20	3	20	21	3
광주	6	9	2	7	9	2	5	12	1	5	13	1	5	12	1	6	11	1
대전	15	10	1	18	9	1	16	12	-	18	12	-	18	10	-	21	10	-
울산	7	5	3	7	5	3	7	5	2	6	5	2	8	4	2	7	5	2
세종	-	1	-	-	3	-	-	3	-	-	3	-	1	4	-	1	5	-
경기	99	88	24	98	90	24	85	104	12	86	108	12	89	118	12	88	119	12
강원	9	14	3	9	15	3	8	13	2	9	13	2	10	13	2	9	15	1
충북	13	7	2	11	9	2	9	10	1	9	10	1	9	10	1	10	10	1
충남	16	8	2	15	8	3	12	8	2	13	8	2	14	8	2	16	10	2
전북	15	13	5	14	13	6	11	13	3	10	15	3	10	15	3	11	18	3
전남	8	12	2	6	13	2	6	13	2	6	13	2	6	13	2	6	13	2
경북	17	11	9	15	15	9	14	14	7	18	14	7	20	16	7	19	18	7
경남	32	17	6	35	17	6	27	23	3	27	24	3	28	27	3	30	27	3
제주	6	2	-	6	2	-	5	3	-	5	3	-	5	3	-	4	5	-
합계	343	275	85	335	293	89	290	323	45	309	331	45	320	351	45	327	369	44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서울	43	51	6	44	52	6	47	54	6	51	53	6	55	54	6	59	53	8
부산	18	20	2	21	20	2	21	22	2	21	23	2	23	23	2	23	24	2
대구	17	15	-	16	16	-	18	16	-	19	15	-	20	15	-	20	16	-
인천	21	23	3	21	23	3	21	24	3	23	24	3	26	23	3	27	23	3
광주	7	11	1	7	12	1	7	12	1	8	12	1	9	13	1	11	13	1
대전	18	11	-	16	13	-	15	13	-	14	13	-	13	14	-	12	15	-
울산	7	7	2	9	6	2	9	6	2	10	6	3	11	6	3	11	6	3
세종	2	5	-	2	5	-	3	5	-	5	5	-	7	5	-	7	6	-
경기	92	124	11	97	131	11	99	140	11	97	148	11	107	145	11	112	148	11
강원	9	15	1	10	17	1	10	17	1	11	18	1	13	17	1	14	16	1
충북	14	10	1	13	12	1	15	13	1	14	14	1	15	13	1	19	14	1
충남	15	12	2	15	13	2	12	15	2	12	15	2	13	16	2	13	17	2
전북	11	19	3	11	19	3	11	20	3	13	21	3	13	21	3	12	21	3
전남	5	14	2	5	13	2	5	14	2	7	14	2	7	14	2	9	14	2
경북	21	17	7	22	20	7	24	21	7	25	22	6	26	23	6	28	24	6
경남	28	30	3	29	31	3	31	30	3	28	33	3	31	33	3	33	33	3
제주	3	6	-	2	7	-	2	7	-	2	7	-	2	7	-	2	7	-
합계	331	390	44	340	410	44	350	429	44	360	443	44	391	442	44	412	450	46

# 아동·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Family

## 지표 정의

OECD 기준 아동·가족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출산전후 휴가(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영유아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가사지원/시설지원(home help/accommodation), 기타 현물지원(other benefits in kind)으로 구성된다.

\* OECD 기준 사회복지 지출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상별(노인, 장애인 및 아동가족 등) 및 영역별(보건,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등)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로 인한 지출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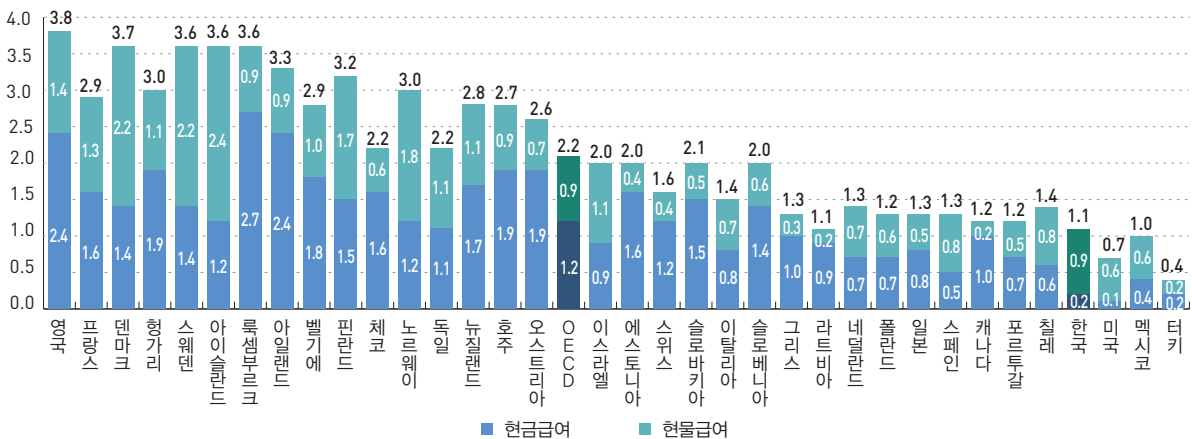
## 측정 산식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출산전후 휴가(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영유아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가사지원/시설지원(home help/accommodation), 기타 현물지원(other benefits in kind)에 대한 지출의 총합

2013년 기준 한국의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은 GDP 대비 1.1%에 불과했으며 OECD 평균 2.2%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지출은 극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0~5세 돌봄 및 보육에 정부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0.8%), 보육예산을 제외할 경우 아동복지예산은 더욱 낮아진다. 실제로 2013년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 지출예산은 0.2%로 OECD 평균 1.4%에 비교해 13.3%에 그치고 있다. 또한 노인(2.2%)이나 장애인(0.6%)에 대한 복지 지출에 비교해서도 아동가족복지 지출의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미래의 사회적, 공동체적 이익을 담보하기 때문에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특히, 아동발달의 적정단계와 시기에 표적화된 개입은 사회의 경제발전과 지속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가 되므로, 아동복지 예산과 지출을 적정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41 OECD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2013)

(단위 : GDP%)



자료 : OECD SOCX Database, (2016, 11, 15)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Family Statistics	-	2013	1년

## 참고문헌

•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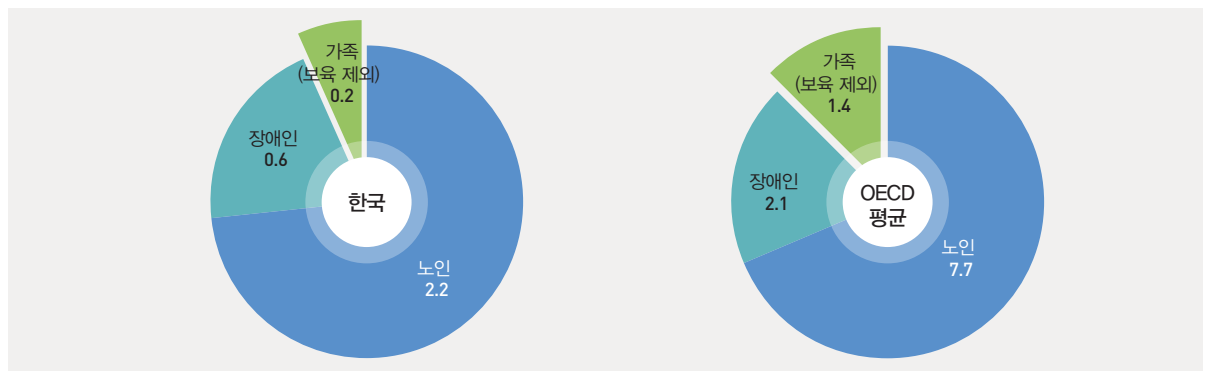


**표 2-24** 연도별 OECD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 (단위: GDP%)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호주	2.3	2.1	1.8	1.8	1.9	1.9
오스트리아	2.3	2.3	2.2	2.0	1.9	1.9
벨기에	1.7	1.7	1.8	1.8	1.8	1.8
캐나다	0.7	0.9	1.0	1.0	1.0	1.0
칠레	0.5	0.4	0.7	0.6	0.6	0.6
체코	1.3	1.5	1.9	1.7	1.6	1.6
덴마크	1.5	1.5	1.6	1.5	1.4	1.4
에스토니아	1.5	1.4	2.1	1.8	1.6	1.6
핀란드	1.7	1.5	1.6	1.5	1.5	1.5
프랑스	1.4	1.3	1.6	1.5	1.6	1.6
독일	1.3	1.3	1.2	1.2	1.1	1.1
그리스	0.6	0.7	0.9	1.0	1.0	-
헝가리	1.9	1.8	2.2	2.1	2.0	1.9
아이슬란드	1.0	1.2	1.4	1.2	1.1	1.2
아일랜드	1.6	2.1	2.9	2.6	2.6	2.4
이스라엘	1.6	1.0	1.0	1.1	1.1	0.9
이탈리아	0.6	0.6	0.7	0.7	0.7	0.8
일본	0.2	0.3	0.8	0.9	0.8	0.8
한국	0.0	0.0	0.0	0.0	0.0	0.2
라트비아	1.2	1.0	1.3	0.9	0.8	0.9
룩셈부르크	2.5	3.1	3.4	3.0	2.9	2.7
멕시코	0.2	0.3	0.4	0.4	0.4	0.4
네덜란드	0.7	0.6	0.7	0.7	0.7	0.7
뉴질랜드	2.1	1.9	2.3	2.2	2.1	1.7
노르웨이	1.8	1.5	1.3	1.3	1.2	1.2
폴란드	1.0	0.9	0.8	0.7	0.7	-
포르투갈	0.6	0.7	0.9	0.8	0.8	0.7
슬로바키아	1.5	1.5	1.6	1.6	1.6	1.5
슬로베니아	1.5	1.3	1.6	1.6	1.5	1.4
스페인	0.3	0.5	0.6	0.5	0.5	0.5
스웨덴	1.4	1.4	1.4	1.4	1.4	1.4
스위스	1.1	1.2	1.2	1.1	1.2	1.2
터키	0.1	0.2	0.2	0.2	0.2	0.2
영국	1.7	2.0	2.5	2.6	2.6	2.4
미국	0.1	0.1	0.1	0.1	0.1	0.1
OECD	1.2	1.2	1.4	1.3	1.3	1.2

주: 그리스, 폴란드는 2013년 수치가 집계되지 않음.  
 자료: OECD SOCX Database, (2016, 11, 15)

**그림 2-42**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 지출 (2013) (단위: GDP%)



자료: OECD SOCX Database, (2016, 11, 15)

# 2 아동 · **노인** · 장애인

## 노인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노인 건강수준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노인의 학대경험률	
노인 의료이용	노인 진료비	노인의 1인당 외래방문 횟수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노인 장기요양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장기요양기관 수	장기요양 기관의 전문인력

# 65세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t 65 years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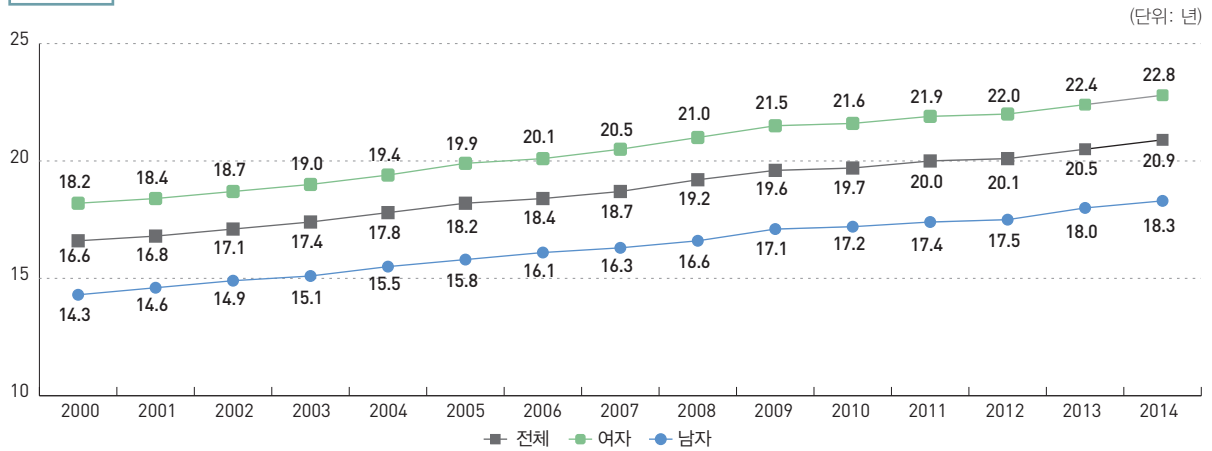
65세 기대여명은 65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65세 이후의 총 생존연수 (정지인구)}}{\text{65세의 생존인구 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65세 기대여명은 2000년 16.6년에서 2010년 19.7년, 2014년에는 20.9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65세 기대여명의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22.0세)가 가장 높고, 울산(19.5세)이 가장 낮다. 2008년 대비 2014년의 기대여명 증가율에는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 증가율 최고치를 기록한 지자체는 부산으로 11.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반면 제주의 경우 3.9%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OECD 국가의 65세 기대여명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림 2-43 성별 65세 기대여명 (2000~2014)



주: 2016. 10. 2. 기준임.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명표	1971	2014	1년

## Checkpoint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건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2014년 '65세 기대여명'은 20.9세로 2013년의 20.5세에 비해 0.4세 높아졌다. 남자는 18.0세에서 18.3세로, 여자는 22.4세에서 22.8세로 각각 0.3세, 0.4세씩 높아졌다.

##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표 2-25 연도별·시도별 65세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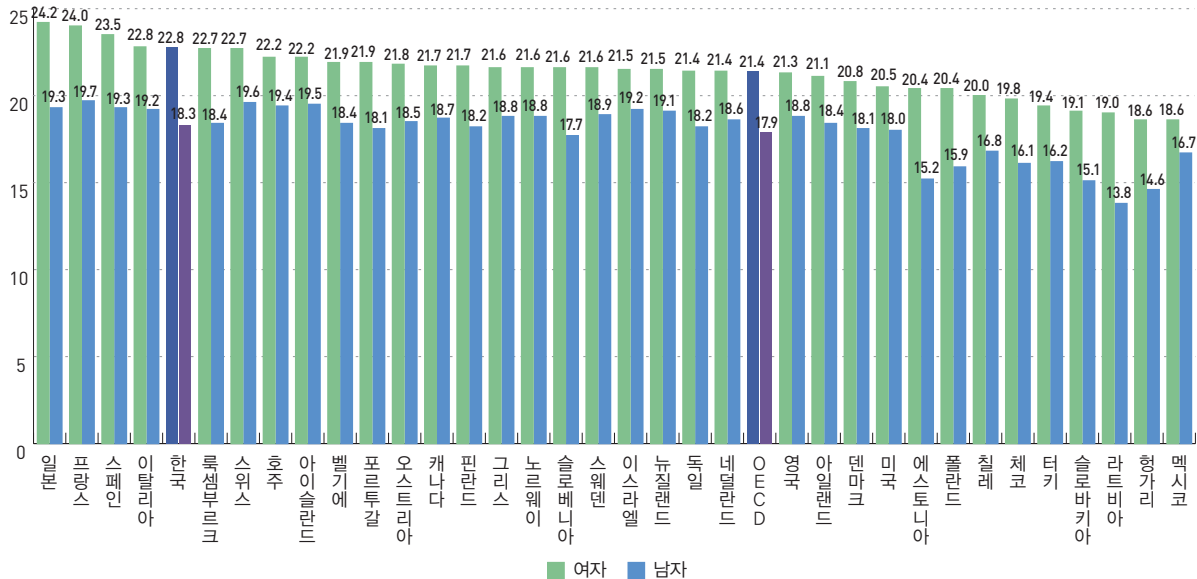
(단위: 년, %)

	전체				남자				여자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전국	19.2	20.0	20.9	8.9%	16.6	17.4	18.3	10.4%	21.0	21.9	22.8	8.3%
서울	20.2	20.9	21.6	7.2%	17.9	18.5	19.5	8.9%	21.9	22.7	23.3	6.7%
부산	18.1	19.2	20.2	11.9%	15.6	16.8	18.0	15.4%	19.9	21.0	21.9	10.2%
대구	18.7	19.5	20.5	9.6%	16.2	17.1	18.2	12.2%	20.4	21.3	22.1	8.2%
인천	19.2	19.6	20.6	7.0%	16.7	17.3	18.2	9.1%	21.0	21.3	22.3	6.2%
광주	18.9	19.4	20.3	7.3%	16.5	16.8	18.0	8.7%	20.6	21.4	22.0	7.0%
대전	19.1	20.0	20.8	9.0%	17.0	17.6	18.6	9.9%	20.6	21.9	22.4	8.8%
울산	17.9	18.7	19.5	8.5%	15.6	15.9	17.3	11.4%	19.5	20.7	20.9	7.6%
세종	-	-	21.2	-	-	-	18.5	-	-	-	23.3	-
경기	19.5	20.3	21.1	8.1%	17.1	17.8	18.7	9.2%	21.2	22.1	22.9	8.0%
강원	18.9	20.3	20.7	9.5%	16.4	17.7	17.9	9.7%	20.8	22.3	22.9	9.7%
충북	18.7	19.5	20.5	9.4%	16.2	16.8	17.8	10.3%	20.7	21.5	22.5	8.8%
충남	19.4	20.3	20.9	7.8%	16.7	17.7	18.2	8.8%	21.4	22.5	23.1	7.6%
전북	18.9	20.1	20.9	10.3%	16.3	17.4	18.1	10.9%	20.9	22.2	23.0	10.0%
전남	19.1	19.7	20.8	9.1%	16.1	16.7	17.5	8.9%	21.3	22.1	23.4	9.7%
경북	18.9	19.5	20.6	8.8%	16.1	16.8	17.7	9.9%	21.0	21.7	22.8	8.3%
경남	18.3	19.5	20.4	11.2%	15.3	16.6	17.5	14.0%	20.5	21.5	22.5	9.5%
제주	21.2	21.6	22.0	3.9%	17.4	17.9	18.9	8.9%	23.5	24.1	24.0	2.3%

주: 세종은 2008년과 2011년의 자료가 없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그림 2-44 OECD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단위: 년)



주: 2013년 기준임. 단, 캐나다는 2011년 기준임.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 노인의 ADL 제한율

Rate of ADL Limitations among adults aged 65 and over

## 지표 정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 노년기에 있어서 신체적 독립성의 유지능력과 자립적 노후생활의 영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지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도를 측정하는데도 활용된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옷 입기, 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의 7개 항목으로 조사됨. 한편,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구매하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먹기의 10개 항목으로 조사됨.

## 측정 산식

$$\frac{\text{ADL 제한 응답 노인 수}}{\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7개 항목 중 한 개라도 제한을 경험한 비율은 6.9%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까지 고려하면 18.2%가 기능상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었다. ADL과 IADL의 조사항목은 변화해왔다. 그래서 개별항목 간 비교 분석보다는 기능제한 여부의 변화 분석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 여부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년 동안 ADL 및 IADL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ADL의 제한상태를 살펴보면, 동지역에 비하여 읍면지역이,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활동 제한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제한율이 높고, 제한 항목 수(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IADL)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4	3년

## Checkpoint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ADL(일상생활수행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ADL 제한 경험률은 1994년 32.8%에서 2004년 6.9%, 2014년 6.9%로 점차 줄어들었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제한 경험 역시 1994년 17.4%에서 2004년 12.4%, 2014년 11.3%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지난 20년간의 변화는 노인의 기능상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게 한다.

표 2-26 연도별 노인(65세 이상)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단위: %)

특성	기능제한 없음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경험	계
1994	49.7	17.4	32.8	100.0
1998	52.7	15.6	31.7	100.0
2004	80.7	12.4	6.9	100.0
2008	81.6	10.4	8.0	100.0
2011	85.1	7.7	7.2	100.0
2014	81.8	11.3	6.9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표 2-27 노인(65세 이상)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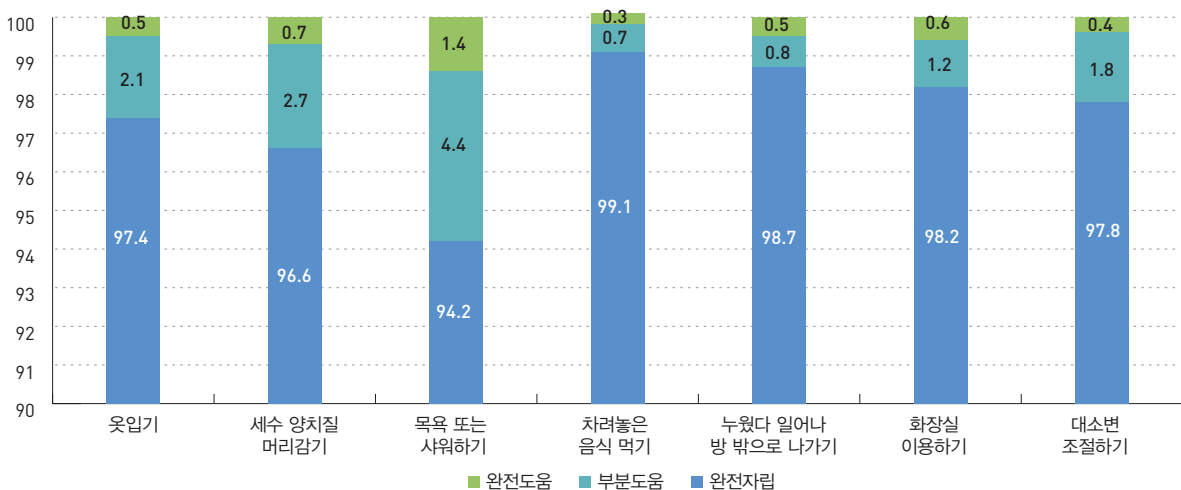
(단위: %)

	전체	연령별					지역별		성별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동	읍면	남자	여자	
기능제한 없음	81.8	94.6	86.4	80.3	65.7	44.0	82.9	78.1	89.4	76.3	
IADL만 제한	11.3	3.2	9.4	12.8	21.3	30.5	10.2	15.0	5.6	15.4	
ADL도 제한 경험	6.9	2.2	4.1	6.9	13.0	25.5	6.9	6.9	5.0	8.3	
수단적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완전자립	82.2	94.7	87.0	80.9	66.3	44.2	83.3	78.4	89.4	77.0
	1~2개 도움	7.9	2.6	6.6	9.6	15.7	17.0	6.9	11.4	3.0	11.5
	3~4개 도움	3.5	1.1	2.7	3.4	6.9	10.4	3.3	3.8	2.4	4.2
	5~6개 도움	2.3	0.5	1.8	2.3	4.0	8.5	2.2	2.7	1.8	2.7
	7~8개 도움	1.9	0.8	1.0	1.7	3.6	7.9	2.0	1.9	1.4	2.3
	9~10개 도움	2.2	0.4	0.9	2.1	3.5	12.0	2.3	1.8	1.9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4

그림 2-45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기능상태 (2014)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4

# 노인의 운동 실천율

Rate of physical activity in adults aged 65 and over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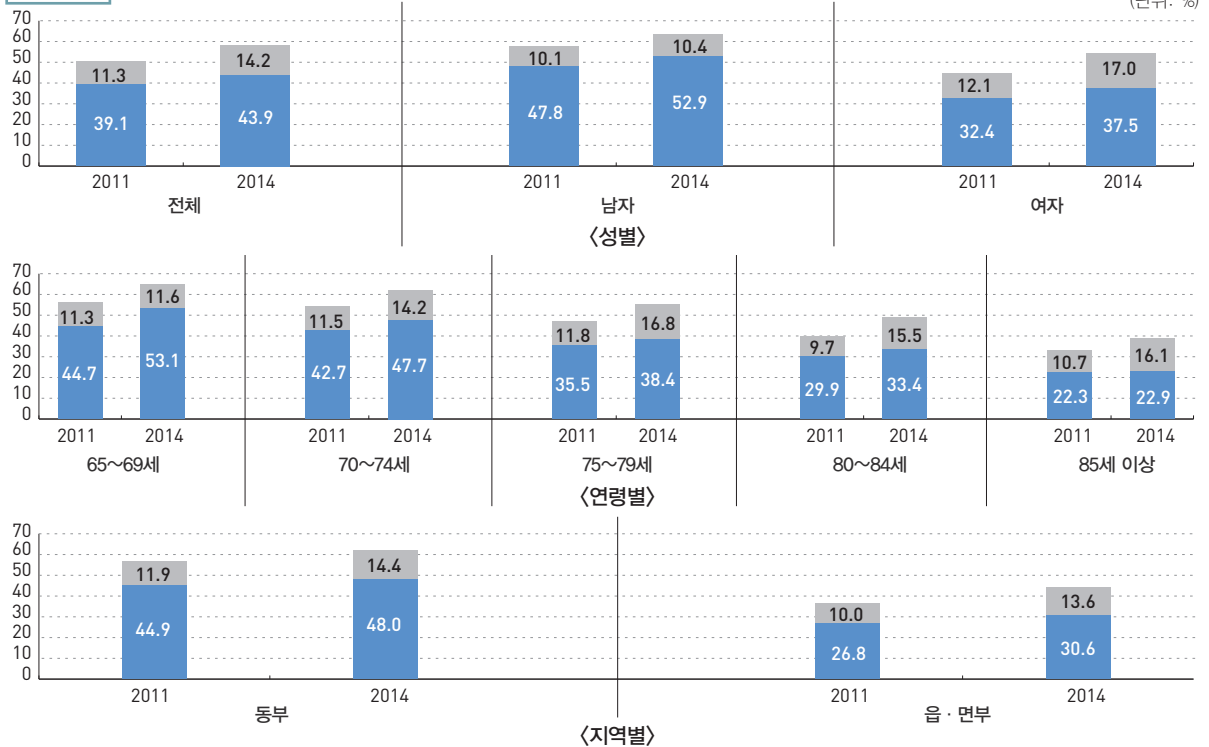
노인인구 가운데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행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권장 수준 운동실천 응답 노인 수}}{\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의 43.9%가 신체 활동 권장 수준을 지키고 있다. 비록 권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노인인구 집단의 운동실천율은 58.1%에 이른다. 노인의 운동실천율(권장수준 미달 포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지역(62.4%)이 읍면지역(44.2%)에 비해 높고,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높다. 한편, 연령과 운동실천율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데, 권장수준의 운동실천율은 '65~69세' 집단이 '85세 이상'의 두 배에 달한다.

그림 2-46 노인의 권장 수준 운동 실천율 (2011, 2014)



주: 권장 수준이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것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4	3년

## Checkpoint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기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게 있어서 운동은 더욱 중요하다. 비록 우리나라 노인의 고위험 음주율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운동실천율과 흡연율의 건강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Current Smoking Rate and High Risk Alcohol Consumption, aged 65 and over

## 지표 정의

현재 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을 이다. 고위험 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인구의 분율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자이면서,  

$$\text{현재 흡연율(\%)} = \frac{\text{현재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만 6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최근 1년간 음주빈도 문항 주2회 이상 응답자이면서,  
 1회 음주량 문항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 응답자  

$$\text{고위험 음주율(\%)} = \frac{\text{1회 음주량 문항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 응답자}}{\text{만 6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노인의 건강행태를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지표로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있다. 두 가지 지표 모두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높다. 세부적으로, 현재 흡연율은 2011년 14.2%에서 2014년 11.1%로 감소하였다. 고위험 음주율은 같은 기간 동안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2014년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다소 증가하여 3.3%를 기록하였다.

표 2-28 65세 이상 노인의 현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201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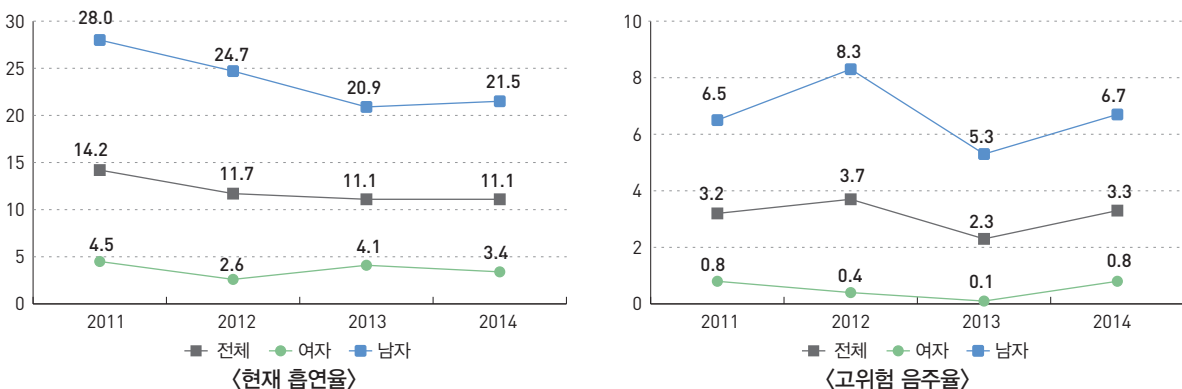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현재 흡연율	14.2	11.7	11.1	11.1	28.0	24.7	20.9	21.5	4.5	2.6	4.1	3.4
고위험 음주율	3.2	3.7	2.3	3.3	6.5	8.3	5.3	6.7	0.8	0.4	0.1	0.8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그림 2-47 65세 이상 노인의 현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2011~2014)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노인의 학대경험률

Rate of self-reported Elderly abuse

## 지표 정의

노인의 학대경험률은 조사에 참여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및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인학대를 유형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언어학대), 경제학대, 방임학대로 나누어 경험률을 파악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학대경험 응답 노인 수}}{\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노인학대는 유형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언어학대), 경제학대, 방임학대로 구분될 수 있다. 신체학대는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며, 정서학대(언어학대)는 위협 등의 언어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또한 경제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인 착취와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방임학대의 경우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2014년 현재 전체 노인 중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비율은 9.9%으로 2011년과 비교하여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에서 방임학대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현재 가장 발생률이 높은 학대의 종류는 정서적 학대로 7.3%에 이른다. 여성노인의 학대경험률은 10.6%로 남성노인의 학대경험률(8.9%)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시지역(동부)의 노인의 학대경험률(10.8%)은 농어촌지역(읍·면부)의 학대경험률(6.9%)보다 3.9%p 높게 나타나 지역 간의 차이를 보인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4	3년

### Checkpoint

2014년 현재 노인의 학대경험률은 9.9%으로 2011년의 12.7%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모든 학대 유형은 감소했으나 방임학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사례 신고건수는 약 1,000건 이상, 학대 사례 신고건수는 약 300건이 증가하여 그 심각성을 짐작하게 한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16

표 2-29 연도별 · 일반특성별 노인의 학대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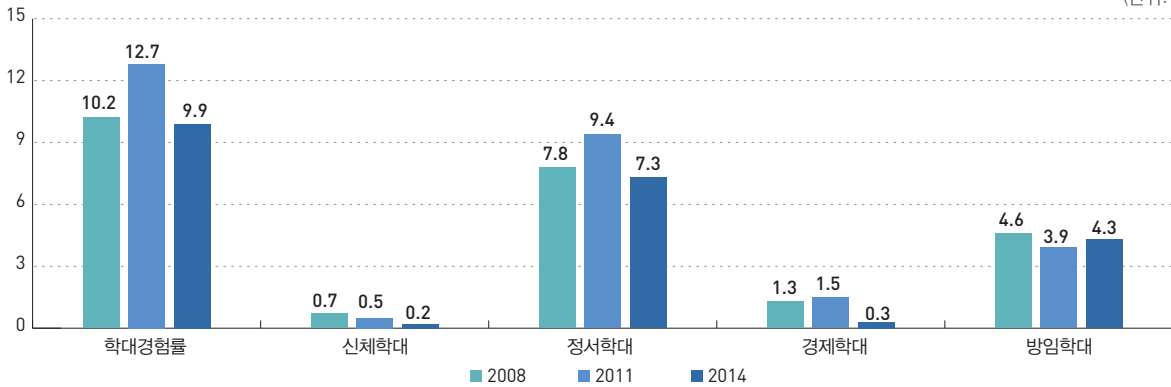
(단위: %)

특성	연도	학대경험률	학대 유형별 경험률				
			타인으로 부터의 신체적 고통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전체	2011	12.7	0.5	9.4	1.5	1.4	2.5
	2014	9.9	0.2	7.3	0.3	1.5	2.8
성	남자	8.9	0.1	6.7	0.3	1.1	2.3
	여자	10.6	0.2	7.7	0.4	1.8	3.1
연령	65~69세	8.9	0.1	7.4	0.3	0.7	1.5
	70~74세	10.8	0.2	8.3	0.4	1.4	2.8
	75~79세	10.6	0.2	7.3	0.4	2.1	3.3
	80~84세	10.1	0	6.5	0.2	2.1	3.9
	85세 이상	8.8	0.4	4.4	0	2.8	4.5
지역	동부	10.8	0.1	7.9	0.4	1.7	3.1
	읍·면부	6.9	0.2	5.4	0.1	0.9	1.7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2-48 연도별 노인의 학대경험률 및 학대유형별 경험률 (2008, 2011,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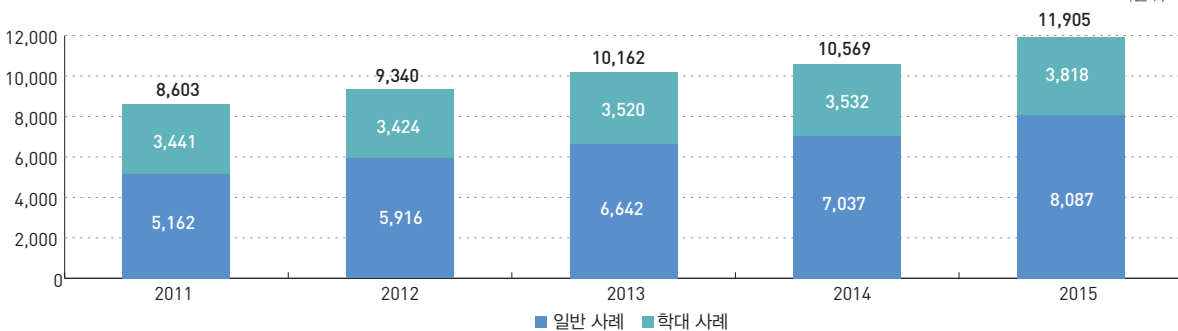
(단위: %)



주: 방임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2-49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 (2011~2015)

(단위: 건)



주: 1) 일반 사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  
 2) 학대 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로 판정된 사례  
 자료: 보건복지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16

# 노인 진료비

Medical Expenditures on adults aged 65 and over

## 지표 정의

노인 진료비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진료비에 해당된다. '노인 진료비의 비율'과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를 통해 노인인구로 인한 발생된 진료비 부담 정도를 확인하고, 노인 1인의 부담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 유의사항

- '노인 진료비 비율'은 총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진료비를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한 달 분으로 환산해준 값이다.

65세 이상 진료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2015년(222,361억 원)에는 2005년 대비 약 3.7배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의 진료비가 같은 기간 동안 약 2.4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이와 같은 증가세로 65세 이상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4.4%에서 2015년 37.8%로 크게 늘었다.

노인 진료비를 1인당 월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2015년에는 1인당 275,777원을 지출하여 2005년(129,138원)에 비해 2.1배 높은 부담을 하였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체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97,027원)보다 약 2.2배 정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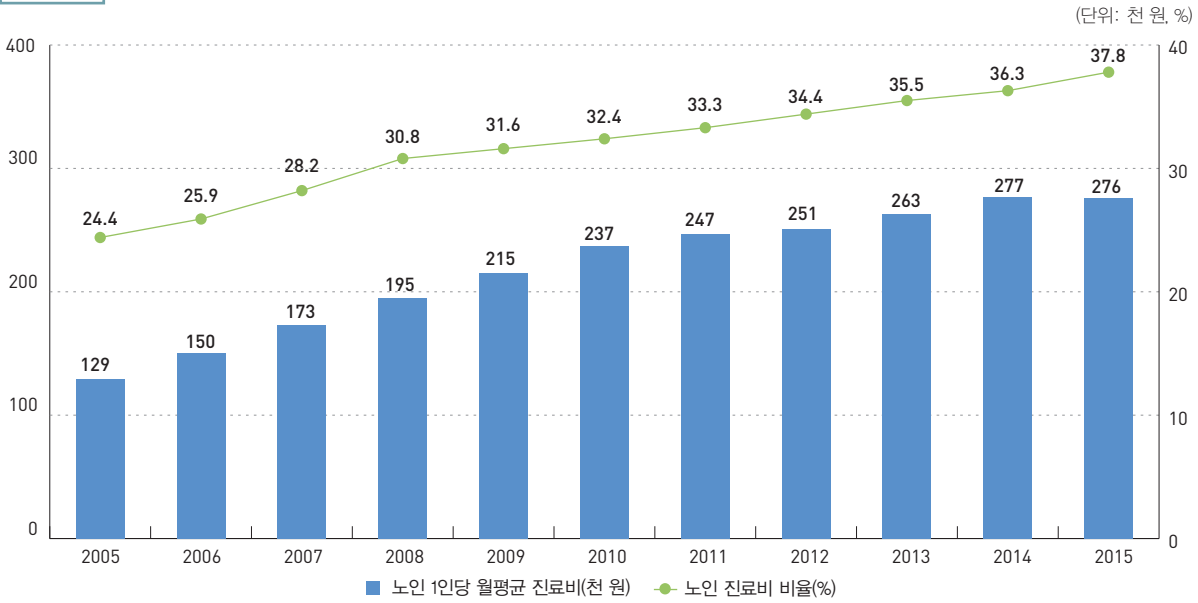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5	1년

## Checkpoint

노인인구의 급증과 기대여명의 향상으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전년대비 1.4%p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노인 진료비의 비중도 1.5%p 증가하였다. 빠른 의료비 증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바, 노인 진료비 역시 정책적 개입을 통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림 2-50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및 노인 진료비 비중 (2005~201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6

표 2-30 노인 진료비 비율 및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2005~201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인구(천 명)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49,990	50,316	50,490
65세 이상 인구(천 명)	3,919	4,073	4,387	4,600	4,826	4,979	5,184	5,468	5,740	6,005	6,719
노인인구 비율	8.3	8.6	9.2	9.6	9.9	10.2	10.5	11.0	11.5	11.9	13.3
총 진료비(억 원)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509,262	549,639	587,869
65세 이상 진료비(억 원)	60,731	73,504	91,190	107,371	124,236	141,350	153,893	164,502	180,852	199,687	222,361
노인 진료비(%)	24.4	25.9	28.2	30.8	31.6	32.4	33.3	34.4	35.5	36.3	37.8
전체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원)	43,716	49,937	56,443	60,335	67,434	74,339	78,159	80,275	84,895	91,031	97,027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원)	129,138	150,389	173,220	194,513	214,525	236,577	247,385	250,704	262,575	277,129	275,777

주: 1)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  
 2) 전체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진료비/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12  
 3)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연도말 건강보험 적용인구)/12  
 4) 2012년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연평균 적용인구 적용  
 5)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6

# 노인의 1인당 외래방문 횟수

Averag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ged 65 and over

## 지표 정의

외래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를 외래방문 횟수(또는 내원 일수)라고 하며, 1인당 외래방문 횟수는 1년 동안의 총 외래방문 횟수를 조사대상 인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외래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text{(조사대상)인구 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방문 횟수(14.9회)는 OECD 국가 평균(7.0회)보다 2.1배 높으며(OECD, 2016), 특히 의료에 대한 수요가 큰 노인의 외래방문 빈도는 더욱 높다. 노인 1인당 의료 이용 서비스 빈도(2011년 기준)를 서비스 유형(외래, 입원), 서비스 성격(양방, 한방), 가입자 유형(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따라서 살펴보면, 외래서비스에 있어서는 양방과 한방 모두 70~74세 연령군의 방문 횟수가 많았다. 양방 외래서비스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서 이용량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방 외래서비스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방 입원서비스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원 건당 입원 일수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급여환자에서의 연령대별 입원 일수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표 2-31 1인당 의료이용 현황 (2011)

(단위: 회, 일)

	외래방문 횟수			입원 일수 (입원 건당)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b>&lt;양방&gt;</b>						
65~69세	30.4	37.6	32.4	11.3	30.8	10.5
70~74세	34.9	39.1	35.6	12.6	34.7	11.3
75세 이상	28.8	34.2	30.2	14.3	60.4	13.4
<b>&lt;한방&gt;</b>						
65~69세	12.5	13.6	12.8	6.0	1.6	5.3
70~74세	14.2	14.0	14.1	5.0	2.7	4.5
75세 이상	13.9	13.6	13.8	2.5	1.7	2.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1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01	2011	5년

#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Inspection Rate of General Health Check-ups, aged 65 and over

## 지표 정의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건강검진으로 1차, 2차에 걸쳐 두 차례 시행된다.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거나, 인지기능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정된 경우(만 70세 및 만 74세 대상)에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일반건강검진 수검 인원}}{\text{일반건강검진 대상자}} \times 100$$

유의사항 건강검진통계는 건강보험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는 제외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201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4.6%로 전년도에 비해서 2.7%p 증가하였다. 남자는 68.8%, 여자는 61.3%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한편, 1차 검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2차 검진의 수검률은 27.4%(남자 31.2%, 여자 23.5%)이다.

만 70세와 만 74세의 노인은 일반검진과 함께 정신건강검사를 받는다. 2014년에는 1차 검진을 받은 382,593명 중에서 32,185명이 2차 검진을 권고 받았으며, 이중에서 7,258명만이 2차 검진을 실시하였다. 2차 검진에 따르면 진단을 실시한 사람 중에서 3,179명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의 43.8%에 달하는 수치이다. 정신건강검사에 있어서 2차 추가검진을 권고 받은 사람 중에서 실제로 2차 검진을 실시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22.6%밖에 되지 않는다. 부산(32.9%), 울산(32.2%), 대전(26.5%)에서의 실천율이 높았고, 경북(13.8%)과 제주(12.6%)의 실천율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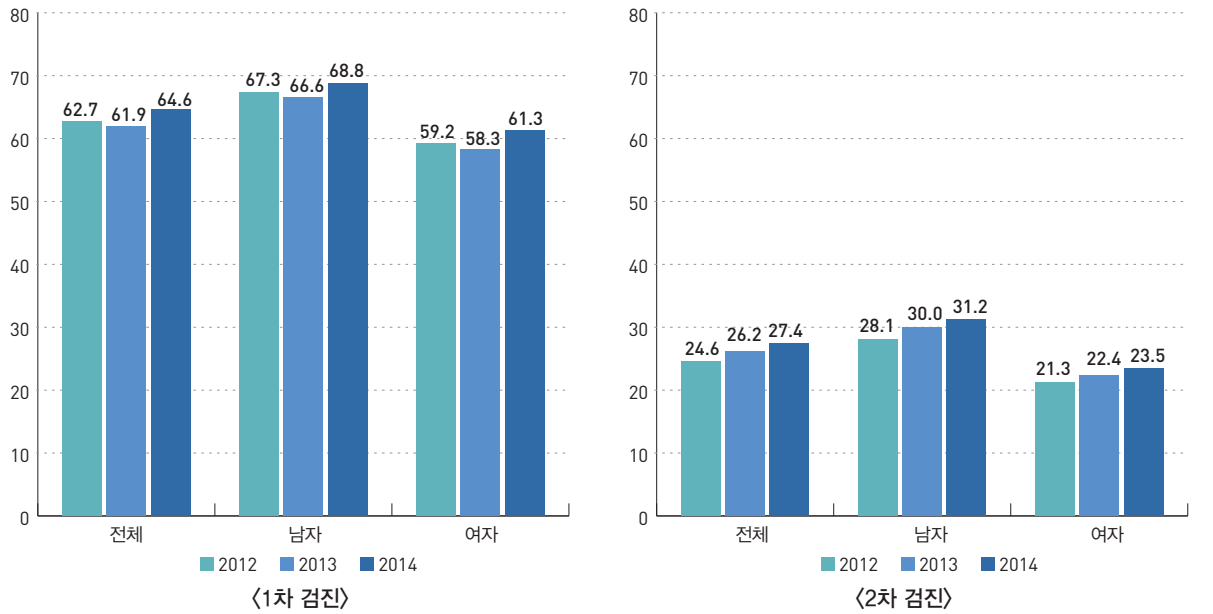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14	1년

### Checkpoint

2014년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1차,2차)은 전년에 비해서 크게 상승했으나 전체 일반검진 수검률(74.8%)보다는 9.8%p 낮은 수준이다.

그림 2-51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2~2014)



주: 2차 대상인원은 1차 검진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해당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표 2-32 시도별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70세 및 74세 대상, 2014)

(단위: 명, %)

	1차 검진			2차 검진			
	대상 인원	특이 소견 없음	2차 추가 진단 필요 (A)	수검자 (B)	특이 소견 없음	인지 기능 저하 판정인	2차 검진 실천율 (B/A)
전체	382,593	350,408	32,185	7,258	4,079	3,179	22.6
서울	68,710	62,261	6,449	1,657	955	702	25.7
부산	30,468	27,987	2,481	817	506	311	32.9
대구	18,478	17,429	1,049	256	133	123	24.4
인천	16,232	14,763	1,469	265	154	111	18.0
광주	10,018	9,310	708	121	84	37	17.1
대전	9,711	8,534	1,177	312	167	145	26.5
울산	5,433	4,924	509	164	99	65	32.2
세종	1,149	1,023	126	21	11	10	16.7
경기	70,125	62,643	7,482	1,941	1,022	919	25.9
강원	17,412	16,201	1,211	212	112	100	17.5
충북	14,473	13,247	1,226	189	101	88	15.4
충남	18,686	17,180	1,506	259	141	118	17.2
전북	18,497	17,024	1,473	299	169	130	20.3
전남	24,263	23,062	1,201	169	101	68	14.1
경북	29,083	27,164	1,919	264	147	117	13.8
경남	25,511	23,590	1,921	277	156	121	14.4
제주	4,344	4,066	278	35	21	14	12.6

주: 2차 대상인원은 1차 검진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해당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건강검진통계연보, 2015

#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Inspection Rate of General Health Check-ups by Core items, aged 65 and over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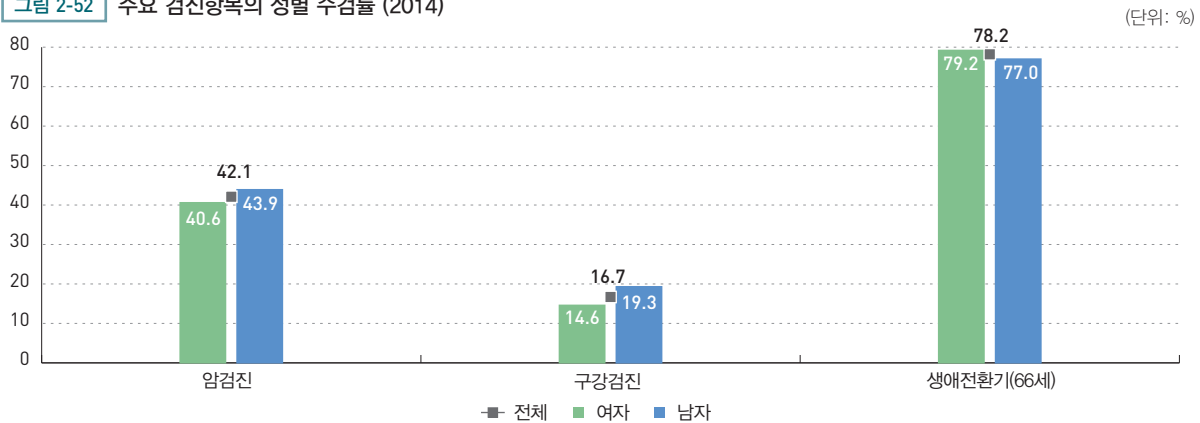
수검률은 건강검진 대상 인원 중 수검인원의 분율을 의미하며, 주요 검진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 이외의 암검진, 구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으로 구성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특정항목 건강검진 수검자}}{\text{특정항목 건강검진 대상자}} \times 1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검진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검진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5개 상병(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은 42.1%, 구강검진은 16.7%, 만 66세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78.2%의 수검률을 보인다.

그림 2-52 주요 검진항목의 성별 수검률 (2014)



주: 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경우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각각 1차와 2차에 걸쳐 두 차례씩 실시되며, 1차 수검자 전체가 2차 검진의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여기에서는 1차 대상인원과 1차 수검인원을 기준으로 값을 제시함.

2) 구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진단 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나, 여기에서는 일반검진과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만을 고려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건강검진통계연보, 2015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건강검진통계	2008	2014	1년



#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Coverage of Public Long-term Care, aged 65 and over

## 지표 정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공적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구의 규모를 의미한다. 공적장기요양보호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해당된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능상 제약이 있는 노인이 일상생활 중에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의 삶을 돌보고, 이들에 대한 주변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도입되었다.

## 측정 산식

$$\frac{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65세 이상 인구 수} \times 100$$

2014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자는 약 43만 5천여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6.7%에 해당된다. 2010년대 초반 6.1%이던 것에 비하면 0.6%p 증가한 것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11	2015	1년

### Checkpoint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2013년 39만 7천 명 → 2014년 43만 5천 명) 보호율 역시 6.4%에서 6.7%로 높아졌으며, 각 사업별(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증가폭은 거의 비슷하였다(노인장기요양서비스 9.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0.6%).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의 확대가 노인인구의 급속한 팽창 속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발전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내부자료), 2014

표 2-33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201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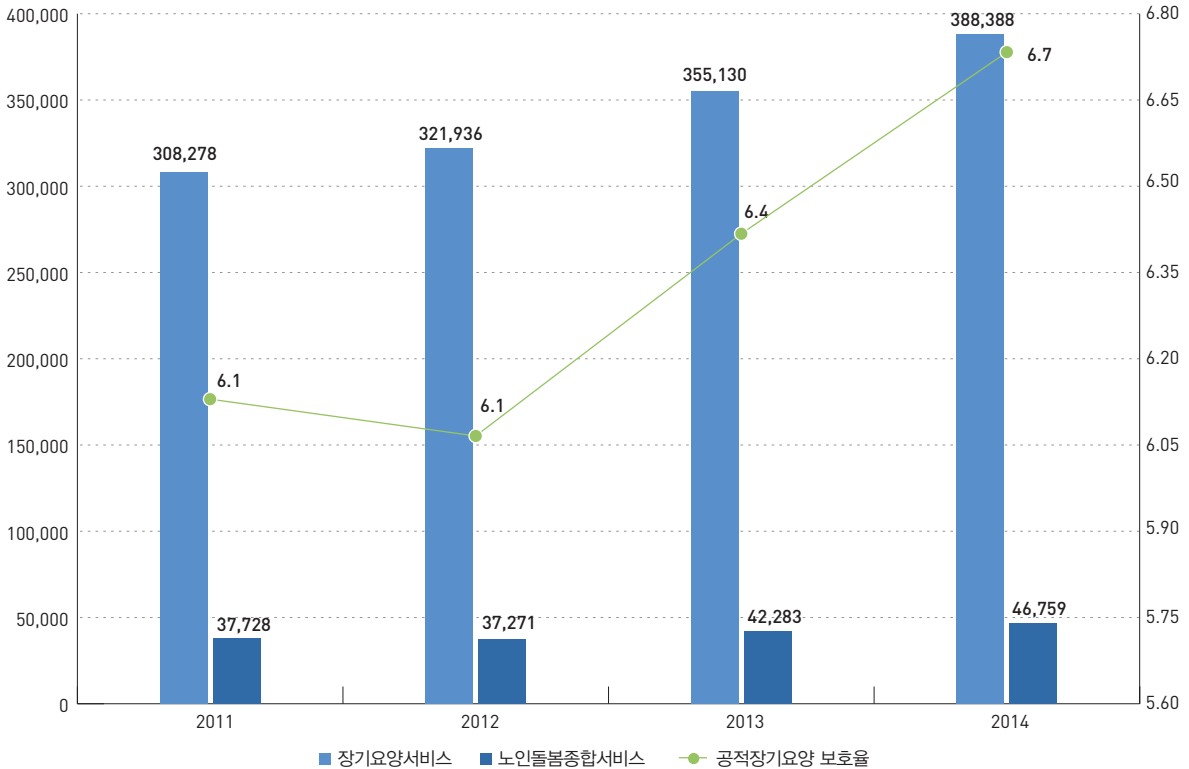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소계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011	346,006	308,278	37,728	5,644,758	6.1
2012	359,207	321,936	37,271	5,921,977	6.1
2013	397,413	355,130	42,283	6,192,762	6.4
2014	435,147	388,388	46,759	6,462,740	6.7

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자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자(중복자, 사망자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내부자료), 2014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2-53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2011~2014)

(단위: 명, %)



자료: 1)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내부자료), 2014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Rate of People in receipt of Long-term Care, aged 65 and over

## 지표 정의

장기요양 수급률은 65세 인구 중 임금을 받는 서비스공급자(시설 또는 재가)로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시설 장기요양수급자(병원 외)는 자원(공공자원과 민간자원)에 상관없이 공식적인 시설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며,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는 움직임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임금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인구}}{\text{65세 이상 인구 수}} \times 100$$

2014년 기준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자 중 시설 장기요양수급자는 35.9%(157,363명),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는 64.1%(280,371명)이다. 서비스 유형과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는 여자 122,958명(78.1%), 남자 34,405명(21.9%)이었으며, 재가 이용자는 여자 198,956명(71.0%), 남자 81,415명(29.0%)이었다. 여자수급자가 남자수급자 보다 시설에서는 3.6배, 재가에서는 2.4배 많다. 시설 장기요양 수급률은 2.5%, 재가 장기요양 수급률은 4.4%이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시설은 여자가 3.3%, 남자가 1.3%였으며, 재가는 여자가 5.3%, 남자가 3.1%이다. 여자의 장기요양 수급률이 남자보다 시설은 2.5배, 재가는 1.7배 높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률은 2010년 6.5%, 2012년 6.3%, 2014년 6.9%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OECD 국가 평균(12.8%)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	2014	1년

표 2-34 장기요양 수급자 및 장기요양 수급률 (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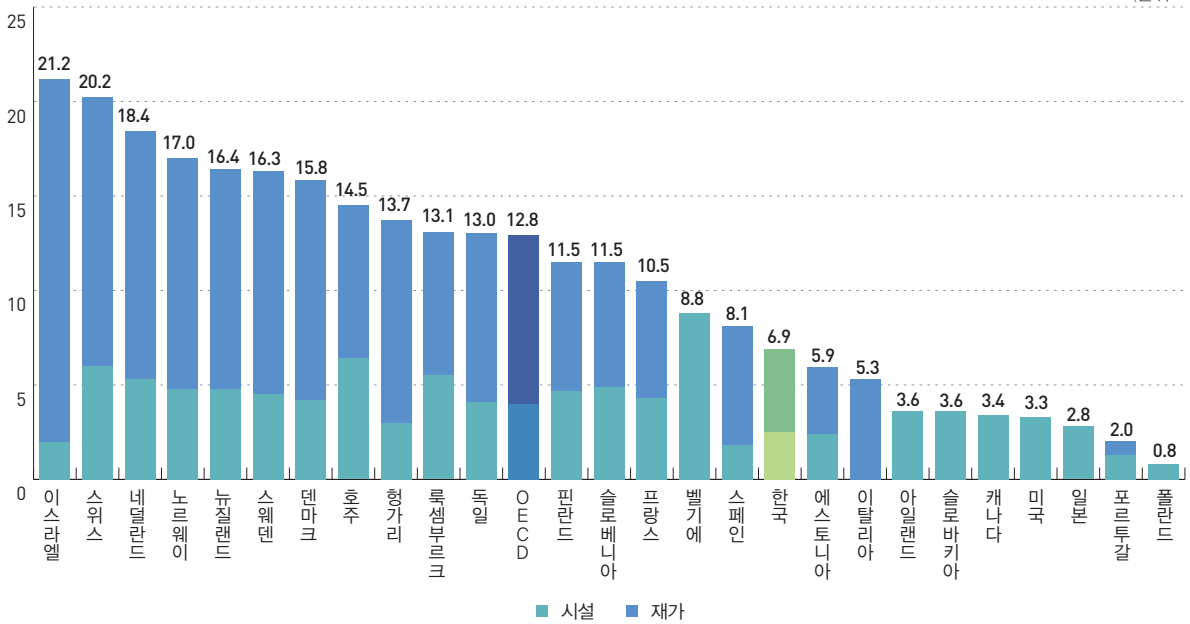
(단위: 명, %)

	전체			남자			여자		
	계	시설	재가	계	시설	재가	계	시설	재가
2010	356,794	110,085	246,709	98,632	25,540	73,092	258,162	84,545	173,617
	(6.5)	(2.0)	(4.5)	(4.4)	(1.1)	(3.3)	(8.0)	(2.6)	(5.4)
2011	361,604	126,078	235,526	99,634	29,058	70,576	261,970	97,020	164,950
	(6.4)	(2.2)	(4.2)	(4.3)	(1.3)	(3.0)	(7.8)	(2.9)	(4.9)
2012	370,810	139,384	231,426	100,499	31,655	68,844	270,311	107,729	162,582
	(6.3)	(2.4)	(3.9)	(4.1)	(1.3)	(2.8)	(7.8)	(3.1)	(4.7)
2013	403,611	149,454	254,157	108,118	33,188	74,930	295,493	116,266	179,227
	(6.5)	(2.4)	(4.1)	(4.2)	(1.3)	(2.9)	(8.2)	(3.2)	(5.0)
2014	437,734	157,363	280,371	115,820	34,405	81,415	321,914	122,958	198,956
	(6.9)	(2.5)	(4.4)	(4.4)	(1.3)	(3.1)	(8.6)	(3.3)	(5.3)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그림 2-54 OECD 국가의 장기요양 수급률 (2014년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단위: %)



주: 2014년 기준. 단 미국은 2011년, 캐나다와 덴마크는 2012년, 슬로베니아는 2013년임.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 장기요양기관 수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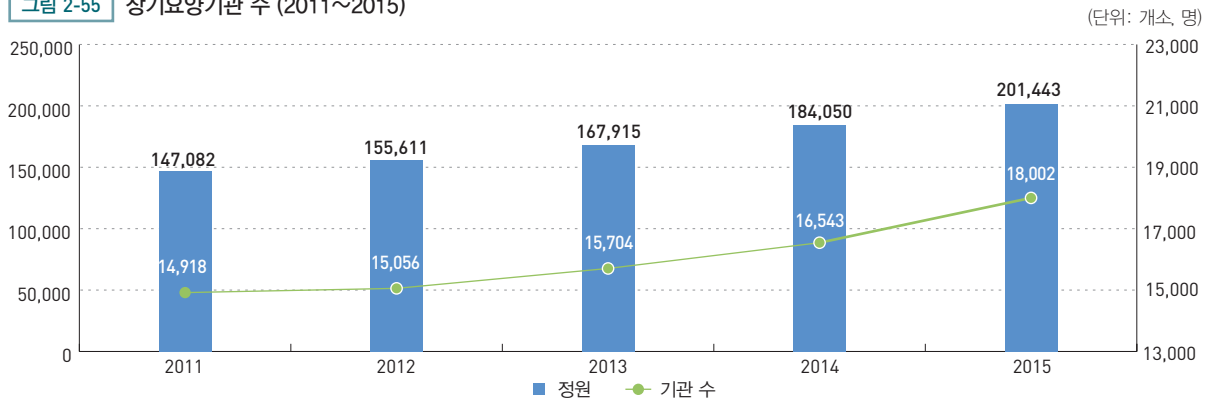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동법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재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옹구),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 측정 산식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

2015년 장기요양기관 수는 전년대비 8.8%, 정원은 9.5% 증가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율(6.9%)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은 재가(71.8%)와 시설(28.2%)로 구성된다. 재가와 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경기(4,201개)에 가장 많은 기관이 위치해 있고, 다음으로 서울(2,807개)과 경북(1,238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2-55 장기요양기관 수 (2011~201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6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08	2015	1년

### Checkpoint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래, 장기요양기관의 수와 정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 수는 전년대비 8.8%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증가율 5.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기관 수의 증가와 함께 정원도 2014년 18만 4천 명에서 2015년 20만 1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35 시도별·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2015)

(단위: 개소)

	총계	재가							시설		
		소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소계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계	18,002	12,917	10,077	8,253	574	2,018	299	1,700	5,085	2,935	2,150
서울	2,807	2,254	1,653	1,442	126	288	87	306	553	190	363
부산	923	802	663	522	20	94	3	124	121	93	28
대구	939	678	532	419	22	163	35	75	261	85	176
인천	1,070	732	606	541	28	60	20	107	338	220	118
광주	574	467	387	256	14	73	1	56	107	78	29
대전	617	502	399	360	19	74	1	61	115	76	39
울산	212	168	133	103	16	31	1	21	44	29	15
세종	40	29	24	18	1	4	1	3	11	9	2
경기	4,201	2,666	2,006	1,719	130	426	84	353	1,535	875	660
강원	717	431	329	259	37	82	8	55	286	159	127
충북	620	361	273	187	16	79	8	50	259	151	108
충남	869	598	485	417	24	115	8	67	271	162	109
전북	945	722	551	417	20	111	4	95	223	152	71
전남	997	700	582	384	27	113	4	72	297	189	108
경북	1,238	869	703	571	37	170	24	110	369	231	138
경남	1,030	802	657	553	28	90	9	114	228	178	50
제주	203	136	94	85	9	45	1	31	67	58	9

주: 1) 연도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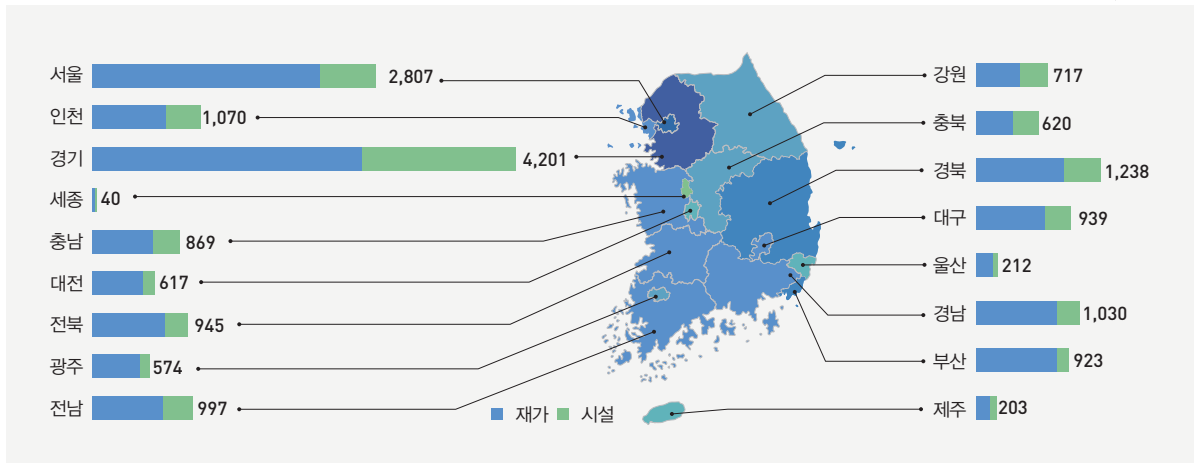
2) '재가'의 소계는 급여종류별 중복을 제외한 것임.

3)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구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은 2013년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6

그림 2-56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수 (2015)

(단위: 개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6

# 장기요양 기관의 전문인력

Number of Long-term Care Workers

## 지표 정의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력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사(축택의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 측정 산식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수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있다. 전체 기관(재가 + 시설)에서 요양보호사(2015년 기준 90.7%)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사회복지사(4.3%), 간호조무사(2.8%)도 일부 있다. 2015년 요양보호사는 294,788명, 사회복지사는 13,923명, 간호조무사는 9,099명으로 2014년에 비해서 각각 10.6%, 23.2%, 10.4%가 증가하였다. 주요 전문인력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이 편중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전문인력도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08	2015	1년

표 2-36 장기요양기관별 전문인력 현황 (2013~2015)

(단위: 명)

	전체			재가			시설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계	274,243	292,889	324,946	214,247	226,636	253,861	66,608	73,116	79,103
요양보호사	252,663	266,538	294,788	206,971	216,358	241,323	51,449	56,072	60,386
사회복지사	7,506	11,298	13,923	3,828	6,623	8,440	3,809	4,817	5,634
간호사	2,627	2,683	2,719	1,262	1,213	1,218	1,498	1,575	1,595
간호조무사	7,552	8,241	9,099	1,838	2,073	2,476	6,190	6,752	7,303
물리(작업)치료사	1,740	1,813	1,952	213	225	246	1,593	1,668	1,806
의사(축척포함)	1,233	1,324	1,415	83	94	103	1,194	1,288	1,378
치과위생사	4	5	4	4	5	4	0	0	0
영양사	918	987	1,046	48	45	51	875	944	1,001

주: 1) 연도말 기준임.

2) 전체 계는 급여종류별 중복을 제거한 것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표 2-37 시도별·급여종류별 주요 전문인력 현황 (2015)

(단위: 명)

	전체			재가			시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계	13,923	9,099	294,788	8,440	2,476	241,323	5,634	7,303	60,386
서울	2,117	1,253	55,845	1,623	571	50,454	513	733	6,205
부산	735	322	19,124	522	103	17,163	220	245	2,111
대구	604	430	13,896	370	187	11,533	239	331	2,578
인천	772	558	18,443	409	81	14,931	370	502	3,906
광주	507	211	10,660	366	86	9,460	149	156	1,311
대전	423	234	11,628	272	77	10,107	153	181	1,654
울산	159	89	3,815	103	33	3,262	60	63	591
세종	25	16	696	13	4	585	12	12	118
경기	3,184	2,532	69,868	1,697	477	54,970	1,510	2,158	17,097
강원	669	423	10,682	367	79	7,639	307	367	3,276
충북	491	423	8,902	237	81	6,218	257	372	2,873
충남	720	492	13,925	407	128	11,099	320	414	3,217
전북	744	448	13,046	470	125	10,470	286	363	2,805
전남	769	502	14,258	445	128	11,315	341	418	3,207
경북	958	606	20,169	555	186	16,133	416	504	4,401
경남	816	419	18,602	488	92	15,258	339	363	3,640
제주	253	160	3,328	108	50	1,943	147	124	1,456

주: 각 전문인력은 재가와 시설에서 중복 집계되므로 재가와 시설의 합은 전체 수치보다 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6



# 2 아동 · 노인 · 장애인

## 장애인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장애인 인구 및 생활	등록장애인 수	장애출현율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 수	장애인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장애인 보육 · 교육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장애인 교육수준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실업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 등록장애인 수

Number of the Registered Disabled

## 지표 정의

등록장애인 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유형 및 기준에 부합하여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를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등 15가지 유형의 법정 장애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등록장애인 수는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장애인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측정 산식

- 우리나라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되어 등록된 장애인의 수

2000년 당시 95만 8천명에 불과하였던 등록장애인의 수는 2005년에는 177만 7천 명, 2010년에는 251만 2천 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다소 변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 251만 9천 명에서 2013년 250만 1천 명, 2015년 249만 명으로 소폭의 감소추세가 나타났다.

2015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는 지체장애인이 128만 1천 명으로 가장 많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26만 9천 명, 시각장애인 25만 3천 명, 뇌병변장애인 25만 1천 명, 지적장애인이 19만 명 순이었다.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2015년 기준 4.83%이며(남성 5.62%, 여성 4.05%),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도가 가장 높고(전남 7.43%, 전북 6.94%), 서울이 3.9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등록장애인 중 6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132만 7백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장애등급 1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19만 8천여 명에 이른다.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일부 장애범주에서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 정의하기도 하는데, 장애인구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2005년 37.7%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32.7%로 나타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06	2015	6개월

### Checkpoint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 이후 최근까지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 등록장애인이 2,51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2,501천 명, 2015년 2,490천 명으로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장애인구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2005년 37.7%, 2010년 33.7%, 2015년 32.7%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장애범주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2003년에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가 포함되었다. 한편, 2007년에는 기존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2014년에는 기존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2-38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2000~2015)

(단위: 천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958	1,134	1,294	1,454	1,611	1,777	1,967	2,105	2,247	2,430	2,512	2,519	2,511	2,501	2,494	2,490
지체장애	606	682	755	814	883	959	1,049	1,114	1,191	1,293	1,334	1,333	1,322	1,309	1,296	1,281
시각장애	91	116	136	153	170	168	206	217	228	241	249	251	252	253	253	253
청각, 언어장애	87	106	124	139	155	188	199	218	239	262	277	279	276	273	271	269
지적장애	87	95	104	112	119	174	135	143	147	155	161	167	173	179	184	190
뇌병변장애	33	65	92	116	143	127	194	215	232	252	262	261	258	253	252	251
자폐성장애	2	3	4	6	8	9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정신장애	24	33	39	47	54	63	75	82	87	95	96	95	95	96	97	99
신장장애	23	28	32	35	38	42	45	48	50	54	57	60	63	67	70	74
심장장애	5	7	9	10	12	13	14	14	15	15	13	10	8	7	6	6
호흡기장애	-	-	-	7	10	12	13	14	15	16	16	15	14	13	12	12
간장애	-	-	-	3	4	5	6	6	7	8	8	8	9	9	10	10
안면장애	-	-	-	1	1	1	2	2	2	3	3	3	3	3	3	3
장루, 요루장애	-	-	-	7	8	10	10	11	12	12	13	13	13	14	14	14
뇌전증장애	-	-	-	3	5	7	8	9	9	10	10	9	8	7	7	7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각 연도

표 2-39 시도별·성별 등록장애인 수 (2015)

(단위: 명, %)

지역	등록장애인 수			인구대비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국	2,490,406	1,446,943	1,043,463	4.83	5.62	4.05
서울	393,245	228,739	164,506	3.92	4.64	3.23
부산	168,084	99,963	68,121	4.78	5.76	3.83
대구	115,694	68,376	47,318	4.65	5.53	3.78
인천	134,191	81,324	52,867	4.59	5.53	3.63
광주	68,079	38,244	29,835	4.62	5.24	4.02
대전	70,890	41,511	29,379	4.67	5.46	3.87
울산	49,326	30,008	19,318	4.20	4.96	3.40
세종	9,079	5,325	3,754	4.31	5.04	3.57
경기	512,882	306,117	206,765	4.10	4.86	3.32
강원	98,324	57,441	40,883	6.35	7.35	5.32
충북	93,536	53,726	39,810	5.91	6.73	5.07
충남	124,801	71,984	52,817	6.01	6.83	5.16
전북	129,769	70,626	59,143	6.94	7.59	6.30
전남	141,837	75,683	66,154	7.43	7.93	6.93
경북	168,089	95,478	72,611	6.22	7.03	5.40
경남	179,070	104,018	75,052	5.32	6.14	4.49
제주	33,510	18,380	15,130	5.37	5.86	4.87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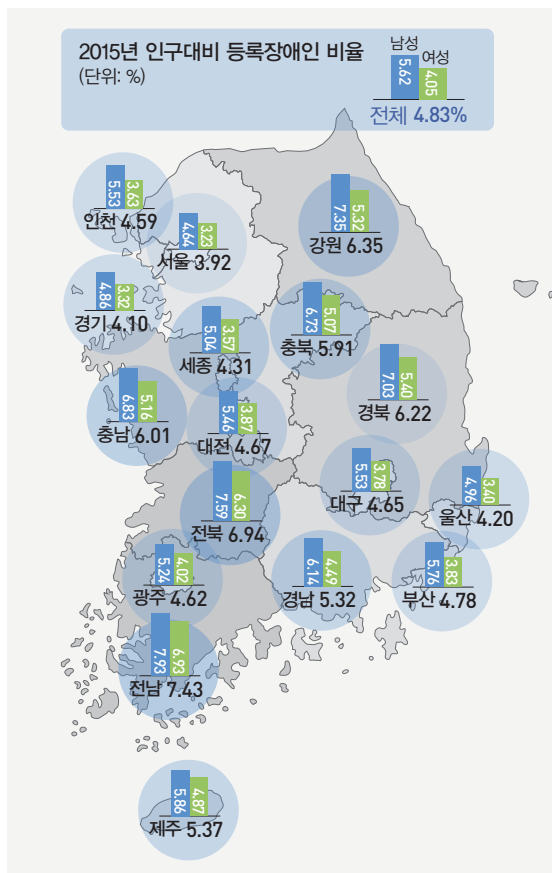


표 2-40 연령별 ·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수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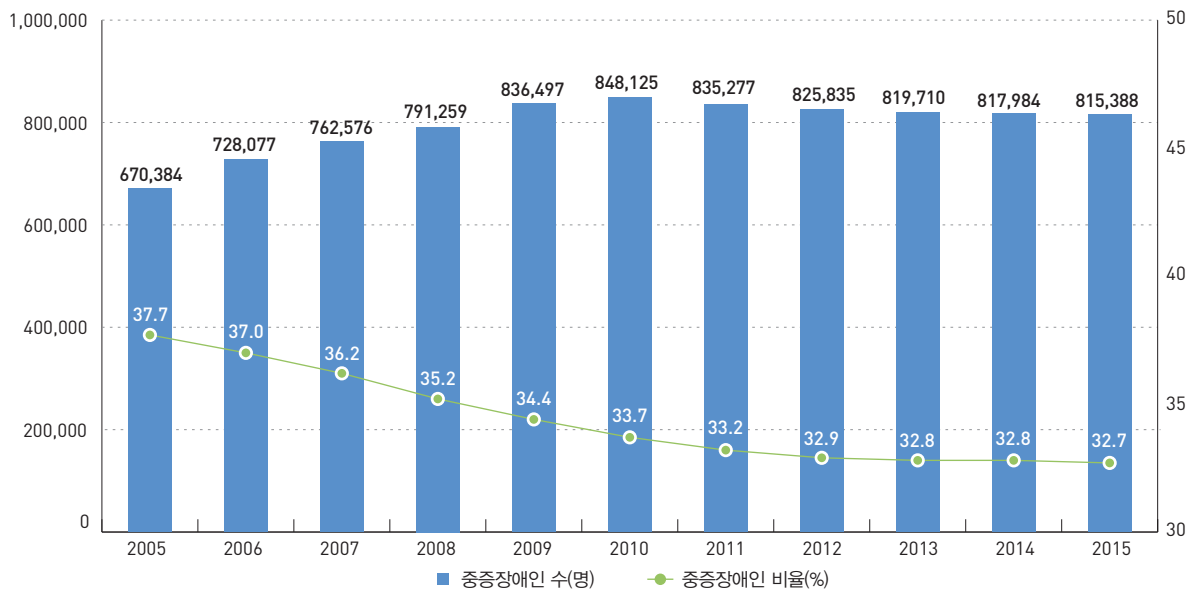
(단위: 명)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2,490,406	197,922	334,873	432,586	370,303	521,989	632,733
0~9세	24,048	6,611	7,688	6,311	1,470	1,069	899
10~19세	65,598	20,569	17,771	19,161	2,144	2,666	3,287
20~29세	90,235	22,001	24,031	22,485	3,871	6,039	11,808
30~39세	156,382	19,845	27,237	31,925	11,563	20,108	45,704
40~49세	310,386	25,477	45,433	64,018	32,509	51,865	91,084
50~59세	523,016	32,241	67,510	95,275	66,297	107,325	154,368
60~69세	537,654	28,819	61,135	83,803	80,752	127,927	155,218
70~79세	531,702	27,411	57,318	73,902	109,066	138,080	125,925
80~89세	227,028	13,111	24,137	31,995	56,901	60,167	40,717
90~99세	23,820	1,789	2,557	3,631	5,580	6,610	3,653
100세 이상	537	48	56	80	150	133	70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15

그림 2-57 장애인구 중 중증장애인 비율 (2005~2015)

(단위: 명, %)



주: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뇌병변 · 시각 · 지적 · 자폐성 · 정신 · 심장 · 호흡기 · 뇌전증장애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단, 호흡기 · 뇌전증장애 3급은 2010년부터 중증으로 인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15

# 장애출현율

Prevalence of Disability

## 지표 정의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근거한 장애인실태 조사에 의해 추정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우리나라 법정 장애범주에 해당되는 추정장애인 수}}{\text{전체 인구}} \times 100$$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5.59%(272만 7천여 명)로 인구 1만 명당 5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5년도 장애출현율 4.6%에 비해 1%p 증가한 것으로 후천적 장애 및 인구고령화에 의한 장애발생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정장애인 중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0만 명으로 91.7%의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5년도 장애인 등록률 77.7%에 비해 16.1%p 증가한 것이지만, 2011년에 비해서는 2.1%p 감소한 것이다.

표 2-41 연도별 장애출현율

(단위: 명, %)

	2000	2005	2011	2014
등록장애인 수	907,571	1,669,329	2,517,312	2,501,112
추정장애인 수	1,449,496	2,148,686	2,683,477	2,726,910
장애인 등록률	62.6	77.7	93.8	91.7
장애출현율	3.09	4.59	5.61	5.59

주: 1) 등록장애인 수는 각 조사 당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함.

2)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는 가구표본조사방식이 아닌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출현율을 파악하지 않았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14	3년

#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Prevalence of ADL(IADL) Limitation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 지표 정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신체활동으로, 자신의 육체를 돌보는데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주로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되는 옷 입기나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이 이에 속한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몸단장하기, 식사 준비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등 단순한 신체적 기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ADL(IADL) 제한 응답 장애인 수}}{\text{조사대상 장애인 수}} \times 100$$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옷 벗고 입기’, ‘방 밖으로 나가기’로 나타났다. 즉, ‘목욕하기’에서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5%였으며, ‘화장실 사용하기’의 완전 도움 요구 장애인 비율은 3.8%, 그리고 ‘옷벗고 입기’, ‘방 밖으로 나가기’ 등은 3.7%로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았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장루·요루장애는 화장실 사용하기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별로 그 장애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본인 물건 관리하기’, ‘금전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로 나타났다. 즉, 본인 물건 관리하기의 경우 완전 도움을 요하는 장애인 비율이 36.0%였으며, 금전관리 13.0%, 교통수단 이용하기 12.6%로서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았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장애와 지적 및 자폐 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14	3년

### Checkpoint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제한율을 장애 정도로 구분해보면 경증(4~6급)의 경우 목욕하기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의 완전 자립을 보였고 중증(1~3급)은 옷 벗고 입기, 목욕하기에서 완전 도움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제한율은 본인 물건 관리하기에서 중증 장애(16.9%)와 경증 장애(50.7%) 모두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2-42 장애 정도별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제한율 (2014)

(단위: %)

구분	전체			중증(1~3급)			경증(4~6급)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옷 벗고 입기	81.1	15.2	3.7	61.4	30.1	8.4	94.2	5.2	0.6
세수하기	89.5	7.2	3.3	76.7	16.0	7.4	97.9	1.7	0.5
양치질하기	89.4	7.4	3.1	76.0	16.8	7.1	98.0	1.5	0.5
목욕하기	75.2	18.3	6.5	54.5	31.2	14.2	89.8	8.9	1.3
식사하기	88.6	9.4	2.0	75.2	20.1	4.7	97.4	2.2	0.3
체위변경하기	92.9	5.3	1.8	86.2	9.7	4.1	97.4	2.3	0.3
일어나 앉기	90.9	7.0	2.1	83.7	11.6	4.7	95.9	3.8	0.4
움거 앉기	88.4	8.9	2.6	79.1	14.9	5.9	94.7	4.9	0.4
방 밖으로 나가기	83.2	13.1	3.7	71.5	20.5	8.0	91.5	7.6	0.8
화장실 사용하기	87.4	8.8	3.8	74.7	18.1	7.2	96.1	2.4	1.5
대변 조절하기	93.2	3.4	3.4	86.7	7.0	6.3	97.7	0.8	1.5
소변 조절하기	93.0	3.8	3.2	86.2	7.4	6.4	97.7	1.3	1.0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표 2-43 장애 정도별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제한율 (2014)

(단위: %)

구분	전체			중증(1~3급)			경증(4~6급)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전화 사용하기	74.4	18.1	7.5	55.9	28.1	16.1	87.5	10.9	1.7
물건 사기	72.9	16.7	10.4	48.2	29.1	22.7	90.1	7.6	2.3
식사준비 (만 15세 미만 제외)	67.0	22.4	10.6	41.3	36.4	22.4	84.2	12.8	3.0
집안 일 (만 15세 미만 제외)	64.6	25.1	10.3	39.9	38.8	21.4	81.3	15.7	3.0
빨래하기 (만 15세 미만 제외)	67.3	22.0	10.7	42.8	34.9	22.4	83.6	13.4	3.1
약 챙겨먹기	83.6	10.7	5.7	65.0	22.3	12.7	96.4	2.6	1.0
금전관리	74.4	12.7	13.0	51.4	20.3	28.3	90.4	7.0	2.6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66.2	21.2	12.6	42.1	32.1	25.7	83.7	13.0	3.3
본인 물건 관리하기 (만 6~15세 미만)	19.5	44.6	36.0	16.9	45.4	37.7	50.7	40.0	9.3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Need for Help with Daily Activitie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 지표 정의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혹은 남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5점 척도로 측정된 값의 분율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를 '1. 혼자서 스스로, 2. 대부분 혼자서, 3. 일부 도움 필요, 4. 대부분 필요, 5. 거의 남의 도움 필요'와 같이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frac{\text{도움 필요 정도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장애인 수}}{\text{조사대상 장애인 수}} \times 100$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한 결과는 장애인의 51.3%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고, 일부 도움이나 대부분 도움,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각각 17.7%, 8.6%, 5.9% 인 것으로 나타나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경우는 32.2%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장애, 안면장애, 지체장애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44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2014)

(단위: %)

	계	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 도움 필요	대부분 필요	거의 남의 도움 필요
전체	100.0	51.3	16.5	17.7	8.6	5.9
지체장애	100.0	67.5	15.1	11.1	3.9	2.4
뇌병변장애	100.0	18.3	14.0	25.4	19.1	23.1
시각장애	100.0	54.9	14.5	15.5	10.1	5.1
청각장애	100.0	42.9	28.6	22.9	3.5	2.1
언어장애	100.0	33.8	24.4	22.4	15.6	3.7
지적장애	100.0	4.5	14.4	41.5	26.0	13.5
자폐성장애	100.0	1.5	11.4	21.1	41.6	24.5
정신장애	100.0	36.8	16.7	28.3	14.2	4.0
신장장애	100.0	65.2	13.1	14.3	5.4	2.0
심장장애	100.0	48.1	8.0	39.9	0.0	4.0
호흡기장애	100.0	34.3	13.8	38.0	10.5	3.4
간장애	100.0	92.4	2.7	1.8	3.1	0.0
안면장애	100.0	96.5	3.5	0.0	0.0	0.0
장루·요루장애	100.0	10.3	62.7	18.8	2.9	5.4
뇌전증장애	100.0	44.2	14.5	17.5	18.0	5.9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014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14	3년



# 장애인복지시설 수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지표 정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지표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 장애인복지시설 수 =  
거주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재활시설

2015년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국에 1,484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1,248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560개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17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17개소로, 이를 합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3,326개소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한정)의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612개)과 경기(609개)에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시설의 약 36.7%에 해당한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남(242개)과 경북(228개)에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분포되어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15	1년

## Checkpoint

2012년에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개소 수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기존 생활시설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된 것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수는 모든 유형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 추세가 소폭 꺾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년 200개소 이상의 복지시설이 새롭게 신설되던 양상이 2013년에는 127개소 증가, 2014년에는 118개소 증가, 2015년에는 82개소 증가로 점차 증가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45 장애인복지시설 수 (20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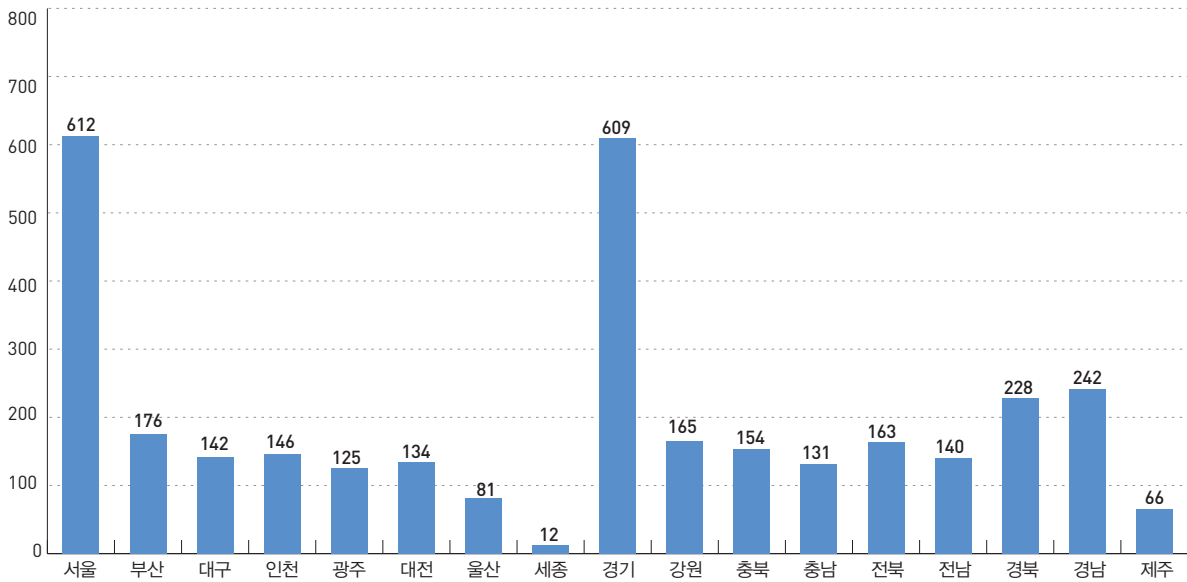
(단위: 개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거주시설	237	265	288	314	347	397	452	490	1,348	1,397	1,457	1,484
지역사회재활시설	536	1,049	1,125	1,286	1,419	1,563	1,701	1,820	1,140	1,184	1,213	1,248
직업재활시설	238	244	319	339	364	386	417	456	478	511	539	56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	-	-	-	-	16	16	16	17	1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	-	-	-	17	17	18	18	18
소계	1,011	1,558	1,732	1,939	2,130	2,346	2,570	2,799	2,999	3,126	3,244	3,327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그림 2-58 시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수 (2015)

(단위: 개소)



주: 시·도 비교에서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대체로 광역 단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어 제외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5

# 장애인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Number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sidents

## 지표 정의

장애인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지표를 통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 및 현황 등 시설 장애인 복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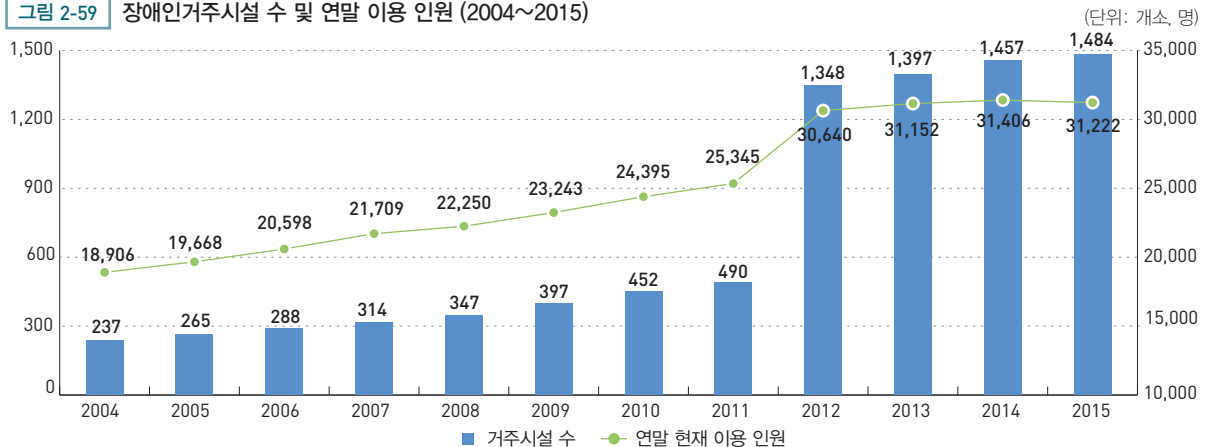
본 지표는 각각의 시설 수와 연도 말 기준 거주하는 실인원 수를 측정한다.

2015년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모두 1,484개소가 있으며, 전체 거주시설의 57.8%인 858개소가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다.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내 거주서비스 요구에 조용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시설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체, 시각, 청각언어 장애인시설은 2006년~2008년을 정점으로 거주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시설 수도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지적장애인 대상의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수는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2009년 9,539개소에서 2015년 321개소), 거주인원 수도 같은 기간 9,539명에서 12,369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2015년 현재 경기도가 310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290개로 뒤를 잇고 있다. 그 외 지역별로 시설 분포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2-59 장애인거주시설 수 및 연말 이용 인원 (2004~2015)



주: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로 재편됨.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거주시설 수와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15	1년

표 2-46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현황 (2001~2015)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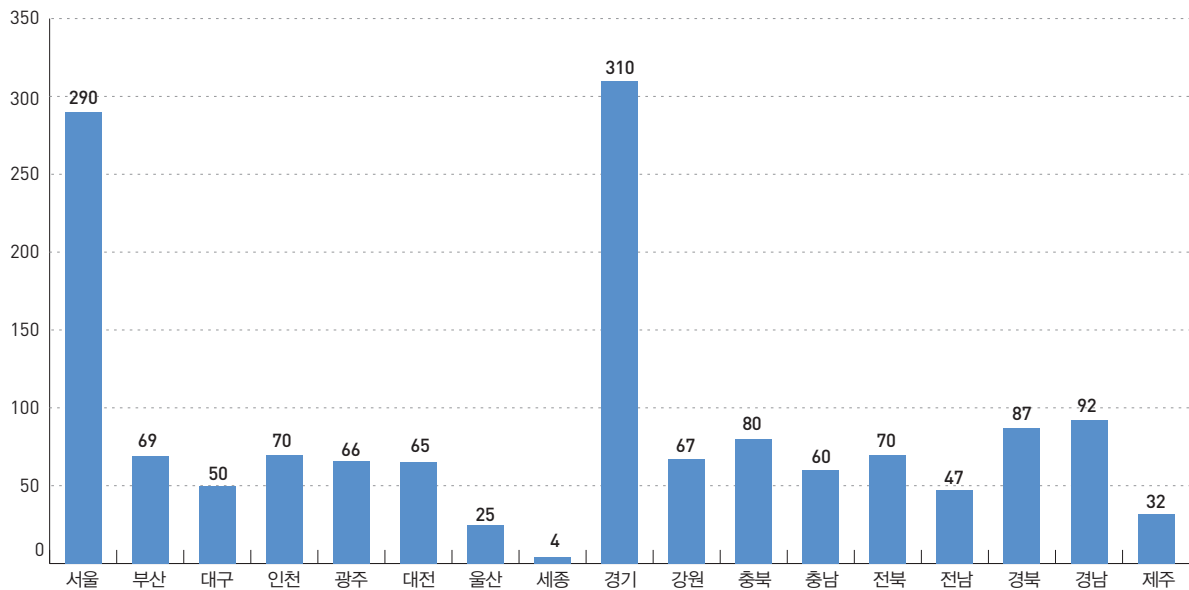
구 분	소계*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		장애영유아		단기보호 시설		공동생활 가정	
			생활시설 소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 장애인		지적장애인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2001	203	17,720	130	11,607	34	2,710	10	623	11	784	75	7,490	73	6,113	-	-	-	-	-	-
2002	213	17,959	142	11,351	32	2,355	11	708	13	776	86	7,512	71	6,608	-	-	15	-	63	-
2003	225	18,432	147	11,545	32	2,374	12	708	13	778	90	7,685	74	6,558	4	264	25	-	100	-
2004	237	18,906	150	11,498	31	2,357	12	717	11	674	96	7,750	82	7,117	5	291	30	-	152	-
2005	265	19,668	166	11,714	31	2,332	13	632	12	735	110	8,015	93	7,657	6	297	61	-	331	-
2006	288	20,598	179	12,241	30	2,281	15	824	12	728	122	8,408	102	8,038	7	319	69	-	358	-
2007	314	21,709	189	12,921	33	2,283	14	792	11	521	131	9,325	116	8,345	9	443	76	-	400	-
2008	347	22,250	202	12,814	33	2,292	14	784	11	546	144	9,192	136	8,981	9	455	84	-	450	-
2009	397	23,243	235	13,048	38	2,230	14	760	11	519	172	9,539	153	9,728	9	467	91	-	531	-
2010	452	24,395	260	19,270	40	3,673	14	873	10	386	196	14,338	182	4,813	10	312	103	-	589	-
2011	490	25,345	289	14,038	39	2,102	15	787	9	361	226	10,788	191	10,798	10	509	119	-	637	-
2012	1,348	30,640	342	14,926	40	2,057	16	786	8	335	278	11,748	201	11,006	10	510	128	1,438	667	2,760
2013	1,397	31,152	356	15,069	39	1,978	16	770	8	320	293	12,001	216	11,412	9	473	131	1,432	685	2,766
2014	1,457	31,406	375	15,246	44	2,208	15	632	7	270	309	12,136	223	11,344	9	466	137	1,495	713	2,855
2015	1,484	31,222	383	14,920	39	1,668	16	628	7	255	321	12,369	233	11,314	10	541	141	1,548	717	2,899

주: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로 재편됨.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거주시설 수와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그림 2-60 시도별 장애인거주시설 수 (2015)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5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Number of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지표 정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지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측정 산식

· 전국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수를 말한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1) 복지관, (2) 주간보호시설, (3) 체육관, (4) 심부름센터, (5) 수화통역센터로 구분된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가 2004년에 536개소에서 2011년에 1,820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12년에 1,140개소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되고, 의료재활시설은 별도로 분류되어 장애인지역사회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른 결과이다. 다만, 2014년부터는 점자도서관 및 점자도서출판시설이 기타 시설로서 통계에 산입되었다.

이 중 장애인복지관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는데, 2005년 130개소였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224개소로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05년에 259개소에서 2015년에는 625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 205개소, 서울에 197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15	1년

표 2-4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2005~2015)

(단위: 개소)

구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단기 보호	공동생활 가정	의료재활 시설
	계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	기타			
2005	1,049	130	259	22	124	108	-	61	331	14
2006	1,125	137	274	25	129	107	-	69	358	26
2007	1,286	157	321	24	149	143	-	76	400	16
2008	1,419	171	365	26	152	154	-	84	450	17
2009	1,563	185	395	27	154	162	-	91	531	18
2010	1,701	191	443	27	154	176	-	103	589	18
2011	1,820	199	485	27	156	180	-	119	637	17
2012	1,140	205	526	28	156	191	-	-	-	-
2013	1,184	219	558	29	155	199	-	-	-	18
2014	1,213	223	592	29	156	193	20	-	-	18
2015	1,248	224	625	30	156	193	20	-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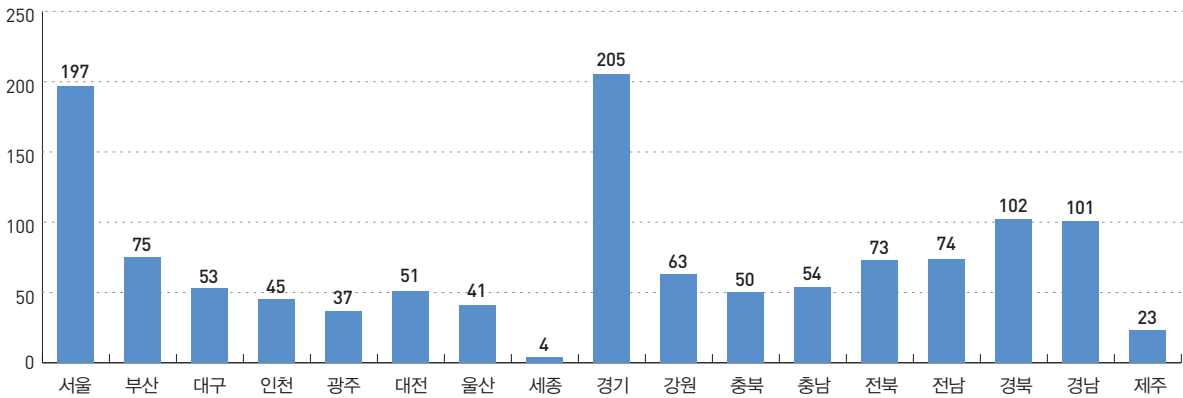
주: 1) 단기보호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의료재활시설은 201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위 자료에서는 함께 표기함.

2) 2014년부터 점자도서관 및 점자도서출판시설이 기타 시설로 통계 산입.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그림 2-61 시도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2015)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5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Number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지표 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작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본 지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지원정책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표는 각각의 시설 수를 측정한다.

직업재활시설은 지속적인 신·증축을 통한 시설확충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238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은 2015년 약 2배에 이르는 56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시설을 통한 근로참여 장애인의 수도 2004년 7,486명에서 2015년 16,41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현재 496개소의 보호작업장에서 13,616명의 장애인이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64개소에서 2,798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120개소, 경기도에 93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해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치 현황은 공개되지 않아 본 지표와 관련 통계에서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만을 다루었다.

표 2-4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및 연말 이용 인원 (20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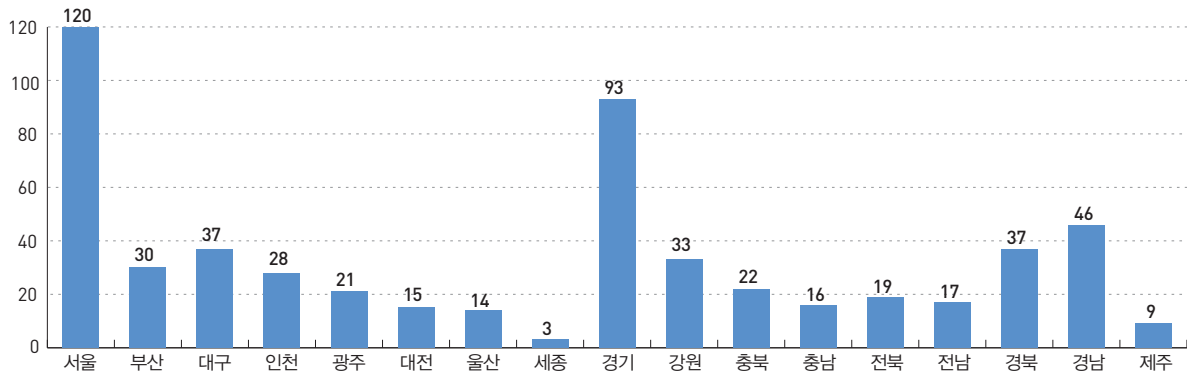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호 작업장	시설 수	217	220	177	189	212	250	373	403	422	447	477	496
	이용 인원	6,308	6,432	4,835	5,238	5,559	6,574	10,009	10,680	11,374	12,086	12,930	13,616
근로 사업장	시설 수	21	24	24	29	31	33	44	53	56	64	64	64
	이용 인원	1,178	1,252	1,246	1,344	1,422	1,516	1,761	2,190	2,384	2,653	2,721	2,798
총계	시설 수	238	244	319	339	364	386	417	456	478	511	541	560
	이용 인원	7,486	7,684	9,481	10,059	10,422	11,048	11,770	12,870	13,758	14,739	15,651	16,414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그림 2-62 시도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2015)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5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Installation Rate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지표 정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 중 정해진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비율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대상시설은 전국적으로 14만 2천여 개이며, 설치대상 편의시설은 모두 630여 만 개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전반적인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text{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times 100$$

2013년 전수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67.9%, 적정설치율은 60.2%로 나타났다. 적정 설치율은 설치된 시설의 수준을 적정, 미흡, 미설치의 3단계로 구분하여, 이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을 의미한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여러 설치 기준 중 편의시설 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부설치 기준만을 선정하여 적용한 것이 핵심항목기준 편의시설 설치율이다. 2013년 전수조사에서 핵심항목기준 편의시설 설치율은 72.9%(적정설치율 62.9%와 미흡설치율 10.0%)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편의시설의 설치대상 건물과 대상 편의시설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72.2%를 나타낸 대구광역시였으며, 충청북도가 60.3%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대체로 특·광역시권역은 설치율이 높고, 도지역은 설치율이 낮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5	2013	5년

## Checkpoint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그러므로 편의시설 설치율에 관한 통계는 2013년과 동일하다. 지역별로 분석대상 시설이 인구나 면적에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조사대상시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3

표 2-49 연도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2013)

(단위: 개소, %)

편의시설 종류	2008					2013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1,342,840	1,047,843	78.0	754,353	56.2	2,729,583	1,897,877	69.5	1,706,129	62.5
내부시설	1,682,872	1,446,698	86.0	1,083,686	64.4	1,929,421	1,555,422	80.6	1,392,127	72.2
위생시설	608,810	342,769	56.3	209,918	34.5	1,250,126	583,869	46.7	478,392	38.3
안내시설	46,876	23,248	49.6	12,120	25.9	195,730	82,643	42.2	70,711	36.1
기타시설	79,394	54,811	69.0	38,173	48.1	200,514	163,868	81.7	147,789	73.7
계	3,760,792	2,915,369	77.5	2,098,250	55.8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3

표 2-50 핵심항목 기준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2013)

(단위: 개소, %)

편의시설 종류	핵심 세부항목 수	적정 설치 수	적정설치율(%)	미흡설치 수	미흡설치율(%)	설치율(%)
매개시설	317,504	208,725	65.7	45,853	14.4	80.1
내부시설	207,046	169,972	82.1	10,106	4.9	87.0
위생시설	188,214	82,452	43.8	14,351	7.6	51.4
안내시설	76,128	33,794	44.4	8,298	10.9	55.3
기타시설	24,841	16,895	68.0	2,823	11.4	79.4
계	813,733	511,838	62.9	81,431	10.0	72.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3

표 2-51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 (2013)

(단위: 개소, %)

구분	대상건물 수	대상편의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서울	18,529	698,539	469,537	67.2	423,987	60.7
부산	9,672	445,606	318,466	71.5	293,709	65.9
대구	7,002	236,084	170,423	72.2	152,237	64.5
인천	10,450	415,069	277,264	66.8	247,923	59.7
광주	5,052	229,268	161,775	70.6	140,738	61.4
대전	3,535	109,913	78,329	71.3	70,351	64.0
울산	3,606	173,880	122,601	70.5	116,142	66.8
경기	29,541	1,326,389	923,628	69.6	827,777	62.4
강원	4,467	157,822	112,669	71.4	101,542	64.3
충북	4,927	252,523	152,183	60.3	133,251	52.8
충남(세종)	7,538	367,452	237,977	64.8	201,350	54.8
전북	7,159	333,595	227,433	68.2	202,147	60.6
전남	7,553	404,951	260,484	64.3	209,999	51.9
경북	10,270	515,110	334,029	64.8	286,019	55.5
경남	9,351	493,597	333,975	67.7	293,858	59.5
제주	2,921	145,576	102,906	70.7	94,118	64.7
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3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 Users and Expenditure

## 지표 정의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급여를 지급한다.

## 측정 산식(2015년 기준)

- 급여액 : 총 이용 가능 금액(월 220천 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제한 금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만 원, 차상위초과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4만 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6만 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8만 원

2015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6월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12월을 기준으로 시도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2,2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8,316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제주와 울산이 각각 935명, 1,060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이용자 수가 타 지역보다 적었다. 소득수준별로는 12월 기준으로 전체 51,609명 중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이용자 수가 18,62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전체의 36%)을 차지하였다.

표 2-52 연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12월말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이용자 수	46,979	50,769	51,609
이용액	8,052,683	8,563,030	8,622,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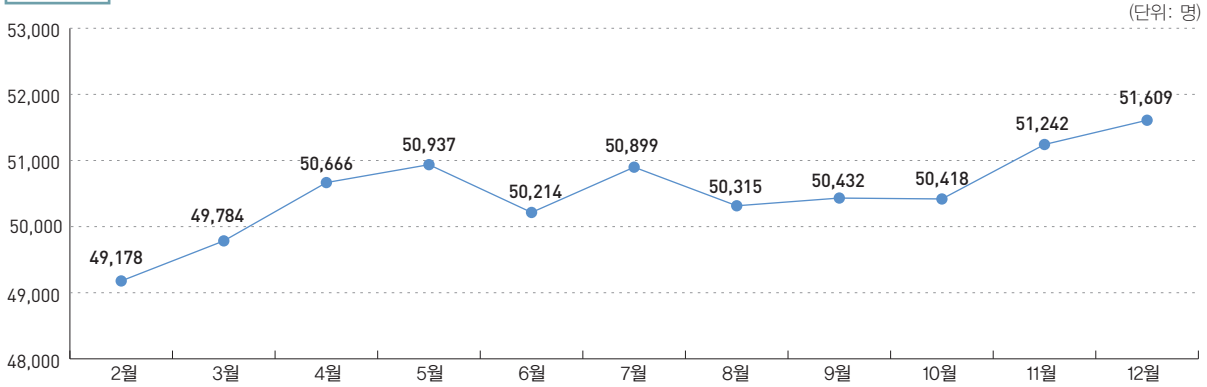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5	1년

### Checkpoint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5년 12월 51,609명으로 2013년 12월 기준 46,979명에서 2014년 12월 50,769명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이용액도 2013년 12월 8,053백만 원에서 2015년 12월 8,622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소득수준별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100% 미만인 가구가 3년 연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63 월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2015)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그림 2-64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2015.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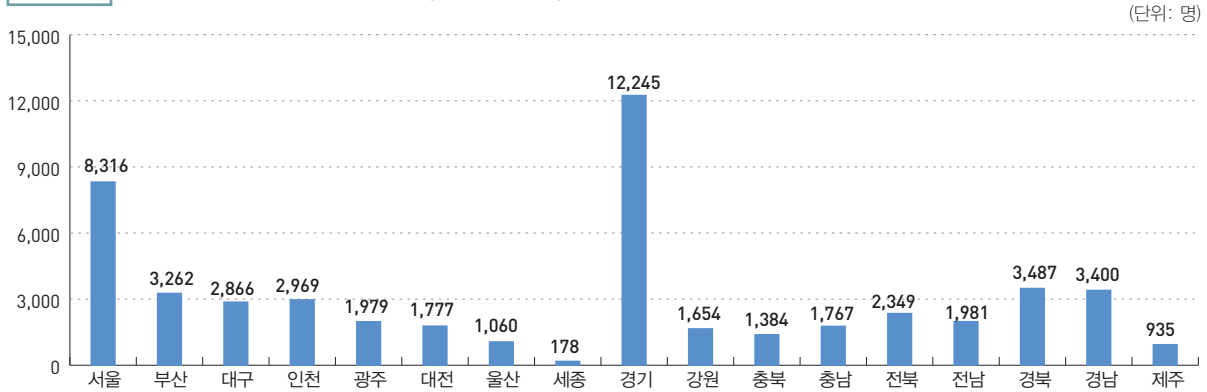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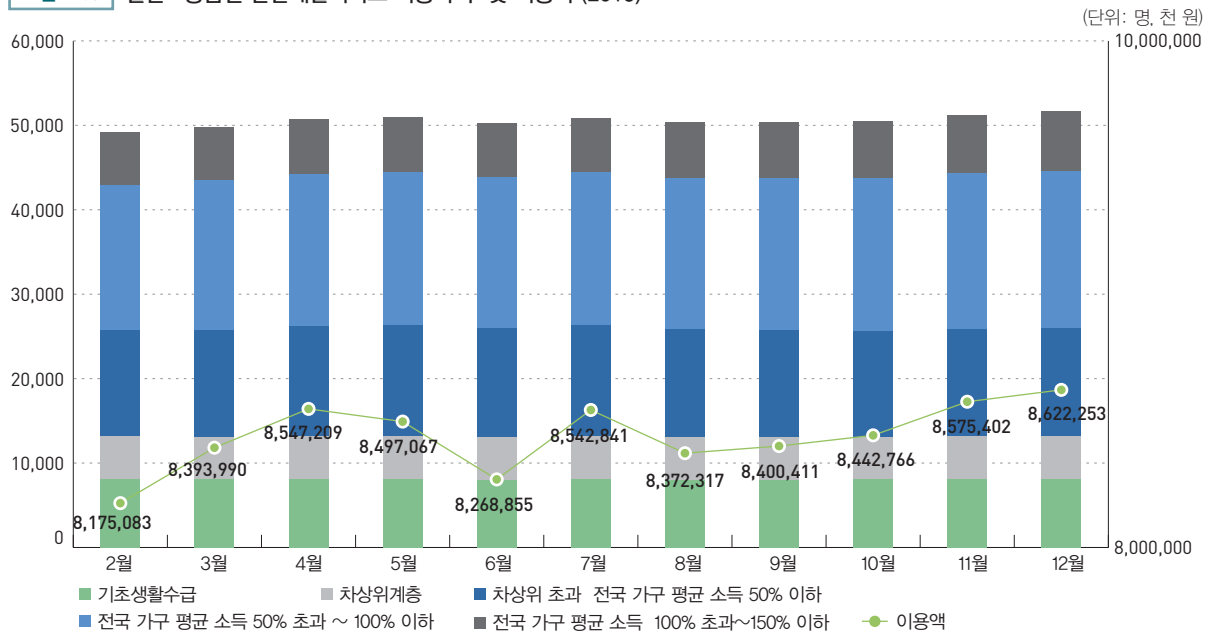


표 2-53 월별 ·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2015)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7,419	7,441	7,560	7,554	7,556	7,723	7,686	7,722	7,706	8,052	8,316
부산	3,180	3,124	3,146	3,137	3,076	3,050	2,971	2,950	2,918	3,128	3,262
대구	2,955	2,999	3,011	2,986	2,942	2,934	2,882	2,897	2,888	2,868	2,866
인천	2,728	2,750	2,792	2,793	2,807	2,819	2,786	2,789	2,935	2,980	2,969
광주	2,032	2,057	2,103	2,146	2,136	2,125	2,083	2,078	2,048	2,014	1,979
대전	1,987	1,968	1,947	1,931	1,865	1,896	1,849	1,847	1,823	1,796	1,777
울산	1,011	1,051	1,088	1,082	1,063	1,056	1,041	1,043	1,043	1,043	1,060
세종	145	169	183	192	180	180	177	175	173	172	178
경기	11,463	11,762	12,100	12,246	11,945	12,298	12,193	12,226	12,196	12,219	12,245
강원	1,575	1,609	1,637	1,661	1,526	1,689	1,699	1,682	1,683	1,666	1,654
충북	1,127	1,167	1,209	1,214	1,191	1,203	1,195	1,314	1,386	1,402	1,384
충남	1,794	1,813	1,817	1,821	1,791	1,811	1,792	1,775	1,794	1,791	1,767
전북	2,287	2,245	2,253	2,219	2,218	2,203	2,176	2,158	2,143	2,303	2,349
전남	2,042	2,045	2,075	2,091	2,061	2,054	2,040	2,030	1,979	1,952	1,981
경북	3,149	3,274	3,411	3,520	3,566	3,560	3,539	3,523	3,523	3,496	3,487
경남	3,300	3,311	3,346	3,351	3,303	3,299	3,206	3,227	3,189	3,386	3,400
제주	984	999	988	993	988	999	1,000	996	991	974	935
합계	49,178	49,784	50,666	50,937	50,214	50,899	50,315	50,432	50,418	51,242	51,609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그림 2-65 월별·등급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5)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표 2-54 발달재활서비스 월별·등급별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5)

구분	이용자 수					합계	이용액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초과 ~100% 이하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초과 ~150% 이하		
2월	8,093	5,020	12,560	17,273	6,232	49,178	8,175,083
3월	8,062	5,013	12,685	17,652	6,372	49,784	8,393,990
4월	8,075	5,104	12,986	18,024	6,503	50,666	8,547,209
5월	8,087	5,130	13,116	18,084	6,520	50,937	8,497,067
6월	7,955	5,071	12,957	17,814	6,417	50,214	8,268,855
7월	8,068	5,116	13,142	18,064	6,509	50,899	8,542,841
8월	8,018	5,050	12,779	17,889	6,579	50,315	8,372,317
9월	8,023	5,075	12,657	17,961	6,716	50,432	8,400,411
10월	8,058	5,043	12,547	18,015	6,755	50,418	8,442,766
11월	8,154	5,019	12,676	18,441	6,952	51,242	8,575,402
12월	8,150	5,006	12,789	18,621	7,043	51,609	8,622,253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Users and Expenditure

## 지표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2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거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일 때 선정되며, 각 활동 지원등급,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바우처를 지원한다.

## 측정 산식

- 장애인정점수별 등급을 설정하여(4등급) 각 등급별 최저 422천원(4등급)에서 최대 1,040천원(1등급)까지 활동지원 기본급여를 산정
  - 최종중 독거가구나 중중독거가구, 가구원이 중증장애인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인 취약가구, 출산한 임신부가 있는 가구,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가구, 학교, 직장생활을 수행하는 가구의 경우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급여를 최저 89천원(학교생활)에서 최대 2,411천 원(최중증 1인/취약가구)까지 지원
  -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부담하며 등급에 따라 구간별 본인부담률(6% ~ 15%) 부과
-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월별 이용자 수 및 이용액은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 이용자 수를 살펴 본 결과 12월 기준 서울시가 12,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2,287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이용액도 서울시가 14,648백만원, 경기도가 13,224백만원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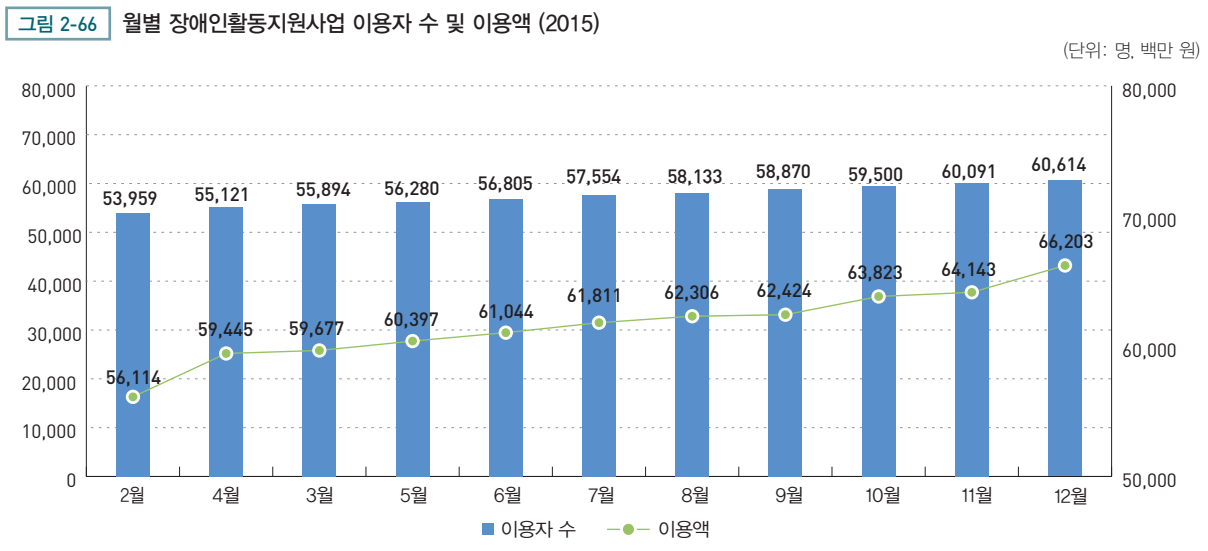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5	1년

### Checkpoint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이용자 수는 2015년 12월 60,614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2.3% 증가하여 2013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용액 역시 66,203백만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7.1% 증가하여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55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12월말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이용자 수	48,394	53,952	60,614
이용액	50,001,289	56,552,453	66,203,438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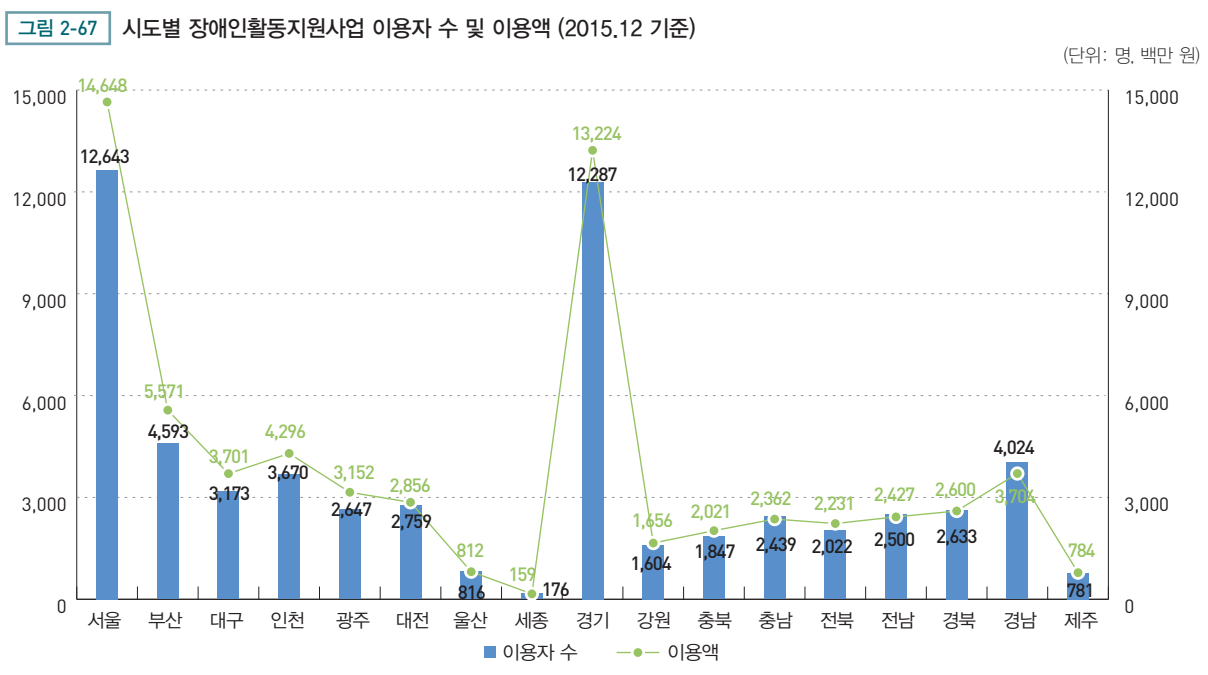


표 2-56 시도별·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2015)

(단위: 명)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1,523	11,707	11,807	11,899	11,970	12,099	12,191	12,309	12,406	12,535	12,643
부산	4,213	4,269	4,292	4,324	4,364	4,412	4,441	4,483	4,514	4,542	4,593
대구	2,895	2,963	2,996	3,000	3,025	3,062	3,077	3,118	3,139	3,152	3,173
인천	3,270	3,347	3,398	3,409	3,433	3,480	3,508	3,579	3,619	3,643	3,670
광주	2,392	2,416	2,444	2,475	2,501	2,532	2,560	2,582	2,599	2,628	2,647
대전	2,495	2,547	2,595	2,611	2,629	2,646	2,676	2,711	2,735	2,746	2,759
울산	720	738	752	764	764	771	776	789	801	819	816
세종	128	138	150	153	156	156	155	161	168	172	176
경기	10,642	10,944	11,125	11,225	11,329	11,494	11,640	11,805	12,010	12,160	12,287
강원	1,402	1,434	1,462	1,466	1,499	1,521	1,540	1,548	1,566	1,582	1,604
충북	1,657	1,682	1,709	1,710	1,726	1,751	1,770	1,794	1,818	1,825	1,847
충남	2,026	2,112	2,155	2,180	2,211	2,257	2,308	2,350	2,380	2,430	2,439
전북	1,858	1,883	1,901	1,908	1,936	1,950	1,957	1,973	1,995	1,996	2,022
전남	2,194	2,234	2,288	2,296	2,333	2,344	2,388	2,423	2,444	2,473	2,500
경북	2,295	2,356	2,415	2,441	2,475	2,494	2,507	2,551	2,575	2,603	2,633
경남	3,553	3,625	3,675	3,685	3,713	3,834	3,881	3,926	3,963	4,010	4,024
제주	696	726	730	734	741	751	758	768	768	775	781
합계	53,959	55,121	55,894	56,280	56,805	57,554	58,133	58,870	59,500	60,091	60,614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표 2-57 시도별·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액 (2015)

(단위: 천 원)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2,623,740	13,313,757	13,279,752	13,414,850	13,548,291	13,692,507	13,780,276	13,814,964	14,086,828	14,211,198	14,648,284
부산	4,867,418	5,098,432	5,080,690	5,147,825	5,196,135	5,237,036	5,280,322	5,274,182	5,391,062	5,392,560	5,570,608
대구	3,201,595	3,402,783	3,415,206	3,458,440	3,463,239	3,511,860	3,527,708	3,523,294	3,593,239	3,579,855	3,701,398
인천	3,604,418	3,837,649	3,875,225	3,892,115	3,959,231	3,971,070	4,011,445	4,030,396	4,121,957	4,114,480	4,296,153
광주	2,760,944	2,878,372	2,865,230	2,908,455	2,926,363	2,972,710	3,016,906	3,007,425	3,049,030	3,079,873	3,152,473
대전	2,546,570	2,659,498	2,674,136	2,716,625	2,717,231	2,736,025	2,765,272	2,778,566	2,789,662	2,820,949	2,855,586
울산	663,980	705,503	717,270	721,008	728,919	742,718	721,455	748,695	776,798	789,622	811,677
세종	114,151	124,298	126,857	127,432	133,558	136,708	130,686	136,733	149,851	147,621	159,145
경기	10,978,245	11,658,098	11,750,489	11,928,261	12,021,424	12,276,796	12,388,918	12,432,186	12,759,620	12,834,483	13,223,537
강원	1,330,987	1,443,701	1,451,909	1,455,066	1,496,499	1,523,276	1,521,026	1,515,816	1,569,312	1,574,098	1,655,503
충북	1,693,858	1,802,179	1,825,497	1,837,580	1,850,933	1,877,578	1,892,754	1,887,985	1,947,045	1,942,614	2,020,828
충남	1,919,057	2,044,560	2,088,728	2,123,606	2,155,330	2,201,796	2,233,910	2,258,669	2,287,054	2,313,608	2,362,496
전북	1,867,713	2,000,744	1,994,304	2,041,165	2,052,848	2,077,429	2,098,408	2,074,276	2,137,630	2,128,904	2,230,669
전남	2,034,339	2,160,383	2,184,843	2,202,663	2,244,879	2,243,044	2,269,772	2,249,300	2,320,973	2,333,602	2,427,130
경북	2,073,521	2,250,310	2,265,582	2,302,112	2,382,577	2,395,457	2,398,434	2,392,198	2,471,780	2,481,829	2,599,544
경남	3,139,419	3,332,410	3,345,137	3,372,646	3,409,082	3,458,759	3,506,333	3,530,289	3,605,730	3,626,877	3,704,425
제주	694,181	732,429	735,740	747,260	757,876	756,699	761,904	768,653	765,386	770,584	783,983
합계	56,114,135	59,445,104	59,676,594	60,397,107	61,044,416	61,811,468	62,305,530	62,423,625	63,822,956	64,142,758	66,203,438

주: 1)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2)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An Overview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Providing organization and provider

## 지표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기관은 시군구의 공모에 의거 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활동보조기관,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기관으로 구분된다. 활동지원인력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자격기준은 활동내역에 따라 상이하다. 본 지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별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수를 의미한다.

## 측정 산식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청에 지정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결제이력이 있는 제공기관 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활동지원인력 수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1회 이상 결제이력이 있는 제공기관은 전국 888개소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143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1개소, 경남 84개소, 전북 67개소, 부산 66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공인력은 전국 65,258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제공인력이 15,1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751명, 부산 5,022명, 인천 4,475명, 경남 4,30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공기관의 수치는 2013년 936개에서 2014년 824개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2015년 862개로 늘어났다. 제공인력은 2013년 40,448명, 2014년 46,812명, 2015년 52,76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5	1년

## Checkpoint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은 전국 평균 52.2개소로 서울, 경기, 경남, 전남, 부산, 경북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공인력은 전국 평균 3,838.7명으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경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공기관 대비 제공인력은 전국 평균 73.5명으로 강원, 전남, 전북, 경북, 세종, 경남, 충남, 충북은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체활동지원(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목욕(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표 2-58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12월 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제공기관 수			제공인력 수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계	936	824	862	40,448	46,812	52,761

표 2-59 월별, 시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수 (2015)

(단위: 개소)

구분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43	128	130	133	132	134	135	135	136	138	138	138
부산	66	63	63	63	63	63	64	64	64	65	65	66
대구	37	36	36	37	36	36	36	36	36	36	36	36
인천	47	43	45	44	44	44	44	43	46	46	45	45
광주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5
대전	21	20	20	20	20	20	20	20	21	21	21	21
울산	9	9	9	9	9	9	9	9	9	9	9	9
세종	5	5	5	5	5	5	5	5	5	5	5	5
경기	141	126	125	127	128	130	129	130	136	134	133	135
강원	43	41	41	42	41	41	41	42	42	42	42	42
충북	34	32	32	32	32	33	33	33	32	33	32	33
충남	46	45	46	46	46	46	46	45	45	45	45	45
전북	50	43	44	47	46	47	47	46	47	47	47	47
전남	67	65	65	66	66	65	65	65	65	65	65	65
경북	60	58	59	59	59	59	59	58	58	58	58	59
경남	84	79	79	80	80	81	81	82	83	83	83	83
제주	9	9	9	9	9	9	9	9	9	9	8	8
합계	888	828	834	845	842	848	849	848	860	862	858	862

주: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수는 1건 이상 결재이력이 있는 기관 수이며, 합계는 2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기관 수의 합임.

표 2-60 월별, 시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수 (2015)

(단위: 명)

구분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5,129	10,738	11,038	11,188	11,226	11,315	11,431	11,474	11,593	11,684	11,789	11,866
부산	5,022	3,709	3,794	3,813	3,813	3,866	3,896	3,908	3,945	3,990	4,021	4,035
대구	3,571	2,616	2,709	2,756	2,749	2,784	2,808	2,802	2,828	2,858	2,855	2,889
인천	4,475	3,000	3,113	3,166	3,182	3,233	3,266	3,298	3,337	3,387	3,411	3,451
광주	3,418	2,350	2,408	2,434	2,466	2,506	2,522	2,543	2,597	2,602	2,612	2,626
대전	3,110	2,192	2,276	2,324	2,327	2,343	2,337	2,363	2,378	2,387	2,428	2,455
울산	905	616	635	650	652	665	667	662	682	697	710	713
세종	255	122	129	136	141	141	141	144	147	154	157	157
경기	13,751	9,264	9,604	9,797	9,856	10,010	10,137	10,284	10,392	10,569	10,712	10,831
강원	1,566	1,098	1,120	1,153	1,143	1,158	1,162	1,166	1,179	1,191	1,206	1,209
충북	2,080	1,449	1,492	1,502	1,513	1,527	1,539	1,556	1,574	1,592	1,592	1,636
충남	2,485	1,645	1,731	1,751	1,775	1,808	1,836	1,878	1,905	1,925	1,951	1,953
전북	2,029	1,451	1,497	1,503	1,510	1,533	1,555	1,565	1,575	1,596	1,600	1,617
전남	2,622	1,784	1,852	1,877	1,899	1,923	1,927	1,958	1,969	1,991	2,019	2,049
경북	2,580	1,786	1,842	1,881	1,903	1,945	1,962	1,986	2,032	2,043	2,078	2,095
경남	4,303	2,961	3,062	3,113	3,132	3,172	3,231	3,273	3,307	3,348	3,378	3,388
제주	776	548	565	573	580	592	602	597	614	614	626	623
합계	65,258	46,728	48,127	48,849	49,100	49,746	50,260	50,612	51,233	51,836	52,315	52,761

주: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수는 1건 이상 결재이력이 있는 기관 수이며, 합계는 2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기관 수의 합임.

#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Number of the Child Care Facilit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Users

## 지표 정의

장애아 어린이집은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구분한다. 이용 아동은 각각 시설의 연도말 이용 현원을 의미한다.

본 지표를 통해 장애아 보육정책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장애아를 전문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현 인원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현 인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이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이다.

장애아 어린이집은 2004년 332개소에서 2015년 1,074개소로 증가하였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모두 2005년 크게 늘어났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지만 2008년을 경과하면서 시설 수 증가폭은 줄었다. 이용 아동 수는 2008년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2004년 103개소에서 2015년 17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이용 아동 역시 3,935명에서 5,895명으로 증가하였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2004년 229개소에서 2015년 899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용 아동 수는 같은 기간 1,666명에서 3,929명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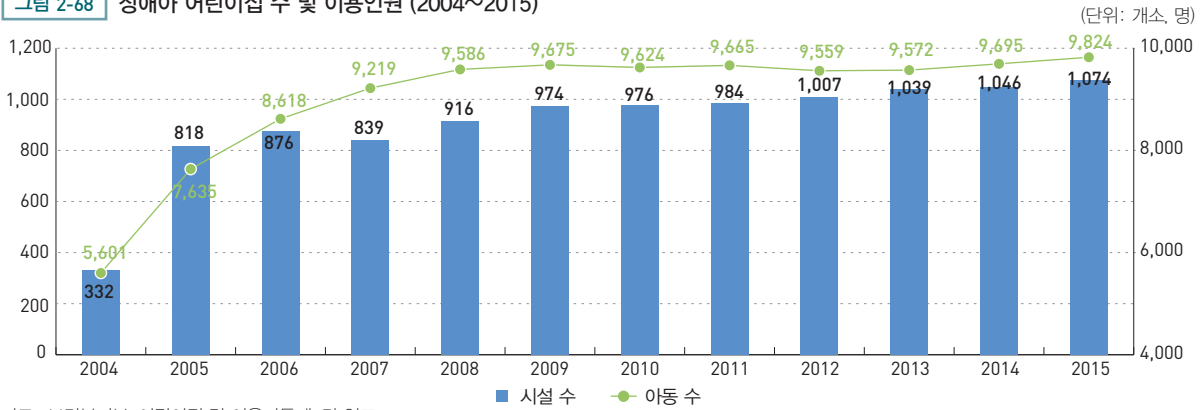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2004	2015	1년

### Checkpoint

2000년대 중반 장애아 어린이집과 이용 아동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시설 수는 28개소, 이용 아동은 129명 증가하였다. 통합보육이 강조되면서 시설 증가의 대부분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은 2009년 이후 대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림 2-68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인원 (2004~2015)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각 연도

표 2-61 유형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인원 (2004~2015)

(단위: 개소, 명)

유형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설 수	장애아 전문	103	132	144	154	160	168	166	169	171	172	174	175
	장애아 통합	229	686	732	685	756	806	810	815	836	867	872	899
이용 아동 수	장애아 전문	3,935	5,053	5,406	5,887	6,068	6,206	6,137	6,152	5,994	5,883	5,860	5,895
	장애아 통합	1,666	2,582	3,212	3,332	3,518	3,469	3,487	3,513	3,565	3,689	3,835	3,929
시설 소계	332	818	876	839	916	974	976	984	1,007	1,039	1,046	1,074	
이용 아동 소계	5,601	7,635	8,618	9,219	9,586	9,675	9,624	9,665	9,559	9,572	9,695	9,824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각 연도

표 2-62 시도별·유형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인원 (2015)

(단위: 개소, 명)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합계	
	시설 수	이용 아동	시설 수	이용 아동	시설 수	이용 아동
서울	10	229	320	1,572	330	1,801
부산	16	523	34	130	50	653
대구	17	741	13	72	30	813
인천	6	129	60	340	66	469
광주	11	475	1	12	12	487
대전	5	103	14	49	19	152
울산	8	339	14	72	22	411
세종	0	0	6	8	6	8
경기	19	525	267	1,184	286	1,709
강원	4	121	17	61	21	182
충북	7	177	12	27	19	204
충남	10	285	33	42	43	327
전북	10	366	12	58	22	424
전남	13	500	13	31	26	531
경북	14	667	19	89	33	756
경남	21	595	29	93	50	688
제주	4	120	35	89	39	209
합계	175	5,895	899	3,929	1,074	9,824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5

# 특수교육 대상자 수

Number of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 지표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한 장애영아 및 학생 수를 의미한다.

## 측정 산식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아 및 학생 수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05년 58,362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79,711명, 2013년 86,633명, 2016년 현재 87,950명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5,186명, 초등학교 33,770명, 중학교 19,793명, 고등학교는 23,9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가 2005년 11,748명에서 2016년 23,94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장애유형별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지적장애 학생이 47,25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지체장애 학생 11,019명, 자폐성장애 학생 10,9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는 모든 연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나 자폐성장애는 2009년 4,647명에서 2016년 10,985명으로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이 배치된 교육기관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46,645명)으로 전체 중 53.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학생은 15,344명(17.4%)으로 이 두 가지 형태를 합하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은 전체 장애학생 중 70.5%(61,989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특수학교의 학생은 25,467명으로 전체의 2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주로 통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08	2016	1년

## Checkpoint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5년 이후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6년 처음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증감 현황을 학교급별로 보면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에서는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학교는 2015년 21,108명에서 2016년 19,793명으로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장애와 의사소통장애, 발달지체에서만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교육기관별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만 대상자 수가 증가하여 특수학급에 대한 장애인의 교육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표 2-63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2005~2016)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58,362	62,538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장애영아	-	-	-	-	288	290	356	403	578	680	742	656
유치원	3,057	3,243	3,125	3,236	3,303	3,225	3,367	3,675	4,190	4,219	4,744	5,186
초등학교	31,064	32,263	32,752	33,974	34,035	35,294	35,124	34,458	33,518	33,184	33,591	33,770
중학교	12,493	13,972	15,267	16,833	17,946	19,375	20,508	21,535	22,241	22,159	21,108	19,793
고등학교	11,748	13,060	13,349	15,686	17,553	19,111	20,439	21,649	22,466	22,973	23,422	23,943
전공과	-	-	1,447	1,755	2,062	2,416	2,871	3,292	3,640	4,063	4,460	4,602

주: 장애영아는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등임.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표 2-64 장애유형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2005~2016)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58,362	62,538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시각장애	1,745	1,902	2,292	2,103	2,113	2,398	2,315	2,303	2,220	2,130	2,088	2,035
청각장애	2,549	2,806	2,864	3,073	3,385	3,726	3,676	3,744	3,666	3,581	3,491	3,401
지적장애	33,618	33,958	36,041	40,222	40,601	42,690	45,132	46,265	47,120	47,667	47,716	47,258
지체장애	5,924	6,957	7,739	8,788	9,659	10,367	10,727	11,279	11,233	11,209	11,134	11,019
정서행동장애	5,870	8,852	7,695	7,681	3,537	3,588	2,817	2,713	2,754	2,605	2,530	2,221
자폐성장애	-	-	-	-	4,647	5,463	6,809	7,922	8,722	9,334	10,045	10,985
의사소통장애	-	301	1,185	1,226	1,324	1,591	1,631	1,819	1,953	1,966	2,045	2,089
학습장애	8,447	6,738	6,982	6,754	6,526	6,320	5,606	4,724	4,060	3,362	2,770	2,327
건강장애	209	1,024	1,142	1,637	1,945	2,174	2,229	2,195	2,157	2,029	1,935	1,675
발달지체	-	-	-	-	1,450	1,394	1,723	2,048	2,748	3,395	4,313	4,940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표 2-65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2005~2016)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58,362	62,538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일반학교 일반학급	5,110	6,741	7,637	10,227	12,006	13,746	14,741	15,647	15,930	15,648	15,622	15,344
일반학교 특수학급	29,803	32,506	35,340	37,857	39,380	42,021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	46,645
특수학교	23,449	23,291	22,963	23,400	23,606	23,776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25,467
특수교육지원센터	-	-	-	-	195	168	161	212	384	539	563	494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Inclusion Rate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 지표 정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전일제 통합학급에서 완전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표는 장애학생 개개인이 성공적으로 질 높은 통합교육을 제공받는지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일반학교 일반 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text{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times 100$$

특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2000년 54,732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87,950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일반적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각 25,467명, 494명) 또는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경우(46,645명)와 비장애학생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는 경우(15,344명)로 분류된다.

전일제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은 2005년 8.8%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최고 18.4%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시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 2016년 현재 17.4%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일제 통합학급 참여 장애학생 수는 총 15,344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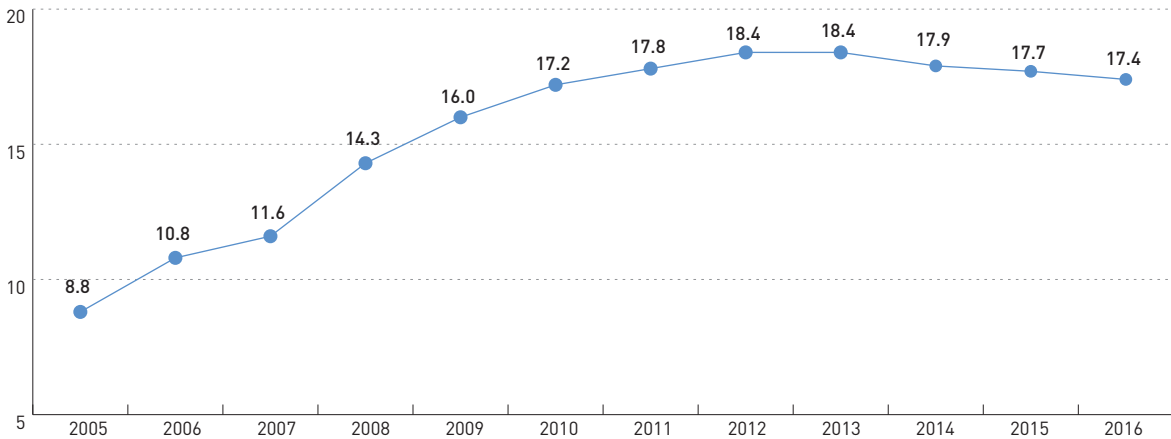
2016년을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참여율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의 경우 통합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합교육 참여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24.7%, 제주 24.6%, 울산 23.5%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 전남, 충남 및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통합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08	2016	1년

그림 2-69 전일제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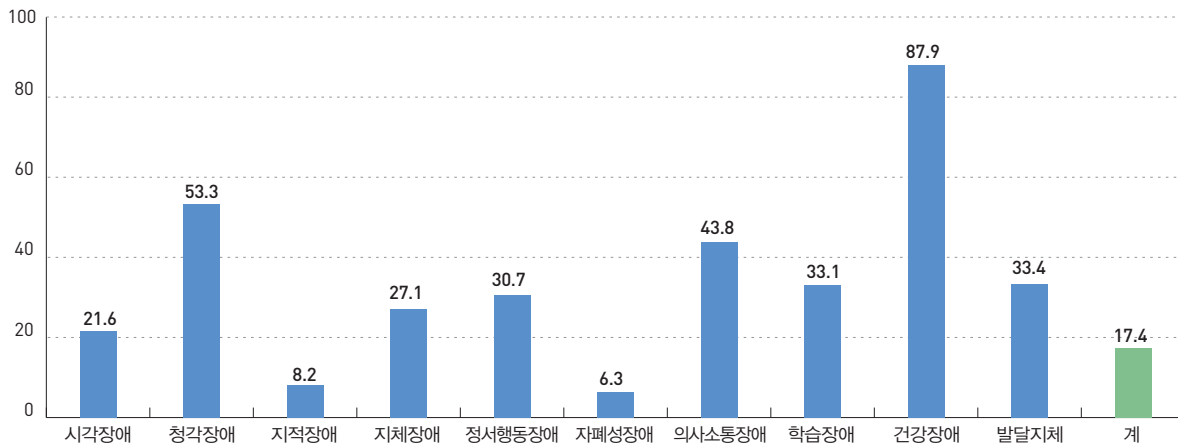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그림 2-70 장애유형별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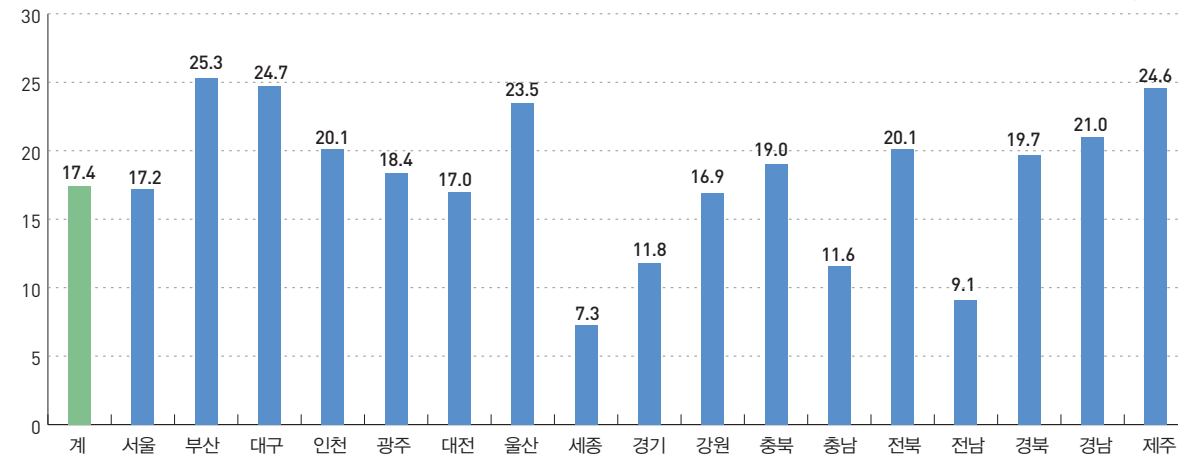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16

그림 2-71 시도별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16)

(단위: %)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16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An Overview of Educational Benefit for Parent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 Provision and Expenditure

## 지표 정의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1~3등급 장애인가구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측정 산식

- 지급 건수 :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가구 중 1~3급의 중증장애를 가진 초·중·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한 건수
- 지급액 : 입학금·수업료(고등학생) 금액 전액, 교과서대(고등학생) 125.9천원(연 1회), 부교재비(초·중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38.7천원(연 1회), 학용품비(중·고등학생) 52.6천원(연2회 분할지원) 등

(2015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최저생계비 130%	802,465원	1,366,362원	1,767,594원	2,168,828원	2,570,061원	2,971,293원	3,372,526원

2015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총 지급 건수는 3,111건이다. 이 중 학용품비 지급 건수가 1,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교재비 733건, 수업료 663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금액은 수업료의 비중이 높았는데 2015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전체 지급 금액은 약 322백만 원이고, 이 중 수업료가 약 211백만 원으로 약 6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6 연도별 장애인 교육비 지급 건수 (연간 기준)

(단위: 건)

구분	'13년	'14년	'15년
계	5,445	4,298	3,111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 Checkpoint

2014년 대비 2015년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지급 건수는 전년대비 약 28% 감소(2014년 4,298건 → 2015년 3,111건)했으며 지급 금액은 약 40% 감소(2014년 540백만 원 → 2015년 322백만 원)하였다.

그림 2-72 월별 장애인 교육비 지급 건수 (2015)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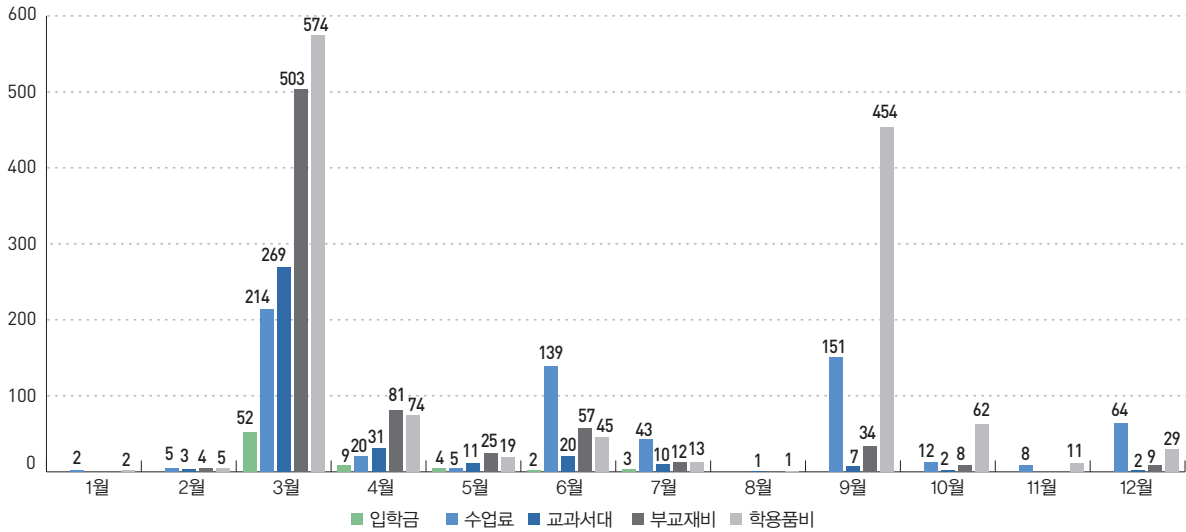


그림 2-73 월별 장애인 교육비 지급액 (2015)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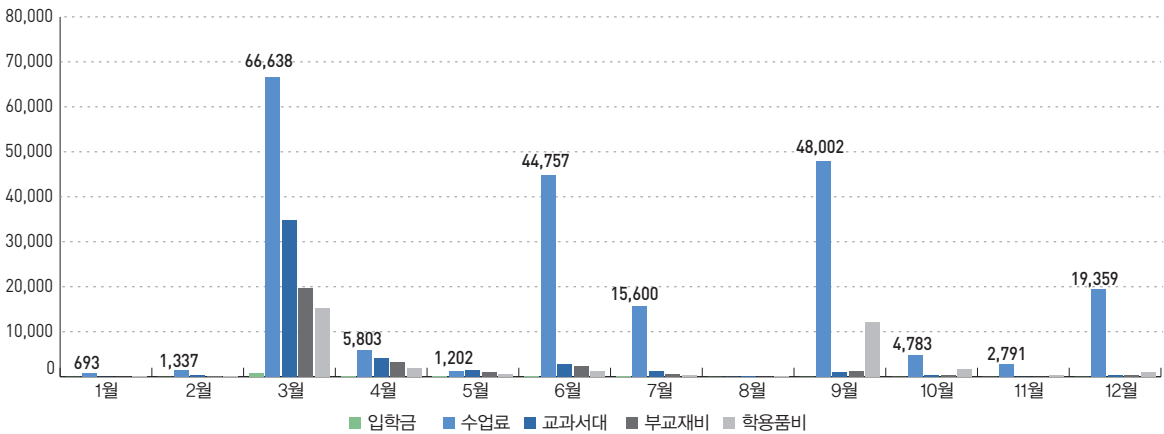


표 2-67 월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015)

(단위: 건, 천 원)

구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합계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1월	-	-	2	693	-	-	-	-	2	53	4	746
2월	-	-	5	1,337	3	389	4	155	5	132	17	2,011
3월	52	781	214	66,638	269	34,818	503	19,698	574	15,158	1,612	137,094
4월	9	140	20	5,803	31	4,144	81	3,206	74	1,946	215	15,239
5월	4	59	5	1,202	11	1,425	25	958	19	526	64	4,170
6월	2	30	139	44,757	20	2,720	57	2,283	45	1,315	263	51,105
7월	3	43	43	15,600	10	1,285	12	464	13	393	81	17,785
8월	-	-	-	-	1	130	-	-	1	53	2	182
9월	-	-	151	48,002	7	907	34	1,316	454	12,205	646	62,429
10월	-	-	12	4,783	2	259	8	310	62	1,708	84	7,060
11월	-	-	8	2,791	-	-	-	-	11	289	19	3,081
12월	-	-	64	19,359	2	259	9	348	29	894	104	20,860
합계	70	1,053	663	210,965	356	46,333	733	28,738	1,289	34,671	3,111	321,761

그림 2-74 시도별 장애인 교육비 지급 건수 (2015.12 기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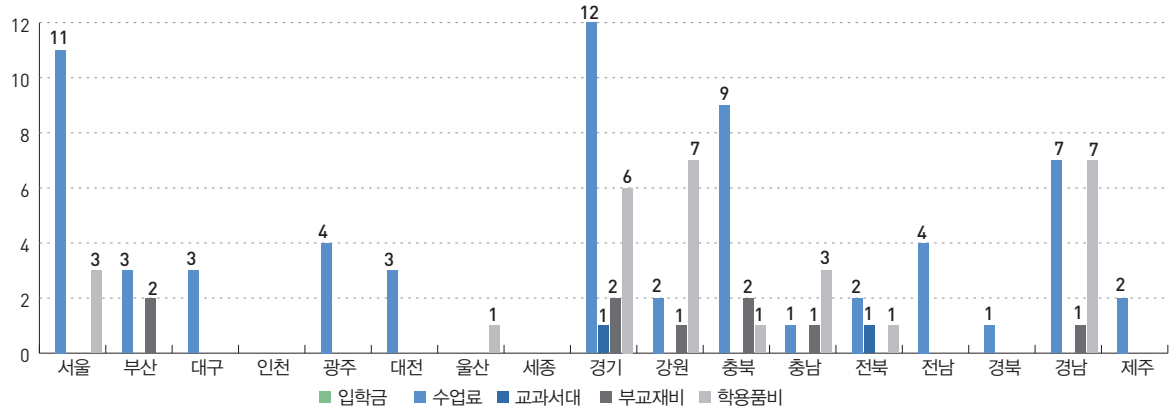


그림 2-75 시도별 장애인 교육비 지급액 (2015.12 기준)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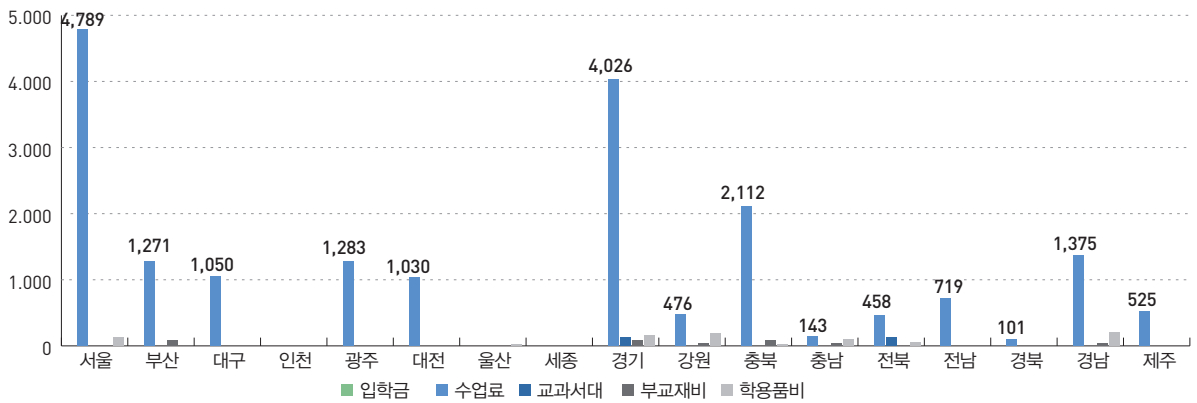


표 2-68 시도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015.12 기준)

(단위: 건, 천 원)

구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합계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서울	-	-	11	4,789	-	-	-	-	3	132	14	4,920
부산	-	-	3	1,271	-	-	2	77	-	-	5	1,348
대구	-	-	3	1,050	-	-	-	-	-	-	3	1,050
인천	-	-	-	-	-	-	-	-	-	-	-	-
광주	-	-	4	1,283	-	-	-	-	-	-	4	1,283
대전	-	-	3	1,030	-	-	-	-	-	-	3	1,030
울산	-	-	-	-	-	-	-	-	1	26	1	26
세종	-	-	-	-	-	-	-	-	-	-	-	-
경기	-	-	12	4,026	1	130	2	77	6	158	21	4,391
강원	-	-	2	476	-	-	1	39	7	184	10	699
충북	-	-	9	2,112	-	-	2	77	1	26	12	2,216
충남	-	-	1	143	-	-	1	39	3	105	5	287
전북	-	-	2	458	1	130	-	-	1	53	4	640
전남	-	-	4	719	-	-	-	-	-	-	4	719
경북	-	-	1	101	-	-	-	-	-	-	1	101
경남	-	-	7	1,375	-	-	1	39	7	210	15	1,624
제주	-	-	2	525	-	-	-	-	-	-	2	525
계			64	19,359	2	260	9	348	29	894	104	20,860

# 장애인 교육수준

Education statu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 지표 정의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조사대상 장애인의 최종학력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따라 측정한 값의 분율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3년제 이하), 대학(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과 같이 8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frac{\text{교육수준(최종학력)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장애인 수}}{\text{조사대상 장애인 수}} \times 100$$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인 경우가 2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28.1%, '중학교' 16.2%, '대학 이상' 1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학'인 경우도 전체 장애인의 11.6%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인 '초등학교' 32.9%, '고등학교' 25.0%, '중학교' 18.3%, '대학 이상' 12.0%, '무학' 11.8%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유형별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 비율에 있어서는 청각장애(19.4%), 뇌병변장애(12.3%), 뇌전증장애(12.0%), 지체장애(11.7%) 등이 비교적 높은 반면, '대학 이상' 비율은 안면장애(34.7%), 정신장애(28.6%), 신장장애(24.3%), 간장애(20.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14	3년

## Checkpoint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교육기회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다. 일례로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중은 장애인의 경우 49.0%(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로 이는 전체 국민 71.7%(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하여 약 22.7%p 낮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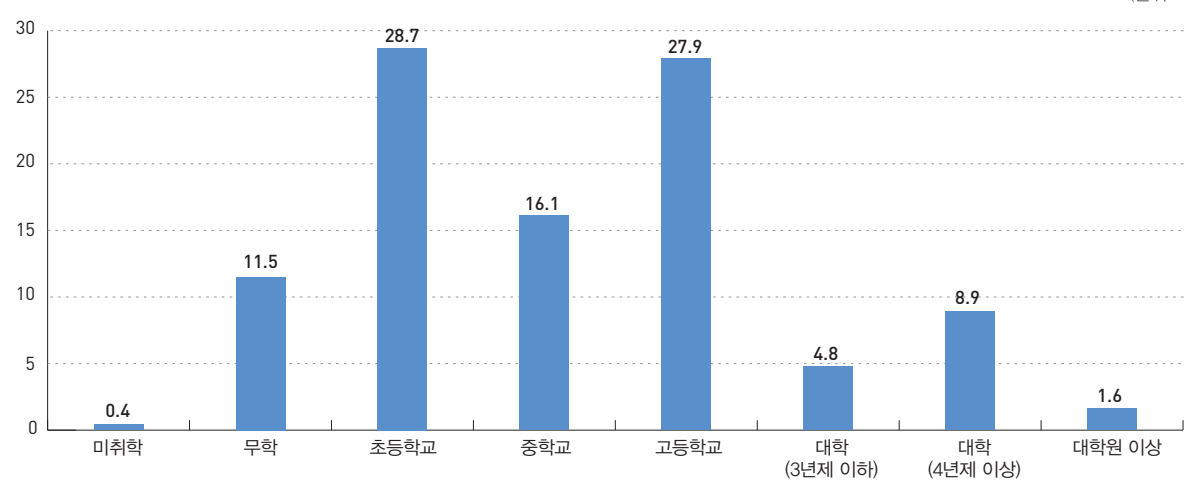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표 2-69 장애유형별 장애인 교육수준 (2014) (단위: %)

	계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3년제 이하)	대학 (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
전체	100.0	0.4	11.5	28.7	16.1	27.9	4.8	8.9	1.6
지체장애	100.0	0.0	11.7	30.2	16.7	26.1	4.7	9.1	1.6
뇌병변장애	100.0	1.5	12.1	29.7	16.0	25.4	3.4	10.1	1.8
시각장애	100.0	0.0	10.6	28.5	16.1	27.9	3.7	10.3	2.9
청각장애	100.0	0.4	19.4	33.5	15.2	20.1	2.8	6.9	1.7
언어장애	100.0	2.2	8.6	33.7	15.0	24.7	9.8	6.0	0.0
지적장애	100.0	1.4	9.5	23.6	12.7	45.0	6.8	0.9	0.0
자폐성장애	100.0	4.4	4.8	20.3	20.8	37.1	12.5	0.0	0.0
정신장애	100.0	0.0	2.2	7.8	19.1	42.3	11.0	16.1	1.5
신장장애	100.0	0.0	6.8	20.4	13.7	34.7	8.1	14.6	1.6
심장장애	100.0	4.0	9.7	18.0	8.8	40.7	2.9	7.8	8.2
호흡기장애	100.0	0.0	4.5	49.6	24.7	11.8	0.0	9.4	0.0
간장애	100.0	0.0	0.0	37.9	7.6	34.5	1.0	17.7	1.3
안면장애	100.0	0.0	11.4	10.5	0.0	43.4	18.3	16.4	0.0
장루·요루장애	100.0	0.0	2.9	33.4	17.4	36.4	0.0	8.9	0.9
뇌전증장애	100.0	2.7	11.7	13.1	24.1	44.0	4.5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그림 2-76 학령별 장애인 교육수준 (2014)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 지표 정의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장애인 취업자와 취업률,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장애인 실업자와 실업률,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전반을 진단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  $\frac{\text{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수}}{\text{장애인 인구 수}} \times 100$
- 비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 장애인 인구 수 -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수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5년 현재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총 2,444천 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921천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37.7%이다.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8.7%임에 비하여 여성장애인의 참가율은 22.6%로 남성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5%로 가장 높고, 40~49세 연령대의 경우 58.9%로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3.2%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경증일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47.1%, 시각장애인의 40.7%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체 외 신체외부 장애인의 경우에는 11.8%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15	1년

### Checkpoint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37.7%로 전년도 39.6%에 비해 1.9%p 감소하였다. 고용률 또한 2014년 37.0%에서 2015년 34.8%로 줄어든 반면, 실업률은 같은 기간 6.6%에서 7.1%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0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2015)

(단위: 명, %)

		15세 이상 인구 (명)	경제활동 인구 (명)	취업자 (명)	실업자 (명)	비경제활동 인구 (명)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전체	2013	2,457,626	940,379	885,025	55,354	1,517,246	38.3	5.9	36.0
	2014	2,449,437	970,600	906,267	64,333	1,478,837	39.6	6.6	37.0
	2015	2,444,194	921,980	849,517	72,463	1,522,214	37.7	7.1	34.8
성별	남성	1,416,444	689,619	633,699	55,920	726,825	48.7	8.1	44.7
	여성	1,027,750	232,361	215,818	16,543	795,389	22.6	7.1	21.0
연령대별	15~29세	125,240	39,679	32,750	6,929	85,561	31.7	17.5	26.1
	30~39세	160,914	102,243	90,804	11,439	58,671	63.5	11.2	56.4
	40~49세	318,644	187,624	175,042	12,582	131,020	58.9	6.7	54.9
	50~59세	528,965	288,000	264,881	23,119	240,965	54.4	8.0	50.1
	60세 이상	1,310,432	304,434	286,040	18,394	1,005,998	23.2	6.0	21.8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470,735	401,090	377,642	23,448	1,069,645	27.3	5.8	25.7
	고졸	672,425	330,438	297,537	32,901	341,987	49.1	10.0	44.2
	대졸 이상	301,032	190,450	174,337	16,113	110,582	63.3	8.5	57.9
장애 정도별	중증	759,803	157,748	140,149	17,599	602,055	20.8	11.2	18.4
	경증	1,684,391	764,232	709,368	54,864	920,159	45.4	7.2	42.1
장애유형별	지체장애	1,293,033	609,665	565,366	44,299	683,368	47.1	7.3	43.7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	244,386	28,857	25,486	3,371	215,529	11.8	11.7	10.4
	시각장애	250,882	102,079	94,440	7,639	148,803	40.7	7.5	37.6
	시각 외 감각장애	266,465	94,049	87,393	6,656	172,416	35.3	7.1	32.8
	정신적 장애	270,493	57,816	49,772	8,044	212,677	21.4	13.9	18.4
	신체내부장애	118,936	29,515	27,061	2,454	89,421	24.8	8.3	22.8
지역별	수도권	1,017,337	384,293	348,191	36,102	633,044	37.8	9.4	34.2
	광역시권	462,992	153,596	141,931	11,665	309,396	33.2	7.6	30.7
	기타 시도	963,865	384,091	359,395	24,696	579,774	39.8	6.4	37.3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5

# 장애인 고용률

Employment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 지표 정의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구 중 취업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생산가능 장애인구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로 정의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장애인 취업자 수}}{\text{생산가능 장애인 인구 수}} \times 100$$

장애인 고용률은 국가경제에 있어서 장애 인력의 활용 정도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워 2015년 기준 고용률은 34.8%에 그치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마찬가지로 고용률도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장애인의 고용률이 44.7%임에 비하여 여성장애인의 참가율은 21.0%에 불과하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 연령대의 고용률이 56.4%로 가장 높고, 40~49세 연령대의 경우 54.9%로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1.8%만이 고용되어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의 정도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경증일 경우 고용률이 높았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43.7%, 시각장애인의 37.6%가 취업상태인 반면에 지체 외 신체외부 장애인의 경우에는 10.4%만이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먼저 상용·임시·일용 등 임금근로자는 취업자의 62.7%로 전체 인구의 73.6%에 비해 10.9%p 낮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2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13.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5.6%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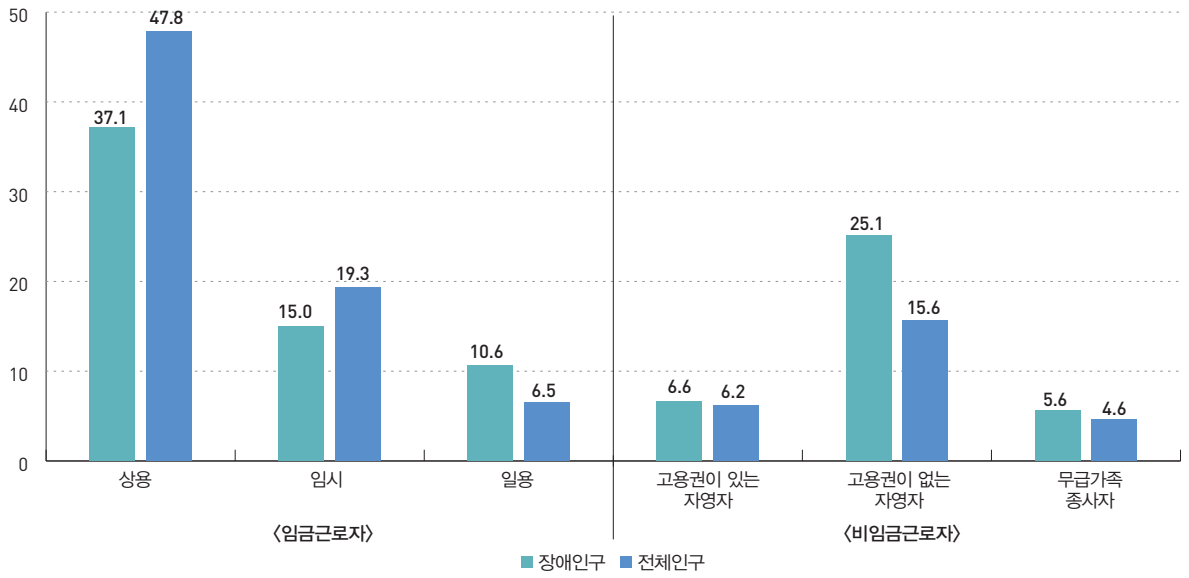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15	1년



그림 2-77 장애인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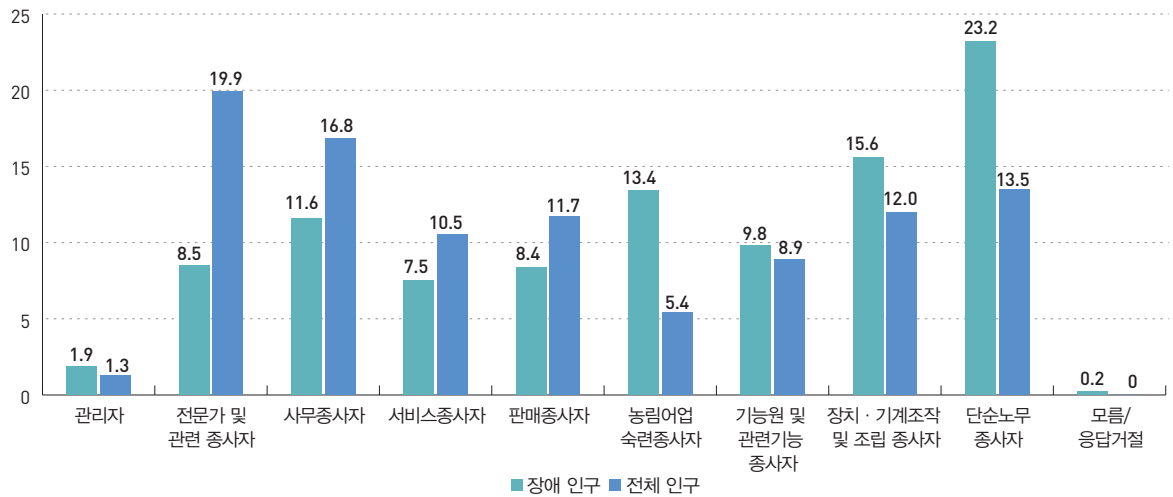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5월)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5

그림 2-78 장애인 취업자 직업별 구성비 (2015)

(단위: %)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5월)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5

# 장애인 실업률

Unemployment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 지표 정의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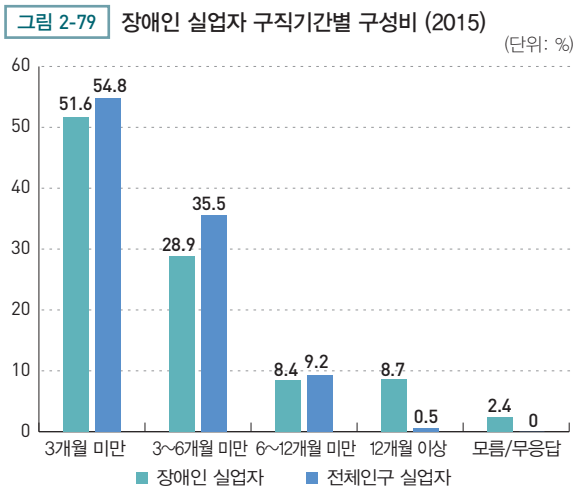
## 측정 산식

$$\frac{\text{장애인 실업자 수}}{\text{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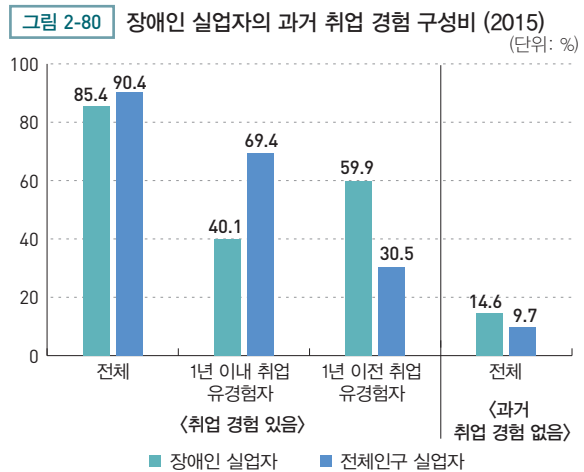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는 72,463명으로 장애인 실업률은 7.1%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의 실업률이 8.1%임에 비하여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은 다소 낮은 7.1%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는 15~29세 연령대의 실업률이 17.5%로 가장 높는데, 이는 젊은 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더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이 13.9%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실업자의 51.6%는 '3개월 미만', 28.9%는 '3~6개월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12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경우도 8.7%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실업자에 비하여 장애인 실업자의 실업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실업자 중에서 과거 취업경험을 가진 사람은 85.4%로 전체 인구 실업자의 90.4%와 약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 실업자 중에서 1년 이내 취업을 경험한 비율은 40.1%로, 전체 인구 실업자 중 1년 이내 취업을 경험한 실업자 비율이 69.4%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5월)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5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5월)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5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15	1년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Current Status of Mandatory Employ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지표 정의

장애인 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본 지표를 통해서 의무고용제도 이행 현황을 파악한다.

본 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및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장애인 근로자 수}}{\text{상시 근로자 수}} \times 100$$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의무고용제로 대표된다. 국가·자치단체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부문별로 차이가 있는데, 현재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3.0%, 근로자는 2.7%, 공공기관은 3%(기타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3.0% 적용), 민간기업은 2.7%가 적용되고 있다.

2015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적용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체는 총 28,218개소이며,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는 7,713천 명,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65천 명으로 고용률은 2.62%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2009년 1.87%, 2011년 2.28%, 2013년 2.48%, 2015년 2.6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부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장애인 비율은 2.80%로 의무고용률보다 낮으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4.05%로 의무고용률 기준보다 높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93%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2.51%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인다. 민간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차이가 있는데,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1.90%, 100~299인 기업은 3.00%, 100인 미만의 경우는 2.51%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06	2015	1년

### Checkpoint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5년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전년도 2.54%에 비해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부부문의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까지 법정 의무 고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표 2-7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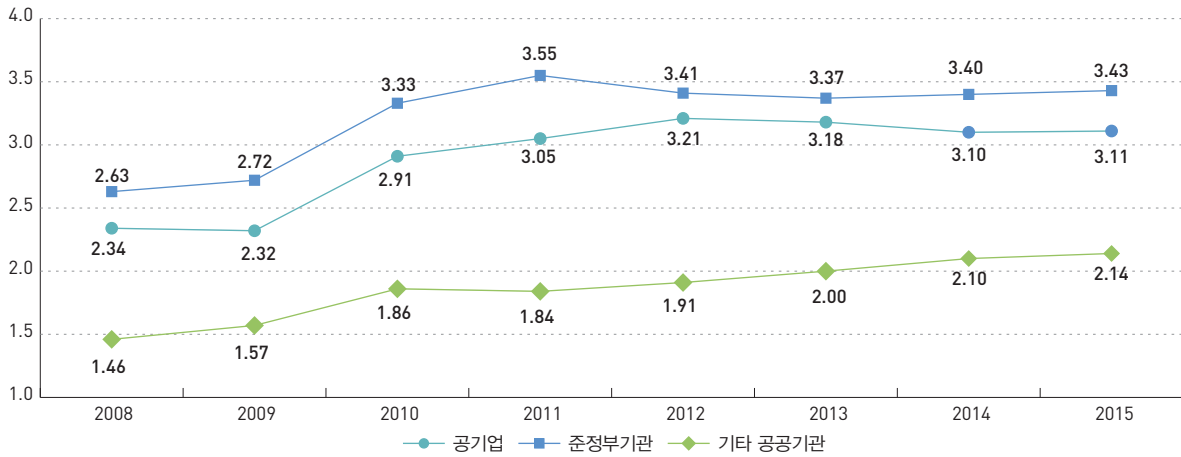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73	1.87	2.24	2.28	2.35	2.48	2.54	2.62
정부부문	1.76	1.97	2.38	2.48	2.61	2.85	2.91	3.11
공무원	-	-	2.40	2.52	2.57	2.63	2.65	2.80
공무원 아닌 근로자	-	-	2.36	2.35	2.75	3.51	3.75	4.05
공공기관	2.05	2.11	2.56	2.72	2.80	2.81	2.91	2.93
민간기업	1.70	1.84	2.19	2.22	2.27	2.39	2.45	2.51

주: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각 연도

그림 2-81 공공기관 유형별 장애인 고용률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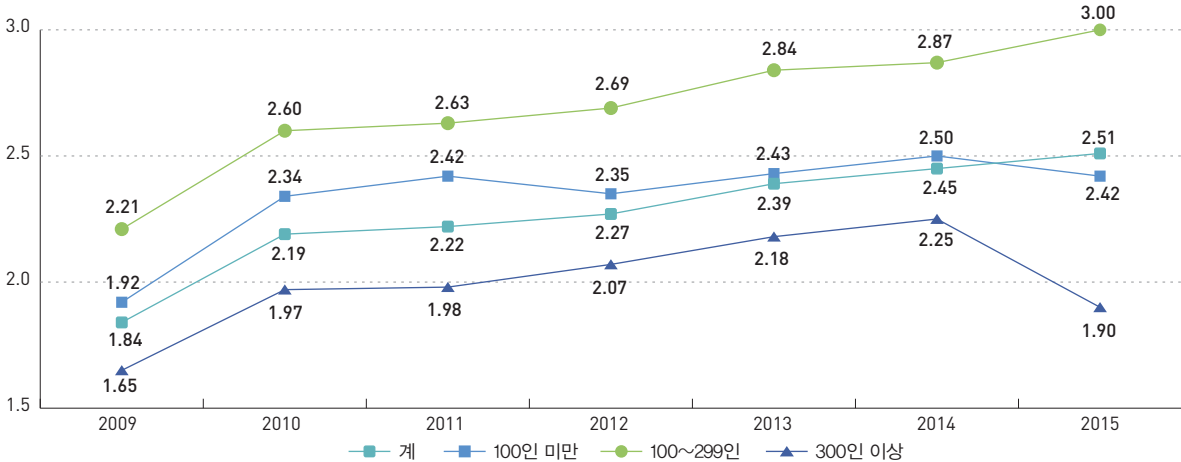
(단위: %)



주: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각 연도

그림 2-82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 (2009~2015)

(단위: %)



주: 1) 2008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1.70이며 50~299인 기업은 1.93임. 2009년부터 사업장 규모가 세분화됨.  
 2)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각 연도

#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Average Wage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Recent 3 months

## 지표 정의

취업장애인은 조사대상 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의미하며,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이들의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말한다.

취업한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취업장애인의 월 소득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 소득보장정책과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측정 산식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취업장애인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2015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74.7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년도의 162만 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금액이다. 장애인의 고용상태와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어렵게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 중 대부분이 비장애인에 비해 일자리의 질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227.4만 원, 임시근로자는 90.7만 원, 일용근로자는 109.1만 원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여부는 고용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임금수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규직근로자 254.2만 원, 비정규직근로자 117.1만 원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사자가 '1~4인'인 경우가 112.6만 원, '5~49인' 151.5만 원, '50~299인' 225.5만 원, '300인 이상' 306.3만 원으로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74.7만 원으로 조사되어, 2014년 기준 162만 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의 임금은 전체 인구의 월평균 임금 231.4만 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정규직,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임금이 가장 높았다.

표 2-72 연도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단위: 명, 만 원)

구 분	2010		2013		2014		2015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11,534	183.5	289,919	205	327,712	213.8	313,384	227.4
	임시근로자	136,732	91.3	131,074	95.2	132,818	80.3	127,363	90.7
	일용근로자	85,067	80.5	100,970	97.3	98,198	100.0	89,303	109.1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278,063	100.4	308,498	107.9	328,438	111.4	307,479	117.1
	정규직	155,270	194.7	213,464	227.0	230,289	234.2	222,571	254.2
종사자 규모	1~4인	73,455	106.0	140,185	113.5	124,891	121.2	94,274	112.6
	5~49인	188,225	134.7	221,900	138.9	267,186	153.2	272,707	151.5
	50~299인	70,248	156.8	99,425	195.9	117,695	190.1	106,846	225.5
	300인 이상	36,628	261	53,495	270.9	45,456	258.3	51,700	306.3
전체	433,333	134.2	521,962	156.6	558,727	162.0	530,050	174.7	
전체 인구			194.6		217.1		223.4		231.4
	정규직		228.9		253.3		260.1		271.3
	비정규직		125.3		141.2		145.9		146.7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각 연도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ility Pension Recipients

## 지표 정의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본 지표는 장애인연금의 수급자 수를 이용한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7월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고 있다.

201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342,444명으로 2014년의 329,242명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증가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상당수는 차상위 초과 수급자의 경우였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은 지역의 중증장애인 규모와 그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역별 장애인연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78.6%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이 58.4%로 가장 낮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지급현황	2010	2015	1년

## Checkpoint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1년 제도의 본격 시행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였다. 2013년 304,574명이던 수급자는 2014년 329,242명, 2015년 342,44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2013년 320,990명에서 2015년 328,149명으로 소폭 늘어났으며, 장애아동 수급자는 2013년 22,819명에서 2015년 20,543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2-7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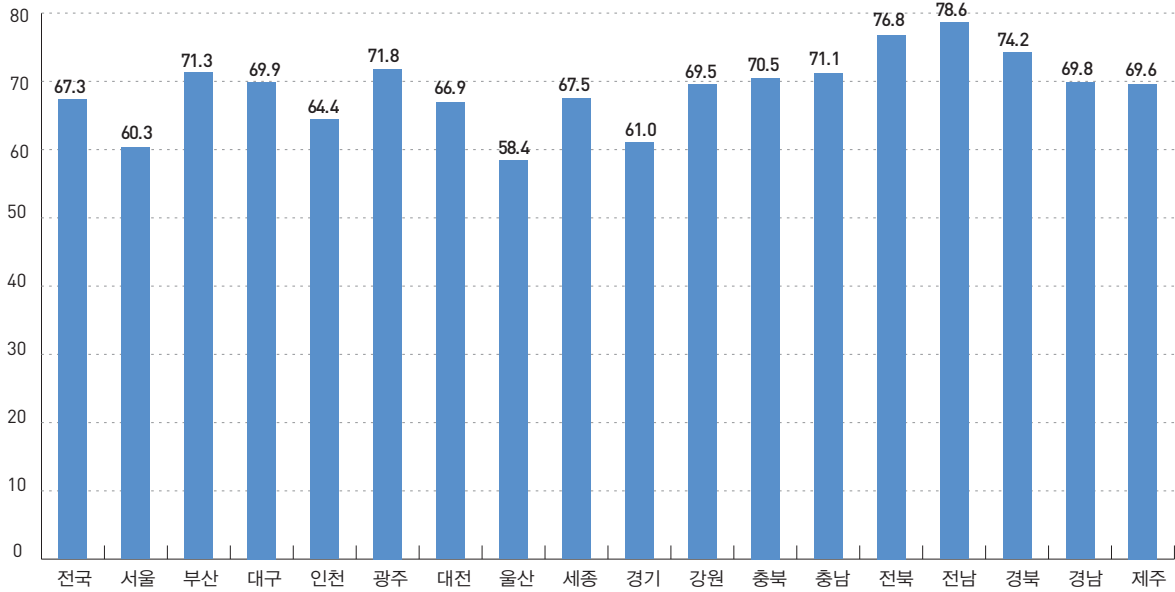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수급률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2010	45.3	257,968	145,007	54,951	27,644	30,366
2011	55.6	308,759	138,380	61,248	79,504	29,627
2012	59.0	305,513	133,866	55,781	86,515	29,351
2013	59.7	304,574	131,223	52,666	91,283	29,402
2014	64.5	329,242	130,428	51,512	118,157	29,145
2015	67.3	342,444	134,489	46,306	133,431	28,218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지급현황, 각 연도

그림 2-83 시도별 장애인연금 수급률 (2015)

(단위: %)



주: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지 장애이나, 본 자료에서는 장애등급 1~3급을 수급률의 모수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지급현황, 2015.12월 기준



# 장애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ility Allowance Recipients

## 지표 정의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보장제도수급자(일반 재가 및 보장시설)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은 3급(중복제외)과 4급~6급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 측정 산식

-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근거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7월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종전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경증장애수당은 장애수당으로 지급되며 소득계층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수당 수급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2005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였으며 2006년에는 시설수급자, 2007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고 지급 금액도 인상하였다.

2015년 장애수당 수급인원은 총 328,149명으로 전년도(320,423명)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다. 수급유형별로 보면 일반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19,83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시설수급자는 12,398명, 차상위계층은 95,906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9,427명, 서울시가 48,86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현황	2010	2015	1년

표 2-74 유형별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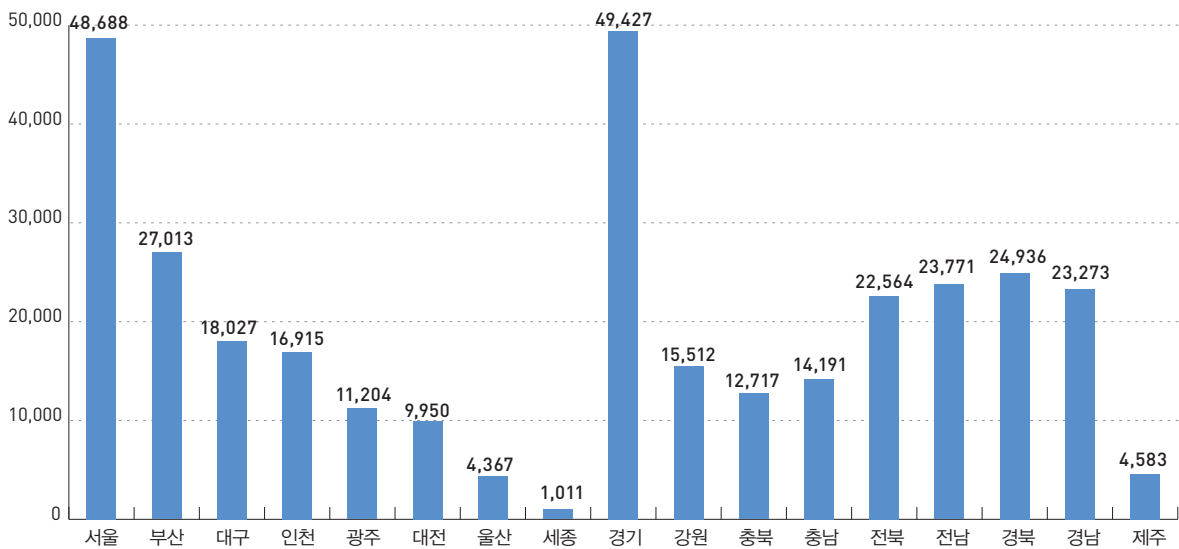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차상위
2010	308,243	212,914	11,202	84,127
2011	316,861	210,471	10,381	96,009
2012	314,894	204,717	11,839	98,338
2013	320,990	204,710	12,950	103,330
2014	320,423	207,819	11,871	100,733
2015	328,149	219,845	12,398	95,906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각 연도

그림 2-84 시도별 장애수당 수급자 (2015)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2015년 12월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led Children Allowance Recipients

## 지표 정의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급된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기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 측정 산식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근거하여 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중 보호·간병비용 등의 양육에 대한 보전적 성격의 수당이다.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사회보장제도로서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보장시설)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2007년부터 종전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18세 이상은 장애수당으로,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2015년 20,543명으로 전년도(21,181명)에 비하여 소폭 줄어들었다. 수급유형별로 보면 일반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0,993명으로 가장 많고, 차상위계층의 수급자는 5,68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수급자는 3,869명으로 전년도(6,388명)에 비하여 급감하였다.

2015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672명, 서울시가 3,01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현황	2010	2015	1년

표 2-75 유형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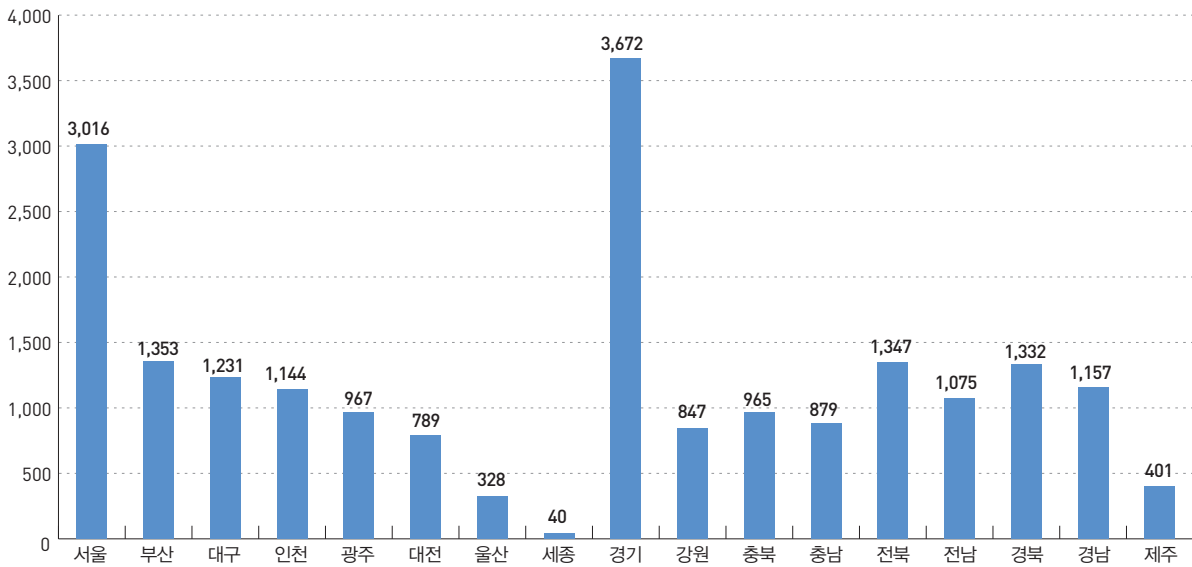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2008	16,001	11,724	7,821	3,903	4,277	3,036	1,241	-	-	-
2009	17,724	12,181	7,789	4,392	5,543	3,724	1,819	-	-	-
2010	23,057	12,637	7,982	4,655	6,308	4,229	2,079	4,112	3,231	881
2011	23,586	12,493	7,833	4,660	6,973	4,670	2,303	4,120	3,216	904
2012	22,813	11,541	7,104	4,437	7,090	4,664	2,426	4,182	3,186	996
2013	22,819	11,172	6,782	4,390	7,127	4,677	2,450	4,520	3,267	1,253
2014	21,181	10,818	6,511	4,307	6,388	4,158	2,230	3,975	2,941	1,034
2015	20,543	10,993	6,466	4,527	5,681	3,675	2,006	3,869	2,778	1,091

주: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장애수당 지급. 2010년부터 장애아동수당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각 연도

그림 2-85 시도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015)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2015

#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led persons in Near Poverty group

## 지표 정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장애수당(만 18세 이상의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지급)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 지원 금액: 차상위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수당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차상위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15만 원, 차상위 경증장애아동은 월 10만 원 지급

(2015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최저생계비 120%	740,737원	1,261,258원	1,631,626원	2,001,995원	2,372,364원	2,742,732원	3,113,101원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의 월별 추이는 3월까지의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이후에는 감소추이를 나타내는 가운데, 2015년 12월 151,916명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성별 분포는 2015년 12월 기준 남성이 66,588명(44%), 여성이 85,328명(46%)으로 여성 수급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2월 기준 경기도가 25,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0,814명, 전남 13,16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 12월 기준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는 총 151,916명으로 전년동월의 161,299명보다 약 9,300명 감소하였다. 이는 2013년 동월(166,058명)과 비교하여 볼 때 3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표 2-76 연도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계	166,058	161,299	151,916

그림 2-86 성별·월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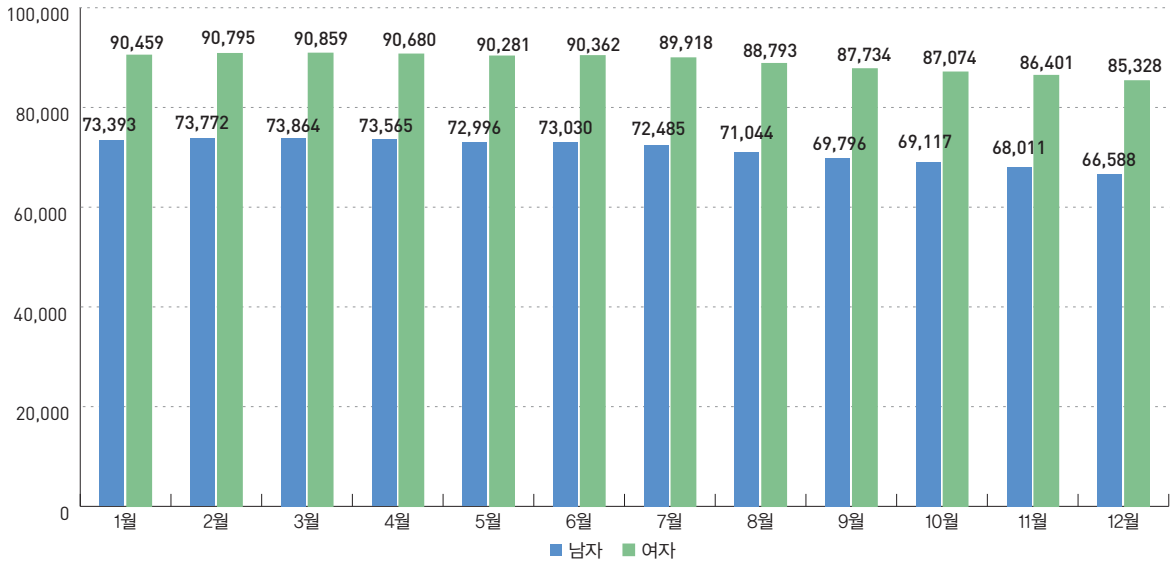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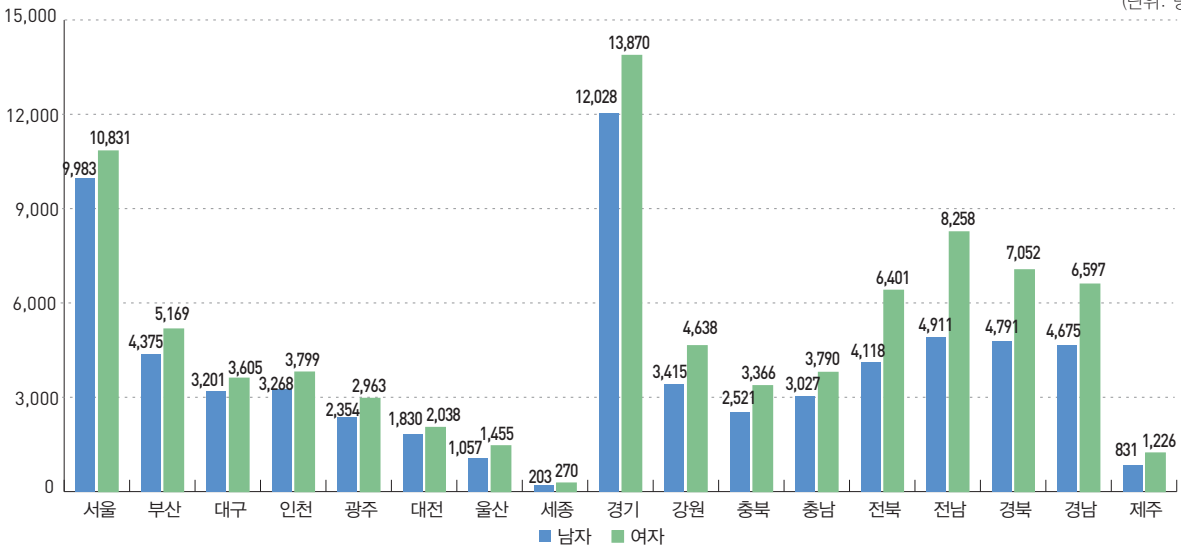


그림 2-87 성별·시도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2015.12 기준)

(단위: 명)



**표 2-77 월별, 시도별, 성별 차상위장애인 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남성	10,865	10,907	10,947	10,967	10,918	10,918	10,892	10,733	10,553	10,431	10,207	9,983
	여성	11,443	11,470	11,493	11,510	11,480	11,468	11,497	11,408	11,271	11,154	11,024	10,831
	소계	22,308	22,377	22,440	22,477	22,398	22,386	22,389	22,141	21,824	21,585	21,231	20,814
부산	남성	4,828	4,861	4,866	4,827	4,831	4,861	4,814	4,669	4,600	4,565	4,446	4,375
	여성	5,476	5,514	5,530	5,501	5,482	5,508	5,473	5,401	5,329	5,287	5,234	5,169
	소계	10,304	10,375	10,396	10,328	10,313	10,369	10,287	10,070	9,929	9,852	9,680	9,544
대구	남성	3,513	3,511	3,511	3,479	3,476	3,500	3,453	3,370	3,329	3,306	3,252	3,201
	여성	3,797	3,810	3,805	3,785	3,770	3,786	3,766	3,708	3,658	3,639	3,626	3,605
	소계	7,310	7,321	7,316	7,264	7,246	7,286	7,219	7,078	6,987	6,945	6,878	6,806
인천	남성	3,556	3,595	3,654	3,623	3,594	3,590	3,553	3,509	3,438	3,382	3,315	3,268
	여성	3,868	3,906	3,946	3,976	3,966	3,986	3,944	3,911	3,876	3,838	3,821	3,799
	소계	7,424	7,501	7,600	7,599	7,560	7,576	7,497	7,420	7,314	7,220	7,136	7,067
광주	남성	2,611	2,629	2,624	2,597	2,585	2,578	2,560	2,512	2,455	2,442	2,408	2,354
	여성	3,099	3,123	3,133	3,134	3,131	3,146	3,123	3,080	3,024	3,032	3,002	2,963
	소계	5,710	5,752	5,757	5,731	5,716	5,724	5,683	5,592	5,479	5,474	5,410	5,317
대전	남성	2,070	2,079	2,075	2,093	2,083	2,090	2,073	1,999	1,920	1,910	1,916	1,830
	여성	2,230	2,235	2,228	2,230	2,216	2,218	2,210	2,160	2,092	2,083	2,092	2,038
	소계	4,300	4,314	4,303	4,323	4,299	4,308	4,283	4,159	4,012	3,993	4,008	3,868
울산	남성	1,168	1,175	1,180	1,167	1,160	1,166	1,160	1,131	1,095	1,077	1,070	1,057
	여성	1,528	1,534	1,532	1,536	1,528	1,528	1,519	1,501	1,473	1,470	1,457	1,455
	소계	2,696	2,709	2,712	2,703	2,688	2,694	2,679	2,632	2,568	2,547	2,527	2,512
세종	남성	228	226	225	224	218	219	217	201	204	209	203	203
	여성	283	283	283	292	290	286	280	275	271	273	276	270
	소계	511	509	508	516	508	505	497	476	475	482	479	473
경기	남성	12,840	12,948	13,037	13,038	12,888	12,905	12,916	12,813	12,624	12,530	12,363	12,028
	여성	14,419	14,481	14,561	14,535	14,490	14,527	14,527	14,391	14,277	14,196	14,106	13,870
	소계	27,259	27,429	27,598	27,573	27,378	27,432	27,443	27,204	26,901	26,726	26,469	25,898
강원	남성	3,982	3,996	3,987	3,944	3,887	3,871	3,822	3,714	3,630	3,571	3,502	3,415
	여성	5,077	5,096	5,086	5,043	5,026	5,057	4,988	4,922	4,841	4,762	4,696	4,638
	소계	9,059	9,092	9,073	8,987	8,913	8,928	8,810	8,636	8,471	8,333	8,198	8,053
충북	남성	2,759	2,775	2,775	2,765	2,750	2,769	2,720	2,652	2,609	2,589	2,542	2,521
	여성	3,613	3,628	3,630	3,610	3,577	3,581	3,515	3,440	3,414	3,396	3,383	3,366
	소계	6,372	6,403	6,405	6,375	6,327	6,350	6,235	6,092	6,023	5,985	5,925	5,887
충남	남성	3,373	3,394	3,380	3,373	3,310	3,290	3,282	3,202	3,132	3,111	3,089	3,027
	여성	4,080	4,087	4,094	4,091	4,056	4,025	3,999	3,938	3,882	3,838	3,834	3,790
	소계	7,453	7,481	7,474	7,464	7,366	7,315	7,281	7,140	7,014	6,949	6,923	6,817
전북	남성	4,503	4,505	4,503	4,523	4,481	4,507	4,452	4,343	4,294	4,229	4,187	4,118
	여성	6,821	6,797	6,777	6,781	6,751	6,770	6,714	6,614	6,535	6,487	6,461	6,401
	소계	11,324	11,302	11,280	11,304	11,232	11,277	11,166	10,957	10,829	10,716	10,648	10,519
전남	남성	5,582	5,603	5,586	5,520	5,472	5,505	5,404	5,230	5,146	5,112	5,029	4,911
	여성	8,973	8,995	8,963	8,874	8,843	8,831	8,738	8,591	8,481	8,435	8,360	8,258
	소계	14,555	14,598	14,549	14,394	14,315	14,336	14,142	13,821	13,627	13,547	13,389	13,169
경북	남성	5,361	5,392	5,370	5,319	5,296	5,195	5,177	5,100	5,017	4,970	4,873	4,791
	여성	7,459	7,502	7,483	7,479	7,418	7,391	7,390	7,323	7,255	7,182	7,104	7,052
	소계	12,820	12,894	12,853	12,798	12,714	12,586	12,567	12,423	12,272	12,152	11,977	11,843
경남	남성	5,154	5,182	5,166	5,130	5,081	5,093	5,032	4,955	4,859	4,802	4,746	4,675
	여성	6,951	6,989	6,979	6,965	6,920	6,910	6,923	6,854	6,781	6,741	6,679	6,597
	소계	12,105	12,171	12,145	12,095	12,001	12,003	11,955	11,809	11,640	11,543	11,425	11,272
제주	남성	1,000	994	978	976	966	973	958	911	891	881	863	831
	여성	1,342	1,345	1,336	1,338	1,337	1,344	1,312	1,276	1,274	1,261	1,246	1,226
	소계	2,342	2,339	2,314	2,314	2,303	2,317	2,270	2,187	2,165	2,142	2,109	2,057
합계	남성	73,393	73,772	73,864	73,565	72,996	73,030	72,485	71,044	69,796	69,117	68,011	66,588
	여성	90,459	90,795	90,859	90,680	90,281	90,362	89,918	88,793	87,734	87,074	86,401	85,328
	소계	163,852	164,567	164,723	164,245	163,277	163,392	162,403	159,837	157,530	156,191	154,412	151,916

#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Disability as % of GDP

## 지표 정의

OECD SOCX 기준 장애인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근로무능력 관련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로 발표되고 있으며,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어 있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지출되는 장애관련 복지에 대한 규모의 의미를 의미한다.

현금급여(Cash benefits)는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s), 산재보험(Pensions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상병급여(Paid sick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로 구성되고, 현물급여(Benefits in kind)는 돌봄 및 가사보조서비스(Residential care/Home-help service),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기타 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로 구성된다.

## 측정 산식

장애인복지 지출(현금 + 현물급여)

국가별 GDP

유의사항 현금급여(Cash benefits) 중 상병급여(Paid sick leave)는 2010년부터 산재급여(Pensions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로부터 분리되어 산출되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포함된 수치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분야 복지 지출 규모는 2000년(0.36%)부터 2009년(0.66%)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0.57%)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2011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13년에는 0.61%로 나타났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비교해보면 모든 연도에서 현금급여가 80%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현물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기준으로 보면 2013년 한국의 장애인복지 지출 비중(0.6%)은 OECD 평균 2.1%의 28.6%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 수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칠레(0.7%), 터키(0.3%)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해있다. 특히 한국은 현금급여 수준이 2004년부터 최근 2013년까지 0.4%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SOCX	-	2013	1년

### Checkpoint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013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은 0.61%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각각 약 0.4%대와 0.1%대에서 정체되고 있다.

### 참고문헌

• OECD SOCX Database. (2016.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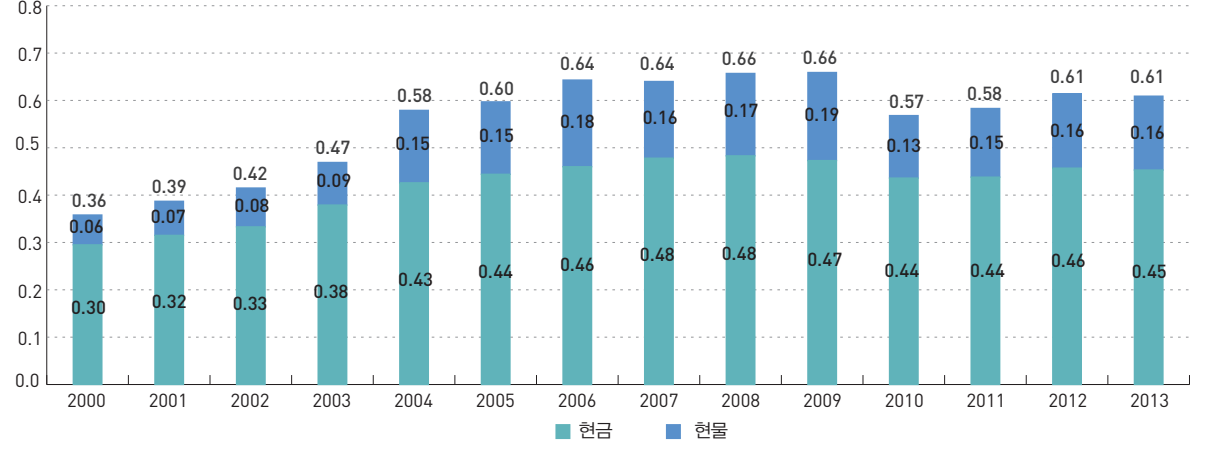


**표 2-78**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규모 (2000~2013) (단위: GD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0.36	0.39	0.42	0.47	0.58	0.60	0.64	0.64	0.66	0.66	0.57	0.58	0.61	0.61
현금급여	0.30	0.32	0.33	0.38	0.43	0.44	0.46	0.48	0.48	0.47	0.44	0.44	0.46	0.45
현물급여	0.06	0.07	0.08	0.09	0.15	0.15	0.18	0.16	0.17	0.19	0.13	0.15	0.16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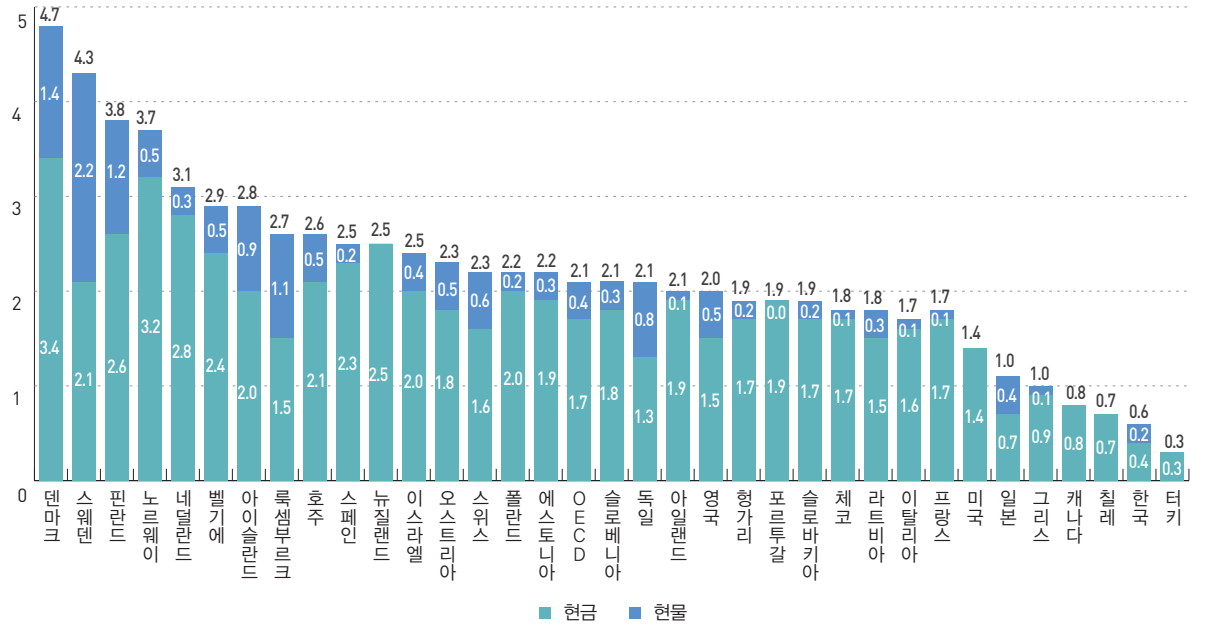
자료: OECD SOCX Database, (2016.11.22.)

**그림 2-88**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중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비중 (2000~2013) (단위: GDP%)



자료: OECD SOCX Database, (2016.11.22.)

**그림 2-89**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2013) (단위: GDP%)



자료: OECD SOCX Database, (2016.11.22.)

# 3

## 보육 및 교육

- 0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 0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03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
- 0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 05 학교급별 취학률
- 06 학급당 학생 수
- 07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 08 교원 1인당 학생 수
- 0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 11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 12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 13 고등교육 이수율
- 1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통 계 로 보 는 사 회 보 장

# 2016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0~5세 아동보육공급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교육의 질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학교급별 취학률	
	학급당 학생 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교육 기회보장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Number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

## 지표 정의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정의되며,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유아교육법에 의해 정의된다. 본 지표는 각각의 기관의 수를 의미한다.

## 측정 산식

- 어린이집 수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7개 유형 어린이집 수
- 유치원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수

**유의사항** 어린이집은 설립주체 유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였다.

1990년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인다. 1990년에 1,919개소에 불과하던 어린이집 수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다소 감소하여 2015년 현재 42,517개소로 나타났다. 유치원 수는 1990년 8,354개소에서 꾸준하게 소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 8,930개소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증감의 추세는 주로 어린이집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인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증감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2015년 감소에 있어서도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감소가 그 원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소폭이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5년에도 전년도 대비 140개소 증가하였다. 반면, 1995년에 전체 어린이집의 9.3%를 차지하던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그 비중이 약 5.9%로 감소하였다. 전체 유치원 중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절반 정도로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현재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52.3%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시도별로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시설 수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며 지역에서의 어린이집의 국공립과 민간 시설의 비중은 전국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04	2015	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6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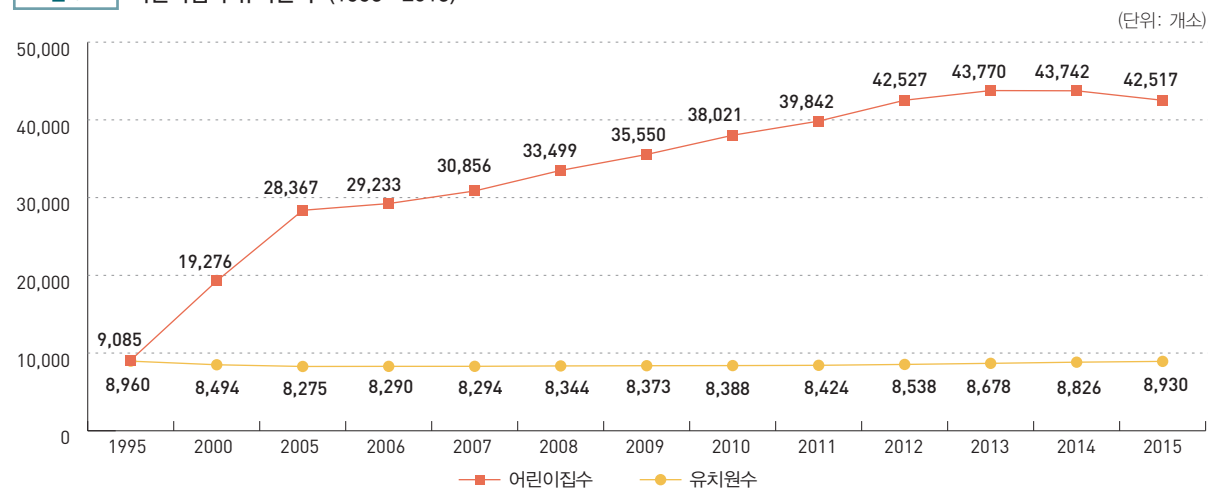
### Checkpoint

어린이집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225개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수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소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4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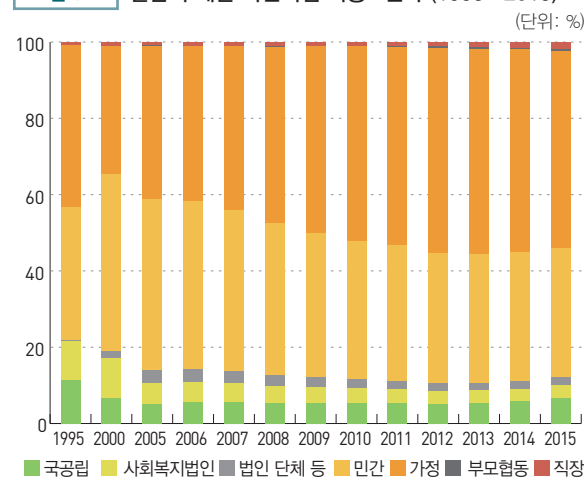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 2016

**그림 3-1**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 (199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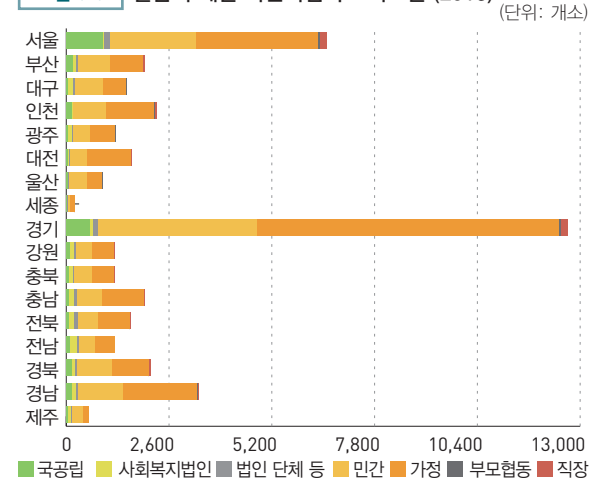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3-2**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비중: 전국 (199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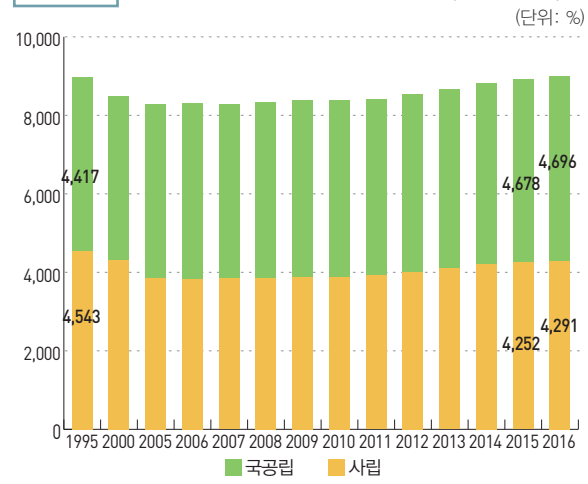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그림 3-3**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수: 시도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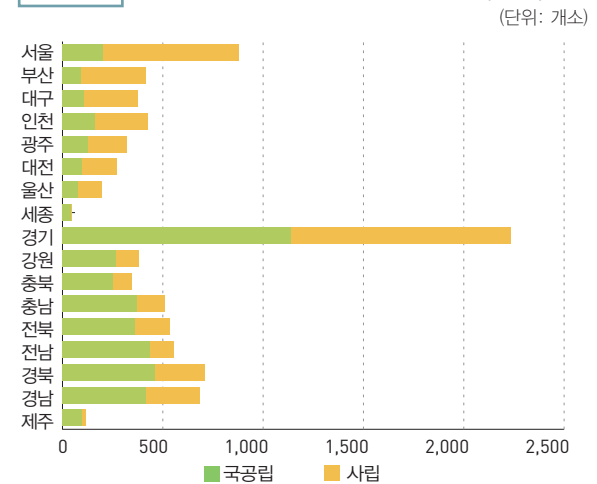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그림 3-4**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비중: 전국 (1995~201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3-5**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수: 시도별 (201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6

# 0~5세 아동보육공급률

Supply rate of Childcare services for 0-5 year olds

## 지표 정의

0~5세 아동보육공급률은 전체 0~5세 아동 수 대비 전체 어린이집 정원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정원이 전체 0~5세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전체 어린이집 정원}}{\text{전체 0~5세 아동 수}} \times 100$$

2015년 현재 전체 어린이집이 제공하고 있는 보육 정원은 1,790,821명이다. 이는 전체 0~5세 아동의 65.4%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어린이집 정원의 추이는 전체 어린이집 수의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수의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어린이집 대부분의 정원은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어린이집 정원이 해당 지역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이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지역은 해당 연령의 아동 수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을 포함하는 시지역이다.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중인 정원충족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81.1%로 나타났고 모든 시·도지역에서 약 75% 이상의 정원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보육공급률과 정원충족률은 음의 상관관계(negative association)를 보인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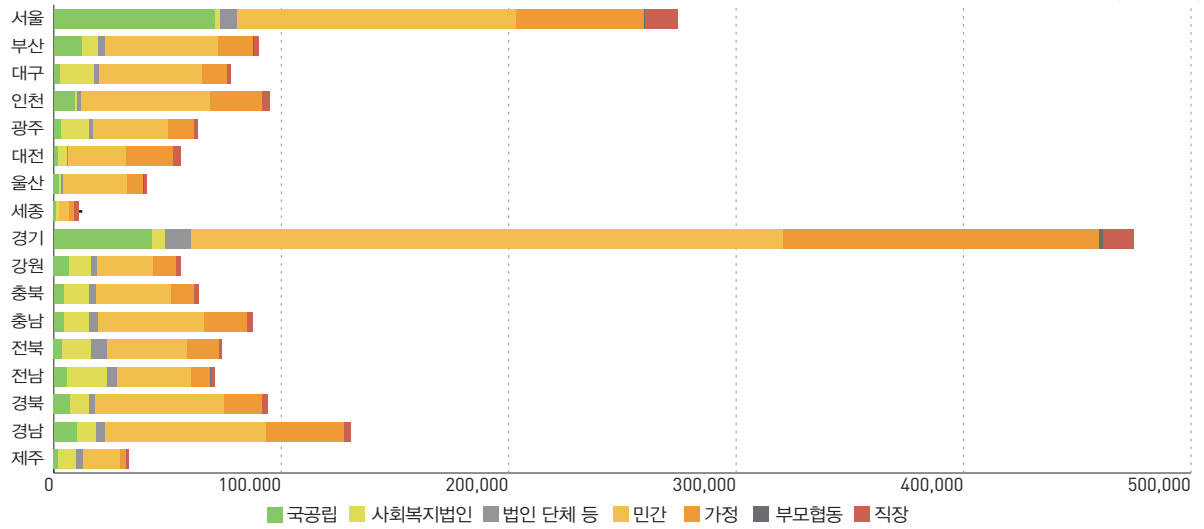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04	2015	1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1991	2015	1개월

### Checkpoint

2015년 어린이집 정원 수는 약 1,791천 명으로 2014년의 약 1,782천 명보다 9천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육공급률은 2014년 65.7%, 2015년 65.4%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3-6 시도별·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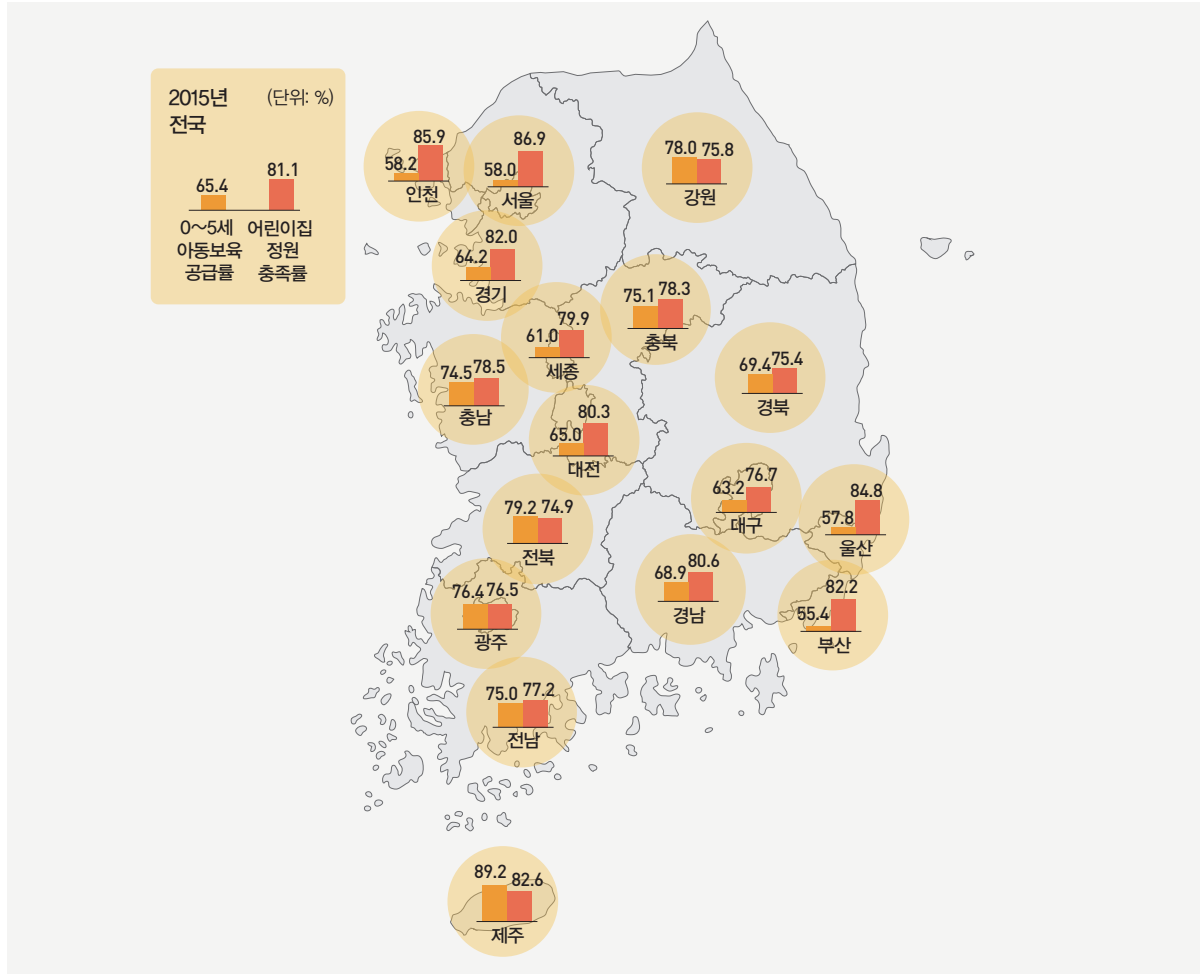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15

그림 3-7 시도별 0~5세 아동보육공급률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2015)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15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Rate of Children enrolled in Daycare and Kindergarten programs

## 지표 정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해당 연령의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유아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 0~2세 이용률 =  $\frac{\text{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수}}{\text{전체 0~2세 아동 수}} \times 100$
- 3세 이상 이용률 =  $\frac{\text{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3세 이상 아동 수}}{\text{전체 3~5세 아동 수}} \times 100$

2005년 이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012년 3월부터는 만 0~2세와 만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었고 2013년 3월부터는 무상보육이 만 0~5세로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01년 9.4%에서 2015년 66.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3세 이상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5년 88.4%로 감소하였다.

0~5세 아동의 2015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88.7%로 가장 높고, 서울이 6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이용 비중을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중은 서울(26.3%)이 가장 높고 대전(3.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6년 현재 국공립유치원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시가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전남(50.4%), 제주(47.4%), 충북(47.2%)의 순서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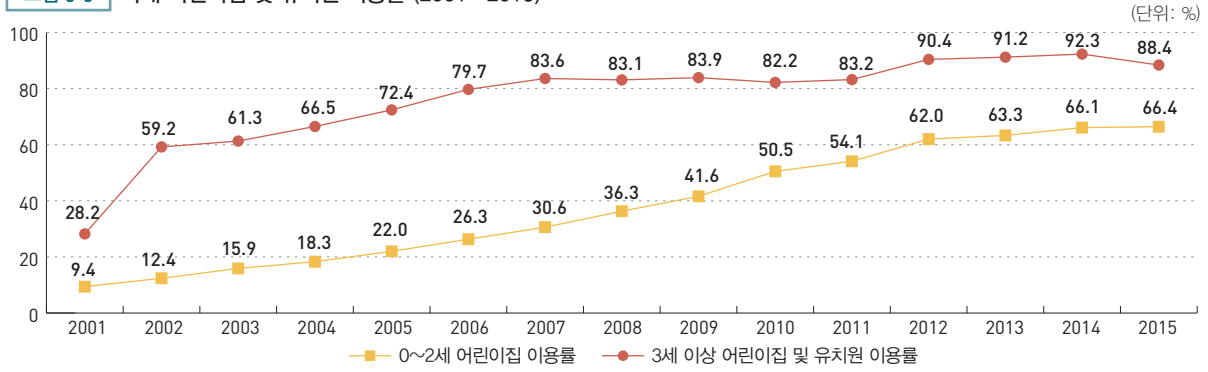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04	2015	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6	1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1991	2015	1개월

**Checkpoint** 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7년까지 증가하던 3세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용률은 2008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현재 전년도 대비 3.9% 포인트 감소하였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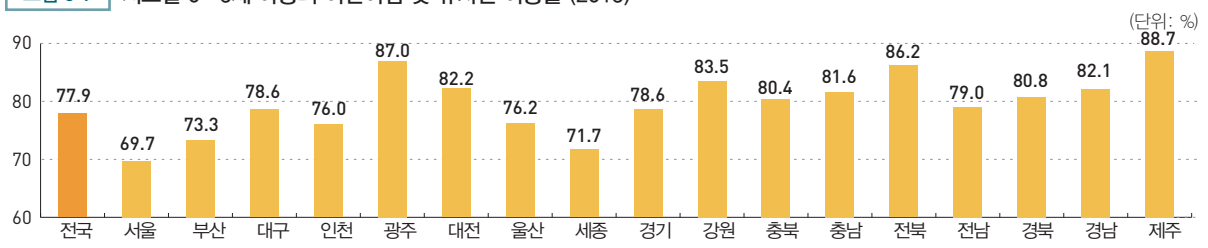


**그림 3-8** 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0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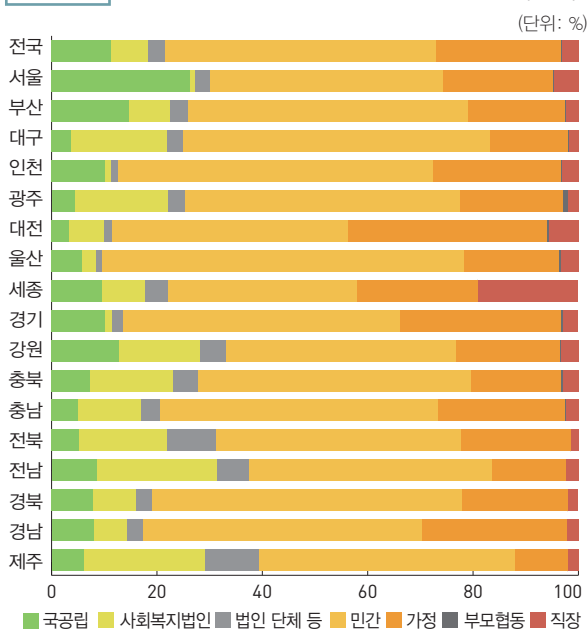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현황, 각 연도

**그림 3-9** 시도별 0~5세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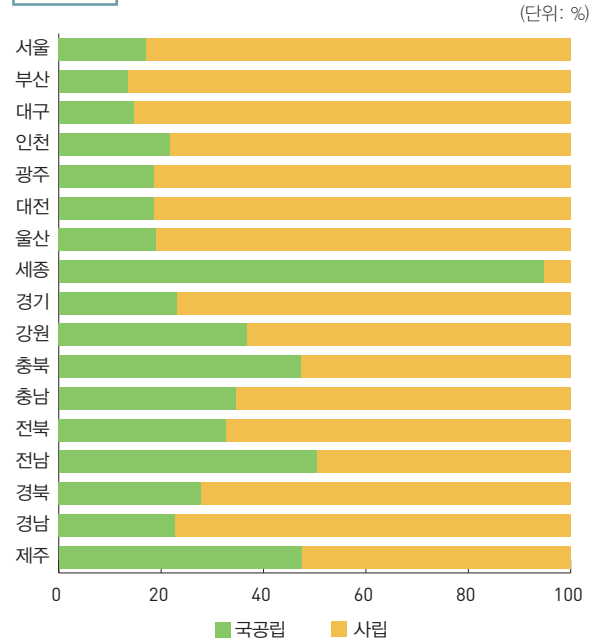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5

**그림 3-10** 시도별 어린이집 설립 주제 유형에 따른 이용 비중 (2015)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13

**그림 3-11** 시도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이용 비중 (20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유치원통계, 2015

#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

Recipient rate of Child home care allowance

## 지표 정의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이며, 본 지표는 해당 연령 전체 아동 수 대비 해당 연령 가정 양육수당 수혜 아동 수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2016년 현재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로 등록된 아동의 가정 양육수당의 경우는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이후 지급기간 만료 시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측정 산식

- 0~2세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 =  $\frac{\text{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0~2세 아동 수}}{\text{전체 0~2세 아동 수}} \times 100$
- 3세 이상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 =  $\frac{\text{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3세이상 아동 수}}{\text{전체 3~5세 아동 수}} \times 100$

유의사항 3세 이상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 산출 시 전체 3~5세 아동 수 대비 가정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3~5세가 아닌 3세부터 미취학 연령의 아동 수의 백분율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7월부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차상위 저소득층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지원 대상을 0~2세로 확대하고, 2013년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전체 0~5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아동 수와 수혜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은 2010년 1.9%에서 2013년부터 35%가 넘어 2015년에는 36.8%로 증가하였다.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즉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대다수는 0~2세 영아로서 전체 양육수당 수급 아동 중 82.1%에 이른다. 또한, 0~2세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은 63.6%로 3세 이상 아동의 경우(12.6%)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5년 현재 0~2세 아동 중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아동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69.2%)이며 3세 이상의 아동 중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22.6%)이다. 반면, 여성취업률이 높은 제주의 경우는 0~2세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49.7%)과 3세 이상 아동의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6.5%)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04	2015	1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1991	2015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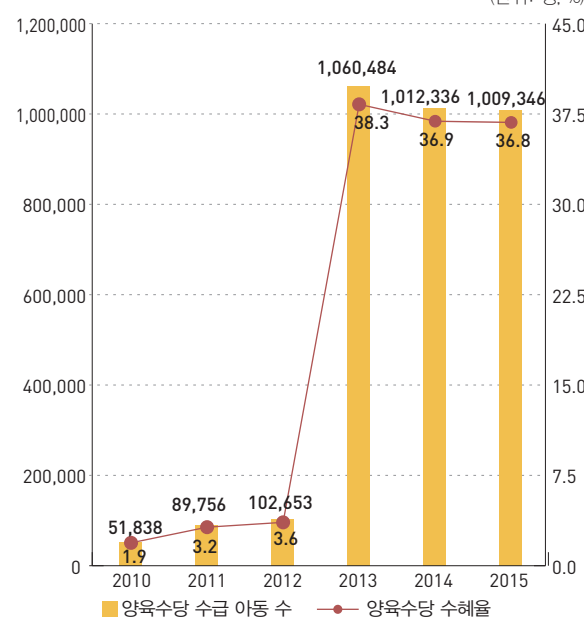
### Checkpoint

2013년부터 양육수당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체 미취학 아동에게 확대됨에 따라 2013년도 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수는 2012년과 비교하여 급증하였으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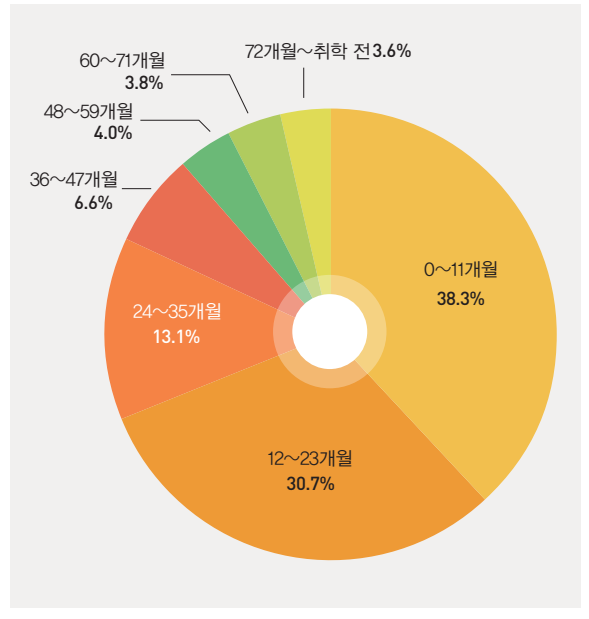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5

**그림 3-12 양육수당 수급자 수 및 수혜율 (2010~2015)**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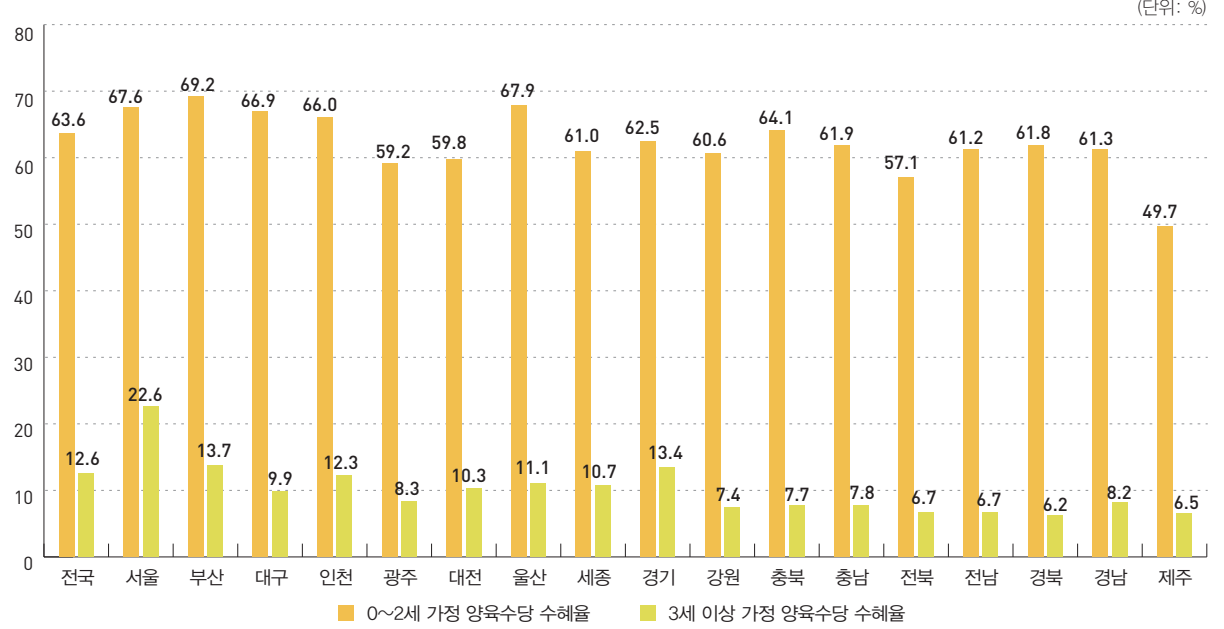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그림 3-13 연령별 양육수당 수급 비중 (2015)**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15

**그림 3-14 시도별 영아(만 0~2세) 및 유아(만 3~5세) 양육수당 수혜율 현황 (2015)**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15

#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 Home Care Benefit

## 지표 정의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신청일 기준)에 대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현금성 급여이다. 단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장애인인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 측정 산식

· 월령별로 다음과 같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을 받은 아동 수 (2015년 기준)

- ※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월 200천 원, 12~24개월 미만 월 150천 원, 24~84개월 미만 100천 원
- ※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200천 원, 12~24개월 미만 177천 원, 24~36개월 미만 156천 원, 36~48개월 미만 월 129천 원 48~84개월 미만 100천 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6개월 미만 200천 원, 36개월~84개월 미만 : 100천 원

2015년 12월 기준 약 100만 명이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 받았다. 가정 양육수당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그리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분류되며 이 중, 양육수당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양육수당의 수급자 수는 1,043,789명, 농어촌 양육수당은 3,071명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331명으로 양육수당 수급자 수가 가장 많다.

영유아 양육수당 수급자 수는 2월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차 소폭으로 증가하여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인구가 많은 경기와 서울이 각각 279,270명, 224,719명으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산이 67,290명, 경남이 63,765명, 인천이 63,65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 양육수당은 경북이 686명, 전남이 505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아동 수당은 경기가 64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가정 양육수당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0~1세 미만 유아가 40%, 1~2세 미만 유아가 31%로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3-1 연도별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및 수금액 (12월말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수급자 수	1,066,624	1,021,512	1,049,191
수금액	167,881,827	161,355,926	160,996,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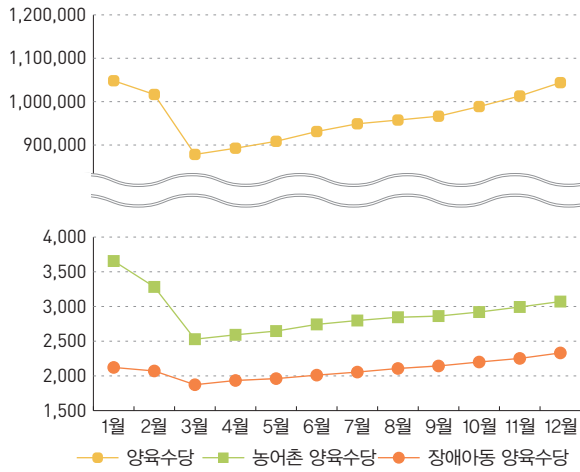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양육수당지원아동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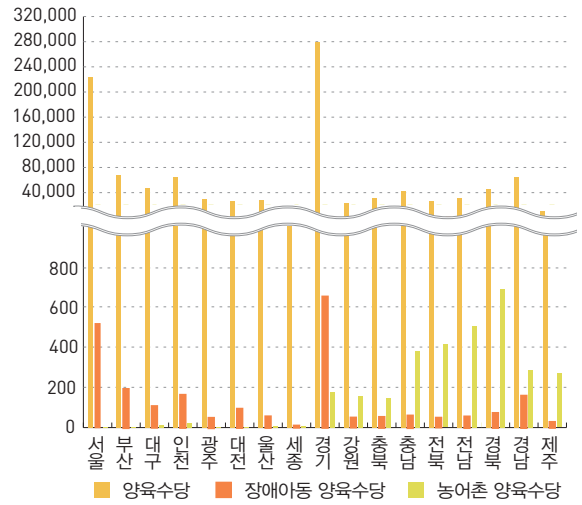
### Checkpoint

2015년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는 12월 기준 1,049,191명으로, 2014년(1,021,512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2013년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가 1,066,624명인 것을 감안할 때 약 100만 명의 수급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 농어촌 양육수당 수급자 수는 2013년 12월 5,335명, 2014년 12월 3,524명, 2015년 12월 3,071명으로 3년간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5** 월별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그림 3-16** 시도별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15.12 기준) (단위: 명)



**표 3-2** 월별 · 시도별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계	
월별 (2015)	1월	1,048,200	2,122	3,655	1,053,977
	2월	1,016,546	2,071	3,282	1,021,899
	3월	878,326	1,873	2,529	882,728
	4월	892,648	1,934	2,592	897,174
	5월	908,587	1,961	2,646	913,194
	6월	931,128	2,011	2,742	935,881
	7월	948,974	2,055	2,798	953,827
	8월	957,588	2,107	2,845	962,540
	9월	966,425	2,143	2,862	971,430
	10월	988,689	2,200	2,920	993,809
	11월	1,013,073	2,252	2,993	1,018,318
	12월	1,043,789	2,331	3,071	1,049,191
시도 (2015.12 기준)	서울	224,719	516	1	225,236
	부산	67,290	191	4	67,485
	대구	46,591	104	13	46,708
	인천	63,655	161	21	63,837
	광주	26,842	48	4	26,894
	대전	30,315	92	2	30,409
	울산	28,195	54	7	28,256
	세종	6,466	7	6	6,479
	경기	279,270	649	176	280,095
	강원	23,249	46	156	23,451
	충북	29,674	51	149	29,874
	충남	40,266	59	379	40,704
	전북	28,062	45	410	28,517
	전남	30,827	54	505	31,386
	경북	44,614	71	686	45,371
	경남	63,765	157	284	64,206
	제주	9,989	26	268	10,283
	합계	1,043,789	2,331	3,071	1,049,191

그림 3-17 연령별 가정 양육수당 지급 건수 비중 ('15.12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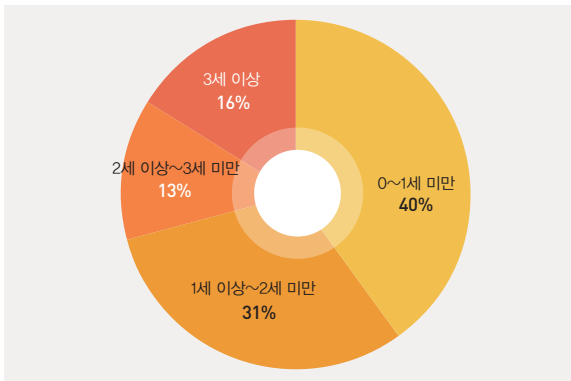


그림 3-18 연령별 가정 양육수당 지급액 비중 ('15.12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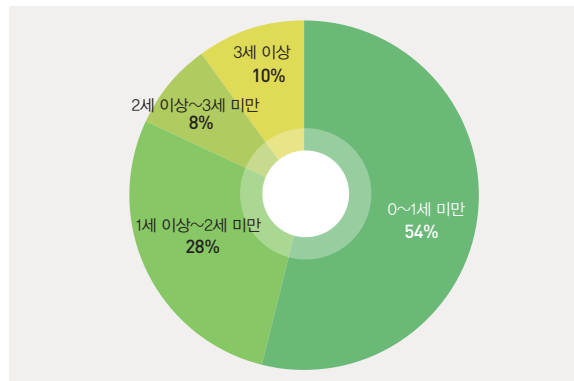


표 3-3 연령별 가정 양육수당 수급 건수 및 수급액 (단위: 명, 천 원)

구분	0~1세 미만		1세 이상~2세 미만		2세 이상~3세 미만		3세 이상		계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월별 (2015)	1월	380,734	82,487,065	319,691	48,030,230	157,777	15,894,053	149,378	14,966,242	1,007,580	161,377,590
	2월	380,228	82,785,250	329,973	49,564,594	169,703	17,092,807	166,915	16,730,138	1,046,819	166,172,789
	3월	369,122	81,586,950	257,443	38,676,172	98,758	9,960,168	123,957	12,415,601	849,280	142,638,891
	4월	373,278	81,968,700	261,191	39,240,689	98,635	9,948,029	127,587	12,783,108	860,691	143,940,526
	5월	375,945	82,119,200	267,671	40,222,765	102,169	10,301,644	132,846	13,304,401	878,631	145,948,010
	6월	379,615	82,899,900	274,586	41,270,231	106,501	10,736,752	138,747	13,895,949	899,449	148,802,832
	7월	381,585	83,179,650	281,157	42,246,676	111,497	11,237,222	145,376	14,560,700	919,615	151,224,248
	8월	381,402	82,807,400	286,849	43,095,522	115,850	11,671,913	152,404	15,259,993	936,505	152,834,828
	9월	378,365	82,428,000	287,287	43,157,576	115,628	11,651,246	156,388	15,659,699	937,668	152,896,521
	10월	381,918	83,580,450	294,596	44,260,655	120,182	12,107,710	163,405	16,367,733	960,101	156,316,548
	11월	386,905	84,271,700	300,733	45,185,303	125,207	12,609,791	171,206	17,143,390	984,051	159,210,185
	12월	386,361	83,013,100	310,212	46,599,172	132,195	13,306,285	180,578	18,078,221	1,009,346	160,996,778
시도 (2015.12 기준)	서울	71,385	15,478,377	58,228	8,742,300	27,308	2,745,100	54,479	5,450,000	211,400	32,415,777
	부산	23,923	5,164,600	20,756	3,115,954	9,376	942,050	11,588	1,159,400	65,643	10,382,004
	대구	17,432	3,757,200	15,139	2,272,662	6,222	625,062	6,374	637,600	45,167	7,292,524
	인천	22,757	4,829,600	19,376	2,911,493	8,908	895,080	10,547	1,055,074	61,588	9,691,247
	광주	11,961	2,555,000	9,021	1,353,727	3,399	341,900	4,604	460,500	28,985	4,711,127
	대전	10,680	2,339,600	8,436	1,266,277	3,457	346,900	3,732	373,700	26,305	4,326,477
	울산	10,703	2,304,400	9,088	1,363,931	3,576	359,256	4,012	401,358	27,379	4,428,945
	세종	2,564	558,600	1,836	275,454	754	75,968	1,010	101,029	6,164	1,011,051
	경기	100,466	21,475,000	80,397	12,070,227	35,565	3,574,536	52,649	5,270,199	269,077	42,389,962
	강원	9,606	2,024,600	7,464	1,121,219	2,855	288,312	2,853	286,019	22,778	3,720,150
	충북	12,030	2,594,500	9,617	1,444,804	4,028	405,680	3,417	342,377	29,092	4,787,361
	충남	16,396	3,475,000	12,856	1,933,433	5,164	520,436	4,834	485,037	39,250	6,413,906
	전북	12,153	2,612,000	8,934	1,344,758	3,527	357,418	3,332	334,763	27,946	4,648,939
	전남	13,220	2,820,200	10,241	1,541,596	3,960	401,921	3,330	334,679	30,751	5,098,396
	경북	19,903	4,320,800	15,078	2,272,500	5,606	568,852	4,328	436,071	44,915	7,598,223
	경남	26,329	5,664,800	20,894	3,139,101	7,626	769,302	8,212	822,570	63,061	10,395,773
	제주	4,853	1,039,000	2,851	429,559	864	88,512	1,277	127,845	9,845	1,684,916
계	386,361	83,013,277	310,212	46,598,995	132,195	13,306,285	180,578	18,078,221	1,009,346	160,996,778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Number of Prim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After-school Care programs

## 지표 정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수를 의미한다.

방과 후 방임된 초등학교 학생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지표이다.

## 측정 산식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 교실 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는 2008년 2,962개교에 개설되어 54,638명이 참여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5,972개교에 개설되었고 2008년과 비교 시 약 4배 이상인 239,798명이 이용하고 있다.

2015년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전체 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1학년이 47.6%, 2학년이 39.7%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 돌봄교실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55,854명이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에서 31,791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은 지속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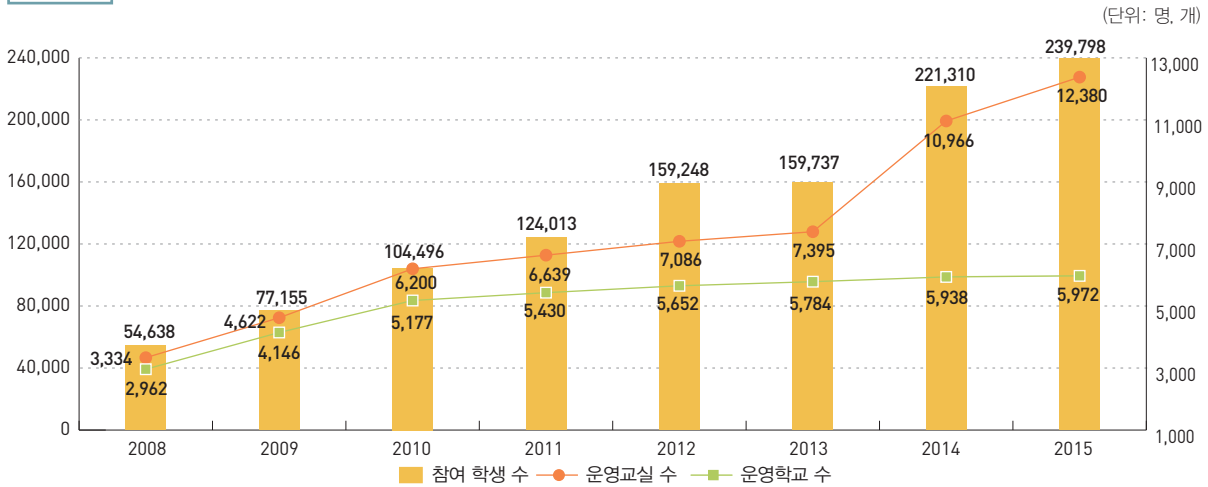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내부자료)	2008	2015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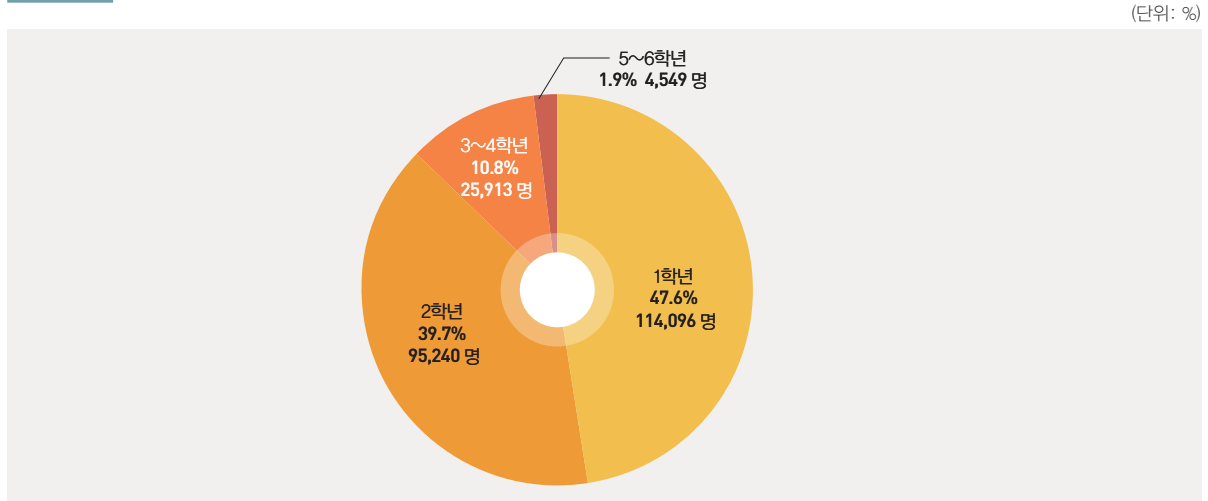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운영학교 수, 운영교실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에 운영교실 수(12,380개)와 참여 학생 수(239,798명)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급증하였다. 운영학교 수는 증가폭이 크지 않으나 조금씩 증가하여 2015년 5,972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림 3-19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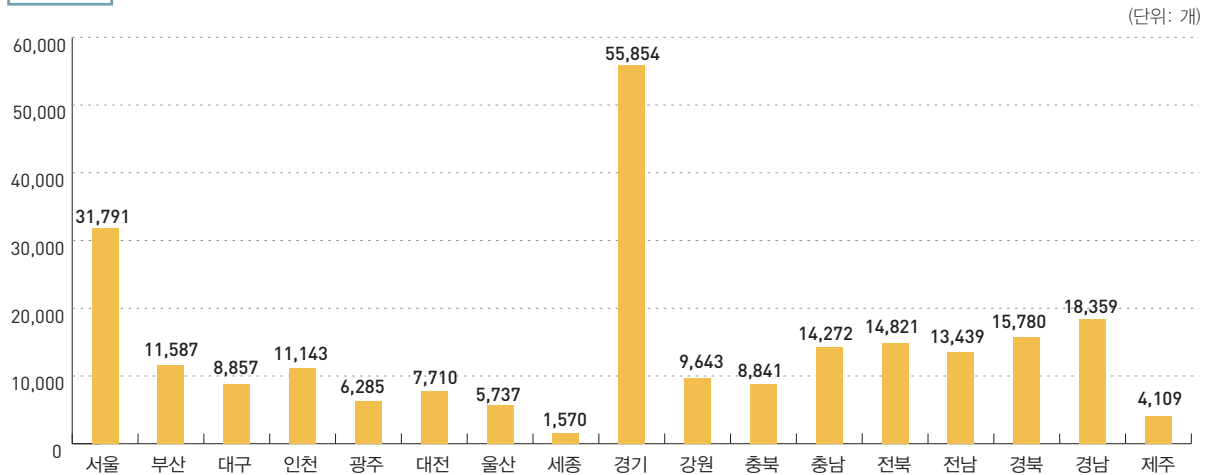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3-20 학년별 돌봄교실 참여 현황 (2015)



자료: 교육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내부자료), 2015

그림 3-21 시도별 돌봄교실 참여 현황 (2015)



자료: 교육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내부자료)



# 학교급별 취학률

Enrollment rates by school level

## 지표 정의

학교급별 취학률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적령인구 대비 해당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취학적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만 6~11세, 중학교는 만 12~14세, 고등학교는 만 15~17세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취학적령의 재적 학생 수}}{\text{취학적령인구}} \times 100$$

## 유의사항

- ※ 취학적령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수치이므로 2011년 이후는 확정인구가 아닌 잠정 추계이다.
- ※ OECD 교육지표에서는 학교급별 취학률 대신 연령별 취학률[(해당 연령집단의 재적 학생 수/해당 연령집단의 인구 수)×100]을 산출하고 있다.

취학률은 교육에 대한 기회와 접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특히, 의무교육 발달상황, 교육의 보급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취학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학교급의 취학적령의 인구가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실시로 인하여 1954년 초등학교 취학률이 82.5%에서 1959년 96.4%로 증가하였고, 2015년 98.5%로 거의 100%에 가까운 취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2002년부터 전국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취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2000년 이후에는 95%이상의 취학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의 중학교 취학률은 96.3%이다. 고등학교 취학률의 경우는 1980년 48.8%정도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79.4%, 2000년에는 89.4%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90% 이상으로 완전 취학율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93.5%의 취학률을 나타내고 있다.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학교급별 취학률 대신 연령별 취학률[(해당 연령집단의 재적 학생 수/해당 연령집단의 인구 수)×100]을 산출하고 있다.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중학교 과정)에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5	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64	2015	5년

## Checkpoint

초등학교 취학률의 경우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2015년에는 전년대비 2.1%p 증가하였다. 중학교 취학률의 경우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정체를 보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에 다시 전년대비 1.4%p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취학률의 경우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전년대비 0.2%p 감소하였다.

## 참고문헌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 본 한국과 세계교육(12)- 학생의 삶. 통계자료 SM 2012-01-4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5 간추린 교육통계, 2015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5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OECD 교육지표, 2015

해당되는 5~14세 취학률의 경우 OECD 34개국의 평균과 주요국의 통계를 살펴보면,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한국과 동일하게 99% 이상의 취학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5~14세가 속한 학교급이 의무교육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 반면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에 속하는 15~19세의 취학률의 경우에는 한국과 모든 OECD 비교국들 모두 5~14세의 취학률보다 10% 이상 또는 10%에 근접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87%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평균(83%)보다 4%p 높은 수준이며, 비교 국가 중에서는 독일(89%) 다음으로 높다.

표 3-4 연도별 학교급별 취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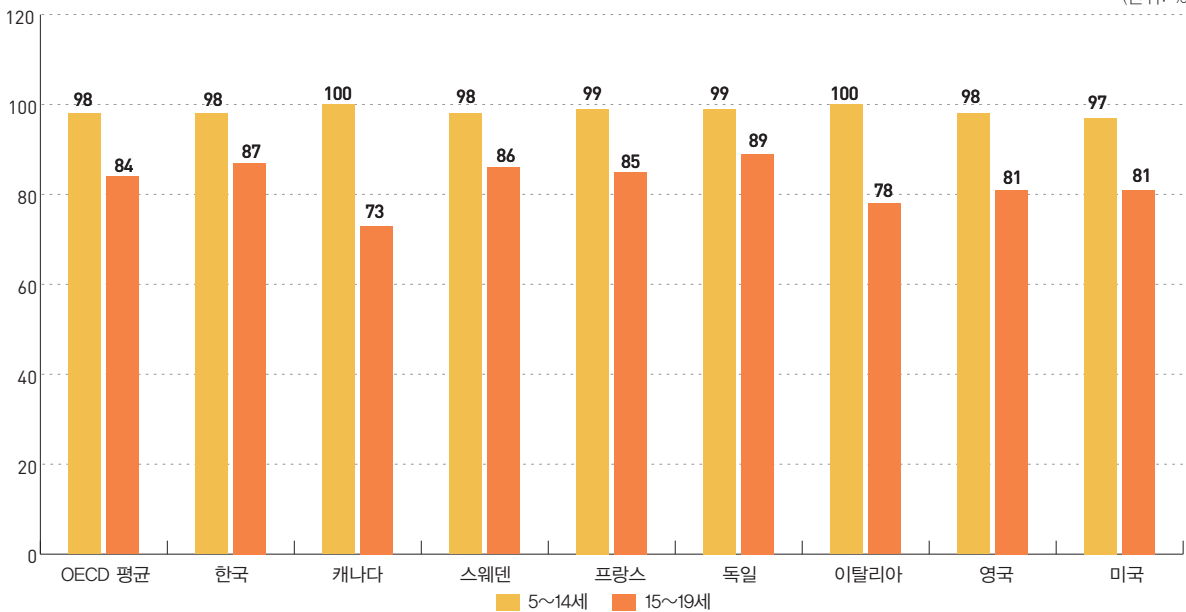
(단위: %)

학교급 \ 연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초등학교	97.2	98.5	99.2	99.1	98.6	97.2	96.4	98.5
중학교	95.0	95.9	97.0	96.7	96.1	96.2	97.7	96.3
고등학교	89.4	91.4	91.5	91.9	92.6	93.6	93.7	93.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그림 3-22 OECD 주요국가의 연령별 취학률 (2013)

(단위: %)



주: 캐나다의 경우는 2012년 자료로 중등 후 비고등교육기관이 제외됨.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OECD 교육지표, 2015

# 학급당 학생 수

Average Class Size

## 지표 정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급별로 전체 학급 수 중에서 재적하고 있는 학생 수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급별로 1개의 학급당 평균적으로 배정된 학생 수를 의미하여 학급규모에 대한 교육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총 재적 학생 수}}{\text{총 학급 수}} \quad (\text{단위: 명})$$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과거에 비교해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5년에는 중학교(약 61.7명)와 고등학교(약 56.9명)는 과밀학급이었고, 초등학교의 경우도 학급당 학생이 약 44.7명으로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여 초등학교의 경우는 1995년 이후 30명대로 감소하였고, 2015년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22.6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감소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1990년대에 급감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8.9명, 고등학교의 경우 약 3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6명, 0.9명 감소한 것이다. 특히,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최근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모든 학교급에서 중소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별·광역시 23.2명, 중소도시가 25.3명인데 비하여 읍·면지역은 17.9명이고, 도서벽지는 8.8명으로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크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중소도시가 가장 많은 31.1명, 특별광역시가 29.0명, 읍·면지역이 24.3명, 도서벽지가 17.2명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30.2명, 31명이고, 읍·면지역의 경우는 27.0명으로 나타난 반면, 도서벽지의 경우는 22.9명이다.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도가 25.3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18.1명으로 가장 적었다. 중학교는 인천과 제주가 30.5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0.9명으로 가장 적다. 고등학교는 광주광역시가 33.8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3.2명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전년 대비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지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증가하였는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5	1년

### Checkpoint

2014년 대비 2015년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모든 학교급에 있어서 감소하였다. 지역 규모별로도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의 모든 학교급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도 모든 학교급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였지만, 예외적으로 강원지역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도의 29.3명에서 0.1명 증가한 29.4명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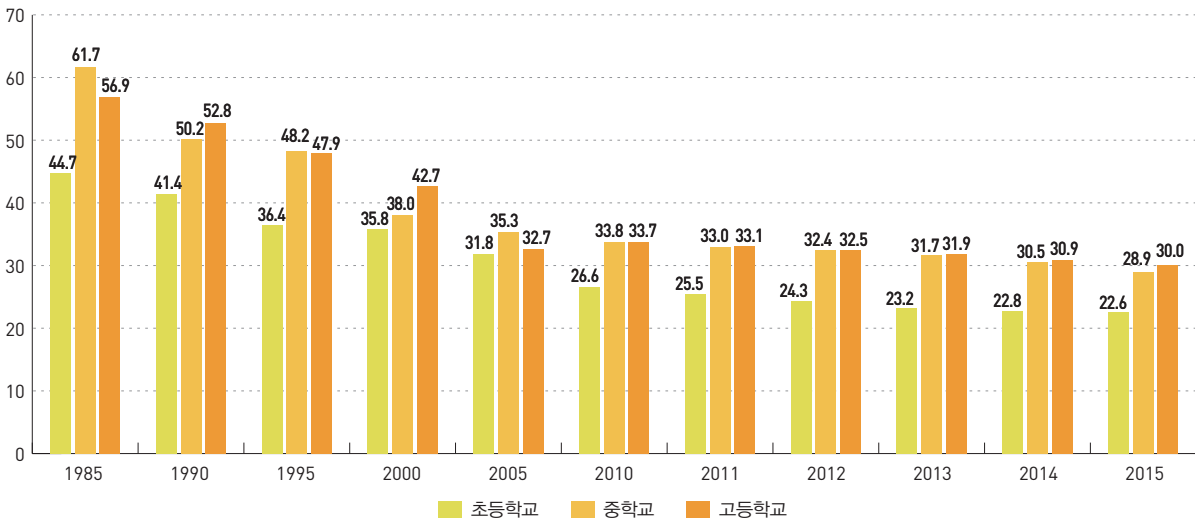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5 간추린 교육통계, 2015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5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OECD 교육지표, 2015

데, 대도시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초등교육(초등학교 과정)과 전기중등교육(중학교 과정)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전기중등교육(중학교 과정)은 OECD 평균이 24명인데 비해 한국 평균은 33명으로 초등교육에 비해 차이가 더 컸다. 또한 다른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면,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에 있어서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비교국보다 많다.

그림 3-23 연도별·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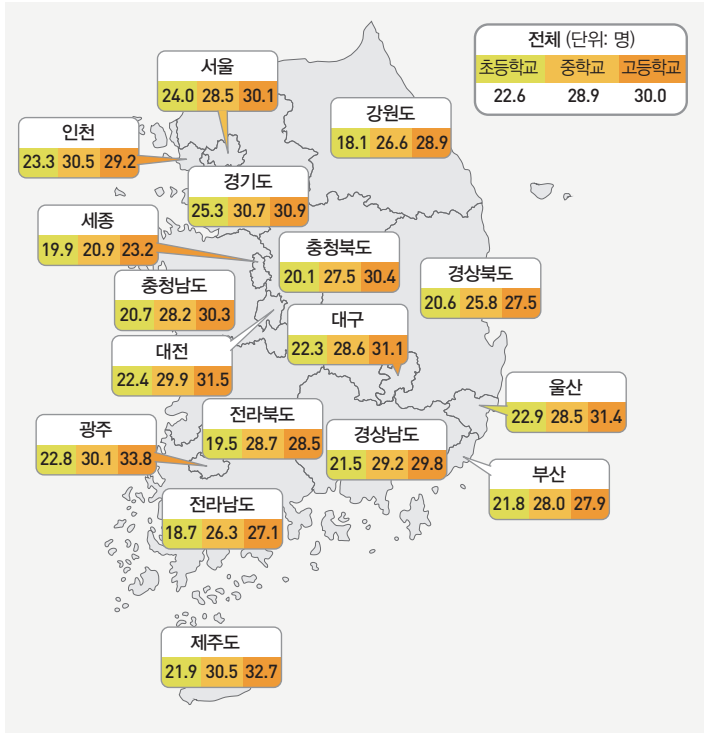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표 3-5 지역규모별·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 (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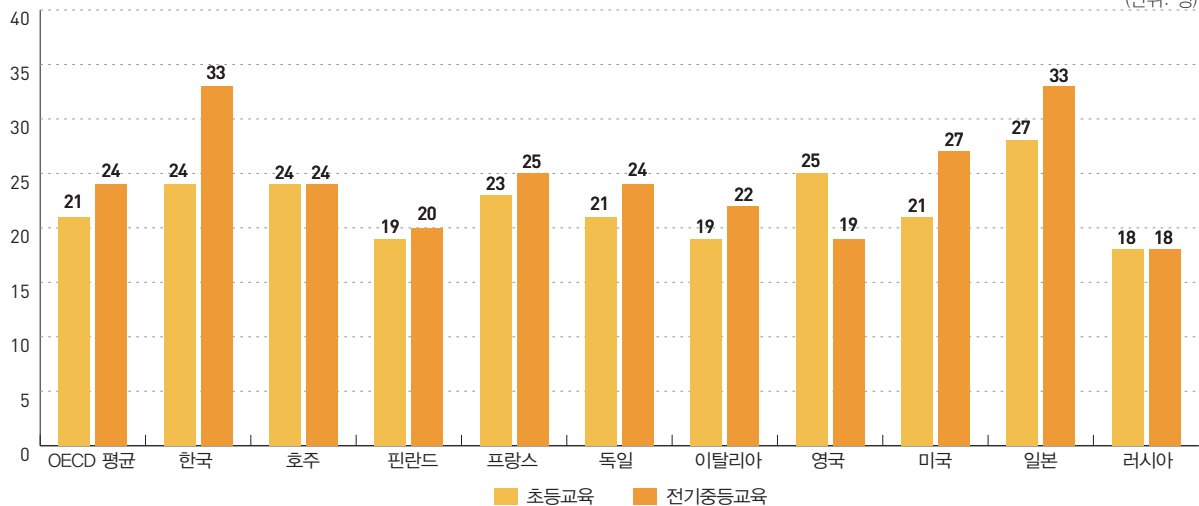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2.6	28.9	30.0	
지역 규모	특별/광역시	23.2	29.0	30.2
	중소도시	25.3	31.1	31.0
	읍·면지역	17.9	24.3	27.0
	도서벽지	8.8	17.2	22.9
시도	서울	24.0	28.5	30.1
	부산	21.8	28.0	27.9
	대구	22.3	28.6	31.1
	인천	23.3	30.5	29.2
	광주	22.8	30.1	33.8
	대전	22.4	29.9	31.5
	울산	22.9	28.5	31.4
	세종	19.9	20.9	23.2
	경기	25.3	30.7	30.9
	강원	18.1	26.6	28.9
	충북	20.1	27.5	30.4
	충남	20.7	28.2	30.3
	전북	19.5	28.7	28.5
	전남	18.7	26.3	27.1
	경북	20.6	25.8	27.5
	경남	21.5	29.2	29.8
	제주	21.9	30.5	32.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5

그림 3-24 주요국의 학급당 학생 수 (2013)

(단위: 명)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OECD 교육지표, 2015

#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High School Dropout Rates

## 지표 정의

학업중단율은 총 재적 학생 중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학업중단자 수 비율을 의미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의무교육 범주에 들지 않는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이다. 학업중단의 사유로는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사유에 의한 자퇴, 퇴학과 특수교육 대상자 중 유예 및 면제가 있다. 2010학년도부터는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을 학업중단자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수}}{\text{전년도 고등학교 재적 학생 수}} \times 100$$

유의사항 학업중단자 수는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학년도를 기준으로 조사되므로 다른 통계와 자료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학교 부적응과 같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중단자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 교육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5년부터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1.3%)부터 2010년(2%)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전년대비 약 0.2%p 감소한 1.4%이다. 성별 학업중단율은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여학생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도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서울, 경기, 충북, 전남이 1.5%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았다. 전년대비 모든 시도에서 학업중단율은 감소하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5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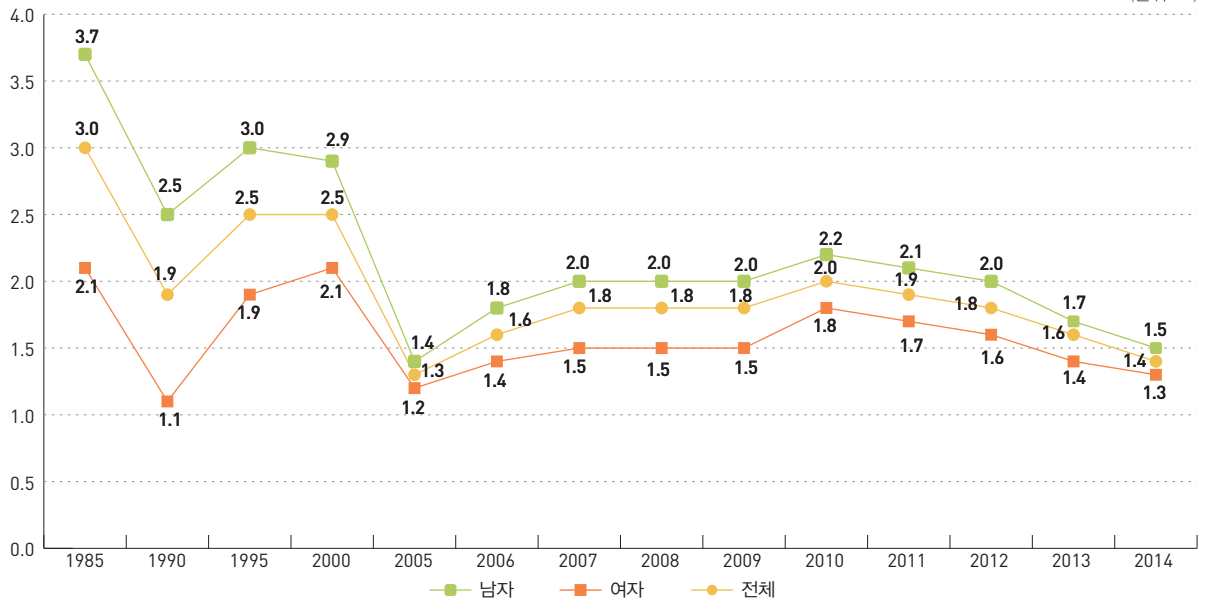
2013학년도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과 비교하여 2014학년도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시도별로 평균 2~3%p 감소하였는데, 특히, 울산, 강원, 제주 지역은 0.5%p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다.

## 참고문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5 간추린 교육통계, 2015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5

그림 3-25 연도별 · 성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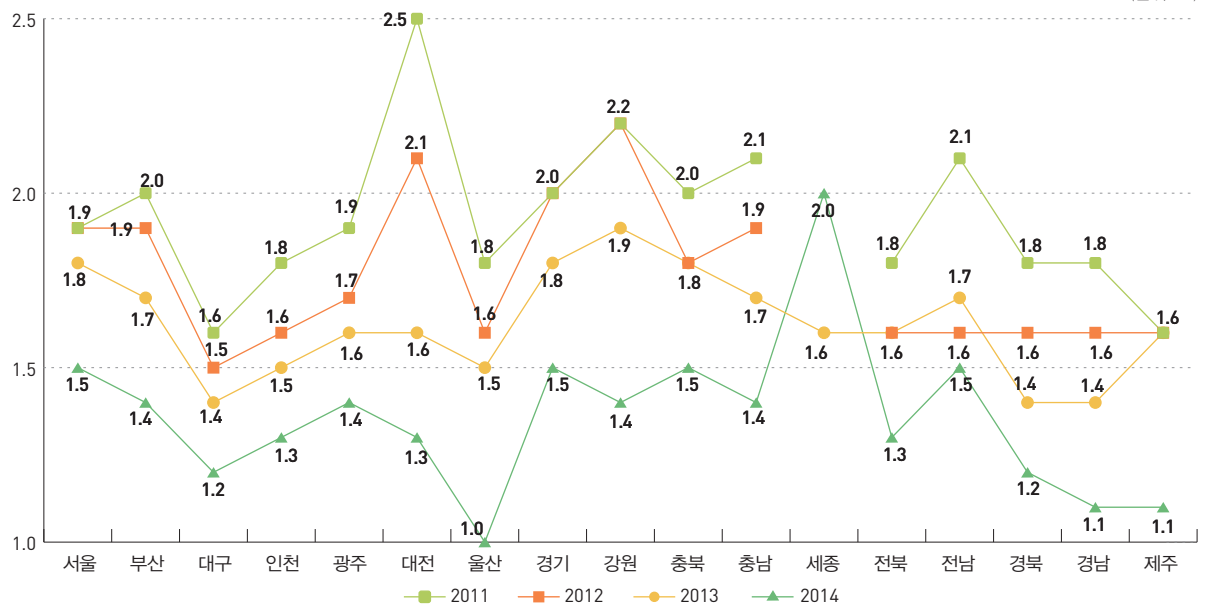
(단위: %)



주: 연도는 해당 학년도를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그림 3-26 시도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2014)

(단위: %)



주: 세종시의 경우는 2011년, 2012년 학업중단율 산출이 불가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 교원 1인당 학생 수

Ratio of students to teacher

## 지표 정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한 사람의 교사가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을 대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학급당 학생 수와 함께 교육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원 수에 대한 재직 학생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현재, 국내지표의 교원 포함 범위와 OECD 국제지표의 교원포함 범위가 일부 상이하다.

## 측정 산식

$$\bullet \text{ 국내산식} = \frac{\text{재직 학생 수}}{\text{교원 수(휴직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 퇴직교원 및 강사 제외)}} \times 100$$

유의사항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하는 교원의 포함 기준이 국내통계와 OECD 지표가 상이한데, OECD 지표는 수업에 주된 업무인 교원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bullet \text{ OECD 산식} = \frac{\text{재직 학생 수}}{\text{교원 수(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 강사를 제외한 전체 교원 - 휴직교원 및 기간제교원 포함)}} \times 100$$

(Education at a Glance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연도별, 학교급별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80년도에 47.5명에서 2009년 처음으로 20명 미만인 19.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 현재 14.9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1980년대비 약 69%가 감소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1980년 45.1명에서 2005년에 20명 미만(19.4명)까지 감소했으며, 2015년 현재 14.3명으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초등학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1980년 33.3명에서 2000년에 19.9명에 도달했으며, 2015년에는 13.7명으로 전년대비 0.5명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학교급간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학령 인구의 감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시도별 학교급별 설립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지역 규모별로는 전체적으로 중소도시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으며, 특별광역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시도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경기 지역이 17.2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11.7명)이 가장 적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인천광역시가 1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시가 10명으로 가장 적었다. 고등학교는 제주 지역이 1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역시 세종시가 9.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4	1년

### Checkpoint

2015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4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감소했고, 초등학교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2014년(15.2명) 대비 0.9명, 고등학교의 경우 2014년(13.7명) 대비 0.5명이 감소하였다.

### 참고문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5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OECD 교육지표, 2015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과정은 한국이 17명으로, OECD 평균(15명)보다 평균 2명이 많았으며, 중학교 과정은 한국이 18명으로 OECD 평균(13명)에 비해 5명이 많았다.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한국은 15명으로 OECD 평균(13명)보다 2명이 많았다.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과정은 프랑스와 영국이 우리보다 많았으며, 중학교 과정은 영국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과정은 비교대상 주요국 중에 영국과 핀란드에 이어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았다.

표 3-6 연도별·학교급별·설립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1980	47.5	47.5	51.0	45.1	44.4	46.2	33.3	30.9	35.2
1985	38.3	38.2	49.0	40.0	39.2	41.8	31.0	27.6	33.6
1990	35.6	35.5	42.3	25.4	24.1	29.3	24.6	20.7	27.9
1995	28.2	28.1	35.9	24.8	24.4	26.5	21.8	18.9	24.2
2000	28.7	28.7	31.0	20.1	19.9	20.6	19.9	18.2	21.5
2005	25.1	25.1	27.3	19.4	19.4	19.2	15.1	14.5	15.9
2006	24.0	24.0	26.5	19.4	19.4	19.3	15.0	14.5	15.7
2007	22.9	22.9	25.5	19.1	19.1	19.1	15.3	14.8	16.0
2008	21.3	21.3	24.9	18.8	18.7	18.8	15.5	14.9	16.2
2009	19.8	19.8	24.2	18.4	18.4	18.5	15.7	15.1	16.5
2010	18.7	18.6	23.5	18.2	18.1	18.3	15.5	14.9	16.3
2011	17.3	17.3	23.0	17.3	17.1	17.9	14.8	14.1	15.8
2012	16.3	16.2	22.8	16.7	16.5	17.4	14.4	13.8	15.4
2013	15.3	15.3	23.2	16.0	15.9	16.5	14.2	13.5	15.1
2014	14.9	14.9	22.4	15.2	15.0	15.8	13.7	13.0	14.6
2015	14.9	14.8	22.4	14.3	14.1	14.9	13.2	12.6	14.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5

표 3-7 시도별·학교급별(설립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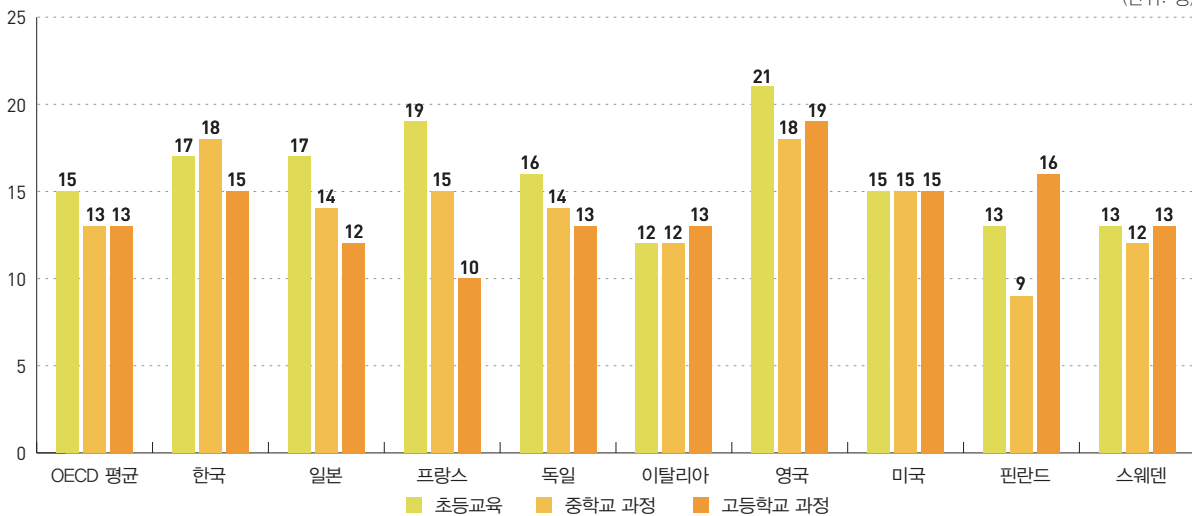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4.9	14.8	22.4	14.3	14.1	14.9	13.2	12.6	14.2	
지역규모	특별/광역시	15.2	15.1	23.3	14.7	14.6	15.1	13.4	12.6	14.3
	중소도시	17.0	17.0	19.4	15.8	15.6	16.8	13.8	13.3	14.8
	읍·면지역	11.4	11.3	16.8	10.7	10.6	11.6	11.6	11.1	12.7
	도서벽지	5.7	5.7	0.0	6.6	6.6	7.1	8.7	8.2	12.6
시도	서울	15.2	14.9	23.1	14.6	14.5	14.9	13.5	12.2	14.3
	부산	14.8	14.7	22.2	14.2	14.3	13.9	12.6	12.3	12.9
	대구	14.6	14.5	29.8	14.5	13.9	16.4	13.7	12.6	14.7
	인천	15.9	15.9	19.9	15.6	15.7	13.9	12.9	12.5	13.9
	광주	15.3	15.2	26.0	15.1	14.6	16.5	14.8	13.3	15.8
	대전	14.9	14.8	21.5	14.7	14.8	13.6	13.8	13.5	14.3
	울산	15.5	15.5	0.0	14.3	14.2	14.4	13.4	13.3	13.9
	세종	12.9	12.9	0.0	10.0	10.0	0.0	9.7	9.5	11.3
	경기	17.2	17.2	18.0	15.5	15.5	15.1	13.5	13.1	14.5
	강원	11.7	11.6	20.3	12.4	12.3	14.1	12.0	11.3	14.5
	충북	13.0	13.0	28.8	13.4	13.3	14.4	14.0	13.3	16.3
	충남	13.3	13.3	17.1	13.3	13.1	14.1	13.5	13.0	14.6
	전북	12.5	12.5	0.0	13.1	12.5	14.7	12.7	11.3	14.0
	전남	11.8	11.7	16.4	11.7	11.3	13.6	12.0	11.2	13.2
	경북	12.9	12.8	19.4	11.8	11.0	14.0	12.5	11.3	13.8
	경남	14.1	14.0	20.3	14.2	14.0	15.2	13.1	12.8	13.7
	제주	14.4	14.4	0.0	15.1	14.5	18.2	15.4	13.6	19.1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5

그림 3-27 주요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3)

(단위: 명)



주: 1) 일본은 중등교육에 중등 후 비고등교육이 포함됨.  
 2) 일본의 고등학교 과정은 다른 범주의 자료를 포함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OECD 교육지표, 2015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per Student

## 지표 정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사교육비에는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통신강의(EBS 제외)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교육비는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의 형평성 정도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text{학교급별 재적 학생 수}} \times 100$$

유역사항 고등학생일 경우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를 모두 포함하는 값이다.

우리나라의 2015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약 17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도 18조 2천억 원 대비 약 4천억 원 감소한 규모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조 5천억 원, 중학교 5조 2천억 원, 고등학교 5조 원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전년대비 감소추세가 뚜렷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전년 68.6%에 비해 0.2%p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천 원으로, 전년 24만 2천 원에 비해 약 2천 원 증가하였다.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1인당 사교육비가 소폭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1인당 부담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교 27만 1천 원, 고등학교 23만 6천 원, 초등학교 23만 원 1천 원 순으로 중학교에 사교육이 집중되어 있으나,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47만 1천 원, 중학교 39만 7천 원, 초등학교 28만 6천 원으로 고등학교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2007	2015	1년

### Checkpoint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자녀 교육비 항목으로서 전체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저출산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사교육비는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사교육비의 규모가 커지면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접근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계층별 교육 격차를 확고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8 학교급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추이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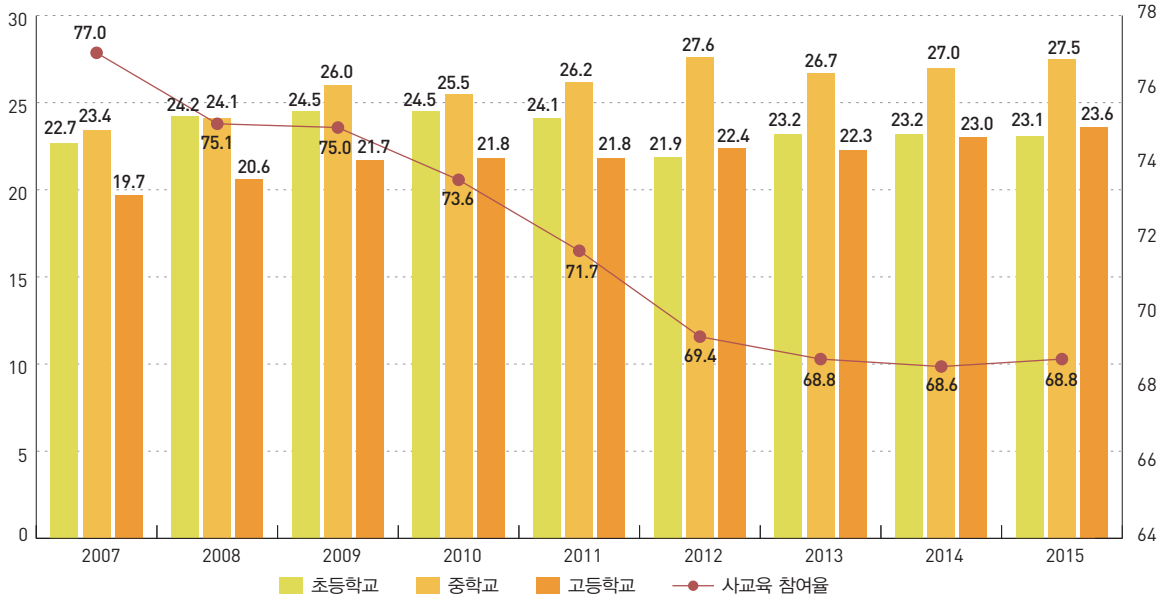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만 원 %)

연도	학교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사교육비 (억 원)	전체	208,718	201,266	190,395	185,960	182,297	178,346
	초등학교	97,080	90,461	77,554	77,375	75,949	75,287
	중학교	60,396	60,006	61,162	57,831	55,678	52,384
	고등학교	51,242	50,799	51,679	50,754	50,671	50,67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전체	24.0	24.0	23.6	23.9	24.2	24.4
	초등학교	24.5	24.1	21.9	23.2	23.2	23.1
	중학교	25.5	26.2	27.6	26.7	27.0	27.5
	고등학교	21.8	21.8	22.4	22.3	23.0	23.6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전체	32.7	33.5	34.0	34.7	35.2	35.5
	초등학교	28.3	28.4	27.1	28.3	28.6	28.6
	중학교	35.3	36.8	39.1	38.4	39.1	39.7
	고등학교	41.2	42.2	44.2	45.4	46.4	47.1
사교육 참여율(%)	전체	73.6	71.7	69.4	68.8	68.6	68.8
	초등학교	86.8	84.6	80.9	81.8	81.1	80.7
	중학교	72.2	71.0	70.6	69.5	69.1	69.4
	고등학교	52.8	51.6	50.7	49.2	49.5	50.2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그림 3-28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007~2015)

(단위: 만 원 %)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Public Expenditure on Tertiary Education as % of GDP

## 지표 정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율(public expenditure on tertiary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은 교육 기관에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교육비와 가계에 지원한 정부보조금(장학금, 학비지원금,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GDP 대비 비중으로 환산한 값으로 정의된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를 알 수 있는 국제지표로서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의미 있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용}}{\text{GDP}} \times 100$$

2012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율은 0.8%로 나타나 OECD 평균인 1.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0년 0.6%에서 2008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9년 0.7%, 2012년 0.8%로 나타났다.

2012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덴마크(1.8%), 스웨덴(1.5%), 캐나다(1.5%), 미국(1.4%) 순으로 높고, 한국과 이탈리아가 0.8%, 일본이 0.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는 대부분의 비교 국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2000년과 2012년 수치를 비교해보면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 변화가 없고 한국과 호주, 이탈리아는 0.1%p 증가, 캐나다는 0.1%p 감소하였다. 반면 덴마크와 프랑스는 0.3%p 증가했고 영국과 미국은 0.5%p가 증가하여 정부투자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Education at a Glance	-	2012	1년

표 3-9 OECD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투자비율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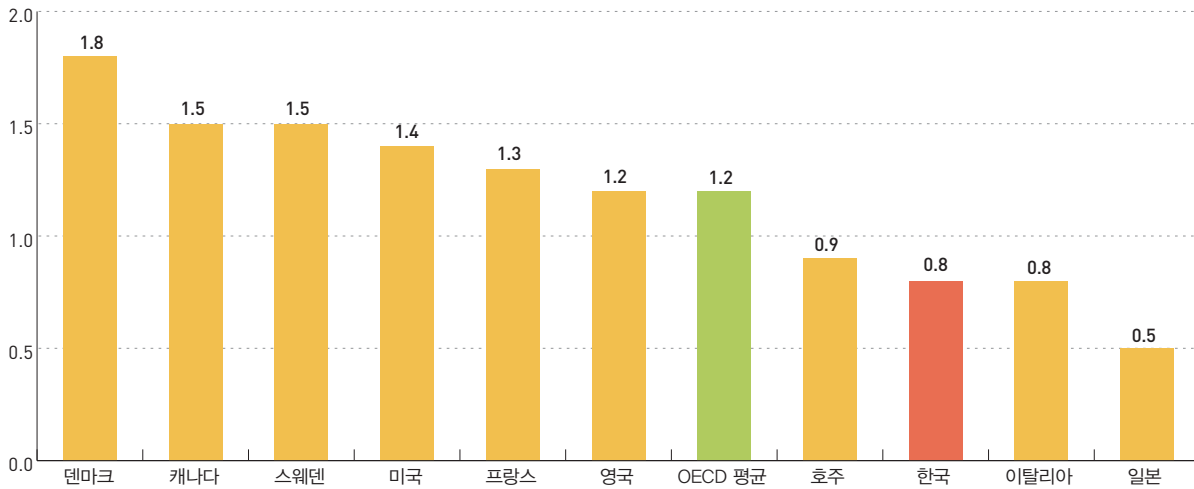
(단위: GDP%)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0.6	0.4	0.3	0.6	0.5	0.6	0.6	0.6	0.6	0.7	0.8	0.7	0.8
일본	0.5	0.5	0.4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호주	0.8	0.8	0.8	0.8	0.8	0.8	0.8	0.7	0.7	0.7	0.8	0.7	0.9
캐나다	1.6	1.5	-	1.3	-	1.4	1.5	1.5	1.5	1.5	1.5	1.6	1.5
덴마크	1.5	1.8	1.9	1.7	1.8	1.6	1.6	1.6	1.6	1.8	1.8	1.8	1.8
프랑스	1.0	1.0	1.0	1.1	1.2	1.1	1.1	1.2	1.2	1.3	1.3	1.3	1.3
이탈리아	0.7	0.8	0.8	0.7	0.7	0.6	0.7	0.6	0.8	0.8	0.8	0.8	0.8
스웨덴	1.5	1.5	1.6	1.6	1.6	1.5	1.4	1.4	1.4	1.6	1.6	1.6	1.5
영국	0.7	0.8	0.8	0.8	0.8	0.9	0.9	0.7	0.6	0.6	0.7	0.9	1.2
미국	0.9	0.9	1.2	1.2	1.0	1.0	1.0	1.0	1.0	1.0	1.0	0.9	1.4
OECD 평균	0.9	0.9	1.0	1.1	1.0	1.1	1.0	1.0	1.0	1.1	1.1	1.1	1.2

주: 덴마크는 2012년 수치가 발표되지 않아 2011년 수치로 대체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그림 3-29 OECD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투자비율 (2012)

(단위: GDP%)



주: 덴마크는 2012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2011년 수치로 대체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5

#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Proportion of Students who have a loan

## 지표 정의

**재학생 수 대비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 차이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 2005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시행되었던 학자금 대출제도는 2009년 대폭 정비되어 국가장학금 사업과 학자금 대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일반상환제도와 함께 취업 후 상환제도가 도입되었다. 취업 후 상환대출 제도(일명 “든든학자금”)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등을 대출해 주고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징수 폐지 등을 통해 학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또한 지속되었다.

## 측정 산식

$$\frac{\text{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text{재학생 수}} \times 100$$

2016년 1학기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약 28만 명으로 12.51%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학기 대비 1.35%p 감소했고, 직전 학기인 2015년 2학기에 비하면 1.45%p 감소했다. 자료가 공개된 2012년 2학기 이래 전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은 12~16%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대학생 중 취업 후 상환을 이용한 학생은 10.72%로 일반상환을 이용한 학생(1.80%) 보다 약 6배 정도 많다. 최대 10년 거치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 내에서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일반상환대출에 비해 취업 후 일정기간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2016년 1학기 현재 4년제 대학생 중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은 약 20만 2천 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11.5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문대학생 중 이용 학생은 약 7만 7천 4백 명으로 16.19%이다. 전문대학생이 4년제 대학생보다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이 약 4.7%p 더 많다. 대출유형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생의 일반상환 이용 비율은 1.66%, 전문대학생은 2.31%로 전문대학생이 4년제 대학생 보다 조건이 불리한 일반상환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 <a href="http://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a> )	2008	2016	6개월

### Checkpoint

학기별 차이를 고려하여 1학기 기준으로 2015년과 비교하면, 전체 이용 학생 비율은 1.35%p 감소하였다. 대출유형별로는 일반상환이 0.81%p('15년 2.61%, '16년 1.80%), 취업 후 상환은 0.54%p('15년 11.26%, '16년 10.72%) 감소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전문대학생의 이용 비율이 2.00%p 감소한 것에 비해 4년제 대학은 1.18%p 감소하였다.

표 3-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대학 + 전문대학) : 등록금 + 생활비 (2012~2016)

(단위: 명, %)

학기	재학생 수 (A)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2-2	2,129,237	62,227	2.92	261,904	12.30	324,131	15.22
2013-1	2,327,561	55,148	2.37	291,618	12.53	346,766	14.90
2013-2	2,144,055	51,535	2.40	294,962	13.76	346,497	16.16
2014-1	2,322,503	53,345	2.30	288,914	12.44	342,259	14.74
2014-2	2,155,239	47,363	2.20	292,403	13.57	339,766	15.76
2015-1	2,290,572	59,690	2.61	257,857	11.26	317,547	13.86
2015-2	2,111,058	33,140	1.57	261,541	12.39	294,681	13.96
2016-1	2,233,832	40,106	1.80	239,431	10.72	279,537	12.51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09.22. 인출

표 3-11 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 등록금 + 생활비 (2012~2016)

(단위: 명, %)

학기	재학생 수 (A)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2-2	1,665,254	53,787	3.23	176,883	10.62	230,670	13.85
2013-1	1,825,422	41,527	2.27	205,274	11.25	246,801	13.52
2013-2	1,681,747	40,018	2.38	206,969	12.31	246,987	14.69
2014-1	1,825,623	39,863	2.18	205,410	11.25	245,273	13.44
2014-2	1,684,826	36,626	2.17	206,110	12.23	242,736	14.41
2015-1	1,800,475	42,477	2.36	185,936	10.33	228,413	12.69
2015-2	1,654,047	25,756	1.56	186,091	11.25	211,847	12.81
2016-1	1,755,259	29,062	1.66	173,010	9.86	202,072	11.51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09.22. 인출

표 3-12 전문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 등록금 + 생활비 (2012~2016)

(단위: 명, %)

학기	재학생 수 (A)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2-2	463,983	8,440	1.82	85,021	18.32	93,461	20.14
2013-1	502,139	13,621	2.71	86,344	17.20	99,965	19.91
2013-2	462,308	11,517	2.49	87,993	19.03	99,510	21.52
2014-1	496,880	13,482	2.71	83,504	16.81	96,986	19.52
2014-2	470,413	10,737	2.28	86,293	18.34	97,030	20.63
2015-1	490,097	17,213	3.51	71,921	14.67	89,134	18.19
2015-2	457,011	7,384	1.62	75,450	16.51	82,834	18.13
2016-1	478,573	11,044	2.31	66,421	13.88	77,465	16.19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09.22. 인출



#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Amount of Loan per Student who has a loan

## 지표 정의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을 의미한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1인당 대출 금액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학자금 대출 금액 총액}}{\text{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

2016년 1학기 현재 약 28만 명의 대학생들의 대출금 총액은 약 7천 811억 원 정도이다. 이 중에서 일반상환대출금이 1천 307억 원이고, 취업 후 상환대출금이 6천 504억 원이다. 학생 1인당 이용 금액을 산정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279만 원 정도인데 일반상환이 326만 원이고 취업 후 상환이 271만 원이다. 일반상환을 이용한 학생의 대출금 규모가 취업 후 상환을 이용한 학생보다 약 55만 원정도 더 많다.

기관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이용 학생은 1인당 약 278만 원을 대출한 것에 비해 전문대학생의 대출금은 1인당 약 283만 원으로 4년제 대학생 보다 많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일반상환대출이 1인당 329만 원, 취업 후 상환대출이 1인당 269만 원이고,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상환대출은 1인당 317만 원, 취업 후 상환대출은 1인당 277만 원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 <a href="http://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a> )	2008	2016	6개월

### Checkpoint

전년도와 비교하면, 2016년 1학기 학생 1인당 279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한 것에 비해 직전학기인 2015년 2학기에는 약 244만 원, 2015년 1학기에는 294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하였다. 1학기의 대출금 규모가 2학기에 비해 더 큰 것을 고려하여 1학기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013년 이래 학생 1인당 대출금은 감소추세이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2013년 1학기 315만 원이었던 취업 후 상환대출금은 2016년에는 271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일반상환대출금도 2013년 1학기 351만 원에서 2016년 326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용 학생 비율이 줄면서 전체 대출금 규모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대출금도 감소하였다.

표 3-13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 등록금 + 생활비 (2012~2016)

(단위: 명, 천 원, %)

학기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1인당 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2-2	62,227	190,163,740	261,904	721,481,366	324,131	911,645,106	3,056	2,755	2,813
2013-1	55,148	193,604,247	291,618	920,495,202	346,766	1,114,099,449	3,511	3,157	3,213
2013-2	51,535	164,337,640	294,962	847,039,323	346,497	1,011,376,963	3,189	2,872	2,919
2014-1	53,345	178,403,771	288,914	868,966,294	342,259	1,047,370,065	3,344	3,008	3,060
2014-2	47,363	141,480,606	292,403	757,249,389	339,766	898,729,995	2,987	2,590	2,645
2015-1	59,690	198,925,175	257,857	735,954,178	317,547	934,879,353	3,333	2,854	2,944
2015-2	33,140	96,726,567	261,541	624,743,989	294,681	721,470,556	2,919	2,389	2,448
2016-1	40,106	130,757,283	239,431	650,438,157	279,537	781,195,440	3,260	2,717	2,795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09.22. 인출

표 3-14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 대학 (2012~2016)

(단위: 명, 천 원, %)

학기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1인당 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2-2	53,787	167,131,233	176,883	494,897,414	230,670	662,028,647	3,107	2,798	2,870
2013-1	41,527	148,255,248	205,274	642,559,946	246,801	790,815,194	3,570	3,130	3,204
2013-2	40,018	131,513,385	206,969	602,576,745	246,987	734,090,130	3,286	2,911	2,972
2014-1	39,863	135,021,229	205,410	614,539,020	245,273	749,560,249	3,387	2,992	3,056
2014-2	36,626	112,818,178	206,110	544,826,514	242,736	657,644,692	3,080	2,643	2,709
2015-1	42,477	142,194,514	185,936	525,757,957	228,413	667,952,471	3,348	2,828	2,924
2015-2	25,756	77,425,123	186,091	452,617,154	211,847	530,042,277	3,006	2,432	2,502
2016-1	29,062	95,662,780	173,010	466,253,890	202,072	561,916,670	3,292	2,695	2,781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09.22. 인출

표 3-15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 전문대학 (2012~2016)

(단위: 명, 천 원, %)

학기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1인당 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2-2	8,440	23,032,507	85,021	226,583,952	93,461	249,616,459	2,729	2,665	2,671
2013-1	13,621	45,348,999	86,344	277,935,256	99,965	323,284,255	3,329	3,219	3,234
2013-2	11,517	32,824,255	87,993	244,462,578	99,510	277,286,833	2,850	2,778	2,787
2014-1	13,482	43,382,542	83,504	254,427,274	96,986	297,809,816	3,218	3,047	3,071
2014-2	10,737	28,662,428	86,293	212,422,875	97,030	241,085,303	2,670	2,462	2,485
2015-1	17,213	56,730,661	71,921	210,196,221	89,134	266,926,882	3,296	2,923	2,995
2015-2	7,384	19,301,444	75,450	172,126,835	82,834	191,428,279	2,614	2,281	2,311
2016-1	11,044	35,094,503	66,421	184,184,267	77,465	219,278,770	3,178	2,773	2,831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09.22. 인출

#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Amount of National Scholarship per Student

## 지표 정의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의미한다.

이들 지표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국가장학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책 차등 지원하는 유형(I 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유형(II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에는 셋째 아이 이상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자녀유형이 신설되었다.
- \* 국가장학금은 I 유형, II 유형 및 다자녀유형 모두 기초수급자 ~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저소득층 학생 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재학생 수로 대체 가능)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저소득층 학생들 중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의 비율이고, 국가장학금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국가장학금 수혜학생 1인당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말한다.
- \*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장학사정관제를 통해 국가장학금 II 유형 소득·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하다.

## 측정 산식

국가장학금 지원액

실 수혜인원

2015년 2학기 기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약 145만 명이였다. 유형별로는 I 유형이 84만 4천 명 정도이고, II 유형이 58만 3천 명 정도였다. 2014년 1학기부터 새롭게 추가된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수혜인원은 약 3만 명이였다. 지원된 장학금 총액은 약 1조 9천 752억 원이었으며, 1인당 장학금은 135만 원 정도였다.

유형별로 보면, I 유형의 지원규모는 약 1조 4천 113억 원, II 유형이 약 4천 963억 원이었으며, 1인당 지원금은 I 유형이 167만 원, II 유형이 85만 원, 다자녀 유형은 222만 원이였다. 국가장학금의 수혜율은 I 유형이 40.00%, II 유형이 27.66%였고, 전체 재학생의 69.11%가 수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학생(기초~3분위)의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 수가 총 923,167명(기초 60,798명, 1분위 331,988명, 2분위 316,209명, 3분위 214,172명)으로 전체 수혜자(1,458,852명) 중에서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지원받은 장학금은 기초 180만 원에서 3분위 140만 원 정도였다. 전체 평균 1인당 장학금이 135만 원에 비해 많았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	2016	6개월

## Checkpoint

2013년 1학기 이래 추이를 살펴보면, 지원 금액이 1조 2천 446억 원에서 2015년 2학기 현재 1조 9천 752억 원 규모로 증가 추세이다. 학생 1인당 장학금도 2013년 1학기 77만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 2학기 현재 135만 원에 이르렀다. 수혜학생 수, 지원 금액, 1인당 장학금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표 3-16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2015년 2학기)

(단위 : 명, 백만 원)

소득 구분	I 유형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장학금			II 유형			합계(인원 건수)		
	수혜인원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수혜인원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수혜인원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수혜인원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기초	42,931	93,859	2.19	1,805	4,060	2.25	16,062	11,472	0.71	60,798	109,391	1.80
1분위	210,005	460,486	2.19	8,630	19,664	2.28	113,353	79,206	0.70	331,988	559,356	1.68
2분위	199,993	438,736	2.19	7,480	16,972	2.27	108,736	77,257	0.71	316,209	532,965	1.69
3분위	120,563	207,001	1.72	3,955	8,492	2.15	89,654	83,444	0.93	214,172	298,937	1.40
4분위	92,806	119,302	1.29	2,823	6,050	2.14	71,926	65,264	0.91	167,555	190,616	1.14
5분위	42,346	35,118	0.83	1,364	2,936	2.15	34,134	34,096	1.00	77,844	72,150	0.93
6분위	43,056	25,590	0.59	1,363	2,938	2.16	35,200	34,966	0.99	79,619	63,494	0.80
7분위	40,358	13,578	0.34	1,339	2,869	2.14	32,992	32,930	1.00	74,689	49,377	0.66
8분위	52,386	17,631	0.34	1,683	3,611	2.15	42,492	41,712	0.98	96,561	62,954	0.65
9분위	-	-	-	-	-	-	17,030	15,384	0.90	17,030	15,384	0.90
10분위	-	-	-	-	-	-	22,387	20,590	0.92	22,387	20,590	0.92
합계	844,444	1,411,302	1.67	30,442	67,592	2.22	583,966	496,323	0.85	1,458,852	1,975,217	1.35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2016

표 3-17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2014~2015)

(단위: 명, 백만 원)

소득 구분	2014-1			2014-2			2015-1			2015-2		
	수혜인원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수혜인원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수혜인원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수혜인원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기초	63,863	108,635	1.70	61,402	108,068	1.76	62,939	114,927	1.83	60,798	109,391	1.80
1분위	317,352	476,662	1.50	342,952	539,553	1.57	289,348	472,048	1.63	331,988	559,356	1.68
2분위	293,358	432,832	1.48	278,446	422,480	1.52	261,358	424,739	1.63	316,209	532,965	1.69
3분위	200,810	229,894	1.14	187,067	221,837	1.19	167,036	208,306	1.25	214,172	298,937	1.40
4분위	153,195	133,109	0.87	135,684	125,339	0.92	128,980	123,535	0.96	167,555	190,616	1.14
5분위	133,021	82,195	0.62	121,745	82,639	0.68	112,188	76,335	0.68	77,844	72,150	0.93
6분위	121,756	59,848	0.49	117,430	66,364	0.57	104,769	56,869	0.54	79,619	63,494	0.80
7분위	131,485	47,026	0.36	110,581	47,864	0.43	112,666	43,576	0.39	74,689	49,377	0.66
8분위	144,210	51,238	0.36	130,581	55,925	0.43	129,553	49,468	0.38	96,561	62,954	0.65
9분위	2,260	2,739	1.21	4,122	6,433	1.56	4,482	4,019	0.90	17,030	15,384	0.90
10분위	2,390	3,030	1.27	6,369	10,173	1.60	5,817	5,380	0.92	22,387	20,590	0.92
전체	1,563,700	1,627,209	1.04	1,496,379	1,686,675	1.13	1,379,136	1,579,202	1.15	1,458,852	1,975,217	1.35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2016

표 3-18 국가장학금 수혜율 (2013~2015)

(단위: %)

유형구분	학기	2013-1	2013-2	2014-1	2014-2	2015-1	2015-2
I 유형(전체)		41.99	41.02	41.40	43.52	37.85	40.00
II 유형(전체)		27.19	27.34	24.86	24.99	20.72	27.66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	-	1.07	0.92	1.64	1.44
합계		69.18	68.36	67.33	69.43	60.21	69.11

주: 1) 재학생 수는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중 학자금 대출현황 항목의 재학생 수를 활용함.  
 2) 국가장학금 수혜율=국가장학금 수혜인원/저소득층 학생 수 X 100  
 3) 국가장학금 수혜율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 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재학생 수로 대체 가능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2016

#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The percentage of Students Selected by the equality of opportunity among Tertiary New Entrants

## 지표 정의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총 입학자 수 대비 기회균형 선발학생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들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원 내 또는 정원 외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고 있다. 이 지표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 고등교육 기회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고등교육 기회는 접근과 이수 여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임금 등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자체가 가지는 내재적 가치 또한 크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기회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고등교육 교육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크고, 고등교육기관 입시 경쟁 또한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소외계층의 고등교육기관 입학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고 더 어렵다.

## 측정 산식

$$\frac{\text{기회균형 선발학생 수(정원 내외)}}{\text{총 입학자 수}} \times 100$$

2016년 공시정보에 의하면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총 입학자 약 59만 명(590,604명) 중 소외계층 학생들은 약 4만 여명(43,211명)으로 그 비중이 7.32%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 입학자의 8.83%, 전문대학 입학자 중에서는 4.39%가 소외계층을 배려한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었다. 4년제 대학만을 대상으로 설립별 현황을 보면, 국공립대학이 9.9%, 사립대학이 8.5%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 보다 1.4%p 높고,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9.7%로 수도권(7.7%)보다 2.0%p 더 높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 <a href="http://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a> )	2008	2016	1년

## Checkpoint

지난 3년간 추이를 보면 2014년 6.18%에서 2015년 6.66%로, 2016년에는 7.32%로 증가하고 있다.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인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4년제 대학이 2015년 대비 1.00%p 증가한 것에 비해 전문대학은 0.02%p 감소하였다. 2014년 이래 4년제 대학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문대학은 감소추세를 보인다.

## 참고문헌

• 교육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2016

표 3-19 기회균형 선발 현황 (201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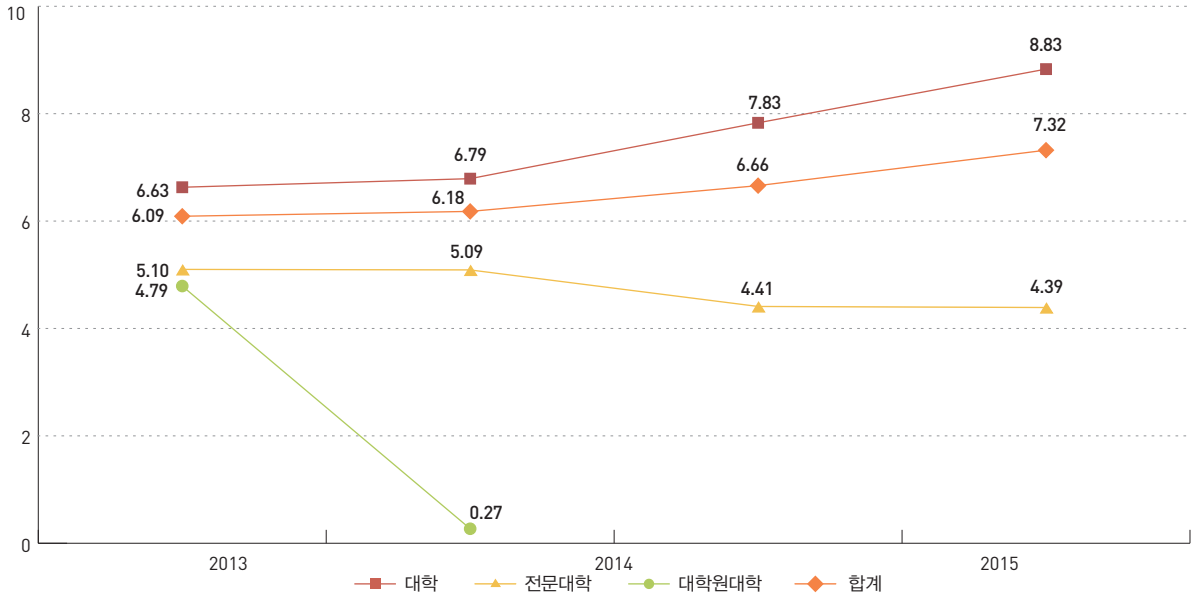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2016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B)	비율 (B/A*100)
대학	410,655	27,870	6.79	399,066	31,237	7.83	389,319	34,366	8.83
전문대학	216,227	11,014	5.09	207,941	9,163	4.41	201,285	8,845	4.39
대학원 대학	2,556	7	0.27	2015년 삭제항목					
합계	629,438	38,891	6.18	607,007	40,400	6.66	590,604	43,211	7.32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09.22. 인출

그림 3-30 기회균형 선발 비율 추이 (2013~2016)

(단위: %)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09.22. 인출

표 3-20 대학 기회균형 선발 현황 (2016)

(단위: 명, %)

구분	국공립			사립			계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B)	비율 (B/A*100)
수도권	32,103	2,163	6.7	132,445	10,501	7.9	164,548	12,664	7.7
비수도권	67,292	7,683	11.4	157,479	14,019	8.9	224,771	21,702	9.7
합계	99,395	9,846	9.9	289,924	24,520	8.5	389,319	34,366	8.8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09.22. 인출

# 고등교육 이수율

Tertiary Education Attainment

## 지표 정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고등교육 기회에의 접근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등교육의 이수이다. 한 나라의 고등교육 이수 정도는 연령대별 총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고등교육 이수율)로 파악할 수 있다.

OECD에서는 25세~64세 인구를 성인층으로, 그 중에서도 25세~34세 인구를 청년층, 55세~64세 인구를 장년층으로 구분한다. 고등교육은 단기고등교육(전문대학 과정)과 대학(학사,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과정으로 구분하며, 단기고등교육은 전문대학, 각종 학교·기술대학·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전공대학, 기능대학이 해당된다. 대학(학사)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기술대학·사내대학(대학과정), 전문대학·기능대학(학사학위 심화과정)이 포함되며, 대학원(석사)은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석사과정)이, 대학원(박사)은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박사과정)이 해당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령 고등교육 이수자 수}}{\text{해당 연령 전체 인구 수}} \times 100$$

2015년 한국 성인(25세~64세) 중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45%이다. 성인 인구 10명 중 4.5명 정도가 고등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35%에 비해 약 10%p 더 높다. 2007년 35%였던 고등교육 이수율은 매년 1~2%씩 증가해 2015년 45%까지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래 30년간 고등교육의 비약적인 양적성장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고등교육 유형별로 보면 대학(학사)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32%로 전문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단기고등교육 이수율(13%) 보다 약 19%p 더 높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역시 평균적으로 대학(학사)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16%로 단기 고등교육 이수율(8%) 보다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25세~64세 연령대(45%)에 비해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25세~34세 연령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로 24%p 높았다. OECD 평균의 경우, 25세~64세 이수율과 25세~34세 이수율이 각각 35%와 42%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최근 20~30년간 한국 고등교육의 양적성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25세~64세 연령대 고등교육 이수율은 45%로,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또한 2013년과 2015년 간 고등교육 이수율의 증가폭은 2%p로 OECD 평균 증가폭인 1%p 보다 크게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	2016	1년

### Checkpoint

2007년 OECD 평균과 비교하여 7%p 높았던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5년 OECD 평균보다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를 더욱 벌렸다. 25~34세 연령에 한정하게 되면 그 격차는 더욱 크다. 2007년 우리나라 25~34세 연령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 보다 22%p 높았으나, 2015년에는 격차가 27%p로 벌어졌다.

### 참고문헌

- 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 교육통계, 2015
- 한국교육개발원,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 2012
- OECD,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2016, 2016

표 3-21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2007~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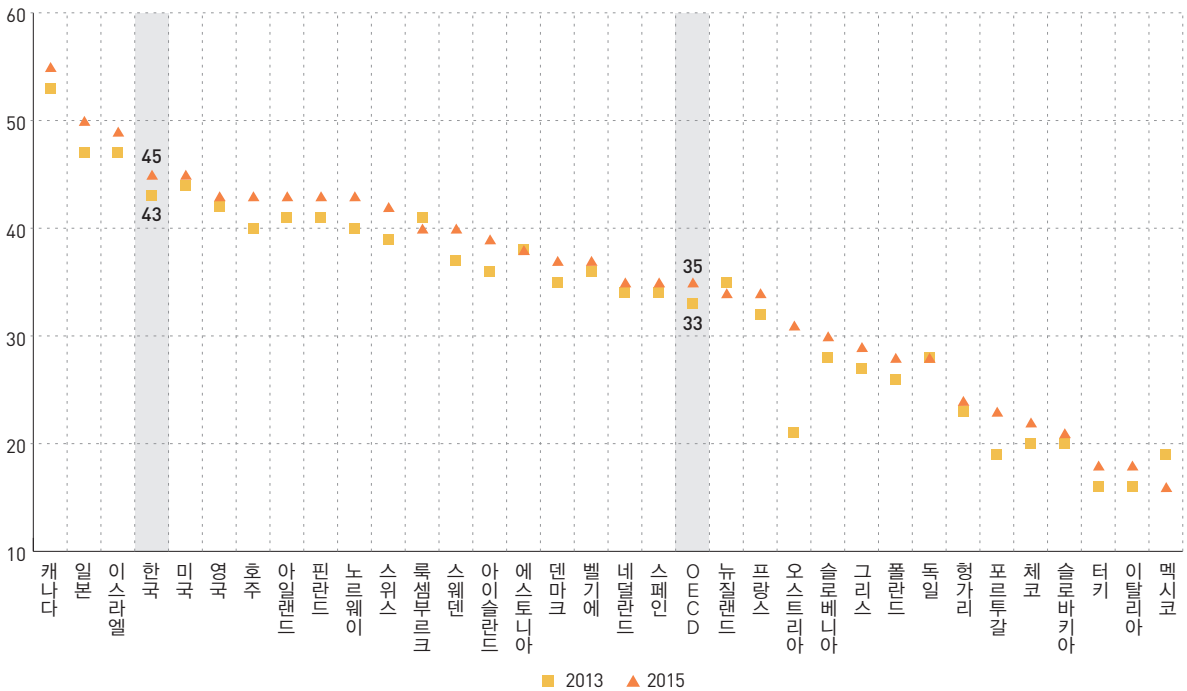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국가	단기고등교육(전문대학 과정)			대학(학사)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			고등교육 전체		
		25~64	25~34	55~64	25~64	25~34	55~64	25~64	25~34	55~64
2015	한국	13	22	4	32	47	15	45	69	18
	OECD 평균	8	8	7	16	21	11	35	42	26
2014	한국	13	23	3	31	45	14	45	68	17
	OECD 평균	8	7	8	15	21	10	33	41	25
2013	한국	14	25	3	30	42	12	43	67	15
	OECD 평균	10	11	9	25	32	18	33	40	25
2012	한국	13	26	2	28	40	11	42	66	14
	OECD 평균	10	10	9	24	30	17	32	39	24
2011	한국	13	25	2	28	39	11	40	64	13
	OECD 평균	10	10	8	23	30	17	32	39	24
2010	한국	12	26	2	28	39	11	40	65	13
	OECD 평균	10	11	8	22	28	16	31	38	23
2009	한국	12	25	1	27	38	12	39	63	13
	OECD 평균	10	11	8	21	28	16	30	37	22
2008	한국	11	23	1	26	35	11	37	58	12
	OECD 평균	9	10	7	21	27	15	28	35	20
2007	한국	10	22	1	24	34	10	35	56	11
	OECD 평균	9	10	7	20	26	14	28	34	20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EAG: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연도  
 2) OECD,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2015, 2015  
 3) 2014, 2015년도 대학(학사)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의 OECD 평균은 대학(학사) 과정에 해당함.

그림 3-31 국가별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2015)

(단위: %)



주: 1) 칠레는 2013년도, 프랑스는 2014년도 자료임.  
 2)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국가 순으로 내림차순정렬.  
 자료: OECD 교육지표(EAG: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6



#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An Overview of High School Student Educational Benefit in Single Parent Family : Provision and Expenditure

## 지표 정의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금액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의 고교생자녀 또는 청소년한 부모 중 고교생에게 지급된 교육비(수업료, 입학금)를 산출한 값이다.

## 측정 산식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 150%까 지인 가구에 고교생학비를 지원한 건수 및 지원 금액 (2015년 기준)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 130%)	1,366,362원	1,767,594원	2,168,827원	2,570,061원	2,971,293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1,576,572원	2,039,532원	2,502,493원	2,965,455원	3,428,415원

2015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입학금과 수업료 등 고교생학비 지급 건수와 지원 금액을 추출한 결과 모두 분기 말인 3, 6, 9, 12월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연간 서울이 가장 높은 비중(32,878건, 6,400백만 원)을 보였으며 경기(23,255건, 1,490백만 원), 경남(10,089건, 482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 지원 비중은 2015년 3월 기준 모자가정(지원 건수 72.2%, 지원 금액 73.8%), 부자가정(지원 건수 27.4%, 지원 금액 25.8%), 조손가정(지원 건수 0.4%, 지원 금액 0.3%) 순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한부모가족고교생학비지원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 Checkpoint

전년대비 2015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금액은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입학금, 수업료 등의 지불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는 고유 특성에 의해 3, 6, 9, 12월에 지원 금액 및 건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22 연도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연간 기준)

(단위: 건)

구분	'13년	'14년	'15년
계	135,710	145,915	126,453

표 3-23 월별·시도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2015)

(단위: 건)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서울	61	54	10,513	456	63	6,171	2,904	8	7,495	315	12	4,826	32,878
부산	5	2	2,176	45	16	1,935	6	11	1,420	3	11	631	6,261
대구	238	166	2,477	163	26	2,282	454	14	1,883	167	7	890	8,767
인천	-	-	78	-	-	3	-	-	54	-	-	-	135
광주	21	14	1,697	747	73	1,955	18	-	1,575	8	-	927	7,035
대전	11	11	2,045	35	23	877	10	-	1,349	10	-	716	5,087
울산	-	2	1,339	21	3	1,044	2	-	633	3	7	290	3,344
경기	59	45	7,753	1,214	260	3,669	1,246	23	5,217	512	15	3,242	23,255
강원	26	1	854	56	3	695	-	296	834	-	-	1,105	3,870
충북	3	-	1,288	-	2	1,004	273	2	713	51	-	401	3,737
충남	1	20	800	573	17	1,061	76	-	891	12	2	442	3,895
전북	7	1	2,136	24	97	1,608	9	17	1,415	38	2	476	5,830
전남	1	-	1,432	577	8	1,051	83	-	672	194	15	439	4,472
경북	-	2	1,202	2	3	942	27	-	896	272	-	658	4,004
경남	150	-	3,480	90	12	3,108	35	-	2,360	2	-	852	10,089
제주	-	-	1,263	-	-	962	-	-	874	-	-	695	3,794
계	583	318	40,533	4,003	606	28,367	5,143	371	28,281	1,587	71	16,590	126,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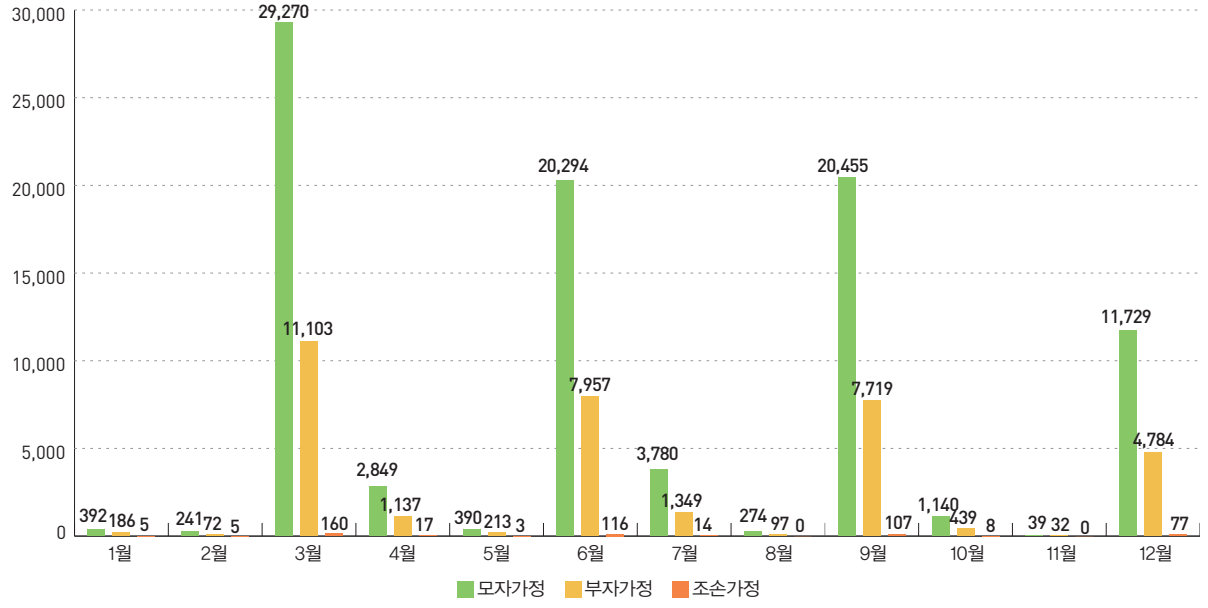
표 3-24 월별·시도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금액 (2015)

(단위: 천 원)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서울	14,066	11,649	1,721,675	66,344	8,133	1,292,179	630,963	1,330	1,572,898	63,774	1,986	1,015,206	6,400,202
부산	338	102	126,172	3,062	592	147,621	432	676	105,270	222	586	47,296	432,369
대구	9,284	6,626	154,252	7,733	1,386	172,277	34,866	883	141,951	12,609	443	68,255	610,567
인천	-	-	2,565	-	-	132	-	-	2,516	-	-	-	5,213
광주	1,235	751	91,663	37,349	3,117	132,729	995	-	105,647	448	-	62,263	436,198
대전	833	557	123,165	1,609	1,182	67,998	800	-	105,427	787	-	55,032	357,390
울산	-	138	65,347	980	142	67,830	161	-	41,859	356	346	20,846	198,006
경기	3,832	3,166	415,024	73,076	10,328	264,339	85,018	1,595	370,405	35,498	838	226,922	1,490,038
강원	1,159	41	26,565	1,682	421	28,246	-	12,146	33,463	-	-	45,650	149,374
충북	138	-	58,558	-	91	61,568	16,880	86	42,151	2,468	-	24,280	206,218
충남	143	272	23,587	17,995	663	42,592	2,874	-	36,180	435	95	17,463	142,299
전북	345	42	102,393	965	4,886	99,511	446	887	88,399	1,838	185	29,673	329,571
전남	58	-	48,174	21,282	169	47,912	3,294	-	28,942	9,431	675	20,313	180,250
경북	-	80	39,811	50	97	42,138	1,225	-	39,384	11,966	-	29,129	163,880
경남	7,069	-	136,719	3,343	570	164,770	1,217	-	124,179	117	-	44,257	482,241
제주	-	-	47,885	-	-	48,236	-	-	43,279	-	-	33,692	173,093
계	38,499	23,424	3,183,554	235,469	31,778	2,680,078	779,170	17,603	2,881,952	139,950	5,153	1,740,278	11,756,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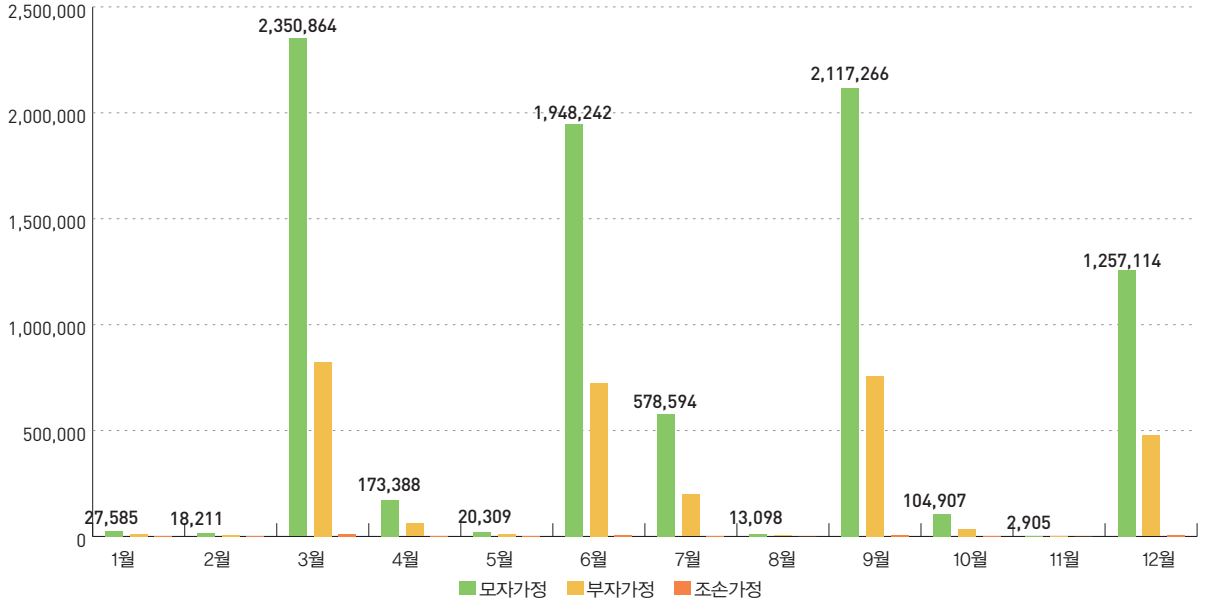
**그림 3-32** 월별 가족유형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2015)

(단위: 건)



**그림 3-33** 월별 · 가족유형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금액 (2015)

(단위: 천 원)



# 4

## 근로

- 01 경제활동참가율
- 02 고용률
- 03 실업률
- 04 실업급여 수급자 수
- 0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 06 총 근로시간
- 0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 08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 09 사회보험 가입률
- 10 산업재해율
- 11 저임금근로자 비율
- 12 시간급 최저임금
- 13 시간당 임금액
- 1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 15 자활사업 대상자 수
- 16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 17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통 계 로 보 는 사 회 보 장  
2016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안정성	실업급여 수급자 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일자리의 질	총 근로시간	
	중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사회보험 가입률	
	산업재해율	
근로빈곤	저임금근로자 비율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영향률
	시간당 임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자활	자활사업 대상자 수	자활사업 참여자 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 경제활동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지표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해 활용 가능한 노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유의사항 OECD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 기준을 15~64세로 적용했음에 유의해야 함.

[그림 4-1]과 같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초반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이에 비해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까지 49.2%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2013년 43.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2014년, 2015년에는 각각 전년에 비해 1.6%p, 0.9%p만큼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그림 4-2])을 살펴보면, 청년층에서는 미세하게나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반면,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눈에 띄게 저조해 그 격차가 35%p에 달한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4.1%에 비해 4.7%p 증가한 것이긴 하나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뚜렷한 M자형을 보이고 있다.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그림 4-3] 15~64세 기준, OECD 평균보다 5.1%p 낮음)이 무척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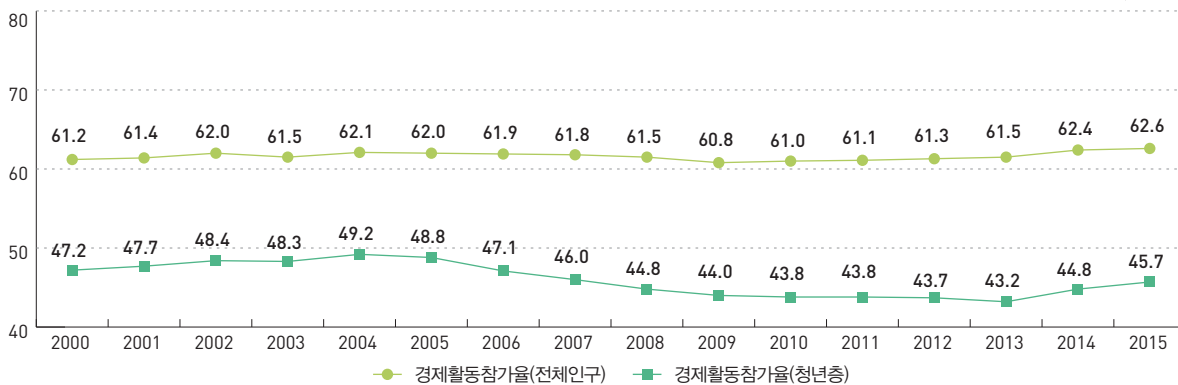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15	1개월

### Checkpoint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장기간 60% 초반대에 머물렀다. 최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높아졌으나 아직은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그림 4-1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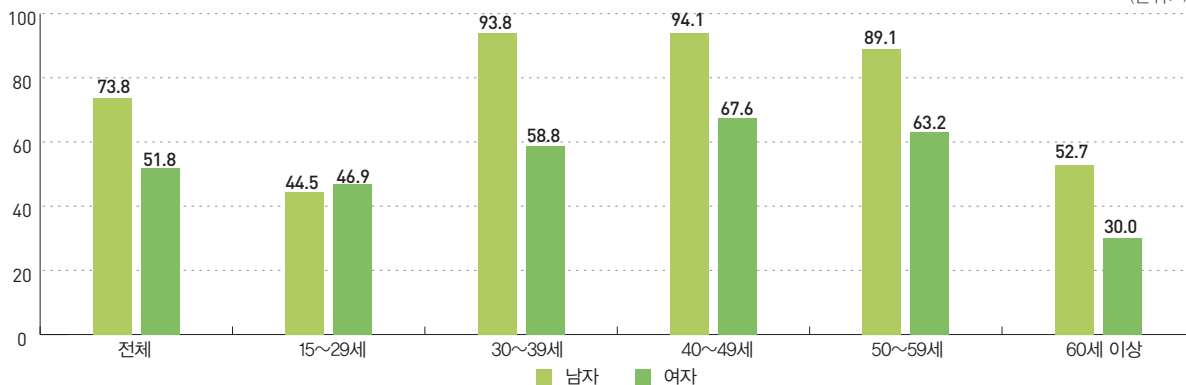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4-2 우리나라의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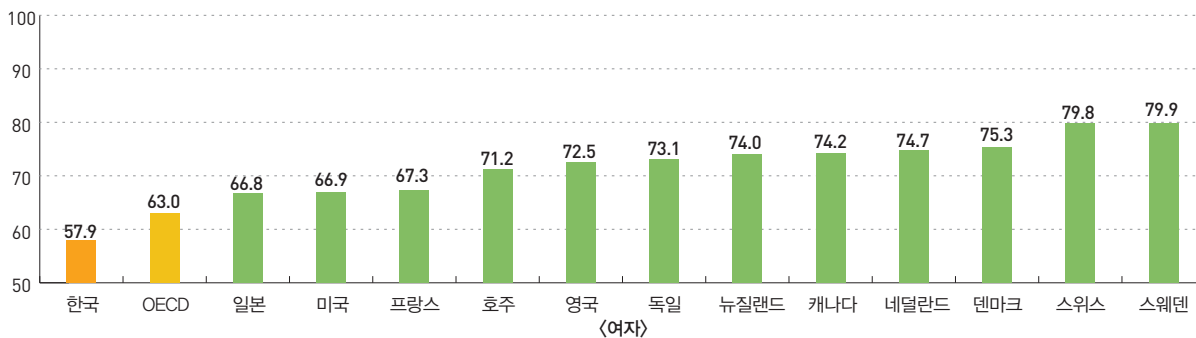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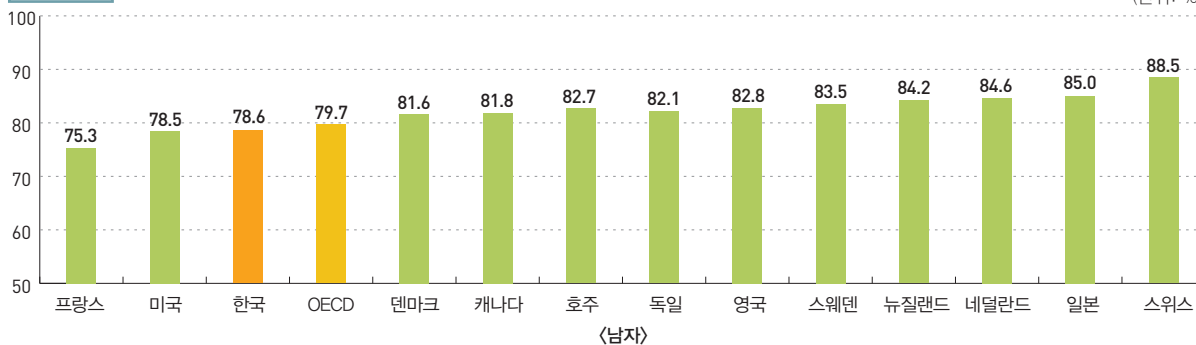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그림 4-3 OECD 주요국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15)

(단위: %)



주: 15세~64세 기준임.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6. 9. 12. 04:25 UTC (GMT))

## 고용률

Employment Rate

## 지표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취업자는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시휴직자”이며, 고용률은 조사대상 기간에 인구 대비 노동을 공급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률은 노동력의 활용 정도를 파악 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유의사항 OECD 보고 통계의 경우 연령 기준이 15~64세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 60%를 약간 밑도는 수치로 매우 안정적인 반면, 청년층(15세~29세)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해 2013년 39.7%로 무려 5.4%p 하락하였다. 최근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41.5%로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성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고용률은 75.7%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고용률은 55.7%로 OECD 평균보다 2.9%p 낮고, 주요국의 여성고용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15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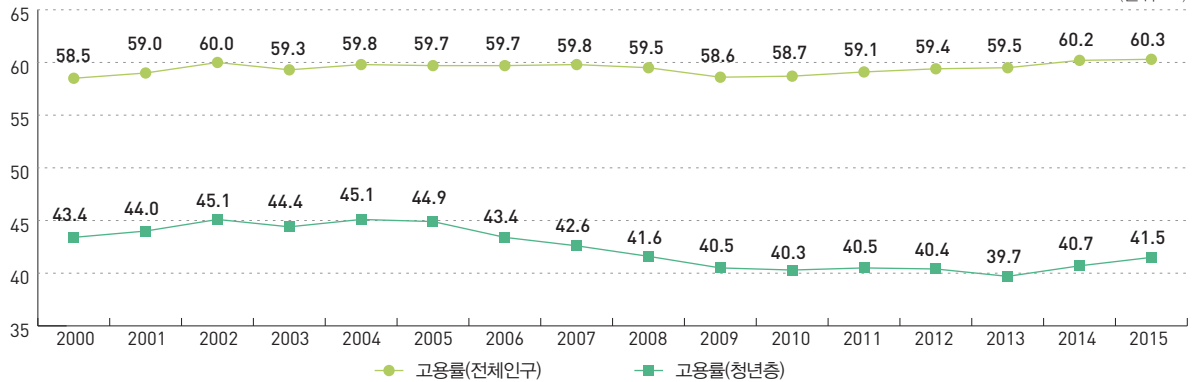
## Checkpoint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다. 여성고용률 제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고용률 제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우리나라의 고용률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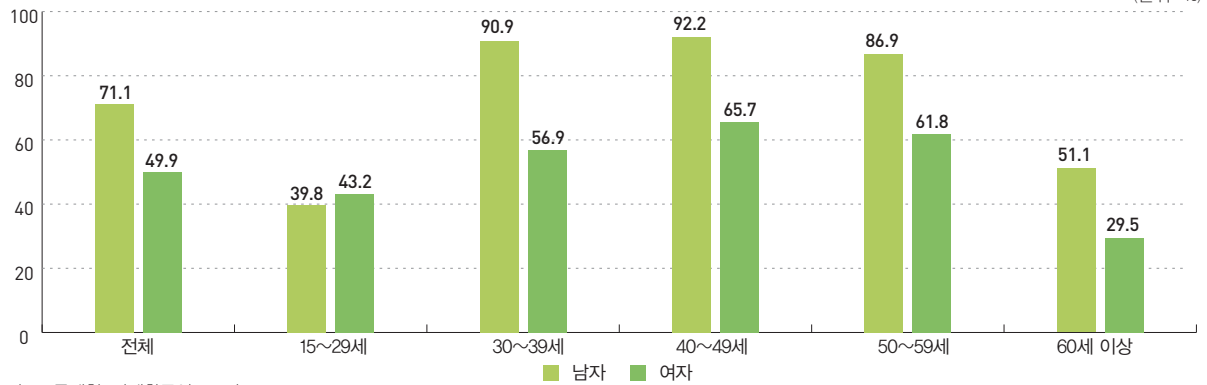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4-5 우리나라의 성별·연령계층별 고용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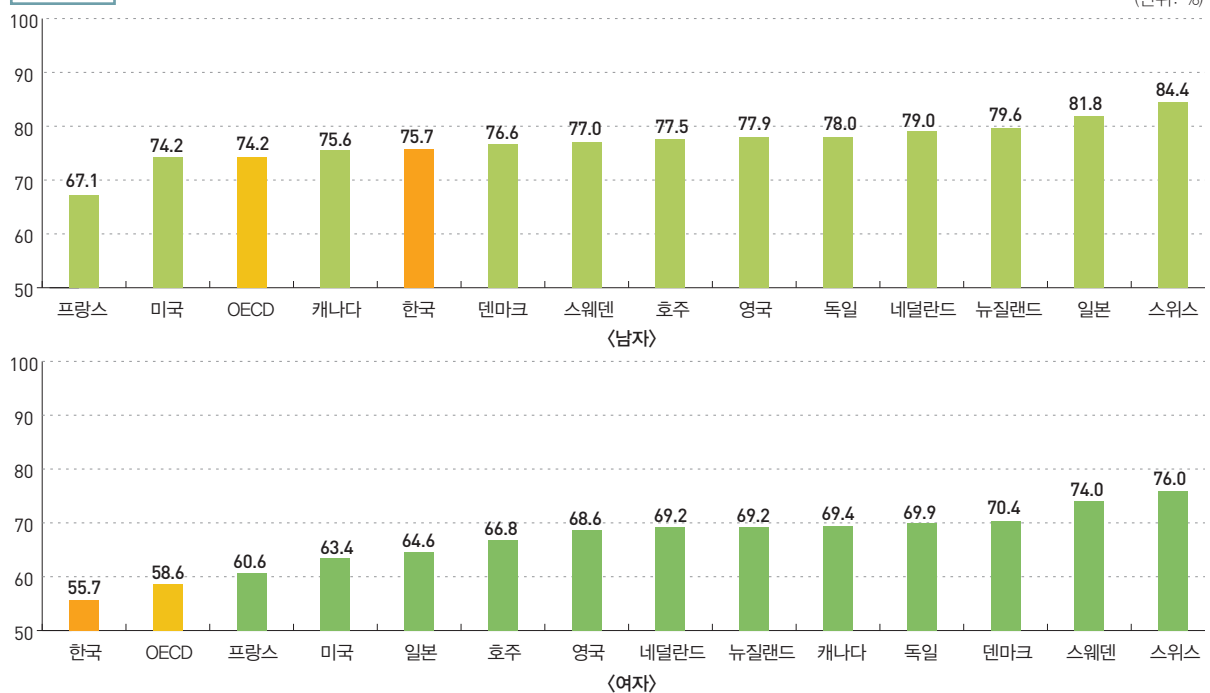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그림 4-6 OECD 주요국가 성별 고용률 (2015)

(단위: %)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6. 9. 12. 04:27 UTC (GMT))

# 실업률

Unemployment Rate

## 지표 정의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별도로 파악하는 '고용보조지표'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고용시장 상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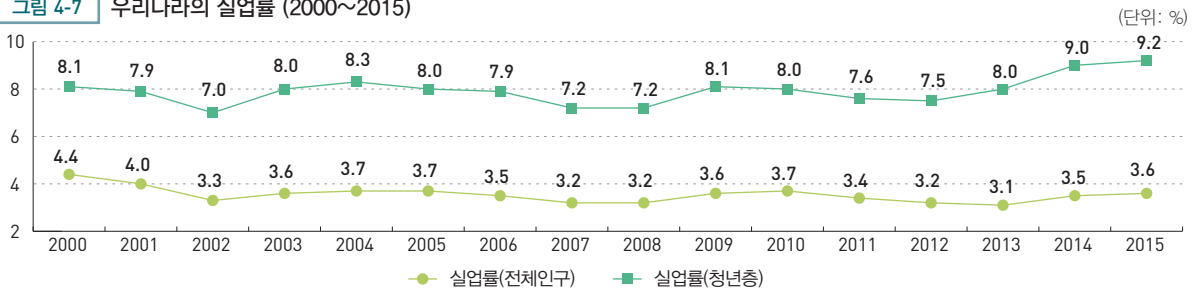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유의사항 OECD 보고 통계의 경우 연령 기준이 15~64세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벗어난 후에는 3% 중반을 중심으로 미세하게 등락을 거듭하며 안정적이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015년 현재 9.2%로 전체 실업률의 2.6배에 달하며, 2012년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 성별·연령계층별 실업률에서도 청년층의 독보적인 실업률이 확인되어,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실업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은 아니나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등지의 실업률이 각각 4.2%, 5.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주요 광역시의 실업률이 군지역을 포함하는 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4-7 우리나라의 실업률 (2000~20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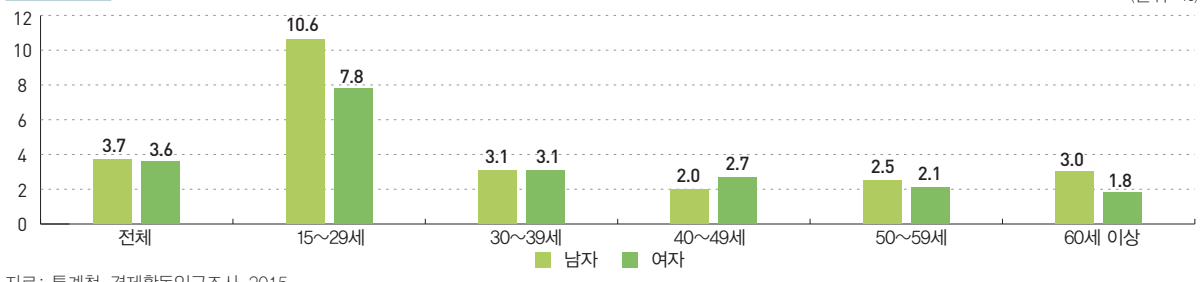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15	1개월

**Checkpoint**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증가한 청년층 실업률은 2012년 7.5%까지 감소한 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 9.2%라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림 4-8 우리나라의 성별·연령계층별 실업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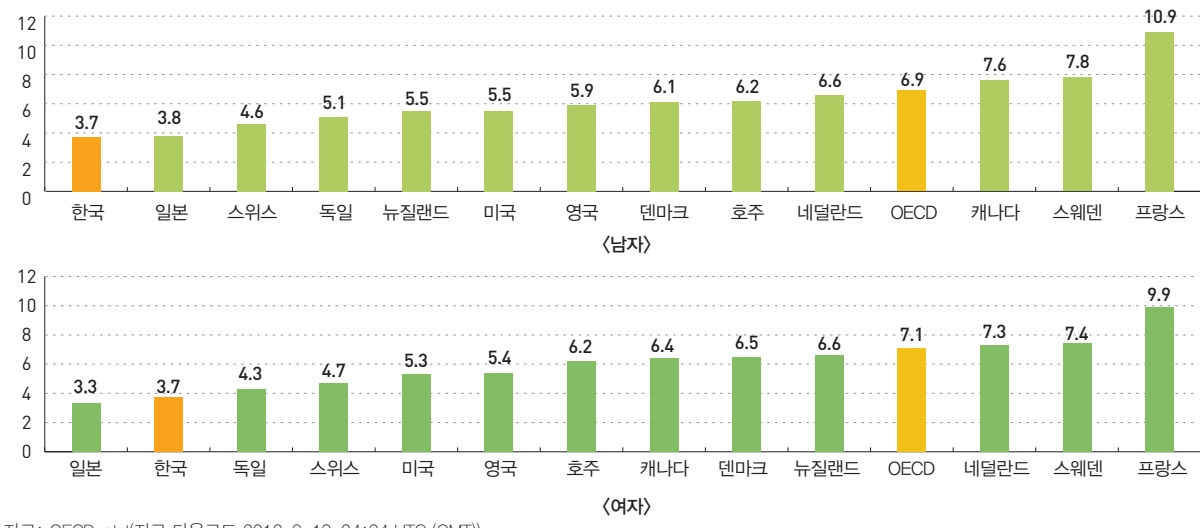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그림 4-9 OECD 주요국가 성별 실업률 (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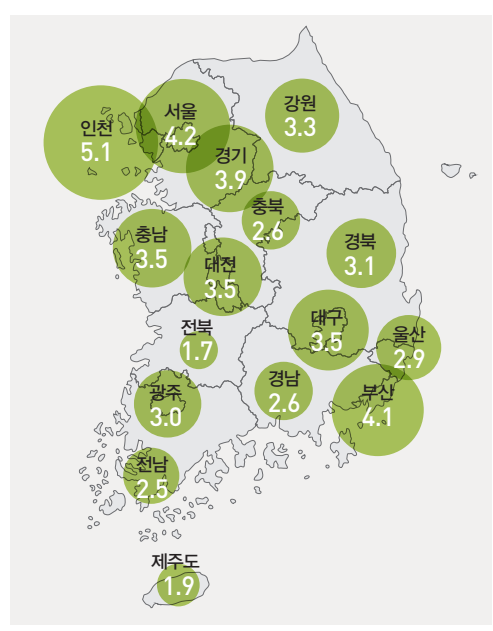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6. 9. 12, 04:24 UTC (GMT))

표 4-1 주요 시도별 실업률 (2007~2015)

(단위: %)

시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3.2	3.2	3.6	3.7	3.4	3.2	3.1	3.5	3.6
서울	4.0	3.9	4.5	4.7	4.6	4.2	4.0	4.5	4.2
부산	3.9	3.8	4.3	3.6	3.6	3.9	3.8	3.8	4.1
대구	3.6	3.6	4.3	4.0	3.7	3.3	3.3	3.9	3.5
인천	4.1	3.9	4.6	5.1	4.8	4.5	4.2	4.7	5.1
광주	3.9	3.8	3.8	3.5	3.1	2.7	2.9	2.8	3.0
대전	4.1	3.6	3.6	3.6	3.6	3.7	3.1	3.4	3.5
울산	2.6	3.5	4.2	3.6	2.8	2.6	2.1	2.7	2.9
경기	3.4	3.2	3.9	4.0	3.5	3.3	3.0	3.4	3.9
강원	1.8	1.7	2.0	2.6	2.2	2.5	2.4	3.1	3.3
충북	2.2	2.2	2.1	2.2	2.4	2.0	2.1	3.0	2.6
충남	2.2	2.4	3.0	2.9	2.3	2.3	2.8	3.4	3.5
전북	2.3	2.2	1.9	2.2	2.3	2.0	2.0	2.5	1.7
전남	1.7	2.0	1.6	2.1	2.0	1.6	2.1	2.9	2.5
경북	2.0	2.1	2.7	2.8	2.5	2.5	3.1	2.9	3.1
경남	2.4	2.2	3.0	2.8	2.2	1.9	2.1	2.5	2.6
제주	2.1	1.9	1.6	1.8	1.7	1.6	1.8	2.0	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실업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 지표 정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로, 수급자 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급여를 수급한 인원을 말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일용인 경우 90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수급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측정 산식

- 수급자 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급여를 수급한 인원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수급인원, 수급금액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급증한 후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세로 바뀌었다.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와 경기변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직사유별 수급자 수를 보면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남녀 모두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다음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전체 이직사유의 1/4 가까이 차지한다. 이는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임시직 형태의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여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14	1년

**Checkpoint** 2000년대 안정적인 실업률에 비해 큰 폭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를 반영한다. 그러나 2013년, 2014년 수급인원과 금액 증가는 최근의 경기침체의 결과물로 판단된다.

표 4-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수급인원, 수급금액 추이 (1997~2014)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수급인정자	증가율	수급인원	증가율	수급금액	증가율
1997	50,774		49,117		79	
1998	434,199	755.2%	411,686	738.2%	799	915.3%
1999	325,220	-25.1%	484,772	17.8%	936	17.1%
2000	258,727	-20.4%	332,692	-31.4%	471	-49.7%
2001	346,671	34.0%	428,156	28.7%	845	79.5%
2002	297,109	-14.3%	416,041	-2.8%	839	-0.7%
2003	375,561	26.4%	502,211	20.7%	1,030	22.8%
2004	467,730	24.5%	707,432	40.9%	1,448	40.6%
2005	562,524	20.3%	812,768	14.9%	1,752	21.0%
2006	609,691	8.4%	943,542	16.1%	2,074	18.4%
2007	685,024	12.4%	1,009,180	7.0%	2,434	17.4%
2008	835,140	21.9%	1,162,534	15.2%	2,865	17.7%
2009	1,068,389	27.9%	1,301,132	11.9%	4,116	43.7%
2010	973,026	-8.9%	1,238,665	-4.8%	3,687	-10.4%
2011	902,362	-7.3%	1,202,066	-3.0%	3,561	-3.4%
2012	898,054	-0.5%	1,187,247	-1.2%	3,677	3.2%
2013	919,118	2.3%	1,210,263	1.9%	3,884	5.6%
2014	971,068	5.7%	1,252,677	3.5%	4,156	7.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2014

표 4-3 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수 (2014)

(단위: 명)

	계	남	여
계	969,841	494,299	475,542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27,984	7,644	20,340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12,329	6,666	5,663
폐업, 도산	36,200	15,399	20,801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515,493	256,808	258,685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 사직	6,958	4,005	2,953
정년	22,063	15,749	6,314
계약 만료, 공사 종료	260,568	115,945	144,623
고용보험 비적용, 기타, 분류 불능	88,246	72,083	16,16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2014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Public Expenditure on Labor Market Policies

## 지표 정의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Policies; LMP)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재진입·이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OECD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으로 나누고 있다.

## 측정 산식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1) 직접일자리 창출 + 2) 직업능력개발 + 3) 고용서비스 + 4) 창업지원 + 5) 고용장려금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실업자에 대한 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정책에 투입한 금액은 2011년 8조 8,059억 원 에서 2015년 15조 2,089억 원 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입 증가는 대부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입 증가에서 찾을 수 있으며, 반면, 실업자에 대한 현금지원사업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은 2011년 3조 8,737억 원에서 소폭 등락을 보이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여 5조 4천억 원 에 이르렀다. 2015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규모는 직접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비용이 거의 엇비슷한 수준으로, 2015년에는 특히 창업지원 비용이 전년의 4배에 달한다.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정도와 구성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지출수준은 GDP의 0.75%로 여전히 매우 낮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노동시장 지출수준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으로 이들 국가는 노동시장정책에 GDP의 3% 가가이를 지출하고 있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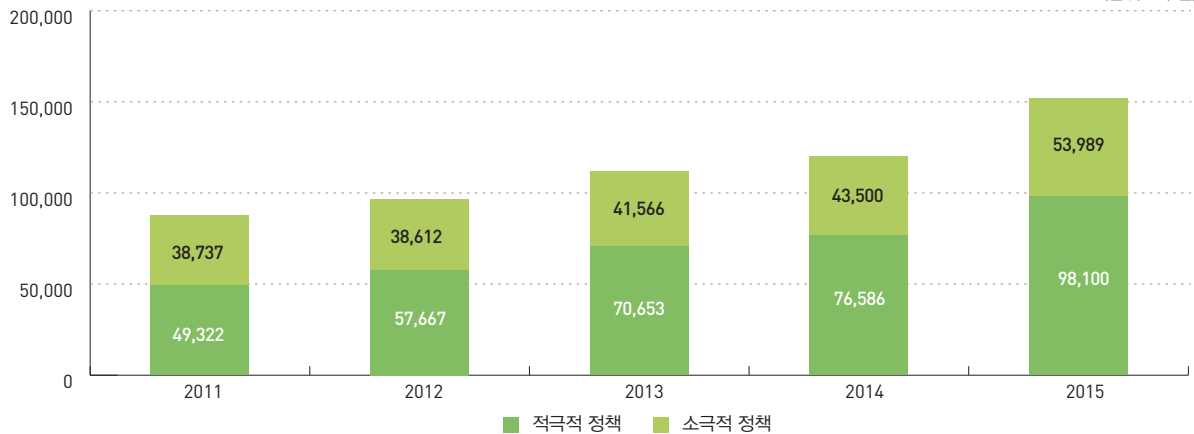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내부자료)	2010	2015	1년

### Checkpoint

2014년 대비 적극적 정책 지원 규모는 약 2조, 소극적 정책 규모는 약 1조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적극적 정책에 여전히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2015년에는 과거에 비해 소극적 정책 지원 규모가 크게 증액되었다.

그림 4-10 노동시장정책 투입비용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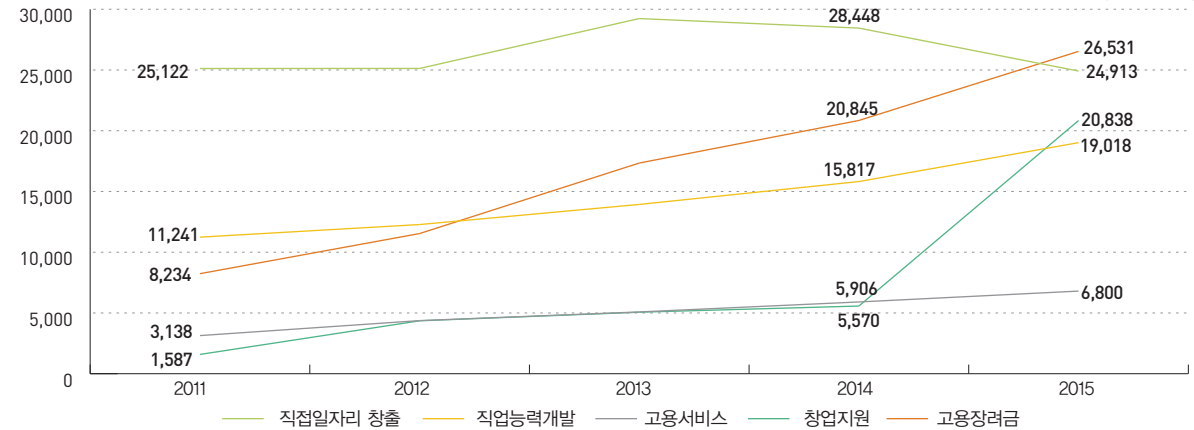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4-1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투입비용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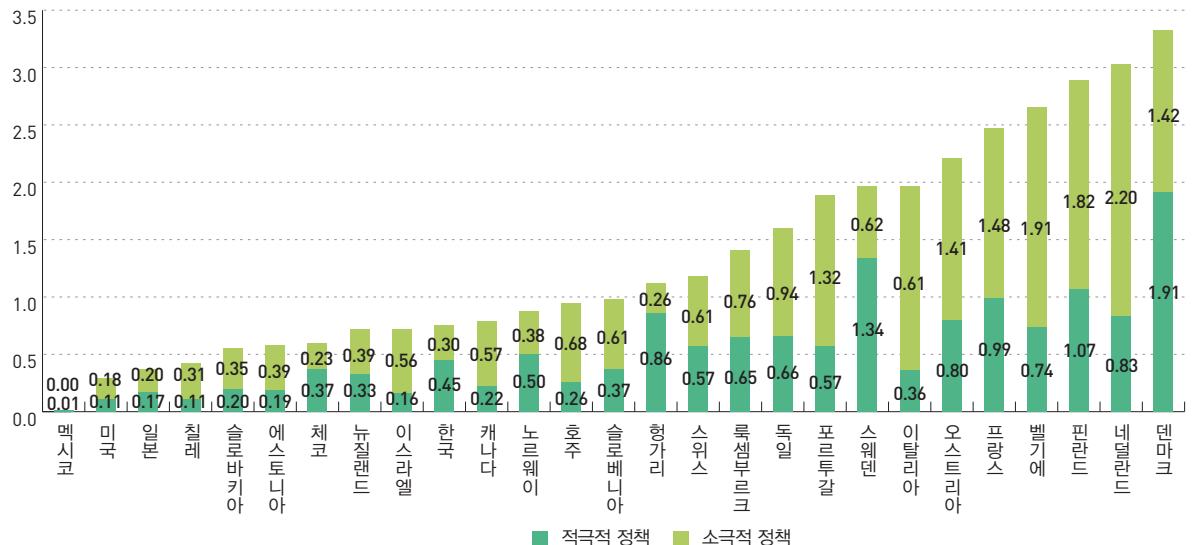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4-12 OECD 노동시장 지출수준(GDP 대비 비중) (2014)

(단위: %)



자료: OECD, staj(자료 다운로드 2016. 9. 23. 06:23 UTC (GMT))

# 총 근로시간

Total Hours Worked

## 지표 정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이 근로자의 삶과 일자리 만들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근로시간은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 측정 산식

-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을 보면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48시간이었지만, 이후 1989년 44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2003년에는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주당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은 산업 및 근로자 규모별로 경과규정을 두어 연차적으로 실시하였지만, 2011년 7월 1일 이후는 모든 산업의 5인 이상 근로자에게로 확대되었다. 실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 주당 12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로시간을 더한 시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14년 5인 이상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40.5시간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 다시 42.4시간으로 증가한다. 이를 사업체규모별·근로시간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인 경우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42.1시간으로 가장 짧고, 비정규직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25.9시간으로 매우 낮다. 이는 자세한 고용형태별 구분에 비추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제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43.8시간으로 매우 긴 편이다.

국제비교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의 2,246시간 다음으로 길다. 이는 OECD 평균의 1.2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54배에 달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15	1년

### Checkpoint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매우 길지만, 법정근로시간의 감소와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증가로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감소추세가 바뀌어, 앞으로의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일 및 단시간근로자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가 모두 자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시간의 추이를 조심스레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반근로자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위험작업근로자 6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의 연소근로자 7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시각 사이의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이때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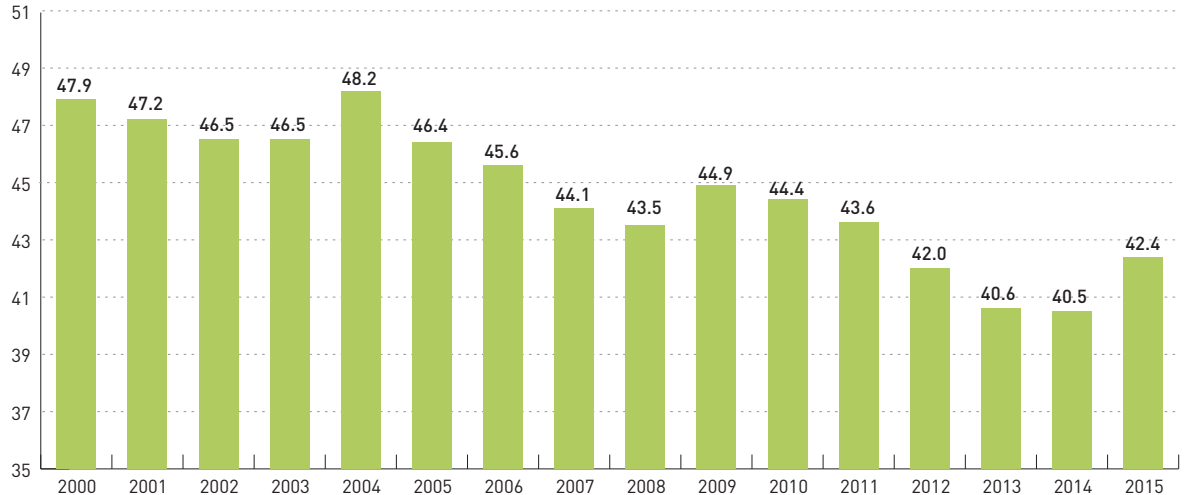
\*\* 초과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통합하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그림 4-13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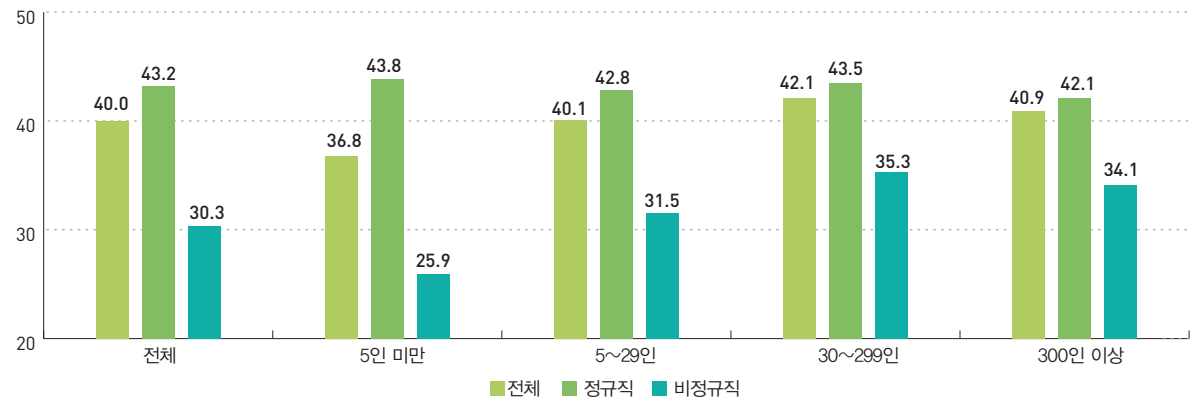
(단위: 시간)



주: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 × (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4-14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 주당 근로시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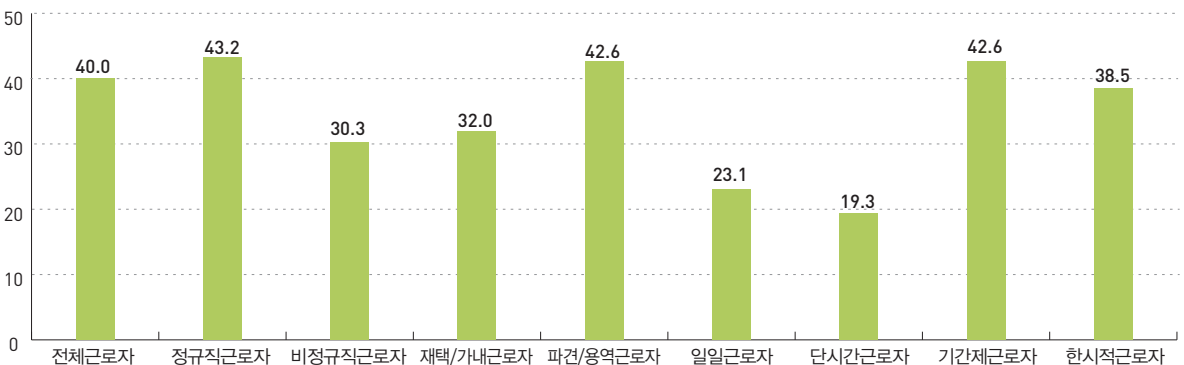
(단위: 시간)



주: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 × (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

그림 4-15 근로형태별 주당 근로시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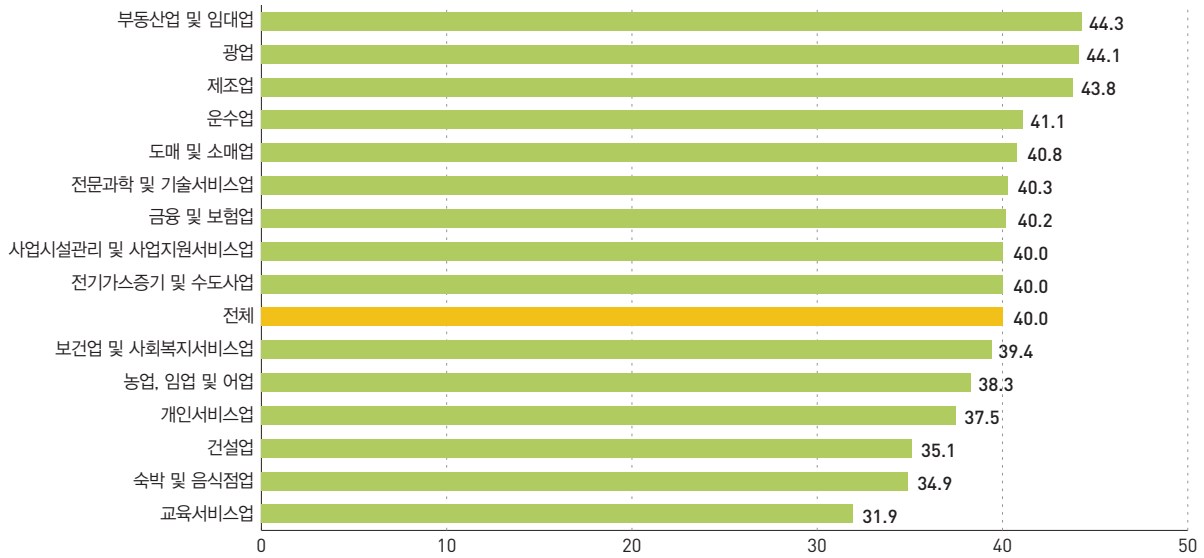
(단위: 시간)



주: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 × (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

그림 4-16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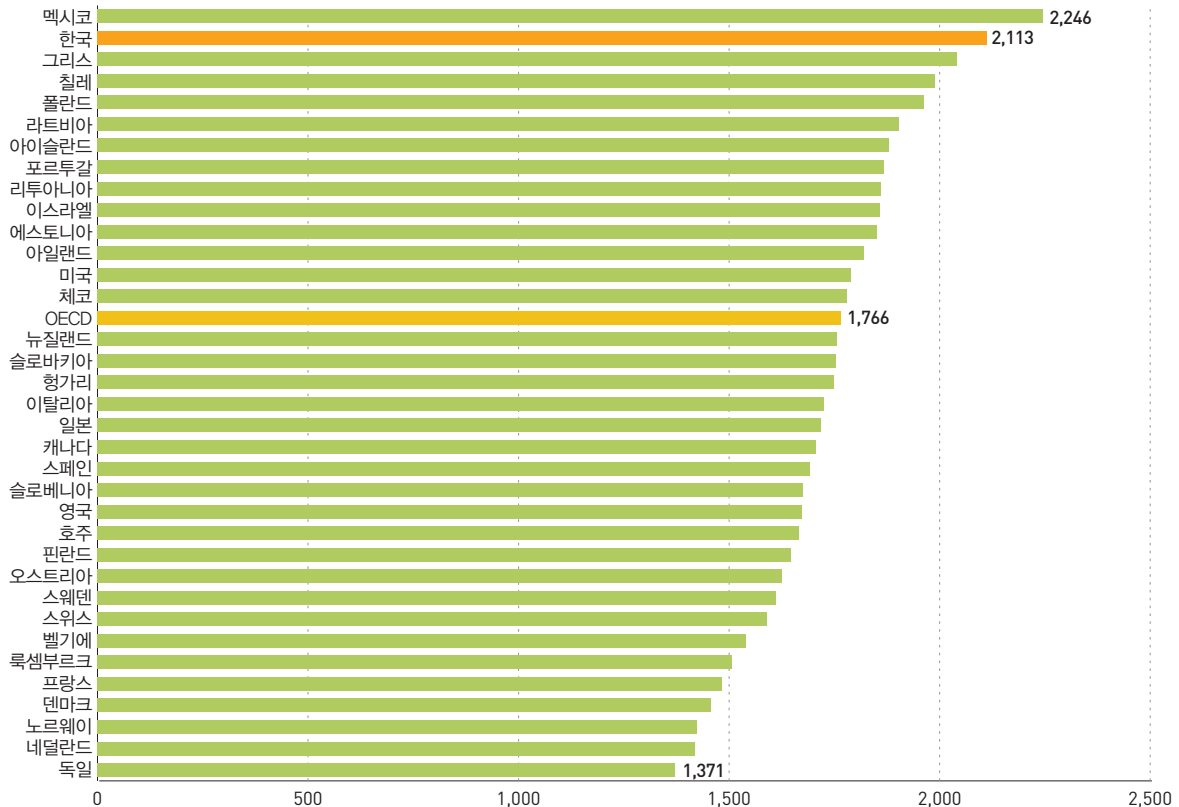
(단위: 시간)



주: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 × (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

그림 4-17 OECD 주요국가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2015)

(단위: 시간)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6. 9. 23. 13:49 UTC (GMT))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Employment by Status of Workers

## 지표 정의

종사상 지위란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 상태를 말하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와 한 사람 이상의 유급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고용주)로 구분되며,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한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고용계약을 미설정할 경우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며,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다.

종사상 지위는 고용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측정 산식

종사상 지위별 정의에 따른 취업자 수

자영업자의 수는 2000년대 중반 6백만 명을 넘어섰다가 2010년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5년 5,563천 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28.1%에서 2015년 21.4%로 감소 추세이다. 상용근로자의 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약 1,259만 명, 전체 취업자의 48.5%에 이르렀다. 반면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 증가하다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하고, 일용근로자의 비중도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다.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의 성별 비중을 보면 남녀 모두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지만, 여성의 경우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남성의 2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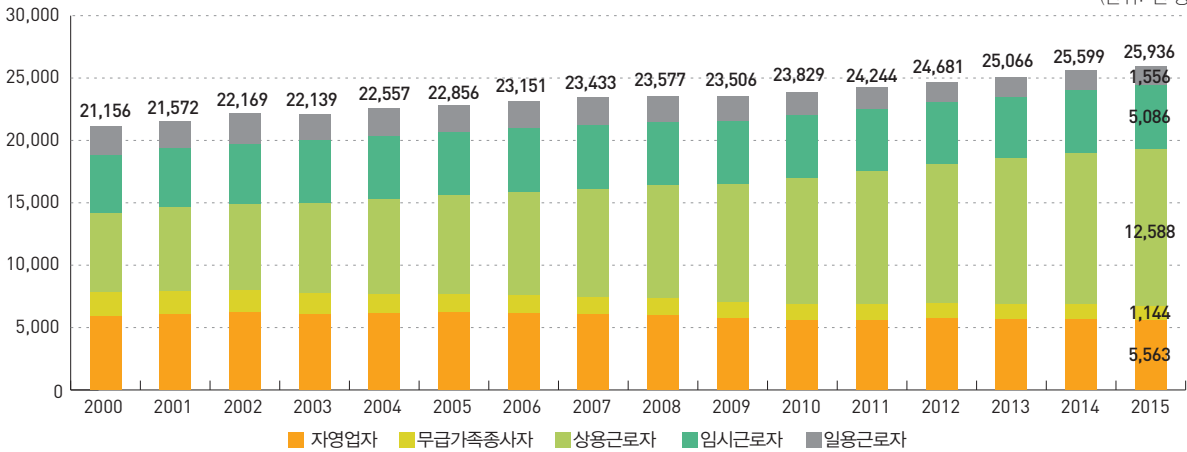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15	1개월

**Checkpoint**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최근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취업자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의 수와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이다.

그림 4-1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2000~2015)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4-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와 비율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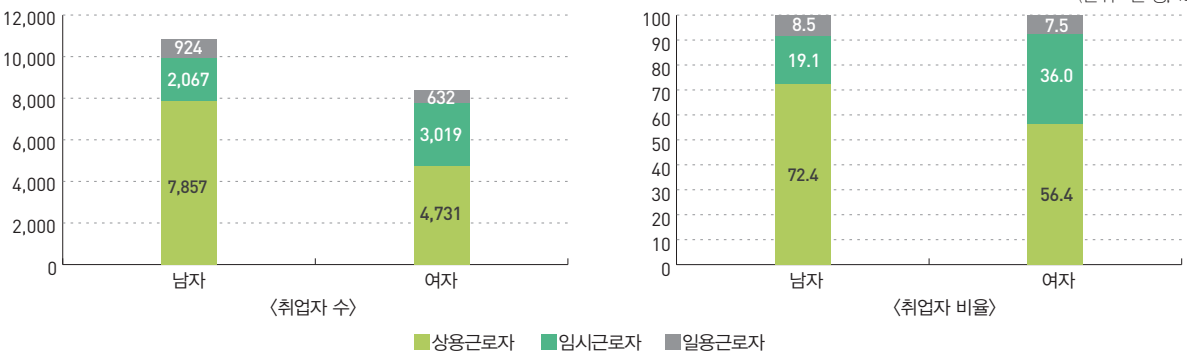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종사상 지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25,066	25,599	25,936
자영업자	5,864	6,051	6,190	6,043	6,110	6,172	6,135	6,049	5,970	5,711	5,592	5,594	5,718	5,651	5,652	5,563
무급가족종사자	1,931	1,863	1,797	1,694	1,553	1,499	1,466	1,413	1,401	1,341	1,266	1,254	1,251	1,221	1,205	1,144
상용근로자	6,395	6,714	6,862	7,269	7,625	7,917	8,204	8,620	9,007	9,390	10,086	10,661	11,097	11,713	12,156	12,588
임시근로자	4,608	4,726	4,886	5,004	5,082	5,056	5,143	5,172	5,079	5,101	5,068	4,990	4,988	4,892	5,032	5,086
일용근로자	2,357	2,218	2,433	2,130	2,188	2,212	2,204	2,178	2,121	1,963	1,817	1,746	1,627	1,590	1,555	1,556
취업자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영업자	27.7	28.1	27.9	27.3	27.1	27.0	26.5	25.8	25.3	24.3	23.5	23.1	23.2	22.5	22.1	21.4
무급가족종사자	9.1	8.6	8.1	7.7	6.9	6.6	6.3	6.0	5.9	5.7	5.3	5.2	5.1	4.9	4.7	4.4
상용근로자	30.2	31.1	31.0	32.8	33.8	34.6	35.4	36.8	38.2	39.9	42.3	44.0	45.0	46.7	47.5	48.5
임시근로자	21.8	21.9	22.0	22.6	22.5	22.1	22.2	22.1	21.5	21.7	21.3	20.6	20.2	19.5	19.7	19.6
일용근로자	11.1	10.3	11.0	9.6	9.7	9.7	9.5	9.3	9.0	8.4	7.6	7.2	6.6	6.3	6.1	6.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4-19 성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수와 비율 (2015)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Employment by Employment Type

## 지표 정의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포괄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정의된다. 한시적 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뉜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제공방식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재택, 가내), 일일(호출) 근로자로 분류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형태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측정 산식

근로형태별 정의에 따른 취업자 수

유의사항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통상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temporary workers」를 파악·수목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시간제 근로자 + 단기기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일일 근로자」 제공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는 제외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 37%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이후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을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비정규직 감소추세와 달리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 6.6%에서 2016년 11.6%로 남녀 모두에게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남자 정규근로자는 증가하고 남자 비정규근로자의 수는 거의 일정한 반면, 여자의 경우 정규·비정규근로자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전통적으로 임시직 비율이 높은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업종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OECD 국가에서 근로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를 포함하는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의 평균 비중은 11.4%이며, 2015년 한국은 22.3%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3	2016	반기 (매년 3월, 8월)

### Checkpoint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논의되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남녀 모두 시간제 근로형태가 증가하는 이유에는 시간선택제 촉진이라는 정책적 배경과 유연한 근로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반영되어 있다.

표 4-5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와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 (2003~2016)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근로자 수	임금근로자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4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19,233
	정규직	9,542	9,190	9,486	9,894	10,180	10,658	10,725	11,362	11,515	11,823	12,295	12,699	13,041	13,077
	비정규직	4,606	5,394	5,483	5,457	5,703	5,445	5,754	5,685	5,995	5,911	5,946	6,077	6,271	6,156
	- 한시적 근로자	3,013	3,597	3,615	3,626	3,546	3,288	3,507	3,281	3,442	3,403	3,431	3,508	3,638	3,577
	* 기간제	2,403	2,491	2,728	2,722	2,531	2,365	2,815	2,494	2,668	2,714	2,761	2,749	2,860	2,810
	- 시간제 근로	929	1,072	1,044	1,135	1,201	1,229	1,426	1,620	1,702	1,826	1,883	2,032	2,236	2,222
	- 비전형 근로	1,678	1,948	1,907	1,933	2,208	2,137	2,283	2,289	2,427	2,286	2,215	2,112	2,206	2,138
비율	임금근로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규직	67.4	63.0	63.4	64.5	64.1	66.2	65.1	66.6	65.8	66.7	67.4	67.6	67.5	68
	비정규직	32.6	37.0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32.5	32.0
	- 한시적 근로자	21.3	24.7	24.2	23.6	22.3	20.4	21.3	19.2	19.7	19.2	18.8	18.7	18.8	18.6
	* 기간제	17.0	17.1	18.2	17.7	15.9	14.7	17.1	14.6	15.2	15.3	15.1	14.6	14.8	14.6
	- 시간제 근로	6.6	7.4	7.0	7.4	7.6	7.6	8.7	9.5	9.7	10.3	10.3	10.8	11.6	11.6
	- 비전형 근로	11.9	13.4	12.7	12.6	13.9	13.3	13.9	13.4	13.9	12.9	12.1	11.2	11.4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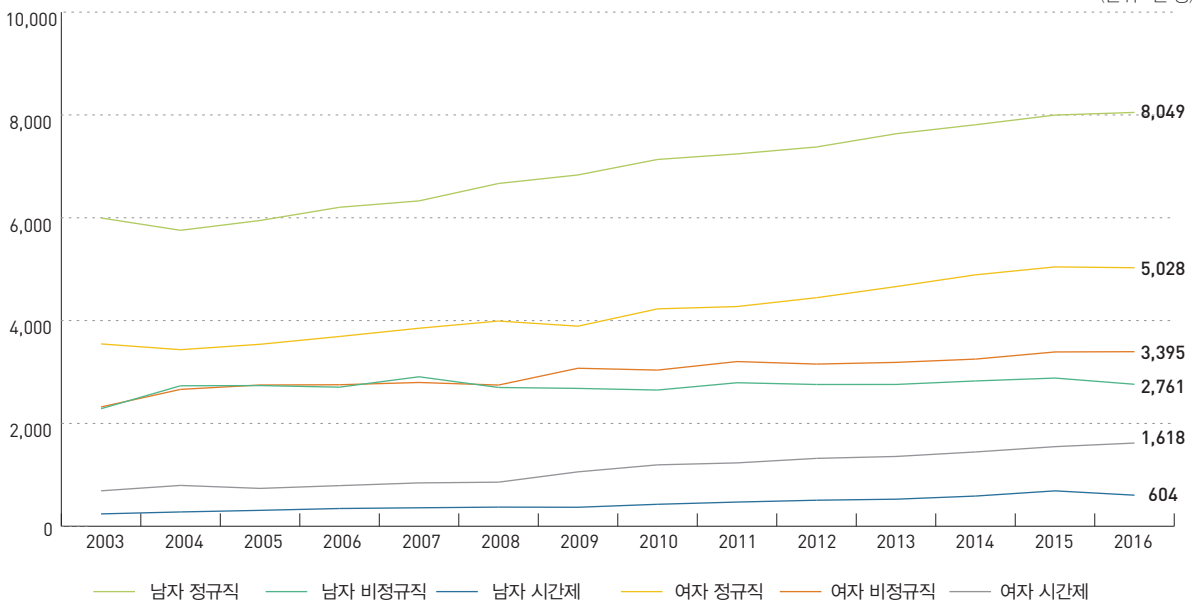
주: 1) 매년 8월 기준임(2016년은 3월 기준).

2)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이거나 시간제 근로자이거나 비전형 근로자이므로 세 유형의 합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과 일치하지는 않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그림 4-20 성별 근로형태별 취업자의 수 (2003~2016)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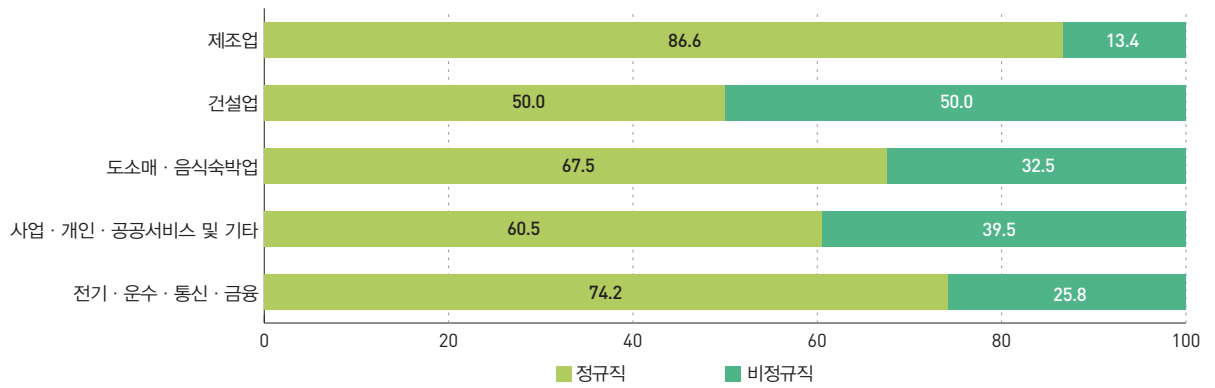


주: 매년 8월 기준임(2016년은 3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그림 4-21 산업별 근로형태별 취업자의 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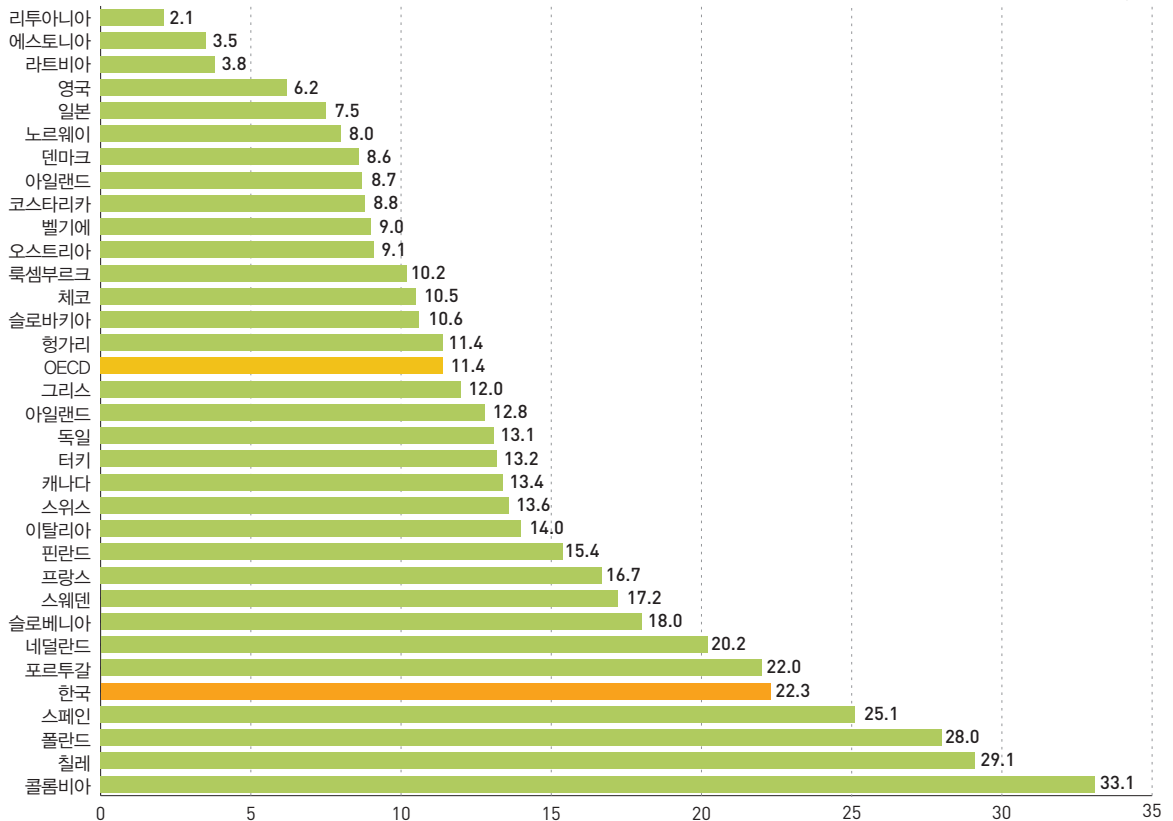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 3

그림 4-22 OECD 주요국가 임시직의 비율 (2015)

(단위: %)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6. 9. 25. 08:12 UTC (GMT))

# 사회보험 가입률

Social Insurance Coverage

## 지표 정의

각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다. 사회보험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노령에 대비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건강보험은 질병발생 시,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 시를 대비해 각각 1977년, 1995년, 1964년 시행되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은퇴, 실업,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므로 사회보험 가입률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는 지 보여준다.

## 측정 산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frac{\text{직장가입자 수}}{\text{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 단, 고용보험의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frac{\text{각 보험가입 근로자 수}}{\text{각 보험가입 대상 근로자 수}} \times 1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사업체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5~299인 사업장 근로자도 90%를 상회하는 높은 가입률을 보여준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1/3이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 질병발생, 노후생활 시 사회적 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보여주는 고용형태별 가입률 또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 정규직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80%를 상회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6.9%, 건강보험 43.8%, 고용보험 42.5%의 낮은 가입률을 보인다. 특히 시간제의 가입률은 10%대에 머물고, 비전형 근로자 또한 70~80%가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3	2016	반기 (매년 3월, 8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15	1년

**Checkpoint** 두루누리사업과 같이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증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표 4-6 사업체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5)

(단위: %)

고용형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	89.3	88.4	88.7	97.6
5인 미만	69.4	68.9	69.5	90.7
5~29인	93.5	90.7	90.8	99.4
30~299인	97.4	97.2	97.0	99.8
300인 미만	88.2	86.8	87.1	97.4
300인 이상	96.8	99.7	99.0	99.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

표 4-7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5)

(단위: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계	67.4	71.5	68.6
정규직	82.0	84.8	82.4
비정규직	36.9	43.8	42.5
한시적	54.4	64.1	60.4
기간제	58.2	69.4	64.6
비기간제	40.4	44.6	45.4
시간제	13.3	17.5	18.8
비전형	21.0	31.1	29.0

주: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는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이 없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08

# 산업재해율

Industrial Accident Rate

## 지표 정의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재해자 수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 수를 말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재해자 수}}{\text{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times 100$$

2015년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 정도를 살펴보면 광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광업의 경우 재해율은 12.65%로 평균 재해율 0.5%의 약 25배이며, 사망만인율은 359‰로 평균 사망만인율 1.01‰의 355배이다.

다음은 사업체규모별 재해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1.14%로 평균 재해율의 2.3배에 달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1977	2015	분기

### Checkpoint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그만큼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에 있음을 뜻한다. 사회보험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충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표 4-8 산업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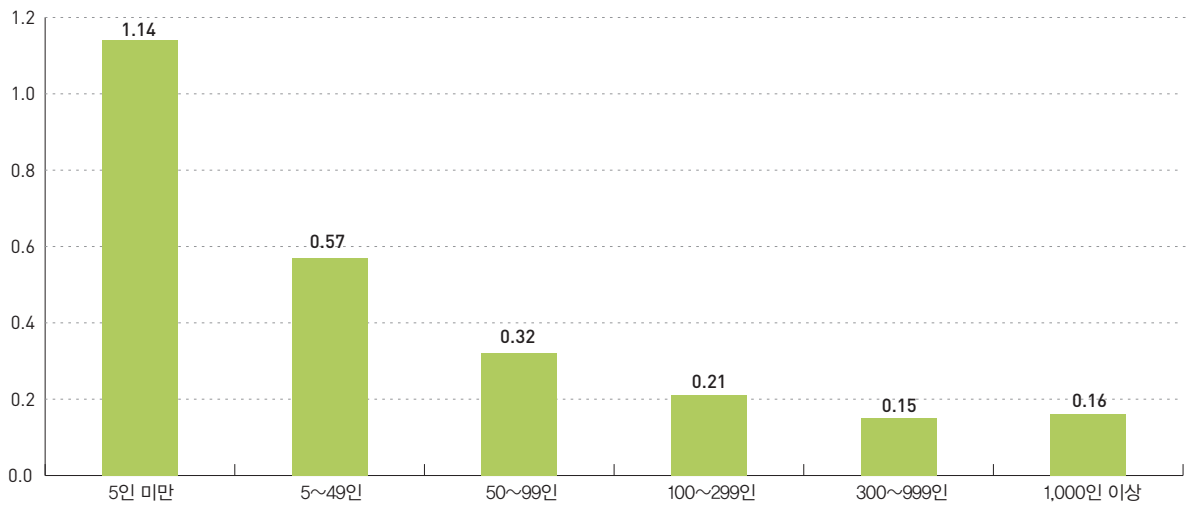
(단위: 명, %, ‰)

구분	근로자 수(명)	재해자 수(명)	사망자 수(명)	재해율(%)	사망만인율(‰)
전체	17,968,931	90,129	1,810	0.50	1.01
광업	11,615	1,469	417	12.65	359.02
제조업	4,161,536	27,011	428	0.65	1.03
건설업	3,358,813	25,132	493	0.75	1.47
전기·가스·수도업	64,244	98	6	0.15	0.93
운수창고·통신업	805,403	4,059	131	0.50	1.63
기타 산업	9,567,320	32,360	335	0.34	0.35

주: 산재사망만인율은 (산재 사망자 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100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그림 4-23 사업체규모별 재해율 (2015)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저임금근로자 비율

Low Pay Incidence

## 지표 정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임금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임금이 임금 중위값의 2/3보다 적은 임금근로자의 수}}{\text{전체 임금근로자의 수}} \times 100$$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23.7%가 저임금근로자다. OECD 국가 비교가 말해주듯이, 2014년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아일랜드와 미국에 이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저임금근로자의 성별 비중을 보면 2014년 여성근로자 가운데 37.8%가 저임금근로자로, 같은 시기 남성근로자 대비 저임금근로자 비중(15.4%)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여성근로자가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사업지원, 개인서비스업과 같은 저임금 산업, 저임금 직종(서비스,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임시직이나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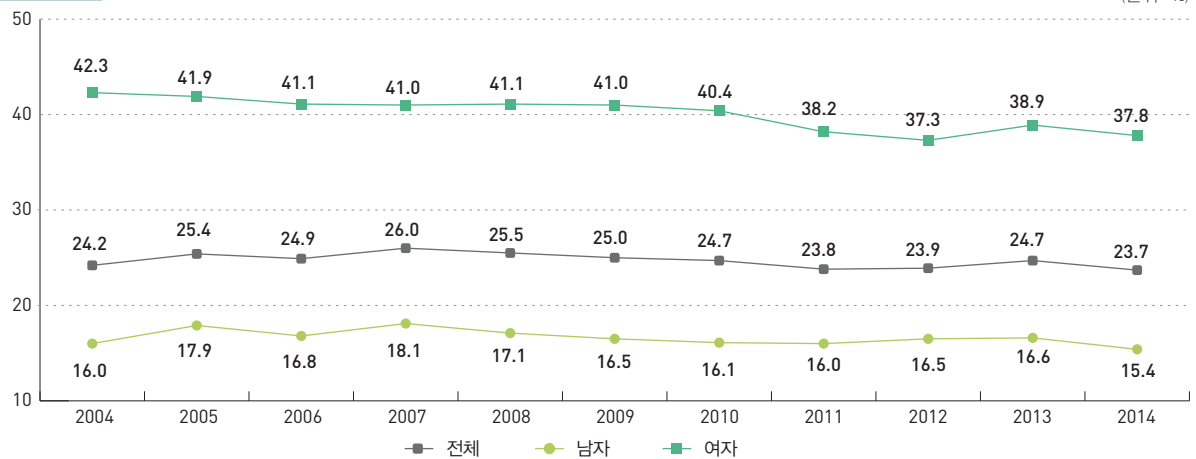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Employment Outlook	-	2014	1년

**Checkpoint** 2014년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23.7%가 저임금근로자로 그 비중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저임금근로자가 많다는 점은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림 4-24 우리나라의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4~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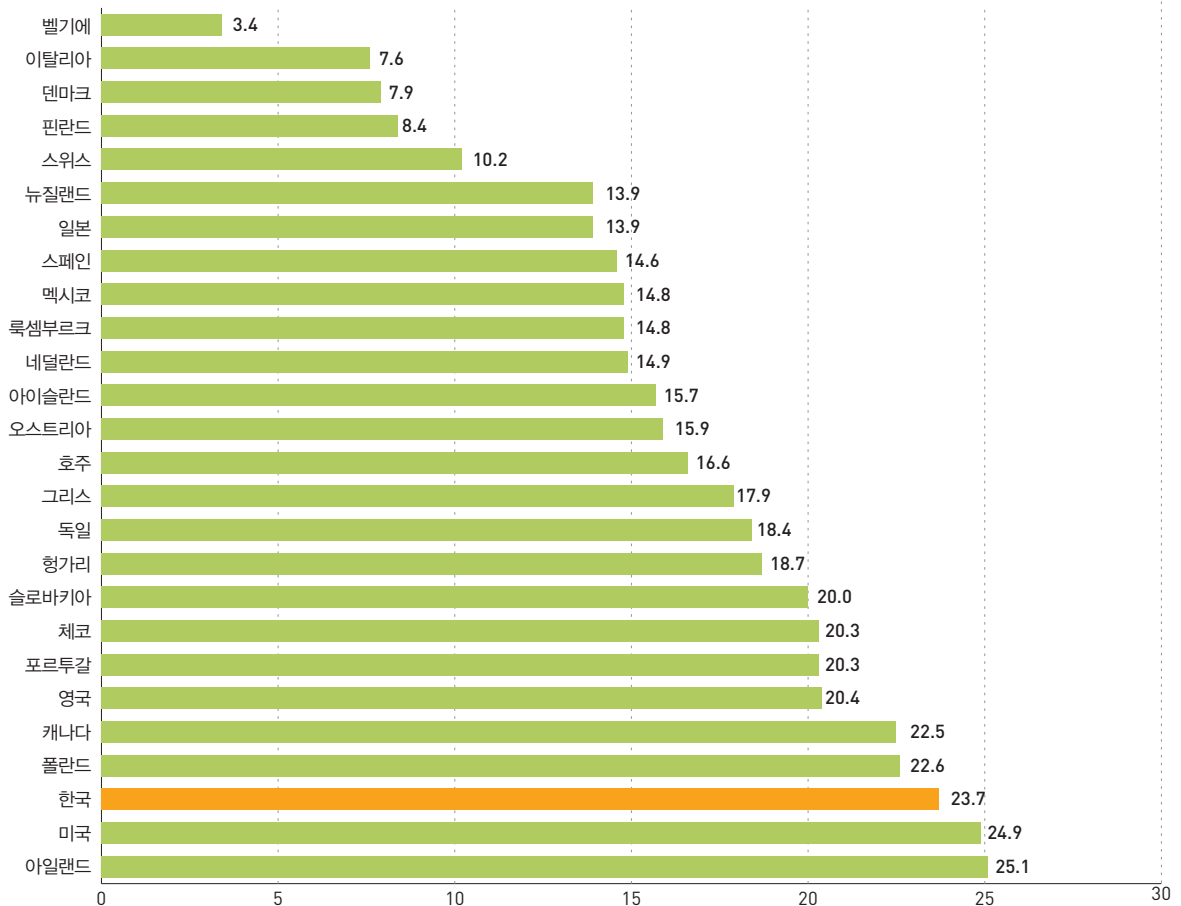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6. 9. 25. 08:09 UTC (GMT))

그림 4-25 OECD 주요국가 저임금근로자 비율 (2014)

(단위: %)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6. 9. 25. 08:07 UTC (GMT))

# 시간급 최저임금

Hourly Minimum Wage

## 지표 정의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보면 시행 초년도인 1988년도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1990년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1년 이후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실질 최저임금은 (명목)최저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준다.

## 측정 산식

최저임금액: 시간급, 일급(시간급 × 8)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명목임금 기준으로 꾸준히 인상되었다. 그러나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수준을 2010년을 기준으로 실질화할 경우, 최저임금수준은 전체적으로는 상승했지만 1998년과 2010년도에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인상률의 추이는 경제성장률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경제성장률과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최저임금수준은 단지 경제적 요인만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매력 평가지수를 이용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15년 현재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수준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은 시간당 5.4달러로서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 평균소득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은 0.36으로 미국, 일본 등에 이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낮고, 중위소득 대비 비율도 0.46으로 낮은 편이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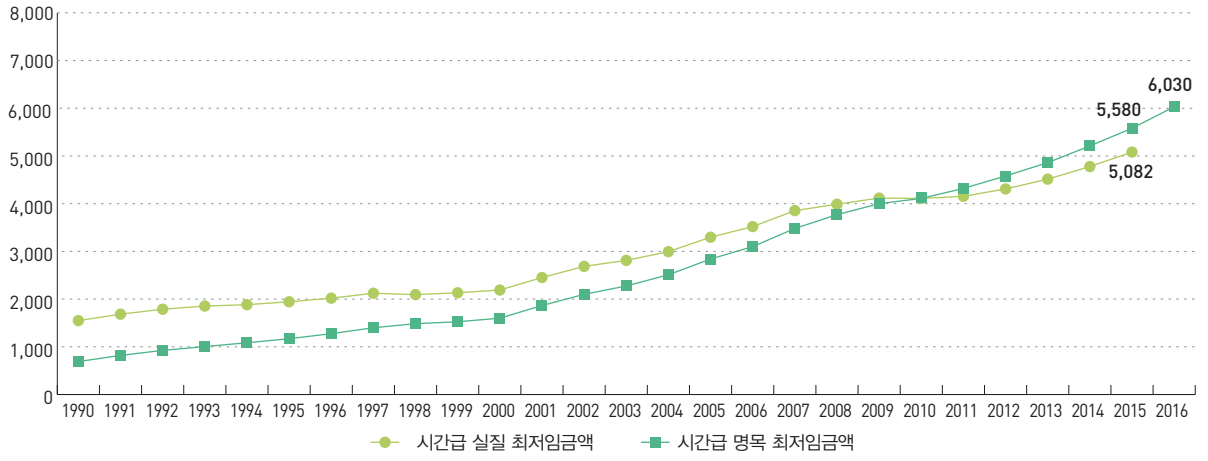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내부자료)	1989	2016	1년

### Checkpoint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1990년 690원에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16년에는 6,030원으로 2015년보다 450원 인상되었다. 실질 최저임금액도 꾸준히 인상되어 많은 임금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임금이나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2014년 기준 0.36, 0.46으로 OECD 국가 중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림 4-26 시간급 명목 최저임금액과 실질 최저임금액 (199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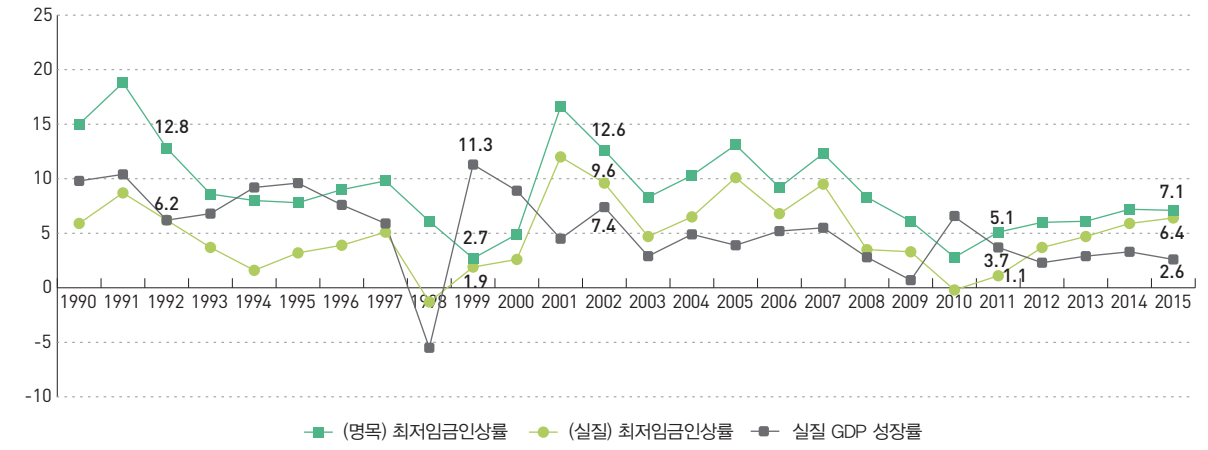
(단위: 원)



주: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실질화, 2016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확정할 수 없음.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4-27 실질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인상률 (199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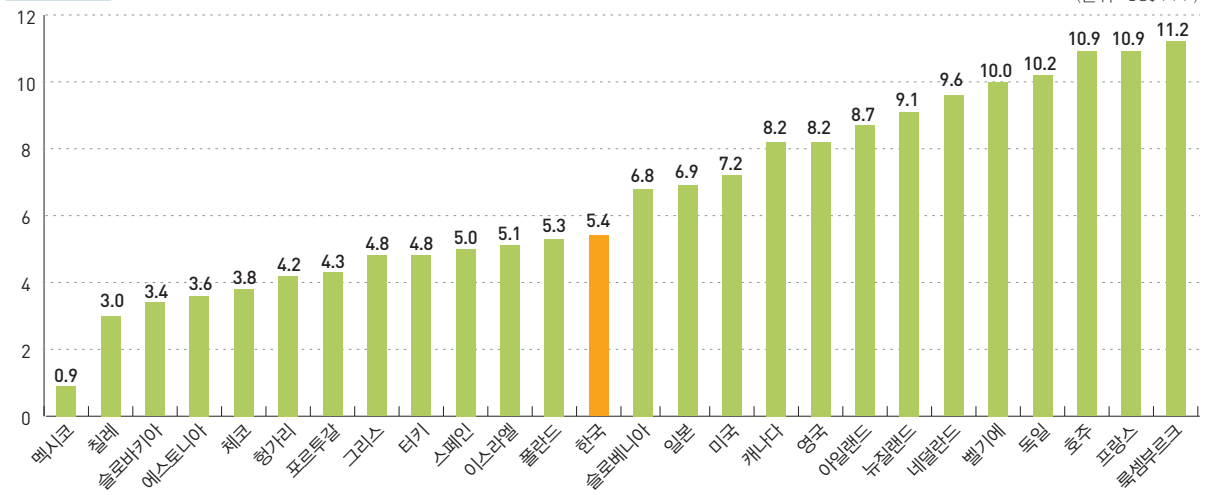
(단위: %)



주: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실질화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소득(자료 다운로드 2016. 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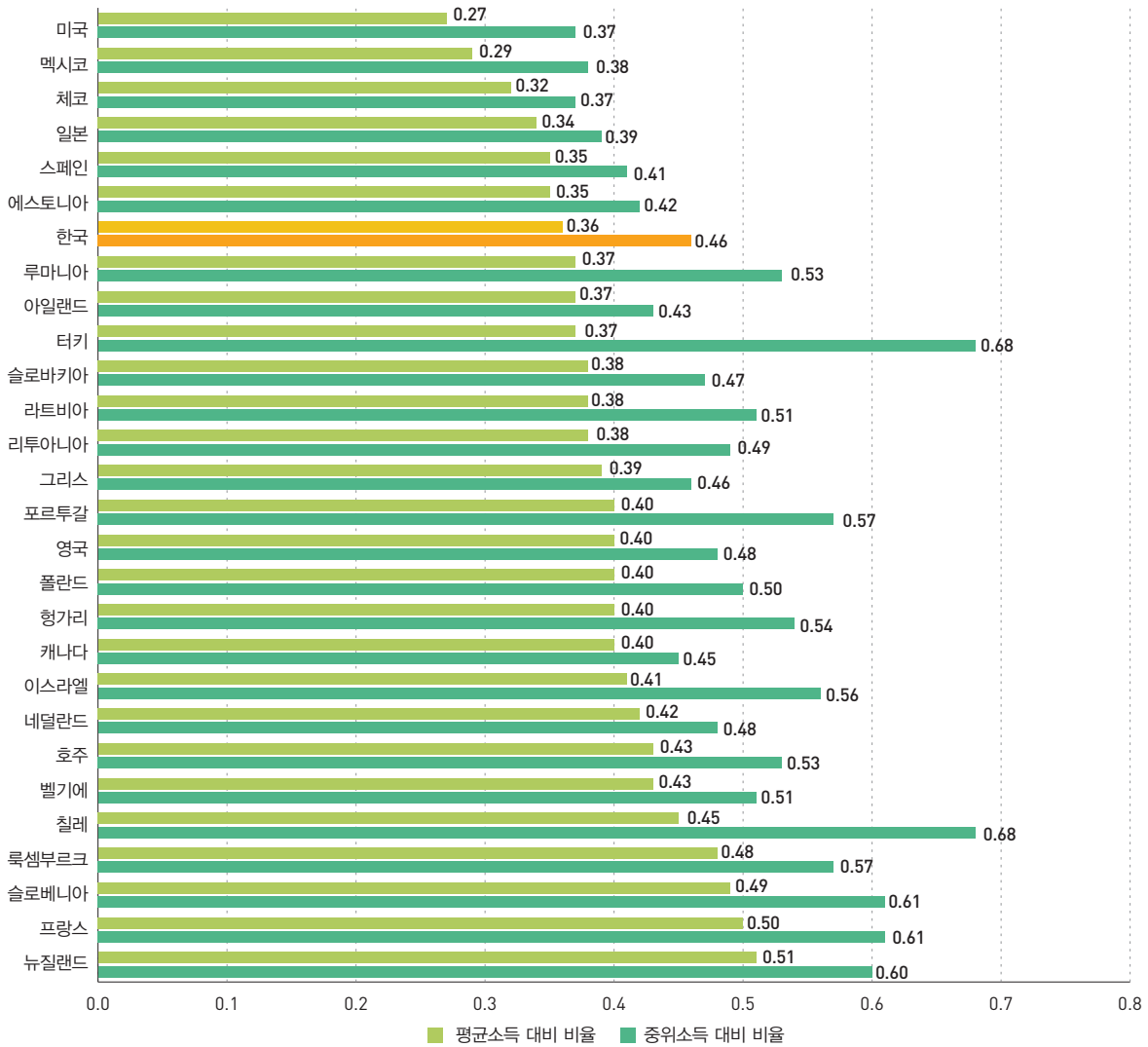
그림 4-28 OECD 주요국가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액 (2015)

(단위: US\$ PPP)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6. 9. 25, 07:51 UTC (GMT))

그림 4-29 OECD 국가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 (2014)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6. 9. 25. 08:04 UTC (GMT))



# 최저임금 영향률

Proportion of Employees expected directly by New Minimum Wage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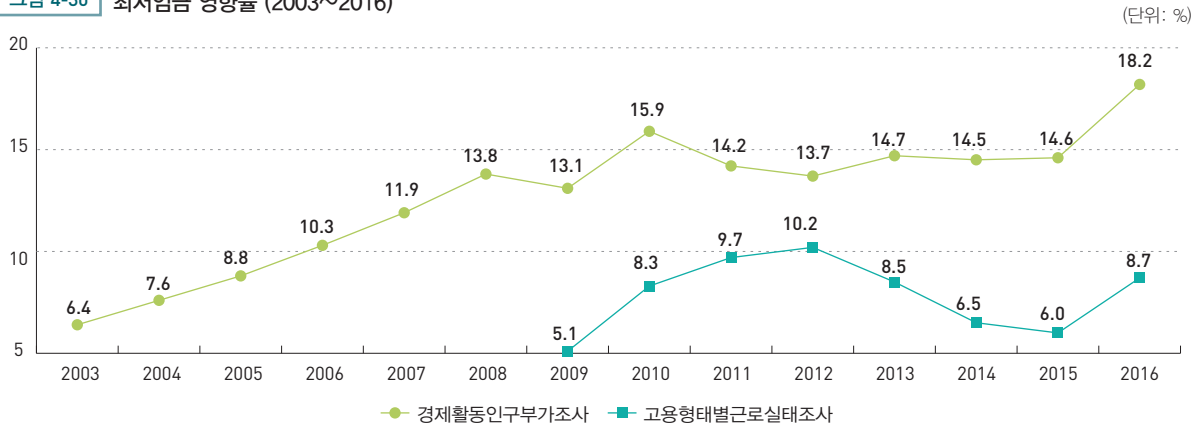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비율(예측치)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수}}{\text{적용대상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로 살펴본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2011년 이후 14% 정도에서 유지되다가, 2016년 18.2%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살펴본 비율은 이보다 낮으며, 2012년 10.2%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이다가 2016년 8.7%로 급증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액만큼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수혜근로자 비율이 되지만, 인상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게 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의 상승은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질 최저임금액 증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림 4-30 최저임금 영향률 (2003~2016)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자료,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내부자료)	-	2016	-

## Checkpoint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3년에는 6.4%에서 2010년 15.9%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일정하다가 2016년 18.2%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시간당 임금액

Hourly Wage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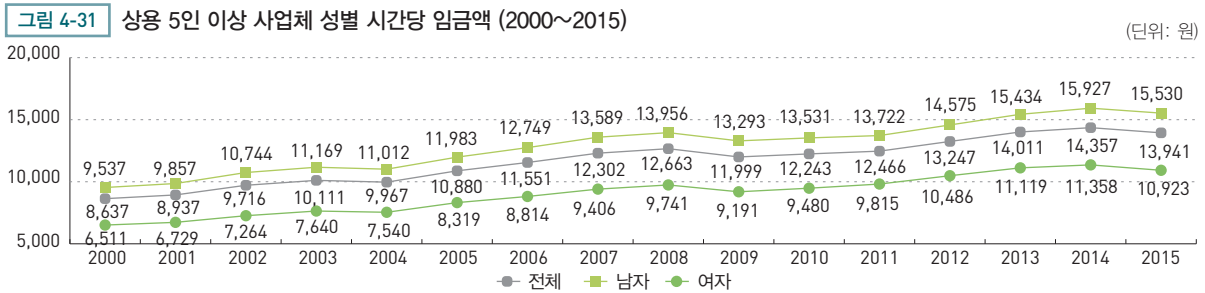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의미한다.

근로자와 그 가족은 임금총액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곧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월 임금총액}}{\text{월 근로시간}} (\text{임금총액}^* = \text{정액급여} + \text{초과급여} + \text{특별급여})$$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급여액은 2000년 8,637원에서 2015년 13,941원으로 연평균 3.3% 인상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의 임금은 남성근로자 임금의 70% 정도로 일정한 비율의 임금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로 나눠보면, 정규직의 임금은 사업체 규모를 따라서 뚜렷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300인 미만인 경우 사업장 규모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3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된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2015년 현재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1,452원으로 정규직 15,978원의 65.5%를 받는다. 특히 파견/용역근로자, 한시적 근로자의 임금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임금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데, 2015년 현재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이 31,102원, 금융 및 보험업의 임금이 27,721원인 반면, 평균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은 8,194원으로 금융 및 보험업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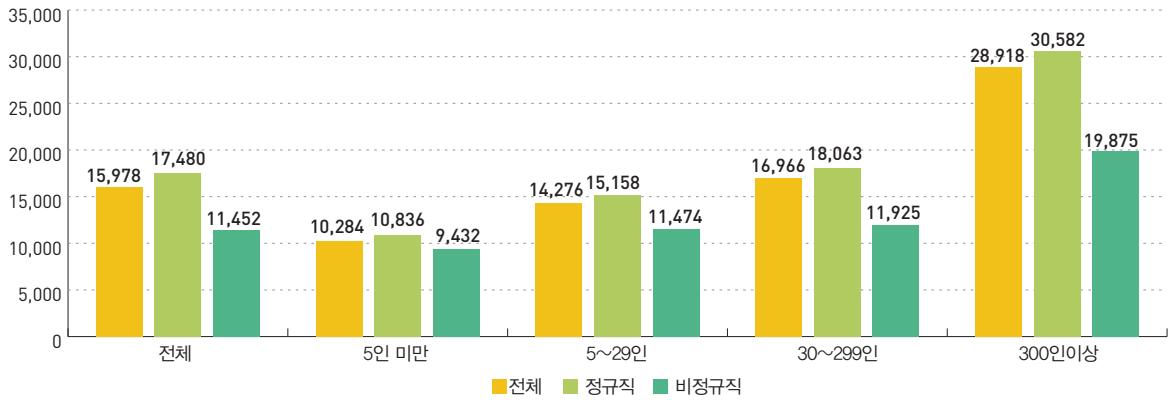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15	1년

**Checkpoint** 2015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13,941원으로 2014년 14,357원보다 2.9% 하락하여 앞으로의 추이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집단별 평균 시간당 임금액을 비교해 보면, 여성,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 임금총액은 정액, 초과, 특별 등의 세 가지 급여를 합한 것이며, 정액급여란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연차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하고, 초과급여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특별급여란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그림 4-32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액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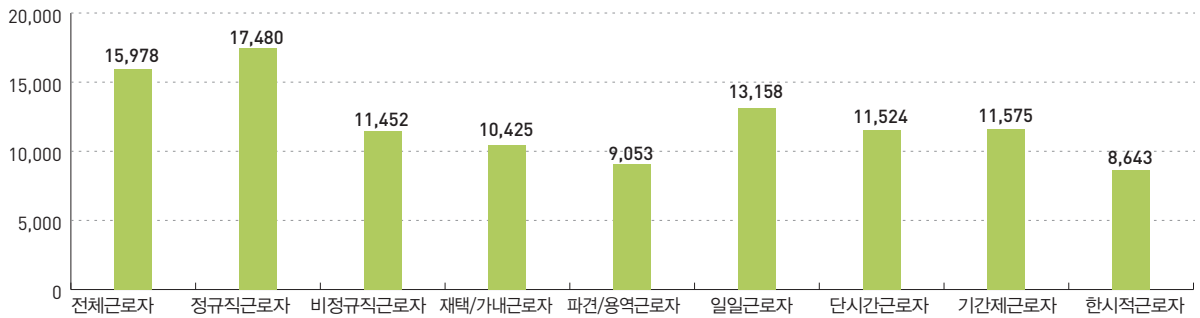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

그림 4-33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액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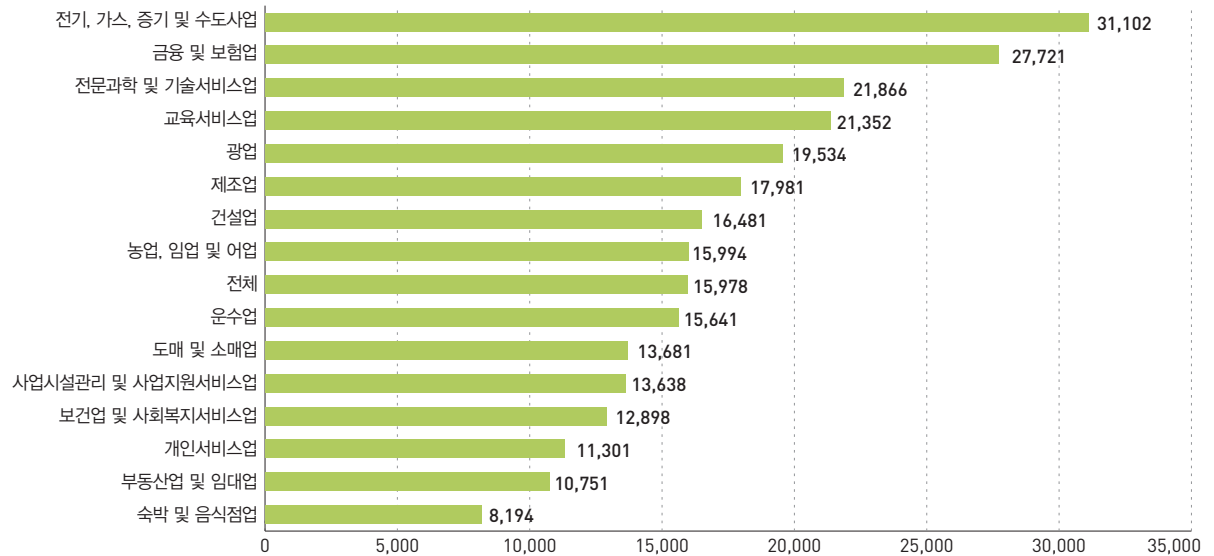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

그림 4-34 산업별 시간당 임금액 (2015)

(단위: 원)



주: 6월 급여계산기간 기준으로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을 월 단위의 총근로 시간수로 나눠 시간당 급여액을 산출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Payment of Earned Income Tax Credit/Child Tax Credit

## 지표 정의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 또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제공된다.

## 측정 산식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sup>1)</sup>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sup>2)</sup>	0~600만 원	총 급여액×70/600
	600~900만 원	70만 원
	900~1,300만 원	70만 원 - (총 급여액 - 900만 원) × 70 / 400
• 홑벌이 가족가구 <sup>3)</sup>	0~900만 원	총 급여액 × 170 / 900
	900~1,200만 원	170만 원
	1,200~2,100만 원	170만 원 - (총 급여액 - 1,200만 원) × 170 / 900
• 맞벌이 가족가구 <sup>4)</sup>	0~1,000만 원	총 급여액 × 210 / 1000
	1,000~1,300만 원	210만 원
	1,300~2,500만 원	210만 원 - (총 급여액 - 1,300만 원) × 210 / 1,200

주: 1) 총 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2)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3)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4)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족가구	0~2,100만 원	부양자녀 수 × 50만 원
	2,100~4,000만 원	부양자녀 수 × [50만 원 - (총 급여액 - 2,100만 원) × 20 / 1,900]
• 맞벌이 가족가구	0~2,500만 원	부양자녀 수 × 50만 원
	2,500~4,000만 원	부양자녀 수 × [50만 원 - (총 급여액 - 2,500만 원) × 20 / 1,500]

근로장려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 123만 가구에 총 1조 원 가량이 지급되었다. 2014년의 근로장려금을 가구소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근로장려금의 79%가 홑벌이 가구에 지급되었고, 근로자가구 전체의 67%에 지급되었다.

2015년(귀속년도 2014년)에 처음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총 105만 가구에 6,417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자녀장려금 또한 전체금액의 78%가 홑벌이 가구에 지급되었고, 전체 금액의 62%가 근로자가구에 지급되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령한 가구는 56만 가구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세청	국세통계	1967	2014	1년

**Checkpoint**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합산액은 2010년 근로장려금 단일 총액 4,020억 원에서 2014년 약 1.7조 원으로 급증하였다. 2014년 귀속분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홑벌이 가구에 79%가 지급되고, 소득종류별로는 근로자에게 65%, 자영업자에게 35%가 지급되었다.

표 4-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10~2014 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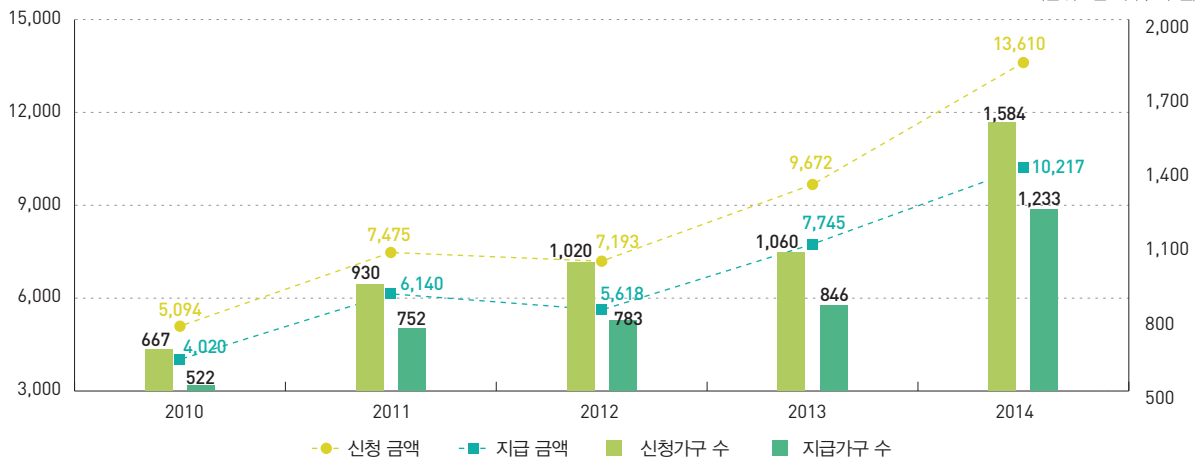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억 원)

	신청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근로)	금액(자녀)
2010	667	5,094	667	5,094	-	-	-	-	-
2011	930	7,475	930	7,475	-	-	-	-	-
2012	1,020	7,193	1,020	7,193	-	-	-	-	-
2013	1,060	9,672	1,060	9,672	-	-	-	-	-
2014	2,995	23,056	1,584	13,610	1,411	9,446	716	6,873	5,254
	지급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근로)	금액(자녀)
2010	522	4,020	522	4,020	-	-	-	-	-
2011	752	6,140	752	6,140	-	-	-	-	-
2012	783	5,618	783	5,618	-	-	-	-	-
2013	846	7,745	846	7,745	-	-	-	-	-
2014	2,279	16,634	1,233	10,217	1,047	6,417	555	5,200	4,01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그림 4-3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10~2014)

(단위: 천 가구, 억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표 4-10 가구유형별·소득유형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14)

(단위: 천 가구, 억 원)

	합계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근로)	금액(자녀)
가구 유형별 전체	2,279	16,634	1,233	10,217	1,047	6,417	555	5,200	4,015
단독가구	195	639	195	639	-	-	-	-	-
홀벌이 가족가구	1,704	13,103	887	8,073	817	503	475	443	342
맞벌이 가족가구	381	2,892	151	1,504	230	139	80	77	60
	근로소득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근로)	금액(자녀)
가구 유형별 전체	1,511	10,801	844	6,800	667	4,001	346	3,271	2,494
단독가구	163	523	163	523	-	-	-	-	-
홀벌이 가족가구	1,147	8,770	602	5,487	546	3,282	306	2,888	2,195
맞벌이 가족가구	200	1,508	79	790	121	718	40	383	299
	사업소득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근로)	금액(자녀)
가구 유형별 전체	768	5,834	389	3,417	380	2,417	210	1,929	1,520
단독가구	31	116	31	116	-	-	-	-	-
홀벌이 가족가구	557	4,334	286	2,586	271	1,748	170	1,541	1,222
맞벌이 가족가구	180	1,384	72	715	109	669	40	389	29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 자활사업 대상자 수

Number of people targeted by Self-Sufficiency Program

## 지표 정의

자활사업 대상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받는 수급자 수를 집계한 값이다.

## 측정 산식

- 자활사업 대상자: (1)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2)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가 제외된 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3)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를 지원받는 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원, 그리고 (4)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의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 (5)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자(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군,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5) 시설 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수
- 자활사업 범위: 2015년을 기준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생업자금지원 등을 포함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체 자활사업 대상자 수는 1,569,56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553,955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차상위계층(15,6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수는 1,030,792명이며, 반면 근로능력자는 523,163명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활사업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1~6월까지 유사한 추세를 보이다가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자활사업 대상자 수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55%)의 비율이 남성(45%)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27%), 18세 미만(24%), 50~64세(22%) 순으로 대상자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지역 인구수가 많은 서울(247,961명)과 경기(245,806명)에 대상자 수가 많았으며 광역시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대상자 수가 많았다. 그 외 시도에서는 남부(경북·경남, 전북·전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 Checkpoint

2013년 1월부터 2년 이상 자활사업 대상자 수는 감소추세를 지속하였으나 2015년 7월 이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증가세에 기인한 것으로 차상위계층의 수급자 수는 2월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1 연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계	1,277,668	1,256,139	1,569,566

그림 4-36 월별·수급지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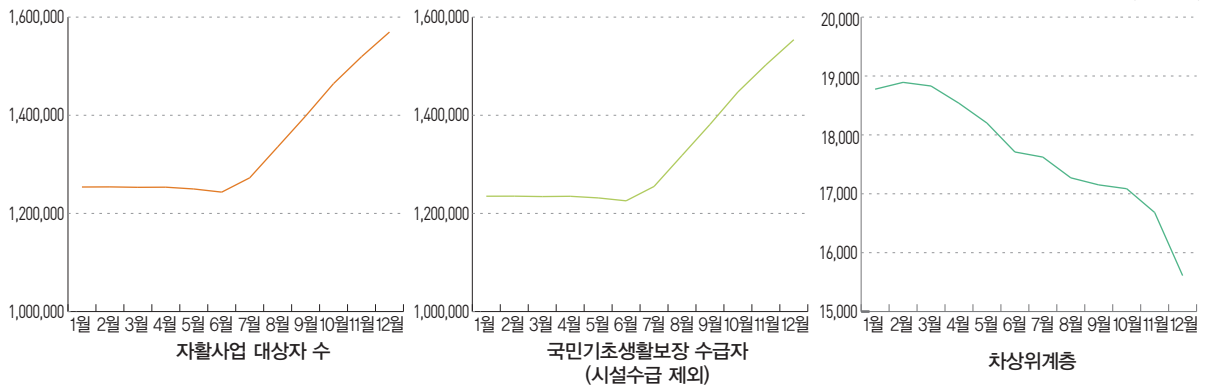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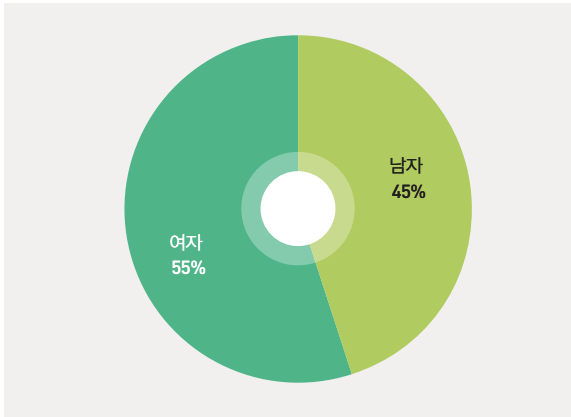
표 4-12 월별·수급지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5)

(단위: 명)

구분	자활사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계 (시설 수급자 제외)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					자활 특례	기타		
			소계	자활 사업 미참여자	자활사업 희망 참여자	소계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제시 유예자	조건부수급자					
									소계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1월	1,253,812	1,235,036	921,981	918,194	3,787	313,055	112,007	5,209	41,253	330	40,923	16,434	138,152	18,776
2월	1,254,050	1,235,158	924,590	923,239	1,351	310,568	114,730	5,306	15,319	112	15,207	19,155	156,058	18,892
3월	1,253,174	1,234,344	891,672	889,927	1,745	342,672	119,919	4,991	19,506	109	19,397	18,061	180,195	18,830
4월	1,253,444	1,234,907	893,853	892,206	1,647	341,054	123,035	5,937	20,258	73	20,185	18,086	173,738	18,537
5월	1,249,798	1,231,597	893,958	892,479	1,479	337,639	122,547	6,490	18,225	60	18,165	18,570	171,807	18,201
6월	1,243,382	1,225,672	893,848	892,467	1,381	331,824	120,103	7,167	17,270	37	17,233	19,678	167,606	17,710
7월	1,272,541	1,254,918	913,159	910,183	2,976	341,759	120,628	7,044	37,023	20	37,003	15,421	161,643	17,623
8월	1,335,404	1,318,133	949,833	948,406	1,427	368,300	127,440	7,553	18,867	15	18,852	17,120	197,320	17,271
9월	1,398,430	1,381,279	983,964	982,344	1,620	397,315	131,156	7,424	21,286	1,649	19,637	16,268	221,181	17,151
10월	1,464,534	1,447,448	1,007,115	1,005,515	1,600	440,333	132,296	7,890	20,324	1,522	18,802	16,037	263,786	17,086
11월	1,519,314	1,502,632	1,021,988	1,020,385	1,603	480,644	131,566	8,118	20,841	1,400	19,441	15,373	304,746	16,682
12월	1,569,566	1,553,955	1,030,792	1,028,990	1,802	523,163	129,636	7,836	23,239	1,420	21,819	13,821	348,631	15,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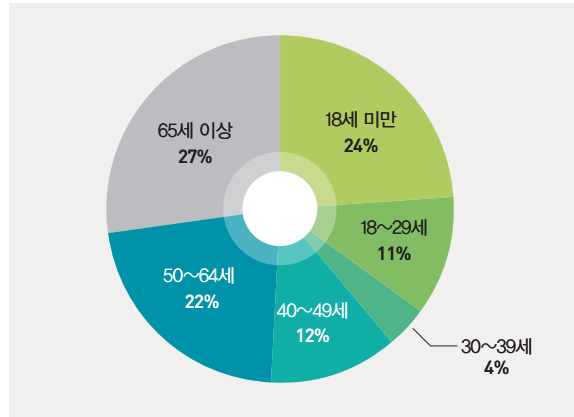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그림 4-37 성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15.12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그림 4-38 연령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15.12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표 4-13 성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15.12 기준)

	남자	여자	계
대상자 수	704,687	864,879	1,569,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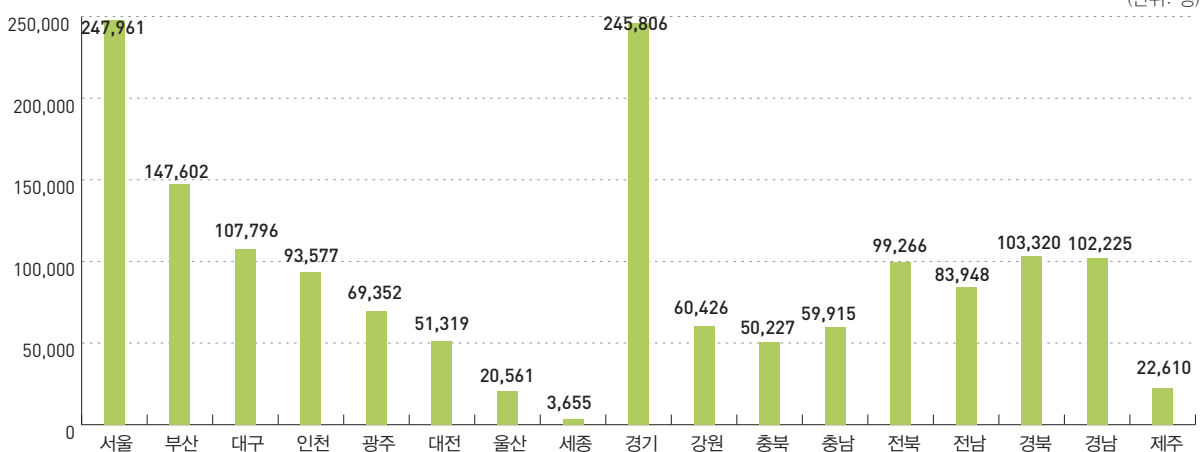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표 4-14 연령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15.12 기준)

	18세 미만	18~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계
대상자 수	375,387	171,156	65,651	195,443	341,604	420,325	1,569,566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그림 4-39 시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15.12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표 4-15 시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15.12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47,961	147,602	107,796	93,577	69,352	51,319	20,561	3,655	245,80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60,426	50,227	59,915	99,266	83,948	103,320	102,225	22,610	1,569,566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 자활사업 참여자 수

Number of people participations in Self-Sufficiency Program

## 지표 정의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자활사업\* 대상자 중 실제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수를 집계한 값이다.

\* 자활근로, 희망리본프로젝트, Gate Way 과정, 취업성공패키지 등

## 측정 산식

- 자활사업 참여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 보유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12월에는 50,131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자활근로가 28,955명으로 타 사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활근로의 뒤를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11,991명)이며, Gate Way 사업과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업종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보면 기타 및 해당없음의 값을 제외하고 보면 환경정비 참여자 수가 3,76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청소, 간병, 영농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경정비의 경우 조건부수급자(2,578명)의 비중이 높으며, 뒤를 이어 일반수급자가 구(687명)와 특례수급가구(461명)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64세 24,571명으로 전체 연령 중 약 49.0%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40~49세가 약 28.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자활사업 참여비율은 2.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참여자 수가 많았으며 광역시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순으로 참여자 수가 많았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참여자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 Checkpoint

2014년 12월 대비 2015년 12월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46,250명에서 50,131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자활근로·Gateway·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자 수는 모두 증가하였으나, 희망리본사업프로그램의 경우 185명에서 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각 연도 12월 기준).

표 4-16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계	46,973	46,250	50,131

그림 4-40 월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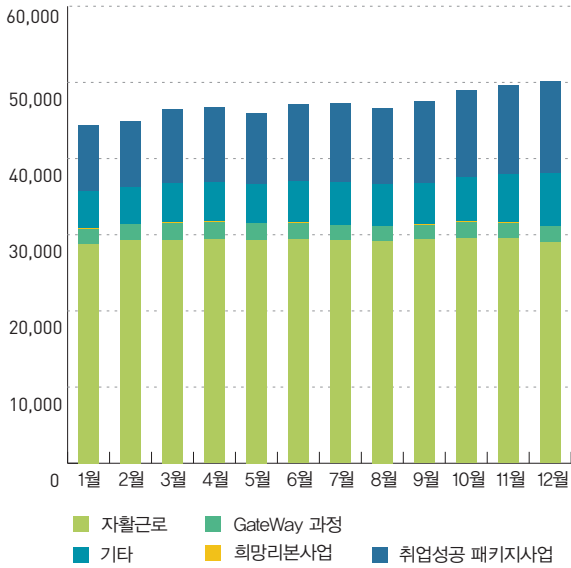


그림 4-41 수급유형 및 업종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15.12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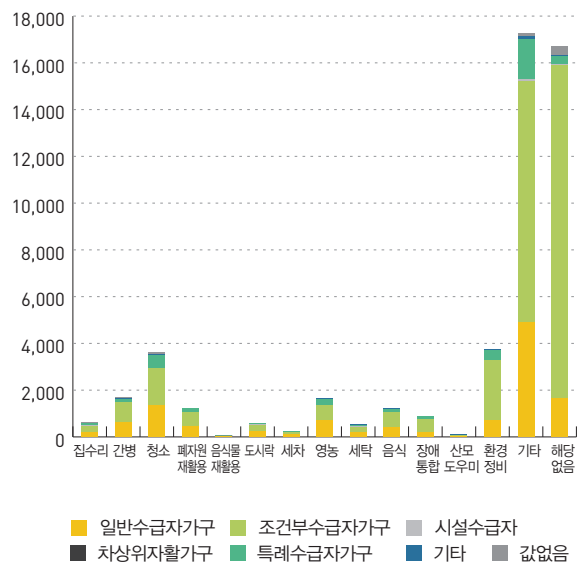


표 4-17 월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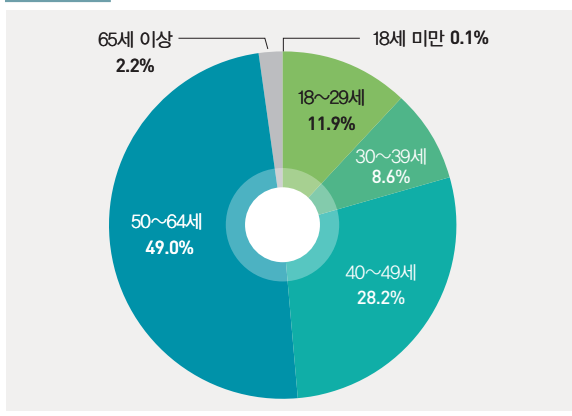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자활근로	Gateway 과정	희망리본사업	기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계
1월	28,770	1,966	117	4,797	8,666	44,316
2월	29,289	2,064	110	4,834	8,580	44,877
3월	29,281	2,280	106	5,088	9,751	46,506
4월	29,394	2,248	94	5,146	9,914	46,796
5월	29,337	2,126	1	5,171	9,313	45,948
6월	29,408	2,144	46	5,452	10,068	47,118
7월	29,274	1,980	41	5,598	10,378	47,271
8월	29,161	1,915	45	5,496	10,037	46,654
9월	29,362	1,951	28	5,388	10,783	47,512
10월	29,496	2,227	17	5,827	11,364	48,931
11월	29,522	2,054	9	6,412	11,614	49,611
12월	28,955	2,107	7	7,071	11,991	50,131

**표 4-18** 수급유형 및 업종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15.12 기준) (단위: 명)

수급자 구분	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도시락	세차	영농	세탁	음식	장애 통합	산모도우미	환경정비	기타	값없음	전체
일반 수급자가구	198	638	1,361	438	24	243	89	711	182	424	200	21	687	4,885	1,666	11,767
조건부 수급자가구	279	818	1,564	621	15	271	118	645	255	605	538	50	2,578	10,351	14,237	32,945
시설수급자	1	3	5	1	0	3	0	1	2	8	7	0	1	66	25	123
차상위 자활가구	0	3	4	2	0	0	0	4	1	1	0	0	0	4	2	21
특례수급자가구	113	169	567	154	4	61	25	238	76	167	135	12	461	1,712	375	4,269
기타	2	33	45	15	1	5	2	45	7	10	7	1	8	94	18	293
값 없음	6	20	55	11	0	5	2	27	4	9	3	1	32	129	409	713
<b>합계</b>	<b>599</b>	<b>1,684</b>	<b>3,601</b>	<b>1,242</b>	<b>44</b>	<b>588</b>	<b>236</b>	<b>1,671</b>	<b>527</b>	<b>1,224</b>	<b>890</b>	<b>85</b>	<b>3,767</b>	<b>17,241</b>	<b>16,732</b>	<b>50,13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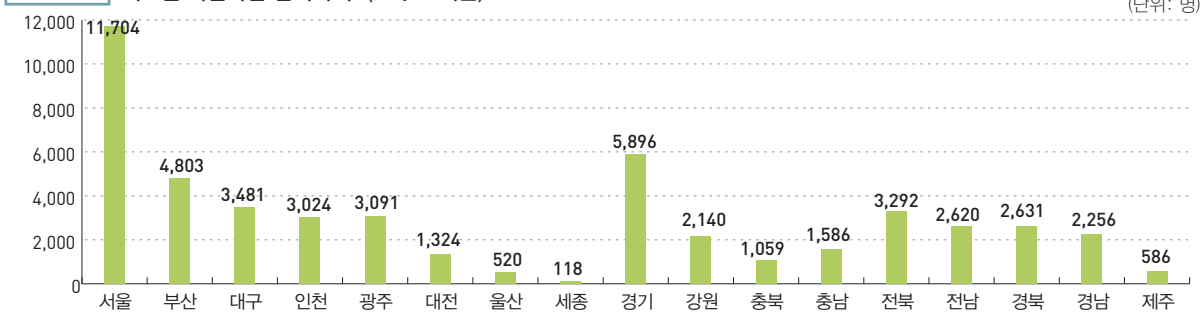
**그림 4-42** 자활사업 참여자 연령 비율 ('15.12 기준)



**표 4-19** 연령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15.12 기준) (단위: 명)

18세 미만	18~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합계
31	5,981	4,320	14,135	24,571	1,093	50,131

**그림 4-43** 시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15.12 기준) (단위: 명)



**표 4-20** 시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15.12 기준)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1,704	4,803	3,481	3,024	3,091	1,324	520	118	5,89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140	1,059	1,586	3,292	2,620	2,631	2,256	586	50,131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Number of people participations i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 지표 정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자활사업 대상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집계한 값이다.

## 측정 산식

- 자활근로사업 범위: 2015년을 기준으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 자활사업 참여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 보유자 등이 해당되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합계는 중복을 제외한 인원 수로 산정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총 28,955명이며, 연중에는 11월이 29,522명으로 가장 많고 1월이 28,77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64세의 비율이 전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40세~49세의 비중이 27%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월별 자활근로 참여자 수와 신규 참여자 수를 보면, 1월 13.8%를 제외하고는 6%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 참여자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5,116명으로 가장 많은 참여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뒤를 이어 부산 3,250명과 경기도 2,99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1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계	33,370	30,713	28,955

그림 4-44 월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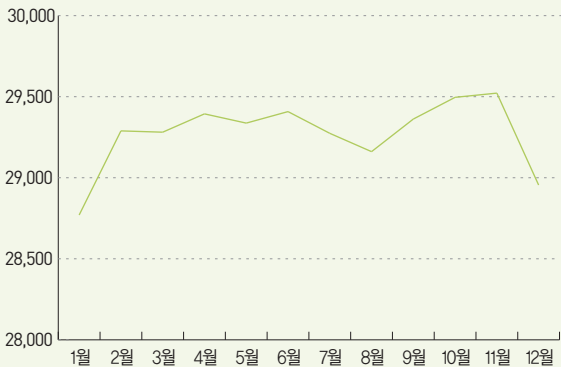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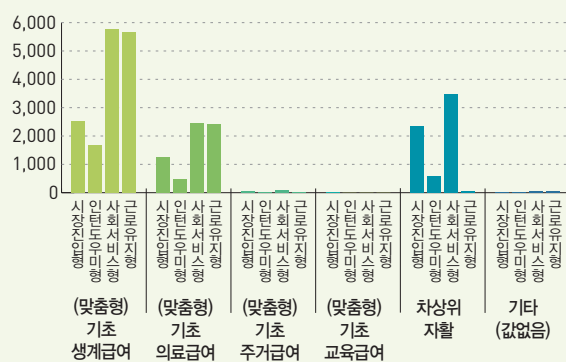


그림 4-45 수급자격별·자활근로 유형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15.12 기준)

(단위: 명)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근로사업참여자수 및 자활급여지급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 12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713명에서 28,955명으로 감소(-14%)하며 지난 해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신규 참여자 수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월별·수급자격별 및 자활근로 유형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15)

(단위: 명)

수급 자격	자활근로 유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초생활수급	시장진입형	3,607	3,645	3,637	3,611	3,587	3,607	-	-	-	-	-	-
	인턴도우미형	2,303	2,214	2,239	2,268	2,239	2,200	-	-	-	-	-	-
	사회서비스형	7,463	7,635	7,639	7,751	7,834	7,980	-	-	-	-	-	-
	근로유지형	8,412	8,602	8,589	8,518	8,492	8,434	-	-	-	-	-	-
(맞춤형) 기초생계급여	시장진입형	-	-	-	-	-	-	2,751	2,636	2,619	2,622	2,538	2,525
	인턴도우미형	-	-	-	-	-	-	1,788	1,736	1,741	1,769	1,732	1,684
	사회서비스형	-	-	-	-	-	-	6,336	6,015	6,102	6,182	6,202	5,758
	근로유지형	-	-	-	-	-	-	6,566	6,155	6,096	6,066	5,960	5,657
(맞춤형) 기초의료급여	시장진입형	-	-	-	-	-	-	856	1,007	1,049	1,071	1,103	1,239
	인턴도우미형	-	-	-	-	-	-	321	409	410	416	430	477
	사회서비스형	-	-	-	-	-	-	1,756	2,141	2,279	2,309	2,419	2,466
	근로유지형	-	-	-	-	-	-	1,763	2,134	2,228	2,236	2,277	2,407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시장진입형	-	-	-	-	-	-	9	18	32	46	46	51
	인턴도우미형	-	-	-	-	-	-	2	5	13	18	16	16
	사회서비스형	-	-	-	-	-	-	7	45	60	76	83	84
	근로유지형	-	-	-	-	-	-	5	5	5	3	2	10
(맞춤형) 기초교육급여	시장진입형	-	-	-	-	-	-	0	0	1	1	1	2
	인턴도우미형	-	-	-	-	-	-	1	0	0	0	0	0
	사회서비스형	-	-	-	-	-	-	0	0	0	0	0	0
	근로유지형	-	-	-	-	-	-	0	0	0	1	0	0
차상위 자활	시장진입형	2,142	2,206	2,205	2,222	2,210	2,227	2,204	2,167	2,114	2,150	2,258	2,334
	인턴도우미형	859	872	868	851	814	793	766	729	690	662	633	596
	사회서비스형	3,868	4,001	4,019	4,090	4,072	4,074	4,010	3,846	3,813	3,747	3,719	3,466
	근로유지형	112	113	84	81	77	77	77	78	77	75	59	59
기타	시장진입형	0	0	0	0	0	0	4	2	2	3	5	12
	인턴도우미형	1	1	0	0	8	3	9	12	5	9	9	27
	사회서비스형	3	0	0	1	1	3	11	9	13	17	13	42
	근로유지형	0	0	1	1	3	10	32	12	13	17	17	43
전체		28,770	29,289	29,281	29,394	29,337	29,408	29,274	29,161	29,362	29,496	29,522	28,955

주: 기타는 수급자격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그림 4-46 월별 자활근로 참여자 수 및 신규 참여자 비율 (2015)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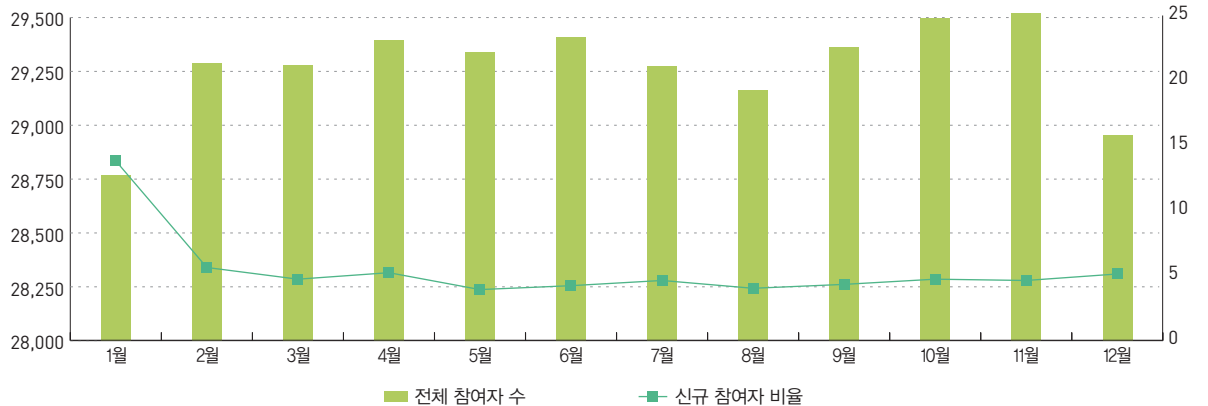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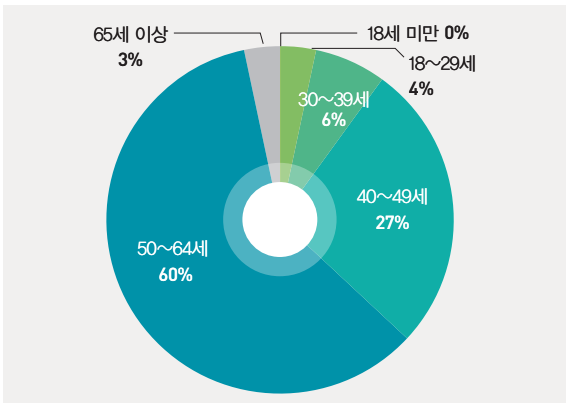


표 4-23 월별 자활근로 참여자 수 및 신규 참여자 비율 (2015)

(단위: 명, %)

참여자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참여자 수	28,770	29,289	29,281	29,394	29,337	29,408	29,274	29,161	29,362	29,496	29,522	28,955
신규 참여자 수	3,968	1,648	1,363	1,526	1,149	1,225	1,338	1,173	1,256	1,384	1,350	1,477
신규 참여자 비율	13.8	5.6	4.7	5.2	3.9	4.2	4.6	4.0	4.3	4.7	4.6	5.1

그림 4-47 연령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비율 ('15.12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표 4-24 연령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15.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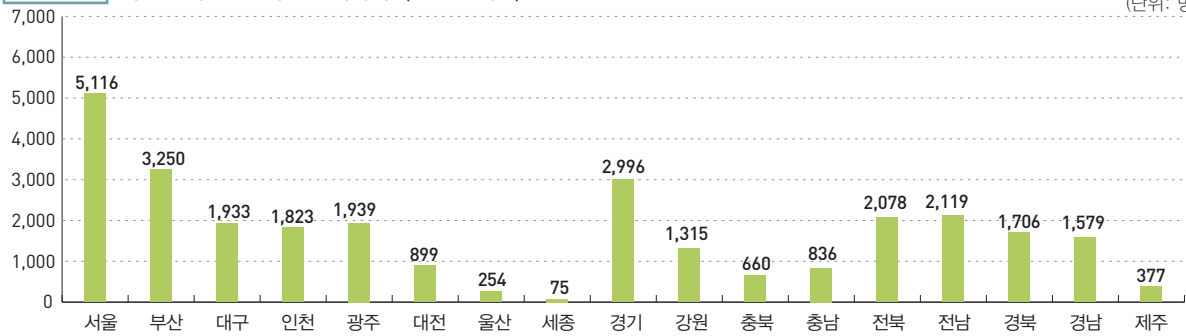
(단위: 명)

18세 미만	18~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1	1,044	1,876	7,833	17,255	946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그림 4-48 시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15.12 기준)

(단위: 명)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표 4-25 시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15.12 기준)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5,116	3,250	1,933	1,823	1,939	899	254	75	2,99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315	660	836	2,078	2,119	1,706	1,579	377	28,955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Expenditure o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benefits

## 지표 정의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자활근로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구분된다. 본 지표에서는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지급현황을 제시한다.

## 측정 산식

- 자활기관별로 자활급여 지급액(자활인건비) 계산
  - 시군구직접 사업시행 = 전체지급금액 - {(국민연금+건강보험액+고용보험액+산재보험액)}
  - 타기관 = 자활소득금액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자활 참여정보(고용지원센터(취업성공패키지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제외)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성별, 자활지원유형별 중복을 제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급여지급) 성별은 여성이 월평균 약 19,900명으로 남성 약 9,300명보다 2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도별 현황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2월 기준으로 전체 28,849명 중에서 서울이 5,09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뒤를 이어 부산(3,245명)과 경기도(2,987명) 순으로 자활 참여도가 높았다. 월별 급여지급 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7월이 약 253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뒤를 이어 10월에는 249억 원이 지출되었다. 2015년 총 급여지급액은 2,706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유형별 급여지급 액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형이 1,16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급액이 지출되었으며 뒤를 이어 시장 진입형 그리고 근로유지형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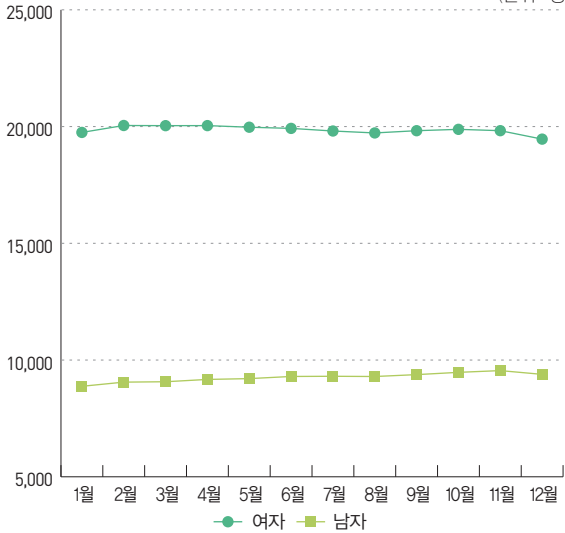
2015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은 총 2,706억 원으로 전년대비 4.6%(2,835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표 4-26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급여지급) 수 및 급여지급액 (12월말 기준)

(단위: 명,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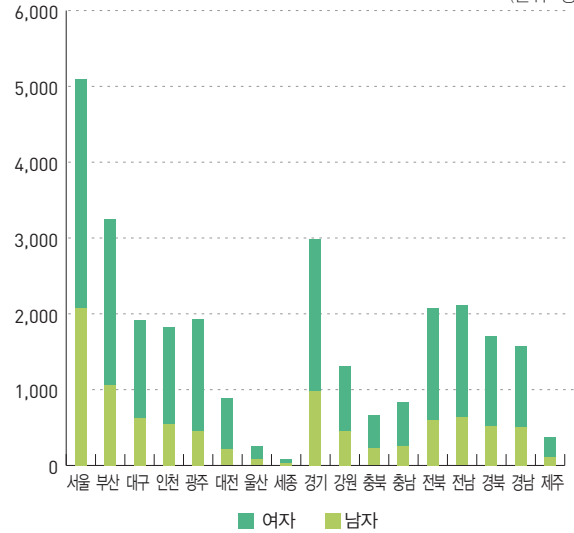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참여자 수	33,370	30,713	28,849
급여지급액	25,158,389	24,547,116	23,800,292

그림 4-49 성별·월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급여지급) 수 (2015)  
(단위: 명)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그림 4-50 성별·시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급여지급) 수('15.12 기준)  
(단위: 명)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표 4-27 성별·시도별·월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급여지급) 수 (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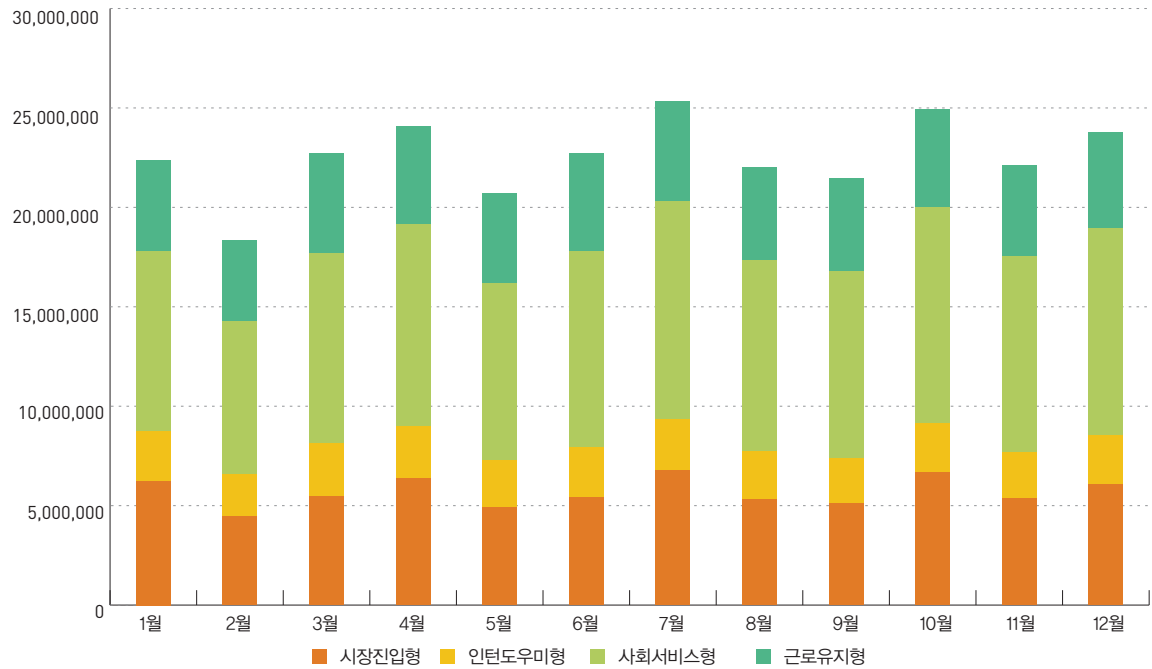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2,099	3,216	2,162	3,249	2,142	3,206	2,155	3,203	2,153	3,189	2,170	3,177	2,150	3,155	2,152	3,140	2,150	3,135	2,143	3,117	2,137	3,106	2,072	3,022
부산	975	2,172	1,008	2,196	1,020	2,214	1,053	2,205	1,065	2,207	1,093	2,218	1,085	2,215	1,063	2,224	1,071	2,205	1,060	2,198	1,093	2,218	1,060	2,185
대구	654	1,478	657	1,464	659	1,433	647	1,415	670	1,410	672	1,402	662	1,366	596	1,260	647	1,345	633	1,353	631	1,343	622	1,298
인천	488	1,262	493	1,273	504	1,281	499	1,274	488	1,277	513	1,280	496	1,276	509	1,279	510	1,278	537	1,299	563	1,312	546	1,273
광주	442	1,429	424	1,435	423	1,430	442	1,458	436	1,464	436	1,455	439	1,453	458	1,467	458	1,488	471	1,484	471	1,474	459	1,465
대전	193	615	199	639	197	640	203	656	201	647	203	655	199	664	200	671	202	673	202	695	204	693	210	685
울산	91	217	91	211	91	207	89	212	92	210	101	209	109	211	106	211	107	220	108	223	104	221	78	176
세종	34	43	33	45	35	41	32	39	32	39	31	36	32	36	34	37	32	38	30	36	31	37	35	40
경기	872	1,981	873	1,997	866	1,985	871	1,992	871	1,967	884	1,959	916	1,954	930	1,968	940	1,959	976	2,001	1,002	2,024	987	2,000
강원	411	838	414	810	403	820	405	782	405	789	418	815	432	828	439	821	441	832	452	844	462	848	458	856
충북	198	415	208	427	220	451	217	448	216	452	207	452	204	441	208	446	209	446	217	440	219	451	223	436
충남	254	612	257	651	270	656	273	643	275	646	282	652	284	649	289	648	286	643	286	640	238	569	256	579
전북	542	1,477	551	1,497	560	1,519	567	1,525	553	1,521	553	1,507	552	1,487	564	1,480	575	1,499	599	1,521	601	1,501	598	1,470
전남	568	1,495	582	1,537	580	1,558	596	1,546	601	1,530	598	1,518	599	1,502	613	1,496	624	1,490	630	1,488	633	1,486	633	1,478
경북	504	1,221	508	1,260	494	1,230	509	1,267	515	1,258	503	1,242	516	1,222	512	1,227	503	1,229	506	1,200	528	1,197	524	1,177
경남	438	1,007	479	1,086	492	1,100	498	1,110	517	1,097	518	1,078	519	1,082	510	1,084	508	1,077	510	1,072	517	1,076	513	1,060
제주	113	271	115	269	115	268	114	266	115	269	115	267	111	269	112	268	113	266	113	270	114	268	113	262
합계	8,876	19,749	9,054	20,046	9,071	20,039	9,170	20,041	9,205	19,972	9,297	19,922	9,305	19,810	9,295	19,727	9,376	19,823	9,473	19,881	9,548	19,824	9,387	19,462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그림 4-51 월별·지원유형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2015)

(단위: 천 원)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표 4-28 월별·지원유형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2015)

(단위: 천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장 진입형	6,240,687	4,435,824	5,468,170	6,364,512	4,919,164	5,399,399	6,749,156	5,324,999	5,109,011	6,650,871	5,348,150	6,070,957	68,080,900
인턴 도우미형	2,471,626	2,119,876	2,654,557	2,641,889	2,354,999	2,546,241	2,597,055	2,398,333	2,288,969	2,501,947	2,342,775	2,495,389	29,413,656
사회 서비스형	9,098,543	7,700,446	9,601,815	10,134,931	8,919,319	9,859,049	10,961,154	9,616,120	9,371,379	10,833,313	9,835,992	10,378,208	116,310,269
근로 유지형	4,570,493	4,093,156	5,004,197	4,956,511	4,519,065	4,912,994	5,034,850	4,658,280	4,701,814	4,938,939	4,591,997	4,855,738	56,838,034
계	22,381,349	18,349,303	22,728,740	24,097,843	20,712,547	22,717,683	25,342,215	21,997,732	21,471,173	24,925,070	22,118,914	23,800,292	270,642,861

#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Number of near-poor people participation in self-sufficiency program

## 지표 정의

차상위자활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미취업자에게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 기회와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군,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하다.

## 측정 산식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수급 인정을 받은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최저생계비 120%	740,737원	1,261,258원	1,631,626원	2,001,995원	2,372,364원	2,742,732원	3,113,101원

차상위자활수급자 수는 2015년 2월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2015년 12월에는 총 15,61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4,646명(30%), 여성이 10,965명(70%)으로 나타났다. 월별 수급자 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별 분포는 연중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시도별 차상위자활수급자 수는 경기도가 2,718명으로 월등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북 1,553명, 전남 1,48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9 연도별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계	19,240	18,912	15,611

그림 4-52 성별 · 월별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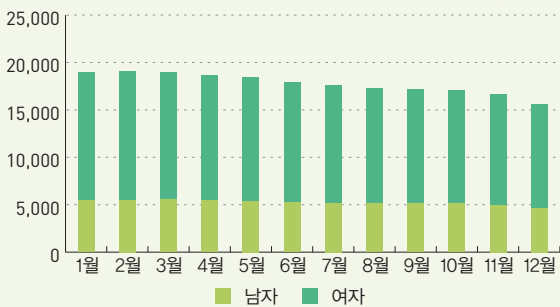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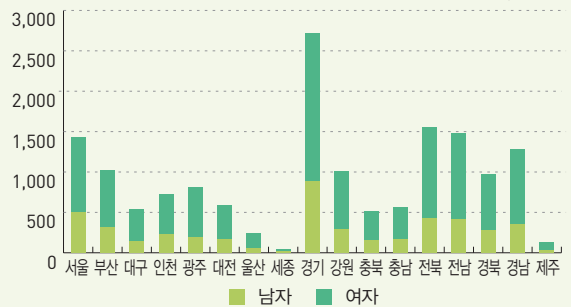


그림 4-53 성별 · 시도별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15.12 기준)

(단위: 명)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 Checkpoint

자활사업 참여자 수와 마찬가지로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역시 전년대비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5년 12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17.5% 감소를 기록하였다('14년 12월: 18,912명 → '15년 12월: 15,611명).

표 4-30 월별, 시도별, 성별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남	656	655	644	640	629	600	581	568	560	568	545	506
	여	1,179	1,159	1,130	1,105	1,069	1,049	1,037	1,008	1,003	995	962	923
	계	1,835	1,814	1,774	1,745	1,698	1,649	1,618	1,576	1,563	1,563	1,507	1,429
부산	남	364	375	372	382	379	377	372	365	372	358	347	318
	여	801	816	814	805	792	809	789	785	793	769	741	706
	계	1,165	1,191	1,186	1,187	1,171	1,186	1,161	1,150	1,165	1,127	1,088	1,024
대구	남	141	156	169	166	162	155	150	146	148	145	141	137
	여	482	490	484	490	490	479	475	452	451	441	428	402
	계	623	646	653	656	652	634	625	598	599	586	569	539
인천	남	256	263	260	257	260	254	243	239	258	270	266	234
	여	551	551	548	544	538	527	513	501	519	547	526	489
	계	807	814	808	801	798	781	756	740	777	817	792	723
광주	남	247	242	245	245	243	239	228	223	214	202	199	190
	여	749	740	755	737	722	710	698	689	684	665	649	622
	계	996	982	1,000	982	965	949	926	912	898	867	848	812
대전	남	193	203	204	205	213	199	198	198	190	186	185	163
	여	585	593	599	576	569	536	533	516	497	495	493	433
	계	778	796	803	781	782	735	731	714	687	681	678	596
울산	남	77	76	79	81	81	82	79	74	70	67	59	58
	여	206	205	201	195	183	178	175	177	182	182	180	176
	계	283	281	280	276	264	260	254	251	252	249	239	234
세종	남	20	20	21	21	20	25	23	23	23	21	19	17
	여	25	27	24	26	27	26	26	27	29	28	25	23
	계	45	47	45	47	47	51	49	50	52	49	44	40
경기	남	994	994	992	971	958	959	960	933	943	964	941	879
	여	2,235	2,226	2,178	2,151	2,119	2,058	2,039	1,994	1,995	2,012	1,961	1,839
	계	3,229	3,220	3,170	3,122	3,077	3,017	2,999	2,927	2,938	2,976	2,902	2,718
강원	남	355	351	347	348	349	332	326	328	331	331	326	294
	여	914	916	912	909	902	863	846	832	816	810	806	712
	계	1,269	1,267	1,259	1,257	1,251	1,195	1,172	1,160	1,147	1,141	1,132	1,006
충북	남	202	201	205	195	193	186	184	182	170	167	157	158
	여	443	442	449	429	431	417	416	403	393	389	366	358
	계	645	643	654	624	624	603	600	585	563	556	523	516
충남	남	185	192	193	199	192	184	185	176	172	173	172	171
	여	499	501	482	478	469	462	464	445	437	428	421	384
	계	684	693	675	677	661	646	649	621	609	601	593	555
전북	남	484	492	500	499	491	481	467	458	467	464	458	430
	여	1,268	1,268	1,285	1,279	1,256	1,212	1,212	1,192	1,195	1,192	1,177	1,123
	계	1,752	1,760	1,785	1,778	1,747	1,693	1,679	1,650	1,662	1,656	1,635	1,553
전남	남	456	459	466	462	458	439	435	439	443	450	447	420
	여	1,425	1,435	1,436	1,401	1,347	1,277	1,263	1,222	1,166	1,165	1,135	1,060
	계	1,881	1,894	1,902	1,863	1,805	1,716	1,698	1,661	1,609	1,615	1,582	1,480
경북	남	295	304	314	312	308	305	295	300	310	306	299	284
	여	881	888	891	888	868	823	800	779	779	780	759	693
	계	1,176	1,192	1,205	1,200	1,176	1,128	1,095	1,079	1,089	1,086	1,058	977
경남	남	448	467	462	430	422	412	411	406	392	392	382	357
	여	1,144	1,163	1,152	1,110	1,070	1,048	1,036	1,045	1,010	989	978	926
	계	1,592	1,630	1,614	1,540	1,492	1,460	1,447	1,451	1,402	1,381	1,360	1,283
제주	남	48	47	48	46	47	43	43	37	37	36	35	30
	여	135	138	134	133	126	122	121	109	102	99	97	96
	계	183	185	182	179	173	165	164	146	139	135	132	126
합계	남	5,421	5,497	5,521	5,459	5,405	5,272	5,180	5,095	5,100	5,100	4,978	4,646
	여	13,522	13,558	13,474	13,256	12,978	12,596	12,443	12,176	12,051	11,986	11,704	10,965
	계	18,943	19,055	18,995	18,715	18,383	17,868	17,623	17,271	17,151	17,086	16,682	15,611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15

# 5

## 소득보장과 빈곤

- 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 02 우선돌봄 차상위수급자 수
- 03 상대적 빈곤율
- 04 상대적 노인빈곤율
- 05 소득5분위배율
- 06 지니계수
- 0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 08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 09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 10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통 계 로 보 는 사 회 보 장

# 2016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최저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의료급여 수급자 수
		교육급여 수급자 수
	우선돌봄 차상위수급자 수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노인빈곤율	
불평등	소득5분위배율	
	지니계수	
노후소득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Total Recipients and Take-up Rat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 지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교육급여 제외)을 충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는 집단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제도의 보호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대적 빈곤율과 비교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추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로 활용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text{총 인구 수}} \times 100$$

시혜적, 단순보호적 성격이 강했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약 15년 만에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의 도입으로 수급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급자는 1,646천 명으로 수급률은 약 3.2%이다. 제도 개편 이전인 2014년과 비교해 보면 수급자 수는 약 317천 명 증가하였으며, 수급률은 약 23% 증가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반수급자는 시설(에이즈쉼터, 노숙인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말한다. 2015년 일반수급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32.9%로 나타났으며, 20세 미만 29.0%, 50대 15.5%, 40대 12.3%, 20대 6.1%, 30대 4.1%의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과 20세 미만의 연령층이 일반수급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세 미만의 비중은 작년에 비해 대폭(약 8.6%p)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교육급여 적용 등 맞춤형 급여 도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977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 수급자 수는 2014년 보다 약 32만 명 정도 증가 하였으며 수급률도 약 0.6%p 증가하였다. 일반수급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고령자 다음으로 20세 미만의 연령층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20세 미만 수급자의 비율은 2014년 20.4%에서 약 8.6%p 증가한 29.0%로 나타났다.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의 증가는 급여 기준선 상향과 부양의무자 완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20세 미만의 수급자 수 증가에는 교육급여의 수급기준이 중위소득의 50%로 책정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e-나라지표(부문별지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 보건복지부,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표 5-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가구) 현황 (2001~2015)

(단위: 천 명, %, 천 가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급자 수	1,420	1,351	1,374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1,646
수급률	3.0	2.8	2.8	2.9	3.1	3.1	3.1	3.1	3.2	3.1	2.9	2.7	2.6	2.6	3.2
일반수급가구 수	698	691	718	754	810	832	852	854	883	879	851	822	811	814	1,014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16

표 5-2 성별·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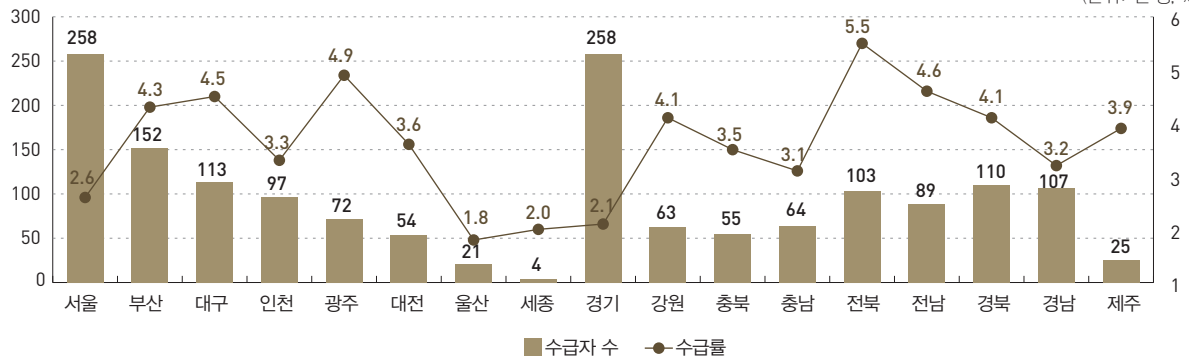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계	451	95	64	192	241	190	322	1,554
남자(%)	50.7	46.2	40.6	44.1	56.5	47.2	28.5	45.0
여자(%)	49.3	53.8	59.4	55.9	43.5	52.8	71.5	55.0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6

그림 5-1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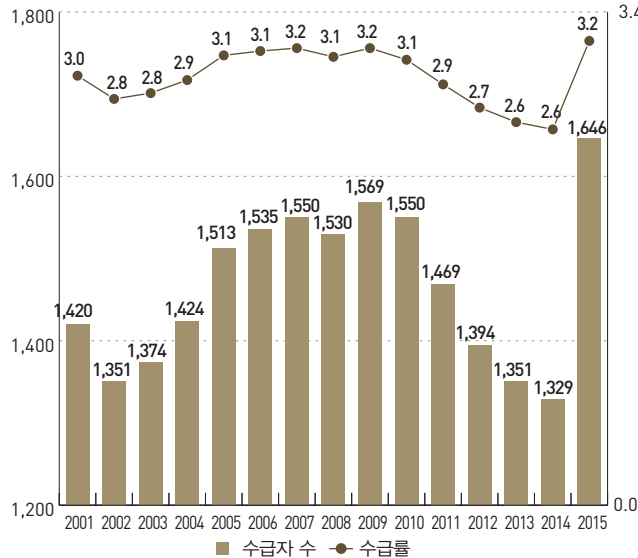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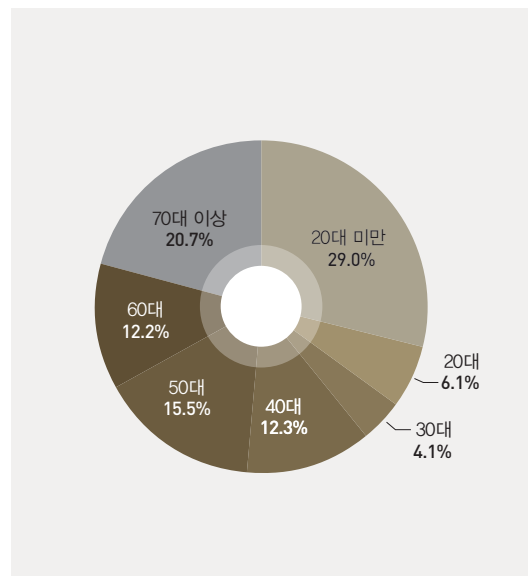
그림 5-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1~2015)

(단위: 천 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6

그림 5-3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분포 (2015)



자료: 보건복지부,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6

#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Overview of Customize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 Individuals and Households

## 지표 정의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동안 통합급여로 지원하였던 것을 지원대상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맞춤형 급여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종류 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현 제도 운영 방식을 말한다.

## 측정 산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급여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선정된 급여 종류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급여별 선정기준 (2015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시도별 전체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수급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2월 기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6.1%(453,759가구), 15.4%(432,790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급여별로도 서울과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개별 급여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구단위로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2015년 기준 803,385가구, 879,597가구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2015년 기준 각각 1,343,775명, 377,638명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15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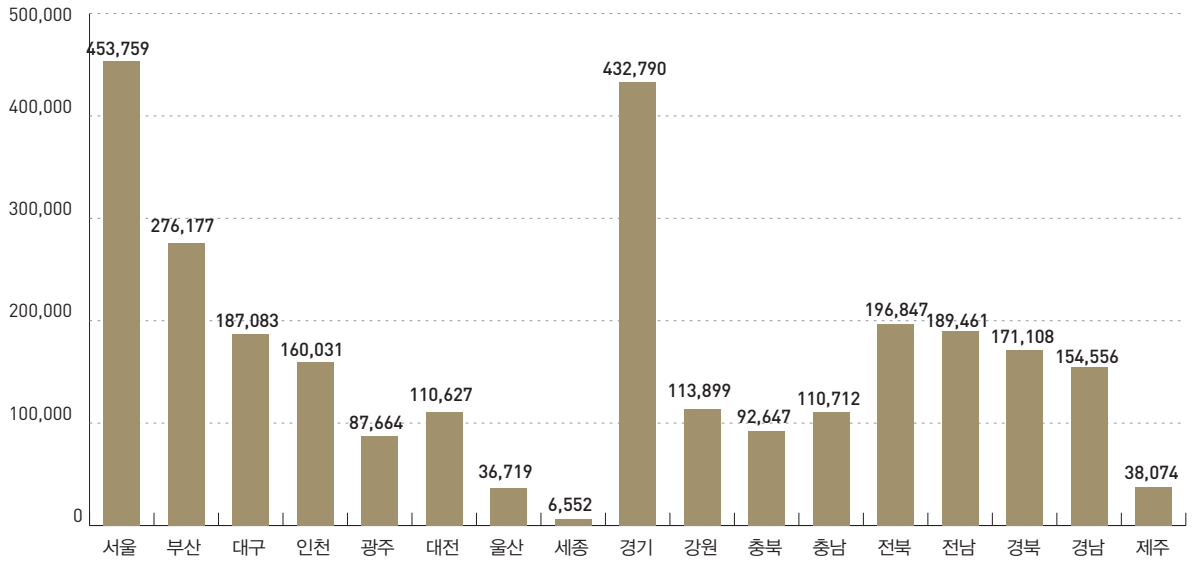
### Checkpoint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수급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급여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시도별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전체 수급가구 수 (2015년 12월)

(단위: 가구)



주: 맞춤형급여 자격 있는 가구 기준(가구중복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표 5-3 시도별 맞춤형 급여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 수 (2015년 12월)

(단위: 가구, 명)

구분	수급가구 수		수급자 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서울	131,022	142,498	215,578	54,304
부산	79,658	86,955	129,662	31,511
대구	52,293	57,651	93,478	27,416
인천	44,673	49,780	79,478	23,515
광주	30,119	34,030	60,742	18,090
대전	24,494	27,227	45,053	12,775
울산	10,098	11,234	15,890	6,282
세종	1,868	2,031	3,171	840
경기	121,773	134,606	196,484	65,644
강원	33,340	36,135	54,292	11,998
충북	26,610	29,069	43,232	11,904
충남	31,891	34,384	51,959	14,684
전북	48,554	53,068	85,801	24,981
전남	44,700	48,641	73,456	19,237
경북	57,440	61,978	91,190	22,208
경남	54,517	58,501	84,879	25,987
제주	10,335	11,809	19,430	6,262
합계	803,385	879,597	1,343,775	377,638

주: 각각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교육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및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Number of Livelihood Benefit Recipients : Households

## 지표 정의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 받는 가구로써 대상자 선정 기준인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급받는다.

## 측정 산식

- 생계급여 수급 신청가구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인정받은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단위: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5년 기준)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799,403 가구가 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추세를 살펴보면,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7월 이후부터 11월까지 0.2%에서 1.3%까지 소폭씩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12월에는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급가구 수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0.7%를 기록하였다.

표 5-4 월별· 시도별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2015)

(단위: 가구)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27,088	127,380	128,470	129,761	130,688	131,022
부산	76,887	77,873	79,092	79,775	79,787	79,658
대구	52,253	51,692	52,251	52,656	52,601	52,293
인천	42,911	42,599	43,457	44,150	44,695	44,673
광주	30,720	29,995	30,408	30,493	30,483	30,119
대전	24,240	24,127	24,439	24,661	24,729	24,494
울산	9,799	9,992	10,180	10,241	10,213	10,098
세종	1,784	1,845	1,878	1,887	1,872	1,868
경기	116,614	118,416	120,284	121,551	122,263	121,773
강원	32,409	32,977	33,531	33,725	33,703	33,340
충북	26,270	26,460	26,889	27,021	26,926	26,610
충남	31,030	31,469	31,956	32,232	32,370	31,891
전북	47,568	48,232	48,845	49,244	49,170	48,554
전남	44,325	44,903	45,508	45,798	45,733	44,700
경북	57,249	57,712	58,358	58,758	58,690	57,440
경남	53,855	54,274	54,743	55,063	54,986	54,517
제주	10,283	10,295	10,405	10,482	10,408	10,335
합계	785,285	790,241	800,694	807,498	809,317	803,385

주: 맞춤형급여 기초생계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15	1년

### Checkpoint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12월을 제외하면 7월 이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수급가구는 서울과 경기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Number of Housing Benefit Recipients : Individuals and Households

## 지표 정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임차료, 수선유지금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 받는 가구로서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원받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 측정 산식

• 주거급여 수급 신청가구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인정받은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단위: 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2015년 기준)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859,448가구가 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7월 이후부터 11월까지 전월대비 0.7%에서 2.8%까지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12월에는 서울, 경기,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급가구 수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0.2%를 기록하였다. 한편, 2015년 12월 기준 자가거주 수급가구는 78,294가구인 반면 임차 수급가구는 668,162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포함된 수급가구는 508,840가구이며 이 중에 임차급여 수급가구는 441,266가구,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는 67,574가구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15	1년

### Checkpoint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2월을 제외하면 7월부터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또한 2015년 12월 기준 임차료를 지원하는 가구가 전체 수급가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8%를 차지한다.

표 5-5 월별·시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15)

(단위: 가구)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31,929	134,526	137,475	139,715	141,665	142,498
부산	81,373	83,605	85,549	86,692	87,009	86,955
대구	54,571	55,740	56,899	57,528	57,712	57,651
인천	44,433	45,596	47,157	48,590	49,482	49,780
광주	32,062	32,795	33,714	34,146	34,262	34,030
대전	25,124	25,960	26,794	27,183	27,352	27,227
울산	10,216	10,703	11,080	11,236	11,286	11,234
세종	1,848	1,940	2,016	2,040	2,038	2,031
경기	121,120	125,542	129,974	132,782	134,395	134,606
강원	33,930	34,938	35,890	36,290	36,429	36,135
충북	27,221	28,281	28,987	29,229	29,226	29,069
충남	32,291	33,208	34,007	34,436	34,679	34,384
전북	49,951	51,329	52,637	53,246	53,484	53,068
전남	45,974	47,560	48,799	49,280	49,345	48,641
경북	59,204	60,502	61,617	62,354	62,600	61,978
경남	55,460	56,922	58,019	58,658	58,776	58,501
제주	10,980	11,344	11,605	11,759	11,787	11,809
합계	817,687	840,491	862,219	875,164	881,527	879,597

주: 맞춤형급여 기초주거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표 5-6 시도별·주거유형별 맞춤형 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15년 12월)

(단위: 가구)

구분	합계	자가	임차						개인 운영시설	기타
			공공임대	민간임대	사용대차					
					전체사용대차		부분사용대차			
					기타대차 유	기타대차 무	기타대차 유	기타대차 무		
서울	152,686	1,934	56,672	54,428	7,855	203	9,728	294	766	20,806
부산	92,218	6,008	26,069	33,297	3,626	436	3,601	625	232	18,324
대구	62,877	2,011	20,929	21,923	3,924	127	2,578	141	46	11,198
인천	53,433	4,109	16,747	16,003	4,732	94	4,027	68	410	7,243
광주	36,861	1,740	15,695	8,753	2,461	117	1,659	91	261	6,084
대전	29,849	1,389	12,529	7,673	3,011	39	1,205	52	272	3,679
울산	12,080	423	3,040	4,311	385	64	533	93	36	3,195
세종	2,590	280	290	469	433	6	143	5	32	932
경기	146,766	5,780	43,583	42,760	12,153	356	10,705	382	2,826	28,221
강원	39,492	5,400	6,431	10,759	3,303	363	1,926	301	303	10,706
충북	34,073	4,389	7,625	6,891	5,554	19	1,864	11	655	7,065
충남	38,517	5,722	6,372	7,858	6,308	226	1,921	137	384	9,589
전북	58,009	9,049	14,467	10,615	4,252	422	2,306	256	965	15,677
전남	54,043	11,689	5,808	8,229	9,209	465	3,100	145	739	14,659
경북	68,478	10,473	9,395	16,250	4,852	524	2,792	331	336	23,525
경남	63,841	7,175	11,098	17,957	5,299	464	2,774	242	267	18,565
제주	13,380	723	2,177	4,474	585	91	500	91	75	4,664
합계	959,193	78,294	258,927	272,650	77,942	4,016	51,362	3,265	8,605	204,132

주: 1) 시설수급자 포함

2) 맞춤형 급여 도입 후 주거유형이 5개에서 15개로 확대됨에 따라 1:1 매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그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 따라서 '기타'에는 입력값 오류와 주거유형 비매칭 수급자로 구성됨.

표 5-7 시도별·급여종류별 주거약자가 포함된 맞춤형 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15년 12월)

(단위: 가구)

구분	합계 (A+C)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65세이상 장애인 (A=aUb, 중복제거)	65세 이상 (a)	장애인 (b)	65세이상 장애인 (C=cUd, 중복제거)	65세 이상 (c)	장애인 (d)
서울	90,843	89,279	58,832	48,485	1,564	1,283	736
부산	48,544	43,676	28,228	23,491	4,868	3,978	2,252
대구	31,399	29,833	18,359	16,788	1,566	1,255	725
인천	30,184	26,836	16,479	15,400	3,348	2,594	1,708
광주	16,943	15,710	8,596	9,696	1,233	863	696
대전	16,515	15,423	8,792	9,592	1,092	813	593
울산	5,911	5,555	3,354	3,268	356	262	207
세종	1,168	913	539	528	255	217	134
경기	82,327	77,229	48,619	43,358	5,098	4,047	2,502
강원	20,038	15,320	9,384	8,805	4,718	3,800	2,346
충북	18,925	15,083	8,473	9,274	3,842	2,973	2,003
충남	20,815	15,687	8,942	9,544	5,128	4,037	2,535
전북	28,461	20,574	11,547	13,044	7,887	6,241	4,048
전남	28,824	18,385	9,751	11,788	10,439	8,287	5,237
경북	31,386	22,209	13,195	12,949	9,177	7,232	4,587
경남	30,852	24,470	14,415	14,422	6,382	4,986	3,329
제주	5,705	5,084	3,301	2,880	621	471	342
합계	508,840	441,266	270,806	253,312	67,574	53,339	33,980

주: 시설수급자 제외

# 의료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Medical Aid Benefit Recipients : Individuals

## 지표 정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분류되며,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 측정 산식

- 의료급여 수급 신청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단위: 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2015년도 기준)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1,315,340명이 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추세를 살펴보면,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7월 이후부터 11월까지 0.6%에서 3.2%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12월에는 서울, 인천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급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0.4%를 기록하였다. 의료급여 종별 수급자는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수급자로 구성된 1종 수급자는 2015년 12월 기준 806,771명, 1종 수급자가 아닌 2종 수급자는 396,492명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15	1년

### Checkpoint

의료급여 수급자는 12월 제외하면 7월부터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또한 2015년 12월 기준 1종 수급자(806,771명)가 2종 수급자(396,492명)보다 약 2배 이상 많다.

**표 5-8 월별 · 시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98,462	202,971	208,068	211,921	214,644	215,578
부산	121,723	125,345	128,392	130,146	130,196	129,662
대구	88,477	90,878	92,971	93,996	94,014	93,478
인천	70,084	72,447	75,133	77,524	79,120	79,478
광주	56,932	58,780	60,436	61,081	61,299	60,742
대전	40,998	42,934	44,509	45,130	45,297	45,053
울산	14,536	15,268	15,811	16,027	16,078	15,890
세종	2,837	3,083	3,191	3,237	3,187	3,171
경기	177,745	184,293	190,589	194,348	196,394	196,484
강원	50,968	52,652	54,157	54,746	54,859	54,292
충북	39,995	41,894	43,014	43,329	43,452	43,232
충남	48,655	50,304	51,621	52,288	52,572	51,959
전북	81,080	83,394	85,666	86,600	86,744	85,801
전남	69,211	72,024	73,905	74,664	74,750	73,456
경북	86,778	88,831	90,640	91,712	92,036	91,190
경남	80,548	82,884	84,642	85,658	85,601	84,879
제주	18,218	18,977	19,398	19,673	19,592	19,430
합계	1,247,247	1,286,959	1,322,143	1,342,080	1,349,835	1,343,775

주: 맞춤형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표 5-9 시도별 · 종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15년 12월)**

(단위: 명)

구분	1종	2종
서울	126,402	65,521
부산	78,188	37,295
대구	49,668	33,734
인천	45,608	25,165
광주	27,134	26,284
대전	23,968	15,867
울산	10,046	4,092
세종	1,958	961
경기	126,093	49,734
강원	33,720	14,904
충북	27,676	10,991
충남	34,172	13,167
전북	49,353	28,107
전남	47,448	19,585
경북	59,298	23,438
경남	55,957	20,383
제주	10,082	7,264
합계	806,771	396,492

주: 실수급자 기준임.

# 교육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Education Benefit Recipients : Individuals

## 지표 정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 받는다.

## 측정 산식

- 교육급여 수급 신청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교육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단위: 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2015년 기준)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교육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271,432명이 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추세를 살펴보면, 맞춤형 급여로 개편 직후인 8월을 제외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15~21%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5년 3월 공사립구분별 기준으로는 공립 재학생이 119,638명(71%), 사립 재학생이 47,607명(28%)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별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50,529명, 중학생 47,348명, 고등학생 67,936명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15	1년

### Checkpoint

교육급여 수급자는 8월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15% 이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또한 2015년 3월 기준 공사립구분별로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가 사립학교 재학 중인 수급자 보다 약 2.5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수치는 초중고, 공·사립 정보가 등록된 실수급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초·중·고·공·사립 정보가 누락된 경우는 제외된 수치임.



표 5-10 월별·시도별 교육급여 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32,052	25,659	29,066	35,438	42,934	54,304
부산	18,996	17,119	20,047	24,951	28,743	31,511
대구	19,053	14,590	15,811	20,658	25,005	27,416
인천	14,113	10,766	13,035	16,766	20,342	23,515
광주	12,311	10,690	13,040	14,854	16,424	18,090
대전	9,257	7,666	8,526	9,625	10,725	12,775
울산	2,525	2,839	3,456	4,607	5,690	6,282
세종	492	570	634	690	719	840
경기	31,283	27,108	33,026	40,734	49,415	65,644
강원	8,977	8,221	8,756	9,344	10,896	11,998
충북	7,478	7,057	7,987	9,414	10,508	11,904
충남	9,507	8,308	9,583	11,449	13,049	14,684
전북	16,476	15,089	16,739	19,613	22,896	24,981
전남	12,459	12,840	14,931	16,869	18,170	19,237
경북	14,896	12,784	13,977	16,087	18,583	22,208
경남	13,718	13,131	15,142	19,189	22,841	25,987
제주	4,557	3,835	4,125	4,385	5,035	6,262
합계	228,150	198,272	227,881	274,673	321,975	377,638

주: 맞춤형급여 기초교육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 우선돌봄 차상위수급자 수

Number of near-poor people in receipt of Priority Care

## 지표 정의

우선돌봄 차상위수급자 수는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중앙부처 10개 기관 20여개 사업과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연계되는 대상자들을 말한다.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달리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실제소득 -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측정 산식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중앙부처 도는 지자체 사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연계된 수급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최저생계비120%(원/월) (2015년도 기준)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으로 정의되는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는 전년 동월대비 15% 감소한 127,217명으로 집계되었다('15년 12월 기준). 동월 기준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40,870명(32%), 여성이 86,347명(68%)으로 여성수급자 수가 2배 이상 많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수급자가 26,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4,946명, 경북 11,77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은 여성수급자가 약 60% 이하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 분포가 대체로 고른 편인데 반해, 전북 및 전남에서는 여성수급자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추세로는 3월 수급자 수가 가장 많으며 이후 8월을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2월 수급자가 가장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우선돌봄 차상위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의 월별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는 하반기 이후 대체로 전월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2월 기준 127,217명으로 '13년 12월(129,896명)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 2015년 기준이며,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표 5-11 연도별 우선돌봄 차상위수급자 수 (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계	129,896	149,964	127,217

그림 5-5 성별·월별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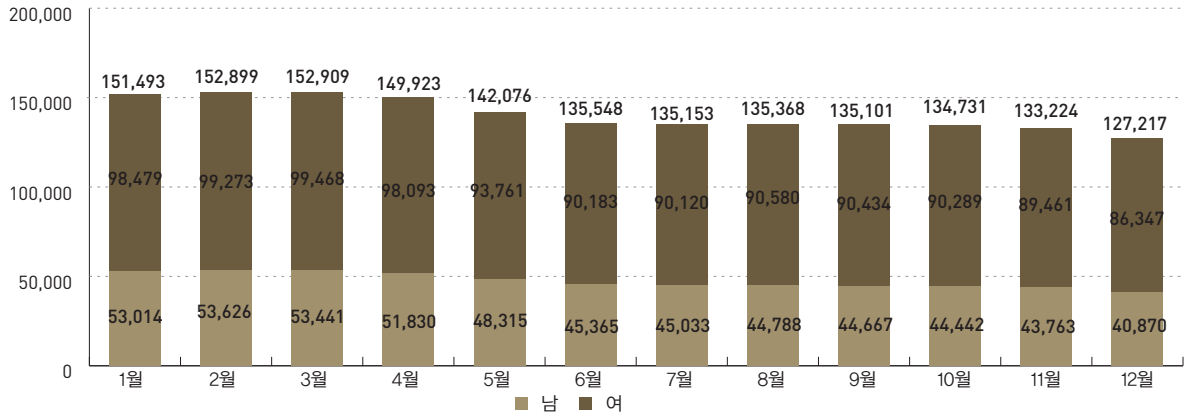


그림 5-6 성별·시도별 우선돌봄 차상위수급자 수 (2015.12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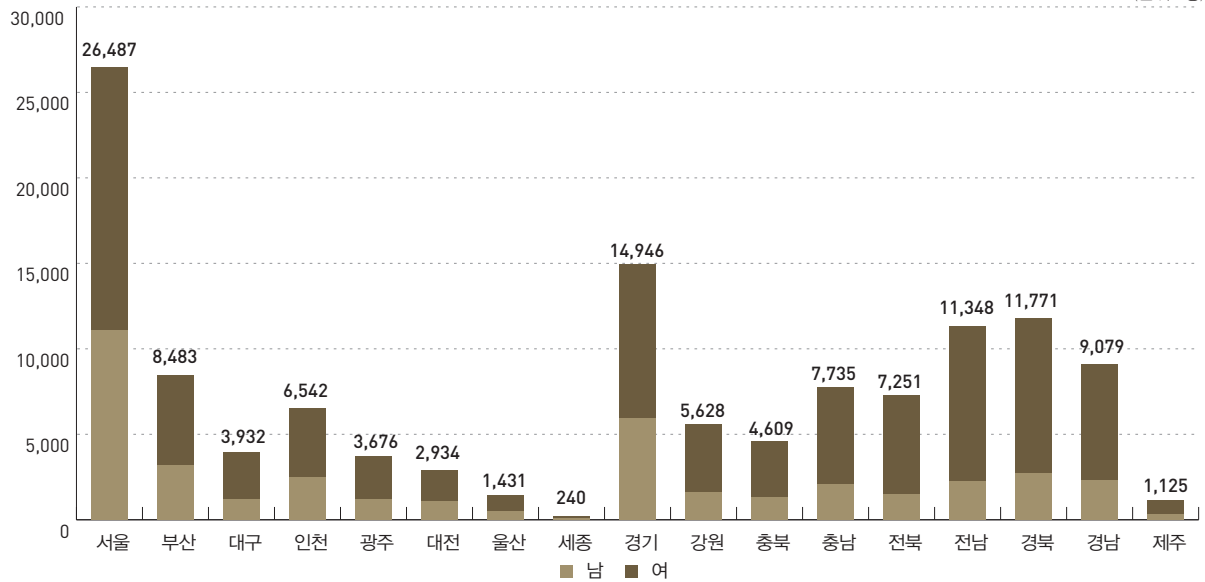


표 5-12 월별, 시도별, 성별 우선돌봄 차상위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남	12,960	13,155	13,298	13,235	12,796	12,329	12,269	12,210	12,186	12,079	11,975	11,114
	여	17,053	17,243	17,518	17,550	17,152	16,665	16,633	16,523	16,469	16,449	16,247	15,373
	계	30,013	30,398	30,816	30,785	29,948	28,994	28,902	28,733	28,655	28,528	28,222	26,487
부산	남	3,999	4,076	4,041	3,899	3,674	3,504	3,494	3,424	3,451	3,452	3,383	3,172
	여	6,074	6,143	6,136	6,002	5,741	5,528	5,510	5,450	5,528	5,560	5,513	5,311
	계	10,073	10,219	10,177	9,901	9,415	9,032	9,004	8,874	8,979	9,012	8,896	8,483
대구	남	1,600	1,592	1,568	1,459	1,283	1,191	1,176	1,206	1,204	1,236	1,233	1,172
	여	3,091	3,124	3,107	2,981	2,761	2,663	2,654	2,793	2,774	2,815	2,840	2,760
	계	4,691	4,716	4,675	4,440	4,044	3,854	3,830	3,999	3,978	4,051	4,073	3,932
인천	남	3,395	3,438	3,464	3,422	3,108	2,872	2,846	2,785	2,776	2,728	2,707	2,484
	여	4,850	4,901	4,974	4,936	4,620	4,410	4,376	4,329	4,283	4,268	4,243	4,058
	계	8,245	8,339	8,438	8,358	7,728	7,282	7,222	7,114	7,059	6,996	6,950	6,542
광주	남	1,745	1,748	1,716	1,609	1,522	1,410	1,380	1,370	1,351	1,347	1,326	1,217
	여	3,077	3,082	3,078	2,959	2,851	2,711	2,670	2,650	2,628	2,612	2,578	2,459
	계	4,822	4,830	4,794	4,568	4,373	4,121	4,050	4,020	3,979	3,959	3,904	3,676
대전	남	1,471	1,473	1,469	1,398	1,276	1,218	1,197	1,179	1,181	1,178	1,183	1,076
	여	2,238	2,253	2,254	2,192	2,055	2,000	1,989	1,986	1,980	1,974	1,973	1,858
	계	3,709	3,726	3,723	3,590	3,331	3,218	3,186	3,165	3,161	3,152	3,156	2,934
울산	남	707	708	711	672	615	603	585	580	577	576	552	517
	여	1,079	1,080	1,073	1,038	966	952	944	956	961	962	951	914
	계	1,786	1,788	1,784	1,710	1,581	1,555	1,529	1,536	1,538	1,538	1,503	1,431
세종	남	87	93	94	91	85	78	78	74	72	77	80	76
	여	172	179	183	183	177	170	171	167	170	170	170	164
	계	259	272	277	274	262	248	249	241	242	247	250	240
경기	남	7,753	7,865	7,963	7,732	7,293	6,716	6,686	6,622	6,620	6,602	6,514	5,966
	여	10,638	10,773	10,906	10,775	10,316	9,733	9,714	9,634	9,626	9,599	9,530	8,980
	계	18,391	18,638	18,869	18,507	17,609	16,449	16,400	16,256	16,246	16,201	16,044	14,946
강원	남	2,341	2,368	2,298	2,247	1,967	1,873	1,849	1,826	1,795	1,779	1,731	1,595
	여	4,657	4,703	4,670	4,615	4,294	4,160	4,144	4,272	4,264	4,233	4,177	4,033
	계	6,998	7,071	6,968	6,862	6,261	6,033	5,993	6,098	6,059	6,012	5,908	5,628
충북	남	1,834	1,853	1,801	1,647	1,533	1,464	1,438	1,405	1,392	1,391	1,321	1,312
	여	3,884	3,908	3,888	3,713	3,535	3,437	3,399	3,384	3,362	3,365	3,300	3,297
	계	5,718	5,761	5,689	5,360	5,068	4,901	4,837	4,789	4,754	4,756	4,621	4,609
충남	남	2,933	2,938	2,911	2,814	2,379	2,280	2,275	2,243	2,227	2,221	2,211	2,070
	여	6,446	6,476	6,504	6,426	5,957	5,813	5,832	5,896	5,898	5,892	5,859	5,665
	계	9,379	9,414	9,415	9,240	8,336	8,093	8,107	8,139	8,125	8,113	8,070	7,735
전북	남	1,998	2,027	1,974	1,908	1,758	1,677	1,658	1,644	1,634	1,617	1,573	1,509
	여	6,523	6,559	6,517	6,475	6,225	6,066	6,048	5,997	5,950	5,912	5,858	5,742
	계	8,521	8,586	8,491	8,383	7,983	7,743	7,706	7,641	7,584	7,529	7,431	7,251
전남	남	2,973	3,002	2,918	2,854	2,694	2,438	2,418	2,417	2,399	2,380	2,322	2,239
	여	10,479	10,537	10,402	10,299	9,959	9,497	9,506	9,467	9,406	9,359	9,273	9,109
	계	13,452	13,539	13,320	13,153	12,653	11,935	11,924	11,884	11,805	11,739	11,595	11,348
경북	남	3,536	3,568	3,548	3,362	3,150	2,789	2,788	2,907	2,926	2,893	2,860	2,741
	여	9,643	9,691	9,645	9,519	9,140	8,688	8,733	9,165	9,235	9,203	9,150	9,030
	계	13,179	13,259	13,193	12,881	12,290	11,477	11,521	12,072	12,161	12,096	12,010	11,771
경남	남	3,259	3,301	3,263	3,101	2,803	2,560	2,557	2,555	2,539	2,532	2,449	2,285
	여	7,718	7,765	7,779	7,626	7,207	6,894	7,031	7,124	7,110	7,106	6,991	6,794
	계	10,977	11,066	11,042	10,727	10,010	9,454	9,588	9,679	9,649	9,638	9,440	9,079
제주	남	423	421	404	380	379	363	339	341	337	354	343	325
	여	857	856	834	804	805	796	766	787	790	810	808	800
	계	1,280	1,277	1,238	1,184	1,184	1,159	1,105	1,128	1,127	1,164	1,151	1,125
합계	남	53,014	53,626	53,441	51,830	48,315	45,365	45,033	44,788	44,667	44,442	43,763	40,870
	여	98,479	99,273	99,468	98,093	93,761	90,183	90,120	90,580	90,434	90,289	89,461	86,347
	계	151,493	152,899	152,909	149,923	142,076	135,548	135,153	135,368	135,101	134,731	133,224	127,217

\* 충청남도 값없음(1명) 제외

#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 지표 정의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소득의 중위 값의 일정 비율(보통 40%, 50%, 60%)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한 후 균등화된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의 비율로 정의한다.

절대적 빈곤선을 공식적 빈곤선으로 두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어 통상 상대적 빈곤율을 공표함으로써 국제비교에 활용되며, 과거 선진국들의 경우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사용해왔으나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이 적용되고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소득이 빈곤선 미만(이하)인 인구 수}}{\text{전체 인구 수}} \times 100$$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전체가구 빈곤율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된 2인 이상 비농가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을 살펴보면, 가처분소득 적용 시 전체가구는 2015년 13.8%로 전년대비 0.6%p 감소하였으며 2인 이상 비농가는 10.4%로 전년대비 0.6%p 감소하였다. 그러나 시장소득을 적용한 빈곤율을 살펴보면 2015년 빈곤율은 전체가구 18.6%, 2인 이상 비농가 14.5%로 각각 0.7%p,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2015년 전체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 효과의 확대를 의미한다. 즉,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책정되는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악화된 반면, 공적이전소득과 조세까지 고려한 가처분소득 적용 빈곤율의 경우 개선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소득 적용 빈곤율 하락에는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과 2015년 도입된 맞춤형 급여의 시행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OECD 국가의 소득분배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도 가처분소득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상대적 빈곤율은 약 11.1%로 한국의 빈곤율 14.6%보다 약 3.5%p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분석 대상 30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으며, 가장 높은 이스라엘보다는 약 4%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5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15	1년

### Checkpoint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은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약 0.6%p 하락한 13.8%로 나타났다. 2인 이상 비농가의 경우도 2003년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다 200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5년은 전년대비 0.6%p 하락한 10.4%를 나타내었다. 최근 들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간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 효과의 확대를 의미한다.

###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표 5-13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 (200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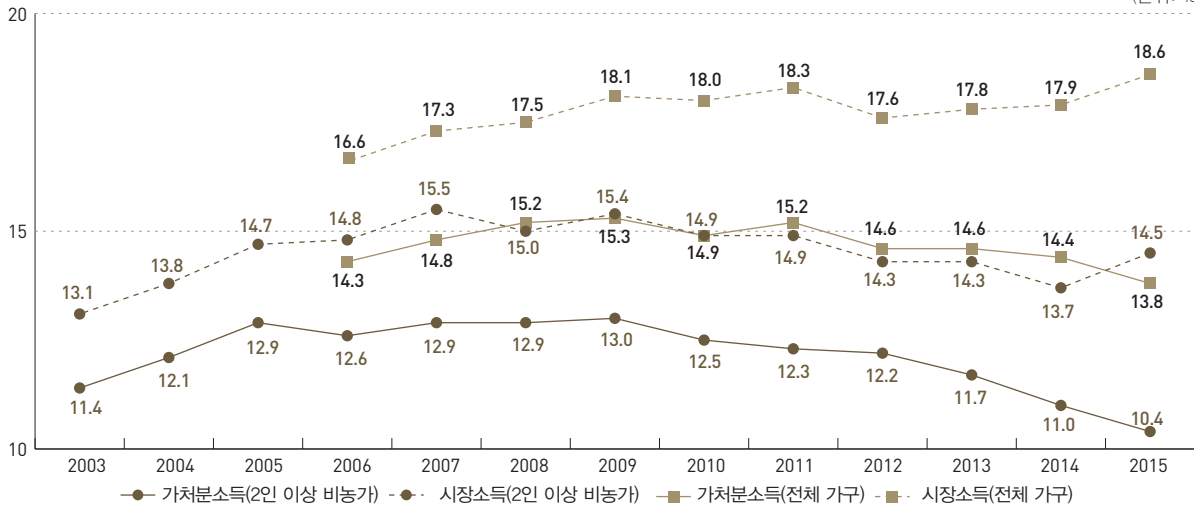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장소득	2인 이상 비농가	13.1	13.8	14.7	14.8	15.5	15.0	15.4	14.9	14.9	14.3	14.3	13.7	14.5
	전체가구	-	-	-	16.6	17.3	17.5	18.1	18.0	18.3	17.6	17.8	17.9	18.6
가처분소득	2인 이상 비농가	11.4	12.1	12.9	12.6	12.9	12.9	13.0	12.5	12.3	12.2	11.7	11.0	10.4
	전체가구	-	-	-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14.4	13.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그림 5-7 중위소득 50%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200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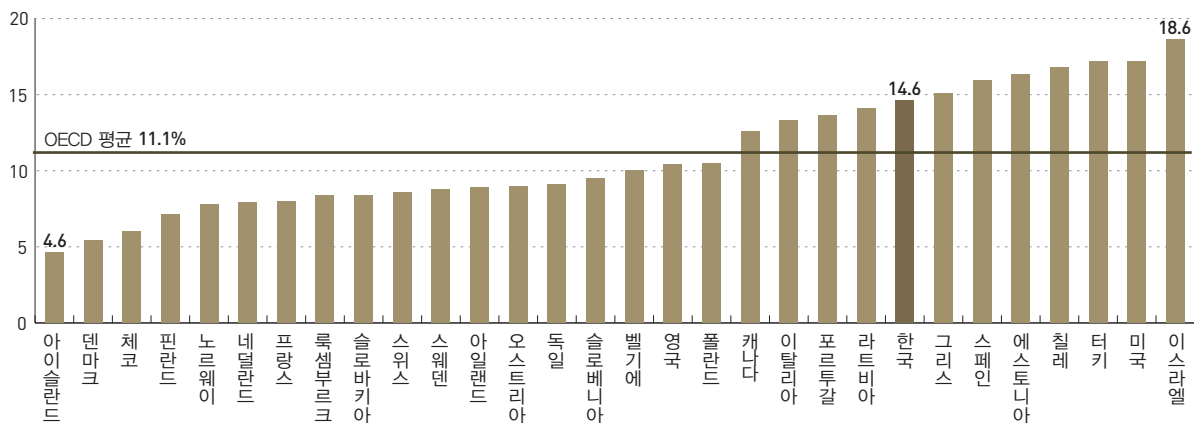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그림 5-8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비교 (2013)

(단위: %)



주: OECD평균은 2013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로 산출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 상대적 노인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 지표 정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상대적 빈곤선(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65세이상)의 비율로 정의한다.

노인은 통상 근로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은 빈곤정책, 노후소득보장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정립하는데 참고로 활용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소득이 빈곤선 미만(이하) 노인 수}}{\text{전체 노인 수}} \times 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자료로 사용하여 빈곤율 등 소득분배 관련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2003년부터 조사지역이 도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1인가구가 포함되어 농어가를 제외한 빈곤율을 산출할 수 있다.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1인가구 포함 상대적 노인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2015년 44.7%로 전년도 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처분소득 적용 노인빈곤율은 2006년 4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1년 48.8%까지 이른 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을 살펴보면, 1인가구를 포함한 비농가의 경우 2015년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63.3%로 전년도에 비해 1.2%p 증가하였다. 시장소득 적용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08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세대의 지출은 생애주기가설에 입각한 소비의 평활화가 작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과 달리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출 적용 노인빈곤율을 산출하여 소득 적용 빈곤율과 비교해 보면, 2015년 가계지출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42.7%로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 44.7%에 비해 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계지출 적용 빈곤율 추이는 소득 적용 빈곤율 추이에 비해 그 변화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statistics”에 수록되어 있는 2013년도 가처분소득 기준 OECD 국가(30개국)의 상대적 노인빈곤율 평균은 11.4%이며, 우리나라는 49.6%로 분석대상인 OECD 30개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5	분기,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05	2015	1년

### Checkpoint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의 경우(1인가구 포함) 2008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1.2%p 증가한 63.3%로 나타나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1인가구 포함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1년 48.8%에까지 이른 후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전년도 보다 2.5%p 감소한 44.7%로 나타났다.

표 5-14 중위 50% 기준 상대적 노인(65세 이상)빈곤율 (200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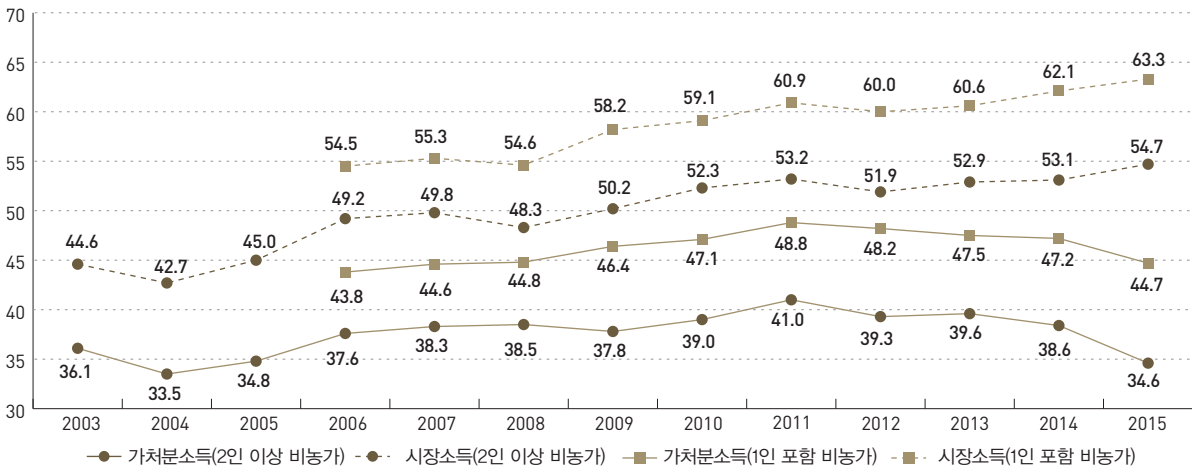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장소득	2인 이상 비농가	44.6	42.7	45.0	49.2	49.8	48.3	50.2	52.3	53.2	51.9	52.9	53.1	54.7
	1인 포함 비농가	-	-	-	54.5	55.3	54.6	58.2	59.1	60.9	60.0	60.6	62.1	63.3
가처분소득	2인 이상 비농가	36.1	33.5	34.8	37.6	38.3	38.5	37.8	39.0	41.0	39.3	39.6	38.4	34.6
	1인 포함 비농가	-	-	-	43.8	44.6	44.8	46.4	47.1	48.8	48.2	47.5	47.2	44.7
가계지출	2인 이상 비농가	24.2	24.6	27.1	29.3	30.3	29.9	33.4	33.4	35.3	31.9	33.0	36.5	34.9
	1인 포함 비농가	-	-	-	35.7	36.4	37.3	40.7	39.8	40.7	38.5	40.0	43.3	4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빈곤통계연보, 2016.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5-9 중위 50% 기준 소득별 상대적 노인(65세 이상)빈곤율 (2003~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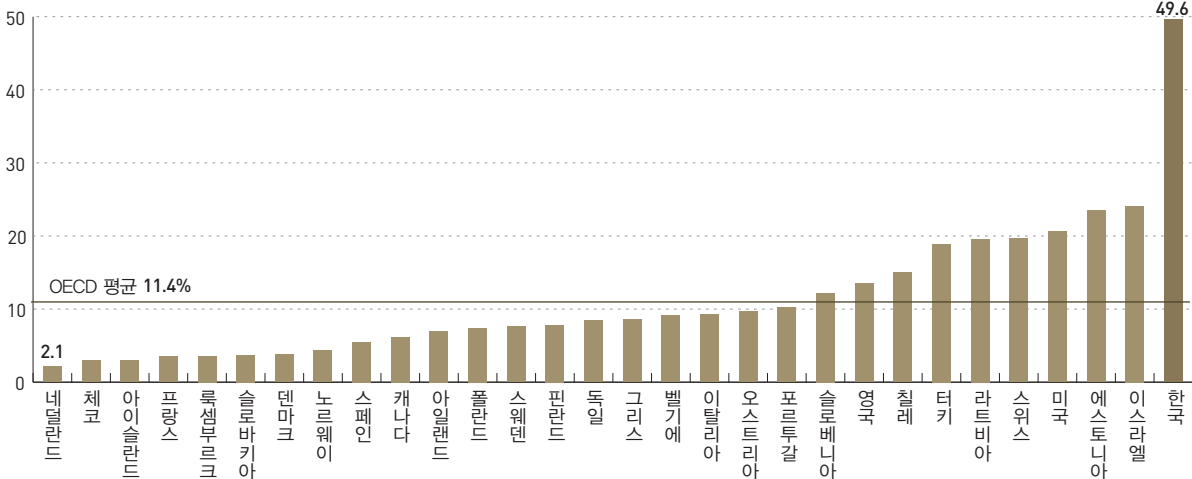


주: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빈곤통계연보, 2016.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5-10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 비교 (2013)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3년 자료가 있는 국가로 산출

2) 측정산식과 자료의 차이로 OECD 공표 수치와 빈곤통계연보 수치 간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 소득5분위배율

Income quintile share ratio (s80/s20)

## 지표 정의

소득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소득10분위배율과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상위 20\% 평균 소득}}{\text{하위 20\% 평균 소득}}$$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농가경제조사』 자료(전체가구 지표 산출시)를 이용하여 산출한 소득5분위배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인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의 경우 2015년 5.11배로 전년도 5.41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이 도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가 된 2003년부터는 2인 이상 비농가의 소득5분위배율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03년 4.43배에서 2008년에는 4.98배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4.22배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를 볼 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인 이상 비농가는 2009년부터, 전체가구는 2011년부터 소득5분위 배율로 측정된 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2015년 8.24배로 전년도 8.08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인 이상 비농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2008년 6.16배를 나타낸 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4년과 2015년 모두 5.75배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5분위배율은 분석대상인 OECD 30개국 중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5.4배로 OECD 평균(분석대상 30개국)인 5.3배보다 다소 높다. 아이슬란드(3.4)와 덴마크(3.6)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칠레(10.6)와 미국(8.6)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5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15	1년

## Checkpoint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경우 2015년 5.11배로 전년도 5.41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2015년 8.24배로 2006년 지표 산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표 5-15 소득5분위배율 (200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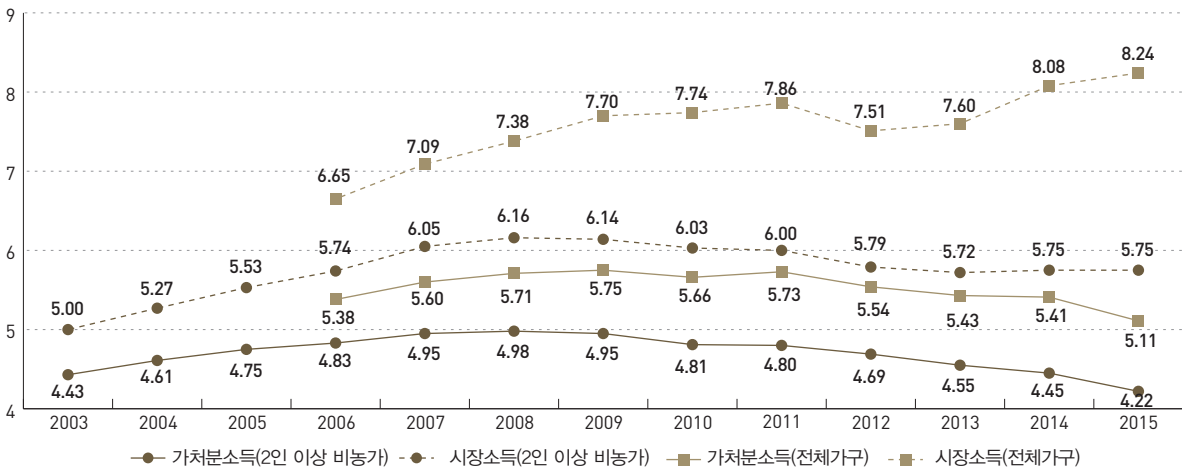
(단위: 배)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장소득	2인 이상 비농가	5.00	5.27	5.53	5.74	6.05	6.16	6.14	6.03	6.00	5.79	5.72	5.75	
	전체가구	-	-	-	6.65	7.09	7.38	7.70	7.74	7.86	7.51	7.60	8.08	8.24
가처분소득	2인 이상 비농가	4.43	4.61	4.75	4.83	4.95	4.98	4.95	4.81	4.80	4.69	4.55	4.45	4.22
	전체가구	-	-	-	5.38	5.60	5.71	5.75	5.66	5.73	5.54	5.43	5.41	5.1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그림 5-11 소득5분위배율 (200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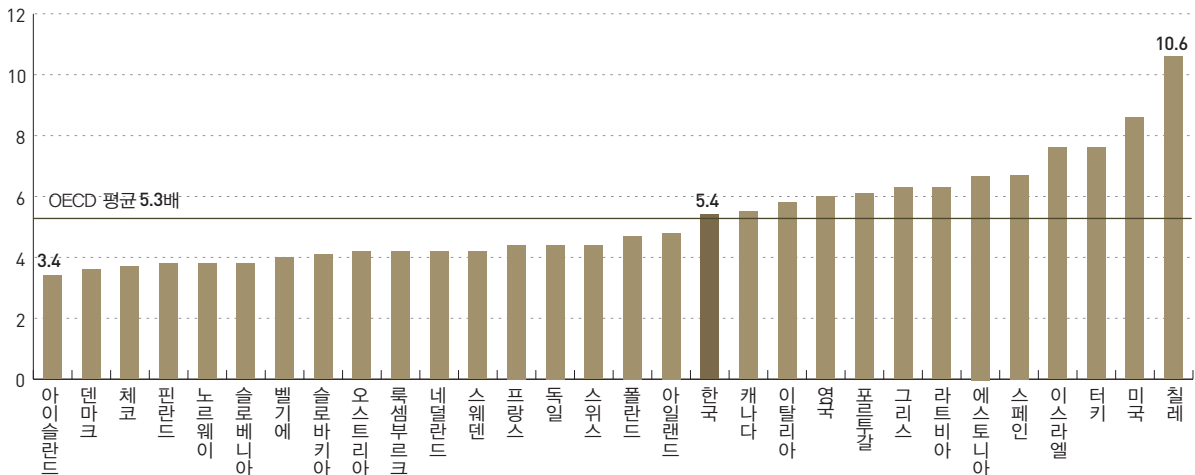
(단위: 배)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그림 5-12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 비교 (2013)

(단위: 배)



주: OECD 평균은 2013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로 산출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 지표 정의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며, 소득불평등의 국제적 비교에도 많이 활용된다.

## 측정 산식

$$\frac{1}{n} (n + 1 - 2 \left( \frac{\sum_{i=1}^n (n + 1 - i)y_i}{\sum_{i=1}^n y_i} \right))^*$$

\* n: 전체 인구 수, y<sub>i</sub>: i번째 인구의 소득, i: 1, ..., n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농가경제조사』 자료(전체가구 지표 산출 시)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경우 2015년 0.295로 전년도(0.302)에 비해 하락하였다. 2006년 0.306에서 조금씩 불평등도가 증가하면서 2009년 0.314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지역이 도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가 된 2003년부터 2인 이상 비농가의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0.277에서 2008년 0.296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0.270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2015년 0.341로 전년도와 같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2인 이상 비농가는 2015년 0.307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소득 기준과 달리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는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분석대상인 OECD 30개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201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2로 OECD 30개국 평균인 0.311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0.244), 노르웨이(0.252), 덴마크(0.254) 순이며, 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0.465), 미국(0.396), 터키(0.393) 순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5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15	1년

### Checkpoint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경우 2015년 0.295, 2인 이상 비농가의 경우 0.270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시장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2015년 지니계수는 0.341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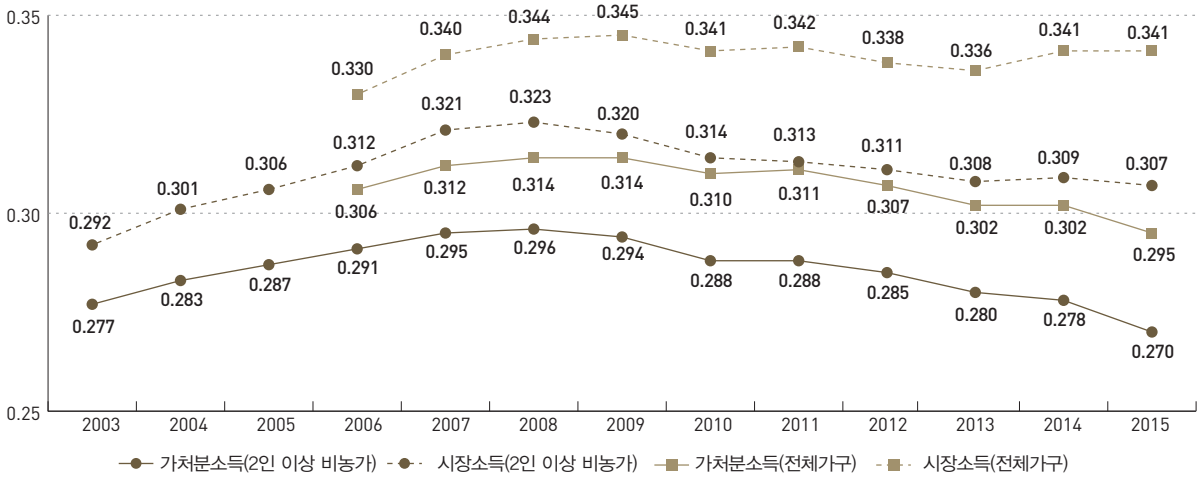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표 5-16 지니계수 (2003~2015)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장소득	2인 이상 비농가	0.292	0.301	0.306	0.312	0.321	0.323	0.320	0.314	0.313	0.311	0.308	0.309	0.307
	전체가구	-	-	-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0.338	0.336	0.341	0.341
가처분소득	2인 이상 비농가	0.277	0.283	0.287	0.291	0.295	0.296	0.294	0.288	0.288	0.285	0.280	0.278	0.270
	전체가구	-	-	-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0.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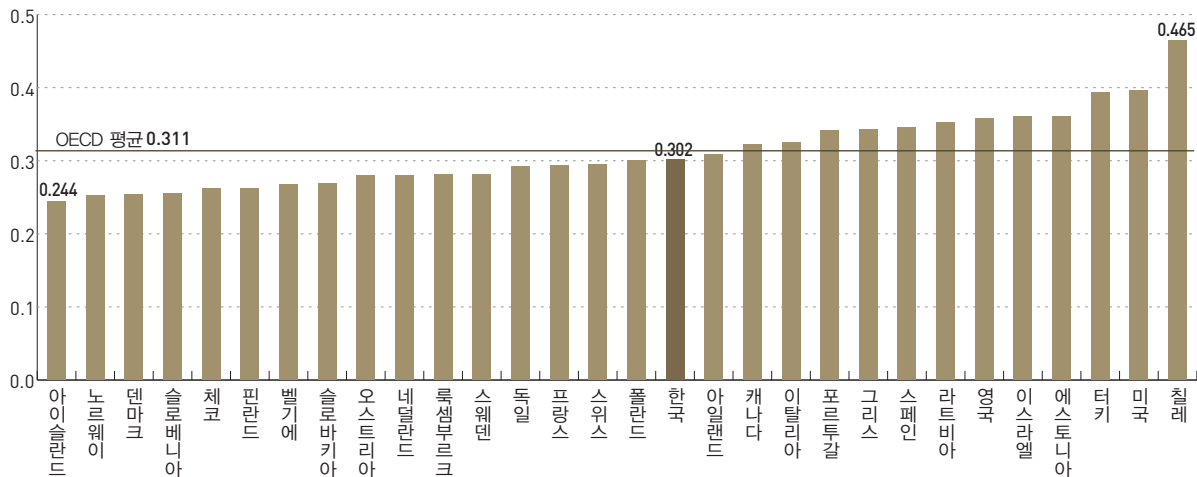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그림 5-13 지니계수 (2003~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그림 5-14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비교 (2013)



주: OECD평균은 2013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로 산출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Total Recipients and Take-up Rates of Basic (Old-Age) Pension Allowance

## 지표 정의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에 대해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들의 소득 일정부분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text{65세 이상 노인 수}} \times 100$$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2008년 1월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의 60%에게만 급여지급이 이루어졌지만,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200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로 확대되었다. 2008년 도입 당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약 507만 명) 중 57.2%에 해당하는 약 290만 명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제도 확대에 따라 수급자가 약 363만명(수급률 68.9%)에 달하였다. 이후 수급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수급률은 다소 감소하여, 기초(노령)연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2014년 6월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65세 이상) 중 65.1%에 해당하는 약 416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였다.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급여가 지급되며, 보장수준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최대급여액은 월 1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기초연금은 최대 월 2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는 등 보장수준이 기초(노령)연금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2015년의 경우 2014년보다 급여가 1.3% 인상되었다(단독가구 202,600원, 부부 2인 수급가구 324,16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노인인구(약 652만 명) 중 66.8%에 해당하는 약 435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2013년보다 약 29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수급률은 1.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66.4%에 해당하는 약 450만 명으로 2014년에 비해 수급률은 0.4%p 감소하였으나 수급자 수는 약 14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2008	2014	1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2015	1년

### Checkpoint

기초연금의 수급률은 2014년 12월 기준 66.8%로 2013년 12월에 비해 2.1%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정책대상자가 확대되었다. 다만, 2015년의 경우 수급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수급률은 0.5%p 감소하였다. 한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초연금 지급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과 경북 그리고 전북 순으로 지급률이 높았고, 서울과 경기 그리고 세종 순으로 지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연금 지급자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는 전체 기초연금 지급자의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자 수 및 지급률 (2008~2015)

(단위: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초연금)	2015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5,069,273	5,267,708	5,506,352	5,700,972	5,980,060	6,250,986	6,520,607	6,771,214
지급자 수	2,897,649	3,630,147	3,727,940	3,818,186	3,933,095	4,065,672	4,353,482	4,495,183
지급률	57.2	68.9	67.7	67.0	65.8	65.0	66.8	66.4

주: 각 연도 12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016

표 5-18 성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자 수 및 지급률 (2008~2015)

(단위: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초연금)	2015 (기초연금)
남성	915,590	1,258,681	1,302,090	1,340,600	1,386,412	1,441,676	1,579,746	1,643,697
	44.9	59.1	58.1	57.5	56.2	55.5	57.9	57.7
여성	1,982,059	2,371,466	2,425,850	2,477,586	2,546,683	2,623,996	2,773,736	2,851,486
	65.4	75.6	74.3	73.6	72.5	71.8	73.1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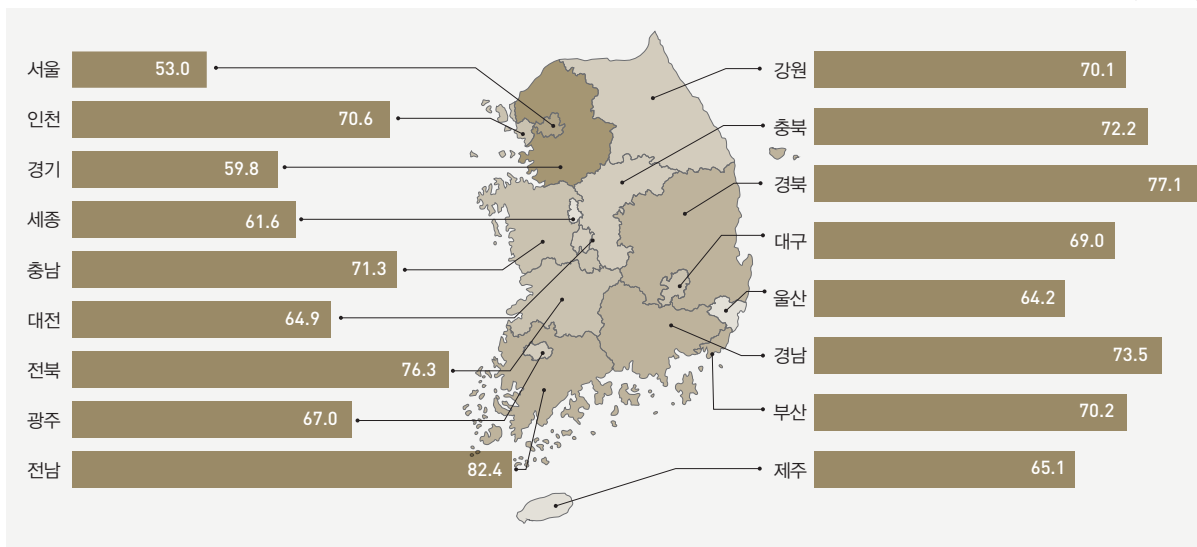
주: 각 연도 12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016

그림 5-15 시도별 기초연금 지급률 현황 (2015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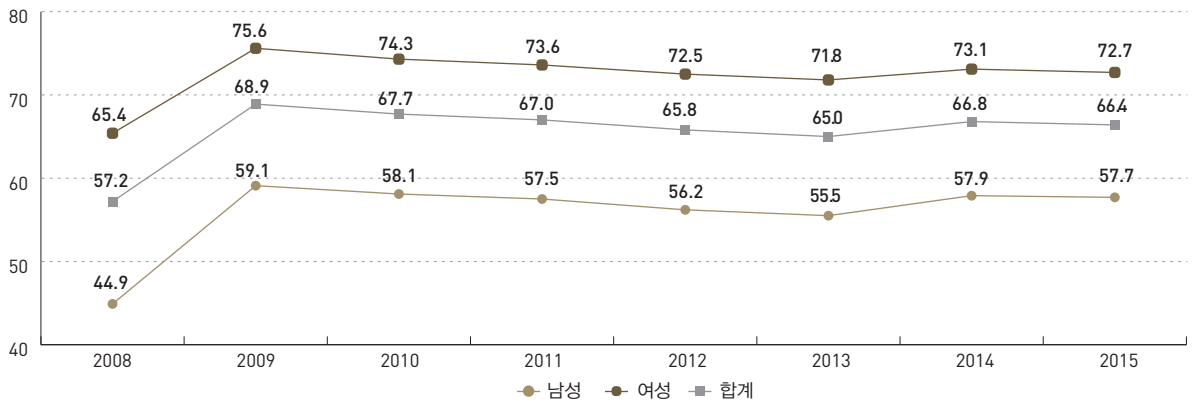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016

**그림 5-16** 성별 기초노령 및 기초연금 수급률 (2008~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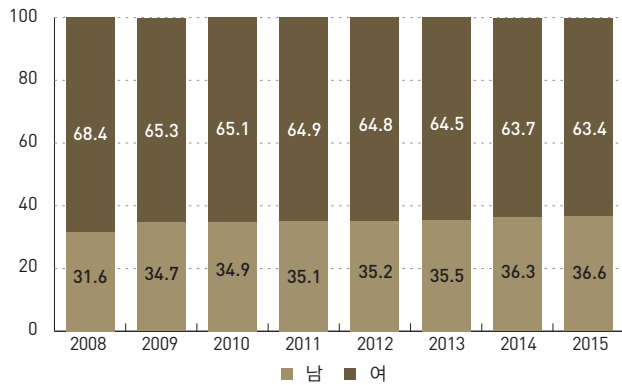


주: 각 연도 12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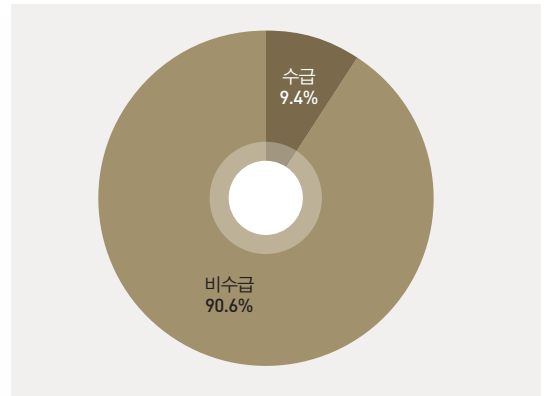
**그림 5-1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성별 구성 (2008~2015)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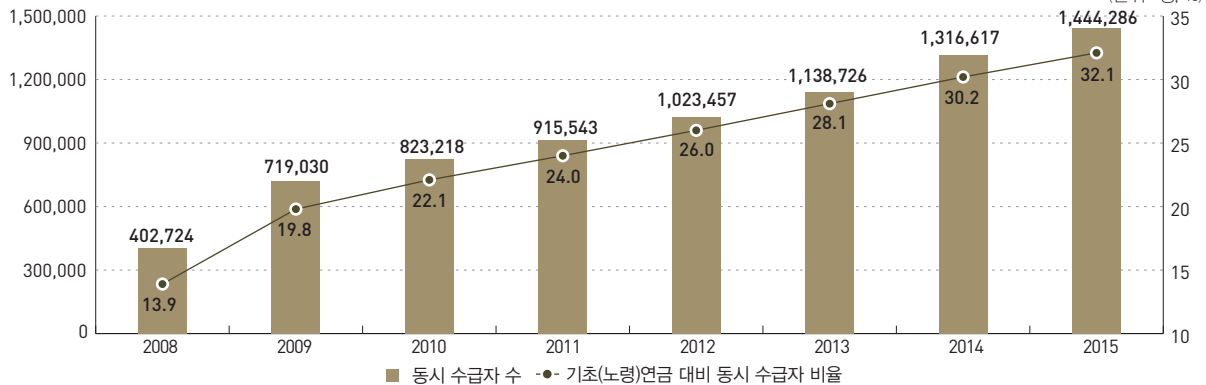
**그림 5-18**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중 (2015)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그림 5-19**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2008~2015)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016

#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National Pension Participants by Insurance Type

## 지표 정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화 및 장애발생 그리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지표를 통해 최근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노후준비가 점점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각 가입종별 가입자 수}}{\text{전체 가입자 수}} \times 100$$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실시되어 1995년 농어민, 1999년 도시지역 거주자, 2006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2월 말 현재 전체 가입자는 약 2,157만 명이다.

가입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약 59.4%를, 지역가입자는 약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비율이 1% 약간 상회하고 있었다. 사업장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가입자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2년부터 가입자 수와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측면의 특징으로 여성가입자의 꾸준한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 증가 및 여성의 가입유인 확대(출산 크레딧, 임의가입제도 활성화 등)를 통해 발생한 효과라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월급여가 125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32.1%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9%p 감소한 것이다. 소득구간이 360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비중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15	1년

### Checkpoint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는 1988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으로 거의 60%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2012년부터 그 규모와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도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표 5-19 연도별·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계	농어촌	도시		
1988	4,432,695	4,431,039	-	-	-	1,370	286
		99.96	-	-	-	0.03	0.01
1992	5,021,159	4,977,441	-	-	-	32,238	11,480
		99.13	-	-	-	0.64	0.23
1995	7,496,623	5,541,966	1,890,187	1,890,187	-	48,710	15,760
		73.93	25.21	25.21	-	0.65	0.21
1999	16,261,889	5,238,149	10,822,302	2,083,150	8,739,152	32,868	168,570
		32.21	66.55	12.81	53.74	0.20	1.04
2003	17,181,778	6,958,794	9,964,234	2,062,011	7,902,223	23,983	234,767
		40.50	57.99	12.00	45.99	0.14	1.37
2006	17,739,939	8,604,823	9,086,368	1,972,784	7,113,584	26,991	21,757
		48.51	51.22	11.12	40.10	0.15	0.12
2010	19,228,875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54.16	45.11	10.15	34.96	0.47	0.26
2011	19,885,911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55.20	43.63	9.99	33.64	0.86	0.32
2012	20,329,060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56.39	42.15	9.62	32.53	1.02	0.44
2013	20,744,780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57.54	41.04	9.46	31.59	0.86	0.56
2014	21,125,135	12,309,856	8,444,710	1,972,393	6,472,317	202,536	168,033
		58.27	39.97	9.34	30.64	0.96	0.80
2015	21,568,354	12,805,852	8,302,809	1,949,757	6,353,052	240,582	219,111
		59.37	38.50	9.04	29.46	1.12	1.02

주1: 납부에외자 포함

주2: 1)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2)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3)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를 의미

4)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를 의미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국민연금공단연구원, 국민연금생생통계, 각 연도

표 5-20 시도별·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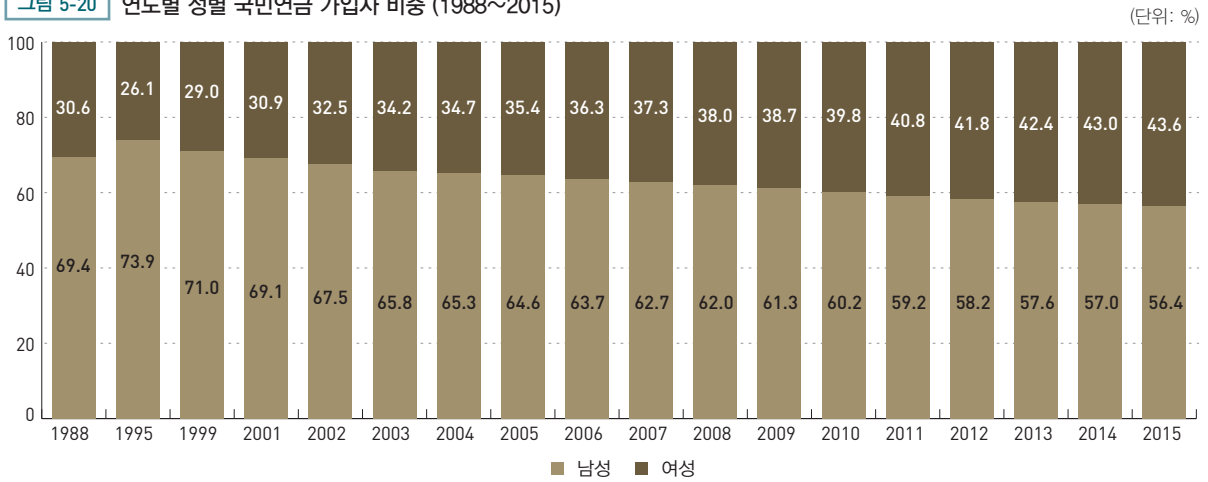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가입자	5,930	1,292	878	1,056	508	580	471	72	4,922	519	599	816	630	680	1,042	1,338	238
사업장	4,117	680	444	555	265	326	296	44	2,861	257	339	473	316	349	582	784	119
지역	1,706	580	410	479	229	239	167	26	1,951	250	247	325	298	315	438	529	115
임의(계속)	107	31	24	22	13	15	8	2	110	13	13	17	17	17	22	24	5

주 : 납부에외자 포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5 국민연금통계연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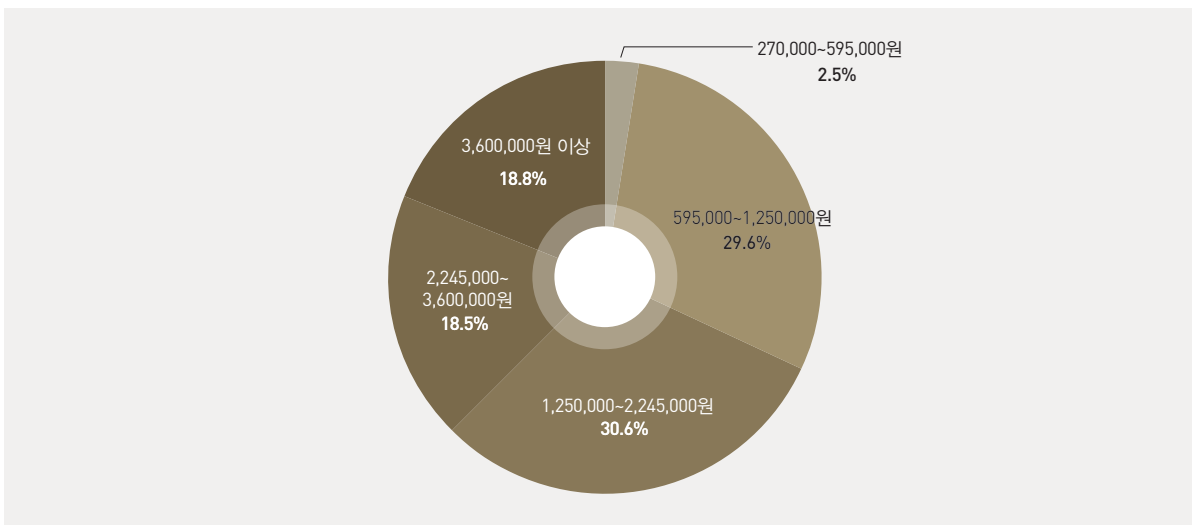
그림 5-20 연도별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 (1988~2015)



주: 납부예외자 포함

자료: 국민연금공단연구원, 국민연금생생통계

그림 5-21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 (2015)



주: 납부예외자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5 국민연금통계연보, 2016

#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Number of All Beneficiaries in National Pension by Type of Benefit

## 지표 정의

국민연금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급여유형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된다.

본 지표를 통해 근로능력이 감퇴된 이후의 소득보장 적용 인구규모를 알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각 급여종별 수급자 수}}{\text{전체 수급자 수}} \times 100$$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연령이 60~65세에 달한 경우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급여이다. 2015년 현재 약 315만 명이 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20만 명 정도 증가한 수치이며,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3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이다(장애 4급인 경우 일시금 지급). 장애연금의 수급 규모는 노령연금 등의 급여수급자가 매우 적었던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1993년 10.7%, 1998년 6.6%), 2015년 현재는 약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그 수급자 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형태의 급여와 함께 국민연금은 일시금 형태로도 수급자에게 지급되어 있는데, 제도도입 초기의 경우 전체 일시금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약 84%를(1998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았지만 연금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그 비중이 감소하여, 현재는 전체 수급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현재 약 21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만 6천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반환일시금 수급자 증가에 기인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405만 명으로 1993년 이후 약 7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약 7.5% 증가하였다. 전체 수급자 중에서 일시금 수급자의 비율은 제도 시행 10년 후인 1998년의 경우 전체 수급자의 약 84%에 달하였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그 비율이 감소하여 2015년 일시금 수급자의 비율은 약 5%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성별 노령연금 수급자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여성의 비중은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생생통계 Silver Book

표 5-21 연도별 종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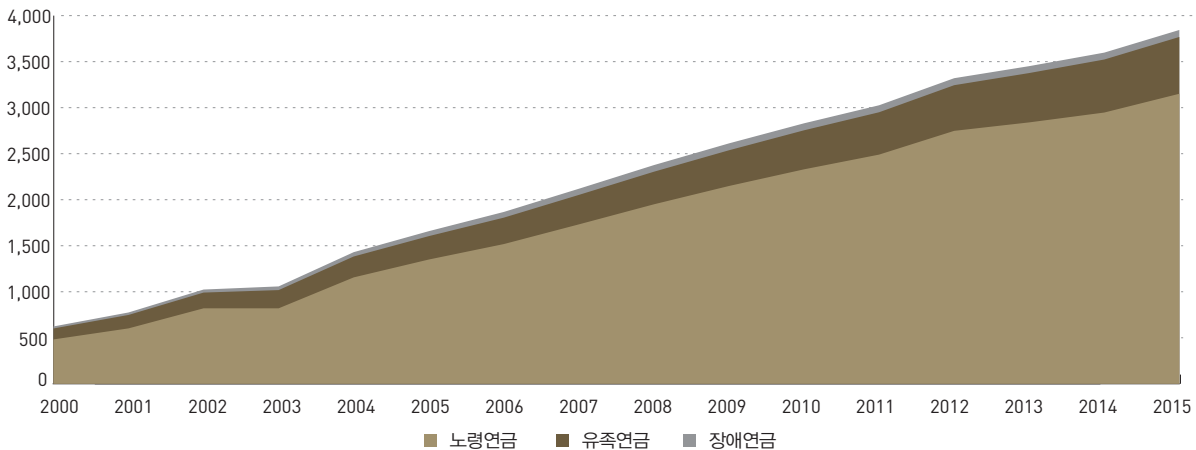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1988	1993	1998	2004	2008	2012	2013	2014	2015	
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수	-	10,971	112,946	1,156,098	1,949,867	2,748,455	2,840,660	2,947,422	3,151,349
		비율		30.3	56.3	80.8	82.1	82.8	82.3	81.9	82.0
	장애연금	수급자 수	-	3,896	13,245	47,260	72,166	75,934	75,041	75,387	75,688
		비율		10.7	6.6	3.3	3.0	2.3	2.2	2.1	2.0
	유족연금	수급자 수	-	21,387	74,334	226,806	353,594	496,073	536,161	575,706	617,084
		비율		59.0	37.1	15.9	14.9	14.9	15.5	16.0	16.1
소계		-	36,254	200,525	1,430,164	2,375,627	3,320,462	3,451,862	3,598,515	3,844,121	
일시금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	3,136	545,611	1,061,643	100,296	138,456	176,531	180,233	147,035	180,705
		비율	100.0	99.6	99.4	90.0	87.4	89.3	89.6	86.0	87.2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수	-	2,341	1,625	3,609	4,902	2,862	2,993	2,651	2,597
		비율		0.4	0.2	3.2	3.1	1.4	1.5	1.6	1.3
	사망일시금	수급자 수	-	-	4,529	7,561	15,129	18,235	18,025	21,219	23,949
		비율			0.4	6.8	9.5	9.2	9.0	12.4	11.6
소계		3,136	547,952	1,067,797	111,466	158,487	197,628	201,251	170,905	207,251	
총계		3,136	584,206	1,268,984	1,541,630	2,534,114	3,518,090	3,653,113	3,769,420	4,051,372	

주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그림 5-22 종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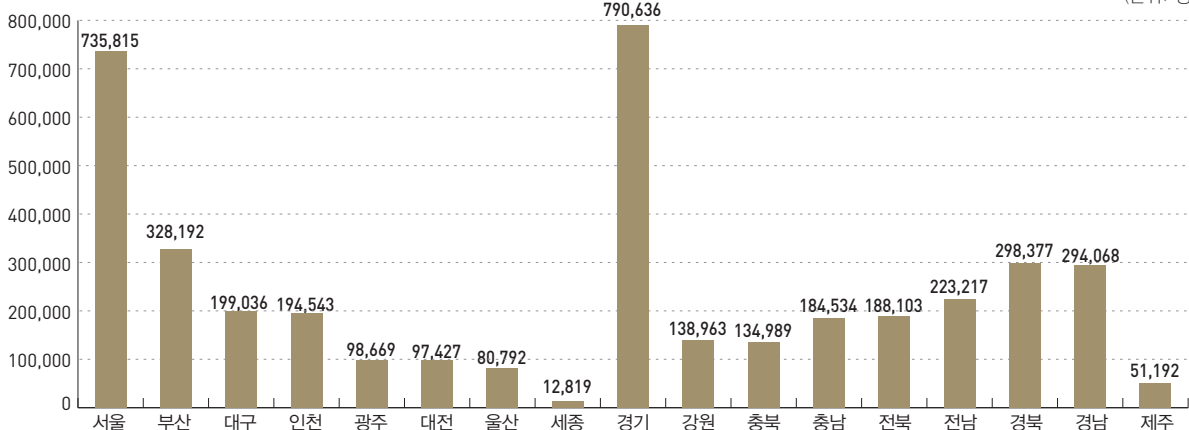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 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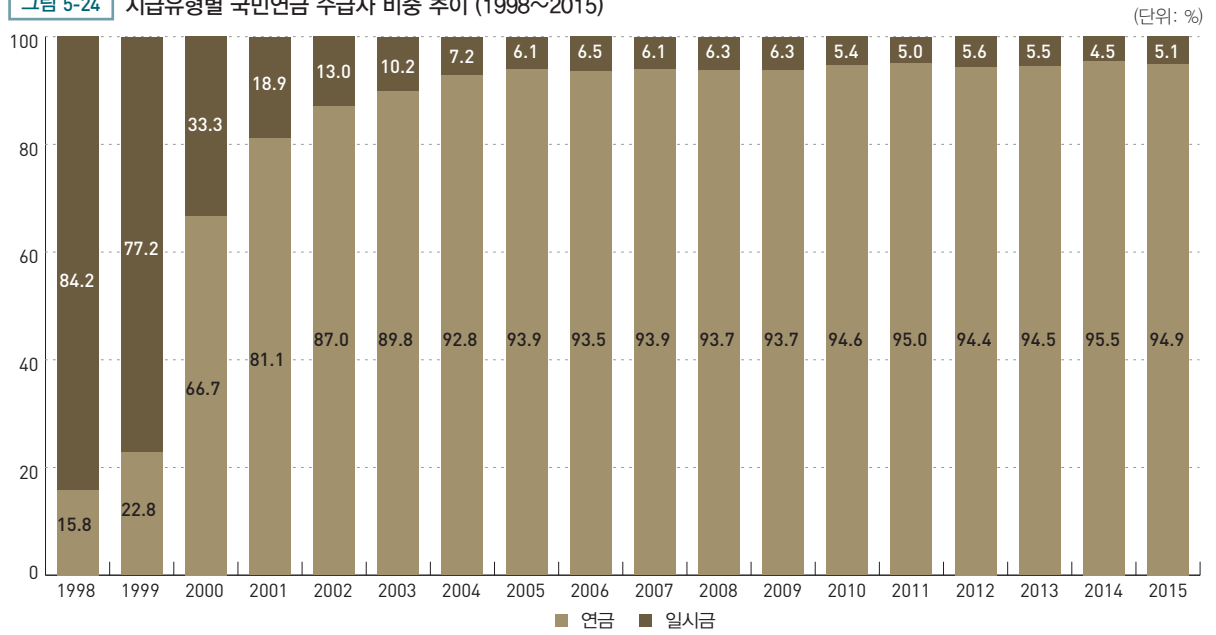
그림 5-23 시도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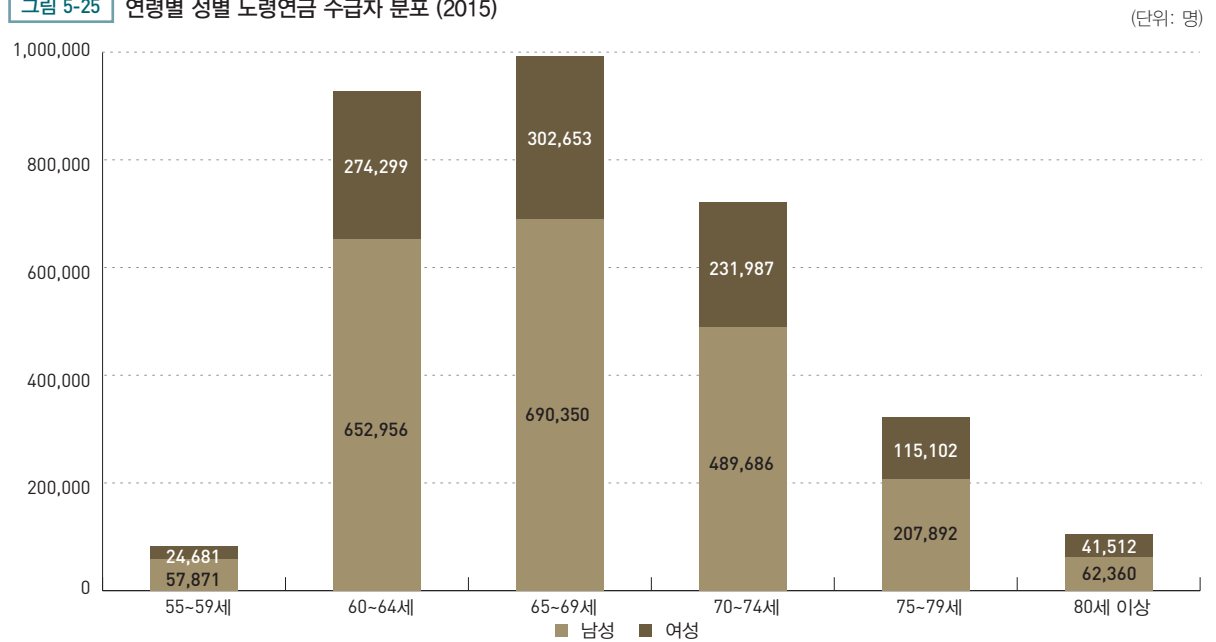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5 국민연금통계, 2016

그림 5-24 지급유형별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 추이 (1998~2015)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5 국민연금통계, 2016

그림 5-25 연령별 성별 노령연금 수급자 분포 (2015)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5 국민연금통계, 2016

#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Public Pension take-up rates for people aged 65 and over

## 지표 정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의 합계를 65세 이상 추계인구로 나눈 비율임.

## 측정 산식

$$\frac{\text{각 연금 65세 이상 수급자의 합}}{\text{65세 이상 추계 인구}} \times 100$$

본 지표는 5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직우체국) 중 수급자의 수가 많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 수의 합계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2004년 13.2%였던 공적연금 수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65세 인구의 약 40%가 공적연금을 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나, 2004년에 비해 수급률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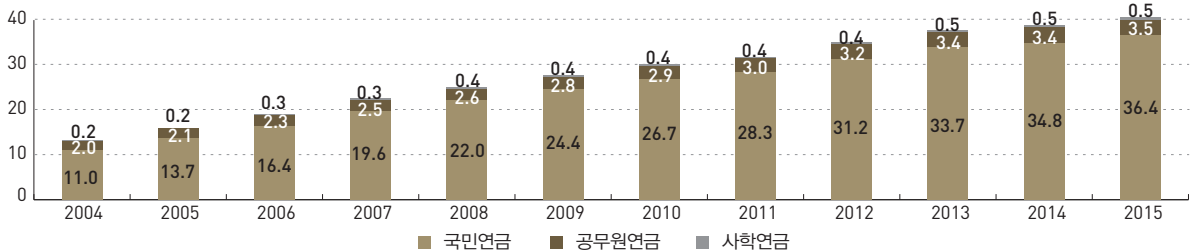
(단위: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550,180 13.2	704,194 16.1	870,495 19.0	1,079,922 22.4	1,252,152 25.0	1,432,387 27.6	1,606,024 30.0	1,800,167 31.8	2,050,717 34.8	2,305,340 37.6	2,524,786 38.7	2,742,708 40.4
국민연금	458,419 11.0	600,421 13.7	751,897 16.4	944,651 19.6	1,103,007 22.0	1,268,935 24.4	1,428,414 26.7	1,605,959 28.3	1,835,624 31.2	2,067,085 33.7	2,267,567 34.8	2,467,059 36.4
공무원연금	82,884 2.0	93,468 2.1	104,942 2.3	119,471 2.5	131,482 2.6	143,882 2.8	155,777 2.9	169,979 3.0	188,006 3.2	206,163 3.4	222,325 3.4	240,041 3.5
사학연금	8,877 0.2	10,305 0.2	13,656 0.3	15,800 0.3	17,663 0.4	19,570 0.4	21,833 0.4	24,229 0.4	27,087 0.4	32,092 0.5	34,894 0.5	35,608 0.5

자료 : e-나라지표-부문별 지표-공적연금 수급률(2016.10.24. 추출)

그림 5-26 65세 이상 연금종류별 수급률 (2004~2015)

(단위: %)



자료 : e-나라지표-부문별 지표-공적연금 수급률(2016.10.24. 추출)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15	1년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	2015	1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내부자료	-	2015	1년

### Checkpoint

공적연금 수급률(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률의 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공적연금 수급률은 19%에 불과했는데, 10년 동안 수급률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급자 수는 약 187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 규모의 증가에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자 수가 약 172만 명 증가하였으며, 수급률도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e나라지표(부문별 지표-공적연금 수급률)

#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Average Benefit Amount in National Pension by Type of Benefit

## 지표 정의

국민연금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평균지급액 지표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금수급액 수준을 알 수 있다.

## 측정 산식

총 연금지급액

전체 수급자 수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또한,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노령연금의 연평균 급여액은 2015년 394만 원으로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약 11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연금의 연평균 급여액은 44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연금 급여액 수준은 장애연금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노령연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이 노령연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가입 기간의 증가 등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노령연금의 평균 급여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시금의 경우 2015년 평균 급여액은 약 406만 원으로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2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환일시금 총 급여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증가에 대응하여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및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 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노령연금은 394만 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각각 약 445만 원, 약 258만 원인데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약 11만 원, 약 5만 원, 약 4만 원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일시금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던 총 급여액이 전년도보다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환일시금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5 국민연금 생생통계 Silver Book

표 5-23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연평균 급여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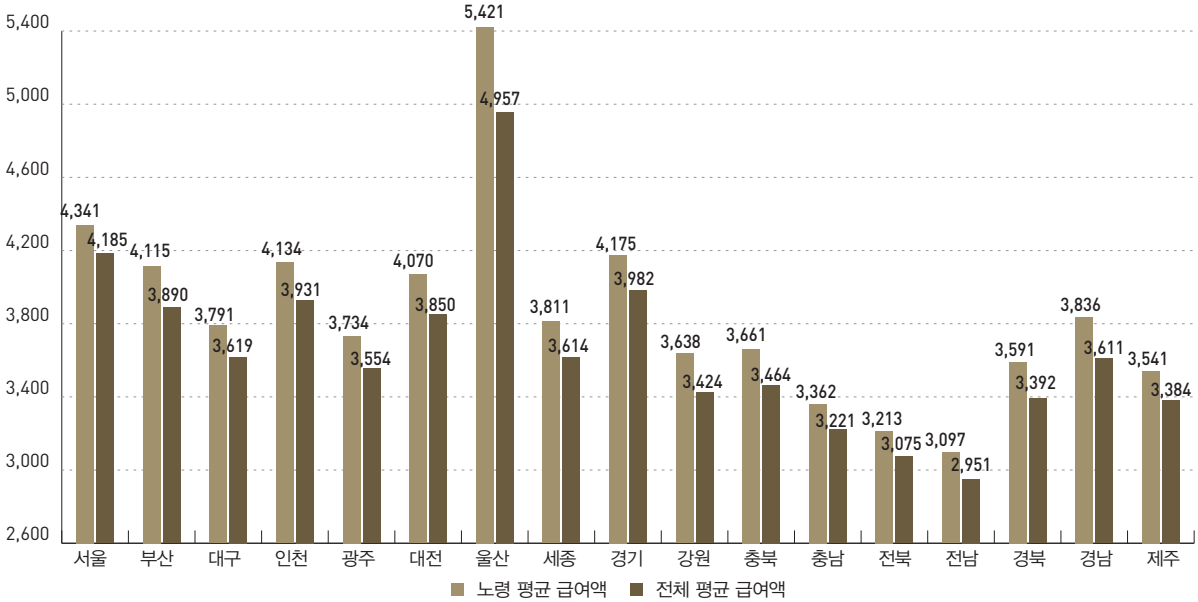
(단위: 천 원)

구분		1999	2004	2008	2012	2013	2014	2015	
국민연금	소계	총 급여액	477,350,383	2,568,966,021	5,764,985,965	10,837,243,194	12,361,972,797	13,087,467,966	14,342,682,741
		평균 급여액	1,671	1,796	2,427	3,264	3,581	3,637	3,731
	노령	총 급여액	299,592,241	1,987,450,647	4,765,527,612	9,327,086,191	10,705,594,320	11,295,917,329	12,415,110,788
		평균 급여액	1,706	1,719	2,444	3,394	3,769	3,832	3,940
	장애	총 급여액	45,739,771	163,629,119	268,100,552	314,462,857	326,167,915	331,603,350	336,567,621
		평균 급여액	2,706	3,462	3,715	4,141	4,347	4,399	4,447
유족	총 급여액	132,018,371	417,886,255	731,357,801	1,195,694,146	1,330,210,562	1,459,947,287	1,591,004,332	
	평균 급여액	1,417	1,842	2,068	2,410	2,481	2,536	2,578	
일시금	소계	총 급여액	3,394,618,715	345,048,750	415,817,731	713,511,379	750,778,622	692,474,556	841,327,088
		평균 급여액	3,503	3,096	2,624	3,610	3,731	4,052	4,059
	장애	총 급여액	11,887,377	29,297,315	47,920,508	34,653,608	38,736,640	34,471,226	35,522,321
		평균 급여액	6,115	8,118	9,776	12,108	12,942	13,003	13,678
	반환	총 급여액	3,378,751,585	303,193,832	348,026,409	648,045,442	679,144,836	618,468,248	759,703,922
		평균 급여액	3,509	3,023	2,514	3,671	3,768	4,206	4,204
	사망	총 급여액	3,979,753	12,557,603	19,870,814	30,812,329	32,897,146	39,535,082	46,100,845
		평균 급여액	973	1,661	1,313	1,690	1,825	1,863	1,925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5-27 시도별 평균 연금수급액 (2015)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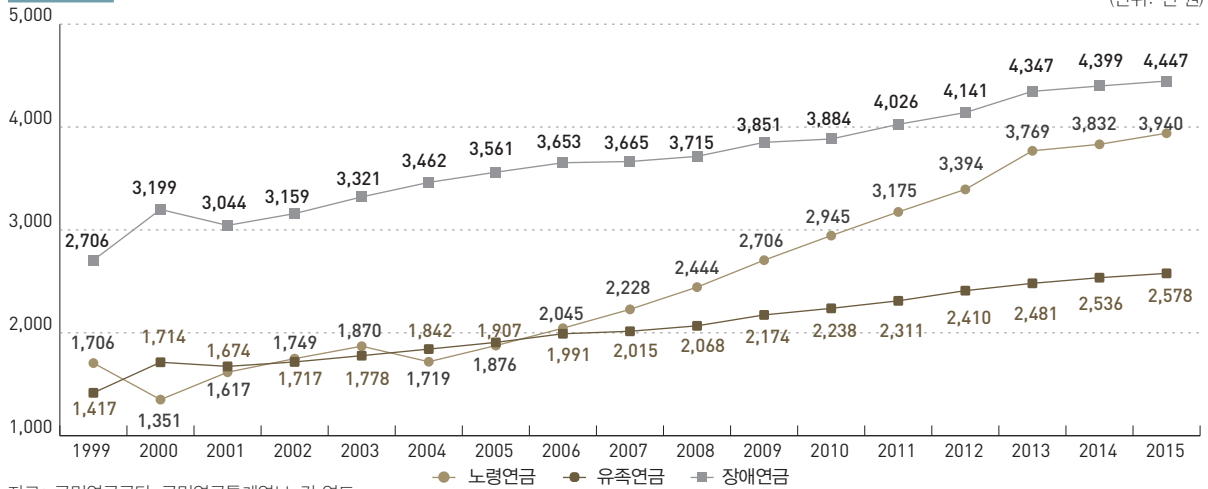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5 국민연금통계연보, 2016



**그림 5-28** 급여종류별 연평균 급여액 (199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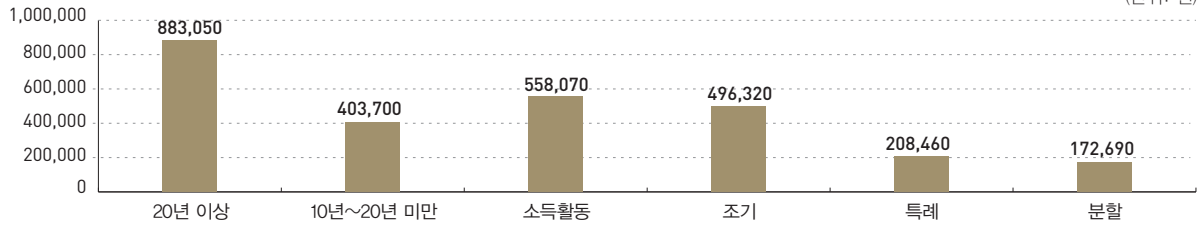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5-29** 가입 기간별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 (2015)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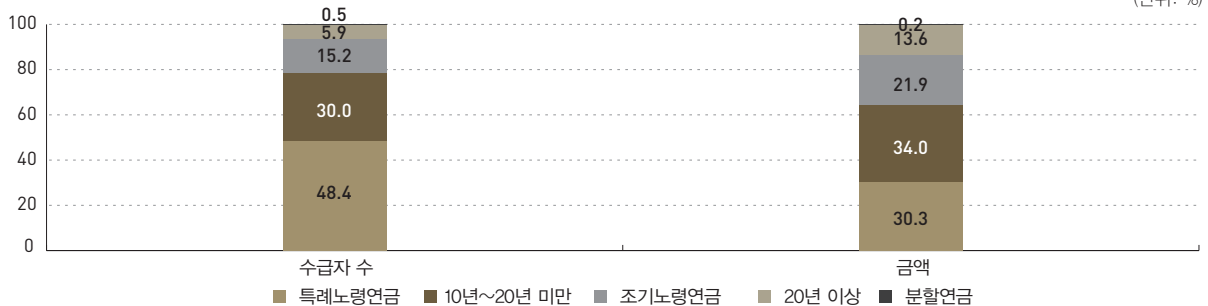


주: 1) 소득활동: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세후 월평균 국민연금 A값에 준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2) 조기노령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거나 세 후 월평균 국민연금 A값에 준하는 소득에 미달할 경우, 정상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  
 3)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상대방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1세가 되면, 상대방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15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6  
 원자료: 국민연금 월별사업통계(안)(2015.12)

**그림 5-30** 가입 기간별 노령연금 수급자 및 월평균 지급액 비중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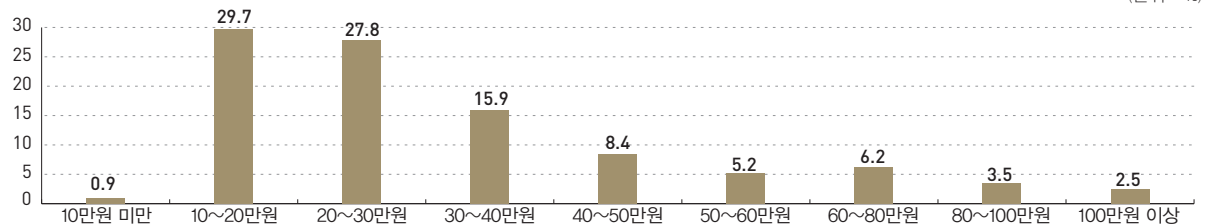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5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6

**그림 5-31** 월평균 급여액 수준별 연금 수급자 분포 (2015)

(단위: %)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5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6

# 6

## 건강

- 01 기대수명(평균수명)
- 02 조사망률
- 03 저체중아 발생률
- 04 자살률
- 05 10대 다빈도 상병
- 06 현재 흡연율
- 07 고위험 음주율
- 08 비만율
- 09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 10 평균 재원일수
- 11 1일 외래환자 수
- 12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 13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14 의료보장 적용 인구
- 15 의사 수
- 16 병상 수
- 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 1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 통 계 로 보 는 사 회 보 장

# 2016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건강수준	기대수명(평균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인지율	
	조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영아사망률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저체중아 발생률	조산율	
	자살률	정신장애 유병률 우울장애 유병률	
	10대 다빈도 상병	암 발생률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건강관리	현재 흡연율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청소년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연간 음주율 청소년 현재 음주율 1인당 알콜소비량
		비만율	청소년 비만율 걷기실천율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의료이용	평균 재원일수
1일 외래환자 수	1인당 의사진찰 건수 1인당 의료이용 현황 산전수진율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3세 대상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만1~18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의료자원	의료보장 적용 인구		
	의사 수	면허의료인 현황	
	병상 수	의료기관 현황	
	GDP 대비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건강보험보장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 기대수명(평균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 지표 정의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다. 한편 기대여명(Life expectancy at age x)이라 함은 어느 연령 (x)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연령이 0세일 때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 at birth)을 기대수명(평균수명)이라고도 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0세 이후의 총 생존연수 (정지인구)}}{\text{0세 시 관찰인구 수}}$$

**유의사항** OECD 보고통계와 통계청 생명표의 기대수명의 수치가 다른 이유는 생명표는 우리나라 남녀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기대수명을 산출하고, OECD는 단순한 평균값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2000년 76.0세에 비해 6.4세 증가하였다. 2014년 여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85.5세로 남자(79.0세)에 비해 6.5세 높았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2000년 79.6세이었으며, 14년 동안 5.9세 증가하였으며, 남자의 기대수명은 같은 기간 동안 6.7세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곳은 서울(83.6세)로 가장 낮은 울산(81.3세)에 비해 2.3세 더 길다. 여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곳은 제주(86.4세)이며 가장 낮은 울산(83.6세)에 비해 2.8세 더 길다. 남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곳은 서울(80.6세)이며, 가장 낮은 전남(77.5세)에 비해 3.1세 더 길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증가속도는 빠른 편이다. 2014년 OECD 국가의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에 비해 15.4%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32.4% 증가하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명표	1971	2014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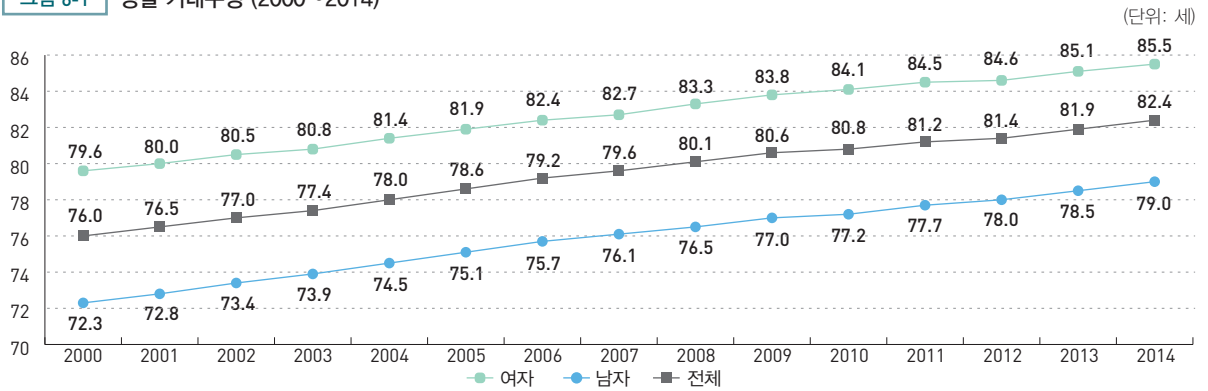
## Checkpoint

기대수명은 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가 간 경제, 사회, 보건 수준의 비교에 널리 이용된다.

## 참고문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그림 6-1 성별 기대수명 (200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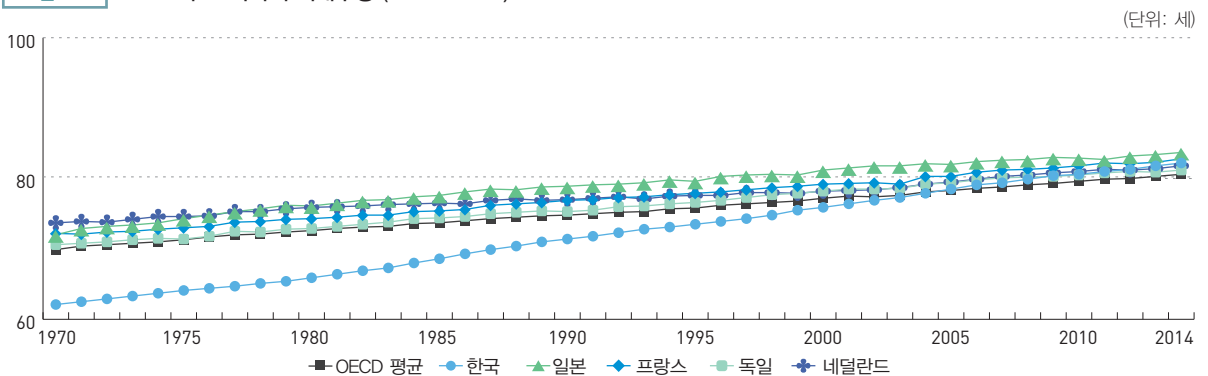
주: 2016년 10월 2일 기준임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표 6-1 연도별·시도별 기대수명

시도별	전체				남자				여자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전국	80.1	81.2	82.4	[2.9%]	76.5	77.7	79.0	[3.3%]	83.3	84.5	85.5	[2.6%]
서울	81.7	82.7	83.6	[2.4%]	78.5	79.3	80.6	[2.7%]	84.5	85.6	86.3	[2.2%]
부산	78.8	80.2	81.6	[3.5%]	75.2	76.8	78.2	[4.0%]	82.1	83.3	84.6	[3.1%]
대구	79.6	80.7	82.0	[3.1%]	76.1	77.2	78.8	[3.6%]	82.7	83.7	84.8	[2.6%]
인천	80.1	80.7	82.0	[2.4%]	76.7	77.5	78.7	[2.6%]	83.1	83.7	85.0	[2.3%]
광주	80.0	80.8	82.0	[2.5%]	76.7	77.2	78.8	[2.7%]	82.8	84.1	84.9	[2.5%]
대전	80.3	81.3	82.6	[2.8%]	77.1	78.0	79.6	[3.2%]	83.2	84.3	85.2	[2.4%]
울산	79.2	80.2	81.3	[2.6%]	76.1	76.7	78.5	[3.2%]	81.9	83.3	83.6	[2.1%]
세종	-	-	81.8	[-]	-	-	78.2	[-]	-	-	85.4	[-]
경기	80.7	81.7	82.9	[2.7%]	77.4	78.4	79.7	[2.9%]	83.6	84.7	85.7	[2.6%]
강원	79.0	80.7	81.4	[3.1%]	75.2	76.8	77.6	[3.2%]	82.7	84.5	85.1	[2.9%]
충북	79.1	80.1	81.7	[3.3%]	75.4	76.3	78.0	[3.4%]	82.7	83.8	85.3	[3.1%]
충남	79.7	81.1	81.8	[2.6%]	76.0	77.3	78.2	[2.8%]	83.4	84.8	85.3	[2.4%]
전북	79.2	80.7	82.0	[3.5%]	75.5	76.9	78.3	[3.7%]	82.8	84.5	85.5	[3.2%]
전남	79.1	80.2	81.7	[3.2%]	74.9	75.9	77.5	[3.4%]	83.2	84.3	85.7	[3.1%]
경북	79.0	80.2	81.8	[3.4%]	75.0	76.4	78.0	[4.0%]	82.9	83.8	85.2	[2.8%]
경남	79.0	80.3	81.6	[3.3%]	75.0	76.5	77.8	[3.7%]	82.6	83.8	85.0	[2.8%]
제주	81.4	82.2	82.8	[1.8%]	76.5	77.6	78.7	[2.9%]	85.4	86.1	86.4	[1.2%]

주: 시도별 비교 지표는 부정기 자료로, 현재까지 2014년 기준치가 가장 최신 정보에 해당함.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그림 6-2 OECD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1970~2014)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 지표 정의

건강수명(HALE; Healthy Life Expectancy)은 장애나 부상으로 인해 줄어든 생명연수를 고려한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수명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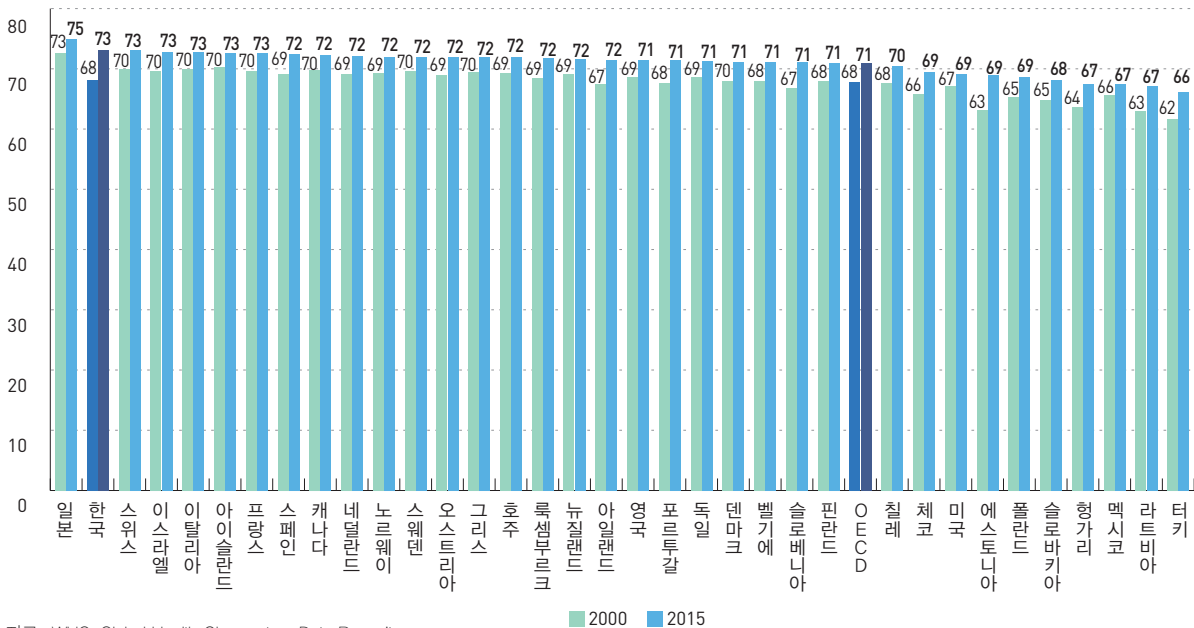
출생 시점부터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생존연수

2015년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73.2세로 2000년(68.1세)에 비해 5.1세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변화(에스토니아: 63.1세 → 69.0세, 5.9세 증가)이다. 한편 OECD 국가의 평균은 2015년 71.0세로 2000년(67.8세)에 비해 3.2세 증가하였다.

참고로, 통계청이 공표하는 건강수준별 기대여명은 '사회조사' 항목을 토대로 작성하고 유병기간 제외한 기대여명\* 66.0년,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 66.4년으로 나타났다.

그림 6-3 OECD 국가의 건강수명

(단위: 세)



자료: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	2015	부정기

\*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 기대여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

\*\*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 기대여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기간

# 주관적 건강인지율

Perceived health status

##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을이다. 전체 조사 대상 인구 중에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평소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2014년에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2.4%로 전년도에 비해서 2.7% 감소하였다. 2014년 남자는 36.0%, 여자는 28.9%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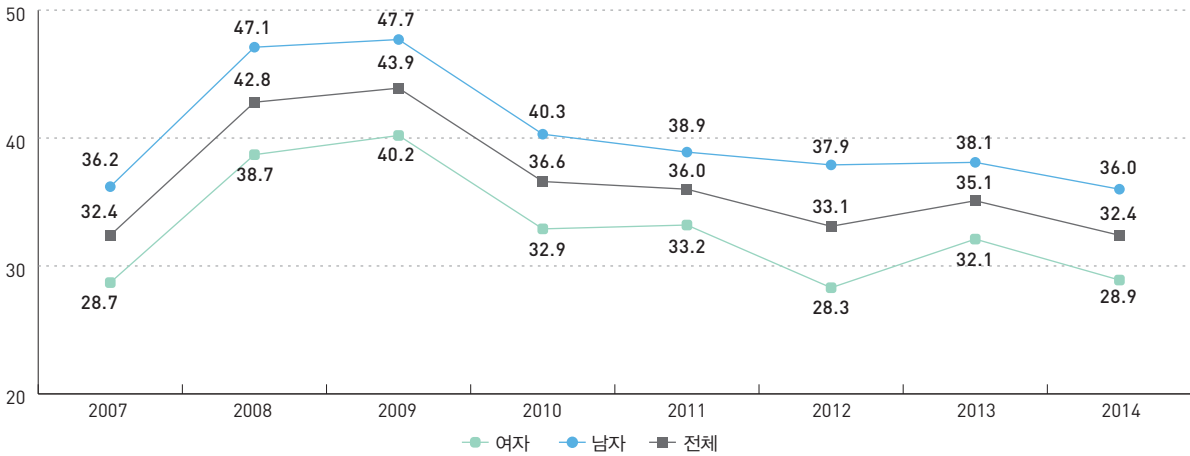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 인지율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19~29세 인구 집단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지역(도시)과 읍면지역(지방)에 따른 뚜렷한 특성을 보이지 않으며, 소득분위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그림 6-4 주관적 건강인지율 (2007~2014)

(단위: %)



주: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2005년~), 스스로 생각하기에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이 '건강한 편' 또는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1998년, 2001년)을 의미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표 6-2 특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2007~2014)

(단위: %)

연도	전체 <sup>2)</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2)</sup>		소득수준별 <sup>2)3)</sup>			
		19~29	30~39	40~49	50~59	60~69	70+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32.4	36.6	35.2	31.6	30.9	26.9	22.8	32.1	33.4	28.3	29.9	35.8	34.6
2008	42.8	52.8	41.6	43.6	37.6	35.2	33.6	42.5	44.5	34.4	42.4	45.6	49.2
2009	43.9	52.5	42.8	45.3	40.7	37.7	31.3	44.7	39.7	39.0	41.7	45.2	50.1
2010	36.6	43.4	39.8	34.4	31.5	32.1	27.9	36.5	37.4	33.0	35.1	37.6	41.8
2011	36.0	44.9	34.6	37.1	32.9	27.3	27.1	36.5	34.1	29.4	33.9	38.3	43.5
2012	33.1	46.1	31.4	34.7	26.8	23.2	18.8	33.2	32.8	27.1	31.8	36.3	38.5
2013	35.1	47.6	38.8	34.9	26.4	22.3	18.9	35.1	36.0	32.4	31.5	35.8	41.4
2014	32.4	42.9	33.3	32.1	27.1	23.2	21.4	33.1	28.4	27.3	29.7	33.8	39.5

주: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2005년~), 스스로 생각하기에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이 '건강한 편' 또는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1998년, 2001년)을 의미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됨.

3)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조사망률

Crude death rate

## 지표 정의

조사망률은 성별이나 연령에 무관하게 1년 간 발생한 모든 사망자 수를 동일기간의 연앙인구\*로 나누어 산출한다. 사망수준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사망률은 한 나라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동시에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 측정 산식

$$\frac{\text{1년 간 발생한 총 사망자 수}}{\text{당해 연도 연앙인구}} \times 100,000$$

2015년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41.5명으로 전년도(527.3명)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이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줄곧 사망률이 높으며, 이러한 흐름은 연도 간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5년 남자의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91.0명, 여자는 492.1명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2015년 기준 17개 광역 시도 중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873.3명)으로 가장 낮은 울산(422.5명)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 높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서울과 경기 지역)과 '광역시'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사망률이 낮았으며,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전남(각각 932.1명, 814.6명)에서 가장 높았으며, 남자는 울산(438.4명)이 가장 낮고, 여자는 서울(379.4명)이 가장 낮았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5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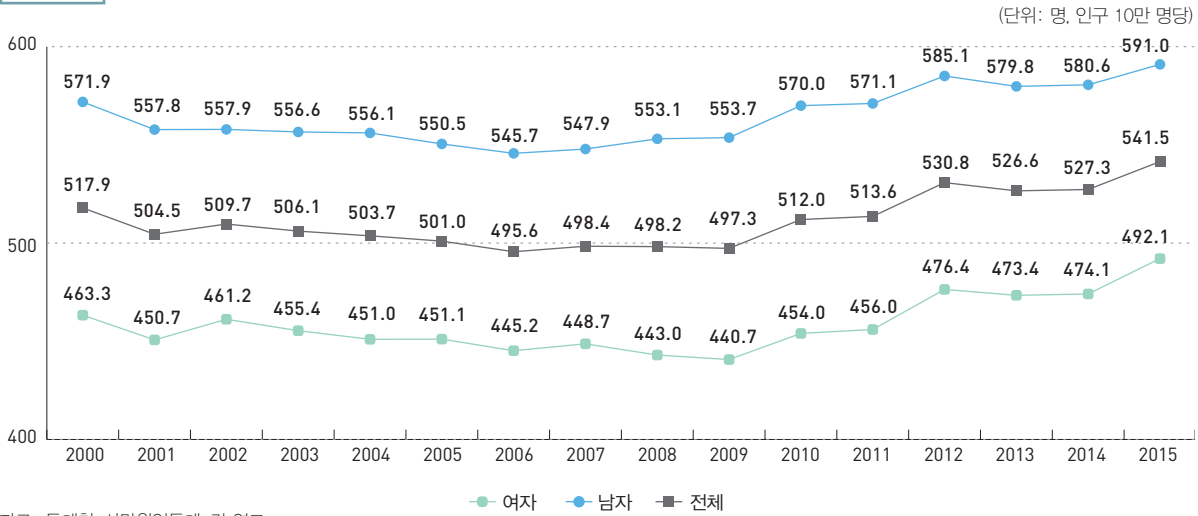
## Checkpoint

사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사망의 원인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며, 역으로 원인을 제거하거나 최소 화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린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그해의 중간일인 7월 1일 기준 인구 수

\*\* 전남의 2015년 사망자 수는 1983년 이래 최대로 연령표준화 사망률에서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16.9명), 호흡기 결핵에 의한 사망률(3.2명)이 높게 나타남.

그림 6-5 성별 조사망률 (2000~2015)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표 6-3 연도별·시도별 조사망률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시도별	전체				남자				여자			
	2005	2010	2015	2005년 대비 2015년	2005	2010	2015	2005년 대비 2015년	2005	2010	2015	2005년 대비 2015년
전국	501.0	512.0	541.5	[8.1%]	550.5	570.0	591.0	[7.4%]	451.1	454.0	492.1	[9.1%]
서울	377.2	394.4	434.6	[15.2%]	419.9	451.5	491.5	[17.1%]	334.8	338.3	379.4	[13.3%]
부산	512.7	557.9	598.5	[16.7%]	568.0	626.6	661.7	[16.5%]	457.8	490.1	536.8	[17.3%]
대구	453.0	484.4	529.3	[16.8%]	491.1	542.8	578.1	[17.7%]	414.7	426.1	481.2	[16.0%]
인천	427.4	444.5	466.0	[9.0%]	473.9	497.4	517.4	[9.2%]	380.0	391.0	414.3	[9.0%]
광주	419.9	453.9	508.0	[21.0%]	453.3	495.5	527.4	[16.3%]	387.0	412.9	489.0	[26.4%]
대전	396.3	424.4	459.7	[16.0%]	432.5	478.9	501.7	[16.0%]	359.8	369.8	417.7	[16.1%]
울산	376.3	387.6	422.5	[12.3%]	397.3	411.5	438.4	[10.3%]	354.1	362.4	405.6	[14.5%]
세종	-	-	536.1	[-]	-	-	578.1	[-]	-	-	493.6	[-]
경기	402.8	412.2	429.6	[6.7%]	443.7	455.6	470.5	[6.0%]	361.2	368.2	388.3	[7.5%]
강원	692.4	708.7	737.0	[6.4%]	789.1	800.3	807.9	[2.4%]	594.7	615.8	664.9	[11.8%]
충북	648.9	640.9	677.1	[4.3%]	726.3	709.2	734.6	[1.1%]	570.4	571.5	618.6	[8.5%]
충남	709.6	684.0	703.8	[-0.8%]	773.7	768.1	764.3	[-1.2%]	644.7	597.9	641.5	[-0.5%]
전북	704.3	711.0	738.3	[4.8%]	753.1	780.0	786.7	[4.5%]	656.0	642.4	690.4	[5.2%]
전남	819.9	840.6	873.3	[6.5%]	899.6	934.6	932.1	[3.6%]	740.7	746.8	814.6	[10.0%]
경북	748.8	758.4	777.2	[3.8%]	817.8	829.9	834.6	[2.1%]	679.2	686.2	719.4	[5.9%]
경남	612.7	598.5	638.7	[4.2%]	669.1	651.9	679.4	[1.5%]	556.0	544.5	597.5	[7.5%]
제주	521.5	534.8	546.2	[4.7%]	540.9	554.1	576.4	[6.6%]	502.2	515.5	515.7	[2.7%]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연령표준화사망률

Age-adjusted mortality rate

## 지표 정의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로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남녀전체)를 사용한다.

## 측정 산식

$$\frac{\sum (\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times 100,000$$

우리나라는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져서 노령인구에서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표준인구의 연령구조를 보정한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이용하여 연도별로 비교 가능한 사망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산식은 위와 같다.

2000년 이후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조사사망률의 흐름과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인구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2000년 615.4에서 2014년 347.6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남자와 여자 각각도 모두 감소하였다.

OECD 국가에서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일본이 가장 낮았고, 호주, 스페인, 스위스가 그 다음에 순위 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0위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성별에 따라 살펴볼 경우, 남자의 사망률은 19위, 여자의 사망률은 4위로 성별에 따른 건강수준의 격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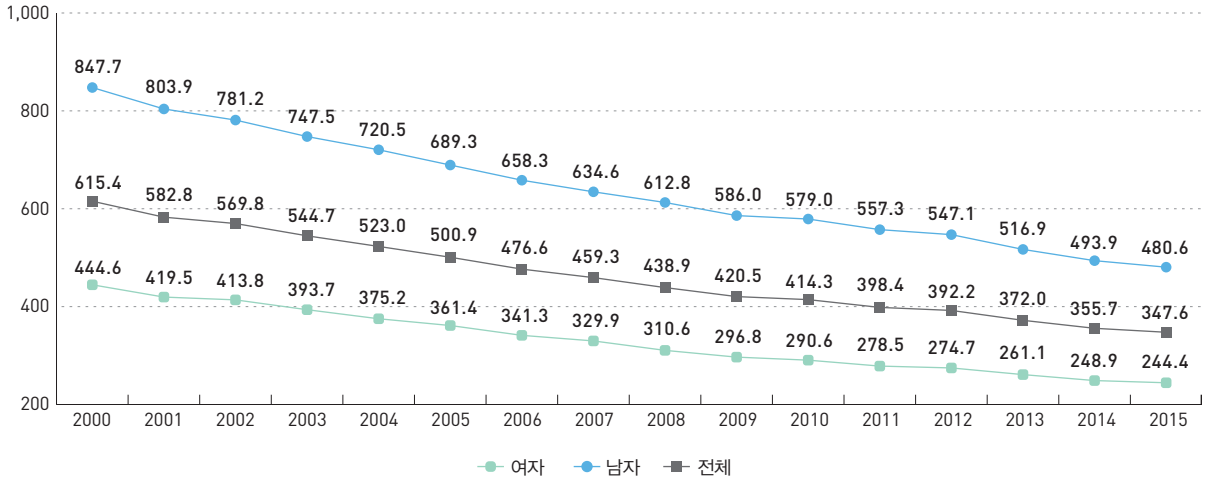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5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그림 6-6 성별 표준화사망률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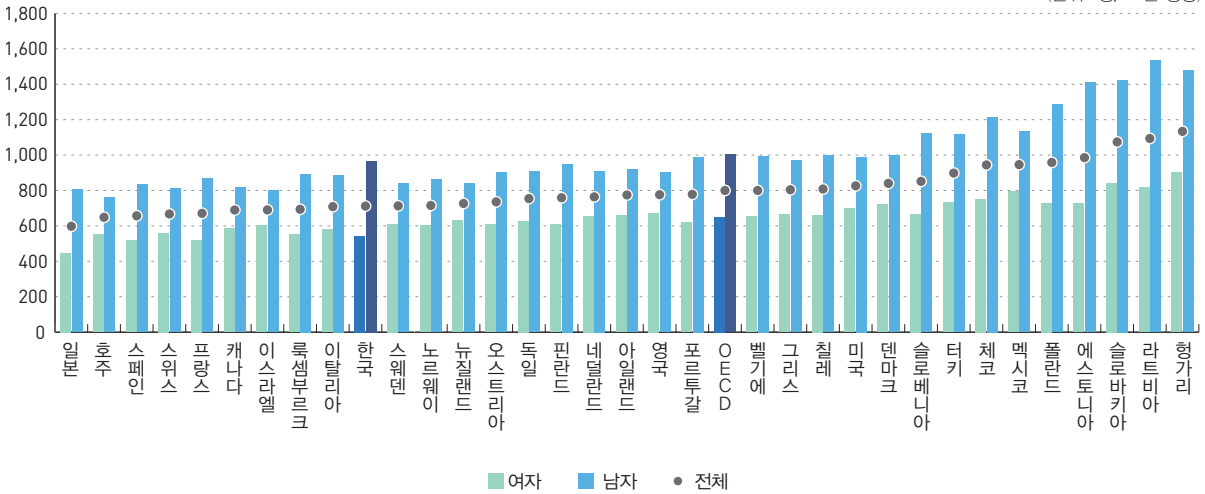
(단위: 명,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6-7 OECD 국가의 표준화사망률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10만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 지표 정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아 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표시한 것이다. 영아사망률은 보건의료제도의 특성과 효과뿐만 아니라, 아이와 산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와 사회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OECD, 2013).

##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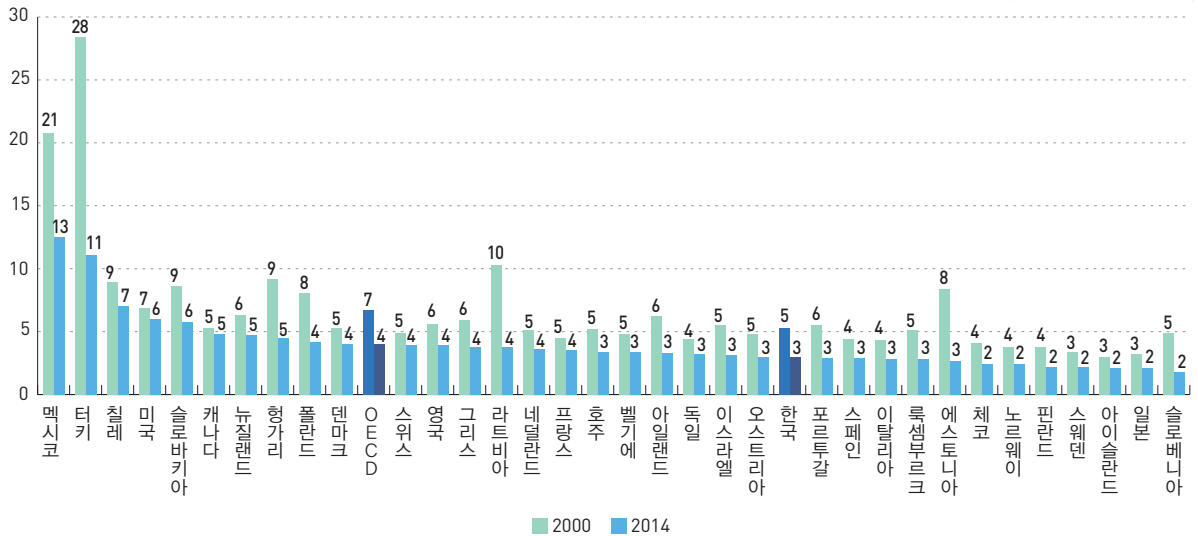
$$\frac{\text{당해 연도 출생 후 1세 이내 사망아 수}}{\text{당해 연도 연간 총 출생아 수}} \times 1,000$$

OECD 국가의 영아사망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국가 간에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에 속하는 멕시코, 터키, 칠레 등에서 영아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00년에 비해 2014년에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국가의 상황도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2014년의 경우 영아사망률은 슬로베니아가 가장 낮았고,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그 다음에 순위 하였다. 즉,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북유럽국가가 낮은 순위의 사망률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생 1,000명당 3.0명의 영아사망을 기록하여 일본(2.1명)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4.0명)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그림 6-8 OECD 국가의 영아사망률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출생아 천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조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Health Statistics	-	2014	1년

#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Cause-specific mortality rate

02-3  
연 관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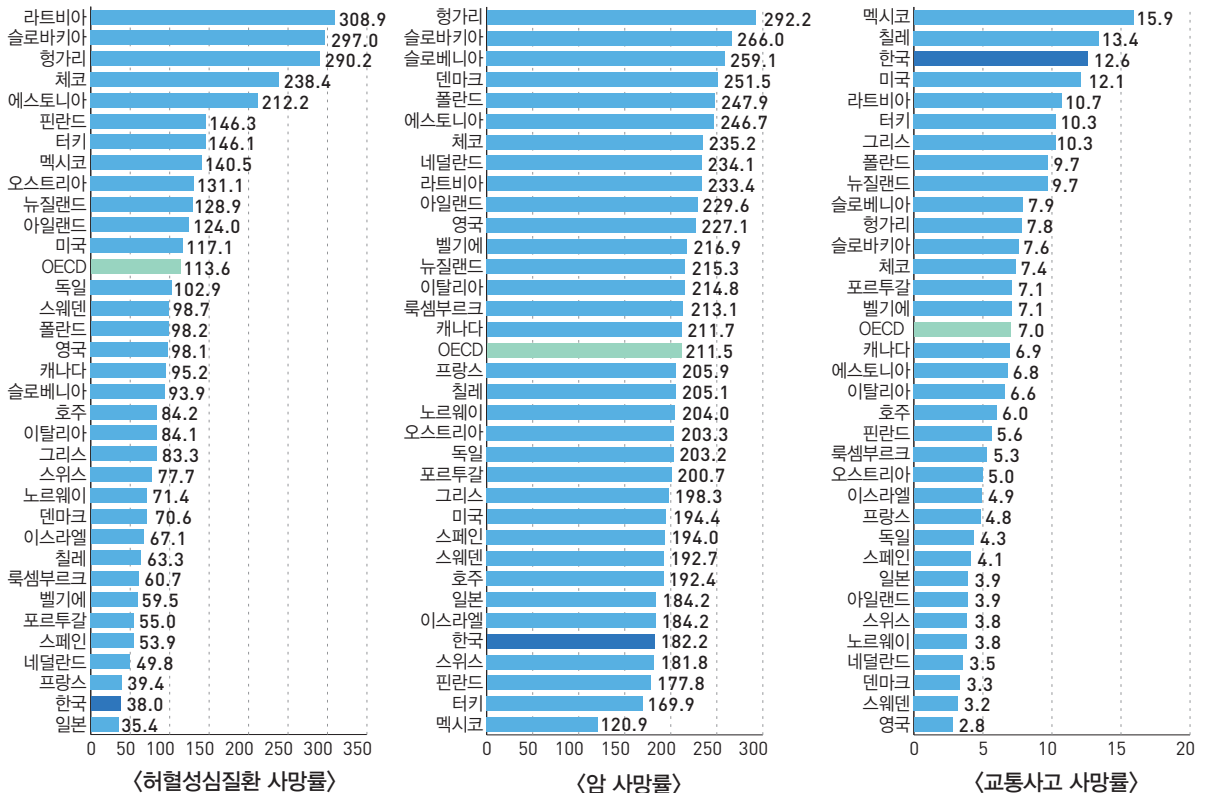
특정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인구로 나누어 추정한다. OECD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변이를 조정해주기 위하여 2010년 OECD 인구로 연령표준화를 해주었다. 사망원인의 분류는 ICD-10을 기반으로 한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를 따르며, 여기에서의 허혈성심질환은 I20-I25에 해당되며, 암은 C00-C97에 해당된다. 교통사고(육상 운수사고)는 외인사(인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사망) 중에 하나로 V01-V89로 분류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특정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00$$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질병이나 손상의 원인에 따라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허혈성심질환은 OECD 국가의 주요 사망원인인 심혈관 질환의 한 종류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허혈성심질환 사망률이 낮다. 암사망률은 낮은 편으로 34개 국가 중에서 5위이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높은 편으로 32위이다.

그림 6-9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Health Statistics	-	2015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 저체중아 발생률

Low birth weight rate

## 지표 정의

저체중아 발생률은 전체 출생아 중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의 비율로 정의된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영아의 질병 및 사망과 관련 있는 중요 지표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모자보건의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 수}}{\text{한 해 출생한 출생아 수}} \times 100$$

유의사항 출생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년도 4월까지(16개월) 전국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임.

우리나라의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5년 전체 출생아의 4.3%였던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은 2015년 5.7%로 10년간 1.4%p 증가하였다. 단태아와 다태아 모두 증가하여 10년간 단태아의 경우는 0.5%p, 다태아는 약 7.0% 포인트의 증가를 보였다. 저체중 출생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산모의 임신 중의 영양이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태아의 성장이 제한되거나 조산으로 인한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는 영아의 이환(罹患) 및 사망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혼으로 인한 만산 현상은 저체중 출생아 비중 증가의 주된 원인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저체중아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5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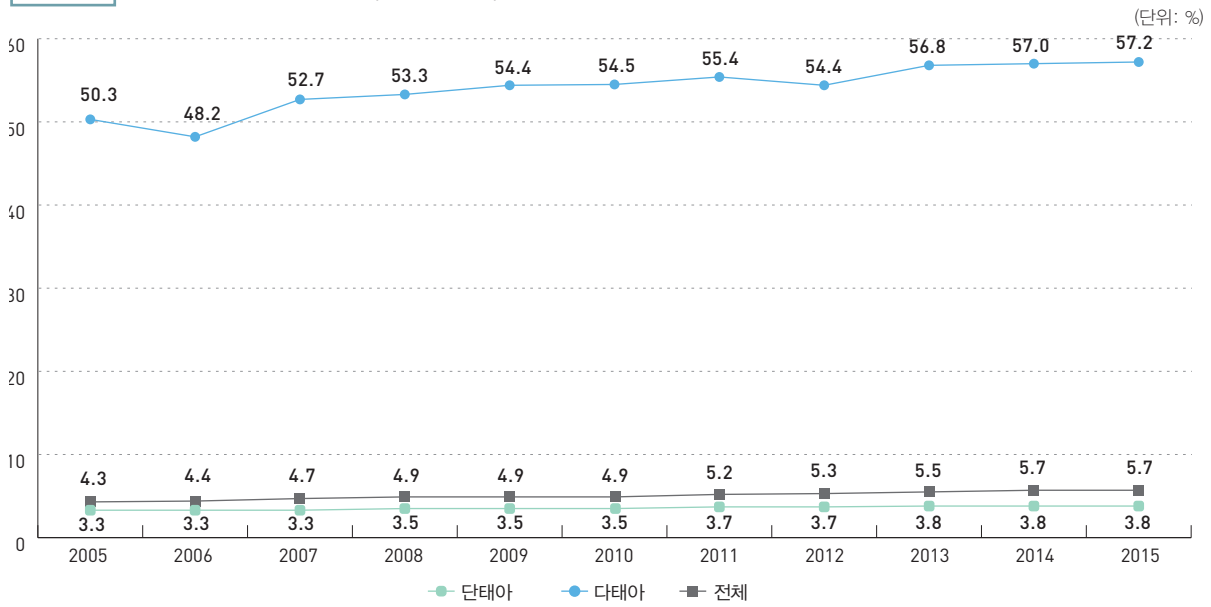
## Checkpoint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출생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저체중 출생아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2005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2015년 전체 출생아에 있어서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은 3.8%에 이른다.

## 참고문헌

- 박문일, 우리나라의 저출산 환경에서 임신 전 관리의 중요성, 대한의사협회지, 54(8), 796-798, 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2015

그림 6-10 저체중 출생아 비율의 변화 (2005~2015)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6. 8.24), 2015년 출생통계(확정)

표 6-4 체중별 출생아의 구성비 (2015)

(단위: %)

	전체	단태아	다태아
저체중아(2.5kg 미만)	5.7	3.8	57.2
정상체중아(2.5~4.0kg 미만)	91.0	92.9	42.8
과체중아(4.0kg 이상)	3.2	3.4	0.0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6. 8.24), 2015년 출생통계(확정)



# 조산율

Premature birth rate

## 지표 정의

조산율은 전체 출생아 중 임신(재태)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출생아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조산아는 저체중아와 함께 영아이환 및 사망률 확률이 높은 고위험 출생아이므로 조산율은 저출산에 대응한 모자보건의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37주 미만 출생아 수}}{\text{한 해 출생한 출생아 수}} \times 100$$

조산아(재태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출생아)는 만삭아(재태주수 37주 이상에 출생한 출생아)에 비해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이환 및 사망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조산율은 고령 임신, 난임·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등 고위험 임신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전체 출산의 4.8%였던 조산율은 2015년 전체 출산의 6.9%로 2.1%p의 증가를 보였다. 조산모의 평균연령은 2005년 30.2세였으나 2015년 32.2세로 2세가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만혼 및 만산으로 인한 전체적인 산모의 연령의 증가로 추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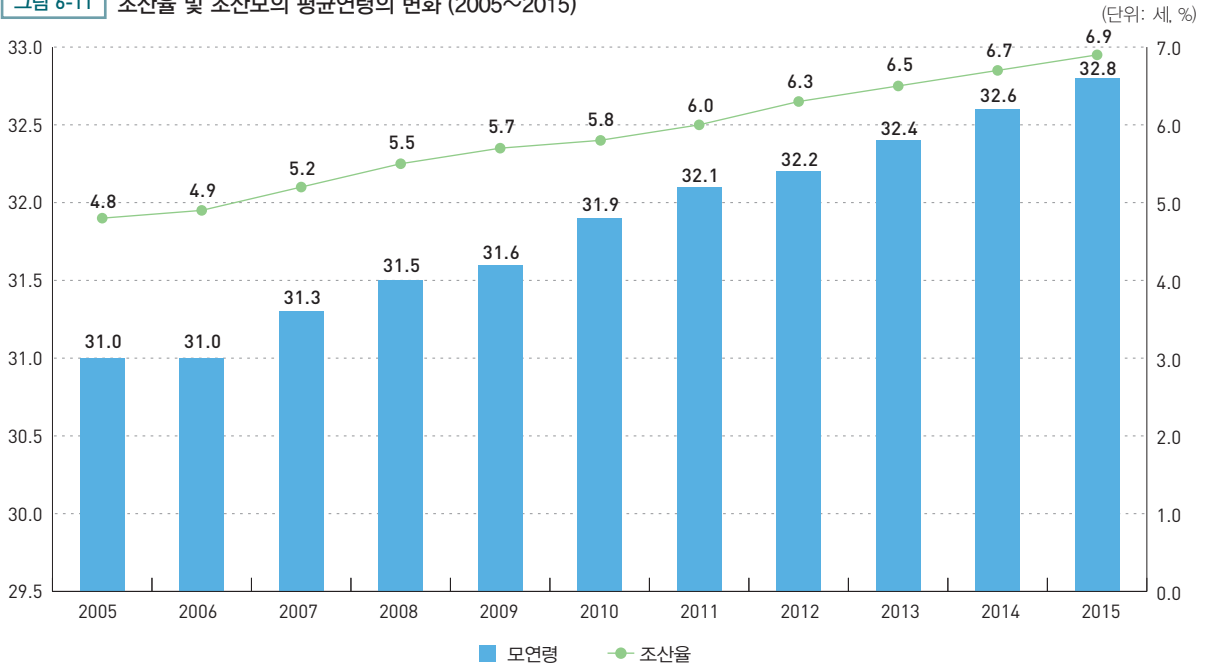
조산율을 단태아와 다태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태아의 4.9%와 다태아의 59.3%가 조산아임을 알 수 있다. 즉, 다태아의 증가가 조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산모 연령의 증가, 난임 및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조산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monitoring)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5	1개월

- 참고문헌
- 박문일, 우리나라의 저출산 환경에서 임신 전 관리의 중요성, 대한의사협회지, 54(8), 796-798, 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2015

그림 6-11 조산율 및 조산모의 평균연령의 변화 (2005~2015)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6. 8.24), 2015년 출생통계(확정)

표 6-5 임신기간별 출생아의 구성비 (2015)

	전체	단태아	다태아
37주 미만 출산	6.9	4.9	59.3
37주 ~ 41주 출산	92.9	94.9	40.7
42주 이상 출산	0.1	0.2	0.0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6. 8.24), 2015년 출생통계(확정)

# 자살률

Suicide rate

## 지표 정의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로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이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자살률은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하고 관련 행정자료를 참고하여 산출된다. 자살사망률은 연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자살률은 국가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text{당해 연도 연앙인구}} \times 100,000$$

2015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명이었다. 자살률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감소추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제 막 인구의 유입이 시작되는 세종을 제외하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인구 10만 명당 35.3명)으로 가장 낮은 광주(21.4명)와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강원(52.9명)이, 여자는 충남이 가장 높다(21.9명). 반대로 낮은 지역은 남자는 서울(32.1명), 여자는 광주(10.4명)로 확인된다. 연령별로 살펴볼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 집단에서의 자살률이 매우 높고(58.6명), 이 중에서 충남(79.5명)과 강원(69.6명)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3.6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2.6배 정도 차이를 보여 성별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34개 국가 중에서 4위)으로 확인되었다. 1990년 이후 OECD 국가에서의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2014년에 19.9%p 증가하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OECD 국가 중 가장 큰 감소를 기록한 국가는 헝가리로 -24.3%p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명으로 2014년 27.3명보다 0.8명 감소하였다(남자 38.4명 → 37.5명, 여자 16.1명 → 15.5명). 비록 자살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였지만, 1990년대~2000년대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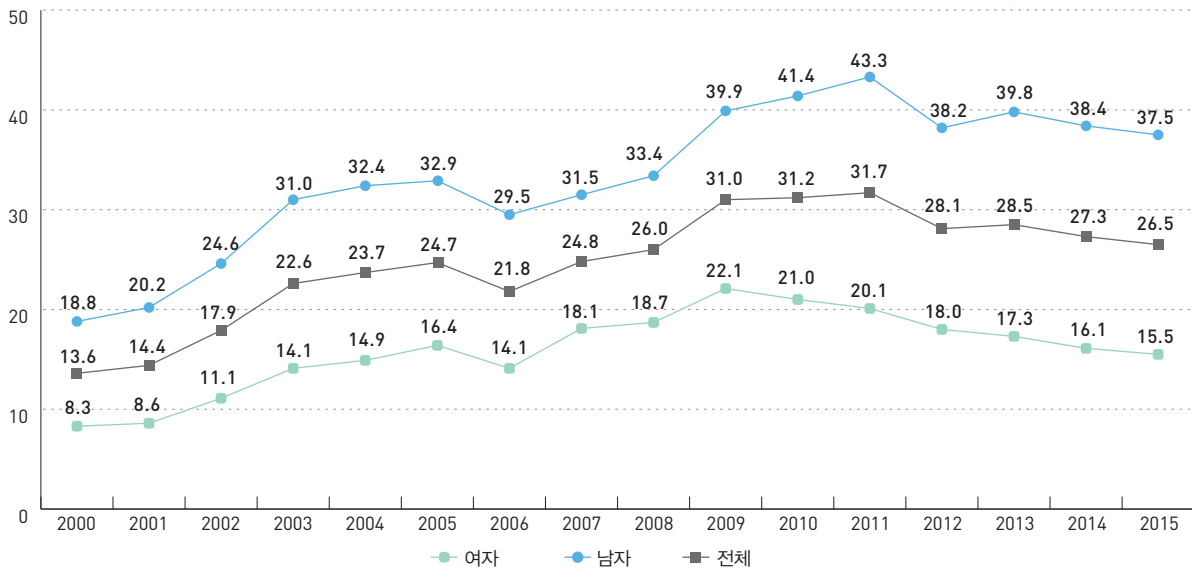
###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 그해의 중간일인 7.1일 기준 인구 수

그림 6-12 자살률 (2000~2015)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표 6-6 시도별 · 연령별 자살률 (2015)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전체				남자				여자			
	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전국	26.5	0.4	25.9	58.6	37.5	0.5	36.4	95.2	15.5	0.4	14.9	32.1
서울	23.2	0.3	22.2	53.1	32.1	0.3	30.5	81.8	14.6	0.3	14.0	30.6
부산	29.0	0.5	29.4	50.7	41.4	0.9	40.0	90.1	16.9	-	18.6	21.2
대구	26.8	-	26.5	57.7	37.7	-	37.6	90.5	16.0	-	15.2	34.5
인천	27.4	0.5	27.0	67.6	38.9	0.9	38.0	110.7	15.8	-	15.4	36.2
광주	21.4	-	21.7	50.1	32.5	-	33.4	83.1	10.4	-	9.8	26.5
대전	27.0	0.9	26.9	65.4	36.7	0.8	35.1	112.6	17.3	0.9	18.4	30.4
울산	24.3	-	25.2	59.4	36.7	-	37.5	107.2	11.2	-	11.8	23.0
세종	22.5	-	19.8	76.6	32.7	-	26.1	151.9	12.1	-	13.1	24.3
경기	25.3	0.4	25.1	64.6	35.0	0.3	34.4	103.4	15.5	0.4	15.3	35.9
강원	35.3	1.0	33.5	69.6	52.9	1.0	51.0	113.8	17.4	1.0	14.4	38.2
충북	30.4	0.4	29.5	63.5	43.3	1.0	40.7	110.7	17.2	-	17.3	30.4
충남	35.1	1.3	31.8	79.5	47.9	0.6	44.9	117.0	21.9	2.0	17.2	52.9
전북	26.6	0.4	24.9	54.4	39.6	1.0	35.6	98.8	13.8	-	13.3	24.2
전남	30.8	1.2	28.3	58.2	44.5	0.8	40.9	97.2	17.1	1.7	14.0	32.9
경북	27.5	1.0	27.6	46.8	39.8	1.0	40.6	72.7	15.0	1.0	13.2	29.3
경남	26.3	0.2	26.4	53.6	38.2	0.4	38.3	90.8	14.2	-	13.6	29.3
제주	24.5	-	27.2	39.6	33.9	-	37.8	59.9	15.1	-	15.9	26.1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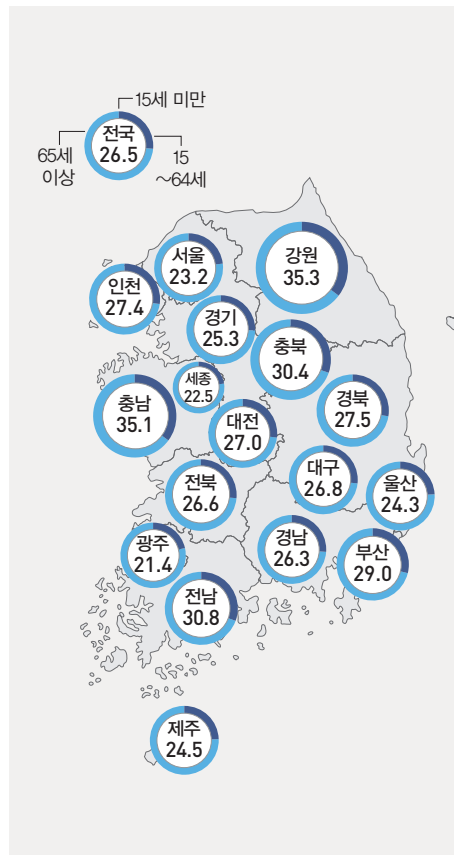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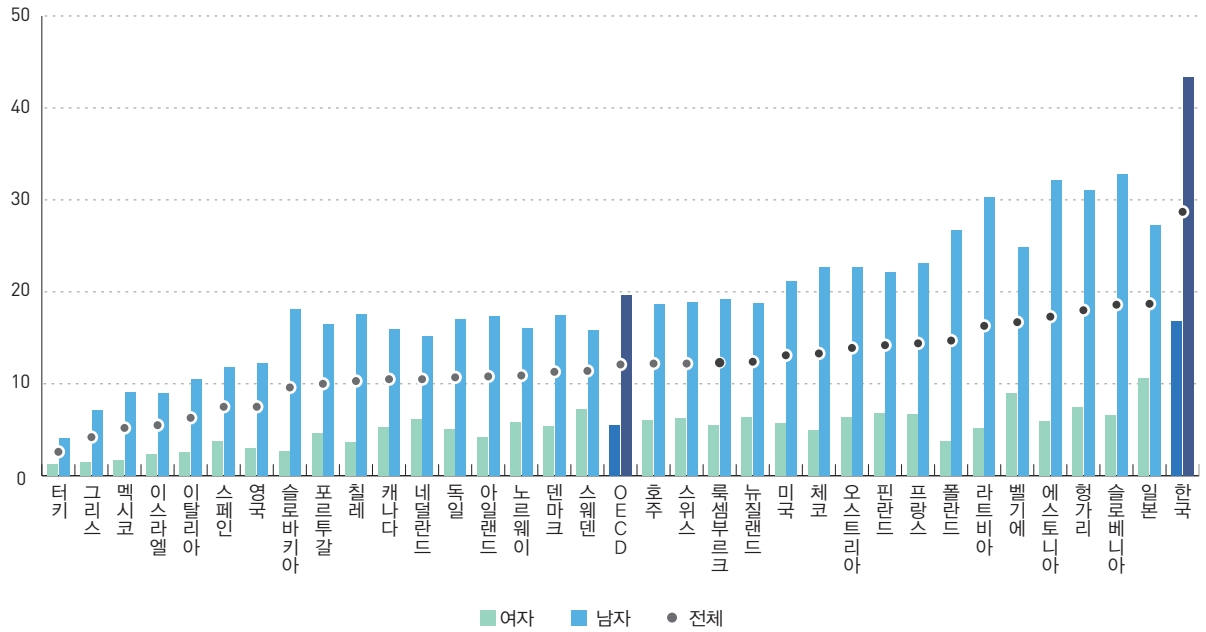


그림 6-13 OECD 국가의 자살률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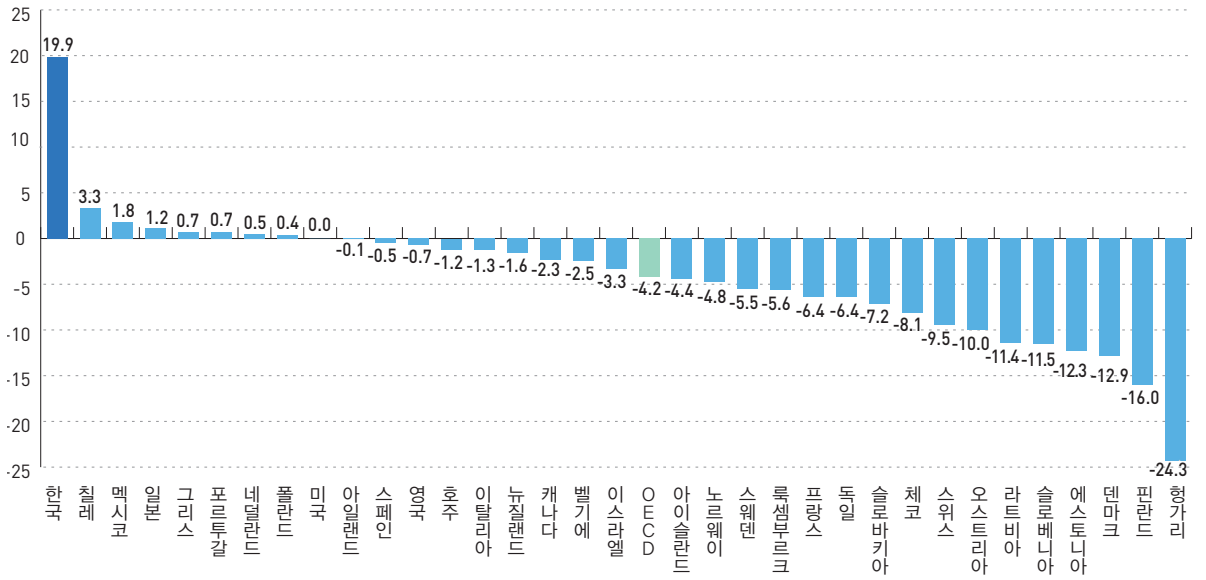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조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그림 6-14 OECD 국가의 자살률 변화폭 [1990년 대비 2014년(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조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정신장애 유병률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 지표 정의

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앓은 적이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5년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로부터 확인된다. 단, 조사의 시점에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혹은 입소중인 환자는 제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최근 12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text{조사대상 인구 수}} \times 100$$

2011년 정신장애 일년 유병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알콜 사용장애는 남자가 6.6%로 여자(2.1%)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니코틴 사용장애 역시 남자(7.0%)가 여자(0.9%)에 비해 크게 높았다. 기분장애는 여자가 4.9%로 남자(2.3%인)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불안장애 역시 여자가 9.8%로 3.7%를 보인 남자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7 연도별 정신장애 유병률

(단위: %)

특성	2001			2006			2011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알콜사용장애	6.8	11.0	2.6	5.6	8.7	2.5	4.4	6.6	2.1
니코틴사용장애	6.7	12.1	1.1	6.0	10.8	1.1	4.0	7.0	0.9
정신병적 장애	0.5	0.3	0.7	0.3	0.4	0.2	0.4	0.2	0.5
기분장애	2.2	0.9	3.6	3.0	2.1	3.9	3.6	2.3	4.9
불안장애	6.1	2.8	9.5	5.0	3.2	6.9	6.8	3.7	9.8
섭식장애	0.1	0.1	0.1	0.0	-	0.1	0.1	0.0	0.1
신체형장애	0.5	0.3	0.7	1.0	0.4	1.7	1.3	0.7	1.9
모든 정신장애	19.0	22.8	15.2	17.1	20.7	13.5	16.0	16.2	15.8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2001	2011	5년

# 우울장애 유병률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s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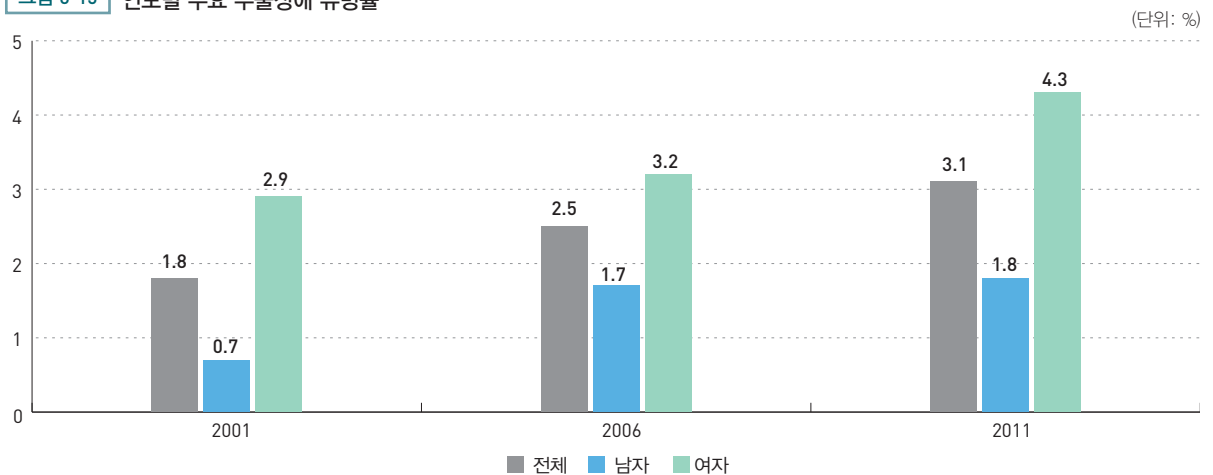
주요 우울장애 일년 유병률은 지난 1년 동안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로 산출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일 년 동안 한 번 이상 주요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text{조사대상 인구 수}} \times 100$$

우울장애 유병률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남자에 비해서 여자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011년 기준 전체 유병률은 3.1%로, 남자는 1.8%, 여자는 4.3%이다.

그림 6-15 연도별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2001	2011	5년

# 10대 다빈도 상병

Ten Most frequent diseases

## 지표 정의

우리나라 국민에게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상병을 의미한다. 입원서비스와 외래서비스 각각에 있어서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 측정 산식

- 특정 상병으로 발생한 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에 있어서 다빈도 상병을 살펴보면,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이 가장 많았다.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과 ‘기타 추간판 장애’, ‘노년성 백내장’으로 인한 입원도 많았다. 진료비 규모에 있어서는 ‘무릎관절증’에서 많은 진료비 지출이 있었다. 다빈도 입원서비스는 성별에 따라서 발생 순위에 차이가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순위가 큰 폭으로 바뀌었다.

외래서비스의 경우에는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편도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방문이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입원서비스와 달리 남자와 여자의 순위가 비슷하였다. 두 집단에 있어서 1위부터 5위까지의 다빈도 상병이 일치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2005년 가장 많이 발생했던 ‘급성 편도염’은 2010년 2위, 2015년 3위로 내려갔고, 2005년에 5위를 기록했던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010년 3위, 2015년 2위로 점차 올라섰다. 한편, ‘급성 기관지염’은 2005년 2위, 2010년 1위에 이어, 2015년에도 1위를 기록함으로써 줄곧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 입원과 외래의 10대 다빈도 상병은 항목과 순위에서 과거(2005년 및 2010년)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질병 구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8 입원서비스 다빈도 상병

(단위: 명, 일, 천 원, 위)

	2015				성별 내 순위		순위변화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진료비	급여비	남자	여자	2005	2010
1.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 (Z38)	379,043	1,642,847	73,086,510	71,583,406	1	2	-	1
2.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292,794	2,988,497	492,333,093	395,042,058	2	4	5	2
3. 기타 추간판 장애 (M51)	268,269	2,345,971	259,597,523	198,315,264	3	5	8	6
4. 노년성 백내장 (H25)	261,077	395,508	323,055,898	259,066,298	4	3	3	4
5.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A09)	224,374	1,188,098	164,984,383	128,761,429	5	6	6	7
6. 단일 자연분만 (O80)	186,439	607,827	200,371,514	197,191,569	-	1	2	3
7. 치핵 (I84)	183,732	541,883	171,306,439	139,144,286	6	7	1	5
8. 기타 척추병증 (M48)	108,410	1,471,288	204,374,209	156,636,559	12	10	27	17
9. 무릎관절증 (M17)	107,451	2,349,220	496,094,087	388,009,043	45	8	37	12
10. 어깨병변 (M75)	105,683	915,840	166,773,570	130,354,161	10	12	136	39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표 6-9 외래서비스 다빈도 상병

(단위: 명, 일, 천 원, 위)

	2015				성별 내 순위		순위변화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진료비	급여비	남자	여자	2005	2010
1. 급성 기관지염 (J20)	15,004,923	51,179,076	1,285,520,008	940,546,599	1	1	2	1
2.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13,461,217	27,225,019	1,070,317,569	745,033,785	2	2	5	3
3. 급성 편도염 (J03)	6,470,363	13,424,906	339,570,463	243,672,012	4	3	1	2
4.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6,265,784	14,874,349	404,828,612	289,075,656	3	5	10	5
5.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J06)	6,222,541	12,848,193	305,347,920	218,806,859	5	4	3	4
6. 치아우식 (K02)	5,552,349	9,233,724	318,042,253	225,047,845	7	7	4	7
7. 본태성(일차성)고혈압 (I10)	5,441,082	41,110,659	2,519,175,578	1,788,566,701	6	8	13	10
8.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5,428,494	10,080,507	358,753,100	245,366,262	9	6	9	6
9. 급성 인두염 (J02)	4,853,605	10,092,881	240,695,631	173,839,058	10	10	6	7
10. 등통증 (M54)	4,753,508	22,070,755	654,168,637	469,869,152	13	9	16	15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암 발생률

Prevalence of cancer

## 지표 정의

암 발생률은 조사시점(2014년도)에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 수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인구 10만 명 당 암이 발생하는 비율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새롭게 발생한 암 환자 수}}{\text{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00$$

2014년 암 상병 전체의 조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27.6명(남자 444.9명, 여자 410.3명)이고, 이를 200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표준화하면 인구 십만 명당 289.1명(남자 312.4명, 여자 282.9명)이다. 조발생률 순서에 따르면 갑상선암(인구 10만 명당 60.7명)이 가장 많고, 위암(58.8명), 대장암(53.1명), 폐암(47.3명), 유방암(36.2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암 상병 전체의 5년 상대생존율(2010년~2014년)은 70.3%(남자 62.2%, 여자 78.2%)이다.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갑상선암(100.2%)이고, 전립선암(93.3%)과 유방암(92.0%)도 생존율이 높은 편이다. 한편 췌장암은 10.1%의 낮은 생존율을 보여 발병 시 매우 치명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0 주요 암 유종별 발생률과 5년 상대생존율

(단위: 명, %)

특성	조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5년 상대생존율 (2010~201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모든 암(C00-C96)	427.6	444.9	410.3	289.1	312.4	282.9	70.3	62.2	78.2
갑상선(C73)	60.7	24.3	97.0	51.6	20.8	83.0	100.2	100.5	100.1
위(C16)	58.8	79.2	38.5	37.2	54.1	23.0	74.4	75.3	72.7
대장(C18-C20)	53.1	63.8	42.5	33.0	43.8	24.0	76.3	78.1	73.4
폐(C33-C34)	47.3	66.0	28.7	27.7	44.4	15.3	25.1	21.9	32.4
유방(C50)	36.2	0.3	72.1	27.3	0.2	54.4	92.0	86.8	92.0
간(C22)	31.9	47.5	16.2	19.9	32.4	8.8	32.8	33.1	31.9
전립선(C61)	19.3	38.6	-	11.2	25.7	-	93.3	93.3	-
췌장(C25)	11.7	12.6	10.9	6.9	8.5	5.5	10.1	9.8	10.5
담낭 및 기타 담도(C23-C24)	11.0	11.2	10.8	6.3	7.5	5.3	29.2	30.1	28.4
비호지킨 림프종(C82-C85, C96)	9.7	10.9	8.6	7.1	8.4	6.0	69.1	67.4	71.1

주: 1) 2014년을 기준으로 조발생률이 높은 10개 암종의 정보만 제시함.

2) 상대생존율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동일한 연도, 성별, 연령인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함. 예를 들어,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일반인과 생존율이 같음을 의미함. 갑상선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100%를 넘는 것은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가 5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의미임.

자료: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2015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1980	2014	1년

#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

Prevalence of cerebrovascular diseases

## 지표 정의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은 '의사로부터 뇌졸중을 진단받은 적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의사로부터 뇌졸중을 진단받은 사람 수}}{\text{만 50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2014년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뇌졸중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70세 이상의 인구 집단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 뇌혈관질환의 유병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11 특성별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 (만 50세 이상) (2007~2014)

(단위: %)

	전체 <sup>1)</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1)</sup>		소득수준별 <sup>1)2)</sup>			
		50~59	60~69	70+	등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4.8	2.6	5.5	7.8	4.6	6.0	5.1	6.3	3.0	4.5
2008	4.3	1.8	5.3	8.0	4.2	4.6	4.9	5.0	3.7	3.4
2009	3.3	1.5	4.2	5.6	3.3	3.7	5.0	3.7	3.0	1.9
2010	2.9	2.0	2.6	5.0	3.2	2.2	3.4	2.5	3.9	1.8
2011	3.9	1.0	5.9	6.5	4.1	3.4	4.9	3.7	4.2	2.4
2012	2.6	0.9	3.5	4.6	3.0	1.7	3.1	1.6	2.9	2.6
2013	4.7	3.0	4.8	7.9	4.6	5.2	6.9	4.5	3.3	4.0
2014	3.7	1.2	4.6	7.1	3.6	3.7	6.8	3.1	2.5	2.5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고혈압 유병률

Prevalence of hypertension

05-3  
연 관

## 지표 정의

고혈압 유병률은 만30세 이상 대상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사람 수}}{\text{만 30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고혈압 유병률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혈압의 유병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70세 이상의 인구 집단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지역(도시)과 읍면지역(지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연도에 있어서 동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서 높았다. 소득분위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 고혈압의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12 특성별 고혈압 유병률 (2007~2014)

(단위: %)

	전체 <sup>1)</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1)</sup>		소득수준별 <sup>1)2)</sup>			
		30~39	40~49	50~59	60~69	70+	등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24.6	7.5	15.7	33.6	45.9	60.2	25.0	24.7	29.1	24.2	21.3	25.3
2008	26.3	9.9	19.3	34.2	46.8	56.6	26.2	26.5	27.8	26.3	26.5	24.5
2009	26.4	7.3	18.2	35.3	50.5	63.1	27.0	24.3	25.5	28.4	25.8	25.7
2010	26.9	7.2	17.0	37.3	55.6	61.2	27.5	25.4	28.4	26.5	26.8	26.2
2011	28.5	9.1	21.1	33.8	55.4	66.6	28.6	29.3	27.8	30.0	28.3	27.4
2012	29.0	9.5	22.6	34.5	54.0	66.4	29.1	29.1	29.4	29.9	29.7	26.5
2013	27.3	9.7	19.5	35.9	48.7	62.3	27.4	27.5	26.8	29.9	26.6	26.2
2014	25.5	7.3	17.7	32.0	48.5	63.5	25.7	24.5	26.1	25.8	27.5	22.6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당뇨병 유병률

Prevalence of diabetes

## 지표 정의

당뇨병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분율로 산출된다.

당뇨병은 심혈관계 합병증과 실명, 조기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인병으로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노령화에 따라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사람 수}}{\text{만 30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당뇨병 유병률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인구 집단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2007년부터 최근 8년간 약 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당뇨병 발생률은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OECD, 2013).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2013.

표 6-13 특성별 당뇨병 유병률(만 30세 이상) (2007~2014)

(단위: %)

연도	전체 <sup>1)</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1)</sup>		소득수준별 <sup>1)2)</sup>			
		30~39	40~49	50~59	60~69	70+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9.6	4.2	5.7	13.4	19.7	17.5	10.2	7.5	10.7	9.7	8.7	9.2
2008	9.7	2.1	7.6	12.6	21.1	19.2	10.3	8.2	12.5	9.7	7.8	8.4
2009	9.6	2.5	5.8	12.3	22.0	21.8	10.1	8.7	10.3	10.5	8.6	8.8
2010	9.7	2.8	6.6	13.1	17.6	23.4	10.2	9.1	10.8	11.0	7.8	8.9
2011	9.8	2.5	6.6	13.8	19.6	21.5	9.4	11.2	10.6	9.3	9.4	9.9
2012	9.0	1.9	5.0	12.6	20.3	22.0	9.0	9.6	11.0	9.2	7.9	7.6
2013	11.0	2.5	7.3	12.6	25.2	27.6	11.4	10.0	12.7	10.9	10.6	9.9
2014	10.2	2.2	7.4	11.9	22.6	24.0	10.6	9.2	13.4	9.3	8.5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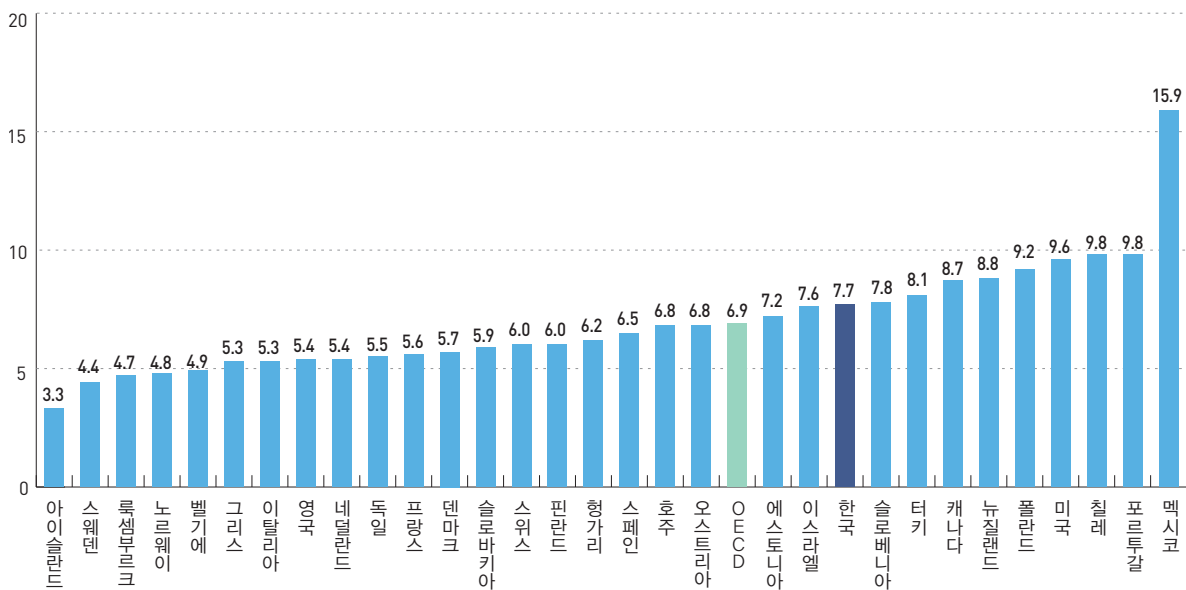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그림 6-16 OECD 국가의 당뇨병 발생률 (2012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자료: Health at a glance 2013 (2013)

# 현재 흡연율

Current Smoking Rate

## 지표 정의

현재 흡연율은 만19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다.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5백만 명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과 암 발생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흡연은 말초혈관질환,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임과 동시에, 임신부의 경우 저체중아 출산과 신생아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흡연율은 2010년대에 들어서 줄곧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전년도에 비해서 0.1%p 증가하여 2014년 현재 흡연율은 24.2%로 확인되었다. 남자는 43.1%, 여자는 5.7%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흡연율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30~39세 집단에서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69세 또는 70세 이상의 인구 집단은 과거에는 흡연율이 높았으나, 최근에 들어서 크게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읍면지역(지방)에서의 흡연율이 동지역(도시)보다 높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흡연율이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흡연율(15세 이상)은 19.5%이고, 우리나라는 20.0%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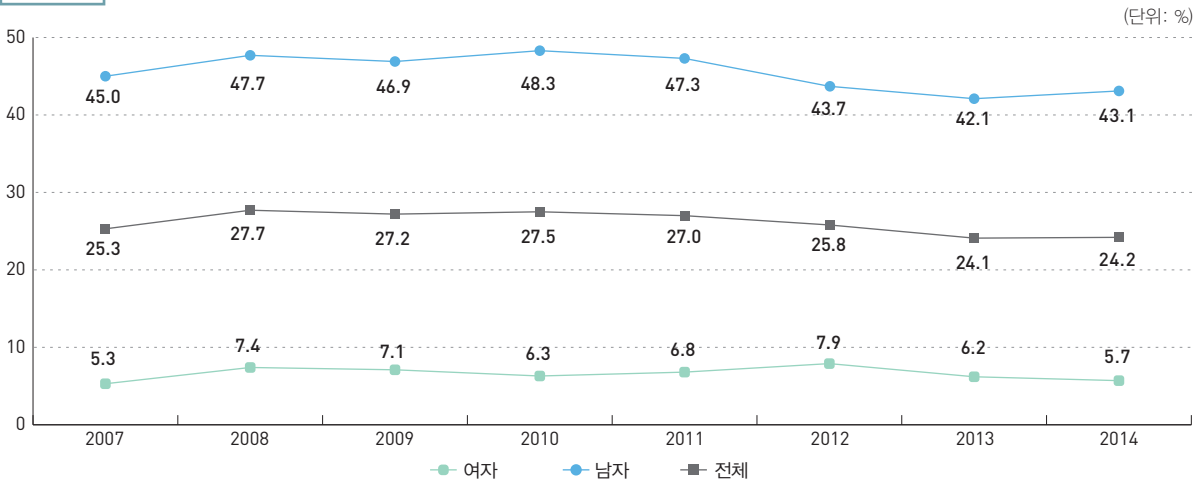
## Checkpoint

2014년 우리나라 현재 흡연율은 24.2%(OECD 기준은 20.0%)로 2013년 24.1%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는 2013년에 42.1%의 흡연율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43.1%로 1.0%p 증가하였고, 여자는 같은 기간 동안 6.2%에서 5.7%로 0.5%p 감소하였다.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그림 6-17 현재 흡연율 (2007~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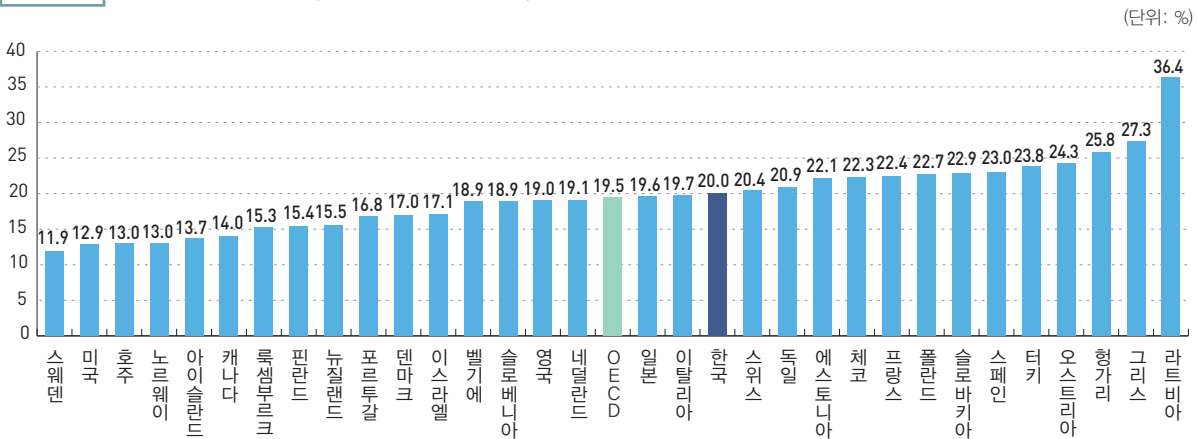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표 6-14 특성별 현재 흡연율 (2007~2014)

연도	전체 <sup>1)</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1)</sup>		소득수준별 <sup>1)2)</sup>			
		19~29	30~39	40~49	50~59	60~69	70+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25.3	27.8	32.0	27.0	19.3	17.0	12.8	25.3	25.1	30.7	25.0	23.6	22.2
2008	27.7	33.9	32.4	27.7	22.5	18.8	16.0	27.6	27.7	32.1	29.3	26.2	23.4
2009	27.2	32.4	32.8	27.5	22.9	18.4	13.2	26.8	28.9	31.1	28.6	27.0	21.6
2010	27.5	27.8	35.0	30.5	25.1	16.1	12.6	27.0	28.5	31.8	26.6	25.3	25.2
2011	27.0	28.3	36.6	25.7	24.5	17.5	14.3	26.1	31.5	31.5	26.8	25.0	24.8
2012	25.8	28.0	32.5	27.7	24.6	13.4	10.9	25.4	28.1	29.3	27.1	22.0	23.6
2013	24.1	24.1	30.7	26.9	22.0	17.4	8.0	23.3	27.5	28.6	25.2	22.3	20.4
2014	24.2	22.5	30.0	29.2	20.6	18.2	10.1	23.3	29.7	27.5	24.9	24.5	19.8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그림 6-18 OECD 국가의 흡연율 (2013년 또는 최근 연도)



주: OECD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매일 흡연하는 인구의 비율을 비교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Cigarettes Smoked Per Day Among Current Smokers

## 지표 정의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 개비 수이다.

## 측정 산식

하루 평균 흡연한 개비의 합  
만 19세 이상 현재 흡연자 수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2014년 14.7개비로 2013년에 비해 0.1개비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50~59세에서 하루 평균 흡연량이 가장 많았다.

표 6-15 특성별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단위: 개비)

	전체 <sup>2)</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2)</sup>		소득수준별 <sup>2)3)</sup>			
		19~29	30~39	40~49	50~59	60~69	70+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16.1	13.1	16.8	19.2	18.0	14.9	11.7	15.8	-	16.1	-	-	-
2008	15.9	13.6	15.6	17.8	19.5	15.2	11.5	15.4	18.0	16.2	15.8	16.0	15.1
2009	15.5	12.1	15.4	18.3	18.5	16.4	11.1	15.2	16.7	15.7	15.8	15.5	14.7
2010	15.2	12.3	14.6	17.2	18.5	15.1	13.8	15.1	-	14.8	15.6	14.7	16.0
2011	15.3	13.2	14.8	17.7	16.6	16.7	11.0	14.9	-	14.0	15.3	16.3	-
2012	14.7	12.0	14.3	17.5	16.2	16.5	10.7	14.2	-	14.8	14.1	14.8	-
2013	14.6	12.9	14.4	16.1	16.8	15.3	11.0	14.5	-	-	-	14.4	-
2014	14.7	12.9	14.3	15.9	16.8	15.1	13.6	14.4	-	14.6	-	15.0	-

주: 1) 자료의 수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로 표시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3)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Nonsmoker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in workplace

06-2  
연 관

## 지표 정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비율('13년부터 '최근 7일 동안' 준거기간 포함)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최근 7일동안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text{만 19세 이상,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비흡연자 수}} \times 100$$

최근에 간접흡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연 거리, 금연 정거장 등을 조성하여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루의 1/3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도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2014년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40.1%로 2013년에 비해 7.2%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은퇴시기를 지난 60대 이후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간접흡연 노출률이 높아진다. 거주 지역별로는 동지역(도시)이 읍면지역(지방)보다 높아 보인다. 소득수준별로는 하위계층에서 간접흡연 노출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6-16 특성별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2007~2014)

(단위: %)

	전체 <sup>2)</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2)</sup>		소득수준별 <sup>2)3)</sup>			
		19~29	30~39	40~49	50~59	60~69	70+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45.9	53.4	51.2	45.0	45.5	35.3	24.3	-	48.3	46.7	-	-	-
2008	45.4	56.5	49.9	44.2	45.0	30.6	21.7	46.6	44.7	45.6	45.7	46.2	45.4
2009	45.7	50.7	53.5	50.0	43.3	33.1	14.0	46.6	45.5	47.4	47.8	45.6	43.0
2010	49.2	58.3	57.3	49.7	46.8	36.3	15.5	48.7	52.5	50.8	47.8	47.5	51.5
2011	45.2	56.5	50.9	45.8	39.6	29.5	22.4	45.0	51.0	41.6	45.1	46.4	47.2
2012	46.0	59.1	52.4	45.8	40.3	32.8	15.0	46.3	44.1	42.9	46.2	46.5	48.3
2013	47.3	47.6	47.9	51.7	51.8	42.0	30.1	47.5	45.7	47.2	49.4	45.4	46.9
2014	40.1	43.0	42.1	42.5	44.5	29.7	22.5	41.3	37.0	43.0	35.9	42.5	40.6

주: 1) 자료의 수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로 표시).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3)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청소년 현재 흡연율

Current Smoking Rate of Adolescents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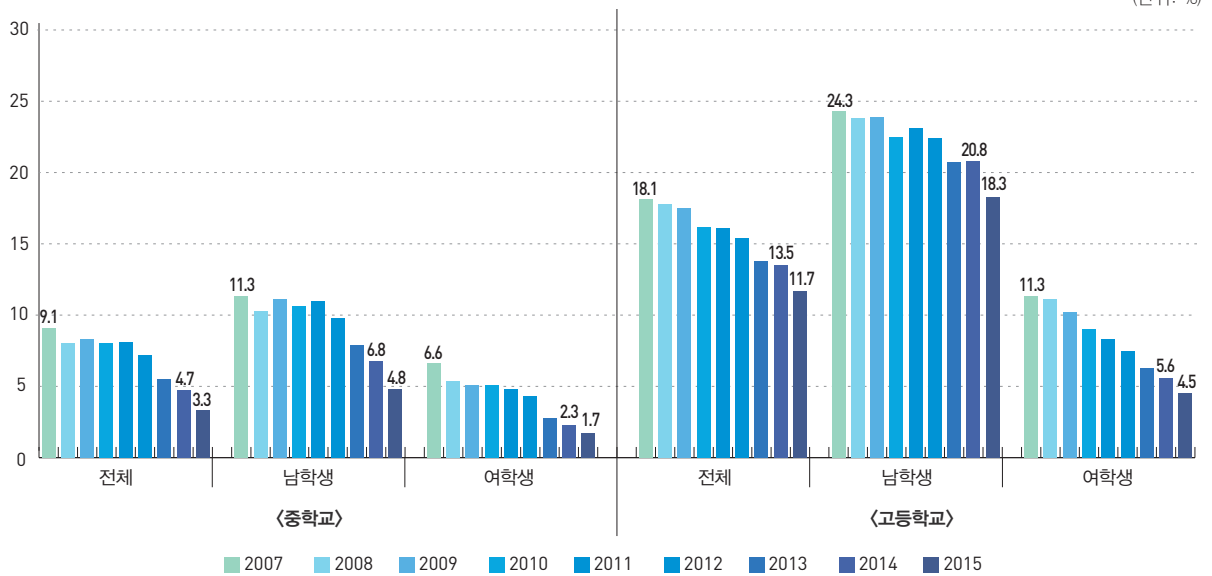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청소년(중1~고3)의 비율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수}}{\text{조사 대상자 전수}} \times 100$$

2015년을 기준으로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11.7%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였지만,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은 2015년 18.3%로 2014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로 머물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시급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림 6-19 청소년 현재 흡연율 (2007~2015)



자료: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	2015	1년

# 고위험 음주율

High Risk Alcohol Consumption

## 지표 정의

고위험 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최근 1년간 음주빈도 문항 주2회 이상 응답자이면서 1회 음주량 문항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 응답자}}{\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2014년 고위험 음주율은 13.5%으로 전년도 12.5%에 비해 1.0%p 증가하였다. 이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가장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30~39세, 40~49세 집단에서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지방)이 동지역(도시)보다 다소 높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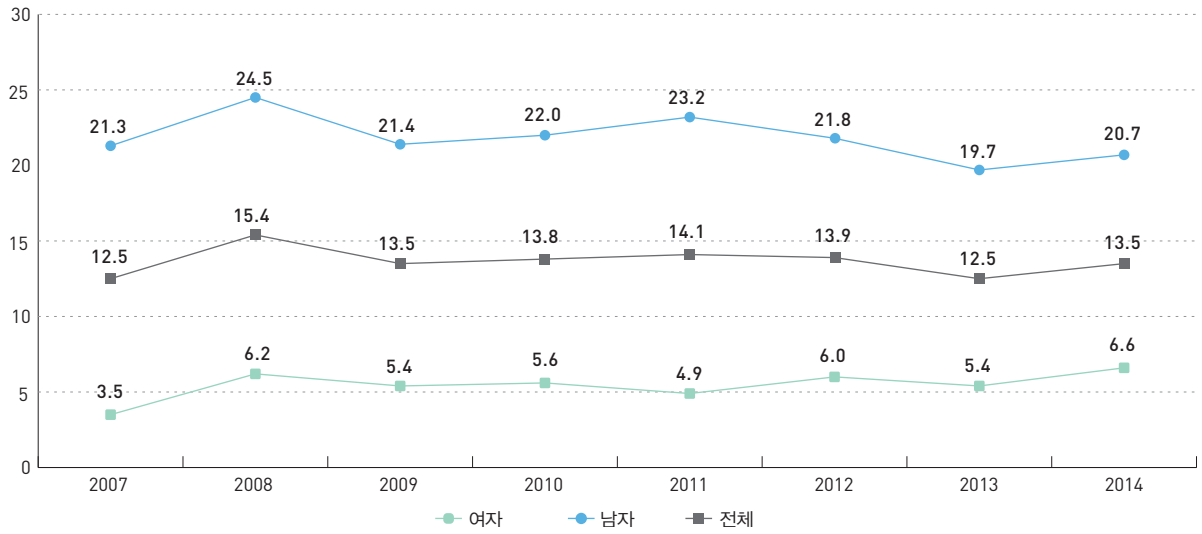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Checkpoint

과음하는 습관은 소화기계, 심혈관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치매, 뇌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음주는 알콜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4년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고위험 음주율은 2013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남자는 19.7%에서 20.7%로 1.0%p, 여자는 5.4%에서 6.6%로 1.2%p 증가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고위험 음주율이 2014년에 증가세로 돌아선데 있어서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그림 6-20 19세 이상 고위험 음주율 (2007~2014)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표 6-17 특성별 고위험 음주율 (2007~2014)

(단위: %)

	전체 <sup>1)</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1)</sup>		소득수준별 <sup>1)2)</sup>			
		19~29	30~39	40~49	50~59	60~69	70+	등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12.5	11.2	15.7	17.4	10.4	7.3	1.8	12.5	12.5	12.4	11.4	12.0	14.6
2008	15.4	15.9	17.1	19.3	16.9	7.8	3.8	15.4	14.5	17.5	15.7	14.7	14.4
2009	13.5	14.4	15.2	16.8	13.0	7.9	2.8	13.5	13.2	14.5	14.1	13.4	12.2
2010	13.8	12.9	18.0	16.8	13.8	6.7	3.6	13.5	14.7	15.2	13.7	13.7	12.6
2011	14.1	14.2	18.8	16.2	14.1	6.5	2.0	13.5	16.5	15.2	13.9	12.5	14.8
2012	13.9	14.4	17.2	17.2	13.3	6.5	2.8	13.9	14.2	13.4	12.6	15.6	14.6
2013	12.5	14.1	15.6	15.1	12.1	4.6	1.7	12.4	13.0	11.1	13.1	13.3	12.8
2014	13.5	11.9	17.6	16.4	14.5	7.4	3.3	13.2	16.0	14.4	13.3	13.1	12.9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연간 음주율

Current Alcohol Consumption rate

07-1  
연 관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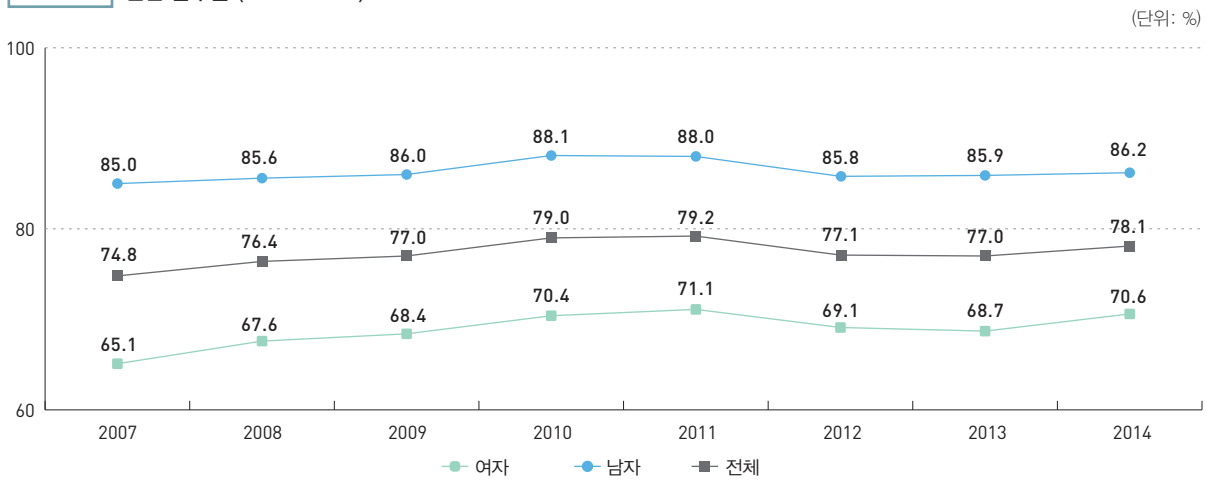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문화에 다소 너그러운 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간 음주율 자체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고위험 음주율’과 같은 수준에서 음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음주율(1년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분율) 자체를 문제시 할 수는 없다. 2014년 연간 음주율은 78.1%로 전년도에 비해서 1.1%p 증가하였다. 남자는 86.2%, 여자는 70.6%가 1년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21 연간 음주율 (2007~2014)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 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청소년 현재 음주율

Current Alcohol Consumption rate of Adolescents

## 지표 정의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청소년(중1~고3)의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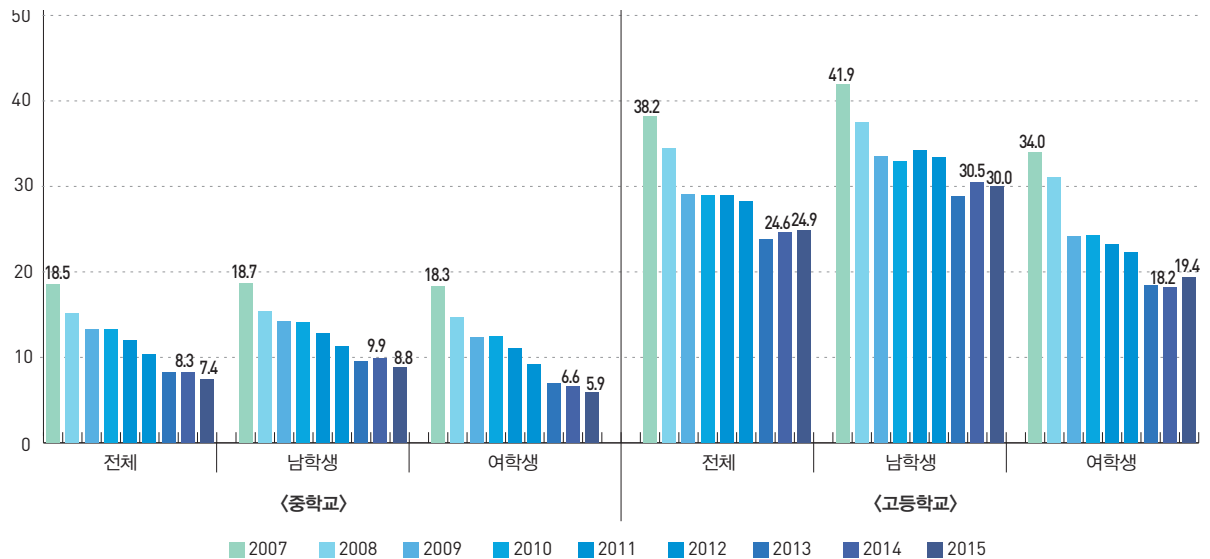
## 측정 산식

$$\frac{\text{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수}}{\text{조사 대상자 전수}} \times 100$$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앞서 살펴본 흡연율과 같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학생은 7.4%, 고등학생은 24.9%가 현재 음주를 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청소년의 음주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주율이 높다는 점은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다.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22 청소년 현재 음주율 (2007~2015)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	2015	1년

# 1인당 알콜소비량

Alcohol Consumption Per Capita

## 지표 정의

1인당 알콜소비량(주류 소비량)은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1인당 순수 알콜소비량을 ℓ 단위로 나타낸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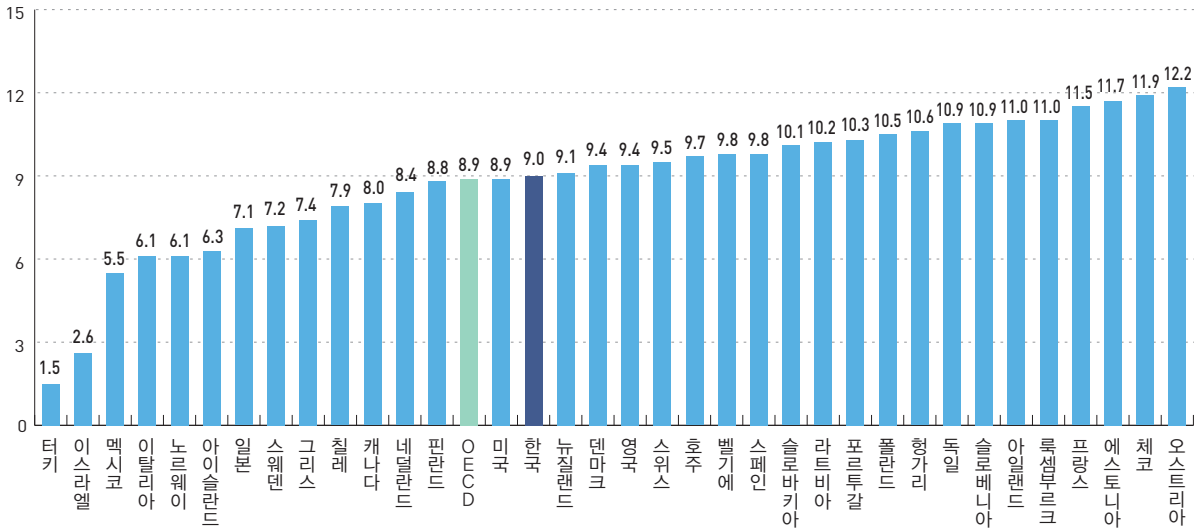
## 측정 산식

$$\frac{\text{주류 총 소비량}}{\text{15세 이상 인구 수}}$$

과도한 알콜 소비는 질병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즉, 알콜의 과다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과 간경화 및 암 발생 등 건강 상 위해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고, 범죄 및 자살 등 사회적 문제도 초래한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는 알콜에 대한 접근성과 유통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 등을 통해 알콜 섭취를 억제하는 정책을 권장하였다. 2014년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알콜소비량은 1인당 9.0ℓ로 OECD 평균 8.9ℓ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6-23 OECD 국가의 15세 이상 1인당 알콜소비량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리터)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Health Statistics	-	2014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 비만율

Obesity Rate

## 지표 정의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BMI 25kg/m<sup>2</sup>(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 이상 인구를 비만인구라 정의하고 있다. WHO는 비만을 '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하게 지방조직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로 정의한 바 있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측정이 비교적 쉬워 건강조사나 임상검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어온 비만지표이다. 비만은 여러 만성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어, 비만 지표는 미래의 질병부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간주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체질량지수(BMI)* 25kg/m}^2 \text{ 이상인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sup>2</sup>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비만 인구비율(이하, 비만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007년 31.7%, 2010년 30.9%, 2014년 30.9%).

2014년을 기준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60~69세가 가장 높았으며 19~29세가 가장 낮았다. 거주 지역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지방)이 동지역(도시)에 비해서 다소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하위층에서의 비만율이 높았다.

OECD는 비만율을 두 가지 측정법(자기인식, 객관적 수치)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제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자기인식에 따른 비만율은 OECD 평균이 50.2%이고, 우리나라는 25.0%이다. 측정값에 따른 결과는 OECD 평균이 57.2%이고, 우리나라는 30.8%이다. 두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비만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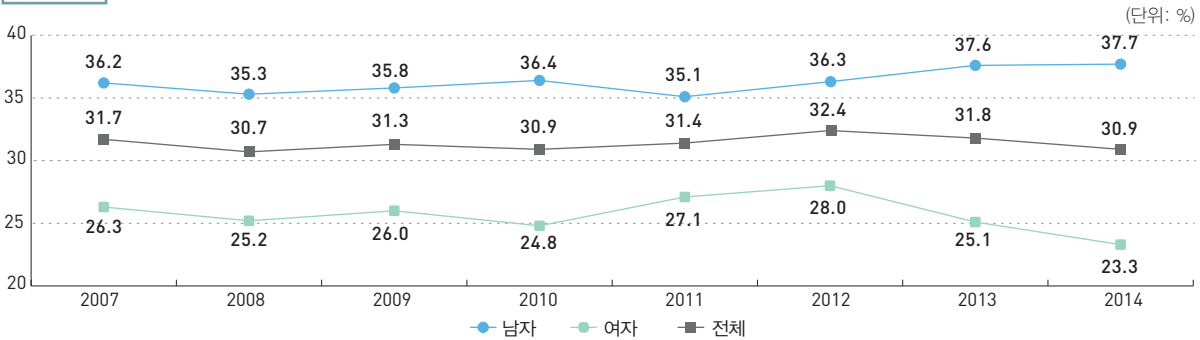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Checkpoint

2014년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비만율은 37.7%로 전년대비(37.6%) 0.1%p 증가한 반면, 여자는 23.3%로 1.8%p 감소(2013년 25.1%)하였다. 여자의 비만율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반해, 남자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성별에 따른 비만율의 차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비만은 주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바, 남성의 비만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그림 6-24 성인 비만율 (2007~2014)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표 6-18 특성별 비만율 (2007~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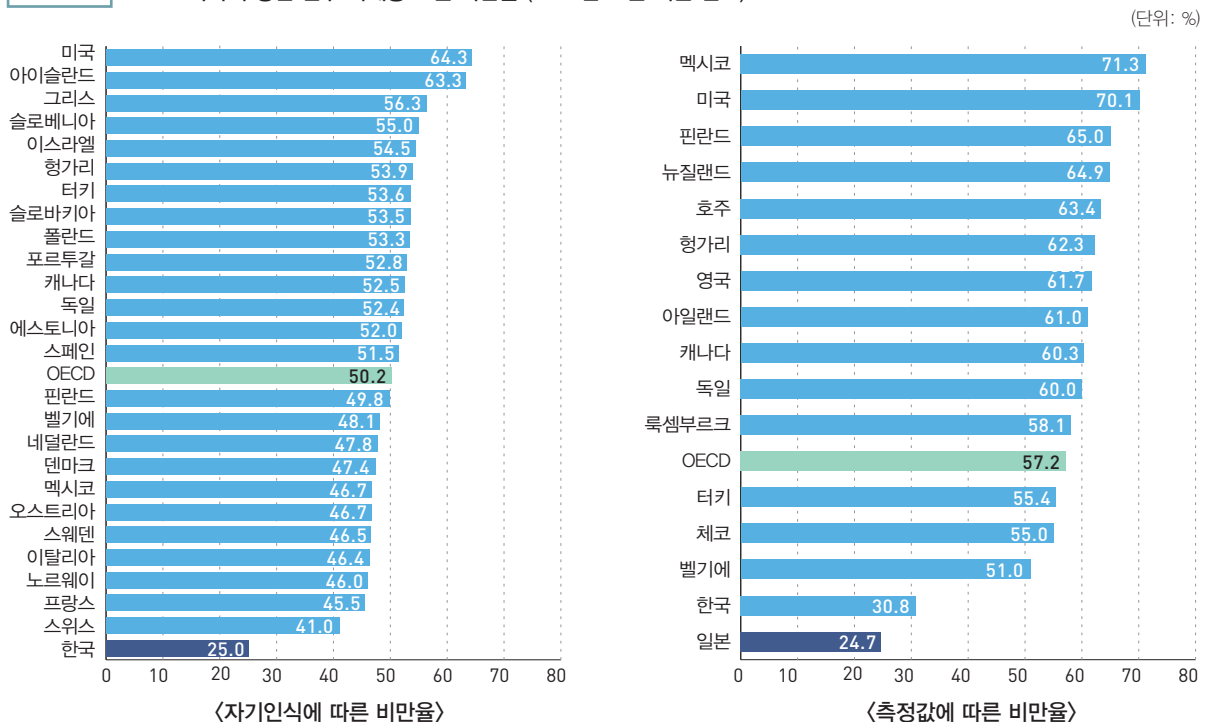
연도	전체 <sup>1)</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1)</sup>		소득수준별 <sup>1)2)</sup>			
		19~29	30~39	40~49	50~59	60~69	70+	등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31.7	22.0	27.8	32.5	42.4	46.2	31.7	32.8	28.2	31.2	31.1	34.2	31.3
2008	30.7	23.0	28.0	34.4	37.4	37.2	29.3	30.7	31.6	32.5	31.4	30.1	29.4
2009	31.3	22.1	29.5	34.7	40.0	37.0	31.1	31.2	33.3	33.2	34.5	28.7	29.4
2010	30.9	20.5	31.0	34.1	35.3	40.7	30.6	30.7	31.8	30.1	31.8	30.2	31.7
2011	31.4	21.7	31.5	35.4	35.7	38.8	29.7	31.1	34.3	31.6	32.0	32.6	29.1
2012	32.4	22.4	32.5	39.2	34.1	38.5	31.1	31.5	37.6	34.3	35.0	31.1	29.5
2013	31.8	22.4	33.2	33.7	37.3	36.3	33.8	31.3	33.5	32.1	33.0	30.6	31.1
2014	30.9	23.9	31.8	31.1	35.4	36.8	32.1	30.5	33.2	32.5	34.7	30.1	26.3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그림 6-25 OECD 국가의 성인 인구 과체중 또는 비만율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청소년 비만율

Adolescent Obesity Rate

## 지표 정의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기준 95백분위 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며, 자기기입 신장 및 체중으로 산출하였다.

\*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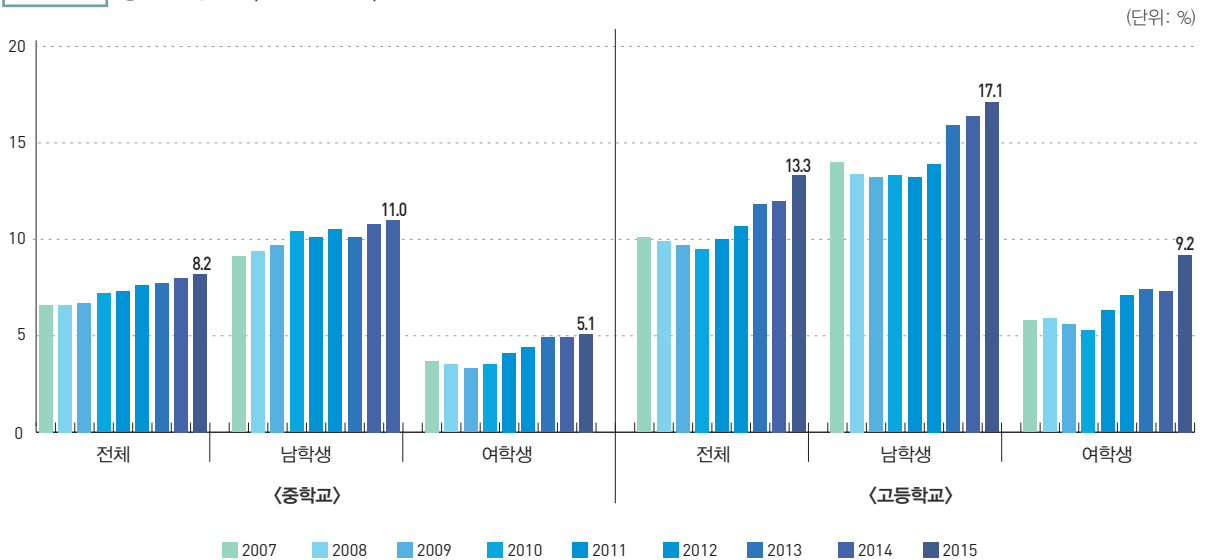
## 측정 산식

$$\frac{\text{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 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사람의 수}}{\text{조사 대상자 전수}} \times 100$$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에 있던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성인이 되어서 체중을 줄이더라도, 비만은 성장 후 심혈관 질환의 유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식이장애, 스트레스 유발과 함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인기 이전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학생은 8.2%, 고등학교 학생은 13.3%가 현재 비만 상태이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초기에는 비만율이 감소하다가, 2009~2010년을 전후로 하여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 고등학교에서 비만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의 비만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6-26 청소년 비만율 (2007~2015)



자료: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	2015	1년

# 걷기실천율

Practice rate of physical activity (Walking)

## 지표 정의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신체활동으로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일상적인 신체활동이다. 그러나 최근에 걷기실천율이 감소 경향을 보인다. 2000년대 후반에는 45% 이상이던 실천율이 최근에는 40%대로 내려왔다.

2014년의 걷기실천율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19~29세가 가장 높았으며 30~39세가 가장 낮았다. 거주 지역에 있어서는 동지역(도시)이 읍면지역(지방)에 비해서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걷기실천율이 높았다.

표 6-19 특성별 걷기실천율 (2007~2014)

(단위: %)

전체 <sup>1)</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1)</sup>		소득수준별 <sup>1)2)</sup>				
	19~29	30~39	40~49	50~59	60~69	70+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45.7	50.9	39.6	43.1	48.6	50.9	45.5	47.2	41.0	45.5	45.3	45.2	47.5
2008	46.9	55.1	41.6	39.1	50.3	52.4	48.2	46.7	46.7	45.4	48.6	46.4	47.7
2009	46.1	53.0	42.2	41.8	44.8	51.3	45.5	46.7	42.4	47.8	46.7	44.6	44.9
2010	41.1	50.9	38.3	34.5	40.1	44.5	37.8	41.1	41.4	43.4	40.8	40.6	39.6
2011	38.0	49.8	34.9	31.9	36.7	36.6	34.3	39.4	29.7	38.3	36.2	39.2	37.8
2012	39.4	50.6	39.0	34.5	34.7	37.7	32.1	40.7	33.0	39.8	37.6	39.6	40.6
2013	38.0	49.0	35.7	36.0	31.5	34.7	35.1	39.0	33.9	37.4	36.4	39.2	39.2
2014	41.7	51.9	37.1	38.8	39.3	41.2	38.7	43.6	30.9	41.3	38.9	41.9	44.7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Rates of undernutrition

## 지표 정의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비율이다. 영양은 식품을 통해 공급되고, 사람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적절한 영양섭취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근골격계 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영양섭취를 해야 하는지 기준량을 제시하고 있다.

## 측정 산식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미만인 대상자 수 × 100  
 만 1세 이상 대상자 수

2007년 이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소 증감이 반복되기는 하였지만 점차 영양섭취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의 전체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8.3%로, 남자(5.6%)와 여자(11.2%)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50~64세에 있어서 영양섭취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 지역에 있어서는 동지역(도시)이 읍면지역(지방)에 비해서 기준 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영양섭취가 열악하였다. 가장 상위층과 하위층이 1.6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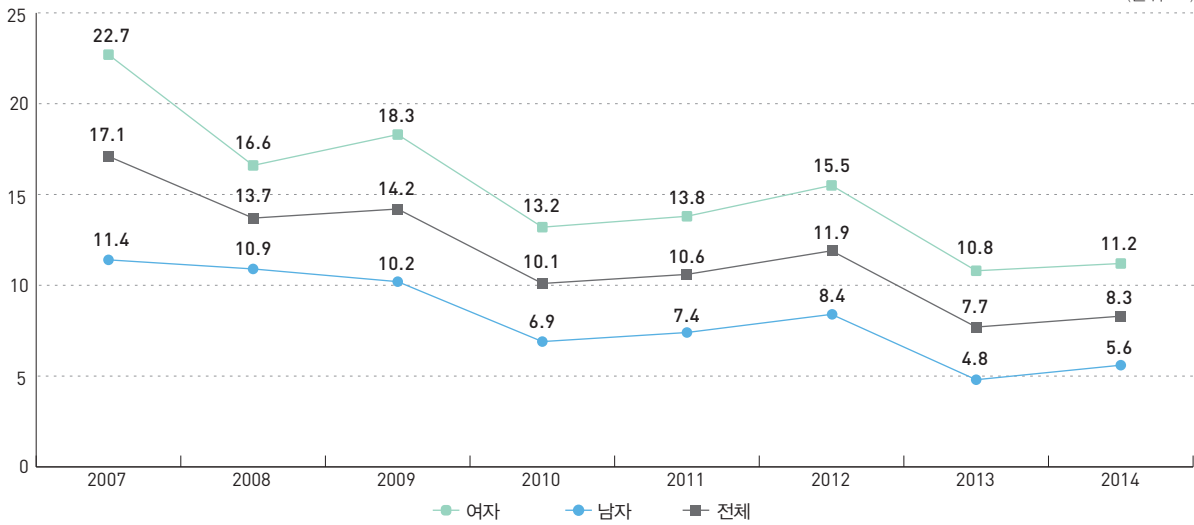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Checkpoint

2014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8.3%로 2013년 7.7%에 비해 0.6%p 높아졌다. 그러나 남녀와 거주 지역별, 소득수준별 편차가 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형평성 개선이 요구된다.

그림 6-27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007~2014)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1세 이상)로 연령 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표 6-20 특성별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007~2014)

(단위: %)

연도	전체 <sup>1)</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1)</sup>		소득수준별 <sup>1)2)</sup>			
		1~2	3~5	6~11	12~18	19~29	30~49	50~64	65+	등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17.1	18.1	15.5	11.3	19.9	21.8	14.1	13.7	27.5	17.5	15.7	20.3	16.0	19.1	13.1
2008	13.7	7.6	6.7	6.8	20.0	20.7	11.2	9.3	20.5	13.6	13.8	18.1	13.8	12.1	10.7
2009	14.2	8.2	7.4	7.9	21.9	19.2	11.9	9.1	22.6	14.0	15.2	19.2	14.8	12.3	10.2
2010	10.1	4.9	7.0	7.5	15.6	14.8	8.1	5.7	14.7	10.2	9.1	13.4	11.3	7.4	7.2
2011	10.6	11.4	6.0	4.3	14.9	15.4	9.3	5.9	17.0	11.1	8.0	12.7	10.5	9.5	9.1
2012	11.9	9.3	7.6	7.3	17.0	17.1	10.3	8.0	15.6	11.2	15.3	16.9	10.4	11.1	8.5
2013	7.7	5.9	4.4	3.9	14.3	11.8	7.4	2.6	7.8	8.0	6.1	9.6	8.4	6.6	6.4
2014	8.3	13.0	4.5	3.5	15.2	12.8	7.6	3.1	8.4	8.2	9.1	10.8	7.9	7.6	6.9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Practice rate of healthy dietary lifestyle

## 지표 정의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현황을 반영하는 4개 지표 중에서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분율이다. 여기에서 지방은 지방섭취가 지방에너지적정비율(6~18세 15~30%, 19세이상 15~25%; 2010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내 해당하는 경우이며, 나트륨은 1일 섭취량이 2,000mg 미만인 경우, 과일 및 채소는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 합계가 500g 이상인 경우로 분류한다. 그리고 영양표시는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지 여부에 '예'로 응답한 분율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대상자 수}}{\text{만 6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식생활은 건강상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식생활이란 영양소나 식품 섭취에 있어서 기본 원리를 따라 다양한 식품을 적당하게 섭취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건강식생활 실천율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4개 지표 중 지방, 과일 및 채소 적정 섭취에 부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나트륨을 기준 미만으로 섭취하는 분율이 낮은 편이다. 고연령군은 영양표시 이용자 분율이 낮고 섭취량도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섭취는 높아서 건강식생활 실천율이 가장 낮았고, 나트륨 섭취가 낮고 지방 적정 섭취자 분율이 높은 6~11세의 경우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식생활실천자 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자 분율에 대한 OECD 국가 간 비교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채소의 경우 99.1%, 과일의 경우 65.5%로 나타나 상위에 해당되지만 각국의 조사방법에 따라 지표의 정의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비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일간의 섭취조사 내용 중 채소류 혹은 과일류가 포함된 사람의 분율을 정의로 산출하기 때문에 매일 섭취자의 의미에 맞지는 않는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표 6-21 특성별 건강식생활 실천율 (2007~2014)

(단위: %)

	전체 <sup>1)</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1)</sup>		소득수준별 <sup>1)2)</sup>			
		6~11	12~18	19~29	30~49	50~64	65+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33.8	33.4	38.3	36.4	40.3	25.6	12.8	34.0	33.7	30.0	34.1	36.9	35.5
2008	30.6	29.4	33.5	32.8	35.9	25.7	11.9	31.0	29.0	26.0	30.9	29.9	35.1
2009	32.2	35.7	35.9	34.5	37.3	24.8	13.9	32.7	30.9	31.0	30.1	30.8	36.8
2010	33.9	31.4	37.7	37.1	40.7	25.6	12.5	35.0	29.6	31.2	34.3	34.4	36.1
2011	33.2	33.9	38.7	36.7	36.6	28.0	14.1	34.2	27.8	29.4	31.2	33.4	39.6
2012	33.7	32.1	35.6	35.7	38.7	30.2	15.7	34.1	32.4	28.4	31.6	34.9	41.1
2013	36.9	40.6	41.5	36.8	39.7	34.2	21.3	37.9	32.2	32.7	36.4	36.1	42.0
2014	37.4	37.4	41.7	31.7	42.0	38.5	24.0	38.3	32.5	34.2	35.7	38.1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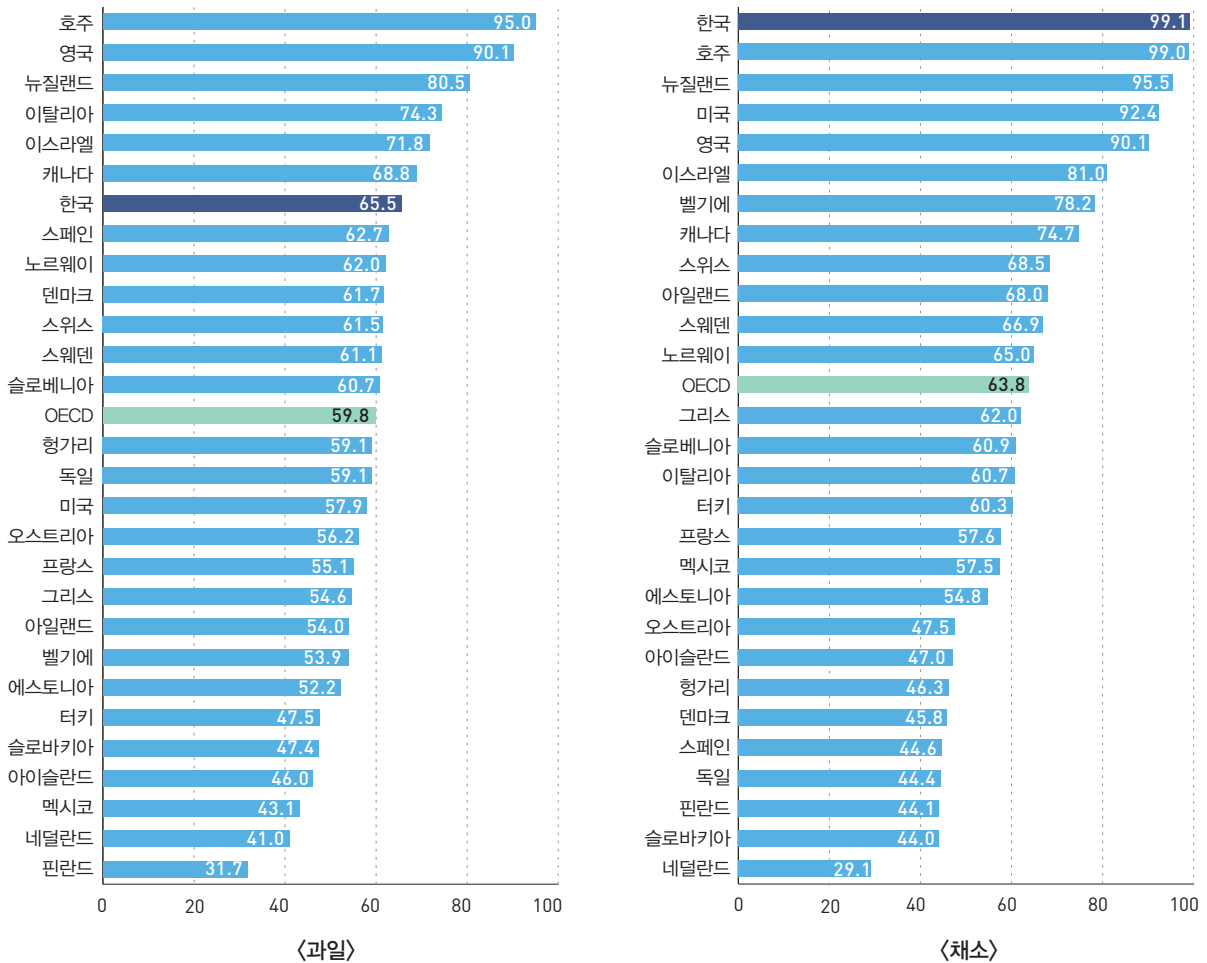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그림 6-28 OECD 국가의 과일/채소 매일 섭취자 비율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평균 재원일수

Average of inpatient days

## 지표 정의

평균 재원일수(ALOS, average length of stay)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보내는 평균일수로 입원환자의 총 재원일수를 실제 입원한 환자 수로 나눈 비율이다. OECD 국가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분석대상은 병원급으로 한정하였다.

## 측정 산식

$$\frac{\text{입원환자의 총 재원일수}}{\text{입원환자 수}}$$

2014년 일반병원의 평균 재원일수는 9.3일이다. 이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은 7.4일,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18.2일이다. 종합병원은 병상의 규모에 따라 더욱 세분화할 수 있는데, 300병상 이상인 경우 9.7일, 160~299병상 9.3일, 160병상 미만은 9.0일로 확인되었다.

의료기관의 소재지와 규모 따라서 재원일수가 차이를 보이는데, 읍면지역에 소재한 병원(요양병원 포함)의 평균 재원일수는 23.0일로 도시지역(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위치한 병원의 재원일수보다 길다. 한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병상의 규모가 클수록 재원일수가 짧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는 16.5일로 OECD 회원국(평균 7.2일) 중에서 가장 길다. 2013년에는 일본의 재원일수가 30.6일로 가장 길었으나, 2014년 기준 데이터(OECD Health statistics 2016)부터는 일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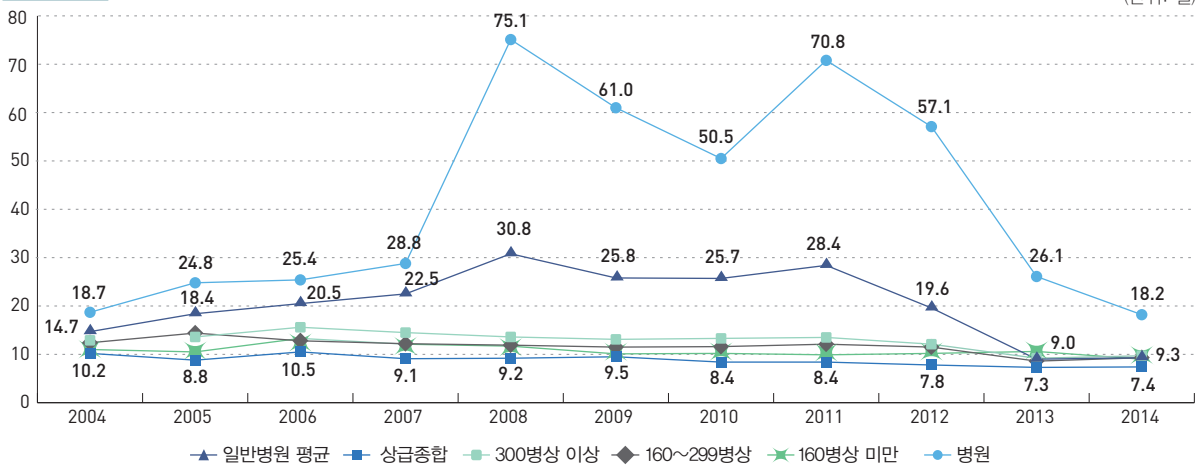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실태조사	1992	2014	1년

## Checkpoint

병상에 있어서 기능과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급성기 병상에 일반 환자가 오래 입원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다. 치료 서비스가 끝나면 바로 퇴원을 하거나, 재활이나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병상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급성기 병상에서의 입원일수 관리가 요구된다.

그림 6-29 전체 의료기관 평균 재원일수 (2004~2014)

(단위: 일)



주: 정신병원, 전염성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실태조사, 각 연도

표 6-22 병원 소재지별 · 연도별 평균 재원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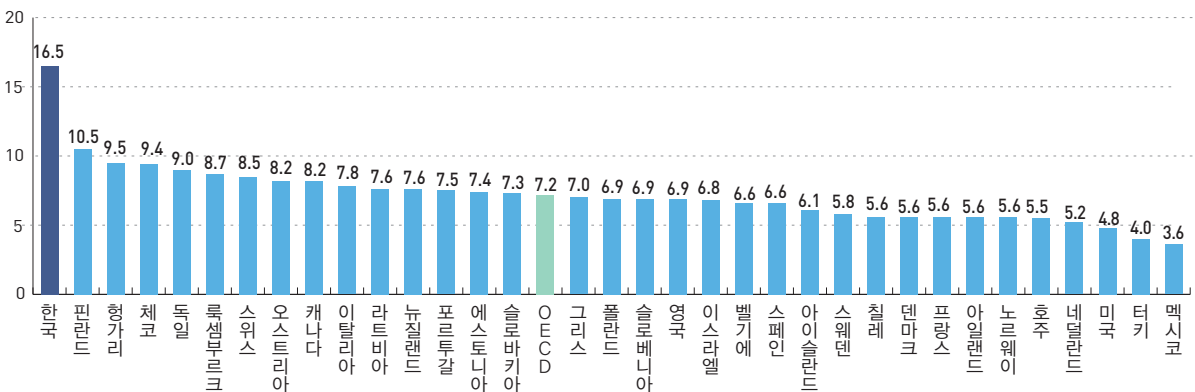
(단위: 일)

	전체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읍면지역		
	2005	2010	2014	2005	2010	2014	2005	2010	2013	2005	2010	2014
일반병원 평균	18.4	25.7	9.3	19.2	19.7	8.8	16.3	29.6	10.2	22.4	36.5	14.1
종합병원												
- 상급종합	8.8	8.4	7.4	8.8	8.5	7.5	8.8	8.2	7.3	-	-	-
- 300병상 이상	13.6	13.3	9.7	13.2	11.3	9.7	14.0	14.7	9.6	13.6	17.8	12.4
- 160~299병상	14.4	11.6	9.3	12.5	11.6	8.6	13.9	11.0	9.5	21.9	16.2	14.6
- 160병상 미만	10.5	10.2	9.0	6.9	9.3	7.5	11.8	10.4	9.8	9.1	11.9	10.1
병원	24.8	50.5	18.2	26.6	37.9	20.0	22.0	65.0	16.0	24.8	47.7	23.0

주: 정신병원, 전염성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6-30 OECD 국가의 평균 재원일수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일)



주: OECD 제출자료는 환자조사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재원일수와는 다름.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1일 외래환자 수

Daily Number of outpatient

## 지표 정의

의료기관이 지정한 1일간 초진 및 재진환자 수를 말하며, 산부인과에서의 산전·산후진찰, 예방접종자, 개인별 신체검사자, 시력검사자, 응급실환자는 전원 외래환자로 분류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환자조사를 통해 표본의료기관의 1일간 외래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외래환자 수를 파악한다. 환자조사는 종합병원, 병원, 보건소 및 조산원은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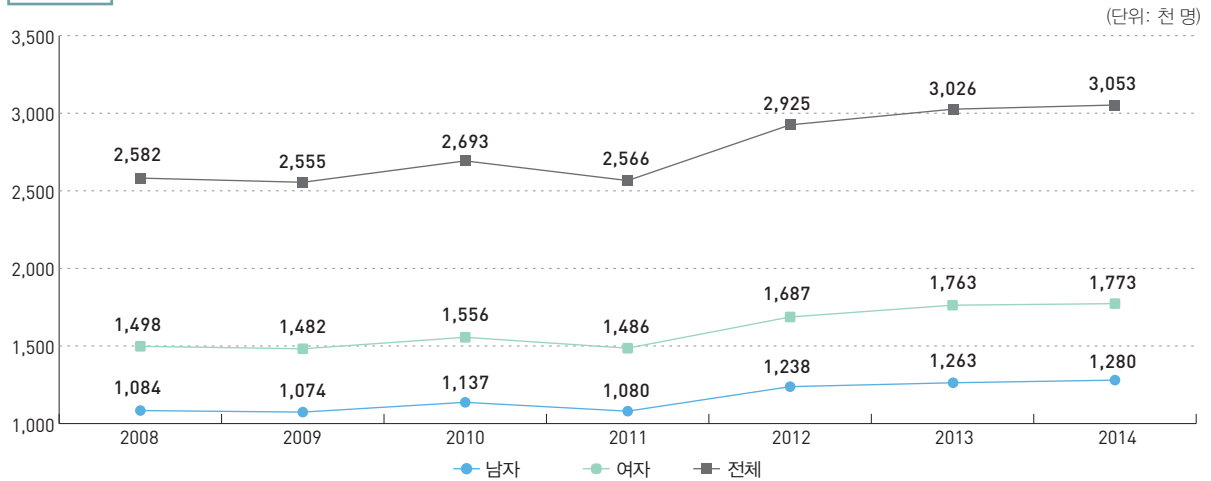
## 측정 산식

- 의료기관별 지정한 1일간 초진 및 재진환자 수

2014년 1일 외래환자 수는 305.3만 명으로 전년(302.6만 명)보다 2.7만 명 증가하였다. 1일 외래환자 수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인 외래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성별 비율은 최근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남자 42%, 여자가 58%).

상병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62만 명(20.6%), 호흡계통의 질환 45만 명(14.8%), 소화계통의 질환 41만 명(13.5%),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30만 명(9.8%), 순환계통의 질환 20만 명(6.7%) 순으로 외래환자 수가 많았다.

그림 6-31 전체 의료기관 1일 외래환자 수 (2008~2014)



자료: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1988	2014	1년

# 1인당 의사진찰 건수

Number of consultations with doctor per capita

## 지표 정의

의사의 진찰은 의사와 환자의 만남을 의미하며, 진찰(consultation)이 포함하는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또 국가마다 보건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진찰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다를 수 있다. 진찰은 의사의 진료실, 클리닉, 병원의 외래부서, 또는 환자의 집에서 이루어진다(OECD,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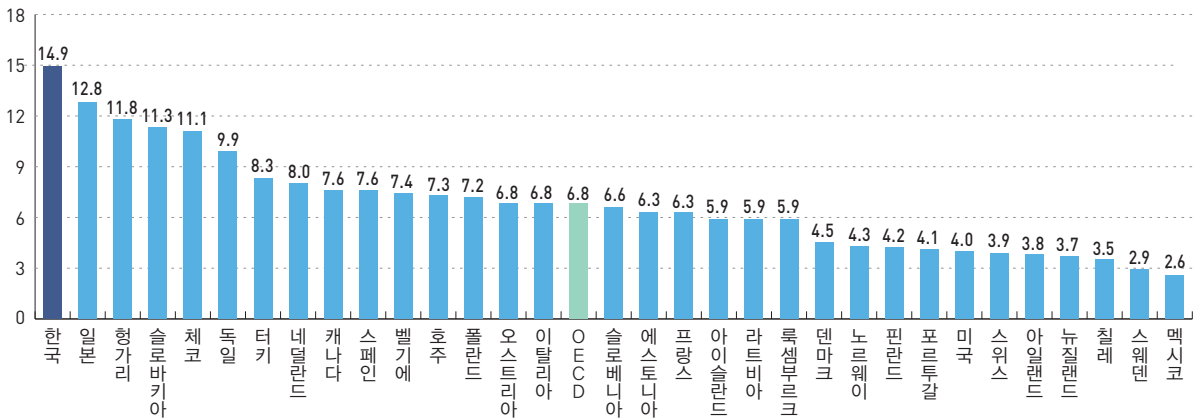
## 측정 산식

$$\frac{\text{연간 의사진찰 건수}}{\text{인구 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의사진찰 건수는 2009년 12.9건에서 2014년 14.9건으로 5년간 약 15% 증가하였다. 이는 OECD 국가 평균(6.8건)의 2.2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일본(12.8), 헝가리(11.8), 슬로바키아(11.3), 체코(11.1) 국민도 연간 10회 이상 의사를 방문한다.

그림 6-32 OECD 국가의 1인당 의사진찰 건수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건)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Health Statistics	-	2014	1년

# 1인당 의료이용 현황

Use of health care services

## 지표 정의

의료이용률은 해당 인구 중에서 보건의료기관에서 외래서비스나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전체 외래방문 횟수(또는 입원일수)}}{\text{조사 응답자 수}}$$

1인당 의료이용량을 가입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의료 이용량이 더 많다.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외래방문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31.6회)와 대전(31.1회)이다. 건당 입원일수가 가장 긴 곳은 부산(10.7일)과 경남(10.6일)이다.

표 6-23 시도별 1인당 의료이용 현황 (2011)

(단위: 회, 일)

	외래방문 횟수			입원일수 (건당)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국	26.6	21.9	34.9	9.7	8.6	13.4
서울	27.1	21.6	34.8	9.3	8.3	12.4
부산	28.0	23.0	35.0	10.7	9.3	14.4
대구	28.5	22.0	36.6	10.4	9.2	13.0
인천	25.9	21.1	33.4	9.5	8.2	13.5
광주	28.6	22.1	34.9	9.8	8.7	11.9
대전	31.1	24.3	39.2	9.9	8.8	12.6
울산	27.6	22.5	37.8	10.5	9.3	15.8
경기	25.1	21.4	33.5	9.0	8.2	13.2
강원	23.3	19.7	31.3	9.2	8.1	14.0
충북	24.8	21.8	32.3	9.3	8.3	14.1
충남	27.2	23.0	35.7	9.3	8.3	13.3
전북	26.9	23.1	34.7	10.0	8.8	13.6
전남	27.4	22.6	36.2	9.9	8.9	12.9
경북	25.1	20.3	34.3	10.1	8.9	13.8
경남	27.6	22.5	37.6	10.6	9.3	15.0
제주	31.6	27.9	36.0	9.8	8.8	12.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1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01	2011	5년

# 산전수진율

Rate of Prenatal care

## 지표 정의

산전수진율이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5~49세 기혼여성 임신 부 중 의료기관을 방문한 임신부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의료의 접근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출산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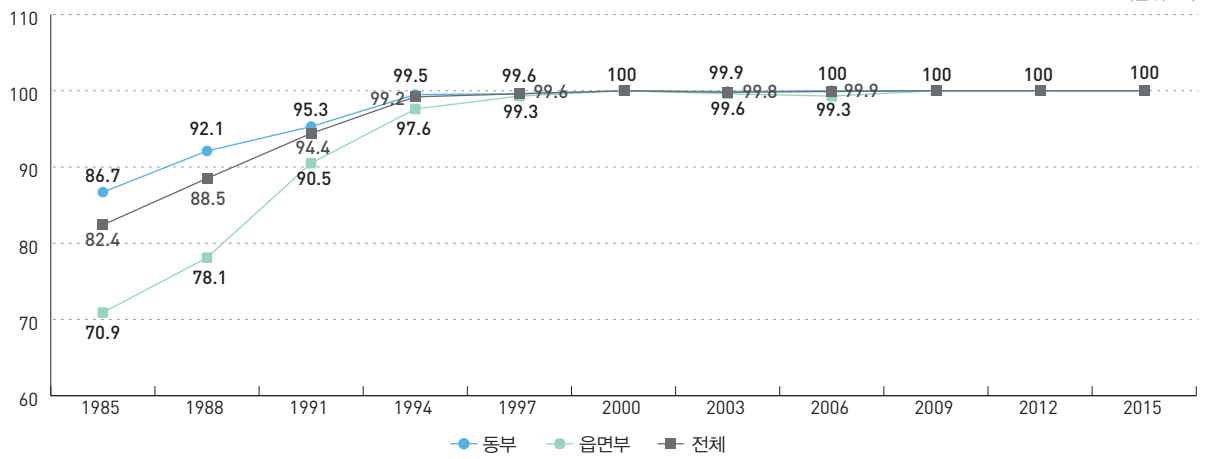
$$\frac{\text{임신 중 의료기관 방문을 한 대상자 수}}{\text{15~49세 기혼여성 조사 대상자 수}} \times 100$$

만혼 및 만산이 증가하여 고령산모와 난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임신이 증가되면서 모성사망률도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산전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산전관리는 모성과 태아의 건강과 바람직한 출산결과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모자보건영역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임신기간 동안 산전관리를 포함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전수진율은 2009년이 되면서 현재까지 100%로 모든 임신부는 임신기간 중에 한 번 이상 관련 진찰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동부와 읍면부의 산전수진율은 100%일 때를 제외하고 지역별 격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분만취약지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또한 산전수진율에 대한 검토에서 더 나아가 임신기간 중 처음으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시기(초진시기)는 임신 몇 째 주인지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한 횟수는 총 몇 번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초진시기와 임신 중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고려한 산전관리적합도 지수를 산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964	2015	3년

그림 6-33 연도별·지역별 산전수진율 (1985~20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각 연도

표 6-24 연도별 지역별(동부, 읍·면부) 및 모의 연령구간별 산전진찰 초진시기 및 방문 횟수

(단위: 주, 번)

특성	2006		2009		2012		2015	
	초진시기	방문 횟수	초진시기	방문 횟수	초진시기	방문 횟수	초진시기	방문 횟수
전체	5.32	13.49	5.53	13.49	5.38	13.39	5.31	13.30
지역								
동부	5.32	13.32	5.50	13.58	5.33	13.39	5.29	13.33
읍·면부	5.49	12.78	5.71	12.94	5.65	13.39	5.40	13.18
모 연령								
15~24세	5.92	12.56	6.78	13.28	7.36	13.52	5.97	13.11
25~29세	5.13	13.47	5.45	13.62	5.01	13.41	5.23	13.67
30~34세	5.34	13.32	5.40	13.16	5.01	13.22	5.23	13.17
35세 이상	5.51	12.87	5.42	14.25	6.24	13.68	5.42	13.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각 연도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rates

## 지표 정의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분율이다. 인플루엔자는 급성기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며, 매년 예외 없이 발생되어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이는 전 연령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이 면역력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증이나 사망의 위험이 동반된다. 인플루엔자는 기본적으로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나, 부작용이 많은 항바이러스제보다는 예방접종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2014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30.6%로 2013년에 비해서 1.1%p 감소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70세 이상의 인구 집단에서 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60~69세도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과거에는 읍면지역(지방)이 동지역(도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에 올수록 동지역(도시) 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2011년 이후로는 지역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분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예방접종이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보편화되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OECD 국가와의 비교는 연령집단에 따라 각각 살펴볼 수 있다. 단, 연령집단마다 권장되는 예방접종의 형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65세 이상 인구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2014년 OECD 국가 평균이 47.2%이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82.3%(멕시코)부터 1.4%(에스토니아)까지 국가 간에 격차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2014년 79.8%로 국가 간 비교에서 비교적 우위에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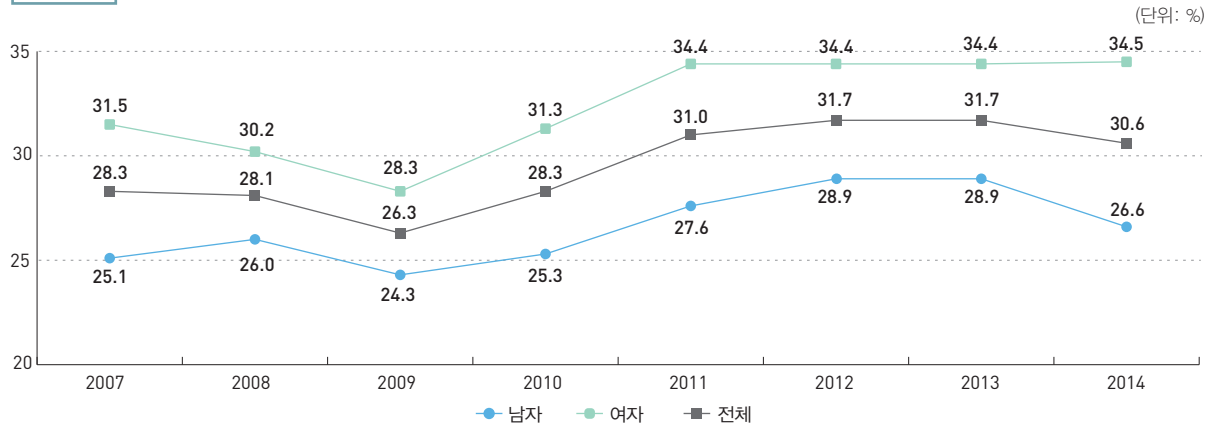
WHO는 예방접종이 사람들을 인플루엔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예방 활동이 강화되면서 예방접종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예방접종률은 2000년대 후반 28%대에 머물렀으나, 2011년에 들어서 31%로 급속히 올라간 후 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그림 6-34 19세 이상 예방접종률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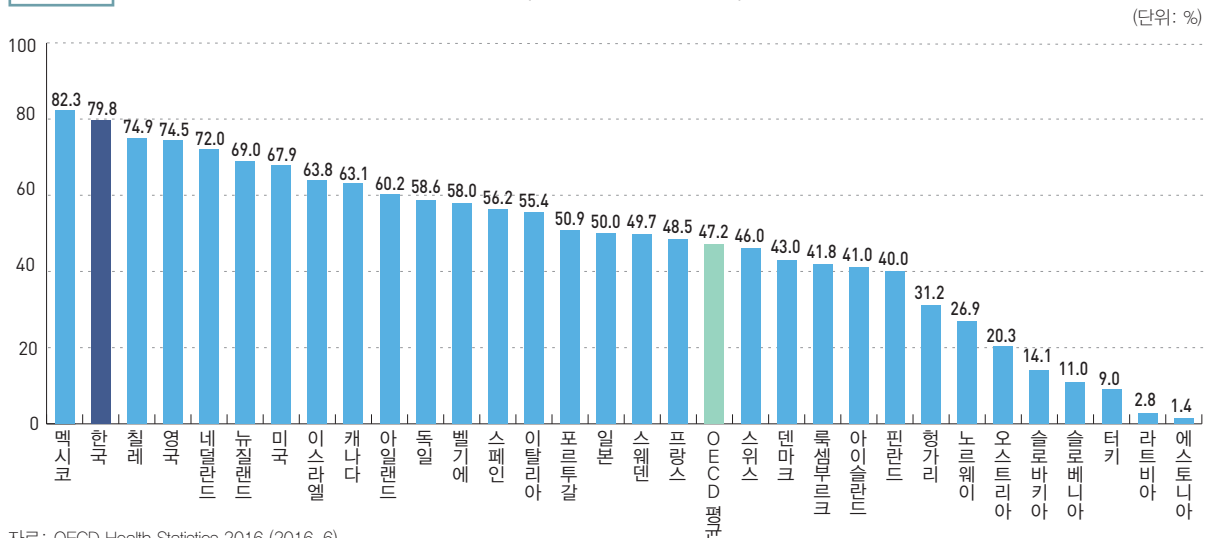
주: 1) 2013년 결과 비제시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표 6-25 연도별·특성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연도	전체 <sup>2)</sup>	연령별						거주지역별 <sup>2)</sup>		소득수준별 <sup>2)3)</sup>			
		19~29	30~39	40~49	50~59	60~69	70+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28.3	16.8	22.9	15.0	34.1	55.6	74.0	26.9	34.4	26.0	28.7	28.6	30.8
2008	28.1	14.0	20.3	17.7	32.3	60.5	76.1	27.0	32.2	25.4	29.1	28.3	29.5
2009	26.3	12.9	18.5	16.2	28.8	55.5	78.4	25.5	28.7	24.4	26.5	25.9	28.2
2010	28.3	16.6	25.4	16.9	23.5	55.5	80.6	28.2	27.6	26.1	29.8	27.0	30.5
2011	31.0	18.0	26.9	21.2	27.0	61.0	81.1	30.9	30.8	31.0	30.1	31.3	31.8
2012	31.7	18.0	29.5	21.7	28.6	58.7	80.9	31.4	33.2	31.7	30.4	32.0	33.0
2013	-	-	-	-	-	-	-	-	-	-	-	-	-
2014	30.6	16.2	29.0	20.1	26.7	57.4	83.6	30.9	29.7	30.8	27.6	32.7	31.5

주: 1) 2013년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3)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그림 6-35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예방접종률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3세 대상

DPT(Diphtheriae, Tetanus, Pertussis) Vaccination Coverage rates for 3 year-old

## 지표 정의

3세 이하의 소아 중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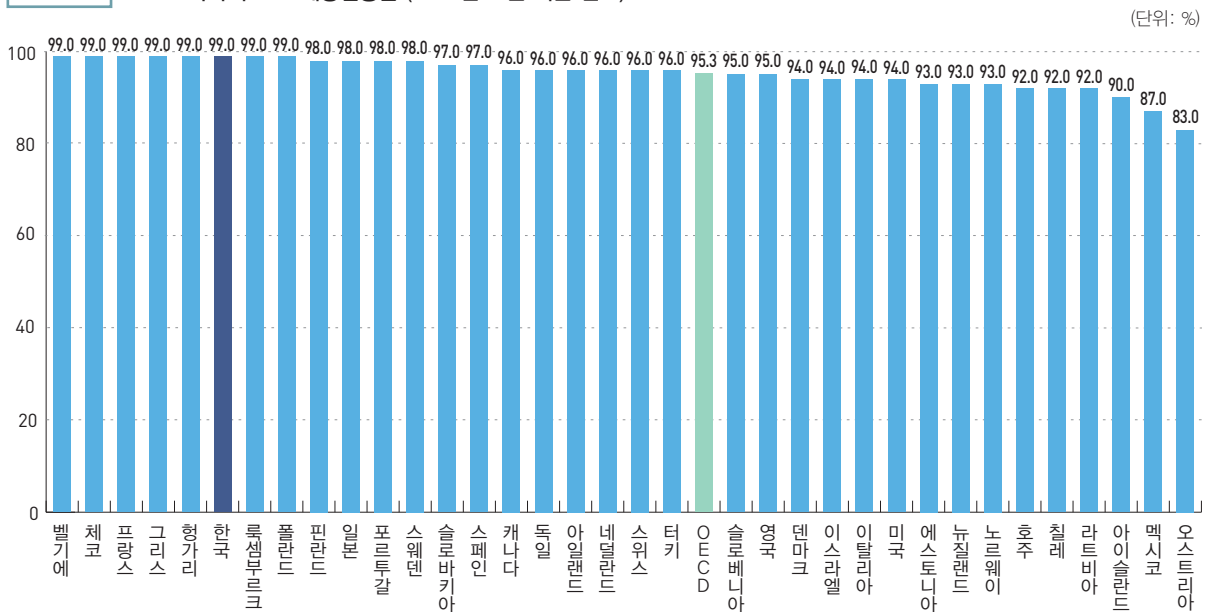
## 측정 산식

$$\frac{\text{3세 이하 중 DPT 접종을 받은 사람의 수}}{\text{3세 이하 인구 수}} \times 100$$

소아예방접종은 아동기에 권고된 기간 내에 얼마나 예방접종을 잘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이는 비용-효과적인 보건정책적 개입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가마다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 정책은 다양하다.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이 국가마다 다르고, 투여하는 방법이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백신 역시 통합적(DPT)으로 투여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투여되기도 한다(OECD, 2013).

노인예방접종에 비해 소아예방접종은 비교적 모든 국가에서 잘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90.0% 이상의 접종률을 보이는 가운데, OECD 평균은 95.5%이며, 우리나라는 99.0%의 접종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6-36 OECD 국가의 DPT 예방접종률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Health Statistics	-	2016	1년

#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만1~18세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rates for pediatric(1-18 year old)

## 지표 정의

만1~18세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text{만 1~18세 대상자 수}} \times 100$$

인플루엔자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접근에 의해서 직접 전파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건조된 점액이나 호흡기분비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밀집된 공간에서는 공기를 매개로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적은 건강한 성인계층은 우선적인 접종 대상이 아니나, 만성질환 보유자, 취약계층, 집단시설(학교, 집단요양시설, 수용소 등) 이용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체생활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세에서 18세 사이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은 2014년 47.8%를 차지하였다. 이는 처음 조사가 실시된 2007년에 비해 무려 11.2%p나 증가된 것인데, 최근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 보면 1~5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예방접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표 6-26 연령별·성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2007~2014)

(단위: %)

	전체	연령별				성별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남자	여자
2007	36.6	63.8	46.2	19.8	12.8	35.9	37.4
2008	36.6	66.8	43.7	21.0	13.1	34.7	38.7
2009	39.5	65.8	46.7	30.0	17.0	38.3	40.8
2010	45.2	73.9	57.4	31.7	16.3	44.4	46.2
2011	47.3	74.0	56.6	36.0	24.2	46.5	48.2
2012	49.7	78.6	59.7	38.3	23.5	51.9	47.0
2013	-	-	-	-	-	-	-
2014	47.8	79.2	55.2	31.4	20.1	47.0	48.6

주: 2013년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4	1년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Rate of recipients of general health check-ups

## 지표 정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 건강검진으로 이는 2차에 걸쳐 시행된다. 즉,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거나, 만 70세와 만 74세 중에서 인지기능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정된 사람은 다시 2차 검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역 가입자, 사무직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일반건강검진 수검 인원}}{\text{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유의사항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분야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1~64세 인구에 대해 살펴본다.

201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4.8%로 전년도에 비해서 2.7%p 증가하였다. 남자는 76.2%, 여자는 73.1%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9.4%로 가장 높고, 서울이 71.3%로 가장 낮다. 2차 수검대상은 1차 대상자의 9.4%로 이중 38.2%가 2차 검진을 수행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울산이 60.3%로 가장 높고, 강원이 31.0%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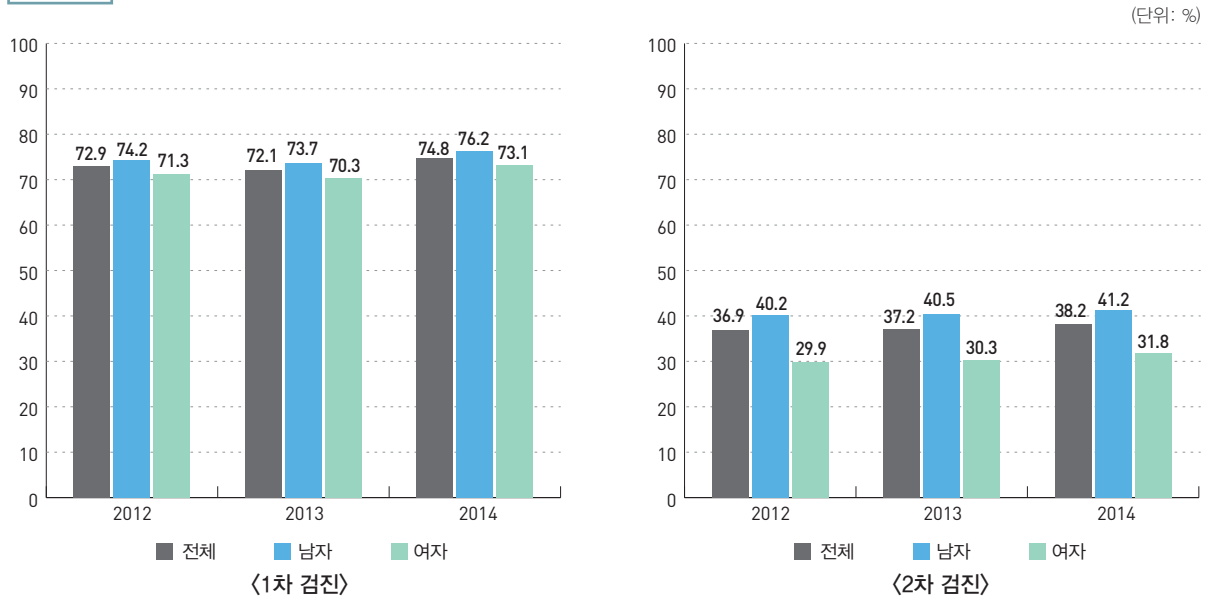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14	1년

### Checkpoint

2014년 1차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4.8%로 2013년 72.1%에 비해서 높아졌으며 남녀 모두 비슷한 비율로 향상되었다. 또한 1차 수검률은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2차 수검률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림 6-37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2~2014)



주: 2차 대상 인원은 1차 검진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해당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표 6-27 시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4)

	1차 검진			2차 검진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전체	16,456,214	12,301,581	[74.8]	1,158,235	442,398	[38.2]
서울	3,095,447	2,206,335	[71.3]	204,542	68,920	[33.7]
부산	1,152,802	875,524	[75.9]	76,742	34,473	[44.9]
대구	799,125	594,597	[74.4]	52,351	21,136	[40.4]
인천	918,031	697,680	[76.0]	68,755	27,858	[40.5]
광주	445,215	348,528	[78.3]	26,642	9,961	[37.4]
대전	486,039	382,001	[78.6]	34,968	14,209	[40.6]
울산	411,622	326,665	[79.4]	29,022	17,487	[60.3]
세종	41,916	32,356	[77.2]	3,525	1,363	[38.7]
경기	3,869,304	2,873,259	[74.3]	273,612	102,050	[37.3]
강원	513,005	386,913	[75.4]	41,115	12,738	[31.0]
충북	544,482	424,075	[77.9]	46,166	15,476	[33.5]
충남	706,300	530,070	[75.0]	54,872	20,752	[37.8]
전북	606,646	470,110	[77.5]	42,030	14,103	[33.6]
전남	629,163	479,786	[76.3]	46,325	16,206	[35.0]
경북	929,719	699,904	[75.3]	65,492	25,943	[39.6]
경남	1,124,770	843,579	[75.0]	78,393	35,425	[45.2]
제주	182,628	130,199	[71.3]	13,683	4,298	[31.4]

주: 2차 대상 인원은 1차 검진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해당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건강검진통계연보, 2015

#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Rate of recipients of general health check-ups, by core items

13-1  
연 관

## 지표 정의

암검진(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생애전환기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한 분율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특정 검진항목 수검자 수}}{\text{특정 검진항목 대상자 수}} \times 1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검진사업 이외에도 암검진(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생애전환기건강진단(만40세, 만 66세), 영유아검진(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진찰과 상담을 실시하고, 대상 연령에 따라 만 40세는 B형간염항원, 항체검사를, 만 66세는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2차적으로 고혈압, 당뇨 확진검사, 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위험평가상담,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생활습관검사 등을 실시한다.

암검진의 수검률은 45.8%,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73.6%, 구강검진은 30.8%의 수검률을 보이고 있다. 암검진과 구강검진은 50%도 되지 않는 낮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다.

표 6-28 시도별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2014)

(단위: 명, %)

	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40세)			구강검진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전체	19,397,675	8,884,321	[45.8]	705,253	519,082	[73.6]	16,456,214	5,065,593	[30.8]
서울	3,800,374	1,649,712	[43.4]	138,130	98,584	[71.4]	3,095,447	976,423	[31.5]
부산	1,415,487	643,567	[45.5]	43,635	32,894	[75.4]	1,152,802	342,971	[29.8]
대구	942,453	415,514	[44.1]	33,775	24,908	[73.7]	799,125	170,480	[21.3]
인천	1,044,038	481,772	[46.1]	40,362	30,166	[74.7]	918,031	367,734	[40.1]
광주	515,102	263,936	[51.2]	21,485	16,594	[77.2]	445,215	136,754	[30.7]
대전	550,477	282,761	[51.4]	22,392	17,598	[78.6]	486,039	190,809	[39.3]
울산	426,128	182,278	[42.8]	16,541	12,657	[76.5]	411,622	204,225	[49.6]
세종	47,204	22,163	[47.0]	1,885	1,422	[75.4]	41,916	16,133	[38.5]
경기	4,371,152	1,983,175	[45.4]	185,850	136,923	[73.7]	3,869,304	1,229,947	[31.8]
강원	634,221	300,095	[47.3]	19,548	14,399	[73.7]	513,005	122,930	[24.0]
충북	620,013	306,726	[49.5]	21,234	15,806	[74.4]	544,482	195,620	[35.9]
충남	811,406	370,518	[45.7]	27,328	19,487	[71.3]	706,300	222,233	[31.5]
전북	753,175	385,659	[51.2]	24,176	18,325	[75.8]	606,646	206,551	[34.0]
전남	821,432	421,041	[51.3]	21,785	15,968	[73.3]	629,163	139,287	[22.1]
경북	1,123,668	502,363	[44.7]	32,998	23,405	[70.9]	929,719	235,131	[25.3]
경남	1,296,169	576,288	[44.5]	45,834	34,135	[74.5]	1,124,770	255,154	[22.7]
제주	225,176	96,753	[43.0]	8,295	5,811	[70.1]	182,628	53,211	[29.1]

주: 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경우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각각 1차와 2차에 걸쳐 두 차례씩 실시되며, 1차 수검자 전체가 2차 검진의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여기에서는 1차 대상 인원과 1차 수검인원을 기준으로 값을 제시함.

2) 구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진단 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나, 여기에서는 일반검진과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만을 고려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건강검진통계연보, 2015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14	1년

# 의료보장 적용 인구

Coverage for Health care

## 지표 정의

의료보장 적용 인구(coverage for health care)는 정부나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으로부터 기본 의료서비스(예방, 진단, 치료, 재활, 완화치료)를 제공받는 인구를 의미한다.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의료비지출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처하여 재정적 보장을 제공해주는 제도로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가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WHO는 2010년 World Health Report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3대 축의 하나로 '보장인구의 확대'를 뽑았으며, 나머지 두 가지는 '급여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환자지불금액의 감소'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 측정 산식

- 건강보험 적용 인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2015년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03만 명으로 전년 대비(5,176만 명) 28만 명이 증가하였다. 의료보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로 구분된다.

2015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049만 명(97.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5만 명(3.0%)이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 직장 적용 인구와 직장 적용 인구를 제외한 지역 적용 인구를 구분된다. 2015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직장이 69.6%(3,622만 명), 지역이 27.4%(1,427만 명)로 구분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등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1종 수급대상이 아닌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된다. 2015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8만 명(69.7%),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7만 명(30.3%)이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5	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	1993	2015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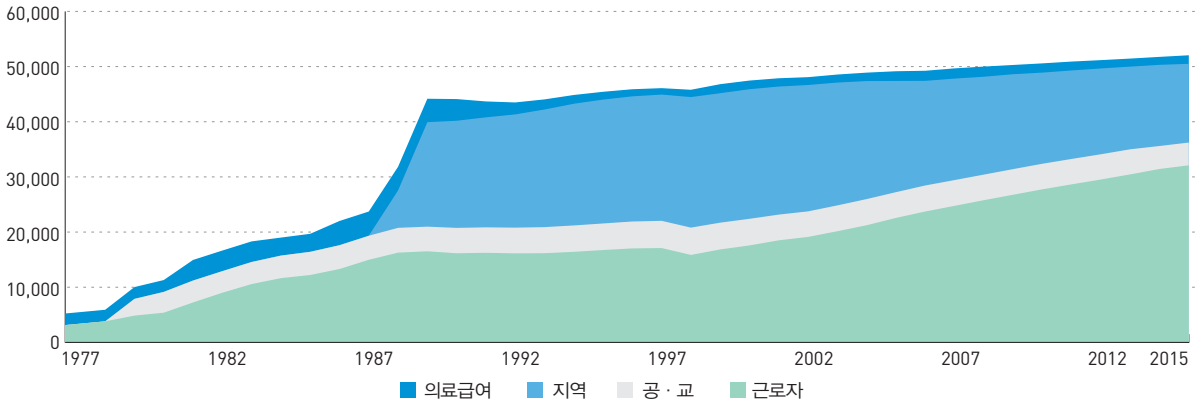
2015년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건강보험 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4년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2014년 5,032만 명에서 2014년 5,049만 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만 명에서 15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그림 6-38 의료보장 적용 인구 (1977~2015)

(단위: 만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의료급여통계연보, 각 연도

표 6-29 의료보장 적용 인구 현황 (2005~2015)

(단위: 만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의료보장	4,915	4,924	4,967	5,000	5,029	5,058	5,091	5,117	5,145	5,176	5,203
건강보험	4,739	4,741	4,782	4,816	4,861	4,891	4,930	4,966	4,999	5,032	5,049
직장	2,723	2,845	2,942	3,042	3,141	3,238	3,326	3,411	3,501	3,560	3,622
근로자	2,256	2,372	2,475	2,577	2,676	2,775	2,865	2,953	3,045	3,143	3,210
공무원교직원	467	472	468	464	465	464	461	458	455	417	413
지역	2,016	1,896	1,840	1,774	1,720	1,652	1,604	1,556	1,498	1,471	1,427
의료급여	176	183	185	184	168	167	161	151	146	144	154
1종	100	103	106	102	104	107	109	106	104	104	108
2종	77	80	79	82	64	60	52	45	42	40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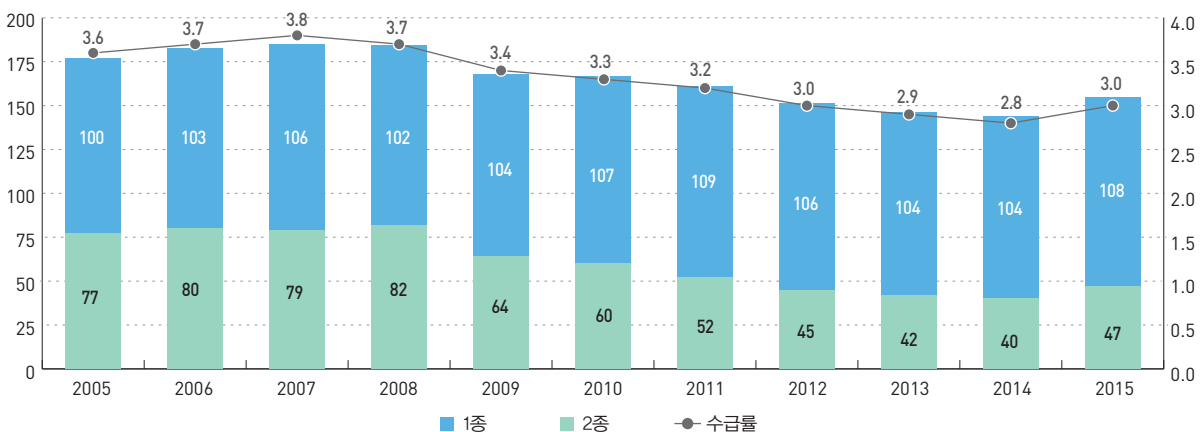
주: 의료보장인구는 연도 말 기준으로, 통계청의 추계연앙인구와는 다를 수 있음.

수치는 사사오입으로 인하여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의료급여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6-39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5~2015)

(단위: 만 명, %)



주: 수급률=총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수, 총인구는 행정자치부의 연말기준 자료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 각 연도



# 의사 수

Number of Physicians

## 지표 정의

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의거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지칭한다. 의료와 보건지도를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까지를 포함하며, 치과의사와 한방의사는 제외한다.

## 측정 산식

- 요양기관이 신고한 상근 의료인력 수

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의사는 2005년 이후 연평균 3.8% 수준의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의는 2015년 기준 75,550명으로 2005년(48,554명) 이후 연평균 4.5%씩 증가해온 반면, 일반의는 연평균 0.4% 감소하였다. 기타 의사(인턴 및 레지던트)도 연평균 2.1%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의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전체 의사를 놓고 보면, 52.8%가 서울과 경기 지역(인천 포함)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문의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수도권: 51.6%, 대도시: 22.6%, 읍면지역: 25.8%). 동 여파로 수련의 과정에 있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 63.7%가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통 자신이 수련 받은 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의 지역 간 순위를 살펴보면, 서울(인구 천 명당 2.8명), 대전(2.2명), 광주(2.2명) 등의 대도시가 모두 높은 순위에 위치한다. 반면, 세종(인구 천 명당 0.8명)과 경북(1.3명)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멕시코, 폴란드와 함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OECD 국가의 평균은 인구 천 명당 3.2명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5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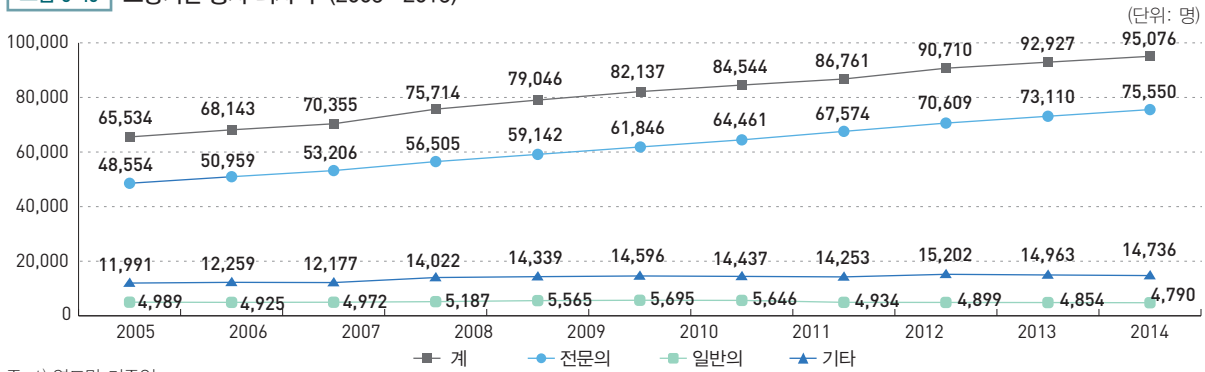
### Checkpoint

2015년 요양기관 종사 의사 수는 95,076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전문의는 75,550명으로 2014년에 비해 3.3%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그림 6-40 요양기관 종사 의사 수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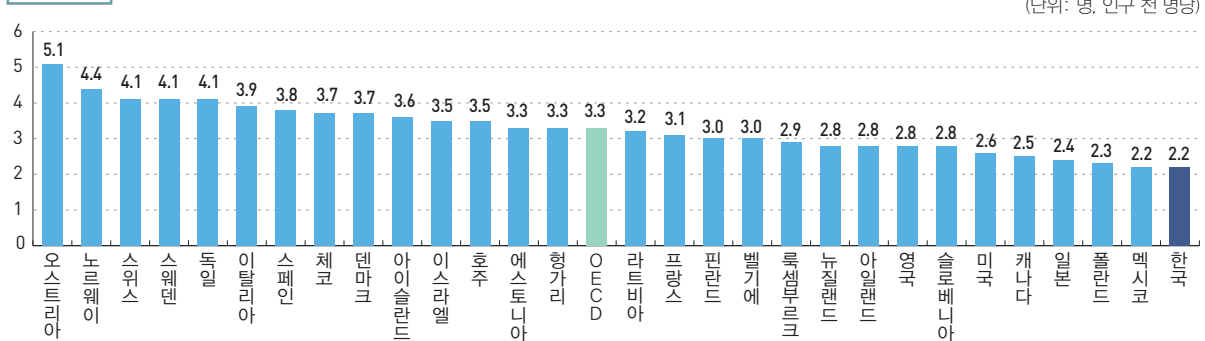
주: 1) 연도말 기준임.  
 2) 인턴과 레지던트는 기타로 분류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표 6-30 시도별 의사 수 (2015)

시도	의사 수				인구 천 명 당			
	전체	전문의	일반의	기타	전체	전문의	일반의	기타
전국	95,076	75,550	4,790	14,736	1.8	1.5	0.1	0.3
서울	27,726	20,361	837	6,528	2.8	2.0	0.1	0.7
부산	7,538	6,021	380	1,137	2.1	1.7	0.1	0.3
대구	5,335	4,174	142	1,019	2.1	1.7	0.1	0.4
인천	4,351	3,548	201	602	1.5	1.2	0.1	0.2
광주	3,292	2,686	139	467	2.2	1.8	0.1	0.3
대전	3,399	2,647	159	593	2.2	1.7	0.1	0.4
울산	1,633	1,380	114	139	1.4	1.2	0.1	0.1
세종	159	147	12	0	0.8	0.7	0.1	0.0
경기	18,105	15,094	756	2,255	1.4	1.2	0.1	0.2
강원	2,519	1,947	202	370	1.6	1.3	0.1	0.2
충북	2,314	1,913	175	226	1.5	1.2	0.1	0.1
충남	2,915	2,357	274	284	1.4	1.1	0.1	0.1
전북	3,476	2,749	272	455	1.9	1.5	0.1	0.2
전남	2,946	2,495	341	110	1.5	1.3	0.2	0.1
경북	3,433	3,060	308	65	1.3	1.1	0.1	0.0
경남	4,914	4,105	409	400	1.5	1.2	0.1	0.1
제주	1,021	866	69	86	1.6	1.4	0.1	0.1

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행정자치부의 연말기준 '총인구' 대비 '요양기관 종사 의사 수'를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6-41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면허의료인 현황

Number of licensed health care workers

## 지표 정의

주요 의료인력의 해당 분야 면허인 수를 의미한다.

## 측정 산식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 수

의료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해당 학문을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크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를 들 수 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모두 2005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사이에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대표적인 의료인력인 간호사는 2014년 기준 OECD 평균이 인구 천 명당 9.5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5.6명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는 에스토니아(5.7명), 폴란드(5.2명), 스페인(5.2명)이다.

표 6-31 연도별 면허의료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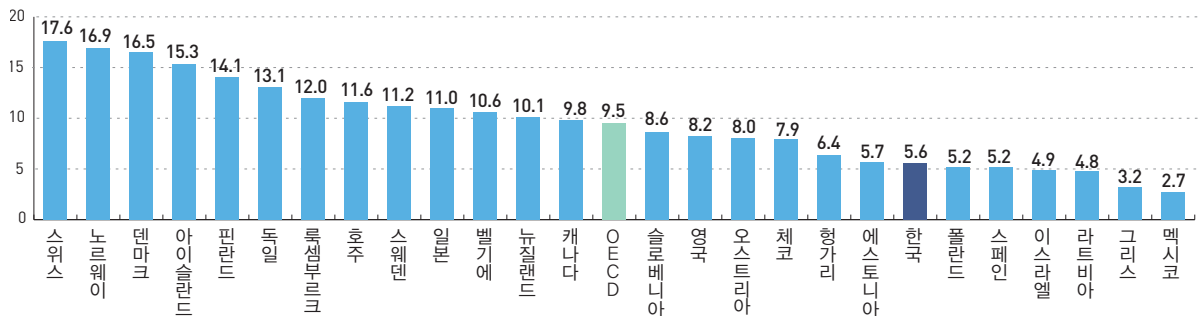
(단위: 명)

	전체				남자				여자			
	2005	2010	2014	2005년 대비 2014년	2005	2010	2014	2005년 대비 2014년	2005	2010	2014	2005년 대비 2014년
의사	85,289	101,371	112,407	31.8%	68,445	78,433	85,009	24.2%	16,844	22,938	27,398	62.7%
치과의사	21,569	25,379	28,123	30.4%	16,611	18,953	20,698	24.6%	4,958	6,426	7,425	49.8%
한의사	15,200	19,065	22,007	44.8%	13,146	15,838	17,722	34.8%	2,054	3,227	4,285	108.6%
약사	54,829	60,956	63,150	15.2%	19,760	21,885	22,516	13.9%	35,069	39,071	40,634	15.9%
간호사	213,644	270,274	323,041	51.2%	-	-	-	-	-	-	-	-

주: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를 제외하였으며, 해외거주자는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그림 6-42 OECD 국가의 인구 천만 명당 활동 간호사 수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천 명당)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88	2014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 병상 수

Number of inpatient care beds

## 지표 정의

병상 수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의 전체 병상 기준이다. 병상 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자원을 보여준다. 연도별 추이, 지역별 병상 현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병상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 측정 산식

- 등록 병상 수

유의사항 우리나라 병상 수와 관련된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신고병상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등록병상이다. OECD Health Data의 작성은 등록병상에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2014년 병상 수는 668,470개로, 2000년 이후 연평균 6.2%씩 증가해왔다. 요양병원이 가장 많은 비중(32.0%)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병원(24.5%), 종합병원(21.7%), 의원(10.4%)이 그 다음 순서이다. 그밖에 특수병원(결핵, 한센, 정신),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의 병상이 10.4%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병상은 37.5%가 서울과 경기 지역(인천 포함)에 분포하고 있으며, 26.0%는 대도시, 36.5%는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의 병상은 수도권 지역(각각 44.9%, 39.1%)에 집중되어 있고, 요양병원의 병상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39.2%)에 집중되어 있다.

인구 천 명당 병상 수의 지역 간 순위를 살펴보면, 광주(인구 천 명당 22.6개), 전남(19.6개), 전북(19.6개)이 높은 반면, 제주(인구 천 명당 7.7개)와 세종(8.2개)이 낮았다. 하지만 이는 요양병원까지를 모두 포함한 병상에 대한 비교로 급성기 입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11.0개\*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13.3개) 다음으로 많다. OECD 평균은 4.8개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88	2014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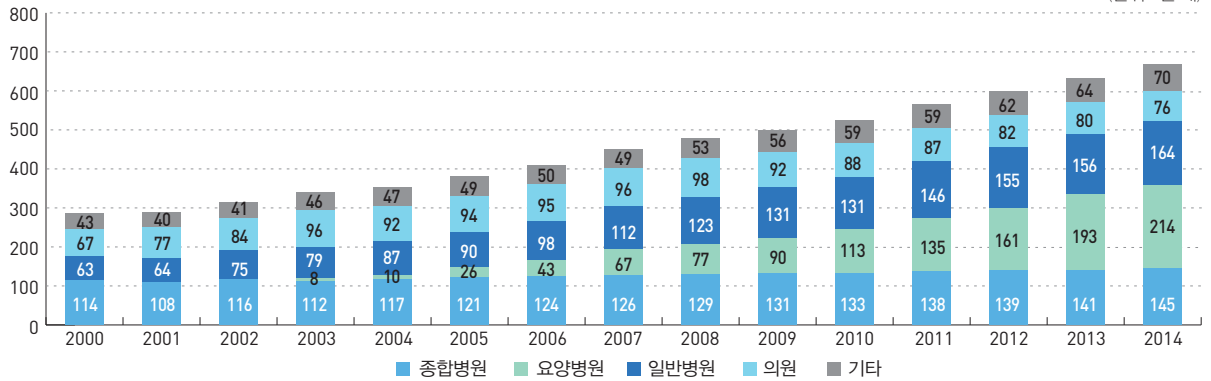
2014년 병상 수는 66.8만 개로 2013년 63.4만 개에 비해 3.4만 개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요양병원(2.1만), 일반병원(0.8만), 종합병원(0.4만)순으로 증가하여, 요양병원의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에서의 병상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 OECD의 산출 기준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의 병상은 제외함.

그림 6-43 병상 수 (2000~2014)

(단위: 천 개)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시도

표 6-32 시도별·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수 (2014)

(단위: 개)

	병상 수						인구 천 명당 <sup>1)</sup>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기타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기타
전국	668,470	144,982	213,986	163,574	76,138	69,790	13.0	2.8	4.2	3.2	1.5	1.4
서울	85,347	33,469	16,548	17,098	13,335	4,897	8.4	3.3	1.6	1.7	1.3	0.5
부산	68,435	12,716	30,392	14,224	5,123	5,980	19.4	3.6	8.6	4.0	1.5	1.7
대구	34,607	6,669	9,852	14,014	3,181	891	13.9	2.7	4.0	5.6	1.3	0.4
인천	42,109	8,305	8,511	16,187	6,064	3,042	14.5	2.9	2.9	5.6	2.1	1.0
광주	33,286	6,939	10,338	7,632	3,060	5,317	22.6	4.7	7.0	5.2	2.1	3.6
대전	23,114	5,585	8,308	3,068	3,857	2,296	15.1	3.6	5.4	2.0	2.5	1.5
울산	14,053	2,700	5,630	3,820	1,268	635	12.0	2.3	4.8	3.3	1.1	0.5
세종	1,284	-	847	99	218	120	8.2	-	5.4	0.6	1.4	0.8
경기	123,304	23,255	40,557	30,625	16,413	12,454	10.0	1.9	3.3	2.5	1.3	1.0
강원	17,702	5,639	3,137	5,102	2,468	1,356	11.5	3.7	2.0	3.3	1.6	0.9
충북	19,466	4,294	5,338	4,398	3,043	2,393	12.3	2.7	3.4	2.8	1.9	1.5
충남	27,624	4,703	10,666	3,423	4,015	4,817	13.4	2.3	5.2	1.7	1.9	2.3
전북	36,622	5,104	15,495	7,942	4,043	4,038	19.6	2.7	8.3	4.2	2.2	2.2
전남	37,343	6,898	11,964	11,120	2,482	4,879	19.6	3.6	6.3	5.8	1.3	2.6
경북	40,678	7,498	16,534	8,729	2,986	4,931	15.1	2.8	6.1	3.2	1.1	1.8
경남	58,791	8,845	19,104	15,395	3,978	11,469	17.5	2.6	5.7	4.6	1.2	3.4
제주	4,705	2,363	765	698	604	275	7.7	3.9	1.3	1.1	1.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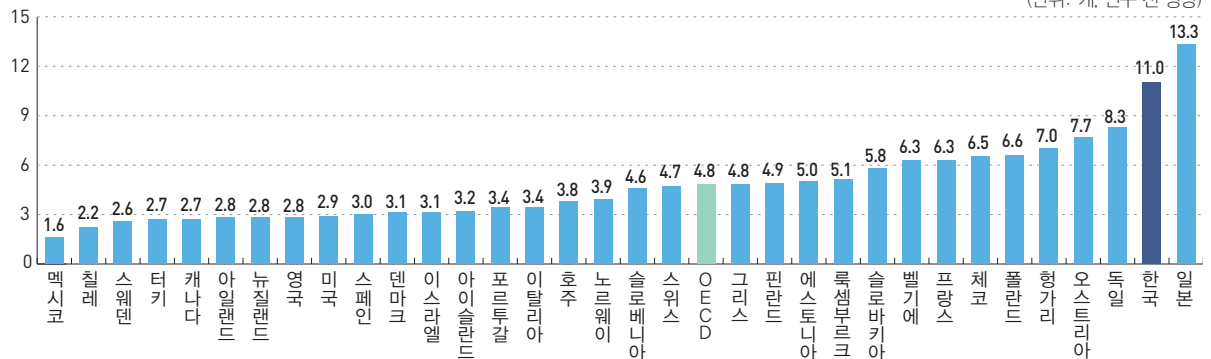
주: 1)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행정자치부의 연말기준 '총인구' 대비 요양기관별 '병상 수'를 의미함.

2) 기타에는 특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의원, 무속의원, 조산원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그림 6-44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병원 병상 수 (201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개, 인구 천 명당)



주: 1) OECD 통계에는 병원급만 포함됨. 따라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은 제외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의료기관 현황

Number of healthcare providers

## 지표 정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의 등록 현황이다.

## 측정 산식

- 등록 기관 수

2014년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3,675개이며, 종합병원이 321개, 요양병원이 1,304개, 일반병원이 1,436개, 의원이 30,689개, 치과병의원 16,135개, 한방병의원 13,369개, 조산원 33개로 나타났다.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6,37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12,999개), 부산(4,886개), 인천(4,443개), 대구(3,439개) 순이다.

표 6-33 시도별 의료기관 현황 (2014)

(단위: 개)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조산원	기타
전국	63,675	321	1,304	1,436	30,689	16,135	13,369	33	388
서울	16,376	47	106	206	7,695	4,697	3,563	5	57
부산	4,886	27	187	125	2,311	1,152	1,050	6	28
대구	3,439	12	62	111	1,597	814	832	2	9
인천	4,443	19	58	128	2,808	807	612	-	11
광주	1,928	22	40	68	872	571	341	-	14
대전	2,123	9	51	33	1,011	506	497	1	15
울산	1,289	6	45	36	549	358	286	-	9
세종	153	-	6	1	72	36	32	-	6
경기	12,999	56	267	271	6,206	3,489	2,625	10	75
강원	1,498	16	27	41	715	357	331	1	10
충북	1,630	11	36	37	788	367	374	1	16
충남	2,116	12	66	40	1,084	446	438	-	30
전북	2,243	12	77	70	1,084	499	491	-	10
전남	1,869	22	61	77	887	431	367	5	19
경북	2,627	19	106	67	1,173	615	611	-	36
경남	3,348	24	102	119	1,488	814	758	1	42
제주	708	7	7	6	349	176	161	1	1

주: 1) 연도말 기준

2) 병원에는 특수병원(결핵, 한센, 정신) 포함, 의원에는 산업체 부속의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 GDP 대비 경상의료비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as % GDP

## 지표 정의

GDP에서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경상의료비는 국민 전체가 1년간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의미하며, 개인의료, 집합보건의료(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보건행정관리)에 대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경상의료비}}{\text{GDP}} \times 100$$

2014년 경상의료비는 105.0조로 전년대비 7.2%(7.7조) 증가하였다. 경제의 흐름과 의료비의 증감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14년에 7.1%를 기록하여 2014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평균 9.0%)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미국이 16.6%로 가장 높은 가운데, 10%를 넘어선 국가도 12개나 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1970	2014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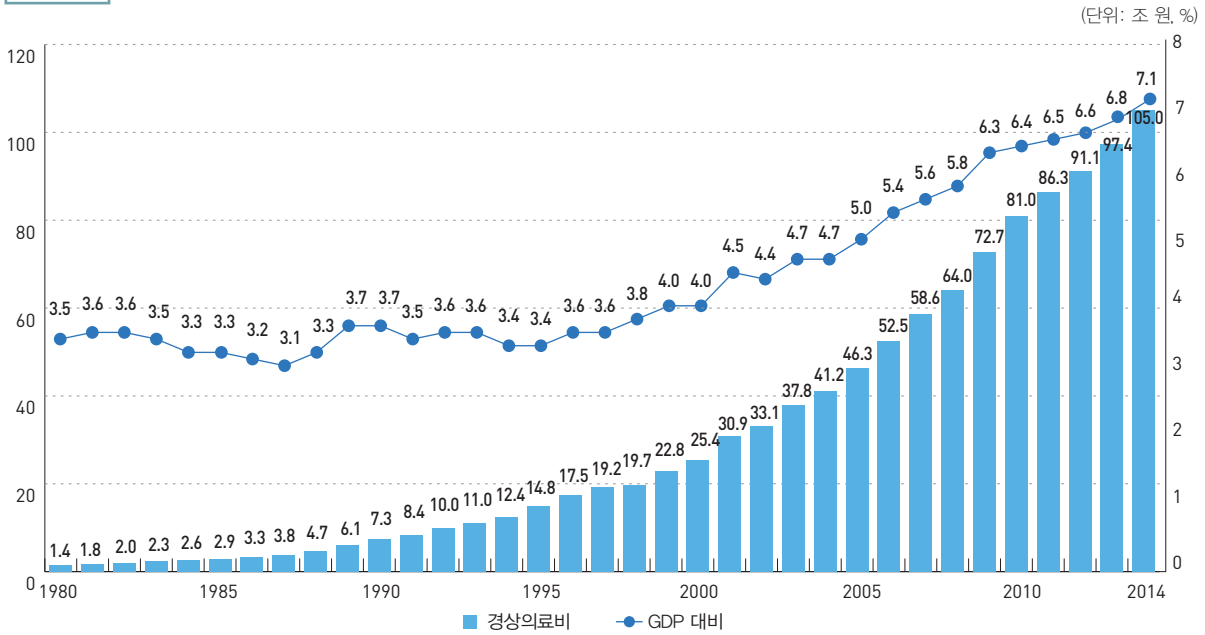
경제성장보다 빠른 경상의료비의 증가 속도로 인해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1980년 GDP 대비 3.5%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에는 7.1%까지 변화하였다. 1997년에 있었던 금융위기의 여파가 경상의료비의 증가세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지만, 2000년 후반에 시행된 의약분업제도와 수가인상, 2005년부터 본격화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경상의료비는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후 2008년 약간의 침체가 있었으나 바로 회복하였다. 최근에 와서 과거에 비해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경제 성장 보다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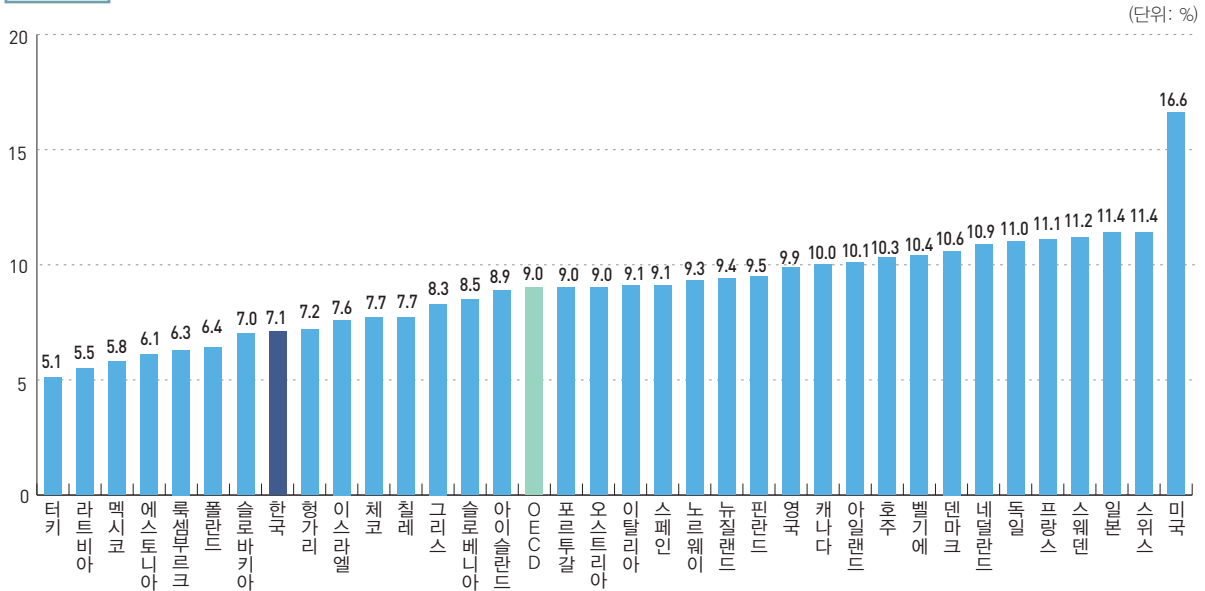
\* 보건계정의 신 매뉴얼인 'SHA2011'에서는 의료비 총량치의 대표 지표로 국민의료비 대신 경상의료비를 사용하기로 정하고 있음. OECD는 Health Data 2015(2015.7. 발표)부터 이러한 방침을 국제비교 시에 적용시킴. 국민의료비는 경상의료비와 고정자본형성을 더한 것으로, 2000년대 초반 보건계정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보건의료비용의 대표 지표로 사용되어 왔음.

그림 6-45 경상의료비 (1980~2014)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보건계정, 2016

그림 6-46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6)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Out-of-pocket expenditure, as % of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 지표 정의

가계직접부담은 의료이용 시 이용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본인부담의 합으로 구성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가계직접부담}}{\text{경상의료비}} \times 100$$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의 재원은 크게 정부·의무가입제도와 민간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정부·의무가입제도는 정부와 의무가입(건강)보험으로 구성되며, 민간재원은 임의가입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통합이 이루어진 2000년만 해도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43.6%로 높았으나, 2001년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감소되면서 가계직접부담의 비중은 줄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된 보장성 강화정책에 힘입어 2010년에는 36.0%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무가입제도의 증가 규모보다 비급여 지출의 증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6-34 연도별 경상의료비 재원구성

(단위: 십억 원, %)

	경상의료비	정부·의무가입제도		민간재원			
		정부	의무가입(건강)보험	임의가입 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
1980	1,374 [100]	98 [7.1]	179 [13.0]		8 [0.6]	6 [0.4]	1,083 [78.8]
1985	2,908 [100]	191 [6.6]	754 [25.9]		28 [1.0]	9 [0.3]	1,925 [66.2]
1990	7,285 [100]	550 [7.5]	2,377 [32.6]		48 [0.7]	19 [0.3]	4,292 [58.9]
1995	14,774 [100]	1,092 [7.4]	5,140 [34.8]		106 [0.7]	34 [0.2]	8,402 [56.9]
2000	25,434 [100]	2,660 [10.5]	11,064 [43.5]	400 [1.6]	190 [0.7]	38 [0.1]	11,083 [43.6]
2005	46,335 [100]	5,465 [11.8]	21,001 [45.3]	860 [1.9]	349 [0.8]	64 [0.1]	18,596 [40.1]
2010	81,044 [100]	9,263 [11.4]	38,638 [47.7]	3,343 [4.1]	494 [0.6]	94 [0.1]	29,213 [36.0]
2014	105,014 [100]	10,762 [10.2]	48,571 [46.3]	6,245 [5.9]	631 [0.6]	146 [0.1]	38,659 [36.8]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보건계정, 2016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1970	2014	1년

\* OECD Health Statistics 2016의 산출 기준이 되는 SHA2011에서는 재원 구분을 크게 정부·의무가입제도와 민간재원으로 구분함. 정부·의무가입제도는 기존 매 뉴얼(SHA1.0)에서의 공공재원과 민영사회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더한 개념임

# 건강보험보장률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 지표 정의

건강보험보장률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치료 목적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보험자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단, 건강보험보장률에 있어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미용성형수술, 집단검진, 개별검진, 시력 교정술, 예방접종, 기타 예방진료, 임플란트\*, 미용목적의 보철·교정, 건강증진 목적의 한약첨약,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한 건강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급여 항목만을 포함한 것이다.

\* 2006~2013 보장률은 임플란트 전체 미포함, 2014년 보장률은 75세 이상 임플란트 포함. 추후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따라 포함범위 확대 예정

## 측정 산식

$$\frac{\text{보험자부담금}}{\text{보험자부담금} + \text{법정 본인부담금} + \text{비급여 본인부담금}} \times 1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를 조사하여 건강보험보장률을 파악하고 있다. 경상의료비와 경상의료비 내 공공재원 비중이 국가 보건 의료정책의 성과평가 내지 기초자료로 활용되듯이, 건강보험보장률은 건강보험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2014년도 건강보험보장률은 63.2%로 2013년의 62.0% 보다 1.2%p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지원금 등의 현금급여가 포함되었다. 현금급여를 제외한 지표는 2011년 이후에는 [표 6-36]과 같이 총계치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표 6-35 건강보험보장률 (2006~2014)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현금지급 포함	64.5	65.0	62.6	65.0	63.6	63.0	62.5	62.0	63.2
현금지급 미포함 <sup>1)</sup>	64.3	64.6	62.2	64.0	62.7	62.0	-	-	-

주: 1) 현금지급을 제외한 경우는 2011년 이후 발표되지 않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진료비 실태조사	2005	2014	1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Number of Priority Caring Programs Recipients in Near Poor

## 지표 정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를 산정

## 측정 산식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수급 받은 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 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75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
	75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2015년 12월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300,520명으로 집계되었다(전년동월 345,349명). 동월 기준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134,252명(44.7%), 여성이 166,268명(55.3%)으로 여성 수급자 수가 10%p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시도 지역에서 여성 수급자 수가 남성 수급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4,2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4,545명, 전북 27,7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지역별 분포는 전년과 유사한 모습이다. 한편, 월별 추세로는 3월 수급자 수가 가장 많으며 이후 6월을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2월 수급자가 가장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 Checkpoint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수의 3년 연속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2015년 12월 기준 300,52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0% 감소하였다. 12월 기준 성별 또는 지역별 분포는 전년 동월과 유사한 모습이다.

표 6-36 연도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계	349,522	345,349	300,520

그림 6-47 성별·월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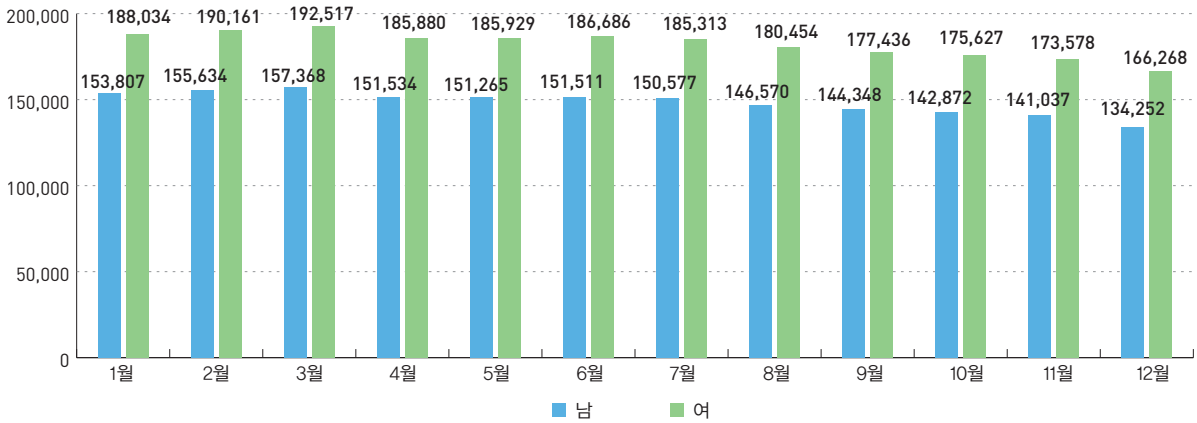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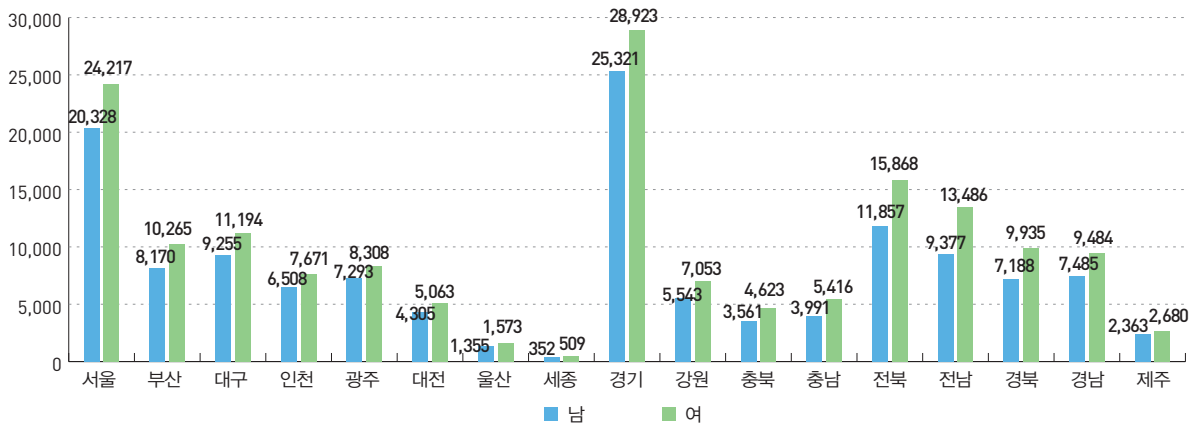


그림 6-48 성별·시도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15.12기준)

(단위: 명)





# 7

## 주거

- 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02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 03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 04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 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 06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 07 노숙인 수
- 08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 09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 10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용자가구 수
- 11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 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통 계 로 보 는 사 회 보 장

# 2016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주거의 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비주택 거주 가구 수
주거의 안정성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노숙인 수	
주거비 부담 가능성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 지표 정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는 법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면적기준, 시설기준 및 침실기준 미달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 유의사항

- 법으로 규정된 최저주거기준 중에서 정량적 정보 파악이 어려운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비적용
- 주거실태조사가 표본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는 추정치로 이해

주거실태조사 결과 201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99.2만 가구이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후부터 가구 수와 비율 모두 감소추세에 있어, 전반적으로 주거의 질적 수준 개선이 이루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가구의 47.7%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4.7%로 광역시 4.9%와 같이 5%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도지역은 6.7%로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4%를 넘어서고 있다. 미달가구 유형별 특성과 관련하여 서안나 외(2016)의 2010년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면적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주거비가 높은 도시지역 및 청년층과 관련이 크고, 시설기준 최저주거기준에 있어서는 세입가구보다 자가가가 미달가구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홀수년에 실시하는 특수가구 실태조사로 2015년에는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 대비 가구원 수 감소(2,86명 → 2,56명), 가구주 연령 증가(60.5세 → 62.6세) 등 가구 특성과 함께, 최저주거기준은 14.3%p 감소하였는데(22.9% → 8.6%) 가구원 수 감소에 따른 1인당 주거면적 증가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증가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일반가구 5.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4	2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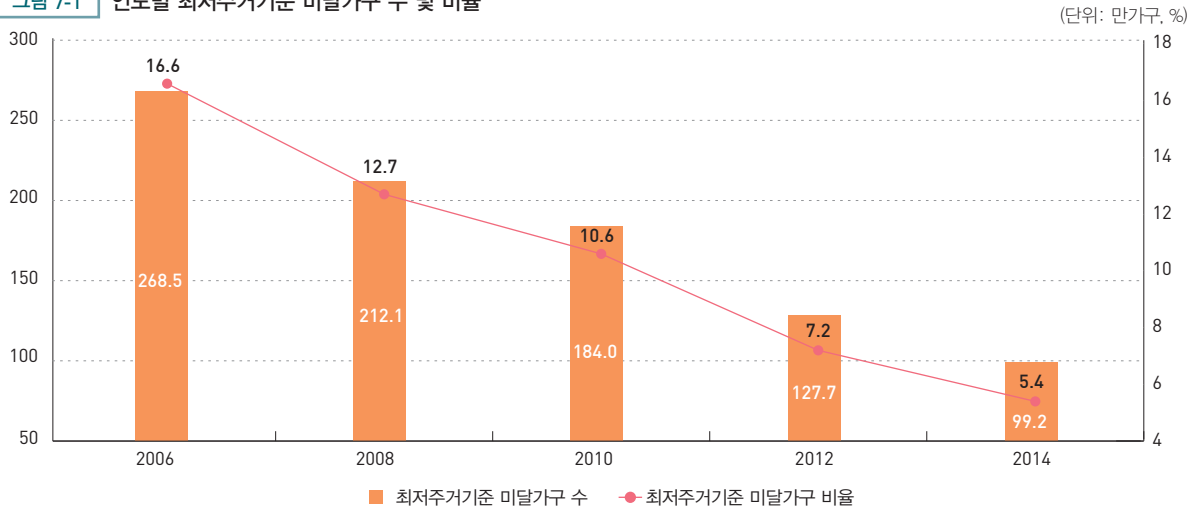
주거실태조사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가구 수 증가와 주택 이외의 거주 수 증가,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여전한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표본조사인 주거실태조사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성재, 최저주거기준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2010, 전북발전연구원
- 서안나 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특성 및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 2016, 주택연구 제24권 3호, pp27-47
- 한국일보, 서화숙의 집이야기 (19) - 방이 필요한데 집을 짓는다, 2014.12.14.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6.6.1일자 보도자료



그림 7-1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및 비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7-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4)

(단위: %)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면적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침실기준 미달	
지역	수도권	41.7	66.5	23.3	51.2	
	광역시	18.4	13.4	22.3	19.1	
	도지역	39.9	20.1	54.4	29.7	
	계	100.0	100.0	100.0	100.0	
소득 계층	저소득층	65.1	48.5	86.9	17.6	
	중소득층	30.1	44.6	12.3	67.0	
	고소득층	4.8	6.9	0.8	15.4	
	계	100.0	100.0	100.0	100.0	
점유 형태	자가	전체	28.3	10.0	42.3	12.7
		도시지역(동부)	10.1	6.8	11.3	9.4
		읍면부	18.2	3.2	30.9	3.3
	전세	전체	12.2	14.6	9.6	18.5
		보증금 있는 월세	40.6	58.4	19.2	60.7
		보증금 없는 월세	13.7	13.6	21.4	4.6
		무상	5.2	3.4	7.5	3.5
		계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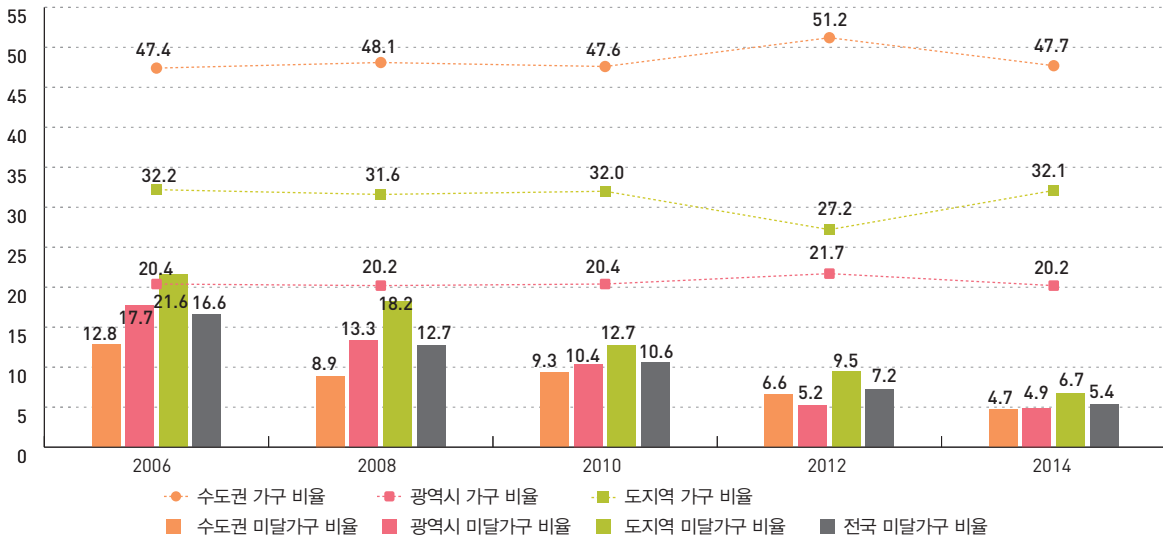
주: 1) 일세, 시골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소득계층은 저소득층(4분위 이하),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분위 이상)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그림 7-2 연도별·지역별 가구 비율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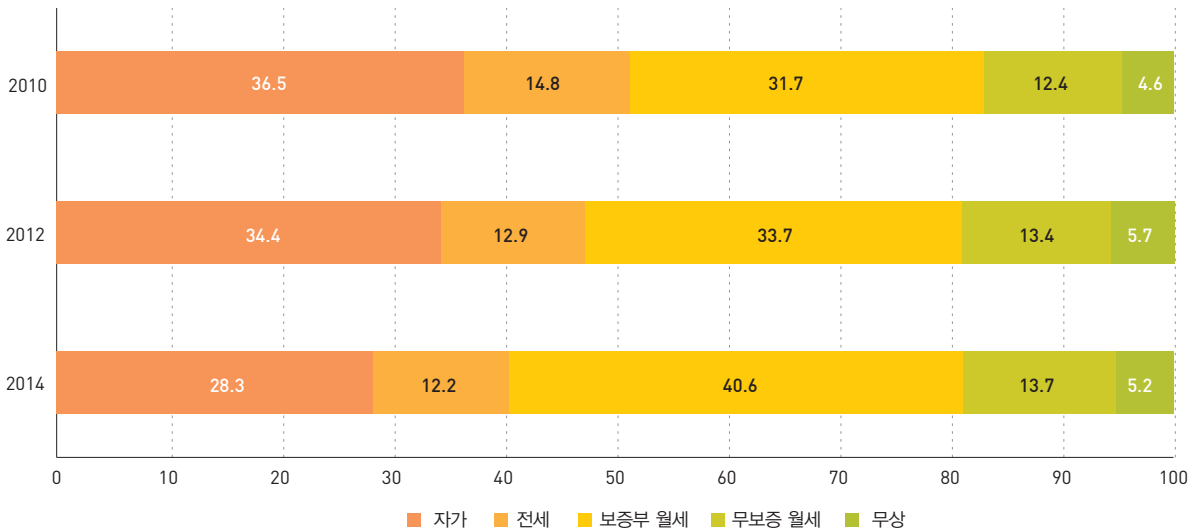
(단위: %)



주: 1) 가구 비율 : 지역별 가구 수/전국 가구 수 × 100  
 2) 미달가구 비율 :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 지역별 가구 수 × 100

그림 7-3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점유 형태별 비율 추이 (2010~2014)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Number of Low-Income Households in receipt of Housing Improvement Support Households

## 지표 정의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이란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열악한 주택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물리적 보완이나 개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 • 6개 사업 지원가구 수의 합

-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지역공동체일자리(집수리사업),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수선유지급여

## 유의사항

- 사업별 주관부처가 다양하여 지원가구의 중복이 있을 수 있음.
- 5개 부처의 유사 주택개량 사업이 자가수급자 대상 수선유지급여로 통합되었으므로 향후 통계자료 정리 필요

주거급여 제도의 개편에 따라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에서 지원했던 6개 사업이 통합·일원화\*되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14년까지 주거현물급여의 형태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하였다가 자가수급자 대상의 수선유지급여로 개편되었다.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주거급여를 통한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4년까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가구 수가 가장 큰 탓에 총 지원가구 수 증감에 영향을 주었으나, 2015년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로 자가가구의 주택개보수 지원규모가 78,294호로 전년도 현물주거급여 13,877호의 5.6배에 달하여 총 지원가구 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주택조사결과에 따르면, 78,294호 중 신규 수급가구는 22,275호로 28.5%를 차지한다. 또한 2015년 주거급여를 위한 조사 대상 주택이 100만 호가 되는 점에서 효율적인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을 위한 기초정보 축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내부자료)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주거현물급여	- -	2015 2014	부정기
환경부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 -	2015 2015	부정기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집수리 사업)	-	2015	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2015	부정기
국토교통부	수선유지급여	2015	2015	부정기

### Checkpoint

2014년에 비해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을 제외하면 4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른 자가주택 수 규모가 현물주거급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총 지원가구 수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이나 집수리사업은 사업실적이 없거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주거급여 제도 개편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들 유사 주택개량사업 통합 운영이 정착되면, 주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 구축으로 개보수 지원규모 뿐 아니라 개보수 수준에 대한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 2015
- 이태진 외, 주택개량사업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층연구,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개 사업 중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은 주거급여 지원항목과 무관하여 별도 시행 가능하고,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해당사업 유지 및 사업 연계를 위해 환경부가 지붕 철거 사업은 계속하되, 지붕 철거 후 그 외 주택개보수 지원은 수선유지급여로 실시

표 7-2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추이 (2007~2015)

(단위: 가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거급여 <sup>3)</sup>	- <sup>1)</sup>	- <sup>1)</sup>	19,677	18,311	16,624	14,605	14,165	13,877	78,294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 <sup>2)</sup>	- <sup>2)</sup>	- <sup>1)</sup>	1,660	23,654	4,217	1,527	2,219	1,291
집수리사업	- <sup>2)</sup>	- <sup>2)</sup>	19,270	34,000	10,860	6,360	4,457	2,049	765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sup>4)</sup>	- <sup>2)</sup>	- <sup>2)</sup>	1,700(환)	2,320	1,240	360	212	-	
					2,372 (환, 시범)	8,290	17,942	22,320	27,488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6,501	69,535	63,996	43,336	21,428	29,628	36,508	42,158	40,707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 <sup>1)</sup>	1,075	1,093	1,091	1,115	1,054	1,048	934	-
총계	16,501	70,610	105,736	100,718	77,293	64,514	75,859	83,557	148,545

주: 1) 지원가구 수 자료 없음.

2) 사업 시행 전

3) 2014년까지는 주거현물급여, 2015년은 수선유지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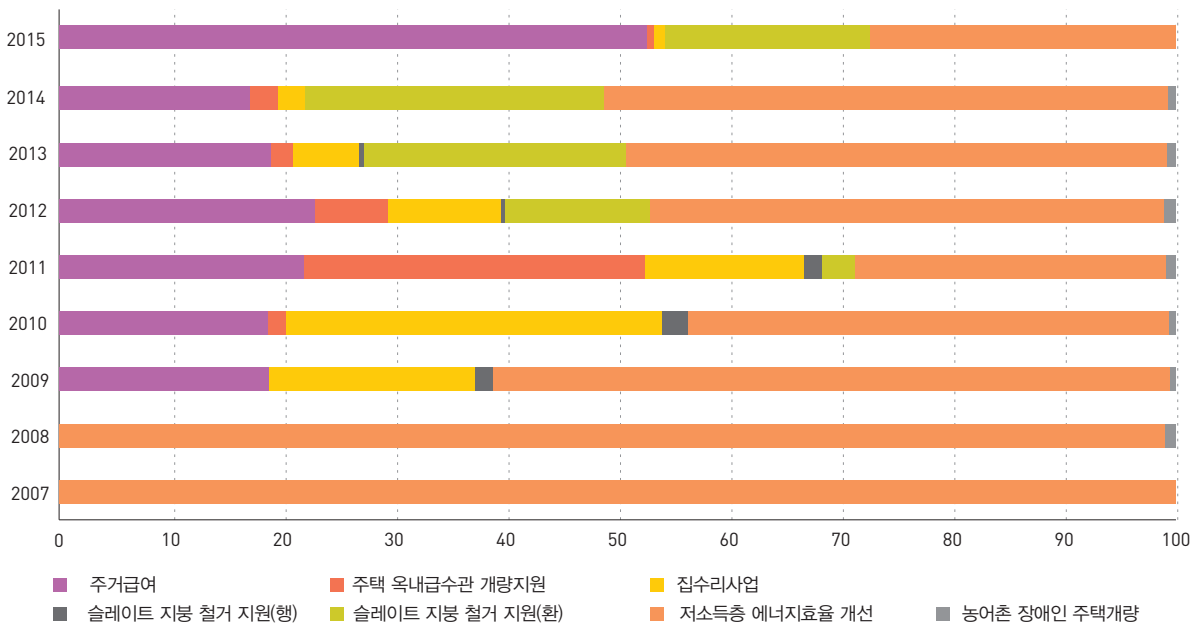
4) 2009년, 2010년은 희망근로사업이며, 2011년 이후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임.

5) 환 : 환경부 사업 / 행 : 행정자치부 사업

자료 : 각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 이태진 외, 2013 재인용

그림 7-4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별 지원가구 수 비율 (2007~2015)

(단위: %)



주: 1) 주거급여는 2007년, 2008년 자료 없음.

2)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2009년도 자료 없음.

3) 2014년까지는 주거현물급여, 2015년은 수선유지급여

4) 슬레이트지붕 철거·개량 사업은 2009년, 2010년은 희망근로사업이며, 2011년 이후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임.

5) 환 : 환경부 사업 / 행 : 행정자치부 사업

자료 : 각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 이태진 외, 2013 재인용

#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Percentages of households residing in nonhousing accommodation

## 지표 정의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처가 있으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5년 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오피스텔,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숙박업소의 객실, 비닐하우스 및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지표에서는 오피스텔 과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은 제외하였다.

## 측정 산식

$$\frac{\text{숙박업소의 객실 거주 가구 수} + \text{판잣집,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 수} + \text{기타 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 유의사항

- 거주 안정성이나 편의성이 낮은 거처 가구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유형(오피스텔 등)과 구분하여 이해
-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이외의 거처도 존재(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등)

주택 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을 의미한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일반가구 수(1,911만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1.91%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 거주 가구가 322,591가구로, 주택 이외 거처 가구 364,131가구의 88.6%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2000년 및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 거주 가구의 비율이 각각 87.8%, 73.8%로 높았다는 점에서 2015년 조사 결과만의 특성은 아니지만, 2000년의 6.4배, 2010년의 3.7배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 수치가 높아져 기타 유형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주택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별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 이외 거처 가구 중 50~65세 미만이 35.6%를 차지하여 장년층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및 여성 가구주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남성 가구주는 40~64세 청장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 가구주는 장년층 다음으로 20대와 65세 이상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택 이외의 거처를 유형별로 보면, 판잣집과 같은 불량주거는 감소하고 있는데 숙박업소의 객실은 두 배 이상, 기타는 3.7배 증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실태의 차이는 2010년까지의 조사와 다른 형태로 조사\*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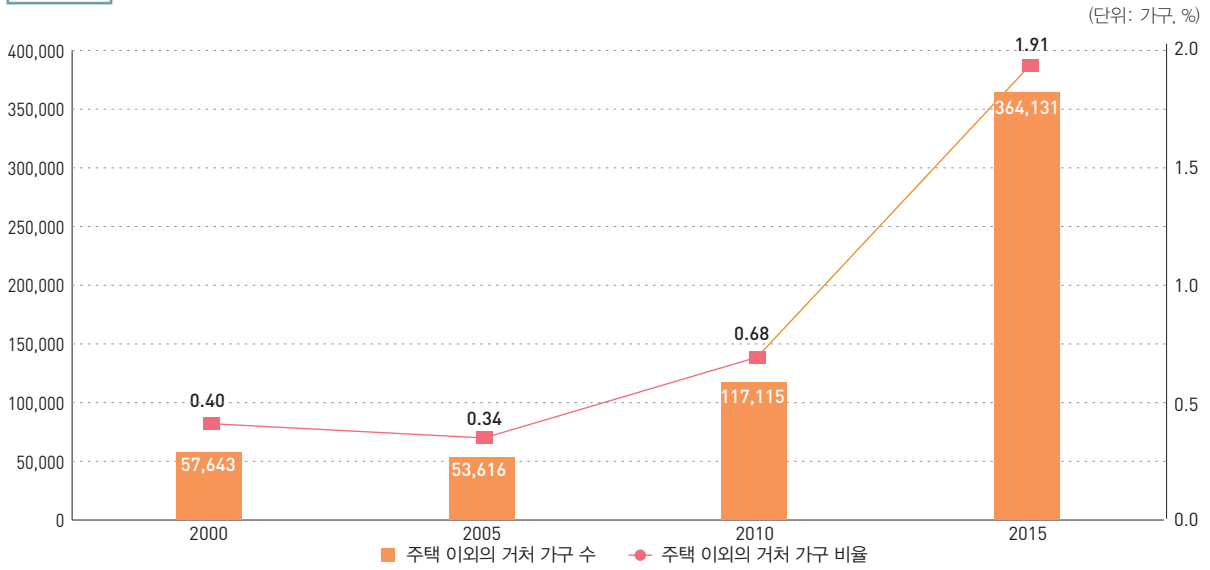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비해 주택 이외 거처 가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숙박업소의 객실 거주 가구와 기타 거처 가구가 증가한 탓이다. 반면, 판잣집 등 거주 가구는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다른 방식으로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32.3천 가구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고 정확한 거처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이들 거주 가구 및 거처 유형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어떤 주거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9
- 남원석,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21권 제2호, 2013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전통적 방식인 반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등록센서스방식임.

그림 7-5 연도별 주택 이외 거처 가구 규모 및 비율



주: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중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의 규모 및 비율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7-3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현황

(단위: %)

구분	주택 이외 거처 가구				주택 거주 가구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5년
20세 미만	0.9	0.9	2.7	0.5	0.3
20~29세	10.4	10.4	27.9	14.0	6.3
30~39세	19.6	13.7	16.4	16.0	16.9
40~49세	27.1	24.0	16.4	19.1	24.0
50~64세	29.4	33.9	24.0	35.6	32.7
65세 이상	12.7	17.1	12.6	14.9	19.8
계	100.0	100.0	100.0	100.1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7-6 연도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의 가구주 성별·연령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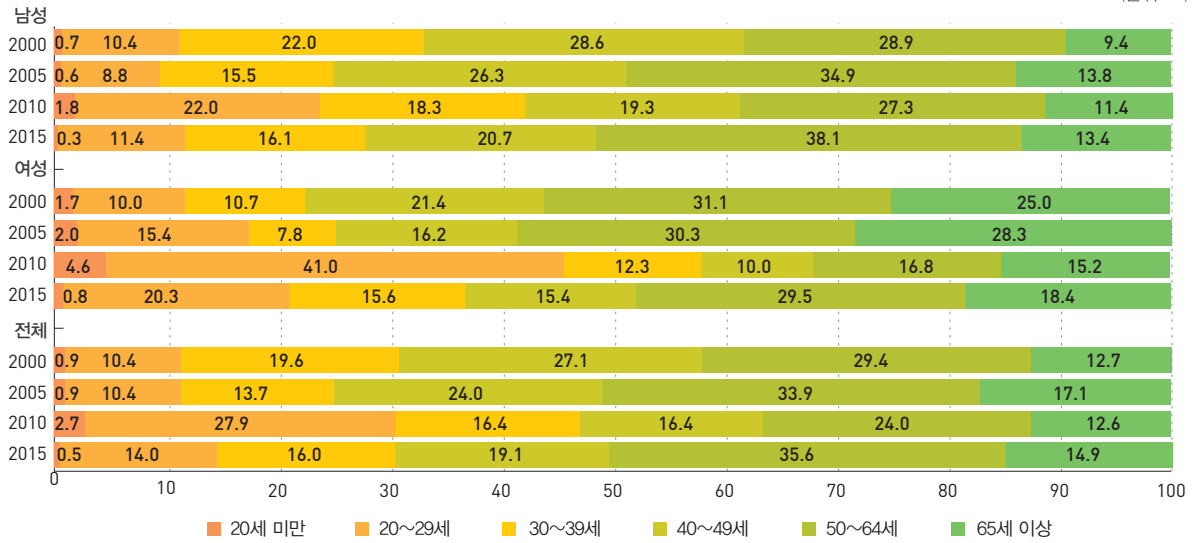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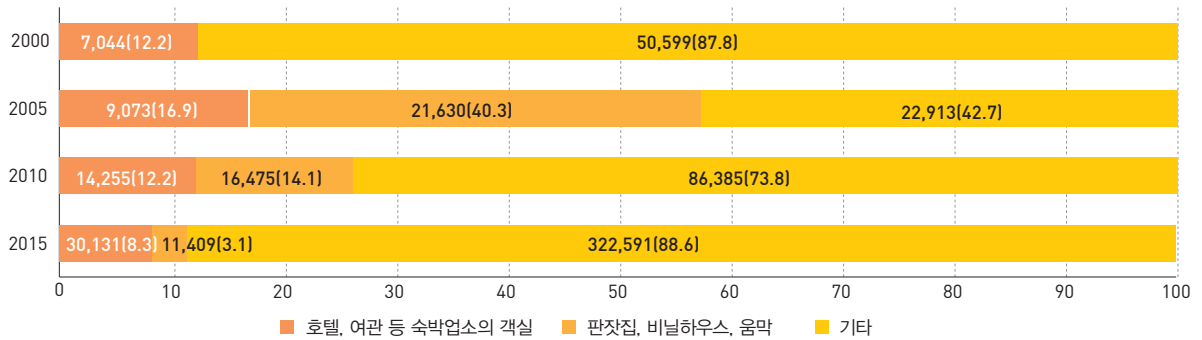


그림 7-7 연도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유형

(단위: 가구, %)



주: 2000년도의 경우,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과 기타 2개 항목으로 구성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7-4 시도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현황 (2015)

(단위: 가구,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수)	364,131	74,526	16,877	12,243	15,688	8,523	6,562	5,286	1,420	88,404	15,696	12,105	18,902	14,182	18,033	24,849	23,648	7,187
합 (%)	100.0	20.5	4.6	3.4	4.3	2.3	1.8	1.5	0.4	24.3	4.3	3.3	5.2	3.9	5.0	6.8	6.5	2.0
숙박업소 객실	30,131	2,377	3,052	1,257	2,366	1,439	1,256	693	131	5,849	1,645	922	1,429	1,046	1,260	1,837	2,443	1,129
판잣집, 비닐하우스	11,409	2,279	540	128	279	75	83	90	11	5,246	387	272	382	144	163	501	729	100
기타	322,591	69,870	13,285	10,858	13,043	7,009	5,223	4,503	1,278	77,309	13,664	10,911	17,091	12,992	16,610	22,511	20,476	5,958

주: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중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를 정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비주택 거주 가구 수

Number of Households residing in nonhousing accommodation

## 지표 정의

비주택이란 주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거처들 중 거주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비주택 거주 가구는 단순한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상황이 열악한 가구라는 점에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와 유사하다.

## 측정 산식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 방, 사우나, 만화방, 다방 등) 등에 거주하는 가구 수의 합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 이외의 거처 유형으로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비닐하우스·옴막, 기타 등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비주택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2010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가 11.7만 가구인 데 반해, 2015년도에는 36.4만 가구로 증가하는 것은 비주택 거주 가구 정확한 실태 파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추정 전국 비주택 거주 가구 수 184,592가구, 2011년도 서울시 추정 서울 비주택 거주 가구가 144,629가구 등 2010년 주택 이외 거처 가구 수와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조사 목적이나 비주택 특성에 맞는 별도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전국 규모의 비주택 거주 가구 조사는 2011년 이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주택 이외 거처 가구 규모가 36.4만 호로 파악된 만큼, 이들을 포함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 비주택 거주 가구 실태조사 결과, 비주택가구(원)은 144,629가구 150,474명이다. 이는 서울시 인구의 1.5%, 일반가구 중 4%, 1인가구 중 17%에 해당하는 규모로 비주택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고시원으로 전체의 96%에 이른다. 또한 144,629가구 중 비주택 주거안전기준 미달가구는 109,686가구로 75.8%에 달한다. 참고로,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서울의 일반가구 증가분 194,407가구 중에서 92.0%인 178,867가구가 1인가구이다. 1인가구 증가는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주택 정책에서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57.6%(209,819가구)에 달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주거취약계층실태조사	-	2011	-

참고문헌 · 서중균 외, 비주택 거주 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3, 서울특별시



표 7-5 전국 비주택 거주 가구 규모 (2011)

(단위: 가구, 명)

구분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촌	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합계
인구 수	6,214	123,971	15,440	6,914	32,053	184,592
가구 수	5,784	123,355	13,640	2,964	13,906	159,649
평균 가구원 수	1.07	1.00	1.13	2.33	2.30	1.16

자료: 보건복지부, 2011

표 7-6 서울시 비주택 거주 가구 및 인구 추정

(단위: 가구, 명)

구분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합계
가구	2,977	138,805	2,847	144,629
인구	3,099	144,357	3,019	150,474
평균 가구원 수	1.04	1.04	1.06	1.04

자료: 서울특별시, 2013

#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Number of housing units per 1,000 population

## 지표 정의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는 주택의 양적 상태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적 지표이다. 가구 수보다는 인구 수 측정이 용이하여 주택의 양적 수급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주택 수}}{\text{인구 수}} \times 1,000$$

## 유의사항

-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1채로 보는 경우와 구분거처 수로 산정하는 경우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있음.
-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지표이기는 하나,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주택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를 산정할 경우, 주택 수를 파악하는 방식, 즉, 다가구주택을 주택 1호로 산정하는 경우와 구분거처 수로 산정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그 값이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구분거처를 반영하여 천 인당 주택 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383.0호이며, 2010년 363.8호\*\*에서 19.2호로 증가하였다. 최근 추이를 보면, 1995년 214.5호, 2005년 330.4호, 2015년 383.0호로 20년간 168.5호로, 10년간 52.6호로 증가하였다. 다만, 1995년 수치는 다가구주택을 1호로 산정한 까닭에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천 인당 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대도시 및 도별로 천 인당 주택 수 격차가 나타나는데,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에 비해 도지역은 366.4호인 제주를 제외하면 400호를 넘어서고 있다. EU 28개국의 인구 천 인당 주택 수가 대부분 400호 이상으로, 2015년 한국의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383호에 비해 높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 Checkpoint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나 도지역에 비해 수도권의 증가폭은 낮는데, 수도권 중 서울 및 경기도는 2015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으로 여전히 주택의 양적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지역은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400호 이상이다. 앞으로 매년 인구 천 인당 주택 수가 발표될 것이므로 매년 주택 수급 변화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5년 주택보급률 및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발표 보도자료, 2015.12.29
- CECODHAS Housing Europe, 2012 Housing Europe Review, 2011
- Habitat for Humanity, Housing review 2013 on 23 countries in the Europe and Central Asia
-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5, 2015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이 기존 현장조사 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5년 마다 생산한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를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매년 발표할 계획이다.

\*\* 363.8호는 현장조사방식에 따른 천 인당 주택 수이며, 등록센서스에 따른 천 인당 주택 수는 356.8호이다.

\*\*\* 수도권 중 서울과 경기지역은 2015년 기준 주택보급률 100% 미만이다.

표 7-7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추이 (199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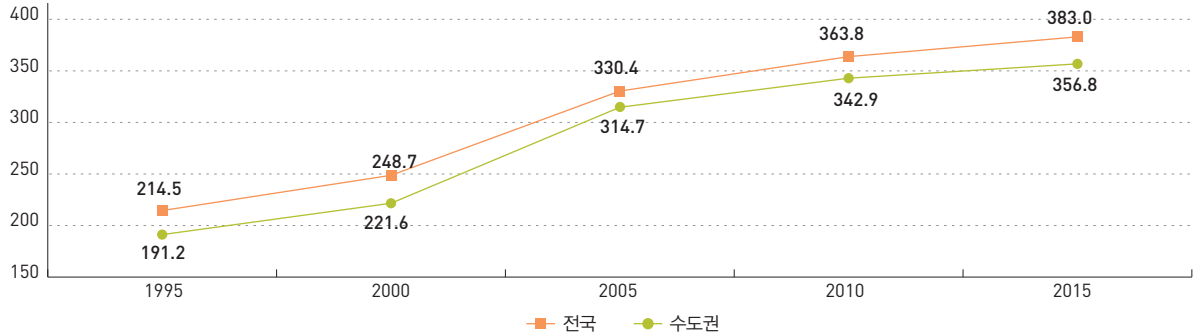
(단위: 호)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전국	214.5	248.7	330.4	363.8	383.0
수도권	191.2	221.6	314.7	342.9	356.8

주: 1) 주택 수 산정 관련, 1995년, 2000년은 다가구주택 1호로 산정, 2005년 이후는 구분거처 수로 산정  
 2) 주택 수에는 빈집이 포함  
 3)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7-8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추이 (1995~2015)

(단위: 호)



주: 1) 주택 수 산정 관련, 1995년, 2000년은 다가구주택 1호로 산정, 2005년 이후는 구분거처 수로 산정  
 2) 주택 수에는 빈집이 포함  
 3)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 7-8 지역별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변화 (2010,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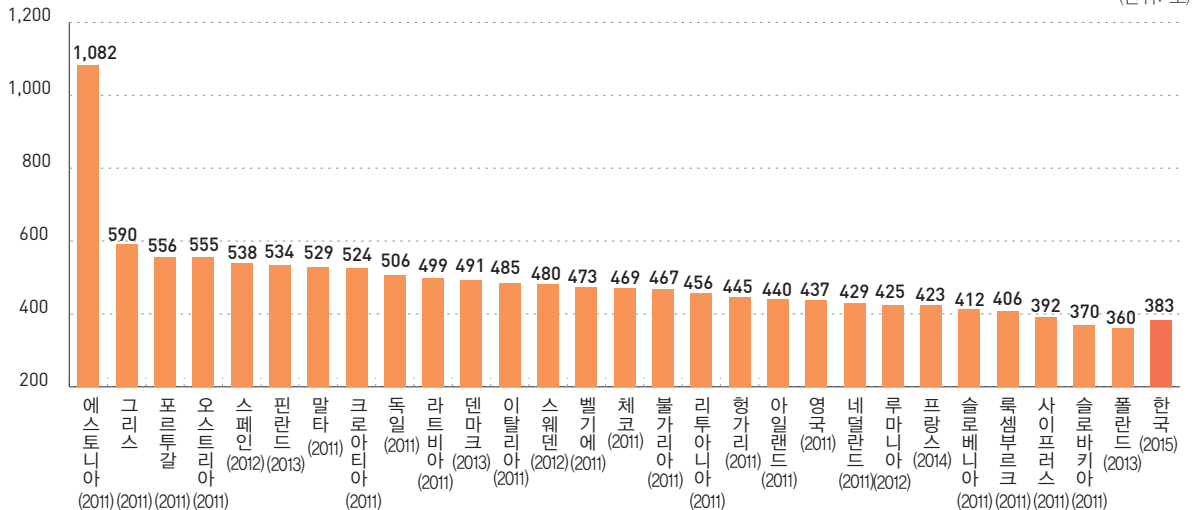
(단위: 호)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 (A)	383.0	356.8	366.8	397.3	382.6	365.1	390.4	386.9	388.0	346.9	426.1	421.2	409.2	453.7	420.3	442.4	446.0	401.4	366.4
2010 (B)	363.8	342.9	347.1	364.0	362.6	351.7	357.8	356.9	357.6	337.2	407.1	396.5	398.0	-	399.0	417.6	420.1	380.0	343.0
천 인당 주택 수 변화 (A-B)	19.2	13.9	19.7	33.3	20.0	13.4	32.6	30.0	30.4	9.7	19.0	24.7	11.2	-	21.3	24.8	25.9	21.4	23.4

주: 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 2015년은 등록센서스 방식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주택보급률 및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발표 보도자료, 2016.12.29.

그림 7-9 EU 28개국의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단위: 호)



자료: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5, 2015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eholds Living in Long Term Public Rental Housing

## 지표 정의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자원(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건설, 매입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분납 포함),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이 포함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수}}{\text{총 가구 수}} \times 100$$

## 유의사항

-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외국의 사회주택과 유사한 역할의 저소득층 대상 주택과 중간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외에 전세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

최근 약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2011년에 100만 호를 초과했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3년에 100만 호를 초과하였다.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도 계속 증가추세여서 2015년에 9.91%로 10가구 당 1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셈이다. 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6.27%에서 5.95%로 0.32%p, 임대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2.6%에서 60.6%로 2.0%p 하락하였다. 전체 재고 규모는 상승하였음에도 점유 비율이 하락한 것인데, 가구 수 상승 폭이 더 큰 것과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10년 이하 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 공급 규모가 더 큰 탓으로 보인다. 반면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일반가구의 임대주택 거주 증가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재고 규모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연간 차이는 있으나 꾸준한 공급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2007년 3.21%에서 2015년 5.95%로 2.74%p 증가하였으나, EU 평균(2012년 기준) 12%\*에 비해 낮다. 물론 유럽의 경우에도 서유럽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유럽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처럼 국가별 차이가 존재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비율은 5.95%로 전년도 6.27%에 비해 다소 하락한 양상이다. 총 가구는 전년대비 4.2%p 증가하였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8.8%p로 증가폭은 두 배에 이르지만, 절대적 수치에서는 가구 증가폭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재고 물량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13~'22) 주택종합계획, 2013
- 국토교통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 2014
-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5, 2015

\* 이 비율은 비영리기관, 공공부문의 공급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합한 수치이다.

표 7-9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추이 (2007~2015)

(단위: 천 가구, 천 호)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가구 수	16,364	16,619	16,862	17,339	17,719	18,057	18,408	18,773	19,561
임대주택	1,304	1,342	1,311	1,399	1,460	1,487	1,616	1,709	1,938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8.2%	8.1%	7.8%	8.1%	8.2%	8.2%	8.8%	9.1%	9.9%
공공임대주택	825	876	865	924	1,019	1,038	1,125	1,177	1,257
장기공공임대주택	526	578	691	806	890	931	1,016	1,069	1,163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3.2%	3.5%	4.1%	4.7%	5.0%	5.2%	5.5%	6.3%	6.0%

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와 전세임대주택 수의 합)/전체 가구 수)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각 연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 각 연도

그림 7-10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추이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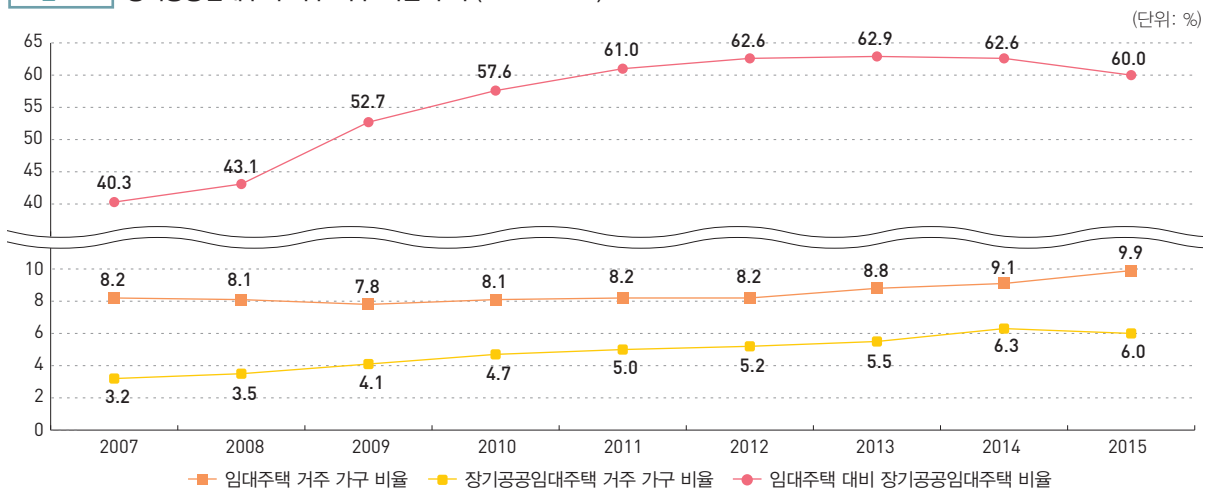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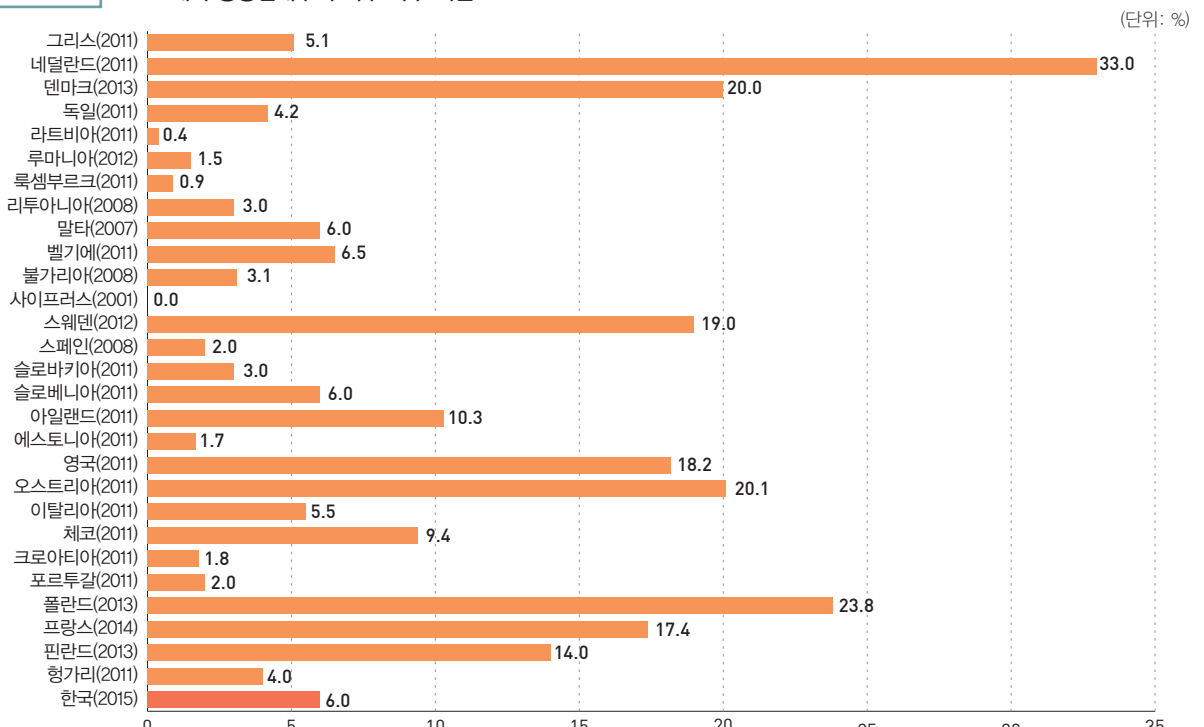


그림 7-11 EU 28개국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주: 1) 유럽국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에는 사회주택, 자선단체, 시정부 공공임대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2)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자료: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5, 2015

#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Public Rental Housing units as percentage of an new housing units

05-1  
연 관

## 지표 정의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란 매년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시장개입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수준도 전망할 수 있게 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당해 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text{당해 연도 주택공급 호수}} \times 100$$

최근 10년간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때가 2008년 31.5%인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가장 적었다. 반대로 2015년 주택건설실적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가장 낮다. 이는 주택건설시장이 경기에 영향을 받아 등락을 반복하는 데 반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주택경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공급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0년간 주택건설 물량은 5,022 호이며, 공공임대주택은 962천 호로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2%이다.

공급주체별 공공임대주택 비율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중이 가장 높다. 최근 10년간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약 70만 호 정도이다. LH의 비중은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비중이 51.9%로 최저점에 위치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5년에는 72.7%에 달했다.

표 7-10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추이 (2006~2015)

(단위: 천 호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택건설인허가 실적	469.5	555.8	371.3	381.8	386.5	549.6	586.9	440.1	515.2	765.3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	23.8	26.4	31.5	23.5	24.1	15.3	12.5	17.2	15.7	11.8

주: 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 기준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표 7-11 공급주체별 신규 공공임대주택 비중 (2006~2015)

(단위: 호)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11,536	146,565	116,908	89,603	93,278	84,065	73,619	75,778	80,629	90,144
지방자치단체	9,461	15,769	12,802	10,501	27,066	20,657	14,047	10,327	8,802	11,650
한국토지주택공사	96,991	117,351	94,788	66,527	64,278	57,868	38,216	46,626	52,446	65,577
민간	5,084	13,445	9,318	12,575	1,934	5,540	21,356	18,825	19,381	12,917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	2015	1년

- 참고문헌
- 이종권 · 김경미 · 권치흥 · 박상학, 「공공임대주택 50년의 성과와 과제」, 토지주택연구원, 2013
  - CECODHS Housing Europe, "Housing Europe Review", CECODHS Housing Europe's Observatory, 2012

그림 7-12 공급주체별 신규 공공임대주택 비중 및 LH의 공급 비율 추이 (200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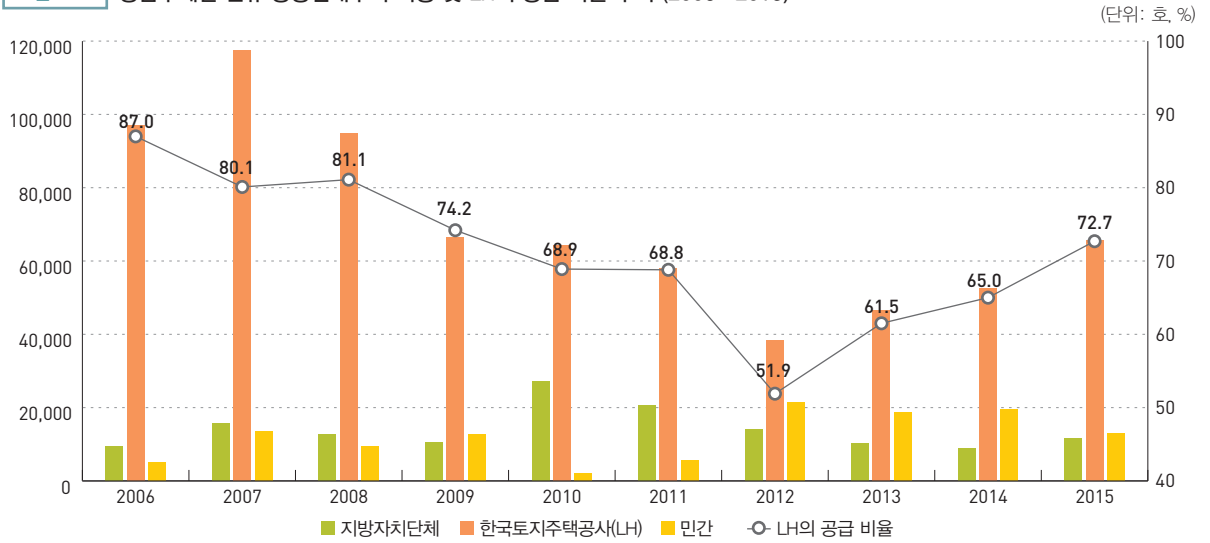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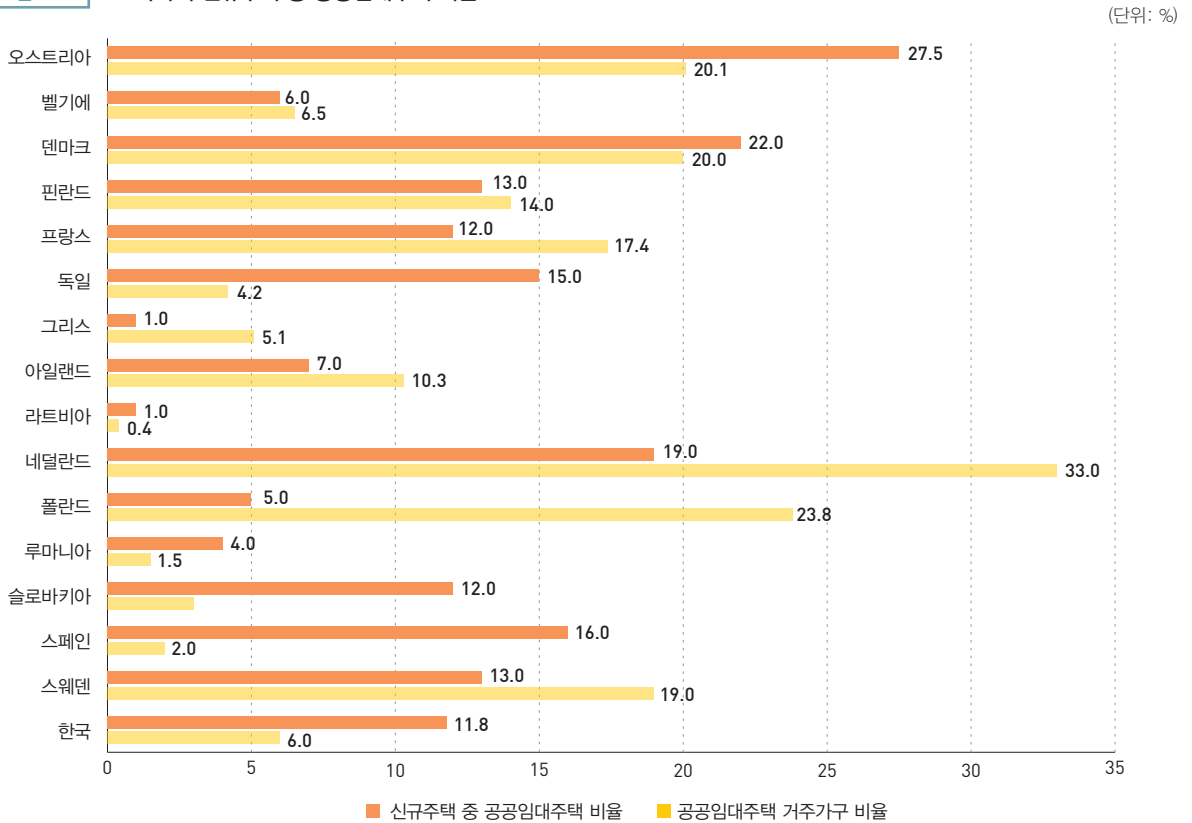


그림 7-13 EU 국가의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주: 1) 2012년 기준 EU 27개국 중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인이 안 된 국가는 제외하였음.  
 2) 스페인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가소유 가치관이 있는 국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이 낮음.  
 자료: CECODHS Housing Europe, 2012

#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Duration of residence in current housing

## 지표 정의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주거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거주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능동적인 입장에 있는 자가가가구 임차가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길다. 그러므로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더욱 의미가 있다.

## 측정 산식

현재 주택에 거주한 연도에서 조사 연도까지의 기간

유의사항 특성별 거주기간 비교를 통해 주택유형, 소득수준별 주거안정성의 차이를 이해

점유형태에 따른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보면, 자가가가구가 11.2년이고 임차가구는 4년 정도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1회 갱신하는 정도의 기간이다. 소득계층별 평균 거주기간을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를 소유한 저소득층이 66.5%가 되고, 월세인 고소득층은 4년 미만 혹은 10년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소득계층보다는 점유형태에 따른 주거기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주거 이동의 사유는 가구의 선호나 욕구, 주거비 부담과 같은 경제적 요인, 외부적 요인 등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점유형태로는 임차이고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 외부적 요인에 따른 이동 가능성이 클 것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자가의 경우 주거이동의 이유가 주택구입, 더 넓은 집 필요, 교통편리 및 좋은 입지 순인데 반해, 임차가구는 전·월세 계약만료, 소득감소 및 높은 임대료 부담 등 비자발적 이동이 전체 가구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7-12 연도별·지역별 현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

(단위: 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전국	7.7	7.7	7.9	8.6	7.7
수도권	5.3	6.0	6.2	6.7	6.4
광역시	7.2	7.2	7.5	8.0	7.6
도지역	11.3	10.6	10.6	11.9	1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4	2년

### Checkpoint

다양한 주거이동 요인의 발생 가능성이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거주기간 변화에 대한 향후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거실태조사 결과 2006년 저소득층의 월세 비율이 27.4%에서 2014년 34.0%로, 중소득층도 15.7%에서 22.3%로 증가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5.1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6.6.1일자 보도자료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 97호 - 서울시민은 현 주택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나?, 2014.8



표 7-13 연도별·점유 형태별 현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

(단위: 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자가	11.0	11.7	11.4	12.5	11.2
전세	2.9	3.1	3.3	3.2	3.5
보증금 있는 월세	3.2	3.4	3.3	4.1	3.4
보증금 없는 월세	3.6	4.7	4.6	5.2	4.3
무상	8.6	8.7	8.5	10.5	7.4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표 7-14 연도별·소득계층별 현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 및 거주기간별 분포 변동

(단위: 년, %)

구분	평균 거주기간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25년	25년 이상	합계	
저소득층	2006	10.3	13.5	32.8	15.6	25.6	12.5	100.0
	2008	10.6	12.1	29.7	18.4	27.0	12.8	100.0
	2010	10.3	10.9	33.5	17.3	25.8	12.5	100.0
	2012	11.5	8.6	31.5	17.1	29.0	13.8	100.0
	2014	10.1	13.6	31.9	15.7	27.2	11.6	100.0
중소득층	2006	5.8	14.7	44.7	19.4	18.4	2.8	100.0
	2008	6.0	13.5	43.4	21.7	18.5	2.9	100.0
	2010	6.6	10.8	43.3	20.5	22.1	3.4	100.0
	2012	6.8	8.3	46.4	20.3	21.4	3.5	100.0
	2014	6.4	13.8	42.1	18.4	22.3	3.3	100.0
고소득층	2006	5.5	12.5	47.1	20.9	17.4	2.1	100.0
	2008	5.6	10.5	44.6	26.0	17.4	1.5	100.0
	2010	6.2	8.8	43.5	24.8	20.9	2.1	100.0
	2012	6.6	7.3	44.7	21.6	24.0	2.4	100.0
	2014	6.4	10.5	40.8	23.6	23.4	1.8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그림 7-14 연도별·점유형태별 현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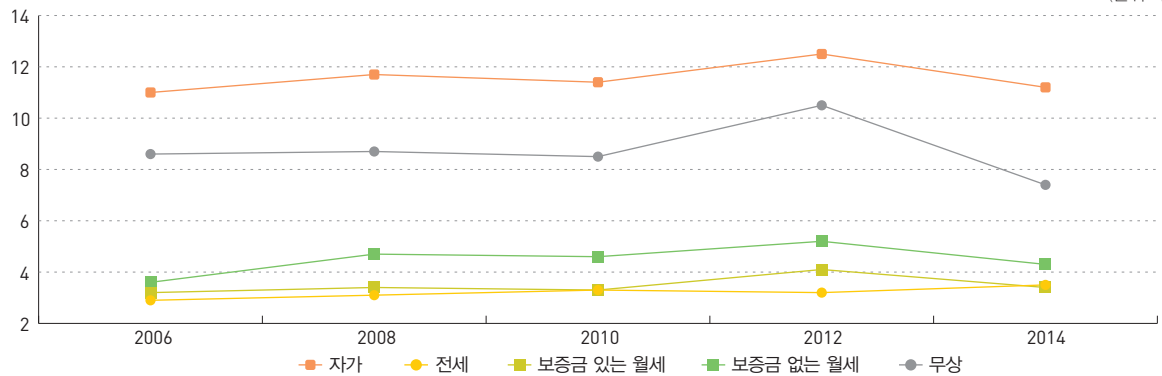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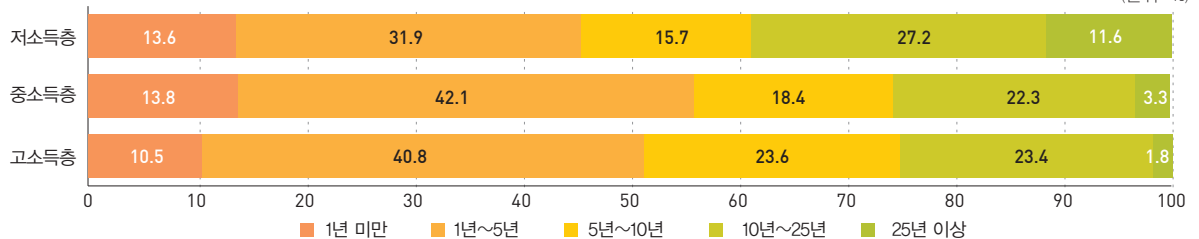


그림 7-15 소득계층별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2014)

(단위: %)



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 노숙인 수

Number of homeless persons

## 지표 정의

노숙인은 정규적인 주거지가 없어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거나 일시적인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사람을 말한다. 즉,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노숙인이라 할 수 있으며, 노숙인수는 노숙인 문제의 양상과 그 심각성을 보는 데 가장 기초적인 지표이다.

## 측정 산식

거리노숙인 수 + 노숙인시설 생활자 수(자활시설, 재활·요양시설)

유의사항 노숙인에 준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와 연계하여 이해

최근 10년간 노숙인 수는 감소 경향을 보인다. 2006년 15,173명에서 2015년 11,901명으로 감소했다. 비율이 낮은 거리노숙인은 감소폭은 크지 않은 반면, 비중이 높은 재활요양시설 생활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동 시설 생활자 감소가 노숙인 감소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숙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4,046명(34.0%)으로 가장 많으며, 대구 1,197명(10.1%), 경기 1,045명(8.8%), 부산 850명(7.1%) 순이다. 서울, 인천 및 경기 등 수도권에 집계된 노숙인 수의 절반인 49.2%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은 자활시설 생활자의 비율이 60.4%로 1,648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리노숙인도 수도권 지역이 53.2%로 절반을 넘는다.

한편, 서울시내 노숙인 시설 생활자의 연령 구성을 보면(서울연구원, 2015), 2007년부터 2014년 동안 총 11,089명 중에서 20대 9.1%, 30대 15.3%, 40대 30.2%, 50대 30.4%, 60대 15.0%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와 달리 30대 이하 노숙인이 24.4%로 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노숙을 하는 등 궁핍한 가계 구조가 노숙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대 이하는 모자쉼터, 가족쉼터 등의 시설에 입소한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 현황	2005	2015	1년

### Checkpoint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유형별 노숙인 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소 가감이 있으나, 서울에서 435명이 감소하여 총 노숙인 감소에 기여한 바가 크다. 대도시 중에서는 광주와 울산이 증가하였으며, 세종, 충청, 경남, 제주도 증가하였다. 노숙인 수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울산으로 노숙인 수가 100명 미만인 긴 하나, 전년대비 49.1% 증가했고, 광주도 26.3%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 남기철, 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 한국학술정보, 2007.
- 보건복지부,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2011.
- 박은철, 노숙진입에서 탈출까지 경로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15
- 경향신문, 서울노숙인 시설 입소자, 4명 중 1명은 30대 이하, 2015.9.4일자

표 7-15 유형별 노숙인 수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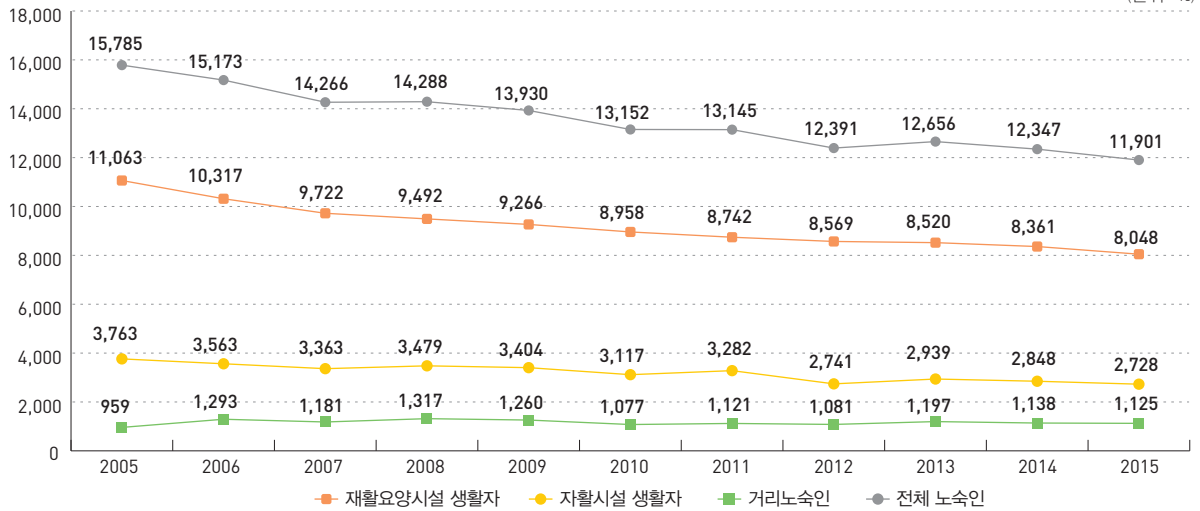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설 생활자	재활요양시설 생활자	11,063	10,317	9,722	9,492	9,266	8,958	8,742	8,569	8,520	8,361	8,048
	자활시설 생활자	3,763	3,563	3,363	3,479	3,404	3,117	3,282	2,741	2,939	2,848	2,728
	소계	14,826	13,880	13,085	12,971	12,670	12,075	12,024	11,310	11,459	11,209	10,776
거리노숙인		959	1,293	1,181	1,317	1,260	1,077	1,121	1,081	1,197	1,138	1,125
전체 노숙인		15,785	15,173	14,266	14,288	13,930	13,152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그림 7-16 유형별 노숙인 수 (2005~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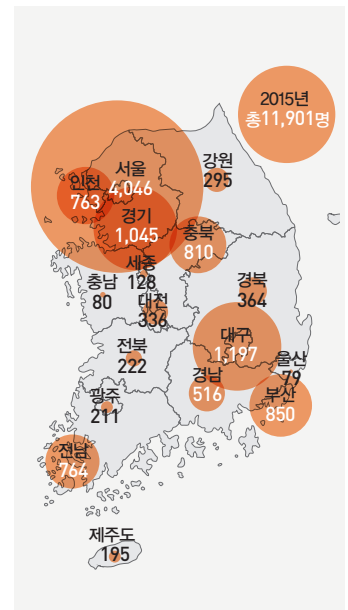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5

표 7-16 시도별 노숙인 현황 (2013~2015)

(단위: 명, %)

구분	합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12,656	4,481	898	1,314	764	377	344	33	114	1,117	297	804	46	217	759	405	520	166	
	100.0	35.4	7.1	10.4	6.0	3.0	2.7	0.3	0.9	8.8	2.3	6.4	0.4	1.7	6.0	3.2	4.1	1.3	
2014	12,347	4,248	884	1,251	809	167	359	53	112	1,181	341	802	78	229	764	391	510	168	
	100.0	34.4	7.2	10.1	6.6	1.4	2.9	0.4	0.9	9.6	2.8	6.5	0.6	1.9	6.2	3.2	4.1	1.4	
2015	11,901	4,046	850	1,197	763	211	336	79	128	1,045	295	810	80	222	764	364	516	195	
	100.0	34.0	7.1	10.1	6.4	1.8	2.8	0.7	1.1	8.8	2.5	6.8	0.7	1.9	6.4	3.1	4.3	1.6	
시설 생활자	재활	8,048	2,097	552	907	603	144	180	0	106	575	219	718	0	179	737	357	501	173
	요양 시설	2,728	1,648	155	150	74	22	119	43	11	258	55	43	50	43	21	7	7	22
	자활 시설	1,125	301	143	140	86	45	37	36	11	212	21	49	30	0	6	0	8	0
거리노숙인		1,125	301	143	140	86	45	37	36	11	212	21	49	30	0	6	0	8	0
		100.0	26.8	12.7	12.4	7.6	4.0	3.3	3.2	1.0	18.8	1.9	4.4	2.7	0.0	0.5	0.0	0.7	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5



#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Housing Price to Income Ratio

## 지표 정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PIR(Price to Income Ratio)이라고도 하며, 주택가격을 연 소득 대비 배수로 나타낸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지표이다. 지역별, 국가별 주택구입능력을 비교해 봄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성이나 주택가격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연 소득이나 주택가격 산정값에 따라 배율에 차이가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주택가격}}{\text{가구의 연 소득}}$$

유의사항 국제 비교 시 주택가격 대푯값(혹은 개별 가구의 주택가격)과 소득기준에 대한 기준 차이 이해 필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소득과 주택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개별 가구의 PIR 중위값을 계산하는 경우와 주택가격과 소득의 대푯값을 산출하여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OECD 기준은 중위 연 소득 대비 중위 주택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의 PIR을 보면, 중위수에 비해 평균 PIR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지역의 PIR 값이 낮고 수도권의 PIR 값이 가장 높다. PIR 산정 방식이 다른 2012년의 경우 중위수 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다른 조사 연도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PIR의 산정 방식에 따라 값이 달라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2014년의 경우 지역별 중위수 및 평균 PIR 값의 차이보다 전국의 중위수와 평균값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별로 PIR을 보면, 2011년 기준 유럽지역의 PIR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2010년 대비 2015년 4/4분기 PIR 값이 증가하고 있어, 소득보다 주택가격이 더 빨리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4	2년

### Checkpoint

주택가격은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아 시기에 따른 등락이 있을 수 있다. IMF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5년 4/4분기의 PIR 값은 88.07%로 2010년보다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PIR값은 중위수 4.3배, 평균 5.6배로, IMF 결과를 단순 치환해 보면 각각 3.8배, 4.9배가 된다.

### 참고문헌

- Ryan Fox and Richard Finlay, Dwelling Prices and Household Income, Bulletin-December Quarter 2012, Reserve Bank of Australia(www.rba.gov.au)

표 7-17 연도별·지역별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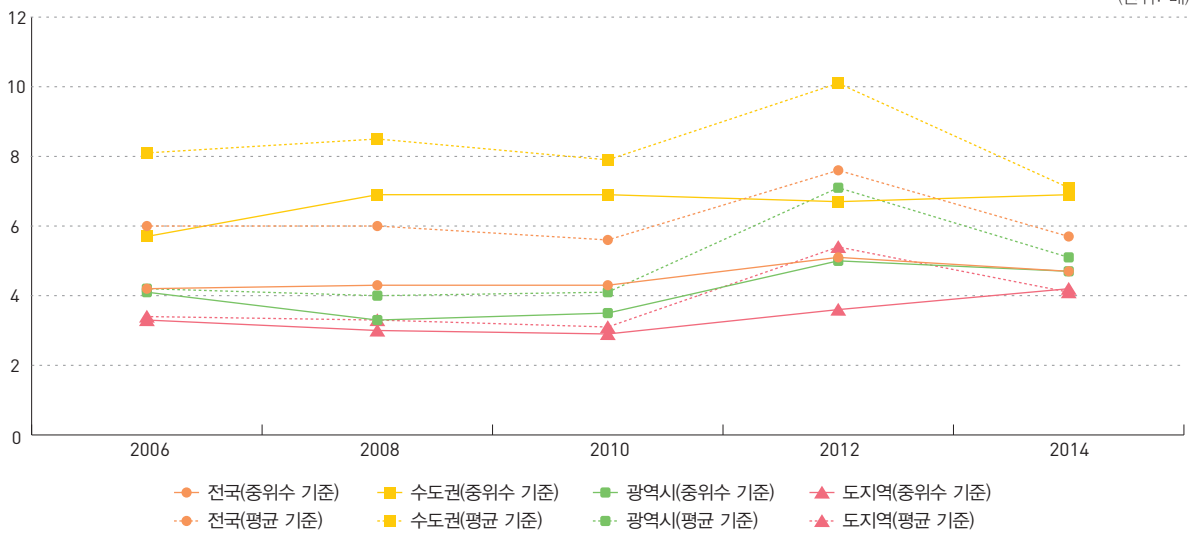
(단위: 배)

구분		2006 <sup>1)</sup>	2008 <sup>1)</sup>	2010 <sup>1)</sup>	2012 <sup>2)</sup>	2014 <sup>1)</sup>
전국	중위수	4.2	4.3	4.3	5.1	4.7
	평균	6.0	6.0	5.6	7.6	5.7
수도권	중위수	5.7	6.9	6.9	6.7	6.9
	평균	8.1	8.5	7.9	10.1	7.1
광역시	중위수	4.1	3.3	3.5	5.0	4.7
	평균	4.2	4.0	4.1	7.1	5.1
도지역	중위수	3.3	3.0	2.9	3.6	4.2
	평균	3.4	3.3	3.1	5.4	4.1

주: 1) 대상 집단의 중위수 및 평균으로 계산  
 2) 개별가구 PIR를 중위수 및 평균을 도출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그림 7-17 연도별·지역별 PIR

(단위: 배)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표 7-18 연도별·소득계층별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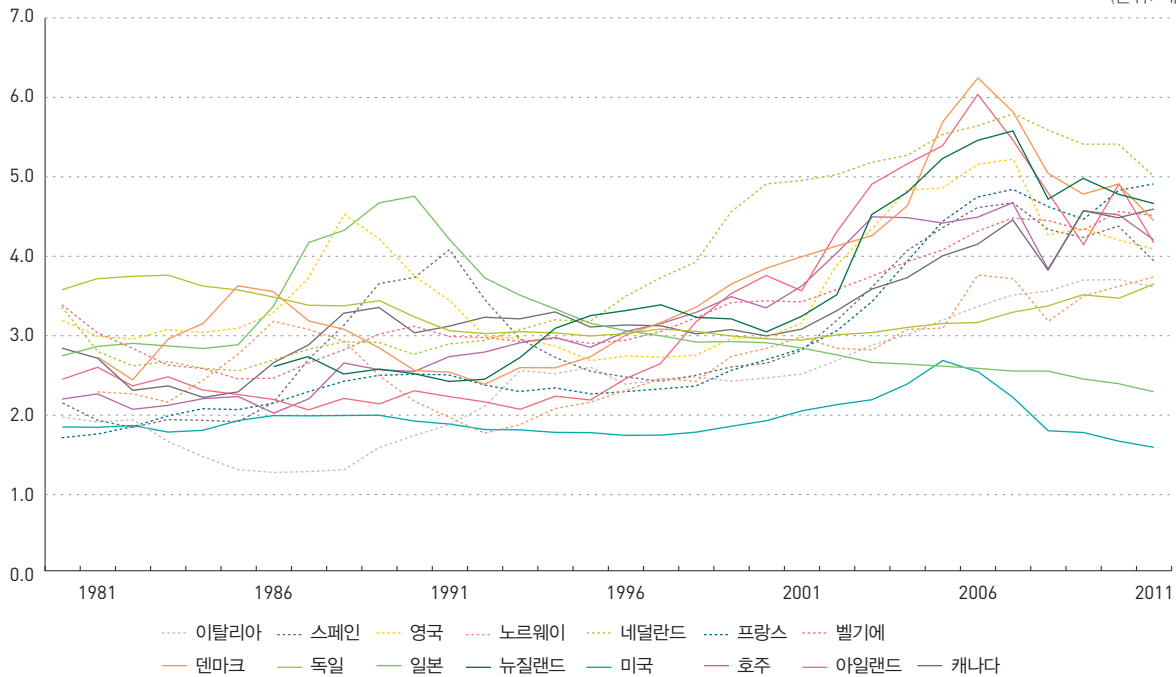
(단위: 배)

구분		2006 <sup>1)</sup>	2008 <sup>1)</sup>	2010 <sup>1)</sup>	2012 <sup>2)</sup>	2014 <sup>1)</sup>
전국	중위수	4.2	4.3	4.3	5.1	4.7
	평균	6.0	6.0	5.6	7.6	5.7
저소득층	중위수	6.3	6.4	6.1	7.5	8.3
	평균	10.9	9.9	9.2	11.3	11.2
중소득층	중위수	3.4	4.3	4.2	4.3	5.0
	평균	5.4	5.6	5.7	5.5	5.8
고소득층	중위수	3.6	4.2	4.0	4.4	4.7
	평균	5.3	5.2	4.7	5.4	4.5

주: 1) 대상 집단의 중위수 및 평균으로 계산  
 2) 개별가구 PIR의 중위수 및 평균을 도출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그림 7-18 국가별 PIR 추이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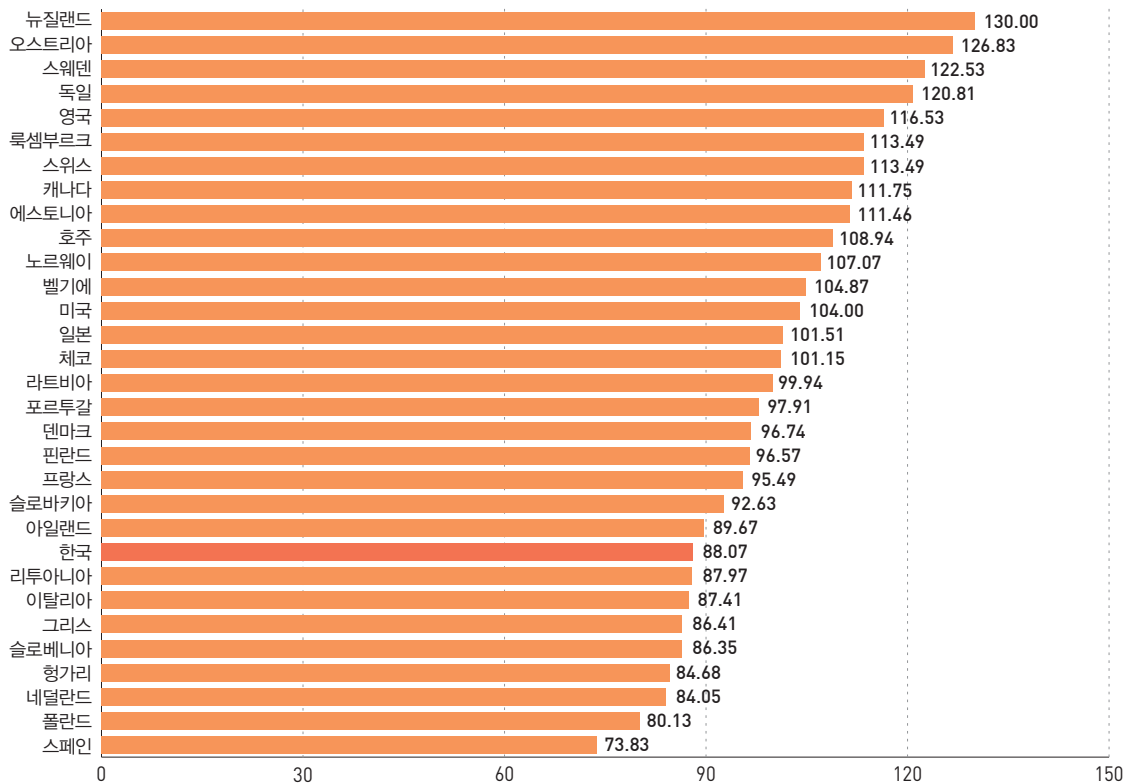


주: 가구의 가처분 소득 평균대비 평균 주택가격으로 계산

자료: Ryan Fox and Richard Finlay, Dwelling Prices and Household Income, Bulletin-December Quarter 2012, Reserve Bank of Australia (www.rba.gov.au) 재인용; BIS; Bloomberg;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Halifax; Japan Real Estate Institute; OECD; Quotable Value; Realkreditaadet; RP Data-Rismark; Thomson Reuters; United Nations; national sources(statistical agencies, central banks and government departments)

그림 7-19 국가별 PIR 변화 (2010년 대비 2015년 4사분기 수준)

(단위: %)



자료 : <http://www.imf.org/external/research/housing>

#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Monthly Rent to Income Ratio

## 지표 정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월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공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이 25% 혹은 30%를 넘으면 임대료 과부담 가구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임대료 부담이 커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측정 산식

$$\frac{\text{가구의 월 임대료}}{\text{가구의 월 소득}} \times 100$$

※ 전세가구는 해당 시점에서 전세금의 월세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 유의사항

-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율에 대한 이해 및 적정 월 임대료 비율에 대한 이해 필요
- 아파트가 많은 국내의 경우, 임대료 외에 관리비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월 임대료 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주거실태조사의 월세전환율은 하락추세로, 2006년 11.88%, 2008년 11.76%, 2010년 11.52%, 2012년 10.44%, 2014년 9.36%이다. 한편,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통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현실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 상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선인 6.0%(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수)보다 높다. 2015년 3사분기 서울의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6.4%로 주택시장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중위수 기준)은 전국기준 20.3%로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지역별로는 도지역의 중위수 값을 제외하면 2012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런데 지역적 편차보다는 소득계층별 편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중위수 RIR이 2006년 27.6%에서 2014년 29.0%로 증가했고, 2014년 평균도 34.1%에 달한다. 반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은 25% 이내여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럽국가의 RIR은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외에 광열수도비 등 주거비 일체가 포함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4	2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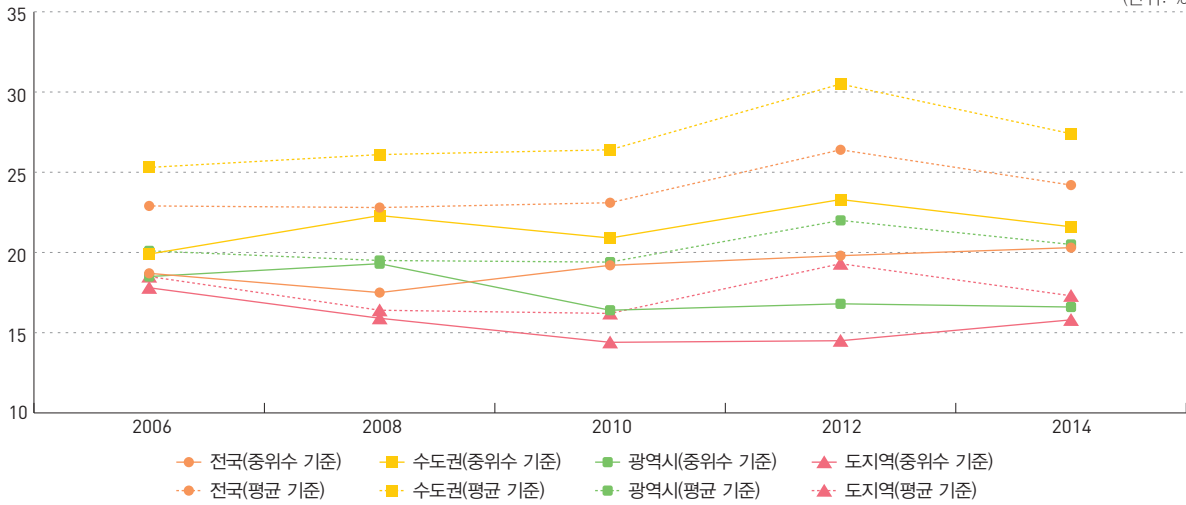
월세전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은 임대료 과부담 상태에 있다. 임대료 외 각종 주거비용(광열수도비,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이 추가되면 주거비 부담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 비해 2014년의 RIR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저소득층(중위수 기준) RIR과 중소득층(평균 기준) RIR은 상승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주택바우처 모델 구축 연구, 2010
- CECODHS Housing Europe, "Housing Europe Review", CECODHS Housing Europe's Observatory, 2012

그림 7-20 연도별 · 지역별 임대료 부담 비율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7-19 연도별 · 지역별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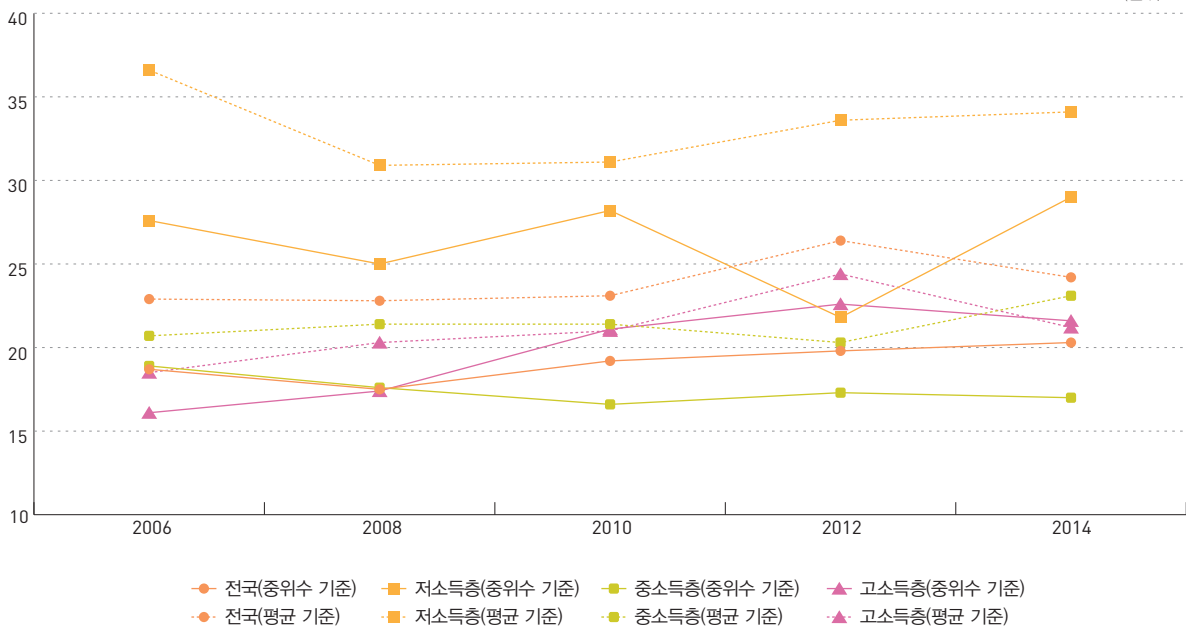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전국	18.7	22.9	17.5	22.8	19.2	23.1	19.8	26.4	20.3	24.2
수도권	19.9	25.3	22.3	26.1	20.9	26.4	23.3	30.5	21.6	27.4
지역										
광역시	18.5	20.1	19.3	19.5	16.4	19.4	16.8	22.0	16.6	20.5
도지역	17.8	18.5	15.9	16.4	14.4	16.2	14.5	19.3	15.8	17.3

주: 월세전환율(월세이율)은 2006년 11.88%에서 2008년 11.76%, 2010년 11.52%, 2012년 10.44%, 2014년 9.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연도별 월세이율은 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2006.10, 2008.10, 2010.08) 및 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2012.07, 2014.08))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7-21 연도별 · 소득계층별 임대료 부담 비율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7-20 연도별 · 소득계층별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 비율

(단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전국	18.7	22.9	17.5	22.8	19.2	23.1	19.8	26.4	20.3	24.2	
소득 계층	저소득층	27.6	36.6	25.0	30.9	28.2	31.1	21.8	33.6	29.0	34.1
	중소득층	18.9	20.7	17.6	21.4	16.6	21.4	17.3	20.3	17.0	23.1
	고소득층	16.1	18.5	17.4	20.3	21.1	21.0	22.6	24.4	21.6	21.2

주: 월세전환율(월세이율)은 2006년 11.88%에서 2008년 11.76%, 2010년 11.52%, 2012년 10.44%, 2014년 9.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연도별 월세이율은 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2006.10, 2008.10, 2010.08) 및 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2012.07, 2014.08))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7-21 서울시 주택유형별 · 권역별 월세전환율 (2014년 3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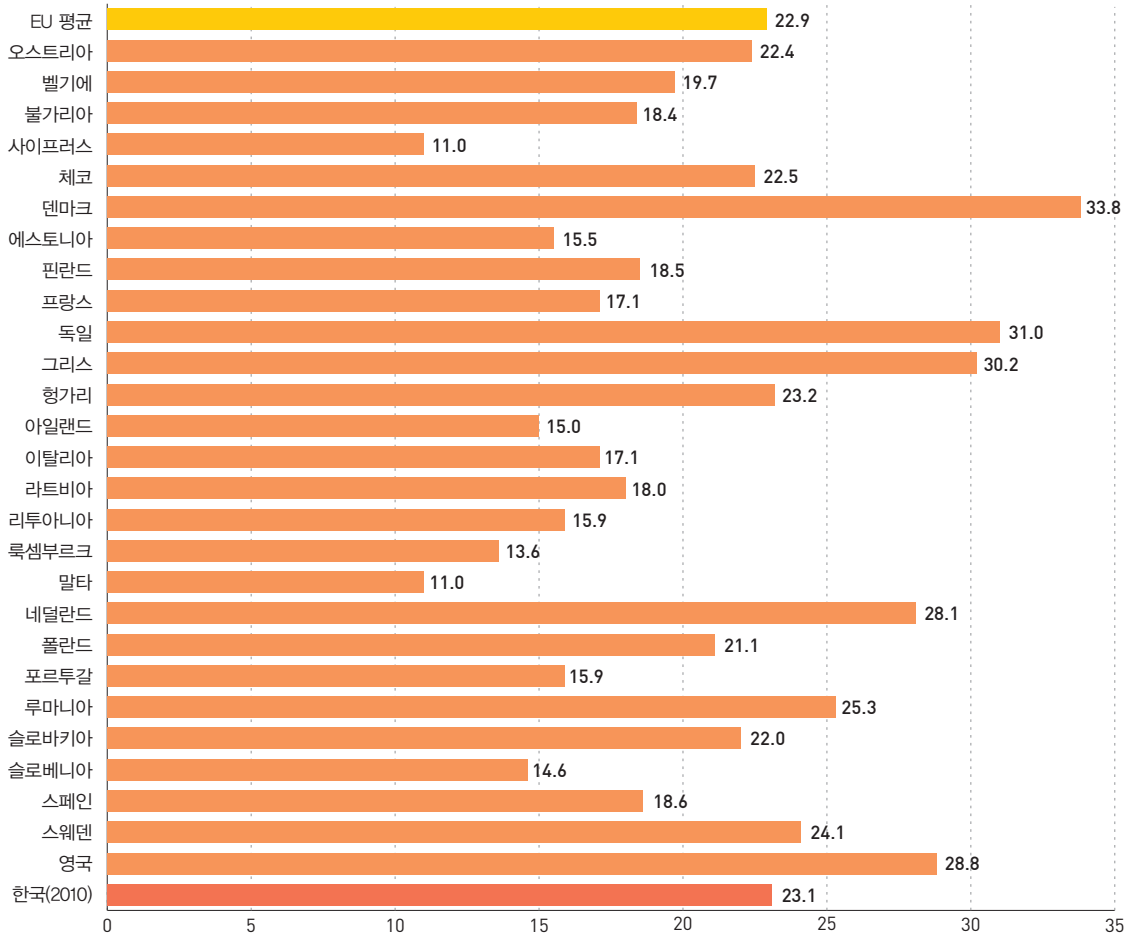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다세대 · 연립	7.4	6.8	7.3	6.9	7.3
단독 · 다가구	9.2	7.5	7.7	8.2	8.1
아파트	7.5	6.4	6.7	6.3	6.9
전체	7.7	6.9	7.3	7.1	7.5

자료: 서울특별시 주택건축소식 온라인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

그림 7-22 유럽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009)

(단위: %)



주: 1) 2012년 기준 EU 27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 한국은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이며,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평균값 기준)  
 자료: CECODHS Housing Europe, 2012;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용자가구 수

Number of households with loans from the National Housing Fund

## 지표 정의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용자가구 수란 근로자·서민 등 일정한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용자 지원한 가구 수를 의미한다. 또한 대출 조건이 무주택자라는 점에서 무주택 서민의 자가 취득을 통한 주거 안정 도모가 목적이다.

## 측정 산식

(내집마련 디딤돌 용자가구 수) + (공유형 모기지 지원가구 수)

유의사항 2014년부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용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용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로 통합되어 운영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용자제도에는 내집마련 디딤돌(2014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용자(1994),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2001) 통합) 및 공유형 모기지(2013), 오피스텔 구입자금이 있다.

2010년까지는 주택구입자금 용자가구 수나 건당 용자금액에 다소의 등락이 있으나 2011년부터는 용자가구 수와 건당 용자금액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용자가구 수가 감소하여 용자총액에서도 감소양상을 보인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상품인 만큼 주택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공유형 모기지는 2014년 7,747억 원에서 2015년 1,955억 원으로 급감했다. 수익 또는 손익을 공유하는 모기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주택가격이나 금리 인상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1981	2015	1년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	-	2015	1년

## Checkpoint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용자로 최근 10년간(2006~2015) 478,11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지원규모는 37조 2,156억 원에 이른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도 2014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건당 용자금액이 9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2015년에는 거의 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김현욱,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와 운영개선방안: 주택시장분석과 정책과제연구, 한국개발원, 2004
- 감사원, 공적서민주택금융 실태 감사보고서, 2013

\* 2015.7.1. 주택도시기금으로 용어 변경

표 7-22 주택구입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유형별 용자가구 수 (20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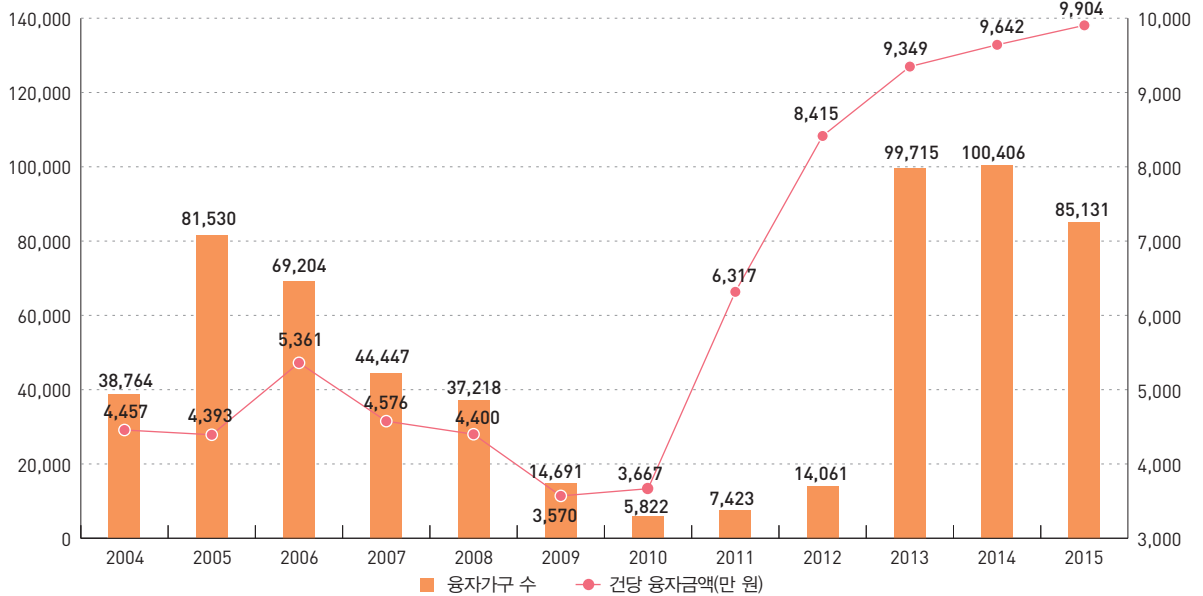
(단위: 가구, 억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용자가구 수	38,764	81,530	69,204	44,447	37,218	14,691	5,822	7,423	14,061	99,715	100,406	85,131
내집마련 디딤돌	-	-	-	-	-	-	-	-	-	-	81,127	79,241
근로자·서민구입	15,563	26,106	11,976	19,239	15,554	5,172	1,576	281	130	3,028	395	7
생애최초주택구입	1,714	9,710	25,121	1,099	821	72	559	4,408	11,703	86,411	6,649	2,005
공유형 모기지	-	-	-	-	-	-	-	-	-	3,782	7,747	1,955
기타 (주거안정, 오피스텔)											2,359	2,099
용자 총액	17,277	35,816	37,097	20,338	16,375	5,244	2,135	4,689	11,833	93,221	98,277	85,307
건당 용자금액(만 원 단위)	4,457	4,393	5,361	4,576	4,400	3,570	3,667	6,317	8,415	9,349	9,642	9,904

주: 건당 용자금은 (용자총액/용자 건수)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5

그림 7-23 주택구입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용자가구 수 및 건당 용자금액 (2004~2015)

(단위: 호, 만 원)



주: 건당 용자금은 (용자총액/용자 건수)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5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Number of low-income households with jeonse loans

## 지표 정의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내 가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전월세자금을 이용한 가구 수를 의미한다.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되며 상환방식 및 상환기간도 일반 대출과 상이하다.

## 측정 산식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되는 버팀목대출 가구 수,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가구 수

유의사항 2015년부터 근로자 서민과 저소득 전세를 통합해 '버팀목' 대출로 통합되므로, 2015년 이후 통계 수치와 비교 시 감안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과 통합, 버팀목대출로 개편되었는데, 2014년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건수와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건수 합이 136,231건이었던 데 반해, 2015년 이 두 개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총 건수가 110,871건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2015년 버팀목대출의 평균 대출액은 4,027만 원으로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대출액 2,751만 원보다 높고,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대출액 4,548만 원보다 낮다. '버팀목' 대출 이율은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이보다 낮지만, 다가너 가구,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소득구간별 전세자금대출 누적 실적을 보면,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계층의 지원 비율이 높아, 저소득 서민의 전세자금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분위별 이자비용을 보면, 버팀목대출의 이자비용이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에 비해서는 컸으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비용보다는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1981	2015	1년

- 참고문헌
- 감사원, 공적서민주택금융 실태 감사보고서, 2013
  - 이태리, 전세자금지원프로그램 현황과 소득계층별 효과, 국토정책 Brief No 528, 2015, 국토연구원
  - 내집마련파트너 국민주택기금 포털([http://nhf.molit.go.kr/loan/01\\_funds02.do](http://nhf.molit.go.kr/loan/01_funds02.do))

표 7-23 주택도시기금 저소득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운용실적 (200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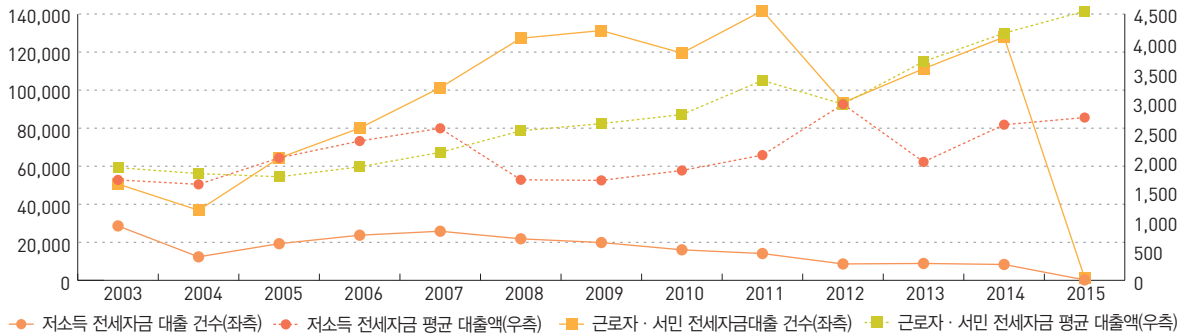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저소득 전세 자금	대출 건수	28,603	12,343	19,264	23,725	25,809	21,819	19,869	16,038	14,084	8,613	8,864	8,330	229
	대출총액(억 원)	4,854	2,002	3,985	5,587	6,631	3,706	3,356	2,976	2,980	1,889	1,774	2,191	63
	평균 대출액(만 원)	1,697	1,622	2,069	2,354	2,569	1,699	1,689	1,856	2,116	2,977	2,001	2,630	2,751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	대출 건수	50,655	36,827	64,322	80,033	101,289	127,281	131,331	119,467	141,770	93,426	111,258	127,901	1,282
	대출총액(억 원)	9,647	6,646	11,257	15,348	21,897	32,170	34,780	33,463	47,883	35,306	41,128	53,427	553
	평균 대출액(만 원)	1,904	1,804	1,750	1,918	2,162	2,527	2,648	2,801	3,378	2,977	3,697	4,177	4,548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건수	-	-	-	-	-	-	-	-	-	-	-	-	109,360
	대출총액(억 원)	-	-	-	-	-	-	-	-	-	-	-	-	44,043
	평균 대출액(만 원)	-	-	-	-	-	-	-	-	-	-	-	-	4,027

주: 평균 대출액은 (대출총액/대출 건수)로 계산된 수치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5

그림 7-24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용자가구 수 및 건당 용자금액 (2003~2015)

(단위: 억 원, 건)



주: 건당 용자금은 (용자총액/용자 건수)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5

표 7-24 전세자금대출 소득구간별 취급실적 (2012.2~2015.6)

(단위: 건, %)

소득별 구분	건 수		금액	
	공급 건수	비중	공급액	비중
1천만 원 이하	134,376	30.60%	36,923	22.10%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65,532	14.90%	17,927	10.70%
2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124,810	28.50%	53,652	32.10%
3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71,979	16.40%	35,956	21.50%
4천만 원 ~ 5천만 원 이하	35,315	8.10%	18,892	11.30%
5천만 원 초과	6,440	1.50%	3,806	2.30%
계	438,452	100.00%	167,157	100.00%

주: 2012년은 2.1부터 12.31일까지 실적  
 자료: 이태리, 2015

표 7-25 전세자금대출 소득분위별 평균 대출과 이자비용

(단위: 천 원)

구분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소득6분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2015.1.1~2015.3.31)	평균 대출금액	36,043	46,091	49,901	52,559	59,770	58,504
	평균 이자비용	1,189	1,521	1,647	1,734	1,972	1,931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2015.1.1~2015.3.31)	평균 대출금액	22,985	39,104	55,618	79,443	-	-
	평균 이자비용	460	782	1,112	1,589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015.1.1~2015.6.30)	평균 대출금액	31,237	40,920	47,010	50,101	52,657	53,849
	평균 이자비용	812	1,129	1,316	1,428	1,580	1,615

자료: 이태리, 2015

#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ing benefit claimants

## 지표 정의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 중 하나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급여를 제공하되, 자가수급자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 서비스를 통한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임차급여를 받는 임차가구 수} + \text{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자가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주거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분리되었으며, 2015년 말 기준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799,864가구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가구는 증가하였다. 전체 수급가구 역시 증가하면서 전체 수급가구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은 80% 미만이지만, 일반가구 수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은 4%대로 증가했다. 임차급여 가구와 수선유지급여 가구 비율은 각각 90.2%와 9.9%로 임차급여 가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임차급여 가구 중 1인가구 44.7만 가구로 66.3%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가구 29만 가구로 40.4%로 나타났다. 민간임대 거주 가구 중에서는 보증부 월세 54.2%, 순수 월세 24.8%로 79%를 차지하고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3.8만 가구에 달한다. 자가가구 역시 1인가구 4.6만 가구(58.5%), 65세 이상 고령가구 5.2만 가구(66.1%)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주택유형에서는 단독주택 거주 가구가 5.6만 가구로 73%였다. 자가수급자인 수선유지급여 가구의 노후도 분포를 보면, 경보수에 해당하는 가구가 기존 수급가구 55.3%, 신규 수급가구 51.8%로 수급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구조적 결함이 있어 대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30% 가량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2015	2015	1개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2010	2014	1개월
보건복지부	주택개량사업현황(내부자료)	2010	2014	1개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977	2014	1년

### Checkpoint

주거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임차 가구 대상 현금급여는 임차급여로, 기존 자가가구 대상 현금 및 현물 급여는 수선유지급여로 변화하였다. 제도 개편에 따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원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원가구는 2014년에 비해 15.4%p 증가했고, 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은 8.8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약 2만 원이 증가했으며, 자가가구의 수선한도는 220만 원에서 보수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했다.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보면, 소득 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액은 15.5%p 감소,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액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비율도 12.5%p 감소하였다.

###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저소득층 주택상태조사 및 개보수사업 추진방안 연구, 2011.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 2014.
-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1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거급여 개편 시행,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줄었다”, 2016.5.17
- 보건복지부, 20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표 7-26 주거급여 지원 실적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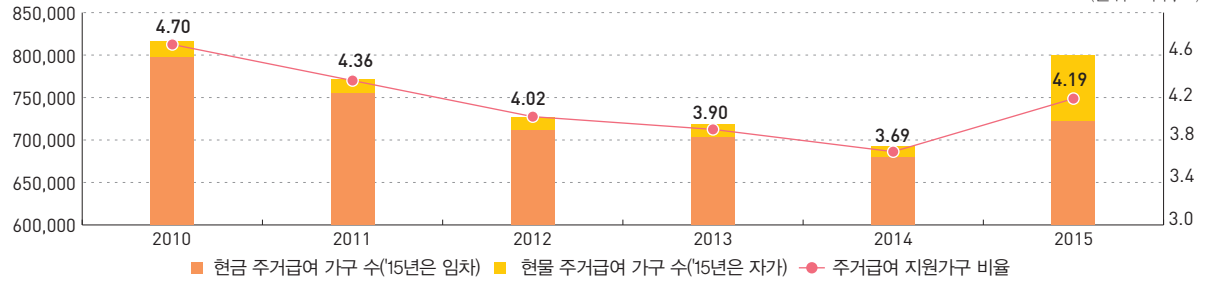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가구 수(A, 천 가구)	17,339	17,719	18,057	18,408	18,773	19,111	
전체 수급가구 수(B, 가구)	878,799	850,689	821,879	810,544	814,184	1,014,177	
주거급여 지원가구 (가구)	합계(C = D + E)	815,789	771,716	726,255	717,744	692,874	799,864
	현금급여(D)	797,478	755,092	711,650	703,579	678,997	-
	현물급여(E)	18,311	16,624	14,605	14,165	13,877	-
	임차급여(D)	-	-	-	-	-	721,570
	수선유지급여(E)	-	-	-	-	-	78,294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일반가구 대비(C/A)	4.70	4.36	4.02	3.90	3.69	4.19
	전체 수급가구 대비(C/B)	92.8	90.7	88.4	88.5	85.1	78.9

주: 1) 2010~2014년 보건복지부, 2015년 국토교통부 자료  
 2) 2015년 일반가구 수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자료: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5

그림 7-25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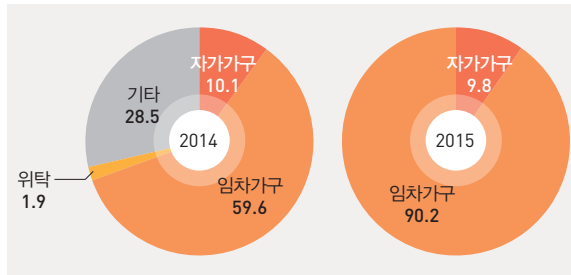
(단위: 가구,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5

그림 7-26 점유형태별 수급가구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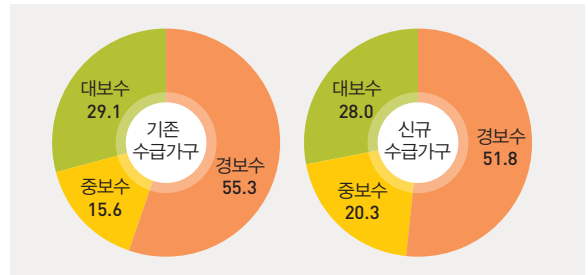
(단위: %)



주: 1) 위탁: 가정위탁, 보정기관 제공 거주자, 그룹홈 거주자 등  
 2) 기타: 부분무료임차, 전체무료임차, 움막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국토부, 내부자료

그림 7-27 수급가구의 주거상태 (2014)

(단위: %)



주: 1) 기존 수급가구 수 55,974가구  
 2) 신규 수급가구 수 22,275가구  
 3) 경보수: 설비 부분 교체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4) 중보수: 건축마감 불량 및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5)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지붕, 옥실개량, 주택개량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자료: 국토부, 내부자료

표 7-27 주거급여 제도 개편 개요

구분	개편 전 주거급여	개편 후 주거급여
근거법 및 소관부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	중위소득 33% 이하 / 현금급여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의 약 22%	중위소득 43% 이하 /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임차가구 지원 방식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동
자가가구 지원 방식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19개 항목별 현장실사로 노후도 평가)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포털사이트(<https://www.myhome.go.kr>)

#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Number of Reverse Mortgages Guaranteed

## 지표 정의

주택연금대출 보증 건수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대출에 대한 보증 건수를 의미한다. 자산은 있으나 소득은 낮은(house-rich, income-poor)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이며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측정 산식

매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 주택연금 보증 건수

주택연금대출(reverse mortgage)이 국내 재도입(2004년, 1995년 도입)된 후 10여 년이 지났으며,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보증을 실시하면서(2007년) 지속적으로 보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나 주택시장 등 인구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택의 범위, 대상 주택 가격 등이 달라지는데 현재 주택연금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으로 1주택에 한하며,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증 건수는 2007년(7월~) 515건에서 2015년 6,486건으로, 보증공급액은 6,025억 원에서 7조 1,392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5년 말 기준 누적 건수는 2만 9,120건, 누적 금액은 36조 2,134억 원에 달한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6회에 걸쳐 주택연금 이용자 수요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조사 결과 월평균 수입에서 일반 고령자(주택을 보유한 60~84세 및 배우자)는 183만 원, 주택연금 이용자는 153만 원으로 주택연금 이용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에서는 주택연금 이용자 월 수입이 높은 반면, 상위 20%에서는 일반 고령자의 월 수입이 높다. 또한, 연령별 월 수입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 고령자 및 주택연금 이용자의 월 수입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지만, 주택연금 이용자는 80~84세 소득이 60~64세 소득의 75.9%인 반면, 일반 고령자는 41.1%로 차이가 있다. 또한 월평균 수입 구성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주택연금 이용자는 주택연금이 월 수입의 58.2%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 고령자는 근로소득이 55.0%이다. 주택연금 이용가구는 은퇴 전 소득의 81.4%를 주택연금 등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 40.6%보다 40.8%p 더 높아, 주택연금의 영향이 큰 것을 보여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2008	2015	1개월

### Checkpoint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보증 건수와 보증공급액 모두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보증 건수는 28.7%, 보증공급액은 29.1% 증가하여 2012~2014년 지난 3년 연속 감소추세에서 벗어났다. 금융 대출상품인 만큼 주택 경기에 따른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고령자의 보유주택에 대한 비상속 의향률이 증가추세이며, 만80세 이상이 16.2%인데 반해, 60~64세는 31.6%에 달하는 등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앞으로도 주택연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참고문헌

- 원종현, “역모기지 유통화에 대한 이해” special report 2012.11.9, 한국신용평가, 2012
-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 역모기지 현황과 제도 개선에 대한 비교, 주택금융월보 2014.11월호, 통권 124호

\* 통계청의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7%로 고령화사회 진입 후 17년 만인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7-28 주택연금 보증 건수 및 보증공급액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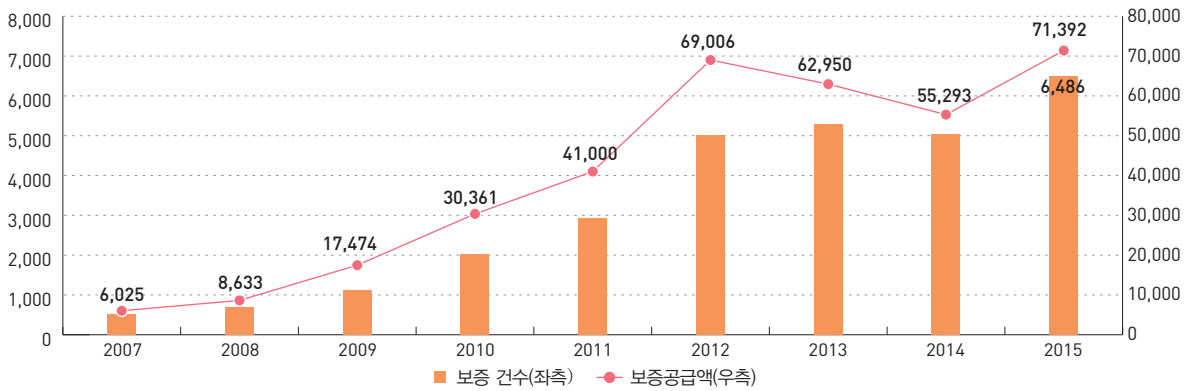
(단위: 건, 억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증 건수	515	695	1,124	2,016	2,936	5,013	5,296	5,039	6,486
보증공급액 <sup>1)</sup>	6,025	8,633	17,474	30,361	41,000	69,006	62,950	55,293	71,392

주: 1)보증공급액 :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보증공급액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보증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2016

그림 7-28 주택연금 보증 건수 및 보증공급액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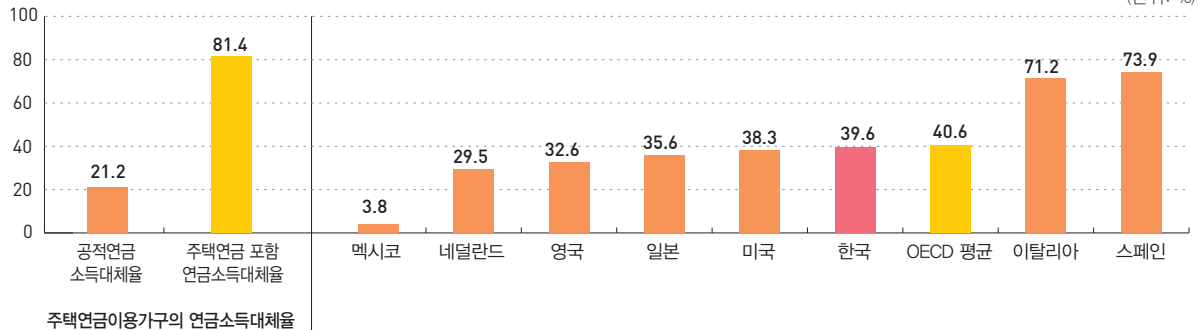
(단위: 건, 억 원)



주: 1) 보증공급액 :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보증공급액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보증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2016

그림 7-29 OECD 국가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단위: %)



주: 연금소득대체율 81.4%는 주택연금(57.1%), 공적연금(21.2%),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3.1%) 임.

# 8

## 에너지

- 01 가전기기 보급률
- 02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 03 도시가스 보급률
- 04 연탄사용 가구 현황
- 05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 06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 07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 08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가구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에너지 사용 유형	가전기기 보급률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도시가스 보급률	
	연탄사용 가구 현황	
에너지 소비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에너지복지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가구	

# 가전기기 보급률

Penetration Rate of Home Appliances

## 지표 정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의 가구당 평균 보유 대수를 의미한다.

가구의 가전기기 사용의 정도와 전력소비 필요성과 결부시켜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 측정산식

- 보급대수/가구, 가구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의 소득수준별 가구당 가전기기 보급률 조사에 기초한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가전기기 보급이 확대됨은 물론 새로운 가전기기도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가전기기 보급률을 소득수준별로 보면 TV, 냉장고, 세탁기 및 전기밥솥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구당 1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 가전기기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가전기기라 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보급률 차이가 큰 대표적인 가전기기는 에어컨으로 소득수준이 월평균 200만 원 미만에 속하는 가구의 보급률은 가구당 0.42대에 그친 반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가구당 1.09대로 대부분의 가구가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에어컨 보급률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어 전력소비가 많은 에어컨 가동 시 전기요금이 급증하는 비용부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에어컨보다는 차이가 적지만 김치냉장고와 청소기도 소득구간별로 보급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가전기기 보급률이 포화상태에 근접하고 에너지 소비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가정부문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완만해지고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	2011	2014	1년

### Checkpoint

TV,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기기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보급률이 포화상태에 근접하여 이후에는 보급률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TV 보급률은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가전기기 보급률을 보면 에어컨과 컴퓨터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가전기기는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8-1 연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

(단위: 대/가구)

구분	TV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컴퓨터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청소기
2012	1.26	1.04	1.01	1.84	0.78	0.77	0.73	0.88	0.85
2013	1.23	1.03	1.01	1.77	0.77	0.8	0.71	0.89	0.85
2014	1.19	1.02	1.01	1.74	0.76	0.75	0.69	0.88	0.85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 에너지 상설 표본조사, 각 연도

표 8-2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2)

(단위: 대/가구)

구분	TV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컴퓨터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청소기
200만 원 미만	1.18	1.02	1.01	1.57	0.46	0.39	0.62	0.90	0.60
200~400만 원	1.29	1.04	1.02	1.88	0.81	0.82	0.74	0.91	0.92
400~600만 원	1.27	1.05	1.01	1.97	0.97	0.99	0.78	0.81	0.96
600만 원 이상	1.33	1.04	1.00	1.99	1.06	1.12	0.92	0.82	0.94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년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 표본조사, 2013

표 8-3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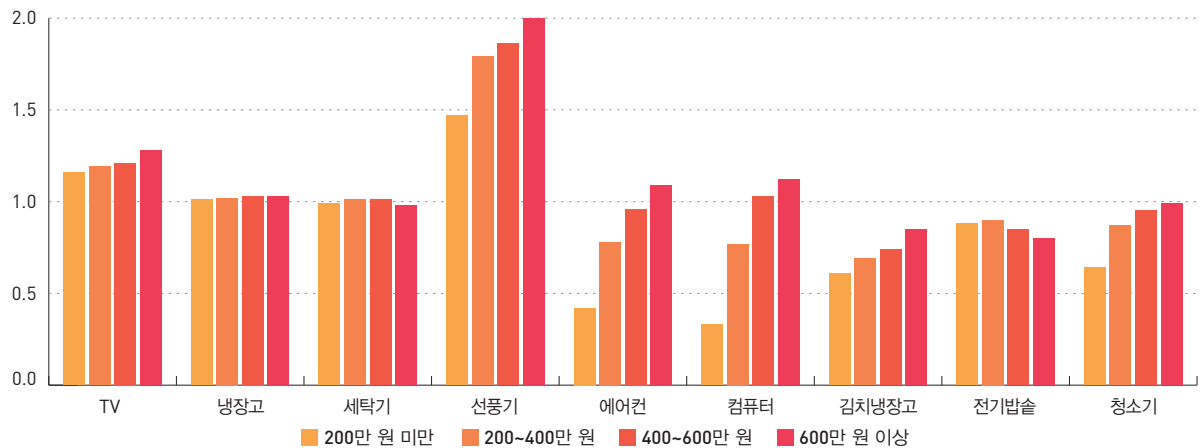
(단위: 대/가구)

구분	TV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컴퓨터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청소기
200만 원 미만	1.16	1.01	0.99	1.47	0.42	0.33	0.61	0.88	0.64
200~400만 원	1.19	1.02	1.01	1.79	0.78	0.77	0.69	0.90	0.87
400~600만 원	1.21	1.03	1.01	1.86	0.96	1.03	0.74	0.85	0.95
600만 원 이상	1.28	1.03	0.98	2.00	1.09	1.12	0.85	0.80	0.99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년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 표본조사, 2015

그림 8-1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4)

(단위: 대/가구)



주: 그 외 노트북, 비디오 등의 가전기기는 제외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년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 표본조사, 2015

#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Type of Heating Facility

## 지표 정의

난방설비는 크게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으로 구분된다.

가구의 에너지원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 수립에 활용가능한 지표이다.

## 측정산식

- 난방시설(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가구 수. 인구총조사의 난방시설 조사에 기초한다.

2010년 인구총조사의 난방시설 분포를 보면 도시가스보일러가 5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석유보일러로 15.8%, 지역난방이 10.6%로 조사되었다\*. 2005년에 비하여 도시가스보일러와 지역난방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석유보일러의 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

행정구역별 난방시설 가구분포를 보면 읍부와 면부의 지역난방 비중이 동부에 비하여 크게 낮아 지역난방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면부의 경우 기름(석유)보일러의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2010년 54.8%로 가장 높아 도시에 비해 난방비용 부담이 큰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처의 종류에 따라 난방시설 분포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인 기름(석유)보일러의 비중이 35.3%로 높은 반면 아파트는 1.1%에 그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난방비용 부담이 큰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총조사(2014)에 따르면, 난방연료별 가구 분포를 보면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이 6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석유로 22.1%로 조사되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0	5년

## Checkpoint

에너지총조사(2014)에 따르면 가스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이 63.2%로 가장 높았지만 2010년에 비해 0.2%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석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22.9%로 하락하였는데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2013년에도 22.1%로 조사되었다. 2013년 열에너지 사용 가구의 비중은 2010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 난방설비에서 중앙난방은 대형보일러를 통해 공동주택의 개별 가정으로 공급하는 난방방식이고, 지역난방은 특정한 지역에 열에너지를 난방용으로 공급한다. 개별난방은 각 가구에서 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도시가스, 석유, 연탄 등으로 구분된다.

표 8-4 거처의 종류 및 난방시설별 가구 (2010)

(단위: 천 가구, %)

구분	난방 시설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소계	도시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계	17,342	820	1,835	14,687	10,321	2,748	550	705	197	16	39	112
	[100.0]	[4.7]	[10.6]	[84.7]	[59.5]	[15.8]	[3.2]	[4.1]	[1.1]	[0.1]	[0.2]	[0.6]
주택	16,998	793	1,772	14,433	10,134	2,723	543	681	193	15	38	106
	[100.0]	[4.7]	[10.4]	[84.9]	[59.6]	[16.0]	[3.2]	[4.0]	[1.1]	[0.1]	[0.2]	[0.6]
단독주택	6,867	0	0	6,867	3,352	2,423	124	630	186	15	38	100
	[100.0]	0.0	0.0	[100.0]	[48.8]	[35.3]	[1.8]	[9.2]	[2.7]	[0.2]	[0.6]	[1.5]
아파트	8,170	793	1,751	5,626	5,184	87	346	7	2	0	0	0
	[100.0]	[9.7]	[21.4]	[68.9]	[63.4]	[1.1]	[4.2]	[0.1]	0.0	0.0	0.0	0.0
연립주택	500	0	17	482	375	73	30	3	1	0	0	0
	[100.0]	0.0	[3.5]	[96.5]	[75.1]	[14.7]	[6.0]	[0.6]	[0.2]	0.0	0.0	0.0
다세대주택	1,227	0	4	1,223	1,120	62	34	7	0	0	0	0
	[100.0]	0.0	[0.3]	[99.7]	[91.3]	[5.1]	[2.8]	[0.6]	0.0	0.0	0.0	0.0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34	0	0	234	103	78	9	34	3	0	0	6
	[100.0]	0.0	0.0	[100.0]	[44.1]	[33.2]	[3.8]	[14.7]	[1.5]	[0.1]	[0.1]	[2.6]
주택 이외의 거처	344	27	63	254	186	25	7	24	4	0	1	6
	[100.0]	[7.9]	[18.2]	[73.9]	[54.3]	[7.2]	[1.9]	[7.0]	[1.2]	[0.1]	[0.3]	[1.9]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거처 종류의 난방시설 구성비를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표 8-5 연도별·지역별 거처의 종류 및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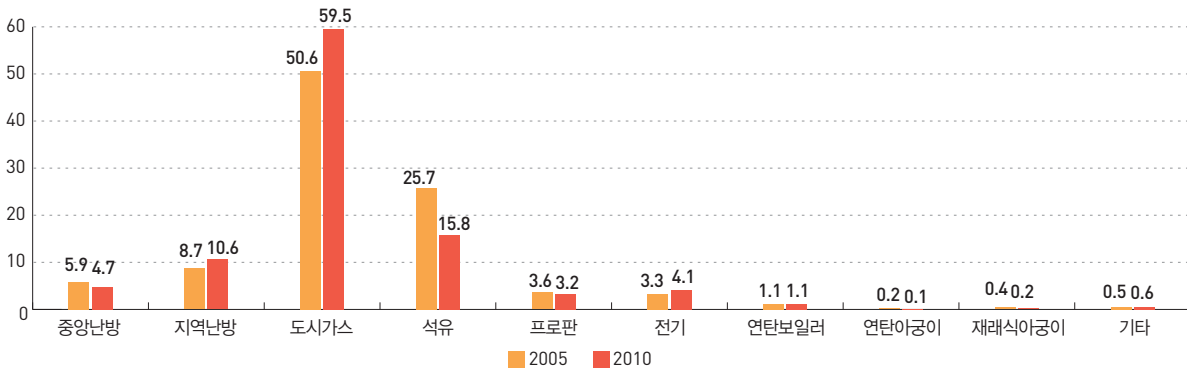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난방 시설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소계	도시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전국	2005	100.0	5.9	8.7	85.5	50.6	25.7	3.6	3.3	1.1	0.2	0.4	0.5
	2010	100.0	4.7	10.6	84.7	59.5	15.8	3.2	4.1	1.1	0.1	0.2	0.6
동부	2005	100.0	7.1	10.4	82.5	59.4	17.9	2.4	1.8	0.5	0.1	0.0	0.3
	2010	100.0	5.7	12.4	81.9	67.8	9.3	1.9	2.1	0.5	0.0	0.0	0.2
읍부	2005	100.0	2.0	1.8	96.3	27.9	44.8	13.0	5.9	2.8	0.4	0.7	0.7
	2010	100.0	0.9	4.1	95.0	41.3	30.4	11.4	7.8	2.6	0.2	0.3	1.1
면부	2005	100.0	0.5	1.3	98.2	5.6	66.4	5.3	11.8	4.2	0.7	2.7	1.7
	2010	100.0	0.3	2.0	97.7	10.2	54.8	6.0	16.3	4.8	0.4	1.7	3.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8-2 연도별·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8-6 난방연료별 표본가구 분포

(단위: %)

구분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연탄	80.5	81.9	72.5	29.0	3.1	1.5	0.8	1.4	1.5	2.1	2.6
석유	4.7	4.2	19.7	53.2	62.6	53.9	41.4	31.2	22.9	22.3	22.1
가스	-	0.1	2.6	14.8	31.6	38.1	50.1	55.3	62.3	63.0	63.2
열	-	-	-	-	2.1	5.9	5.3	8.9	8.6	9.5	9.8
기타	14.8	13.8	5.2	3.0	0.6	0.6	2.4	3.2	4.7	4.7	2.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 도시가스 보급률

Penetration Rate of City Gas

## 지표 정의

총 가구에서 도시가스를 난방용 또는 취사용으로 공급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해당 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함으로써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 측정산식

$$\frac{\text{도시가스 수용 가구 수}}{\text{총 가구 수}} \times 100$$

도시가스는 1980년대 후반 도입된 이후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40%이었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0년에 55.6%로 상승하였고 2005년에는 65.6%를 기록하였다. 빠르게 증가하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0년대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도시가스 보급률은 80.8%로 전년보다 1.4% 포인트 상승하였다.

도시가스는 네트워크 에너지의 하나로 가스배관망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도시가스는 주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된다.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000년 82.4%에서 2011년 92.3%로 90%를 처음으로 초과하였고, 2015년에는 96.6%까지 상승하였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의 보급률이 85.4%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광역시는 모두 9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로는 경기도의 보급률이 가장 높아 2015년에 86.3%를 기록하였다. 반면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0~50%대에 그쳤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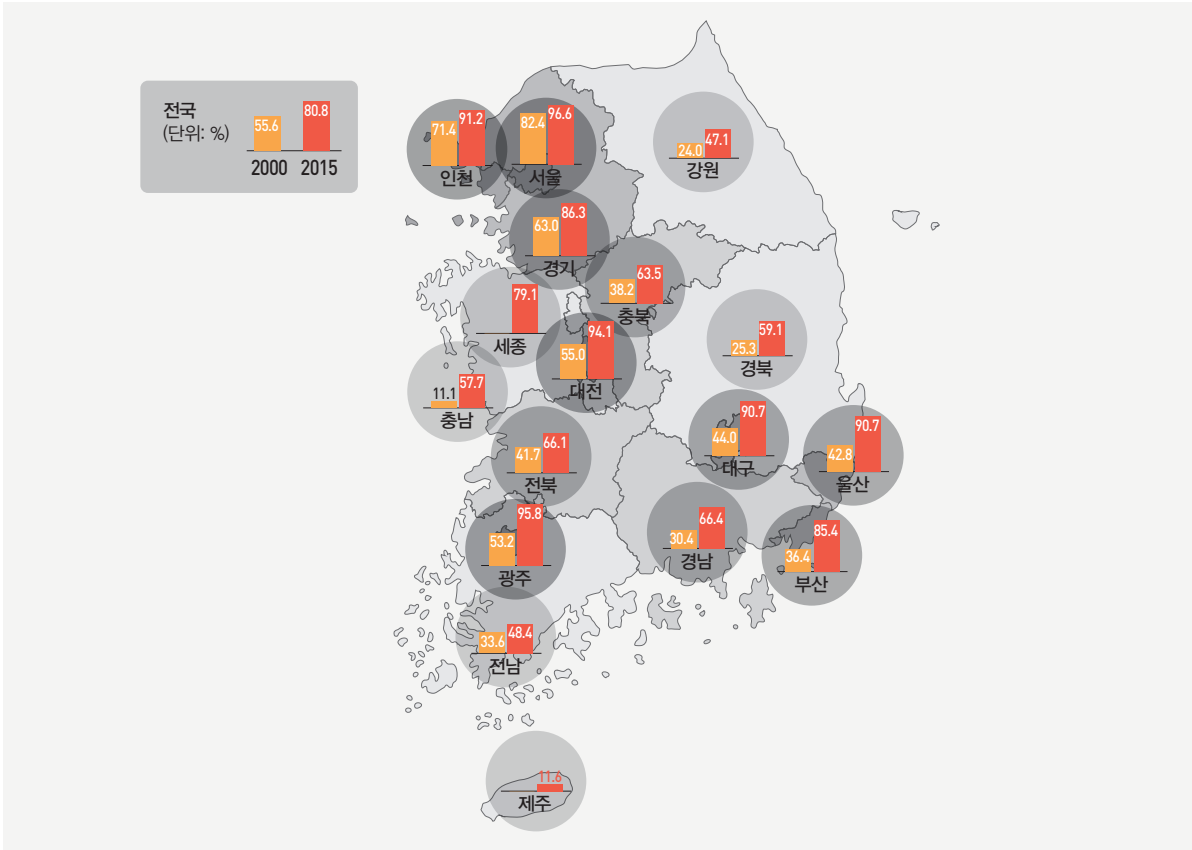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편람	1987	2015	1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1982	2015	1년

## Checkpoint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0년대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5년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0.8%로 2014년에 비하여 1.4%p 증가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았던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도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률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빠른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8-3 연도별 ·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단위: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표 8-7 연도별 ·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2001~2015)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59.2	62.6	64.1	65.5	65.6	67.1	68.3	69.8	71.2	72.2	75.0	75.8	78.6	79.4	80.8
서울	85.3	87.2	88.9	89.4	88.7	87.4	86.9	86.8	87.5	89.6	92.3	92.0	95.4	95.6	96.6
부산	39.2	41.8	45.7	49.6	53.1	56.6	61.2	65.6	68.6	69.4	72.6	74.8	79.8	82.9	85.4
대구	47.7	53.4	53.6	57.6	59.9	66.5	65.9	70.1	73.1	74.9	77.8	80.1	84.6	87.5	90.7
인천	76.4	81.6	83.3	85.4	85.9	85.3	85.8	86.8	88.0	88.9	91.5	91.0	89.6	90.4	91.2
광주	56.2	59.1	61.3	63.4	66.4	69.4	73.4	80.6	84.8	87.6	91.2	92.4	96.6	99.7	95.8
대전	60.0	64.0	66.4	67.8	68.8	76.4	79.8	83.4	85.9	87.3	90.7	91.0	92.8	93.4	94.1
울산	47.2	51.8	55.8	61.2	66.7	69.1	70.3	75.7	79.0	80.9	83.8	85.7	87.8	89.2	90.7
세종	-	-	-	-	-	-	-	-	-	-	-	-	52.5	72.2	79.1
경기	68.1	71.5	72.6	73.9	75.1	75.2	75.0	76.4	77.5	79.1	81.2	82.1	85.7	85.5	86.3
강원	25.9	29.4	31.0	33.1	35.0	37.2	39.2	39.2	42.6	39.5	48.0	49.4	49.7	46.2	47.1
충북	44.2	48.4	39.5	41.0	42.2	46.6	50.4	45.5	48.8	51.1	53.4	55.0	59.1	61.8	63.5
충남	14.1	16.6	20.2	21.9	24.9	29.0	32.0	35.8	39.1	41.7	45.3	48.4	52.2	54.8	57.7
전북	44.8	48.8	51.8	46.5	49.6	52.8	56.2	59.7	53.9	54.1	58.1	58.4	62.1	64.3	66.1
전남	35.2	37.8	39.9	41.0	37.3	39.3	40.5	42.9	45.8	48.7	50.2	46.6	45.1	47.0	48.4
경북	27.6	31.0	37.1	41.2	42.7	45.9	50.7	51.4	51.7	46.8	48.9	49.6	53.8	56.1	59.1
경남	13.2	17.8	42.7	44.1	44.8	46.8	48.2	51.8	54.5	56.3	58.4	57.1	61.8	63.7	66.4
제주	-	-	-	-	-	-	-	-	-	-	-	6.2	9.3	10.1	11.6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 연탄사용 가구 현황

Number of households using briquette

## 지표 정의

연탄을 난방 또는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의 수를 의미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난방설비는 연탄보일러와 연탄아궁이로 구분된다.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구입비용 급등으로 인해 사용에 불편하나 저렴한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하는 가구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측정산식

- 점유율은  $\frac{\text{연탄사용 가구 수}}{\text{총 가구 수}} \times 100$
- 에너지통계연보의 석탄통계에 기초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연탄은 가정부문의 가장 중요한 난방용 에너지원이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석유와 도시가스가 연탄을 대체하기 시작하였고 연탄사용 가구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연탄사용 가구는 7,957천 가구로 통계청 추계 가구 기준으로 71.2%를 점유하였으나 1990년에는 63.3%로 크게 낮아졌고 1992년에도 연탄사용 가구의 비율은 52.4%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보편적인 에너지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연탄사용 가구는 1993년부터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3년 연탄사용 가구는 3,997천 가구로 전년보다 2백만 가구 이상 감소하였고, 1996년에는 832천 가구로 100만 가구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후에도 연탄사용 가구의 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2003년에는 157천 가구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연탄사용 가구의 수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는데 유가 급등에 따른 대체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등유가격이 2003년 리터당 638.8원에서 2008년 1,238.7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석유에서 연탄으로 연료를 대체하는 가구가 증가하여 연탄사용 가구의 수는 200천 가구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후 정부가 연탄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연탄사용 가구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97천 가구까지 감소하였다. 2014년 추계 가구 기준으로 연탄사용 가구의 비율은 0.5%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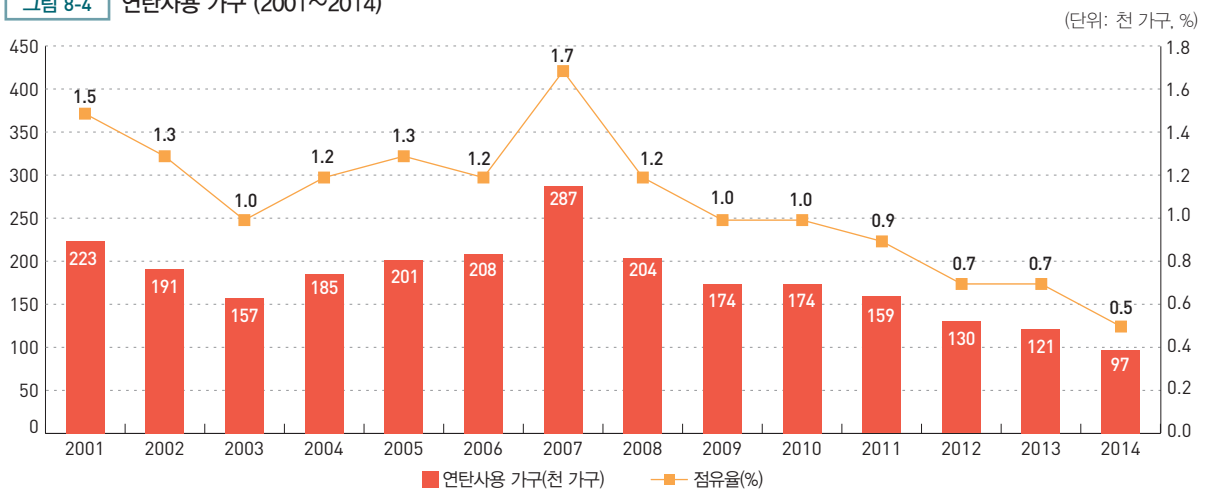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통계	-	2015	1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1982	2015	1년

## Checkpoint

연탄사용 가구는 2004년 유가가 급등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연탄 수요 증가로 수급 차질과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연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2007년 연탄가격 현실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연탄사용 가구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연탄사용 가구는 2013년보다 2만 4천 가구 감소한 9만 1천 가구로 추정된다.

그림 8-4 연탄사용 가구 (2001~2014)



주 : 연탄사용 가구는 시·도에서 작성한 자료를 취합한 것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Fuel costs by income decile

## 지표 정의

연료비는 일반가구에서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소득분위별 연료비는 각 소득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을 의미하며,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 측정산식

-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 현황에 기초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연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가구당 월평균 연료비는 2013년에 120,24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12,582원, 2015년에는 106,204원으로 감소하였다.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1/4분기에 가장 많고 3/4분기가 가장 적다. 연료비 지출이 겨울철에 증가하는 계절성을 갖는 것은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서 난방용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연료비 지출의 계절성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구의 연료비 지출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 지출은 131,005원으로 소득이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 지출 79,118원에 비해 1.7배 많았다. 그러나 2015년 가구의 경상소득은 10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에 비하여 9.3배나 많아 연료비보다 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연료비 지출 차이가 소득 차이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은 에너지가 필수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5	분기,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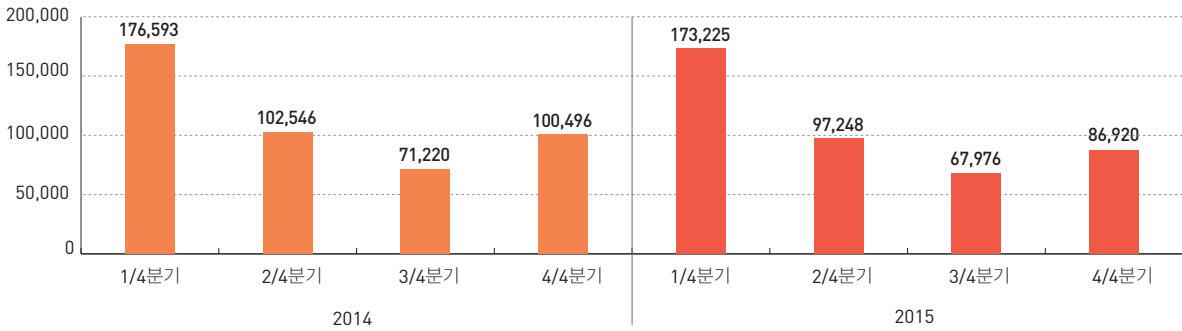
2000년 중반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가구당 연료비 지출은 2014년에 감소한데 이어 2015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에너지 소비와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데 2014년은 기온의 영향으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데다 에너지 가격 또한 하락하여 연료비 지출이 2013년보다 6.4% 감소하였다. 2015년은 에너지 소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가구당 연료비 지출이 2014년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그림 8-5 분기별 월평균 연료비 (2014~2015)

(단위: 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표 8-8 소득분위별 월평균 연료비 (200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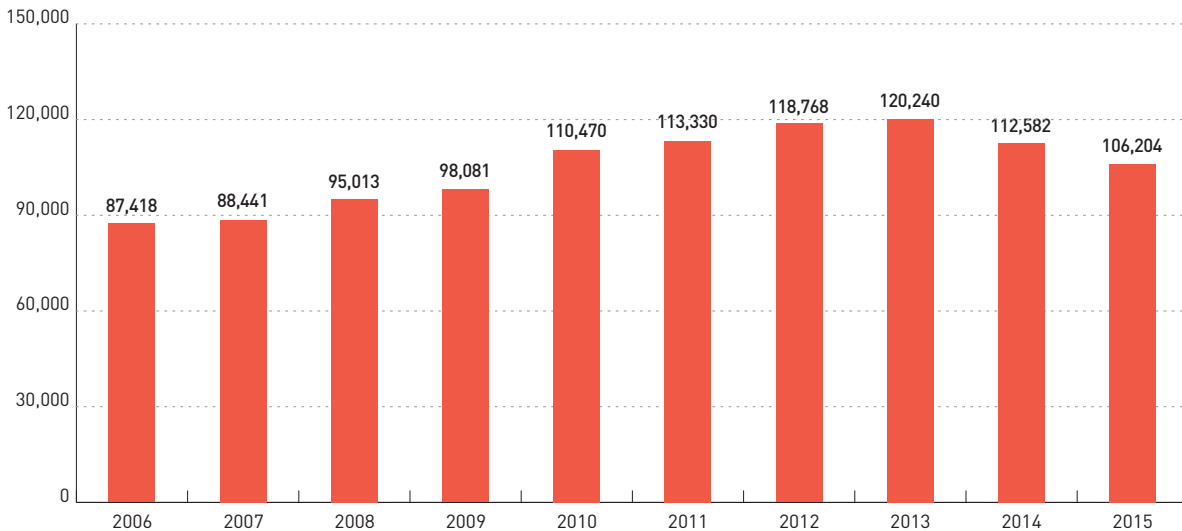
(단위: 원)

소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분위	59,613	62,390	69,277	70,644	81,033	83,963	89,008	90,015	85,518	79,118
2분위	71,952	73,434	81,080	81,348	92,323	96,323	103,664	102,945	94,108	90,027
3분위	77,044	77,567	87,490	89,698	98,616	99,875	109,744	110,551	104,843	97,760
4분위	82,479	82,435	89,300	92,772	103,318	109,622	111,547	116,932	109,868	102,889
5분위	85,408	86,559	94,024	97,095	107,205	115,387	119,792	117,598	111,726	103,142
6분위	90,041	93,821	96,737	103,375	113,422	116,385	120,975	121,663	116,585	110,431
7분위	93,227	93,355	98,657	104,920	118,577	119,137	122,078	126,031	115,188	109,686
8분위	97,280	97,833	104,274	105,705	121,818	123,008	129,232	132,170	120,989	116,011
9분위	101,956	103,028	109,497	109,607	129,468	126,805	135,425	135,093	128,646	121,889
10분위	115,115	113,933	119,744	125,596	138,863	142,750	146,162	149,350	138,323	131,005
전체 평균	87,418	88,441	95,013	98,081	110,470	113,330	118,768	120,240	112,582	106,20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그림 8-6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 (2006~2015)

(단위: 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Fuel cost as percentage of income, by income decile

## 지표 정의

연료비/소득 비율은 소득에서 연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은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 연료비/소득 비율을 의미하며, 가구의 에너지 비용부담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 측정산식

$$\frac{\text{월평균 연료비}}{\text{월평균 경상소득}} \times 100$$

2000년대 들어 전체 가구의 연료비/소득 비율은 3.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료비가 증가하였지만 소득 역시 연료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전체 가구의 평균 연료비/소득 비율이 2.7%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하락한데 이어 2015년에는 2.5%로 더욱 낮아졌다.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연료비 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연료비/소득 비율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10분위 가구는 1%대에 불과한 반면, 1분위 가구의 경우는 2013년까지 10%를 초과하여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분위 가구의 연료비/소득 비율은 2014년 9.4%, 2015년에는 7.9%까지 하락하였다. 연료비 지출이 감소한데다 소득이 10.3%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많은 1분기에는 2014년 17.0%, 2015년 14.8%로 여전히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주 연령별 연료비/소득 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에서 가장 높았고 가구원 수별 연료비/소득 비율은 1인가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9 분기별 연료비/소득 비율 (2014~2015)

(단위: %)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분위	17.0	9.5	6.2	9.3	14.8	7.5	5.2	7.2
10분위	2.2	1.4	0.9	1.3	2.1	1.3	0.9	1.1
전체 평균	4.2	2.5	1.7	2.4	4.0	2.4	1.6	2.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5	분기, 1년

## Checkpoint

전체가구 연료비/소득 비율은 2000년대 들어 3.0% 내외의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소득가구의 연료비/소득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특히 소득1분위 가구의 연료비/소득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 비율은 2014년 전년보다 1.3% 포인트 작은 9.4%로 낮아졌고 2015년에는 7.9%로 더욱 크게 하락하였다. 저소득가구에서 소비 비중이 높은 석유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연료비가 전년보다 7.5%나 감소한 반면 소득은 10.3%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표 8-10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 (200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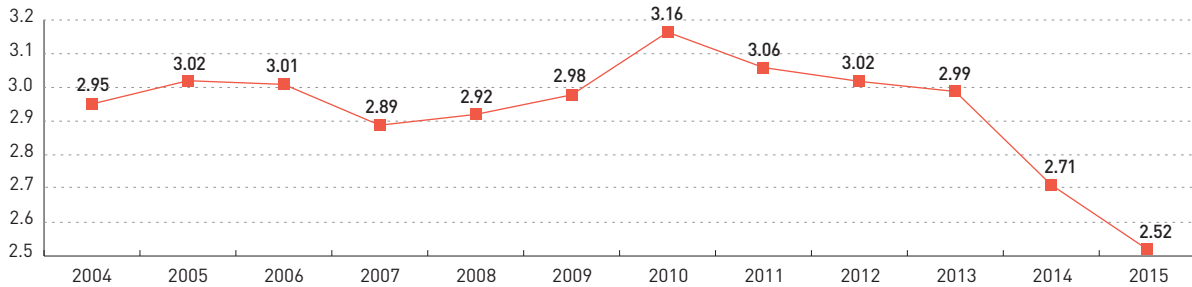
(단위: %)

소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분위	9.4	9.6	10.3	10.5	10.9	11.0	10.8	10.7	9.4	7.9
2분위	5.7	5.6	5.9	5.8	6.2	6.0	6.0	5.8	5.1	4.7
3분위	4.6	4.4	4.7	4.7	4.8	4.5	4.6	4.5	4.2	3.8
4분위	4.0	3.8	3.9	3.9	4.0	4.0	3.9	3.9	3.6	3.3
5분위	3.5	3.4	3.5	3.5	3.6	3.6	3.6	3.4	3.1	2.8
6분위	3.2	3.2	3.1	3.2	3.3	3.2	3.1	3.1	2.9	2.7
7분위	2.9	2.7	2.7	2.8	3.0	2.9	2.8	2.8	2.5	2.3
8분위	2.5	2.5	2.5	2.5	2.7	2.6	2.5	2.5	2.3	2.1
9분위	2.3	2.1	2.1	2.1	2.4	2.2	2.2	2.2	2.0	1.9
10분위	1.8	1.6	1.6	1.7	1.8	1.7	1.7	1.7	1.5	1.4
전체 평균	3.0	2.9	2.9	3.0	3.2	3.1	3.0	3.0	2.7	2.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그림 8-7 연료비/소득 비율 (2004~2015)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표 8-11 가구주 연령별 연료비/소득 비율 (2006~2015)

(단위: %)

소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9세 이하	2.8	2.6	2.6	2.7	2.9	2.9	2.9	2.7	2.5	2.3
40~49세	2.9	2.8	2.8	2.8	3.0	2.9	2.9	2.8	2.5	2.3
50~59세	2.9	2.7	2.8	2.9	3.1	2.9	2.8	2.8	2.5	2.3
60세 이상	4.3	4.1	4.3	4.4	4.4	4.3	4.2	4.4	4.0	3.6
전체 평균	3.0	2.9	2.9	3.0	3.2	3.1	3.0	3.0	2.7	2.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표 8-12 가구원 수별 연료비/소득 비율 (2006~2015)

(단위: %)

소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	3.6	3.4	3.6	3.8	4.1	4.3	4.3	4.4	4.0	3.5
2인	3.4	3.3	3.5	3.6	3.7	3.6	3.6	3.5	3.2	3.0
3인	2.9	2.8	2.9	2.9	3.1	3.0	2.9	2.9	2.6	2.4
4인	2.8	2.7	2.7	2.8	3.0	2.8	2.8	2.7	2.5	2.3
5인 이상	3.2	3.0	2.9	2.9	3.1	3.1	3.1	3.1	2.8	2.6
전체 평균	3.1	2.9	3.0	3.1	3.3	3.2	3.1	3.1	2.8	2.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Energy Consumption per household

## 지표 정의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은 산업, 수송, 가정, 상업 및 공공기타 등으로 분류되며, 가정부문은 가정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취사 및 난방용(온수용 포함) 에너지 소비를 의미한다.

가구당 에너지 소비는 가구의 평균 에너지 소비수준을 통해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 측정산식

·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된다.

2013년 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는 1,275 TOE로 2010년(1,270 TOE)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TOE는 석유환산톤이라고 하며 1TOE는  $10^7$ kcal이다. 가구당 에너지 비용은 2010년보다 증가하였는데 석유, 도시가스, 전력 등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소득구간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0.859 TOE, 100~200만 원 소득구간에 속한 가구는 1.088 TOE로 조사되는 등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당 에너지 소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의 차이에 비하여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가 크지 않아 에너지가 필수재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구간별로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를 보면 모든 소득구간에서 도시가스를 포함하는 가스류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격이 가장 빠르게 상승한 석유류의 소비 비중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에너지 비용부담은 500~600만 원 가구에 비해 4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총조사	1981	2013	3년

### Checkpoint

2013년 전체 가구의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고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저소득가구의 소비 비중이 높은 등유의 가격이 27.0%나 상승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에너지통계연보의 가정부문 총에너지 소비와 통계청의 추계 가구 수를 이용하여 가구당 에너지 소비를 추정해 보면 2014년 가구당 에너지 소비는 2013년에 비해 6.9% 감소하였고 2015년은 2014년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에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기온의 영향으로 냉방 및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표 8-13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0)

(단위: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600만 원	600만 원 이상
에너지 비용(천 원)	966	1,166	1,342	1,475	1,540	1,484	1,670
비용지수(100만 원 미만=100)	100	60	42	33	27	21	15
에너지 소비량(천kcal)	10,046	11,854	13,252	14,215	14,932	14,563	15,8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5.0	2.8	1.0	0.8	0.2	0.2	-
석유류	20.1	13.8	10.0	6.7	4.9	3.4	0.7
가스류	48.5	55.5	58.5	58.1	57.3	54.2	55.5
전 력	22.8	24.1	24.1	24.9	24.6	24.6	25.5
열	3.5	3.9	6.4	9.4	13.0	17.6	18.4

주: 1. 가스류에는 도시가스외 LPG 포함됨.

2. 비용지수는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소득 1만 원당 에너지 소비지출 비용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1

표 8-14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3)

(단위: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600만 원	600만 원 이상
에너지 비용(천 원)	1,045	1,298	1,500	1,743	1,922	1,991	2,130
비용지수(100만 원 미만=100)	100	62	43	36	31	26	18
에너지 소비량(천kcal)	8,529	10,875	12,605	15,152	16,736	17,053	16,9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8.4	3.5	1.5	0.4	0.4	0.0	0.0
석유류	20.3	12.3	8.3	3.6	1.5	1.2	1.7
가스류	36.9	52.2	57.3	62.4	61.8	59.1	53.5
전 력	29.4	26.8	25.2	22.9	22.2	22.7	24.6
열	5.0	5.1	7.8	10.6	14.1	17.0	20.2

주: 1. 가스류에는 도시가스외 LPG 포함됨.

2. 비용지수는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소득 1만 원당 에너지 소비지출 비용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4

표 8-15 가구원 수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3)

(단위: %)

구분	평균	2인 이하	3인	4인	5인	6인 이상
에너지 소비량(천 kcal)	12,745	10,364	13,430	15,255	15,223	14,3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2.0	4.5	1.1	0.5	1.2	1.1
석유류	7.5	13.4	5.7	3.8	4.9	9.7
가스류	57.1	48.6	59.5	61.7	57.9	48.9
전 력	25.1	26.6	24.7	23.6	24.4	27.0
열	8.3	6.9	8.9	10.5	11.5	13.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4

표 8-16 사용건평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3)

(단위: %)

구분	평균	10평 미만 (33㎡ 미만)	10~19평 (33~66)	20~29평 (66~99)	30~39평 (99~132)	40~49평 (132~165)	50평 이상 (165 이상)
에너지 소비량 (천 kcal)	12,745	8,351	11,411	13,201	14,847	15,217	15,6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2.0	6.0	3.8	1.2	0.0	0.3	2.6
석유류	7.5	10.6	10.7	7.8	2.7	4.4	5.2
가스류	57.1	53.9	53.2	59.4	62.7	55.8	49.4
전 력	25.1	29.5	25.8	25.0	24.1	26.7	27.2
열	8.3	-	6.5	6.6	10.5	12.8	15.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4

표 8-17 주택형태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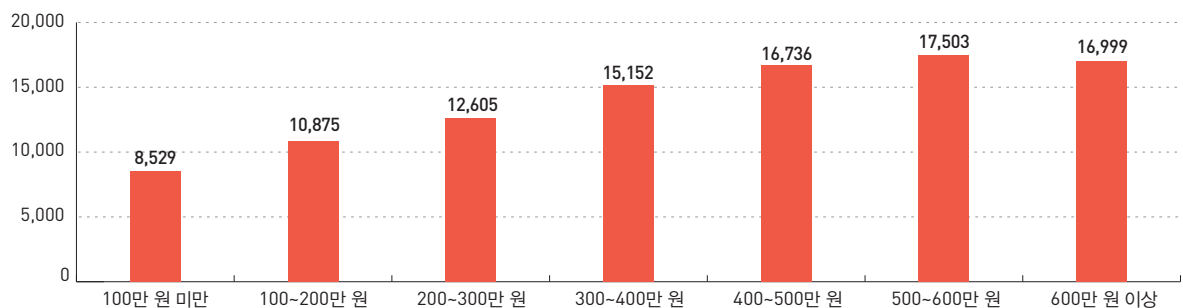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평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주택
에너지 소비량 (천 kcal)	12,745	10,348	14,271	13,712	12,836	9,5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2.0	6.7	0.2	0.2	0.3	9.8
석유류	7.5	24.0	0.7	3.5	2.5	18.7
가스류	57.1	40.1	60.0	72.5	73.0	40.4
전 력	25.1	29.2	23.4	23.8	24.2	31.1
열	8.3	-	15.7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4

그림 8-8 소득수준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2013)

(단위: 천kcal)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4

#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가구

Beneficiaries of Energy Assistance Program

## 지표 정의

정부와 에너지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의 지원 가구 수를 의미한다.

에너지복지사업 지원대상은 사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가구와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측정산식

-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수

현재 저소득가구를 포함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은 크게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및 보급사업, 요금할인, 연료비지원으로 구분된다. 효율 개선사업에서는 창호·단열 및 고효율기기 보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요금할인은 전력과 도시가스과 같은 네트워크 에너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노후 주택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여 에너지 구입비용을 경감시켜주는데, 2015년에는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요금할인 프로그램은 매년 3백만 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액도 3천억 원 이상으로 에너지지원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연료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가구에는 가구당 16.9만 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석유난방을 하는 저소득가구에게는 난방용 등유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신규로 도입되었다.

복지사업이 맞춤형 지원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에너지복지 분야(요금할인)에서도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되었고 지원내용도 차별화하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현황(내부자료)	-	2015	1년

### Checkpoint

2015년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영유아, 노인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신규로 시행되었다(단,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와 광해관리공단 연탄쿠폰 수급자는 제외).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은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4개월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81천 원~114천 원)된다.

표 8-18 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 (2011~2015)

(단위: 억 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담기관
효율 개선 및 보급사업	전력효율향상 (고효율조명보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116 (25,625)	146 (36,674)	246 (46,269)	356 (76,800)	260 (34,780)	전력기금 (지자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 주택 창호·단열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가구당 150만 원한도)	195 (21,428)	296 (29,628)	411 (36,508)	671 (40,000)	613 (40,707)	에특회계 (에너지재단)
	국민임대아파트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정부 80%)	94 (20,528)	117 (34,867)	53 (19,321)	4 (2,439)	7 (4,855)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공단)
	복지시설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부 80%)	99 (186)	111 (170)	43 (111)	39 (219)	22 (94)	전력기금 (지자체)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24시간 응급조치, 전기 재해 취약설비 무상 수리	22 (65,611)	24 (68,383)	25 (70,313)	25 (74,274)	25 (72,260)	전력기금 (전기안전 공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상 교체	159 (85,069)	148 (91,343)	132 (79,523)	132 (72,620)	140 (74,315)	에특회계 (가스안전 공사)
가격할인 사업	전기요금 할인	수급자/장애인/상이자/유공자(8천 원/월), 차상위(2천 원/월), 복지시설(주택 21.6%)	2,720 (2,212,657)	2,129 (2,253,331)	2,525 (2,274,847)	2,617 (2,286,220)	2,709 (2,297,593)	민간자금 (한전)
	가스요금 할인	5~15% 할인 (14천 원/월)	484 (606,305)	521 (643,445)	684 (767,640)	936 (865,167)	997 (926,122)	민간자금 (가스공사)
	열요금 감면	기본요금 전액 감면 (10천 원/월)	42 (133,353)	48 (137,902)	48 (148,212)	56 (157,626)	59 (159,941)	민간자금 (지역난방 공사)
연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난방 연료지원	난방용 등유 200L 상당 (가구당 310천 원 지원)	-	81 (18,000)	81 (18,000)	60 (18,000)	38 (12,500)	복권기금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연탄보조	연탄쿠폰 (가구당 169천 원)	151 (89,172)	141 (83,288)	141 (83,277)	141 (83,300)	132 (77,413)	에특회계 (광해관리 공단)
	에너지바우처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 구입가능한 전자바우처	-	-	-	-	452 (494,627)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총계			4,082 (3,259,934)	3,762 (3,397,031)	4,389 (3,544,021)	5,037 (3,676,665)	5,454 (4,195,207)	

주: 괄호 안은 지원 가구의 수를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2015년 전기요금 할인 실적은 한전 홈페이지

# 9

## 환경

- 01 상수도 보급률
- 02 하수도 보급률
- 0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04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 05 주요 대도시 소음도
- 06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 07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 08 환경성질환자 수

통 계 로 보 는 사 회 보 장

# 2016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환경의 질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하수도 설치율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주요 대도시 소음도	
환경관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GPD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환경예산 비율
환경 보건	환경성질환자 수	

# 상수도 보급률

Water Supply Rate

## 지표 정의

상수도 보급률은 수도물의 보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 인구 중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특정지역의 생활환경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며, 지역 간 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급수 인구}}{\text{총 인구}} \times 100$$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전국적인 상수도 보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 72.9%이던 상수도보급률은 2004년 90%를 넘어섰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인구의 96.1%가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수도물을 공급받기도 하는데, 이를 포함하면 2014년 말 기준으로 98.6%가 급수를 통해 수자원을 이용한다.

상수도보급률은 OECD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나, 상수도보급률의 도-농간 격차가 심각한 편이다. 2014년 말 현재 특별시·광역시지역은 99.7%, 시지역은 99.1%의 상수도보급률을 보이는데 비하여, 읍지역은 93.7%, 면지역은 69.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 주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이 낮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을 확보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급수 보급률은 2014년 말 읍지역 96.9%, 면지역 91.5% 수준을 보인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상수도통계	1975	2014	1년

### Checkpoint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4년 말 상수도 보급률은 96.1%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집중된 결과 읍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전년대비 0.8%p 높아졌고,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7%p 높아졌다. 그러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여전히 69.1%, 급수 보급률은 91.5%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표 9-1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 (2000~2014)

(단위: %)

	지역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 상수도 보급률 (%) <sup>1)</sup>	전국	87.1	87.8	88.7	89.4	90.1	90.7	91.3	92.1	92.7	93.5	94.1	94.6	95.1	95.7	96.1
	특·광역시	98.2	98.4	98.5	98.7	98.8	98.9	99.1	99.1	99.3	99.4	99.5	99.6	99.6	99.6	99.7
	일반 시지역	96.0	96.5	97.0	97.0	97.3	97.5	97.5	97.6	98.3	98.6	98.7	98.8	98.9	99.1	99.1
	읍지역	75.9	77.4	80.1	80.8	82.5	82.6	84.3	86.2	87.4	88.8	89.8	90.9	91.8	92.9	93.7
	면지역	27.9	29.0	31.1	33.0	35.2	37.7	41.1	45.2	47.4	51.0	55.9	58.8	62.6	66.4	69.1
	전국 <sup>3)</sup>				94.6	95.1	95.4	95.9	96.4	96.8	97.4	97.7	97.9	98.1	98.5	98.6
급수 보급률 (%) <sup>2)</sup>	특·광역시							99.1	99.3	99.5	99.5	99.9	99.9	99.9	99.9	99.9
	일반 시지역							97.6	97.8	98.4	98.7	99.0	99.1	99.1	99.3	99.3
	읍지역							86.0	87.8	89.3	90.7	94.7	94.9	95.5	96.4	96.9
	면지역							48.4	53.9	58.1	61.6	85.4	86.7	88.2	90.2	91.5

주: 1) 수도사업자에 의한 급수 인구계를 바탕으로 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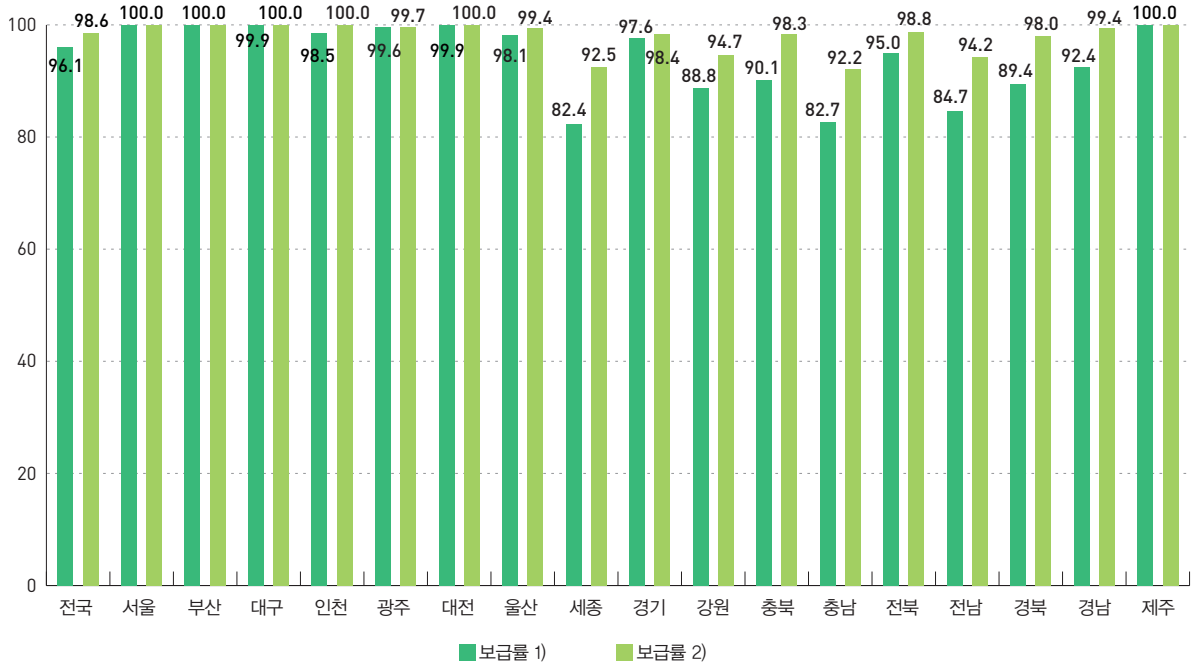
2) 2010년 이전에는 마을상수도도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하며, 2010년 이후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수치임.

3) 2003년 이후 전국 수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상수도 보급현황, 각 연도

그림 9-1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2014)

(단위: %)



주: 보급률 1)은 수도사업자에 의한 급수 인구를 이용한 보급률이며, 보급률 2)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보급률이다.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 각 연도

# 하수도 보급률

Total Public Sewerage(% of resident population connected to wastewater collecting system)

## 지표 정의

하수도 보급률은 총 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500m<sup>3</sup> 이하 포함)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로 산정한다.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 또는 관할 행정구역 내 하수종말처리장은 없지만 타 지역에 설치된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수도 보급률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상태로 해당 지역 인구의 삶의 질을 보여주며, 수질의 보전 및 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환경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하수처리구역 내 인구}}{\text{총 인구}} \times 100$$

2014년도 하수도 보급률은 92.5%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다.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2014년 4,815만 1천 명으로 전년대비 47만 9천 명 증가했다.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는 상당하다.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97%를 상회한다. 그러나 도 지역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93.7%, 제주도 91.1% 외에 경상남도가 88.1%로 나타나는 등 90% 이하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였다. 지역 규모별 하수도 보급률을 보면, 특·광역시는 2014년 98.9%의 보급률을 보였지만, 도지역은 87.2%의 보급률을 보였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도·농 간 하수도 보급률에서 격차가 확인된다. 2014년 특·광역시의 시지역은 99.4%, 군지역은 81.7%의 보급률을, 도지역의 시지역은 90.9%, 군지역은 63.3%(읍지역 84.7%, 면지역 47.3%)의 보급률을 보였다.

국제적으로 보면 2013년 한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92.1%로, 2013년 덴마크 90.8%와 유사한 수준이다. 미국은 2008년 73.7%, 일본은 2011년 75.8%로 낮은 편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14	1년

### Checkpoint

2014년 하수도 보급률은 92.5%로 전년도에 비해 0.4%p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규모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시지역, 군지역(읍·면지역)에 따라 보급률은 차이가 여전하여 도·농간 격차가 확인된다. 다만, 특·광역시의 군지역(전년대비 1.5%p 증가), 도지역의 시(전년대비 0.3%p 증가), 군지역(전년대비 2.1%p 증가)에서 보급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 참고문헌

• OECD, Water: Wastewater treatment,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2014.10.20.

표 9-2 하수도 보급률 (200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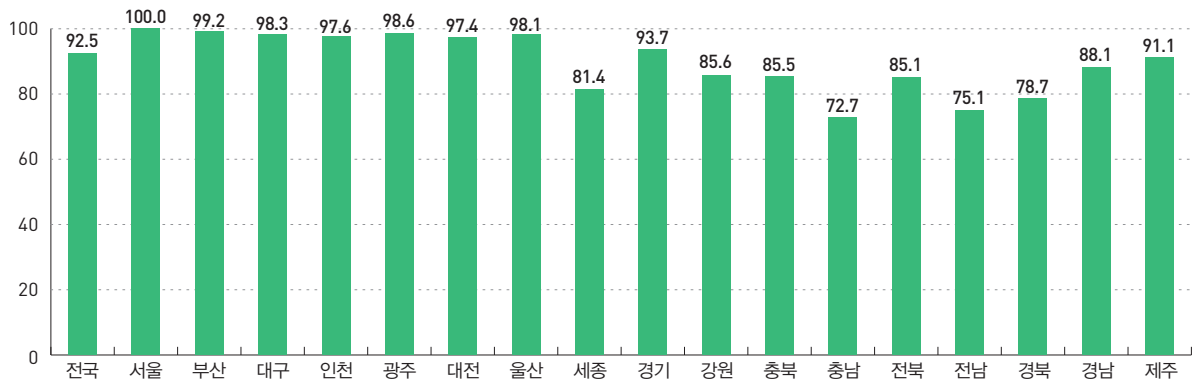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인구	47,977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49,624	50,034	50,394	50,644	51,435	51,717	51,881	52,127	52,419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33,843	35,369	36,760	38,449	39,924	41,157	42,450	43,569	44,631	45,264	46,358	47,034	47,538	48,016	48,506
공공하수처리 인구					39,680	40,910	42,175	43,286	44,343	44,972	46,060	46,710	47,202	47,672	48,151
폐수종말처리 인구					245	247	275	283	288	292	297	324	336	344	355
하수도 보급률	70.5	73.2	75.8	78.8	81.4	83.5	85.5	87.1	88.6	89.4	90.1	90.9	91.6	92.1	92.5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9-2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 (2014)

(단위: %)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2015

표 9-3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 (201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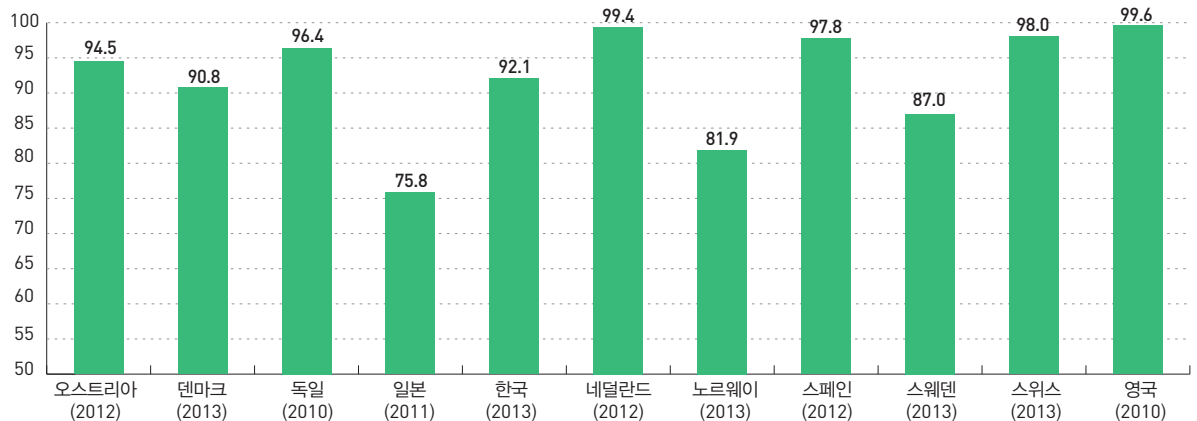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시군 전체	시 지역	군지역			시군 전체	시 지역	군지역			시군 전체	시 지역	군지역			시군 전체	시 지역	군지역		
총계	90.9	94.2	59.5	82.2	38.7	91.6	94.6	62.1	83.5	41.9	92.1	94.9	63.7	84.6	44.0	92.5	95.0	65.9	84.7	47.3
특·광역시	98.9	99.5	74.6	-	-	98.8	99.4	78.0	-	-	98.9	99.4	80.2	-	-	98.9	99.4	81.7	-	-
도지역	84.3	89.2	57.5	82.2	38.7	85.6	90	59.7	83.5	41.9	86.5	90.6	61.2	84.6	44.0	87.2	90.9	63.3	84.7	47.3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9-3 OECD 주요국의 하수도 보급률

(단위: %)



자료: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2015

#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Population Connected to Tertiary Sewerage treatment Facility

## 지표 정의

질소, 인까지 하수처리하는 방법으로 통상 '3차 처리' 또는 고도처리라고 한다. 3차 처리가 이뤄지는 지역 내 거주 인구를 이용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3차 처리 인구}}{\text{행정구역의 총 인구}} \times 100$$

3차 처리는 하천 및 호수에서의 부영양화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가져오는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하수의 고도처리는 수질관리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며, 자원재생과 더불어 해당권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82.8%를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26.9%로 낮은 편이고, 도지역에서는 전남이 64.9%, 충남이 68.7%로 낮은 편이다.

표 9-4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200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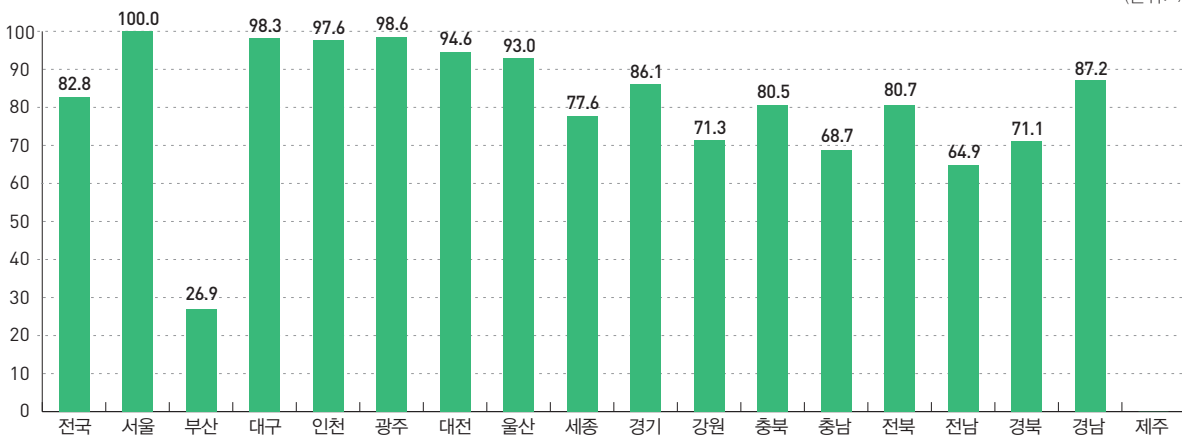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39.5	50.2	54.1	58.2	59.9	81.6	82.8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9-4 시도별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2014)

(단위: %)



주: 제주의 고도처리 인구보급률은 집계되지 않음.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2015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14	1년

# 하수도 설치율

Total Public Sewage & Sewerage Installation rate

## 지표 정의

하수도 설치율은 하수처리장이 갖춰진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하수관로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공공하수처리 인구 보급률(하수도 보급률)과 계획연장 대비 시설연장을 의미하는 하수관로 보급률을 이용하여, 하수도 설치율을 계산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공공하수처리 인구 보급률(\%)} \times \text{하수관로 보급률(\%)}}{100}$$

하수도 설치율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하수도 설치율은 72.0%로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다. 이는 하위요소인 하수관로 보급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4년 지역 규모별로 하수관로 보급률을 살펴보면 시지역 79.4%, 읍지역 76.7%, 면지역 68.7%의 하수관로 보급률을 보였다. 하수도 설치율은 서울이 100%로 나타나며, 대전이 93.3%, 대구가 87.9%로 뒤를 이었다.

표 9-5 하수도 설치율 (2004~2014)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하수도 보급률	81.4	83.5	85.5	87.1	88.6	89.4	90.1	90.9	91.6	92.1	92.5
하수관로 보급률	62.2	62.4	64.5	66.1	67.8	68.9	71.4	73.4	75.8	76.5	77.8
하수도 설치율	50.6	52.1	55.2	57.6	60.0	61.6	64.3	66.8	69.5	70.5	72.0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표 9-6 지역별 관로 보급현황 (201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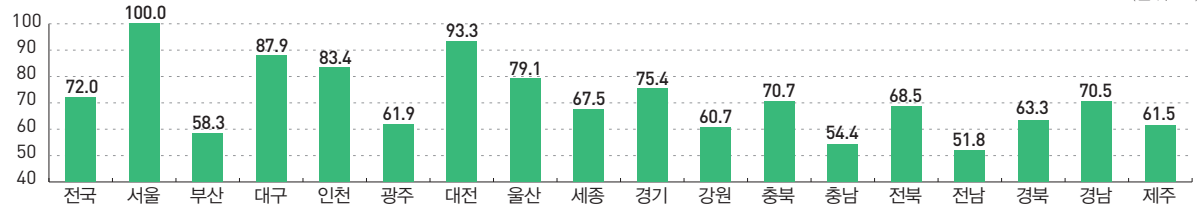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시군 전체	시 지역	군지역			시군 전체	시 지역	군지역			시군 전체	시 지역	군지역			시군 전체	시 지역	군지역		
	전체	읍	면	면	전체	읍	면	면	전체	읍	면	면	전체	읍	면	면	전체	읍	면	
총계	73.4	75.8	64.7	70.4	59.5	75.8	77.9	68.3	73.1	62.9	76.5	78.5	69.3	73.5	64.0	77.8	79.4	71.9	76.7	68.7
특·광역시	75.9	76.5	67.4	-	-	77.8	77.9	77.1	-	-	79.0	79.0	79.1	-	-	79.1	79.8	70.5	-	-
도지역	72	75.2	64	70.4	59.5	74.9	77.9	67.4	73.1	62.9	75.4	78.2	68.2	73.5	64.0	77.3	79.3	72.1	76.7	68.7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9-5 시도별 하수도 설치율 (2014)

(단위: %)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2015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14	1년

#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Per Capita Park space

## 지표 정의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도시지역 인구 대비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의 규모는 도시 환경의 쾌적한 정도를 대리하는데, 휴식과 건강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의미도 있다. 도시공원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권공원인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주제공원인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조례로 정하는 공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포함된다.

## 측정 산식

$$\frac{\text{도시 공원 조성 면적}}{\text{도시 지역 인구}}$$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인들의 휴식을 위한 도시 환경 계획이 중요해졌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에 도시에서 공원, 녹지의 확충, 관리 및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전국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21,766개소 934km<sup>2</sup>이며, 이 중 조성된 면적은 418km<sup>2</sup>이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실제 장기간 조성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2009년부터 해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2008년 1,284km<sup>2</sup>에서 2015년에는 934km<sup>2</sup>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조성이 이뤄지면서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2012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418km<sup>2</sup>로 증가하였다. 도시공원 결정 면적 대비 조성 면적을 의미하는 조성률은 2015년 44.8%에 불과하지만, 2009년 33.1%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도 2009년 8.1m<sup>2</sup>/인에서 2015년에는 8.8m<sup>2</sup>/인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세종시는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이 121m<sup>2</sup>로 가장 넓었고, 전남, 전북, 울산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신도시 조성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21km<sup>2</sup>으로 전국 도시공원의 5%에 이르지만 전체 도시지역 인구 중 세종시 인구의 비중은 0.37%에 그치고 있어 조성 면적이 넓게 나타난다. 하지만 세종시의 개발진행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조성 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세종시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154.9m<sup>2</sup>).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6	2015	1년

### Checkpoint

도시공원의 개수와 조성 면적, 그리고 녹지의 비율은 도시인의 휴식에 필요한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보여준다.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2000년대 이후 대체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8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도시공원 수는 2015년 말 21,766개로 2014년 말 21,418개에 비해 348개 증가하였고, 조성 면적은 418km<sup>2</sup>로 전년 406km<sup>2</sup>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9-7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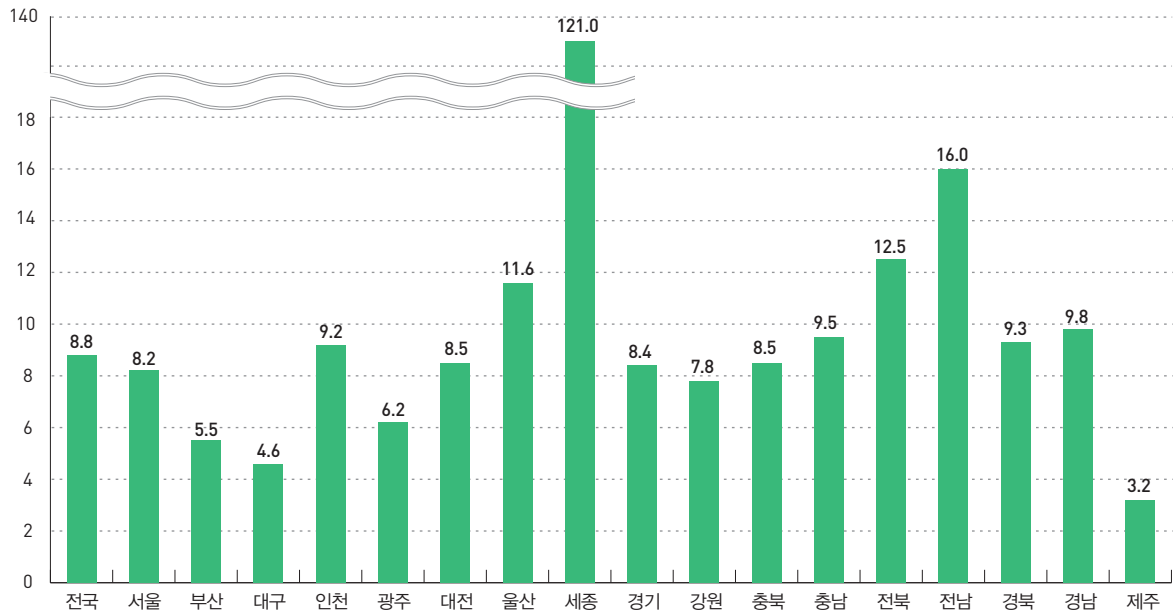
(단위: km<sup>2</sup>, m<sup>2</sup>/인)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도시공원 결정 면적	1,040	1,026	1,043	1,055	1,126	1,136	1,141	1,190	1,284	1,112	1,089	1,008	1,020	1,005	989	934
1인당 도시공원 결정 면적(m <sup>2</sup> /인)	19.8	18.6	24.1	24.1	25.7	25.8	25.8	26.7	28.6	24.6	23.7	21.8	22.0	21.5	21.0	19.8
도시공원 조성 면적	214	230	219	304	361	304	292	329	461	368	384	386	412	404	406	418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m <sup>2</sup> /인)	5.0	5.3	5.1	6.9	8.2	6.9	6.6	7.4	10.3	8.1	8.4	8.3	8.9	8.6	8.6	8.8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각 연도

그림 9-6 시도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15년 말 기준)

(단위: m<sup>2</sup>/인)



주: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도시지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15

#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Number of City Park per 10,000 city residents

## 지표 정의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를 의미하며,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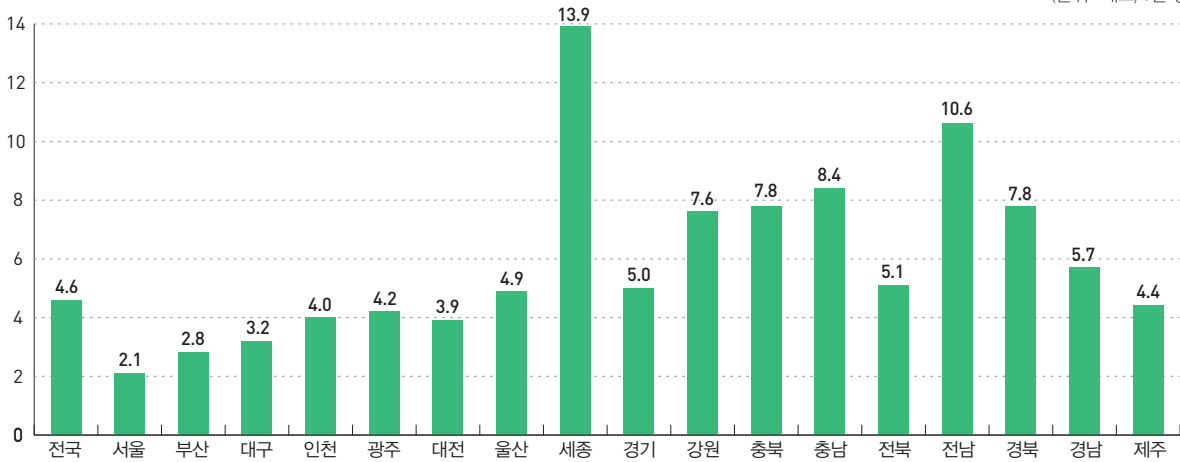
## 측정 산식

$$\frac{\text{도시공원 개소}}{\text{도시지역 인구}} \times 10,000$$

도시공원의 수는 경기도가 5,802개소로 가장 많고, 세종시가 245개로 가장 적다. 그러나 도시 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의 개소는 세종시가 13.9개로 가장 많았다. 이를 제외하면 전라남도 10.6개, 충청남도 8.4개, 충청북도 7.8개 등으로 많았다. 대도시지역일수록 전체인구 중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높아, 인구대비 공원 개소는 적은 편이다. 서울은 인구 1만 명당 2.1개, 부산은 2.8개, 대구는 3.2개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9-7 시도별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2015년 말 기준)

(단위: 개소/1만 명)



주: 1) 도시공원 수를 도시지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2) 결정현황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조성현황 기준과 차이가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15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6	2015	1년



#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Natural and Artificial Grasslands Area per Urban Area Population

## 지표 정의

도시지역 인구 1명당 녹지조성 면적을 의미한다. 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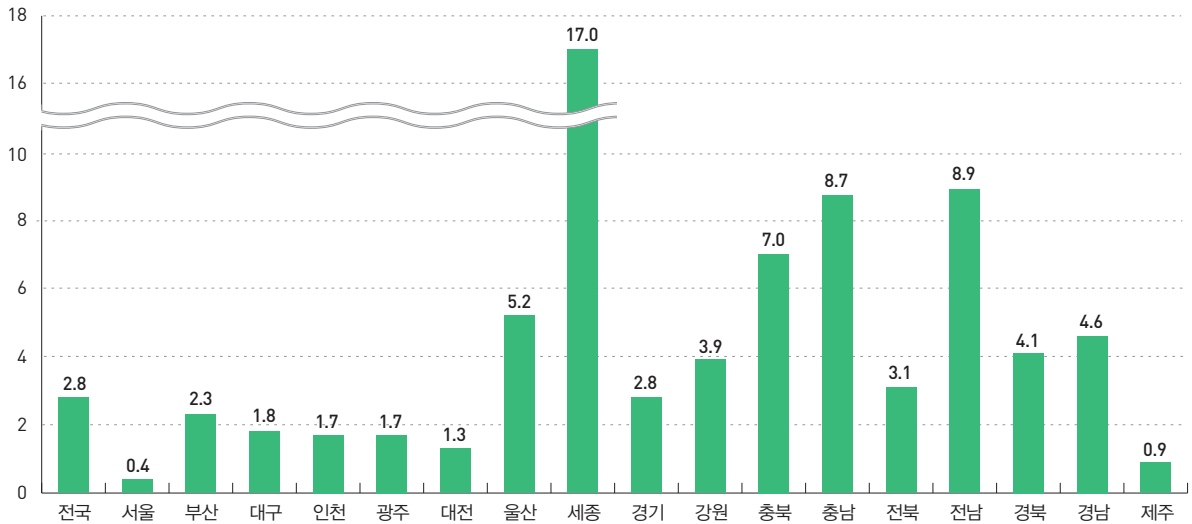
$$\frac{\text{녹지조성 면적}}{\text{도시지역 인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녹지를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한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를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가 1인당 17.0㎡로 1인당 가장 많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다. 뒤를 이어 전남, 충남, 충북이 높았으며, 서울은 0.4㎡로 1인당 가장 적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림 9-8 시도별 도시지역 1인당 녹지조성 면적 (2015년 말 기준)

(단위: ㎡/인)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15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6	2014	1년

#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Particulate Matter(PM<sub>10</sub>) in Major Cities

## 지표 정의

대기오염 정도는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황(SO<sub>2</sub>), 이산화질소(NO<sub>2</sub>), 오존(O<sub>3</sub>), 일산화탄소(CO)의 농도로 측정하는데, 미세먼지는 입경 10 $\mu$ m 이하의 미세한 먼지이며 PM-10이라 하고, 입자의 직경이 2.5 $\mu$ m 이하인 경우는 '극미세먼지'로 PM-2.5라고 부른다.

## 측정 산식

- 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1 $m^3$ 에 들어있는 미세먼지(PM-10)의 질량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연평균 50 $\mu$ g/ $m^3$ , 24시간 평균 100 $\mu$ g/ $m^3$ 을 적용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의 농도는 48 $\mu$ g/ $m^3$ 였으며,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2006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약간 증가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결부되어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꾀하고 있다.

주요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5년 각각 45, 46, 46, 53, 43, 46, 46으로 나타나서, 인천이 이들 도시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도시 기준으로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2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살펴보면 전국은 34.4%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66.7%, 충북 55.6%, 인천 53.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 전남, 제주는 10% 미만으로 측정되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1980	2015	1개월

### Checkpoint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다가, 2012년 45 $\mu$ g/ $m^3$ 에서 2013, 2014년 49 $\mu$ g/ $m^3$ 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48 $\mu$ g/ $m^3$ 을 보였다. 환경기준을 초과한 측정망 비율은 2012년 23.2%에서 2014년에는 38.8%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34.4%를 보였다.

표 9-8 항목별 대기오염도 (2000~2015)

(단위: 각각 별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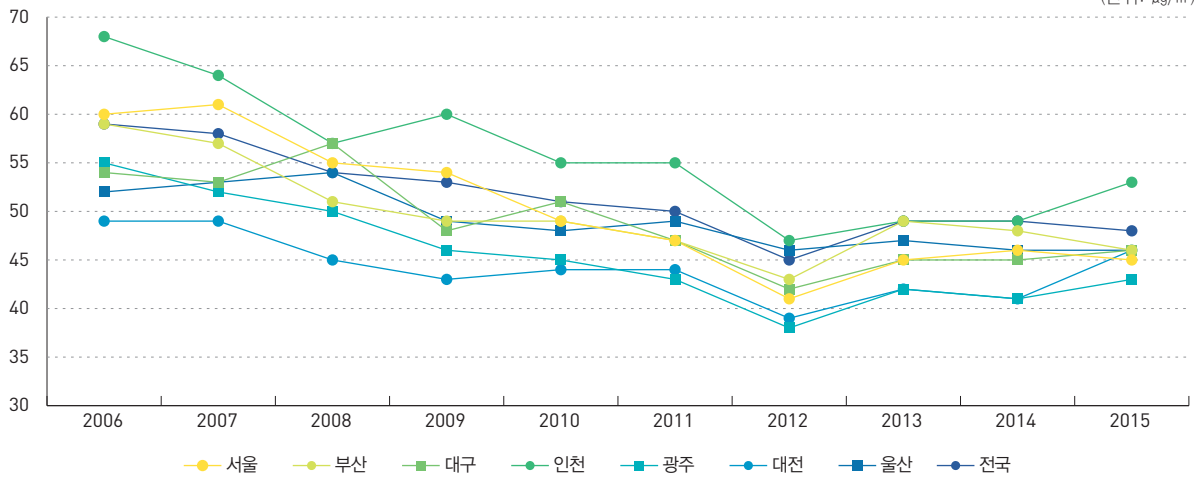
항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SO <sub>2</sub> (ppm)	0.008 (0.030)	0.007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5 (0.020)	0.005 (0.020)	0.005 (0.020)	0.006 (0.020)	0.005 (0.020)	0.005 (0.020)
NO <sub>2</sub> (ppm)	0.024 (0.050)	0.025 (0.050)	0.023 (0.050)	0.024 (0.050)	0.024 (0.050)	0.022 (0.050)	0.023 (0.050)	0.026 (0.030)	0.026 (0.030)	0.025 (0.030)	0.025 (0.030)	0.024 (0.030)	0.023 (0.030)	0.024 (0.030)	0.024 (0.030)	0.023 (0.030)
O <sub>3</sub> (ppm)	0.020	0.021	0.021	0.021	0.022	0.022	0.022	0.022	0.023	0.024	0.023	0.024	0.025	0.026	0.027	0.027
CO (ppm)	0.9	0.8	0.7	0.7	0.7	0.6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PM-10 (μg/m <sup>3</sup> )	53 (80)	58 (70)	61 (70)	56 (70)	58 (70)	57 (70)	59 (70)	58 (50)	54 (50)	53 (50)	51 (50)	50 (50)	45 (50)	49 (50)	49 (50)	48 (50)

주: ( )는 연평균 환경기준치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그림 9-9 주요도시 연도별 PM-10 농도 (2006~2015)

(단위: μg/m<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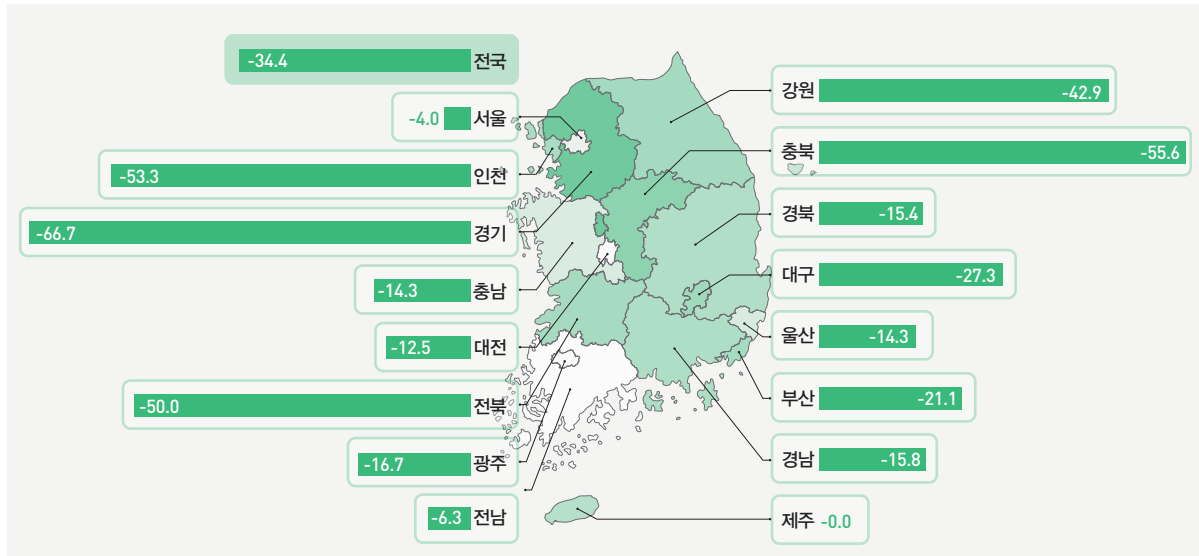


주: 전국 수치는 전체 측정망의 연평균 수치를 활용함.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그림 9-10 시도별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미달성률 (2015년 기준)

(단위: %)



주: 각 시도별 측정소 중 초과측정소/유효측정소의 값임.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2015

#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Sulfur Dioxide(SO<sub>2</sub>) in Major Cities

## 지표 정의

이산화황(SO<sub>2</sub>)은 황 함유 연료(주로 석탄과 석유)의 연소, 금속 제련공정, 기타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한다. 이산화황은 시정장애(視程障礙)를 일으키는 미세먼지(PM-10)의 주요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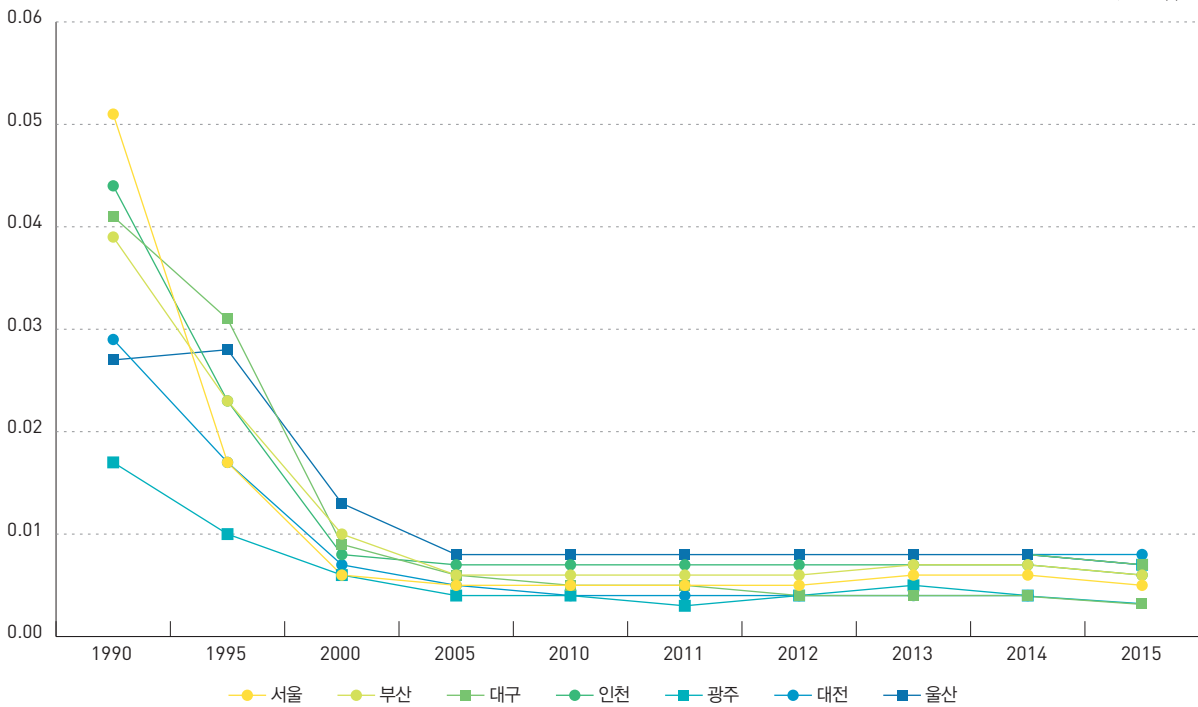
- 이산화황의 환경기준은 연평균 0.02ppm, 24시간 기준 0.05ppm, 1시간 기준으로는 0.15ppm이 적용된다.

1990년대와 비교하면 모든 주요도시에서 이산화황의 농도가 낮아졌다. 이산화황의 농도는 전국적으로 1999년 0.009ppm으로 낮아졌으며, 2015년에는 0.005ppm을 보인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1990년 연평균 0.051ppm이었던 연평균 이산화황 농도가 2015년에는 0.005ppm으로 낮아졌다. 서울 다음으로 오염도가 높았던 인천의 이산화황 농도는 같은 기간 0.044ppm에서 0.006ppm으로 낮아졌다. 개별 도시별로 보면, 경기도 시흥, 전라남도 여수, 광양, 경상북도 포항이 0.007ppm으로 이산화황 농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연평균 기준 이하에 있다.

그림 9-11 주요도시 연도별 이산화황(SO<sub>2</sub>) 오염도 ('90, '95, '00, '05, '10~'15)

(단위: ppm)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1980	2015	1개월

#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Nitrogen Dioxide(NO<sub>2</sub>) in Major Cities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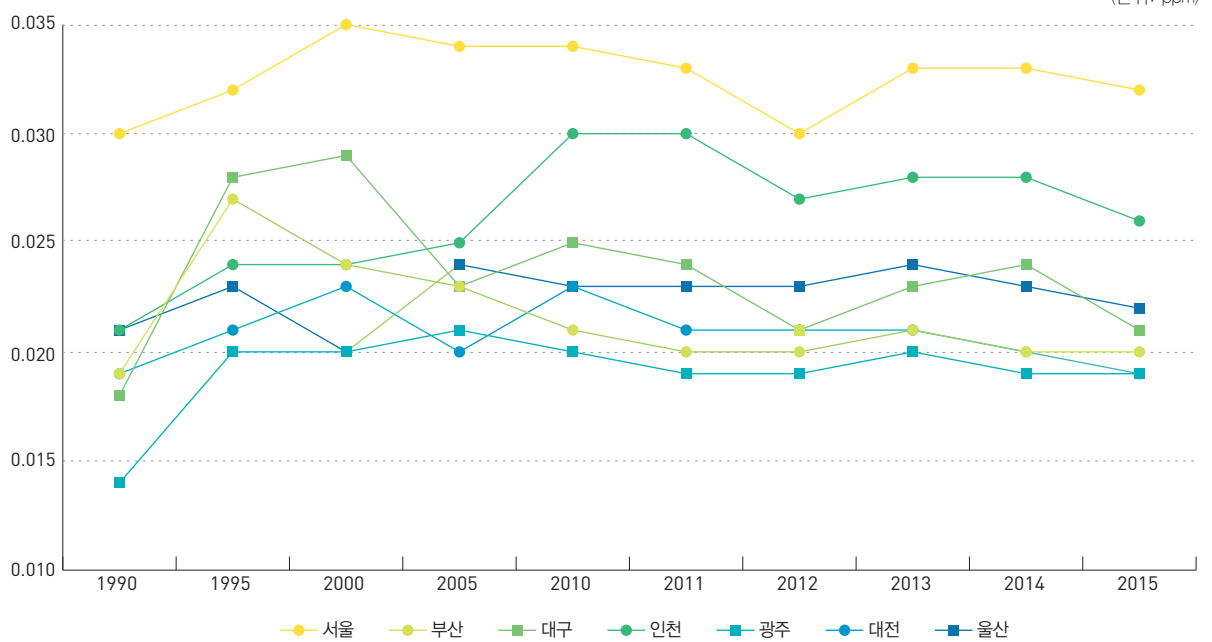
이산화질소(NO<sub>2</sub>)는 자동차와 파워플랜트 등의 고온 연소공정과 화학물질 제조공정에서 배출된다. 고농도의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 측정 산식

-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은 연평균 0.03ppm, 24시간 기준 0.06ppm, 1시간 기준으로는 0.1ppm이 적용된다.

주요도시의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1990년대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은 2010년 0.034ppm, 2015년 0.032ppm을 보였으며, 인천은 2010년 0.030ppm, 2015년 0.026ppm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2000년 0.024ppm이었던 이산화질소 농도는 2015년 0.023ppm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9-12 주요도시 연도별 이산화질소(NO<sub>2</sub>) 오염도 ('90, '95, '00, '05, '10~'15)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1980	2015	1년

# 주요 대도시 소음도

Noise Level in Major Cities

## 지표 정의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 측정 산식

- 소음도는 소음의 크기를 의미하는 데시벨(dB)로 측정한다.
- 낮 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하고, 밤 시간대에는 낮 시간대에 측정한 지점에서 2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환경부, 환경통계연감).

환경소음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을 구분하고, 다시 지역별로 밤, 낮의 환경소음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지역의 전용주거지역 낮 시간대 소음 기준은 50dB(A)이고, 도로변지역의 소음 기준은 65dB(A)이다.

2015년에 주요도시들은 전용주거지역의 낮과 밤 시간대에, 일반주거지역의 밤 시간대에 소음 기준을 초과하였다. 상업지역의 밤 시간대 소음은 7개 주요도시 모든 지역에서 기준선을 초과하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주요도시 환경소음도현황	2000	2015	분기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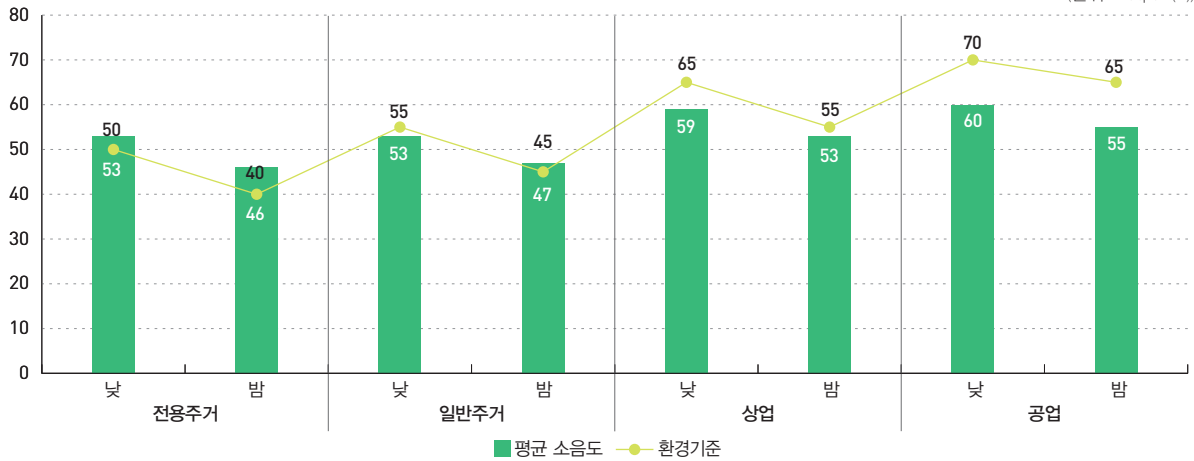
2015년의 평균 소음도는 2014년과 비교하여, 전용주거지역(밤 시간대)에서는 대구, 광주 지역은 감소하였지만, 인천, 대전, 울산지역은 증가하였다. 일반주거지역(밤 시간대)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지역은 감소하고, 나머지 지역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일반지역의 경우는 모든 주요도시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소음도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환경부,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 2015

그림 9-13 환경기준 대비 평균 소음도 (일반지역,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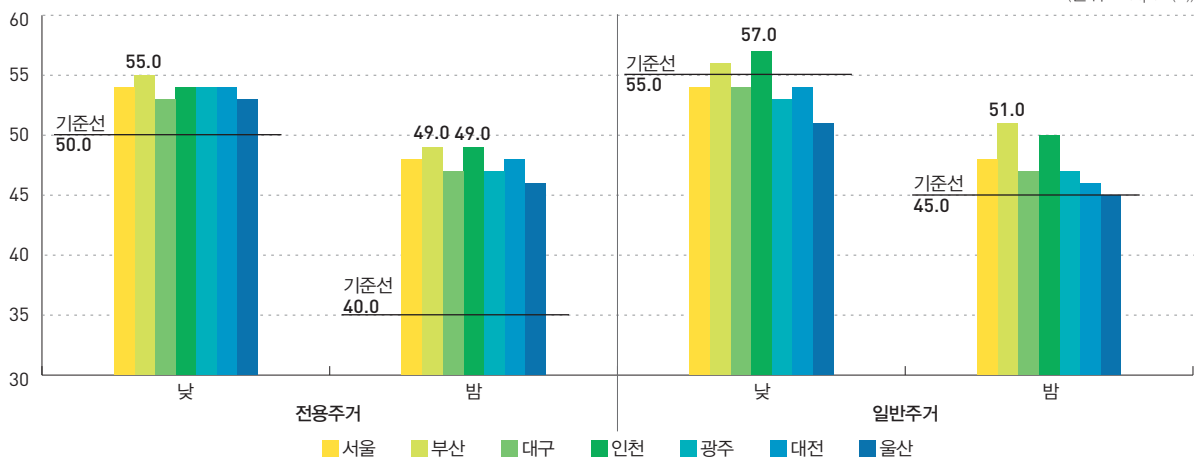
(단위: Leq dB(A))



자료: 환경부, 2015년도 환경소음측정망운영결과, 2016

그림 9-14 주요도시 소음도 현황 - 일반지역: 낮, 밤 (2015년 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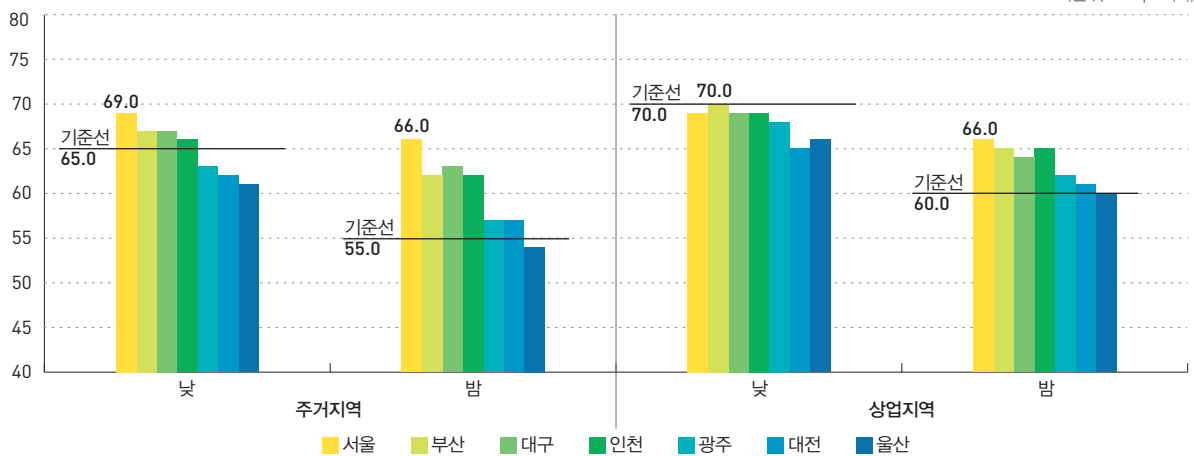
(단위: Leq dB(A))



자료: 환경부, 주요도시 환경소음도현황, 2015

그림 9-15 주요도시 소음도 현황 - 도로변지역: 낮, 밤 (2015년 4분기)

(단위: Leq dB(A))



자료: 환경부, 주요도시 환경소음도현황, 2015

#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Recycling rate of municipal waste

## 지표 정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지역의 총 생활폐기물 중에서 별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시설로 반입 처리된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폐기물은 발생량과 더불어 처리과정도 중요하다. 환경정책적 차원에서는 재활용률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재활용량}}{\text{생활폐기물 발생량}} \times 100$$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매립지 확보의 문제로 인해 매립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각 시에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적 차원에서는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2007년 57.8%에서 점차 높아져서 2009년에는 61.1%에 이르렀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량은 감소하고, 소각량은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재활용 비율은 2010년에는 60.5%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약 59.1%를 유지하였다. 2014년에는 쓰레기 매립량이 증가하여, 재활용 비율은 소폭 하락하면서 59.0%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14년 59.0%로 OECD 평균 34.0%에 비해 15.0% 가량 높았다. OECD의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재활용 비율은 높은 편이다. 2014년 자료가 비교 가능한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63.8%, 오스트리아가 58.3%, 벨기에가 54.6%, 스위스가 53.5% 등으로 높은 재활용 비율을 보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93	2014	1년

## Checkpoint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09년 61.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점차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처리 방법 중에서 매립 비율은 감소한 후 정체하고, 소각 비율은 증가하였다. 2014년 발생한 일평균 생활폐기물 중 59.0%가 재활용되었으며, 15.7%는 매립, 25.3%는 소각 처리되어 2013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의 발생은 200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4년 1인당 0.95kg(일)로 2013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OECD, "Municipal Waste", OECD Environment Statistics(database), 2016



표 9-9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2007~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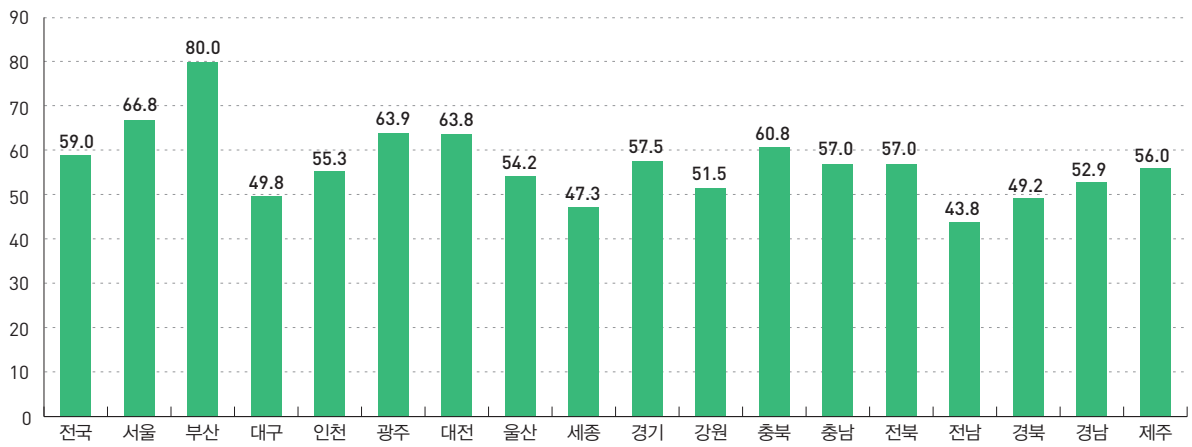
(단위: 톤/일,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0,346	52,072	50,906	49,159	48,934	48,990	48,728	49,915
매립	11,882 (23.6)	10,585 (20.3)	9,471 (18.6)	8,797 (17.9)	8,391 (17.2)	7,778 (15.9)	7,614 (15.6)	7,813 (15.7)
소각	9,348 (18.6)	10,349 (19.9)	10,309 (20.3)	10,609 (21.6)	11,604 (23.7)	12,261 (25)	12,331 (25.3)	12,648 (25.3)
재활용	29,116 (57.8)	31,138 (59.8)	31,126 (61.1)	29,753 (60.5)	28,939 (59.1)	28,951 (59.1)	28,784 (59.1)	29,454 (59.0)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그림 9-16 시도별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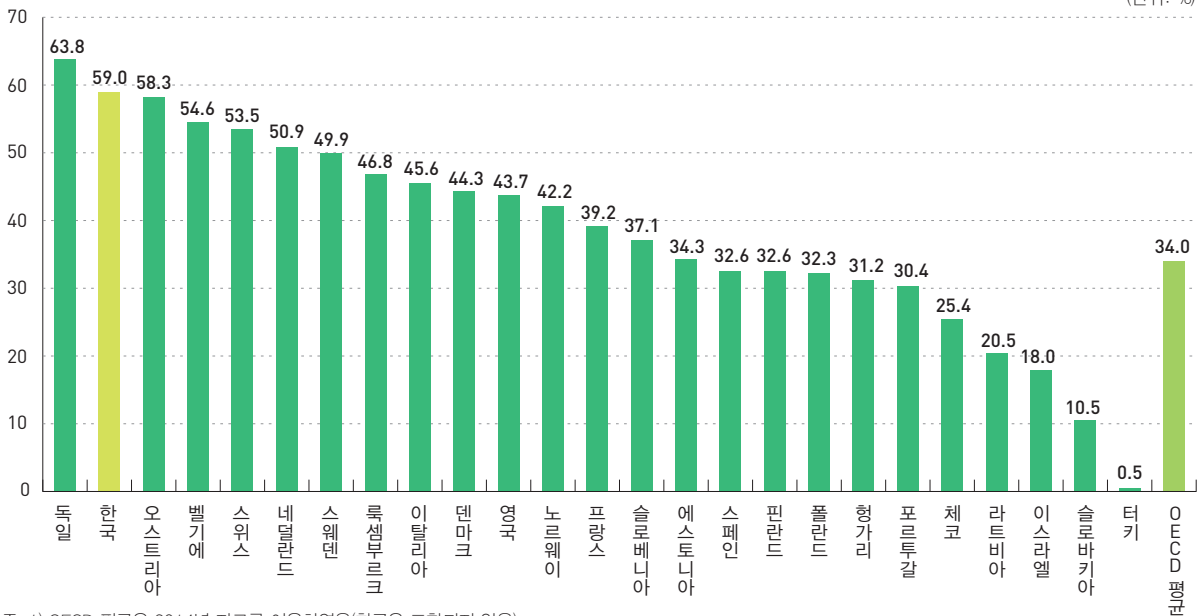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그림 9-17 OECD 국가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2014)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음(한국은 포함되지 않음).

2) 한국은 2014년 자료를 별도로 입력하여 작성함.

자료: OECD(2016), "Municipal Waste", OECD Environment Statistics(database), (26 Sep. 2016)

#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Municipal Waste Generation per Capita

## 지표 정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가정생활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한다.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일일에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생활계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폐기물)}}{\text{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인구}}$$

2014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일 38만 8천여 톤으로, 전년대비 2% 가량 늘어났다. 이 중 생활폐기물은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합한 것이며, 2014년 1일 발생량 49,915톤으로 전년도 48,728톤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08년 1.04kg(1인당, 1일)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3년에는 0.94kg(1인당, 1일)을 보였다. 2014년에는 소폭 증가하여 0.95kg(1인당, 1일)을 기록하였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서울 9,614kg(톤/일), 경기 10,452kg(톤/일)가 40.2%를 차지한다. 그러나 거주지역 인구를 고려한 인구당 발생량을 살펴보면 제주가 1.57kg(1인당, 1일)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35kg(1인당, 1일)로 높았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 519.8kg(1인당, 연간)에 비해 적은 354.2kg(1인당, 연간)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였다. 경제력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낮은 국가들의 폐기물 발생량은 적은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과 일본은 예외적인 사례에 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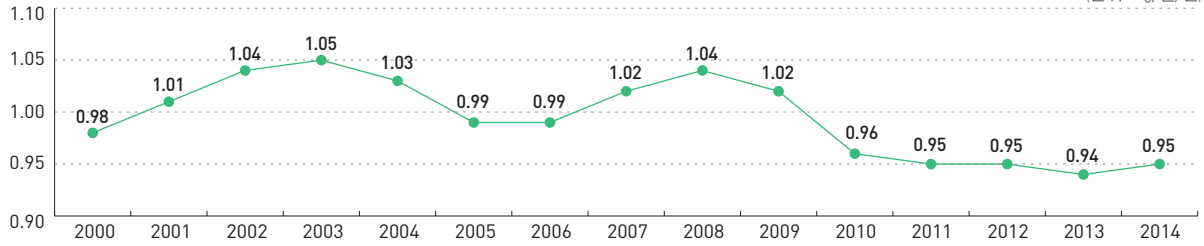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93	2014	1년

참고문헌 • OECD, Municipal Waste(indicator), 2016

그림 9-18 생활폐기물 1일 1인당 발생량 (200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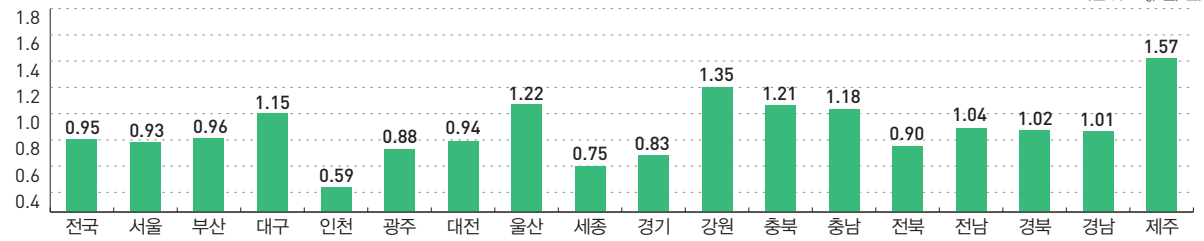
(단위: kg/일/인)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그림 9-19 시도별 1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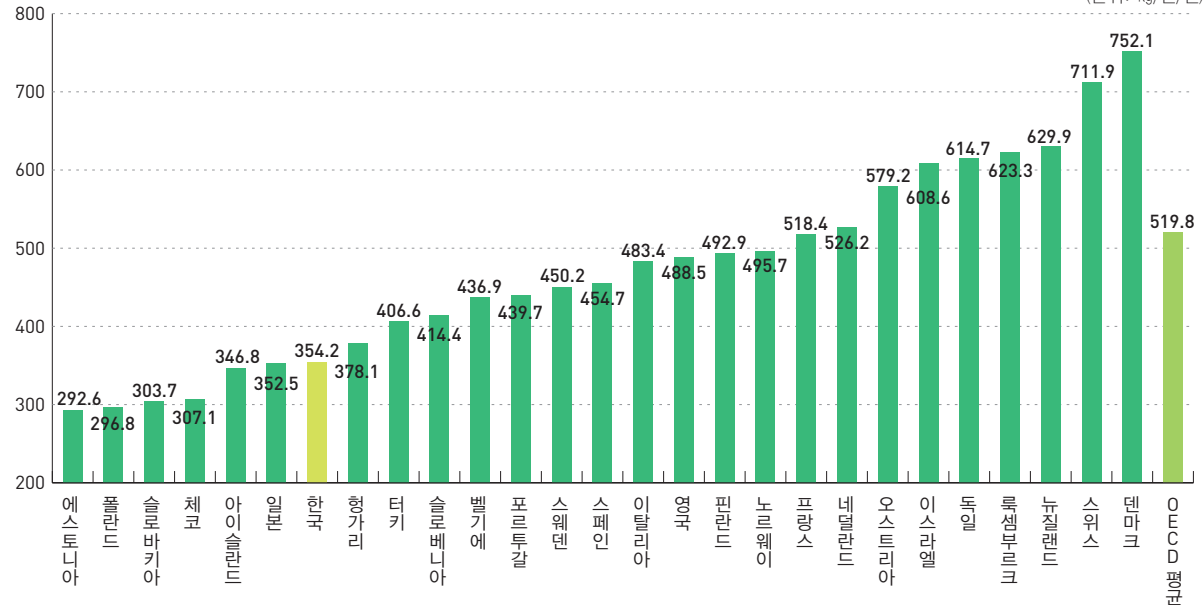
(단위: kg/일/인)



자료: 환경부, 2014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5

그림 9-20 OECD 국가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3)

(단위: kg/년/인)



자료: OECD(2016), Municipal waste(indicator), doi: 10.1787/89d5679a-en (26 Sep, 2016)

#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s % of GDP

## 지표 정의

환경보호 지출은 환경보호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대기오염방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토양과 수질오염 방지 및 처리, 소음과 진동 방지, 생태계 보호, 방사선 처리, 연구개발 및 기타 항목으로 구성한다.

국민경제 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행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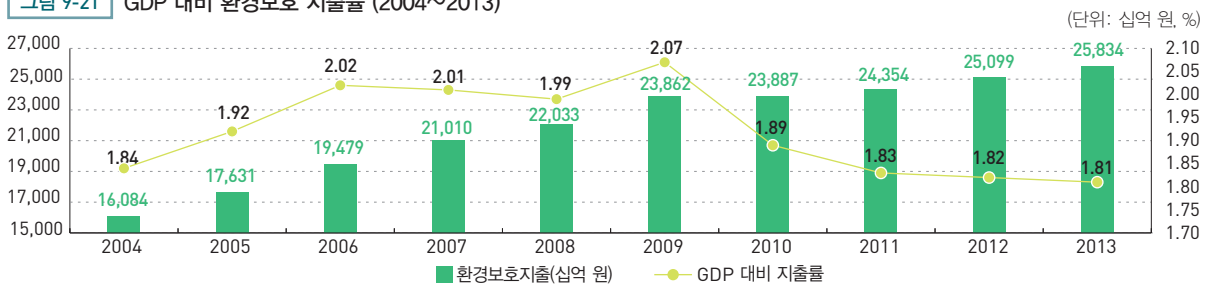
## 측정 산식

$$\frac{\text{환경보호 지출액}}{\text{명목 GDP}} \times 100$$

환경보호 지출액은 2004년 약 16조 원에서 2013년에는 약 25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환경보호 지출률은 2004년 1.84%에서 2009년 2.07%까지 증가하였다가, 지출수준의 정체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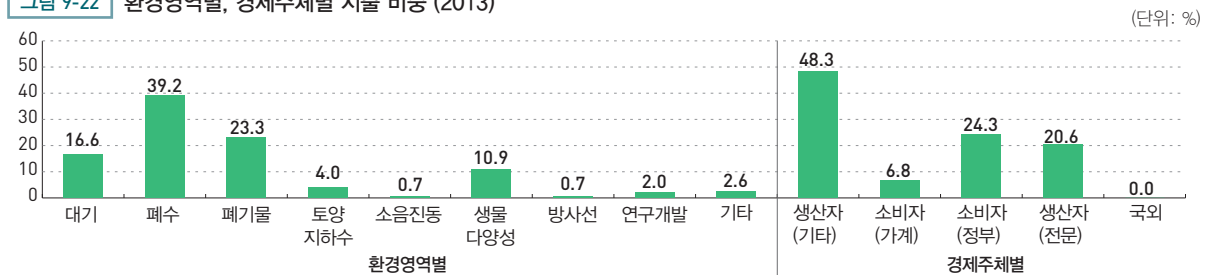
2013년 환경보호 지출의 79.2% 가량은 대기(16.6%), 폐수(39.2%), 폐기물(23.3%)의 3개 영역에 대한 지출이었다. 지출주체별로 살펴볼 때, 생산자가 48.3%, 정부가 24.3%, 환경전문업체가 20.6%로 가장 큰 주체이며, 개별 가계의 지출은 6.8% 수준에 그쳤다.

그림 9-21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2004~2013)



주: 1)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EPER) 통계 기준을 활용함.  
 2) 환경보호 지출액은 (투자지출 경상지출 - 부산물 수입)으로 계산함.  
 3) 자료의 갱신으로 이전년도 수치에 변경이 있었음.  
 자료: 환경부, 환경보호 지출계정, 각 연도

그림 9-22 환경영역별, 경제주체별 지출 비중 (2013)



주: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EPER) 통계 기준을 활용하여 작성함.  
 자료: 환경부, 환경보호 지출계정, 2013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작성년도	최근작성년도	주기
환경부	환경보호 지출계정	1997	2013	1년

### Checkpoint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대 후반 지출 증가가 정체되면서 2011년 1.83%, 2012년 1.82%, 2013년 1.81%로 나타났다.

# 환경예산 비율

Budget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 % of Government Budget

## 지표 정의

환경예산 비율은 정부예산 중 환경분야 예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환경예산은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부 소관 예산 이외에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개선 관련 예산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정부조직법 상 환경부 소관 예산을 의미한다. 그 외 소규모로 해양경찰청(이전,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오염관리 비용도 넓은 의미의 환경예산에 포함된다.

##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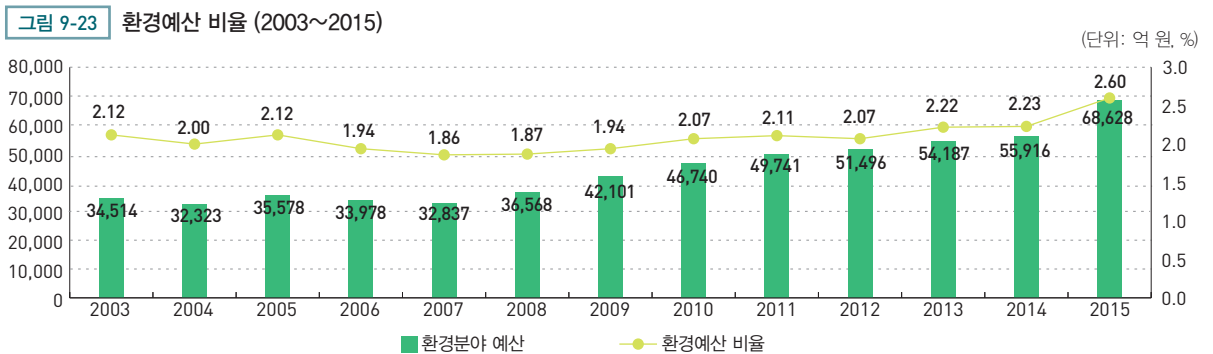
$$\frac{\text{환경분야 예산}}{\text{정부예산}} \times 100$$

연도별 환경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환경 상황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예산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 비율은 2011년 2.11%를 기록한 이후 일시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는 2.60%로 증가하였다.

**표 9-10** 환경예산 비율 (2003~2015) (단위: 억 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부예산	1,628,435	1,612,627	1,679,332	1,753,882	1,767,561	1,951,002	2,174,723	2,259,682	2,356,000	2,486,125	2,436,433	2,507,885	2,639,243
환경분야 예산	34,514	32,323	35,578	33,978	32,837	36,568	42,101	46,740	49,741	51,496	54,187	55,916	68,628
환경부예산	14,037	14,519	28,557	29,992	32,203	35,514	40,282	44,832	47,778	49,897	54,121	57,191	56,976
환경예산 비율	2.12	2	2.12	1.94	1.86	1.87	1.94	2.07	2.11	2.07	2.22	2.23	2.60

자료: 환경부, 환경예산 비율(내부자료), 2015



자료: 환경부, 환경예산 비율(내부자료), 2015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환경예산 비율(내부자료)	2010	2015	부정기

참고문헌 • 환경부, 환경예산과 예산제도, 2012

# 환경성질환자 수

Number of Patients with Environmental Disease

## 지표 정의

환경성질환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의 3개 질환을 의미하며, 환경성질환자 수는 이 질환을 각각 앓고 있는 사람 수의 합을 의미한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적 요소에 민감한 아동 및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 원인으로는 실내·외의 환경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 합계 = 알레르기비염(J30) + 아토피피부염(L20) + 천식(J45~46) 질환자 수

우리나라는 급성질환이 점차 사라지면서 만성질환이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과 환경의 관련성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환경유해인자에 의해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환경성질환이라고 할 때, 주요 질환 중 어떤 질환을 환경성질환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박일수 외,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경성질환자 수를 계산하면서,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중 1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다.

2015년 말 현재 건강보험통계에서 전체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797만 명으로, 알레르기성비염이 61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천식이 164만 명, 아토피피부염이 91만 명 정도이다. 알레르기성비염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며, 아토피피부염은 2009년부터, 천식 환자는 201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내부자료)	1994	2015	1년

## Checkpoint

환경성질환자 중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순계는 2009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이후, 2014년부터는 큰 등락을 보였다. 201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32만 명 정도 증가하여 약 825만 명에 이르렀으나, 2015년에는 다시 797만 명 정도로 감소하였다.

## 참고문헌

- 건강보험공단, 2007년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분석, 2008

표 9-11 항목별 환경성질환자 수 (20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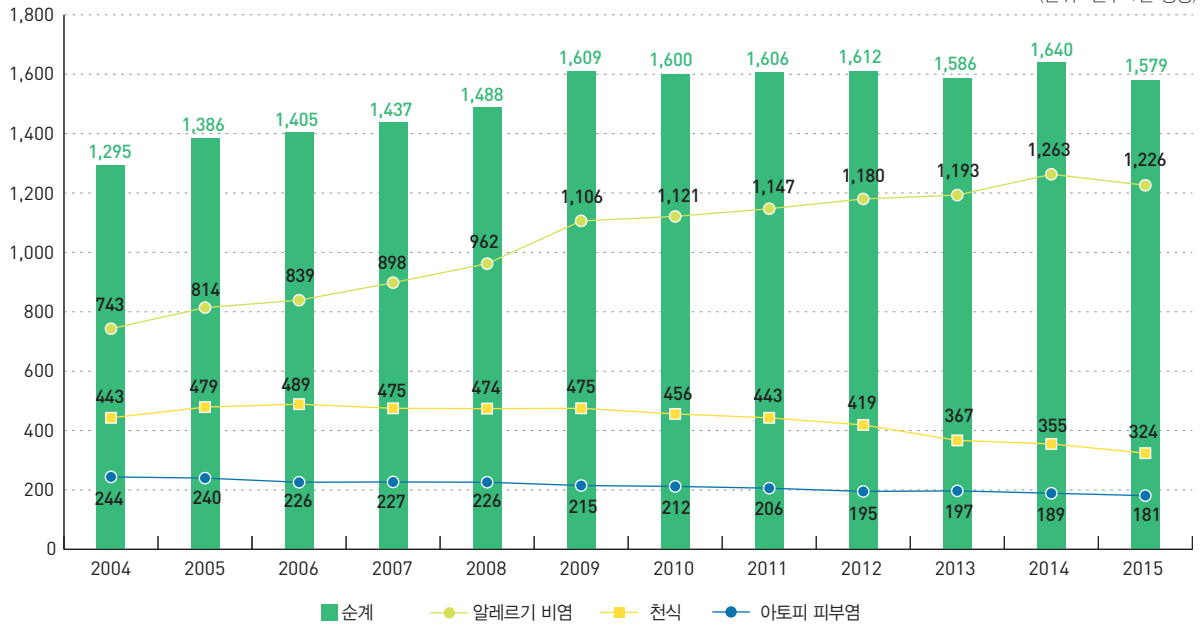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3,519.3	3,858.6	3,978.5	4,292.3	4,632.5	5,379.1	5,481.8	5,652.3	5,860.4	5,962.7	6,353.7	6,190.4
아토피피부염 (L20)	1,154.9	1,138.6	1,069.1	1,086.1	1,090.4	1,047.6	1,038.8	1,013.4	970.7	982.4	950.0	913.3
천식(J45) 및 천식지속	2,097.1	2,268.6	2,316.9	2,270.1	2,282.1	2,310.0	2,230.2	2,182.0	2,079.3	1,832.8	1,786.1	1,638.1
합계	6,771.2	7,265.7	7,364.5	7,648.4	8,005.0	8,736.7	8,750.7	8,847.7	8,910.4	8,777.9	9,089.8	8,741.8
순계	6,134.9	6,566.9	6,659.6	6,873.2	7,165.4	7,821.0	7,824.9	7,917.9	8,004.5	7,930.6	8,249.4	7,970.9

주: 순계 =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9-24 인구 1만 명당 주요 환경성질환자 수 (2004~2015)

(단위: 인구 1만 명당)



주: 1) 1만 명당 환자 = 환자 수/건강보험 연말 적용인구 × 10,000  
 2) 순계 =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내부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 10

## 문화

- 0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02 연간 독서량
- 03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 0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 05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 06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
- 07 생활체육 참여율
- 08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 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10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 11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 1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 1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 14 GDP 대비 문화예산
- 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통 계 로 보 는 사 회 보 장

# 2016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문화 향유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연간 독서량	연간 독서율
문화 접근성 (인프라)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	인구 100만 명당 유형별 문화시설의 수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문화 참여	연간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문화 교육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 복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GDP 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Visiting rate of Annual Culture Arts Events

## 지표 정의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직접 문화예술행사(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를 관람한 응답자의 비율로 정의한다.

최소한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국민의 비율을 통하여 성별, 도시규모별, 소득수준별, 연령별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직접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국민의 수}}{\text{15세 이상 국민의 수}} \times 100$$

유의사항 통계청 사회조사와 유사한 지표처럼 보이거나 질문 방식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다른 지표임.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이들의 비율은 2003년 62.4%에서 2014년 7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에도 1년 동안 단 한 번도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지 못한 이들의 비율이 28.7%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65.8%가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대중음악/연예가 14.4%, 연극 12.6%, 뮤지컬 11.5%, 미술전시회 10.6%가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제외한 문화예술행사는 10% 이하의 관람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무용은 2.4%만 관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통하여 문화향유 분야별 편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성별, 연령, 도시규모,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별은 여자가 71.5%로 남자(71.1%)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9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대(94.7%), 30대(86.4%), 40대(76.9%), 50대(55.4%), 60대(39.8%), 70대(22.0%)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람률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초졸은 33.8%가 직접 관람을 경험했으며, 중졸은 57.7%, 고졸은 70.6%이고, 대졸 이상은 88.1%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직접 관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는 대도시가 75.3%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73.0%), 읍면지역(57.7%)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600만 원 이상(84.8%), 500~600만 원 미만(83.8%), 400~500만 원 미만(82.8%), 300~400만 원(77.8%), 200~300만 원(68.7%), 100~200만 원 미만(43.7%), 100만 원 미만(26.6%) 순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높게 나타나는 문화격차가 확인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4	2년

### Checkpoint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출되는 지표이다. 작성 주기가 2년이라 2012년도 조사결과가 2014년도 통계와 비교할 수 있는 최신자료이다. 2014년 관람률은 71.3%로 2012년 관람률 69.6%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관람률의 격차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도에는 가구소득 구간을 500만 원 이상의 구간을 500~600만 원 미만 구간과 600만 원 이상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하였다.

표 10-1 연도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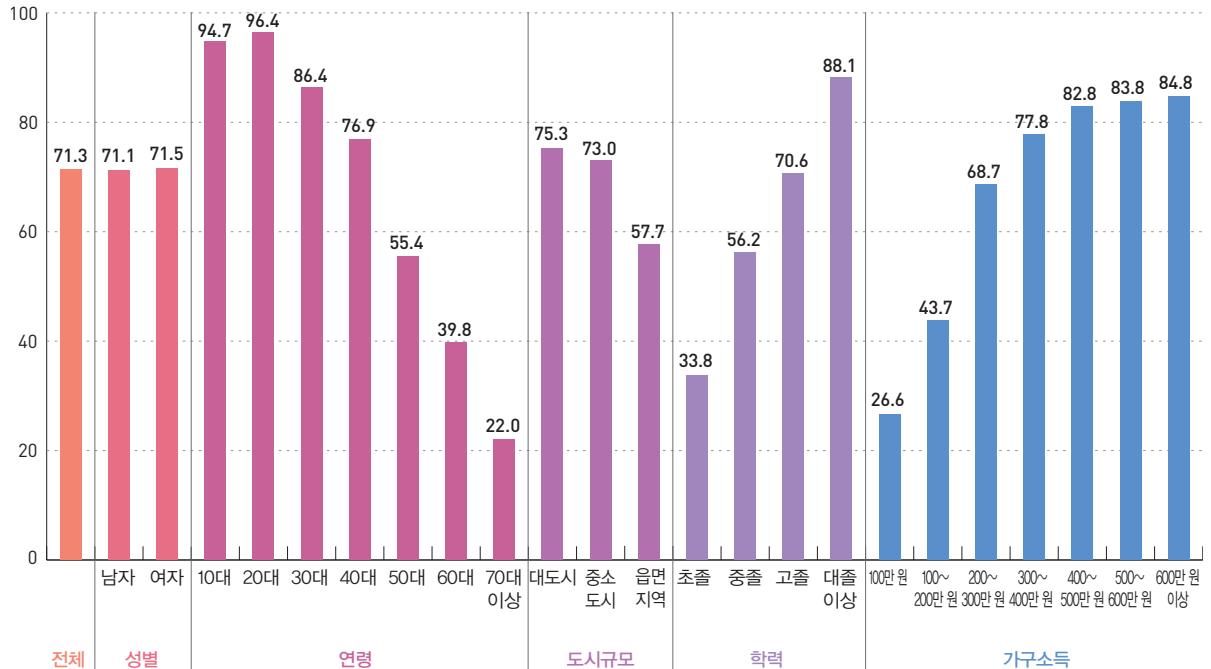
(단위: %)

예술행사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전체	62.4	65.8	67.3	67.2	69.6	71.3
문학행사	4.0	4.4	4.0	3.8	6.1	6.2
미술전시회	10.4	6.8	8.4	9.5	10.2	10.6
서양음악	6.3	3.6	4.9	4.4	4.8	4.9
전통예술	5.2	4.4	4.4	5.7	6.5	5.7
연극					11.8	12.6
뮤지컬	11.1	8.1	11.0	11.2	11.5	11.5
무용	1.1	1.4	0.7	1.4	2.0	2.4
영화	53.3	60.3	58.9	60.3	64.4	65.8
대중음악/연예	10.3	7.6	10.0	7.6	13.5	14.4

주: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별도로 조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1 특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14)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014

#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Annual Average the Visiting Number of Culture Arts Events

## 지표 정의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지난 1년 동안 직접 관람한 문화예술행사(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의 평균 횟수로 정의된다.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문화예술 향유 빈도 격차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 동안 직접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추정된 전체 횟수}}{\text{15세 이상 국민의 수}} \times 100$$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2003년 4.5회에서 2006년 4.7회, 2008년 4.9회, 2010년 4.2회, 2012년 4.9회, 2014년 5.0회로 나타난다. 2010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빈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횟수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영화 관람 횟수가 3.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분야별 편중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를 제외한 다른 문화예술분야 행사의 관람 횟수는 대중음악/연예 0.5회, 연극 0.2회, 뮤지컬 0.2회, 미술전시 0.2회, 문학행사 0.1회, 서양음악 0.1회, 전통예술 0.1회, 무용 0.05회 등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또한 도시규모, 학력, 가구소득, 연령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도시규모는 대도시(5.4회), 중소도시(5.1회)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자는 3.8회로 낮게 나타났다. 학력은 초졸인 경우 2.3회로 나타나 가장 낮았고, 중졸은 3.7회, 고졸은 4.6회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은 6.6회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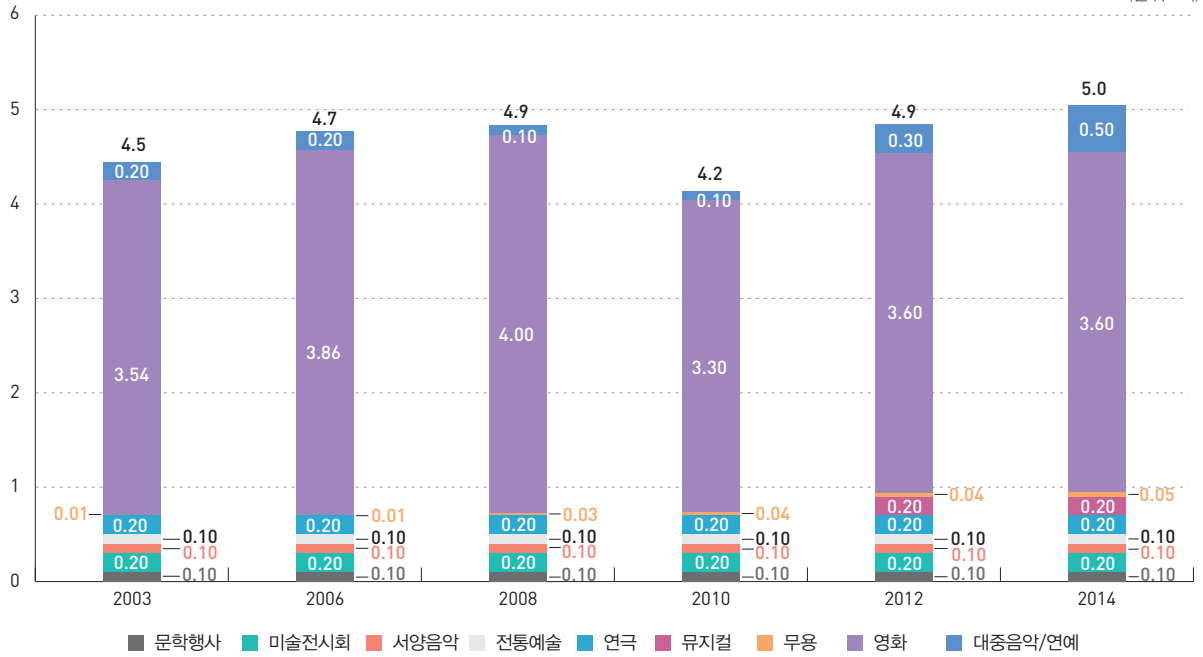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계층의 경우 연평균 관람 횟수가 2.0회에 불과한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관람 횟수는 높아져 600만 원 이상 고소득계층의 관람 횟수는 7.2회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도 20대의 연평균 관람 횟수는 9.4회에 달하는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람 횟수는 낮아져 70대 이상의 경우 1.2회에 불과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4.8회, 여자가 5.2회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4	2년

그림 10-2 연도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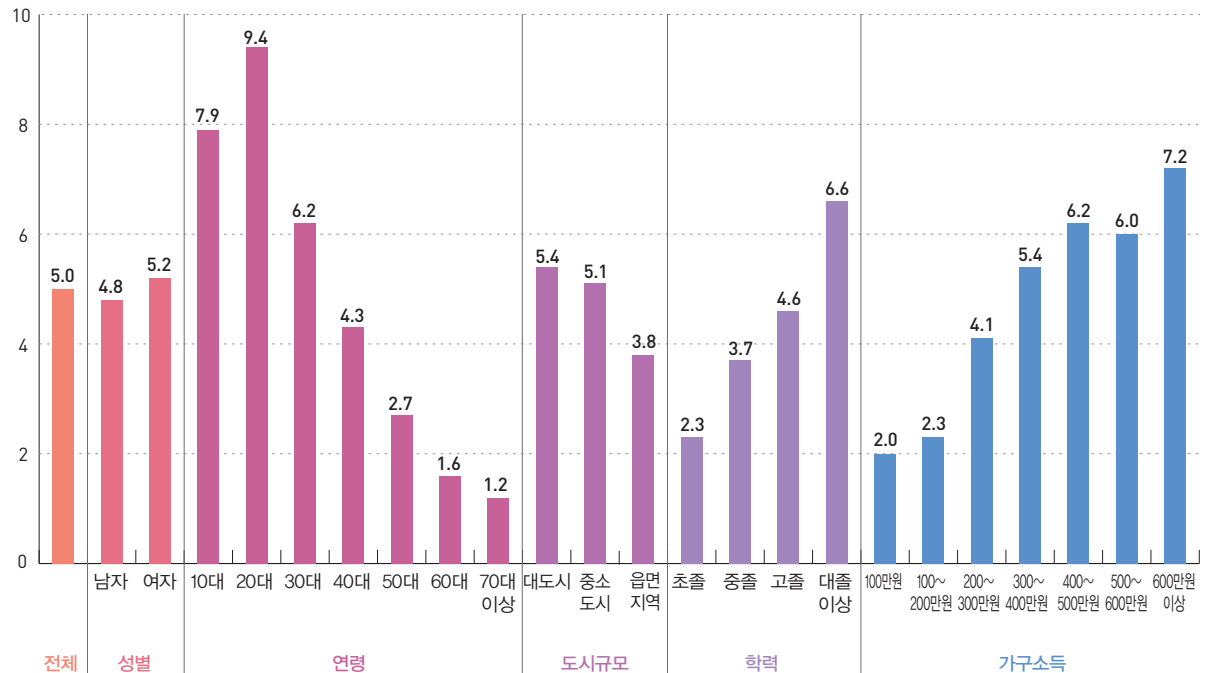
(단위: 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3 특성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2014)

(단위: 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 연간 독서량

Annual Quantity of Reading

## 지표 정의

연간 독서량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읽은 종이책(일반도서 기준)의 평균 독서 권수로 정의한다. 성인과 학생(초·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집계하고, 초등학생은 4학년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 측정 산식

$$\begin{aligned} \bullet \text{ 성인독서량}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성인 전체가 읽은 종이책 독서 권수의 합}}{\text{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전체의 수}} \times 100 \\ \bullet \text{ 학생독서량**} &= \frac{\text{지난 1년 동안 학생 전체가 읽은 종이책 독서 권수의 합}}{\text{국내 거주하는 학생 전체의 수}} \times 100 \end{aligned}$$

성인의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1995년 9.6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12.1권이었으나,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5년 9.1권까지 줄었다. 학생의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1995년 14.9권에서 시작하여 2004년이 11.4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이후 2011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24.3권 2015년 29.8권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성인의 독서량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독서량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성인독서량은 일반도서와 전자책을 합하여 9.9권으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13.5권, 12.5권으로 높았고 60대 이상은 6.1권을 읽는 등 연령대와 독서량은 반비례하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 이상이 12.9권으로 가장 높고, 중졸 이하는 4.4권으로 학력별 격차가 컸다. 소득수준 역시 독서량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초·중·고등학생 독서자의 평균 독서량은 일반도서와 전자책을 합하여 37.2권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78.4권)이 독서량이 가장 많고 중학생(25.2권), 고등학생(12.8권)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 101.1권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낮아져 고등학교 3학년은 12.0권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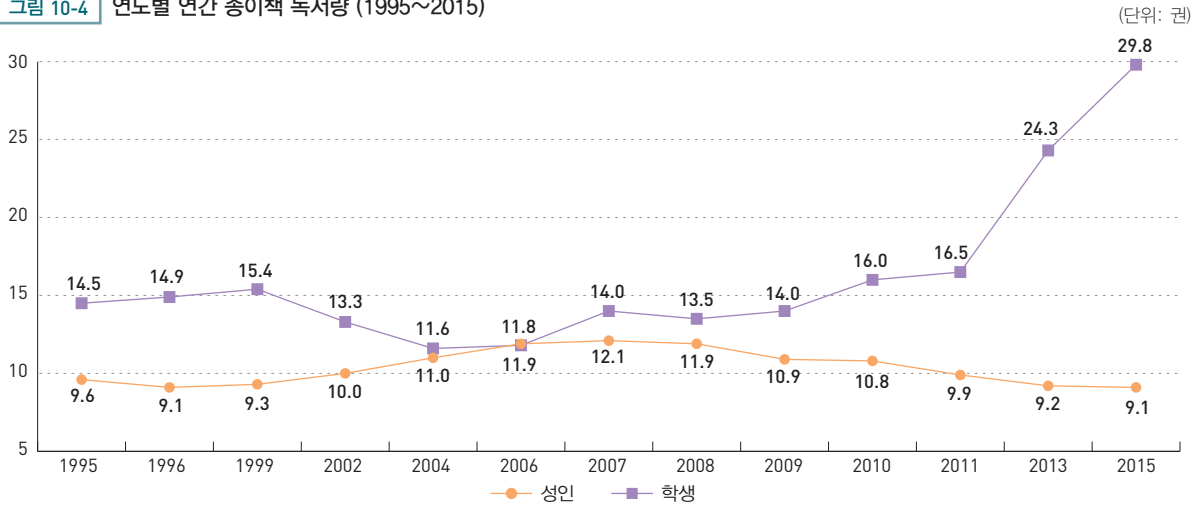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1994	2015	2년

### Checkpoint

'연간 독서량'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실태조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지표이다. 생산주기가 2년으로 변경되어 2012년과 2014도 기준 통계는 생산되지 않았다. 2013년도에는 '연간 독서율'을 별도의 지표로 제시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연간 독서량'의 연관지표로 포함하였다. 2015년도 성인(종이책)독서량은 9.1권으로 2013년도보다 0.1권 적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의 (종이책)독서율 역시 2013년 71.4%에서 2015년도 65.3%로 6.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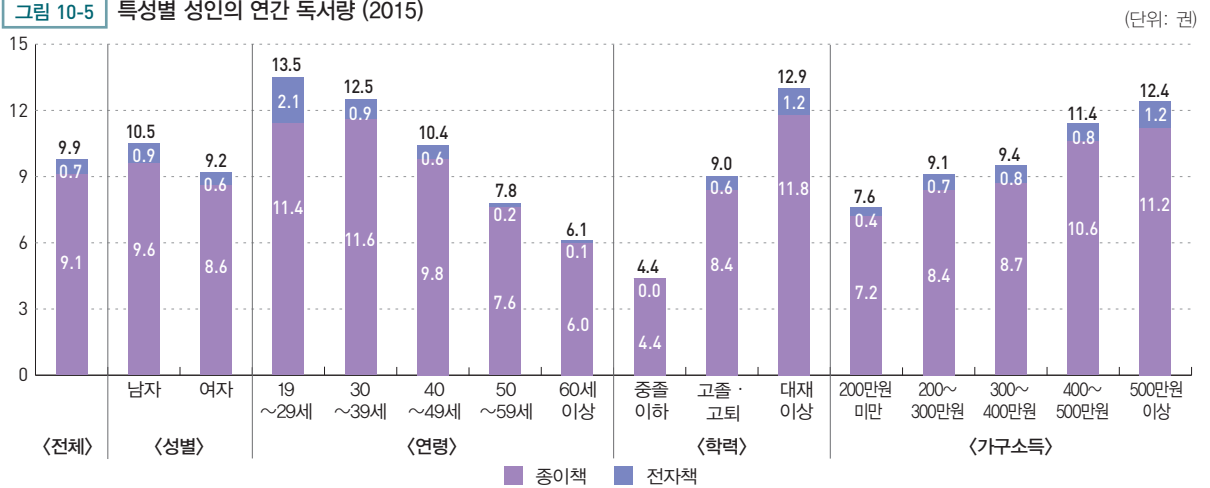
\* 2010년 조사부터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부터 잡지와 만화책을 제외하여 집계한다.  
\*\* 학생의 경우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

그림 10-4 연도별 연간 종이책 독서량 (199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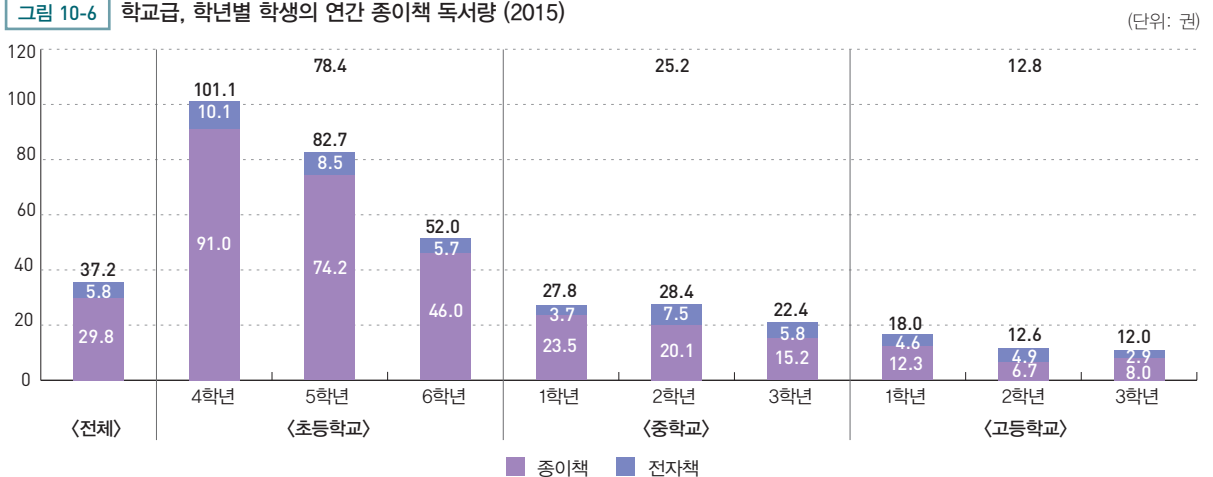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5 특성별 성인의 연간 독서량 (20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5

그림 10-6 학교급, 학년별 학생의 연간 종이책 독서량 (20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5

# 연간 독서율

Annual rate of reading

## 지표 정의

연간 독서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일반도서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및 학생(초·중·고등학교)의 비율로 정의한다(학생의 경우 학습참고서와 교과서를 제외).

## 측정 산식

$$\begin{aligned} \bullet \text{ 성인독서율}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일반도서 기준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전체의 수}}{\text{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전체의 수}} \times 100 \\ \bullet \text{ 학생독서율}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일반도서 기준 한 권 이상 읽은 학생 전체의 수}}{\text{국내 거주하는 학생 전체의 수}} \times 100 \end{aligned}$$

독서율은 2010년부터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종이책 독서율을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1995년 7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 72.0%를 기록하였다가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약 76%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로 다시 하향세를 그려 2010년에는 65.4%를 기록했다. 이후 2013년에 71.4%로 상승했다가 2015년에 65.3%로 6.1%p 감소하였다.

연간 초·중·고등학생의 종이책 독서율 역시 1995년 97.6%에서 2002년 89.6%로 감소한 후 2008년까지 89%대를 유지하다 2009년 93.7%로 상승하였다가 2011년 83.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2013년 초등학생의 독서량 증가로 96.0%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5년도는 94.9%로 전년도에 비해 1.1%p 감소하였다.

2015년 기준 성인독서율 역시 독서량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독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독서율은 학년이 낮을수록 독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입국들과의 연간 독서율을 비교해보면 2013년도 한국인의 연간 독서율(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환산)은 74.4%이고 OECD 평균 독서율(만 15세 이상 기준)은 76.5%로 한국이 2.1%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21개국 중 14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독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32%로 EU의 31%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조사된 EU의 20개국 중 13개국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낮은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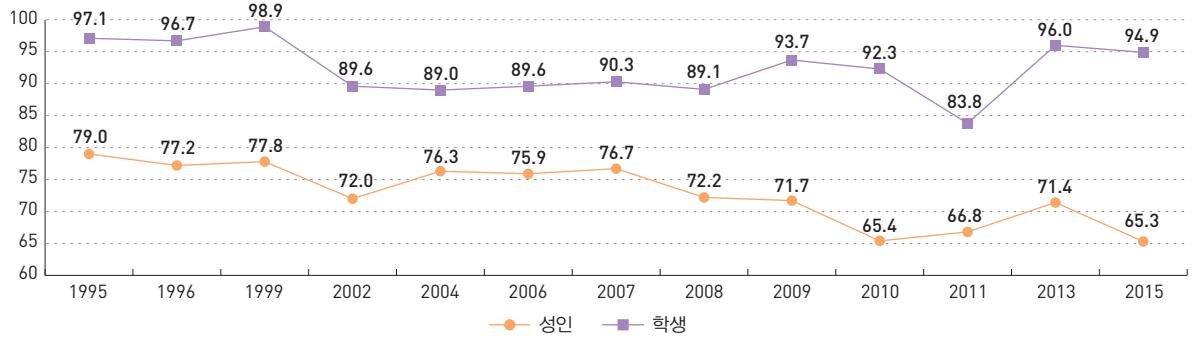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1994	2015	2년

\* 역시 성인과 학생(초·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집계한다(학생의 경우 학습참고서와 교과서를 제외). 2010년 조사부터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부터 잡지와 만화책을 제외하여 집계한다.



그림 10-7 연도별 연간 종이책 독서율 (199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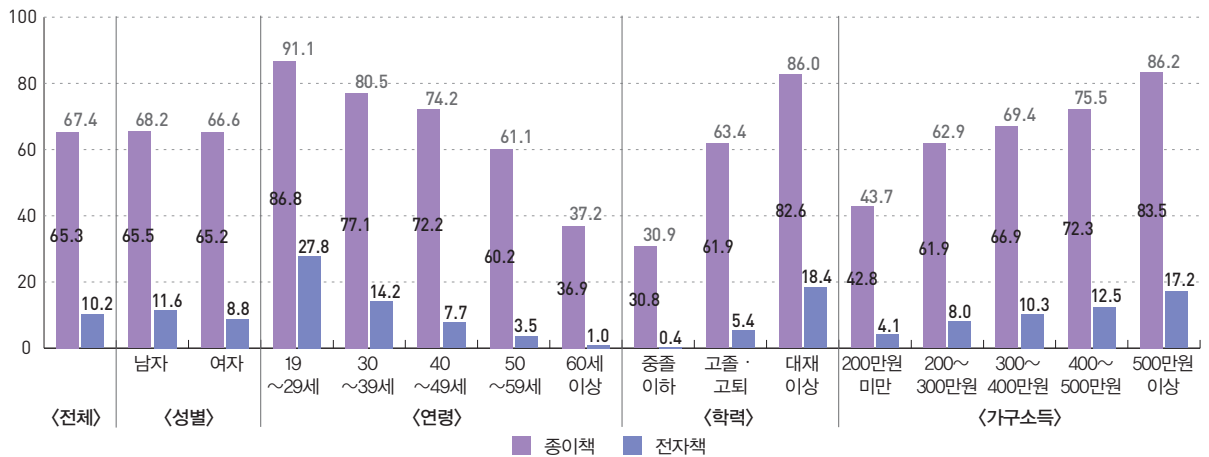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8 특성별 성인의 연간 독서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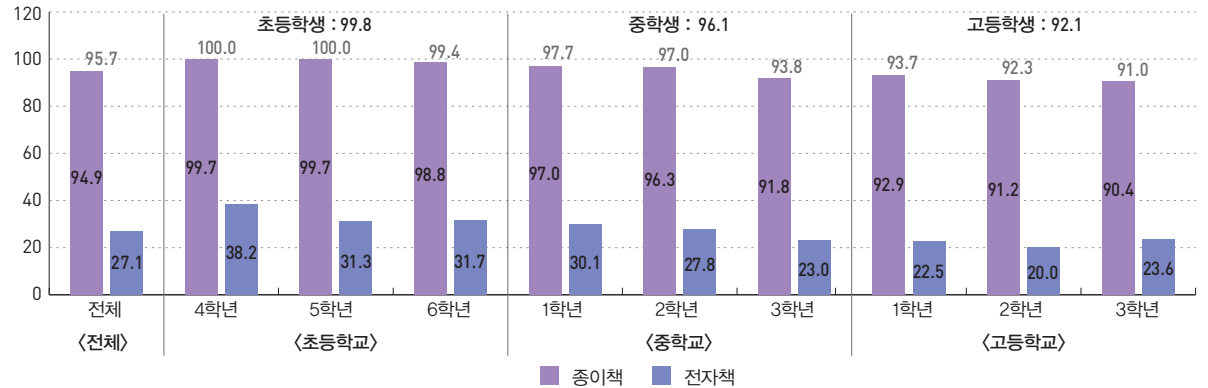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5

그림 10-9 특성별, 학생(학교급별, 학년별)의 연간 독서율 (2015)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5

표 10-2 OECD 가입 국가의 연평균 독서율 (2013)

(단위: %)

국가	독서율	국가	독서율	국가	독서율	국가	독서율
스웨덴	85.7	미국	81.1	OECD평균	76.5	슬로바키아	69.6
에스토니아	84.9	독일	81.1	프랑스	74.7	일본	67
덴마크	84.9	체코	79.2	한국	74.4	벨기에	65.5
핀란드	83.4	오스트리아	78.7	네덜란드	73.6	스페인	65.2
노르웨이	83.2	아일랜드	78.1	폴란드	73.6	이탈리아	63.6
영국	81.1	캐나다	77.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5

OECD,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국제성인역량조사), 2013\*

\* 연평균 독서율: 해당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OECD 조사에서는 전자책 및 만화를 포함).

표 10-3 한국과 EU 국가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2013)

(단위: %)

국가	공공도서관 이용률	국가	공공도서관 이용률	국가	공공도서관 이용률	국가	공공도서관 이용률
스웨덴	74	네덜란드	45	스페인	33	체코	28
핀란드	66	아일랜드	45	한국	32	슬로바키아	26
덴마크	63	라트비아	39	EU 평균	31	폴란드	26
슬로베니아	48	벨기에	37	크로아티아	31	이탈리아	24
영국	47	리투아니아	35	말타	29	독일	23
에스토니아	47	프랑스	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5

EU: 유로바로미터, 유럽인의 문화활동(CULTURAL ACCESS AND PARTICIPATION), European Commission, 2013

#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Million People

## 지표 정의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대비 문화시설 수로 정의한다.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이 해당되며, 인구 대비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농어촌 산간지역 등 소외지역 문화 인프라 제고와 같은 사회보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의 전체 문화시설 개수의 합계}}{\text{해당 연도의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text{만}$$

2015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의 수는 2008년 35.1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48.3개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5개 증가한 수치이다. 사립 및 대학의 박물관·미술관을 제외한 공공 문화기반시설은 2008년 27.1개에서 2015년 36.4개로 역시 증가하였다. 이는 공공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이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지역별 문화시설 수를 살펴보면 제주가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201.8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24.8개로 가장 낮았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의 대도시권역이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대도시권역이 도 지역과 비교하여 문화시설의 수는 적고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2003	2015**	1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08	2015	1개월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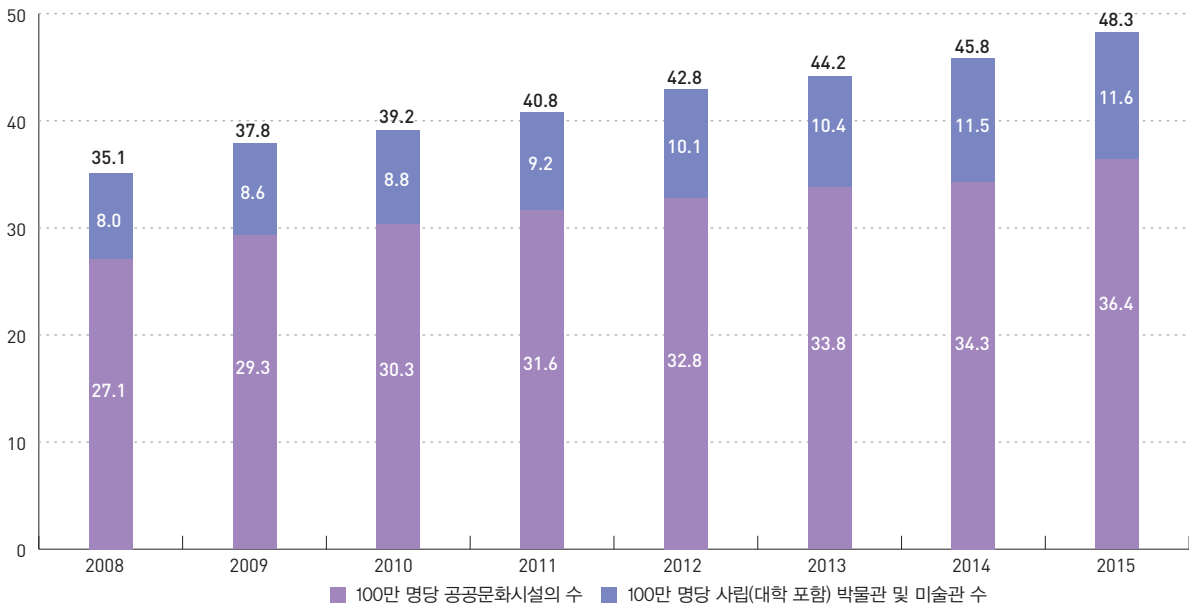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다. 100만 명당 공공도서관 수, 박물관 및 미술관 수, 문예회관 수, 지방문화원 수는 연관지표로 제시하였다. 문화의 집이 2014년도부터 제시되어 시계열 변화파악을 위해 시계열 지표에서는 제외하였고, 해당 연도의 자료에서는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2015년도에 48.3개로 나타나 2014년도 45.8개보다 2.5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함. 2013년부터 문화의 집이 추가되었으나 시계열을 위하여 통계산출에서는 제외함.

\*\* 2014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에서 2013년도 자료를 실고 있음.

그림 10-10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의 수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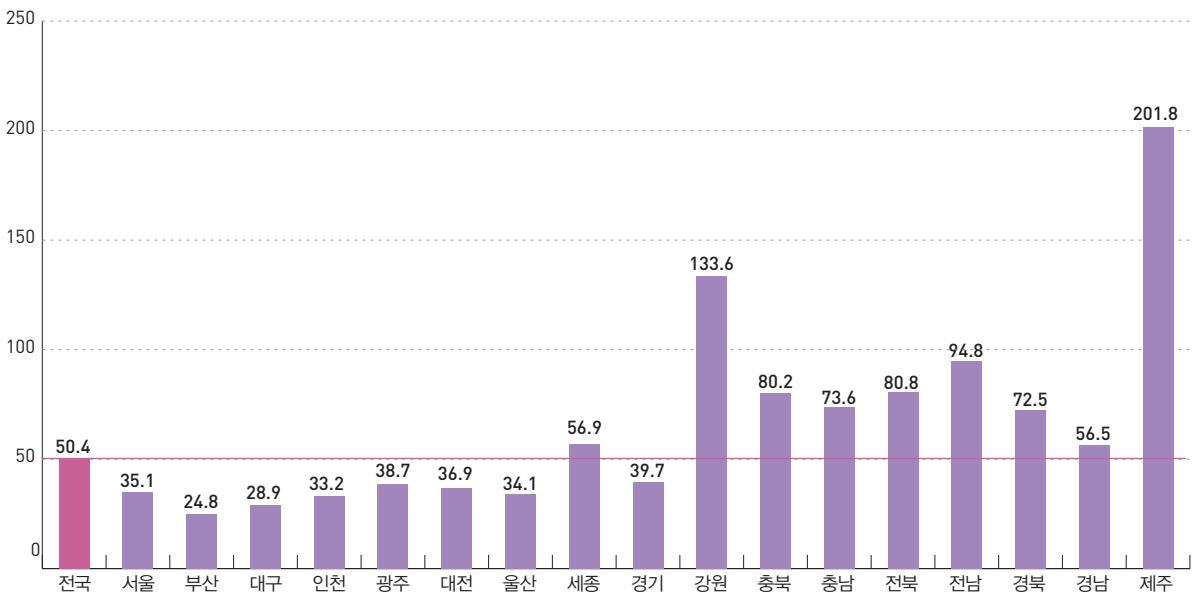
(단위: 개)



주: 박물관과 미술관은 공공, 사립, 대학으로 구분되어 있음. 사립과 대학을 제외하면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수치임.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4년부터 데이터가 있는 문화의 집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각 연도

그림 10-11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2015)

(단위: 개)



주: 박물관 및 미술관 수는 국공립, 사립, 대학을 합한 수치임. 해당 연도의 값이기 때문에 문화의집을 포함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2015

# 인구 100만 명당 유형별 문화시설의 수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by Type per Million People

## 지표 정의

각 유형별 문화시설의 확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명당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의 수로 정의한다.

##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의 유형별 문화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수}}{\text{해당 연도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text{만}$$

인구 100만 명당 유형별 문화시설의 수는 공공도서관이 2008년 13.0개에서 2015년 19.0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2008년 6.3개에서 2015년 8.4개, 문예회관의 경우 2008년과 2015년 4.5개이며, 지방문화원은 2008년 3.4개에서 2015년 4.5개로, 문예회관을 제외하고 그 수가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도서시설 > 전시시설 > 생활문화시설(지역문화복지시설) > 공연시설의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수에다가 대학 및 사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수를 더하면 2008년 14.3개에서 2015년 20.3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별 문화시설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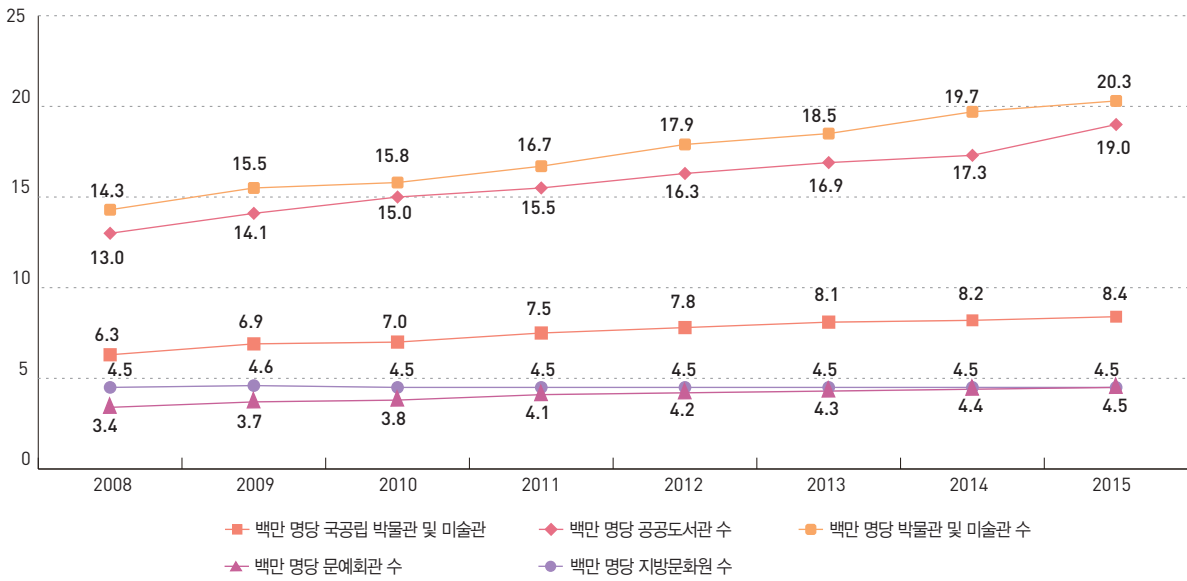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했을 때, 인구 100만 명당 공공도서관의 수는 2008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70.6개, 미국이 30.3개, 일본이 24.8개인데 비해 한국은 13.0개로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의 수가 매우 적다. 인구 100만 명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 역시 미국이 61.6개(2002년 기준), 일본이 36.9개(2008년 기준), 프랑스가 19.3개(2010년 기준)인데 비해 한국은 17.9개(2012년 기준)로 매우 적게 나타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03	2015	1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08	2015	1개월

그림 10-12 인구 100만 명당 유형별 문화기반시설의 수 (2008~2015)

(단위: 개)



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전체와 국공립만의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표 10-4 해외 주요 문화선진국의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비교

(단위: 개)

구분	인구 100만 명당 공공도서관(2008)	인구 100만 명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
미국	30.3	61.6 (2002년)
프랑스	70.6	19.3 (2010년)
일본	24.8	36.9 (2008년)
한국	13.0	17.9 (2012년)

주: 한국 자료는 재구성하였음. 해외 자료와의 동등한 비교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는 국공립과 사립, 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한 수로 계산(2013년 기준 944개)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연구, 2011  
 2)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ies per Million People

## 지표 정의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대비 공공체육시설의 수로 정의한다. 인구대비 공공체육시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체육 및 여가 시설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공공 체육시설 수}}{\text{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text{만}$$

공공체육시설은 건전한 신체·정신 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2008년 249.1개에서 2015년 444.8개에 이르렀다. 이를 공공체육시설을 1인당 면적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2008년 2.5㎡에서 2014년 4.0㎡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3.9㎡로 조금 줄어들었다.

2015년 지역별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약 1,259개로 가장 많았고, 울산시가 245개로 가장 적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광주를 제외한 대도시권역이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2015년 유형별 인구 100만 명당 체육시설의 수는 간이운동장이 335.8개로 가장 많았고, 기타(59.7개), 체육관(17.8개), 축구장(17.4개), 테니스장(14.1개)의 순으로 나타난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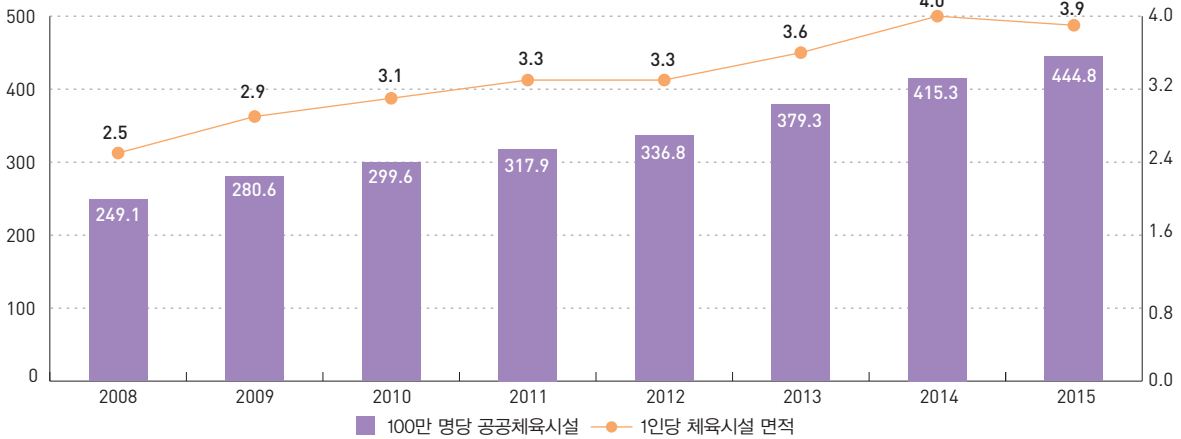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04	2015	1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08	2015	1개월

### Checkpoint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는 1년 주기로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에서 제시하는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015년도에 444.8개로 2014년 415.3개 보다 29.5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세종,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개 지역 모두 인구 증가에 비해 시설 수의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의한 것이다.

그림 10-13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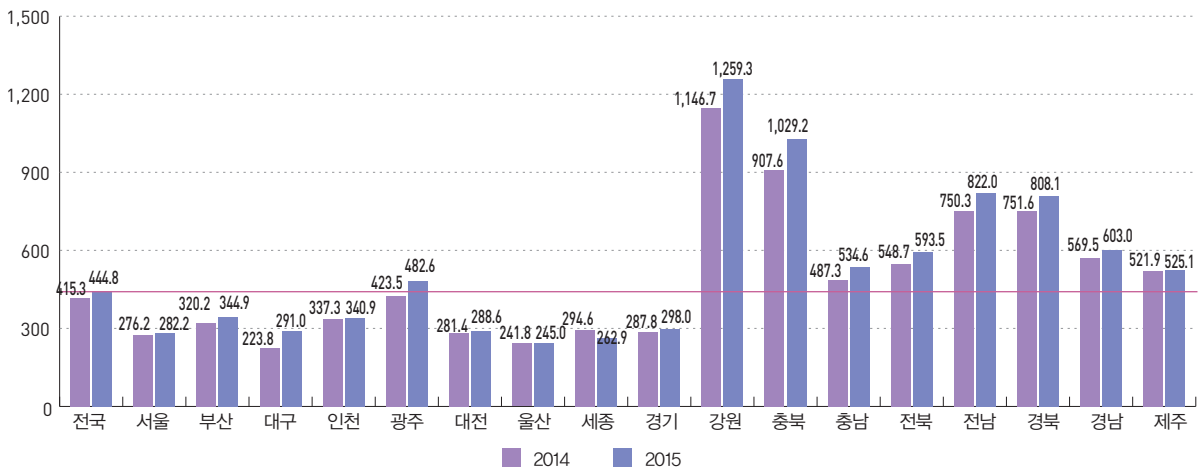
(단위: 개, m<sup>2</sup>)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각 연도

그림 10-14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체육시설의 수 (201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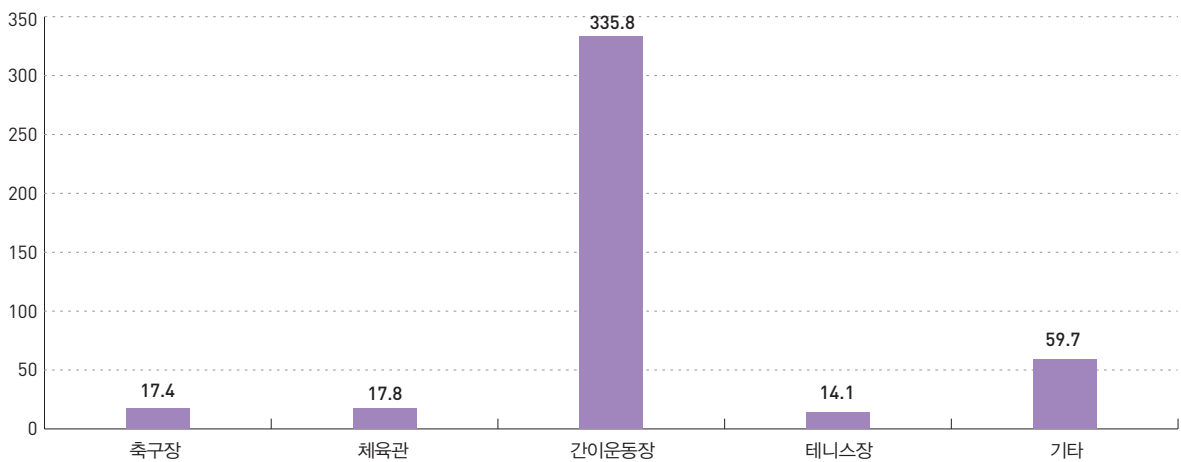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그림 10-15 유형별 인구 100만 명당 체육시설의 수 (2015)

(단위: 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Annual Utilization Rate on Art Space

## 지표 정의

본 지표는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공간(도서관, 박물관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간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공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만 15세 이상 국민 수}}{\text{15세 이상의 국민의 수}} \times 100$$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 예술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을 조사하고 있다. 2006년 41.9%에서 2008년 45.2%, 2010년 52.2%로 증가하다가 2012년 39.4%로 크게 줄었지만 2014년 52.0%로 다시 증가하였다. 문화 예술공간 이용 횟수는 2006년 3.5회, 2008년 4.3회, 2010년 6.1회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2년 4.3회, 2014년 4.0회로 감소하였다

2012년 기준 인구특성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가 54.6%로 남자(49.3%)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57.1%로 고졸(49.7%), 초졸(48.6%), 중졸(48.1%)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40대 이상에서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이 54.6%로 중소도시(52.1%)와 대도시(50.9%)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월평균소득별로 살펴보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문화예술공간 평균이용률을 하회했고, 300만 원 이상 가구는 평균이용률을 상회했다.

연도별 문화예술공간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시·군·구민회관 이용률은 2003년 9.6%에서 2008년 12.0%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11.5%, 2012년 8.0%로 감소하였지만, 2014년 8.8%로 다소 증가하였다. 문화예술회관은 2003년 11.6%에서 2010년까지 11.5%로 비슷하게 유지하다가 2012년 6.6%, 2014년 6.0%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도서관은 2003년 16.0%에서 2006년 12.8%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20.5%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2년 12.8%, 2014년 10.4%로 감소했다. 박물관은 2003년 11.5%에서 2010년 14.8%까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2012년 9.3%로 하락했으나, 2014년에 16.6%로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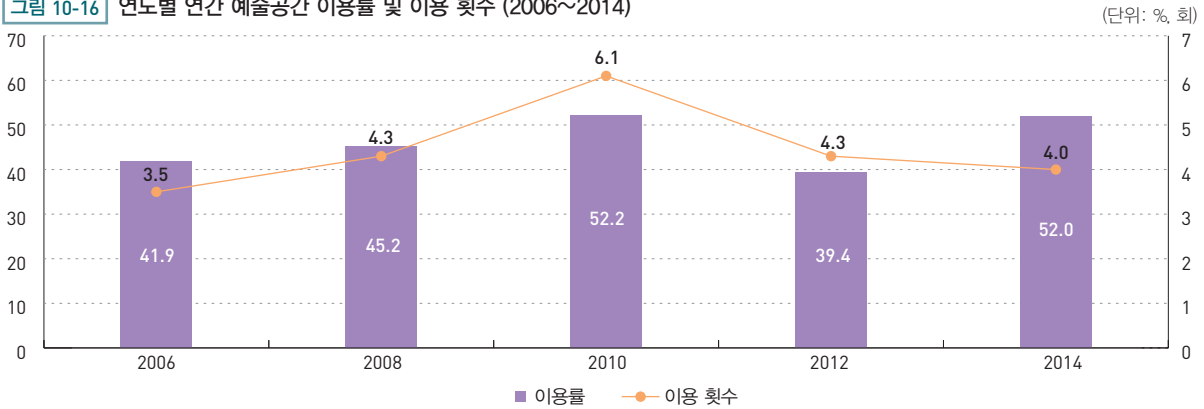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4	2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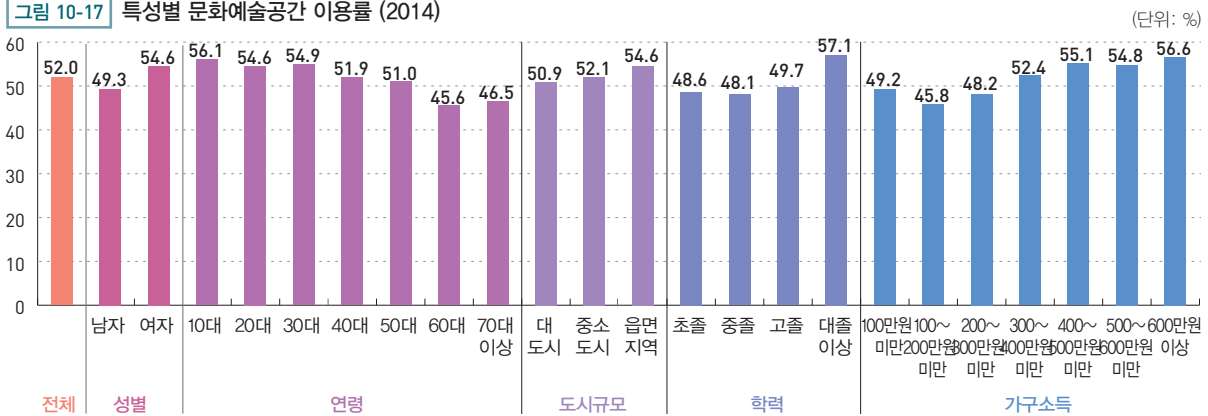
2014년도에 새로 작성한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은 2년 주기로 생산되는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생산되는 데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2014년도 예술공간 이용률은 52.0%로 2012년 39.4%에 비해 12.6%p 증가하였지만, 이용 횟수는 2014년도 4.0회로 2012년 4.3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16 연도별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및 이용 횟수 (2006~20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17 특성별 문화예술공간 이용률 (20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표 10-5 연도별 문화예술공간별 이용률 (2003~2014)

문화시설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전체	38.9	41.9	45.2	52.2	39.4	52.0
시/군/구민회관	9.6	11.2	12.0	11.5	8.0	8.8
문화예술회관	11.6	11.3	11.5	11.5	6.6	6.0
복지회관	5.5	7.5	7.7	11.4	4.6	4.5
청소년회관	4.4	3.6	4.4	4.2	5.1	2.2
문화원	2.4	2.1	2.1	2.1	2.7	1.2
도서관	16.0	12.8	16.2	20.5	12.8	10.4
박물관	11.5	12.3	12.1	14.8	9.3	16.6
문화의집	-	-	-	1.2	1.0	0.4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1.8	1.4	1.7	1.7	1.4	1.4
시설문화센터	4.6	4.6	5.5	6.0	5.3	7.7
주민자치센터	-	-	-	-	9.2	33.9

주: 문화의 집은 2010년 조사부터, 주민자치단체와 민간공연장은 2012년 조사부터 추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Annual Cultural Arts Activities

## 지표 정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창작·발표활동 등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율로 정의한다.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성격을 가지며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 창작 참여기회의 제공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국민의 수}}{\text{15세 이상의 국민의 수}} \times 100$$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예술활동 중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공연하였거나 작품을 만든 경험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단,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를 제외한 단순 방송출연행위는 제외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문화예술(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 관련 창작·발표활동 참여율은 2008년 2.4%에서 2010년 2.2%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2년 3.7%, 2014년 4.7%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장르별로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 참여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미술활동 참여율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극활동 참여율 1.4%, 뮤지컬 1.2% 순이다. 그 외 장르의 참여율은 문학 0.9%, 대중음악 0.8%, 서양음악 0.4%, 영화 0.3%, 무용 0.2%, 전통예술 0.2% 등 모두 1% 미만이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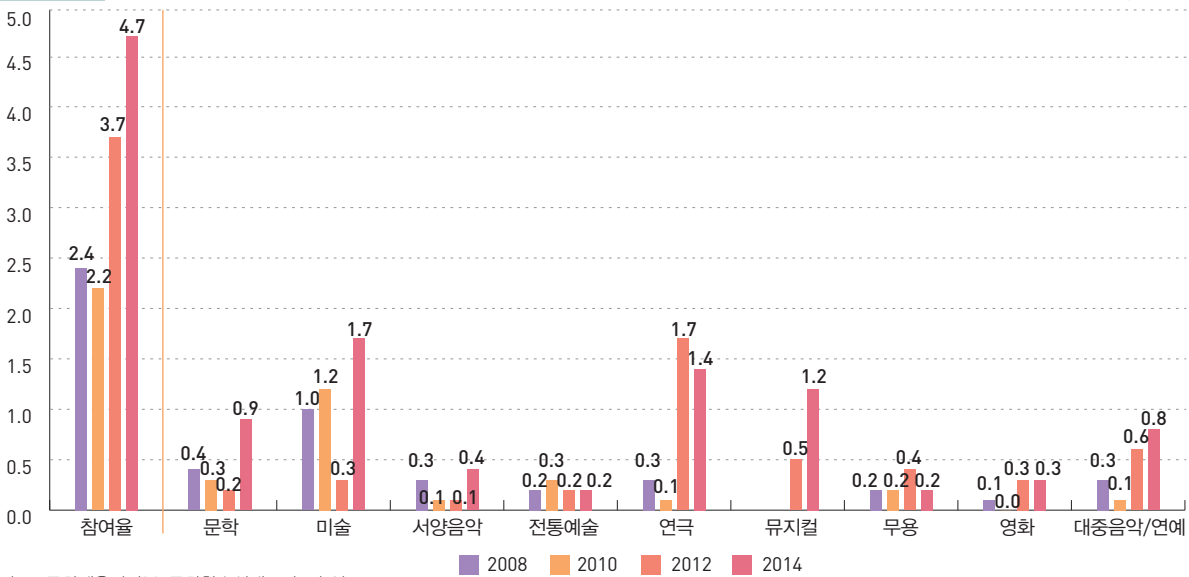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4	2년

## Checkpoint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통하여 2년 주기로 산출되는 지표이다. 2012년 지표와 비교할 때 미술이 0.3%에서 1.7%로 크게 증가하여 가장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도에는 연극이 1.7%로 1.0%가 넘는 유일한 분야였지만, 2014년도에는 미술(1.7%), 연극(1.4%), 뮤지컬(1.2%)로 3개의 분야에서 1.0%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그림 10-18 연도별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 (2008~201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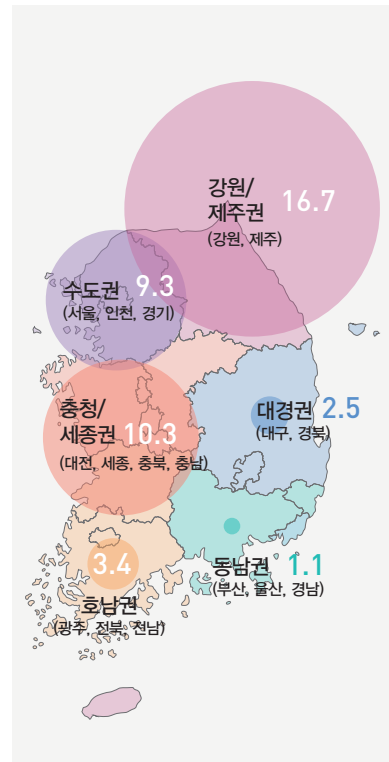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표 10-6 특성별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 (2014)

(단위: %)

구분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전체	0.9	1.7	0.4	0.2	1.4	1.2	0.2	0.3	0.8	
성별	남성	0.6	1.7	0.3	0.1	1.7	1.1	0.1	0.5	0.8
	여성	1.2	1.7	0.5	0.2	1.2	1.2	0.2	0.1	0.9
연령	15~19세	0.7	2.2	1.3	-	2.4	0.7	-	0.4	1.5
	20대	0.7	2.2	0.2	0.1	3.7	2.7	0.1	0.7	1.9
	30대	1.1	2.7	0.5	-	1.8	1.7	0.3	0.1	1.0
	40대	1.2	1.5	0.3	0.2	0.8	0.6	0.1	0.3	0.7
	50대	1.1	1.3	0.4	0.3	0.5	1.0	0.3	0.2	0.3
	60대	0.7	0.6	0.4	0.1	0.3	0.3	0.2	0.2	-
	70세 이상	0.4	0.7	-	0.6	-	-	0.1	-	-
학력	초졸 이하	0.7	1.2	0.3	0.4	0.8	-	0.2	0.1	0.4
	중졸	0.3	1.1	0.9	0.3	0.5	0.2	0.1	0.2	0.6
	고졸	0.8	1.3	0.2	0.2	1.5	1.0	0.1	0.3	0.6
가구 소득	대졸 이상	1.3	2.5	0.5	0.1	1.8	2.0	0.3	0.4	1.3
	100만 원 미만	0.4	1.0	-	0.6	0.2	0.1	-	0.1	0.1
	100~200만 원	0.8	0.5	0.6	0.1	0.9	0.6	0.3	0.1	0.4
	200~300만 원	1.1	1.6	0.4	0.1	0.9	0.5	0.2	0.4	0.8
	300~400만 원	0.4	1.4	0.2	0.2	1.5	1.1	0.2	0.2	0.7
	400~500만 원	1.2	2.0	0.6	0.1	1.9	1.6	0.1	0.3	0.9
	500~600만 원	1.6	2.2	0.5	0.1	2.1	1.6	0.1	0.3	0.9
	600만 원 이상	0.8	3.5	1.0	0.3	2.4	2.7	0.5	0.8	2.2
권역	무응답(*)	-	16.7	-	-	-	-	-	-	-
	수도권	1.2	2.4	0.4	0.1	2.3	1.6	0.1	0.2	1.0
	강원/제주권	2.5	3.4	2.3	1.2	1.3	1.2	0.8	1.9	2.1
	충청/세종권	1.3	1.7	0.7	0.2	1.1	2.3	0.6	0.6	1.8
	호남권	0.5	0.8	0.2	0.3	0.6	0.5	0.1	0.2	0.2
	대경권	0.2	0.7	0.2	0.4	0.3	0.2	0.2	0.1	0.2
지역 규모	동남권	0.2	0.3	-	-	0.2	0.1	-	0.0	0.3
	대도시	1.0	2.1	0.4	0.1	2.3	1.5	0.1	0.2	1.0
	중소도시	0.8	1.3	0.5	0.2	0.7	0.8	0.2	0.3	0.6
읍면지역	0.7	1.4	0.3	0.2	0.8	1.0	0.3	0.4	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 생활체육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Sport for all

## 지표 정의

생활체육참여율은 전체 응답자 중 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다.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 만 10세 이상 국민의 수}}{\text{해당 연도 만 10세 이상의 국민 수}} \times 100$$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는 국민의 생활체육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여 국가의 체육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문항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2~3번 정도’, ‘1주일에 1번’ ~ ‘매일’의 범주로 묻고 있다. 이 중 1주일에 1번 이상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2000년대 이후 50% 전후로 변동하고 있는데, 2012년(43.2%)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56.0%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8년 53.2%까지 증가하였지만, 2014년에는 34.5%, 2015년 34.4%로 감소하였다

2015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체육활동 종목은 걷기가 3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등산(23.0%), 보디빌딩(12.0%), 축구(8.1%), 자전거(7.7%), 수영(6.2%), 배드민턴(5.3%), 요가(4.7%), 농구(3.3%), 골프(3.0%) 등의 순이었다.

2015년 기준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규모에서는 중소도시(56.8%), 읍면지역(56.3%), 대도시(55.1%)의 순이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58.2%로 여자(53.8%)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61.2%)가 가장 높았으며, 10대(49.0%)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1994	2015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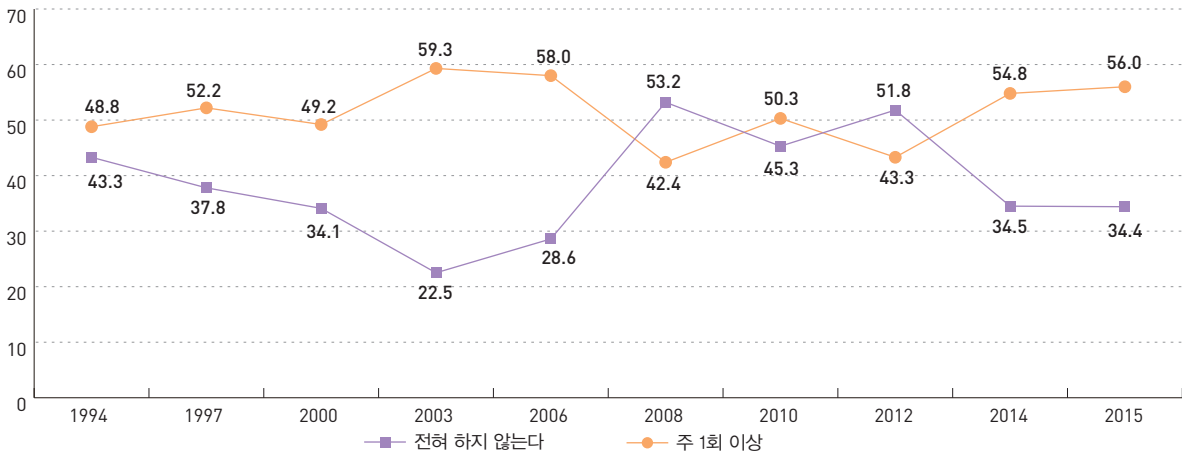
## Checkpoint

‘생활체육참여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지표이다. 작성주기는 2년 주기였다가, 2015년(2014년 기준 조사)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되었다. 2015년도에 생활체육 참여율은 56.0%로 2014년 45.8%에 비해 10.2%p 증가하였다.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 성별, 도시규모, 연령 등에서 격차가 많이 줄었으며, 2014년도와 달리 남자가 여자보다 생활체육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012년까지는 2년 주기, 2013년 조사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그림 10-19 연도별 생활체육 참여율 (199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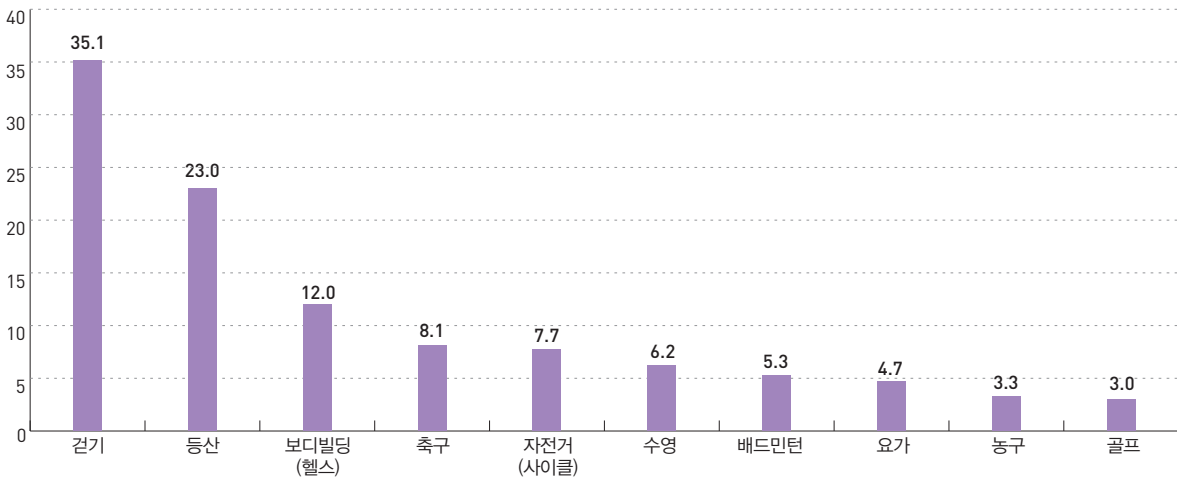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20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상위 10개 종목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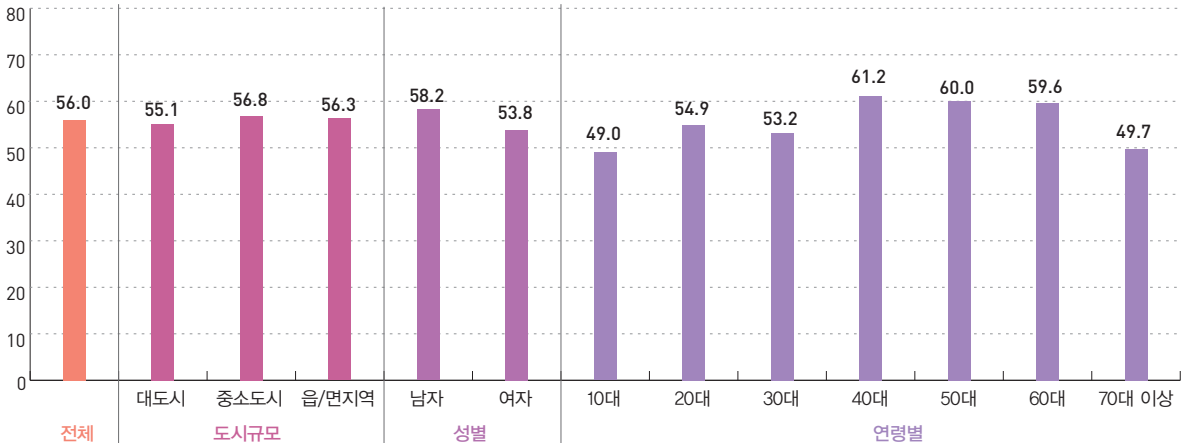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5

그림 10-21 특성별 주 1회 이상 생활체육참여율 현황 (2015)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5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Lifetime S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지표 정의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에서 산출되는 통계로, 등록장애인들 중 생활체육 실행자\*에 해당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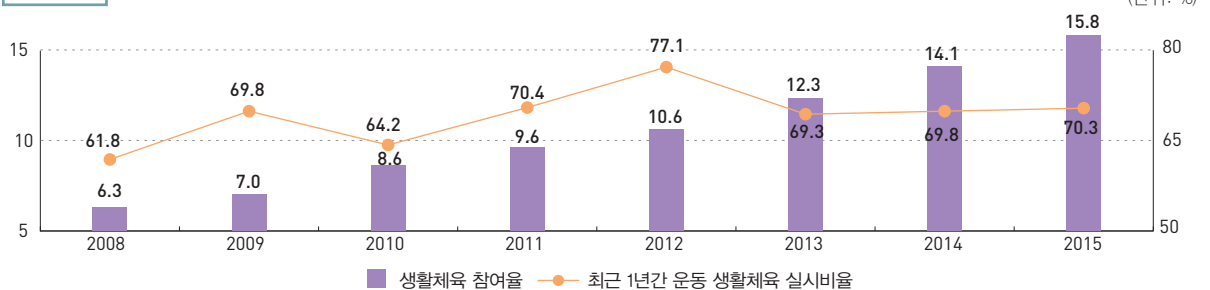
##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 장애인생활체육 실행자로 추정된 수}}{\text{해당 연도 등록 장애인 수}} \times 100$$

생활체육 실행자의 비율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참여율은 2008년 6.3%에서 2015년 1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생활체육을 참여한 비율은 2008년(61.8%)부터 2012년(77.1%)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였으나, 2013년 69.3%로 하락한 이후 매년 0.5%p씩 소폭 상승하여 2015년에는 70.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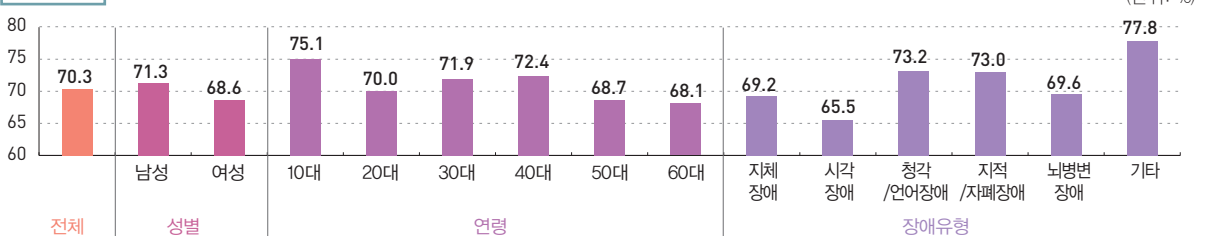
특성별로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71.3%로 여자(68.6%)보다 더 높았으며, 연령에서는 10대가 75.1%로 가장 높고, 60대가 6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 생활체육 참여율은 기타(77.8%), 청각/언어장애(73.27%), 지적/자폐장애(73.0%), 뇌병변장애(69.6%), 시각장애(6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0-22 생활체육 참여율과 최근 1년간 운동 생활체육 실시비율 (2008~20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23 특성별 생활체육 최근 1년간 운동 실시비율 (20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2015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2006	2015	1년

\* 생활체육 실행자는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3회 이상 운동,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로 정의한다.

#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Benefit Rate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 지표 정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초·중·고등학교와 학생의 비율로 정의한다.

문화예술 경험 기회 및 향유능력 제고, 공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bullet \text{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학교 비율} = \frac{\text{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학교 수}}{\text{전체 초·중·고등학교 수}} \times 100$$

$$\bullet \text{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비율} = \frac{\text{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text{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times 100$$

유의사항 각 출처별로 통계를 산출하였으므로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등 기초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 및 장르의 문화예술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과과정 및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문화예술강사(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의 8개 분야)를 파견하여 교육하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강사를 지원받은 수혜학교의 비율은 2000년 5.4%에서 2004년 41.5%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6년 22.5%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70.7%에 달했다. 지원예산은 2000년 5억 원에서 2015년 52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학생의 비율도 또한 2011년 25.2%(176만 명)에서 2015년 42.0%(266만 명)로 증가하였다.

2015년까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장르별 지원 시수를 살펴보면 국악이 약 64만 8천 시수, 연극이 약 22만 2천 시수, 영화가 약 5만 5천 시수, 무용이 약 28만 8천 시수, 만화/애니메이션이 약 13만 1천 시수, 공예가 약 5만 3천 시수, 사진이 약 2만 2천 시수, 디자인이 3만 7천 시수로 나타났다. 장르별 강사 수를 살펴보면 국악이 1,961명, 연극이 822명, 영화가 234명, 무용이 967명, 만화/애니메이션이 470명, 공예가 224명, 사진이 87명, 디자인이 151명이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2005	2015	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5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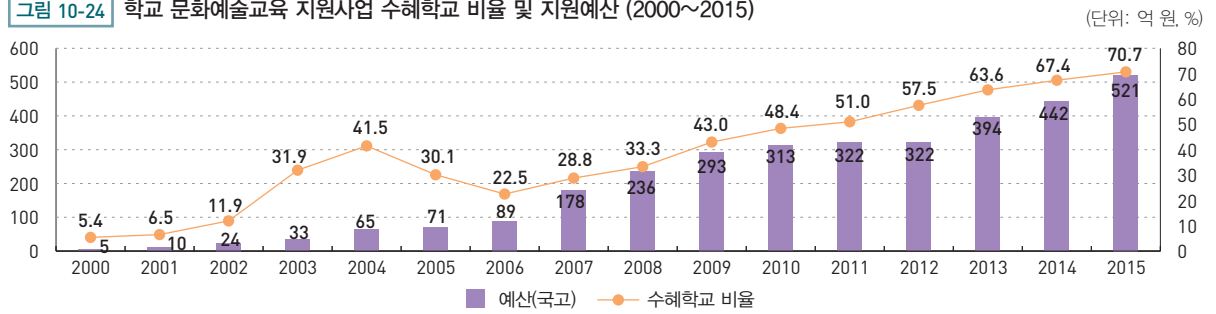
'학교 문화예술 수혜율'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하여 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의 수를 통하여 산출되는 지표이다. 2015년도 예산이 521억, 수혜학교 비율이 70.7%, 수혜학생 비율이 42.0%로 2013년도 예산 442억, 수혜학교 비율 67.4%, 수혜학생 비율 40.0%에 비해 모든 면에서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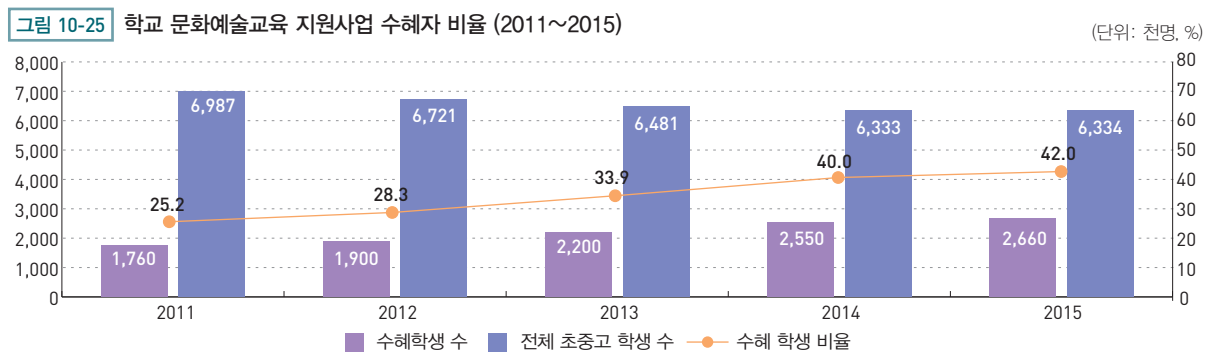


그림 10-24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혜학교 비율 및 지원예산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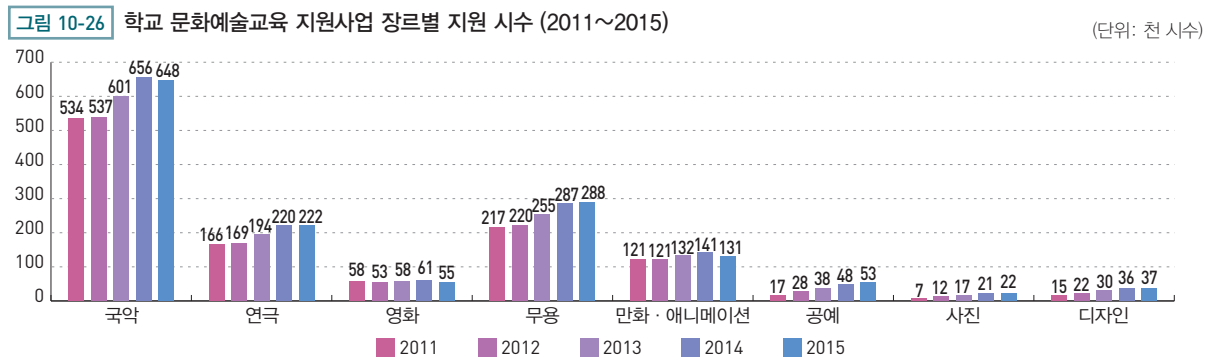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각 연도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그림 10-25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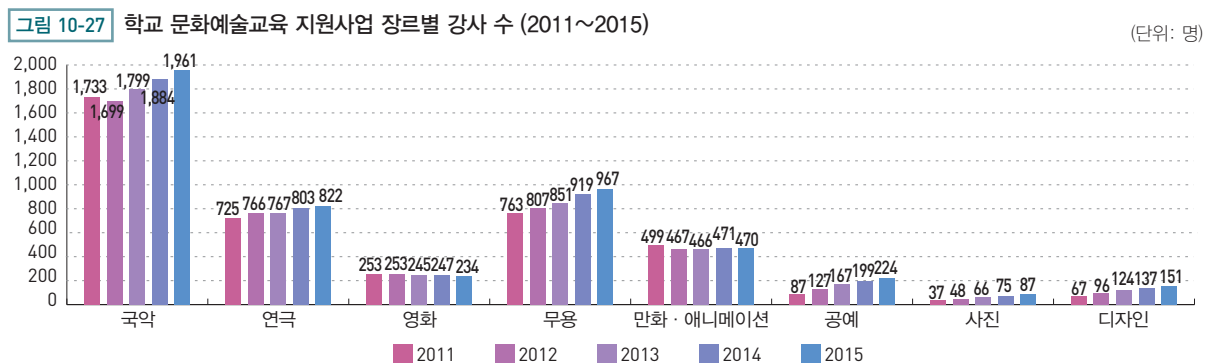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각 연도

그림 10-26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장르별 지원 시수 (2011~20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각 연도

그림 10-27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장르별 강사 수 (2011~20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각 연도

#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Experience Rate of Social Arts and Culture Education

## 지표 정의

본 지표는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강좌나 강습(온라인 교육, 방송교육 포함)의 형태로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초·중·고등학교 정규 학교교육 외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안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수준, 문화예술 향유능력 개발의 기회 정도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간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만 15세 이상 국민 수}}{\text{15세 이상의 국민의 수}} \times 100$$

1991년부터 실시된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의 비율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2006년 7.7%, 2008년 8.6%, 2010년 9.2%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 8.7%, 2014년 6.9%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장르별로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면, 문학(2.1%), 미술(1.9%), 서양음악(1.5%), 역사문화유산(1.4%), 영화(1.3%), 대중음악(0.8%), 전통예술(0.6%), 음악(0.5%), 무용(0.4%), 뮤지컬(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도시규모, 학력,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7.9%로 남성(5.9%)보다 높았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10대가 13.3%로 가장 높았고, 20대(11.3%), 30대(7.2%), 40대(5.3%), 50대(4.8%), 60대(3.8%), 70대(3.6%)로 어릴수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는 중소도시가 11.9%로 대도시(10.7%), 읍면도시(7.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이 9.1%로 중졸(7.5%), 고졸(5.6%), 초졸 이하(4.6%)보다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지난 1년 동안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4.4%로 나타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경험률은 증가하여,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경험률은 13.8%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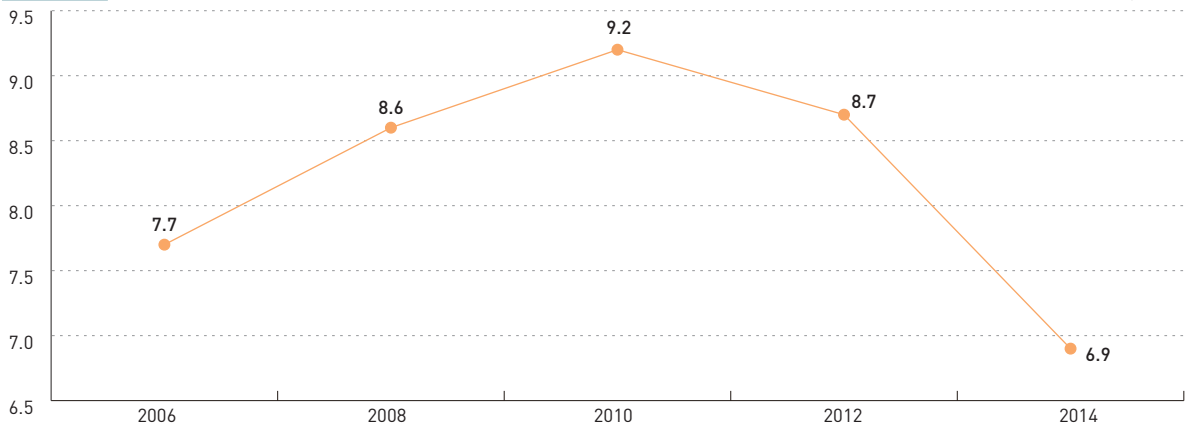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4	2년

### Checkpoint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통하여 2년 주기로 작성되는 통계이다. 2014년도에 6.9%의 경험률로 2012년에 8.7%에 비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소득수준에 600만 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였다. 사회문화예술 경험률은 연령이 어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28 연도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6~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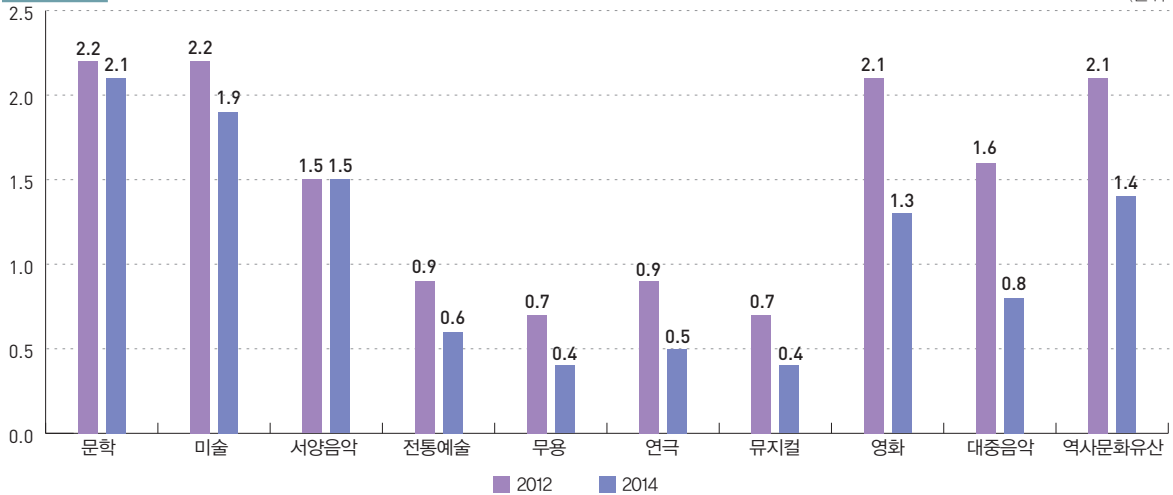
(단위: %)



주: 2010년 이전의 자료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경험률이며, 2012년은 지난 1년 동안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29 문화장르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장르별 경험률 (2012,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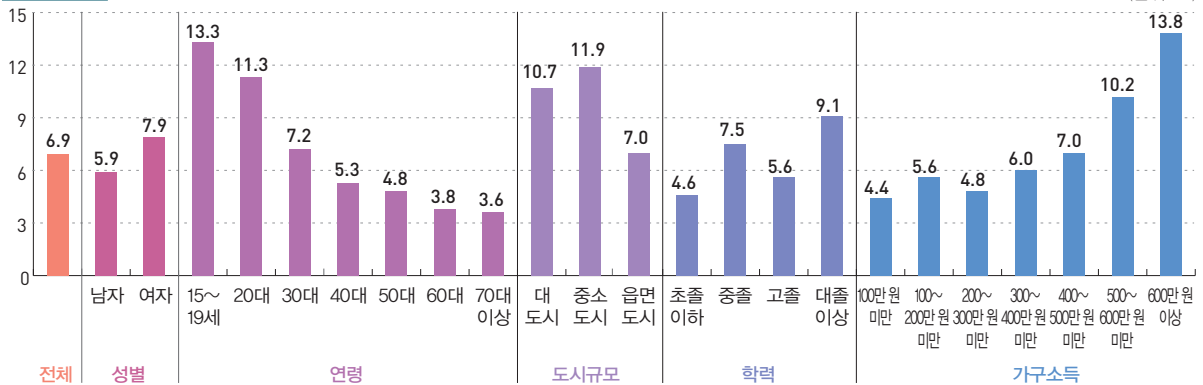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30 특성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14)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014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Benefit Rate of Integrated Cultural Voucher

## 지표 정의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인구 대비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여 문화여가를 향유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각 사업은 차상위계층을 수혜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본 통계는 기초수급자를 모수로 하여 추정하였으므로 실제보다 수혜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text{기초생활수급자 수}} \times 100$$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범위 내에서 공연·전시·영화를 관람하거나 음반·도서구입 또는 국내여행과 프로스포츠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3년까지는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으나, 2014년부터 이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통합 시행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수혜자 수\*\*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대략 2010년 48.7만 명(31.4%)에서 2013년 173만 명(128.0%)로 증가하였다가 문화누리카드로 통합되면서 카드당 금액 조정과 예산한도 등으로 인해 2014년 147.5만 명(111.0%) 이용에서 2015년 137.8만 명(58.1%)로 줄어들었다.

2015년 기준 분야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문화분야 이용이 88.6%로 가장 많았고, 여행이 11.3%, 스포츠가 0.1%의 순으로 높았다. 승인 금액 비율을 살펴보면, 문화분야가 89.89%, 여행이 9.98%, 스포츠가 0.12%의 비율로 나타났다. 세부분야별 이용 건수는 영화가 가장 많았고, 도서, 문화일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용 금액은 도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화, 문화일반의 순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보고	2010	2015	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1977	2015	1년

### Checkpoint

2013년도부터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용권 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2014년도부터는 문화누리카드로 통합되어 활용도가 더욱 확대되었다. 2015년 수혜자는 137.8만 명으로 2014년 147.5만 명에 비해 9.7만 명 감소하였다.

\* 각 이용권 사업의 수혜자 수는 카드수혜자 수와 기획사업 수혜자 수를 모두 포함되며, 20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통합됨.

\*\* 2013년까지의 통계는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수혜자를 합친 통계이고, 2014년 통계는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의 통계임.

표 10-7 문화·여행·스포츠관광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와 수혜자 비율 (2011~2015)

(단위: 명, %)

표 구분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수혜자 수	기초수급자 대비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기초수급자 대비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기초수급자 대비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기초수급자 대비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기초수급자 대비 수혜자 비율
문화이용권	1,173,711	79.9	1,605,115	115.1	1,638,737	121.3				
여행이용권	51,159	3.5	63,400	4.5	68,333	5.1	1,475,316	111	1,378,368	58.11
스포츠관광이용권	15,775	1.1	23,943	1.7	22,55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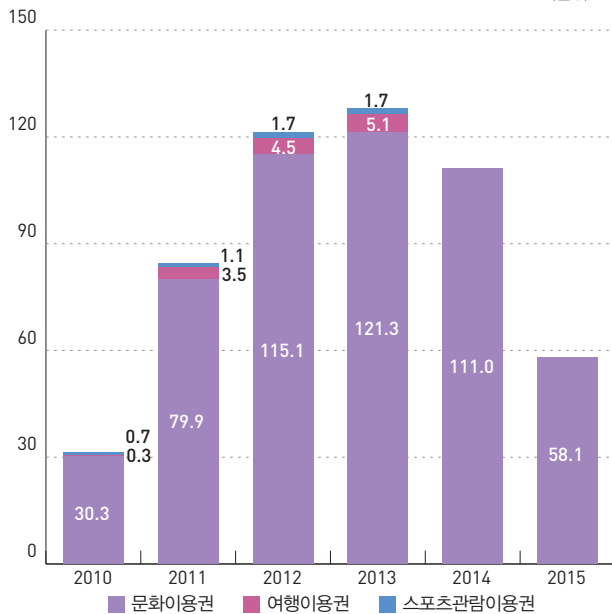
주: 이용권 사업은 각각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 수혜자 비율은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수 있음.

자료: 1) 수혜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이용권, 스포츠관광이용권, 여행이용권 사업보고, 각 연도

2) 기초생활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 연도

그림 10-31 문화·여행·스포츠관광이용권 사업 기초수급자 대비 수혜자 비율 (2010~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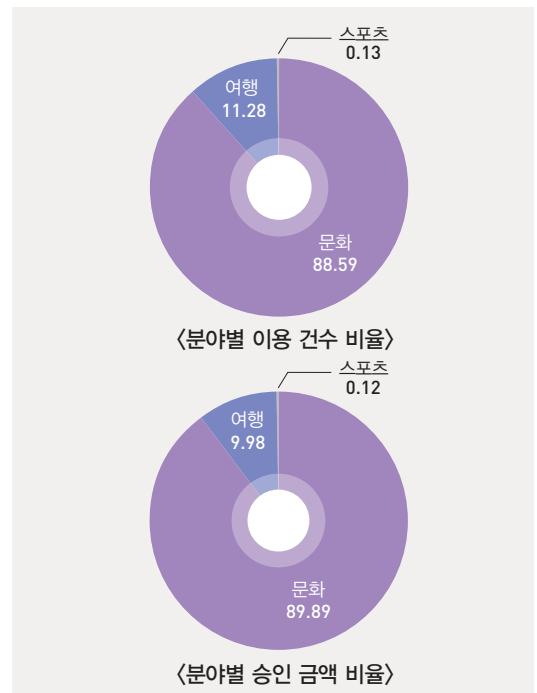


주: 이용권 사업은 각각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 수혜자 비율은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수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보고, 각 연도

그림 10-3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분야별 이용 비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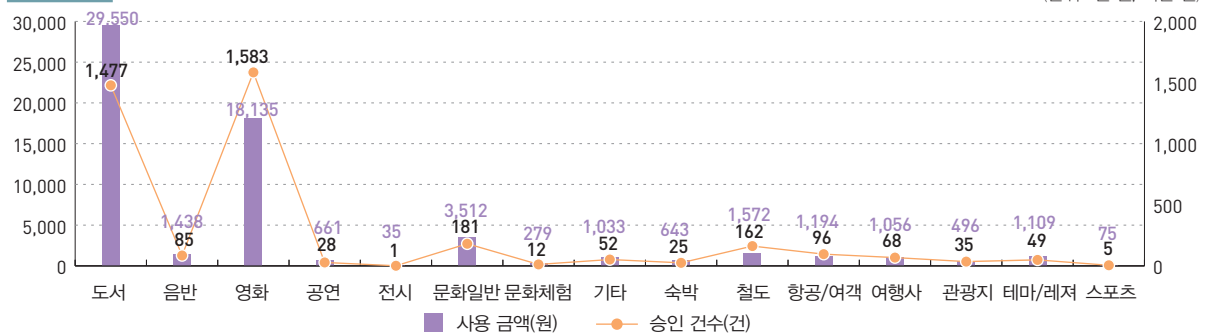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성과분석 연구, 2015

그림 10-3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세부분야별 이용 건수와 승인 금액 (2015)

(단위: 천 건, 백만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성과분석 연구, 2015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Benefit Rate of Sports Class Voucher

## 지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만 5~18세 유소년 및 청소년들 중 스포츠바우처 지정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만 5~18세 유소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차상위계층(동일 연령대)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어 실제보다 수혜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text{기초생활수급자 만 5 ~ 18세 유·청소년의 수}} \times 10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만 5~18세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바우처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전국의 스포츠바우처 지정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도록 하여 소외계층에게 건전한 여가 및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복지 프로그램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사업을 확산하여 본격 추진하였는데, 이를 보면 시범사업의 기간은 예산과 수혜자 수, 수혜 비율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예산이 7.9억 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7.2% 증가하였고, 수혜자 수도 1,535명 증가하여 전년대비 5% 증가하였고, 만족도도 1.3점 증가하였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	2009	2015	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1977	2015	1년

### Checkpoint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2008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2011년도까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2015년도는 예산이 117.6억 원으로 2014년도에 비해 약 7.9억 원, 7.2% 증가하였으며, 수혜자 수와 수혜 비율도 각각 1,535명, 3.0%p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

표 10-8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와 수혜자 비율 (200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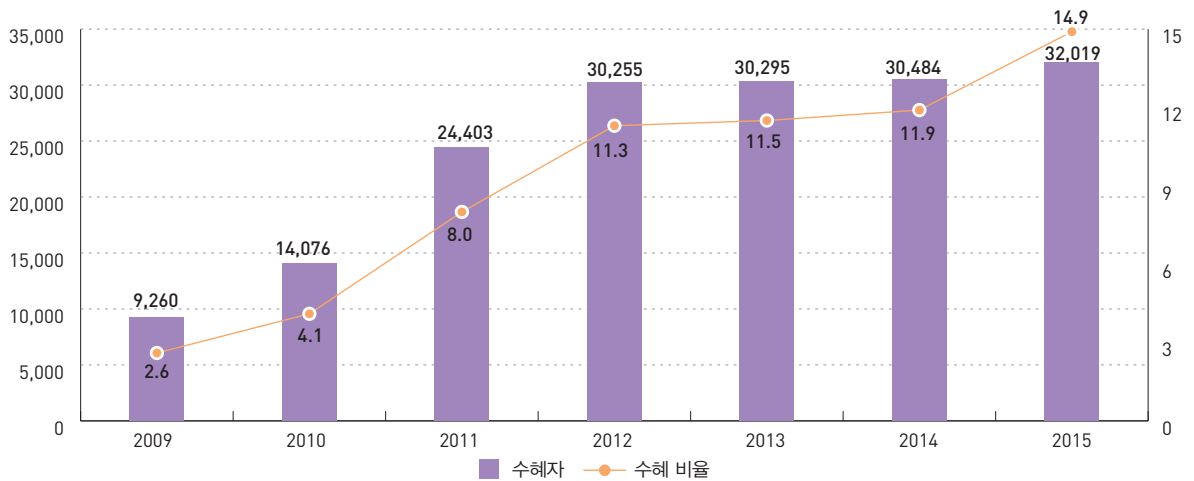
(단위: 명, %, 억, 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혜자	9,260	14,076	24,403	30,255	30,295	30,484	32,019
수혜 비율	2.6	4.1	8.0	11.3	11.5	11.9	14.9
예산	19.6	30	86.2	105.8	105.8	109.7	117.6
만족도	75.2	79.2	80.8	83.1	83.8	84.5	85.8

주: 이용권 사업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 수혜자 비율은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수 있음.  
 자료: 수혜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보고

그림 10-34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및 수혜율 (200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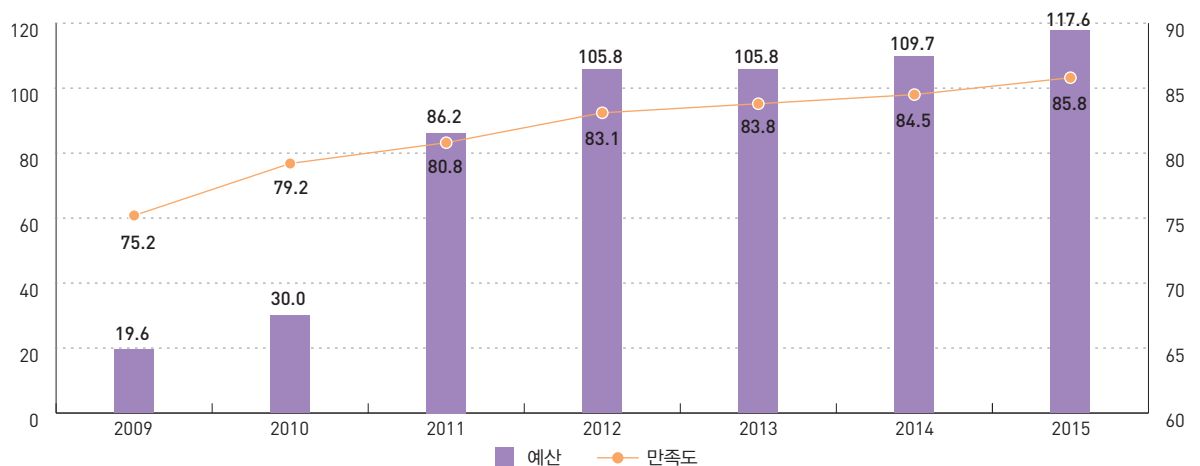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주: 이용권 사업은 각각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 수혜자 비율은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수 있음.  
 자료: 수혜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보고

그림 10-35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및 만족도 (2009~2015)

(단위: 억 원, 점)



주: 만족도는 수혜자들 중 표본을 선정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수혜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보고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Number of Elderly Cultural Programs beneficiary

## 지표 정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지방문화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로 측정한다.

고령화시대 어르신세대의 여가기회 및 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

2005년부터 실시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세대의 여가기회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2005년 364명에서 2015년 14,04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액도 2005년 2.4억 원에서 2015년 38.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수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를 살펴보면 2005년 10개의 문화원에서 10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2015년에 262개의 문화원에서 435개의 프로그램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71.5%로 남자(28.5%)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권역별로는 서울/경기(30.5%), 영남(29.7%), 호남/제주(24.1%), 강원/충청(15.7%)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서울/경기와 영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수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문화기획자 교류지원을 제외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421개에서 14,042명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하나당 평균 33.4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어르신 문화학교(199개), 문화나눔 봉사단(105개), 문화동아리 활성화(89개) 등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보고	2005	2015	1년

## Checkpoint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참가자 수로 파악하는 지표이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2015년 현재 전국 262개 문화시설에서 14,042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여, 어르신 세대의 여가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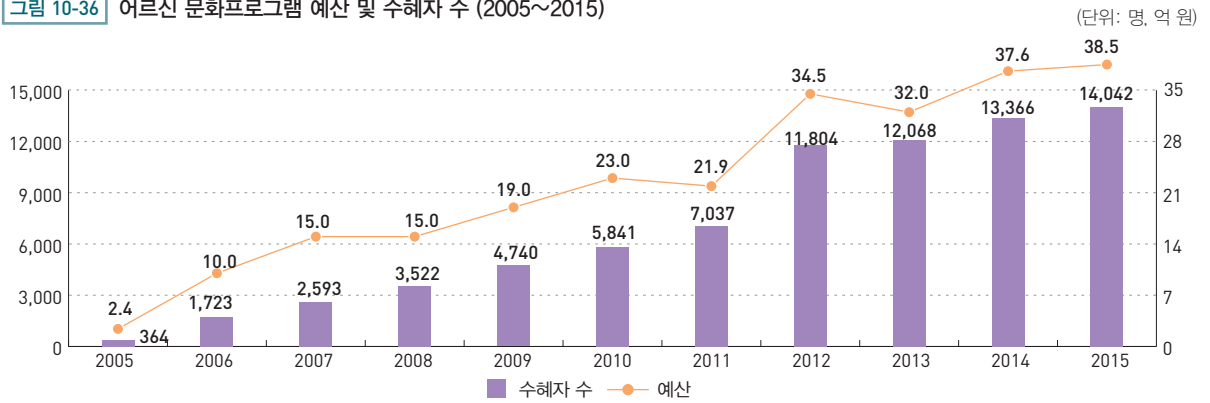
2015년도에는 201년도에 비해 참여문화원이 295개에서 262개로 줄었지만, 프로그램 수는 415개에서 435개로 증가하여 참여의 기회가 크게 증가하여, 수혜자 수도 13,366명에서 14,042명으로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연구, 2015



그림 10-36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예산 및 수혜자 수 (2005~20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어르신 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연구, 2015

표 10-9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예산 및 수혜자 수 (2005~2015)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지원액	2.4	10.0	15.0	15.0	19.0	23.0	21.9	34.5	32.0	37.6	38.5
참여문화원 수	10	50	76	100	137	134	149	198	193	295	262
프로그램 수	10	50	76	100	137	183	202	334	311	415	435
수혜자 수	364	1,723	2,593	3,522	4,740	5,841	7,037	11,804	12,068	13,366	14,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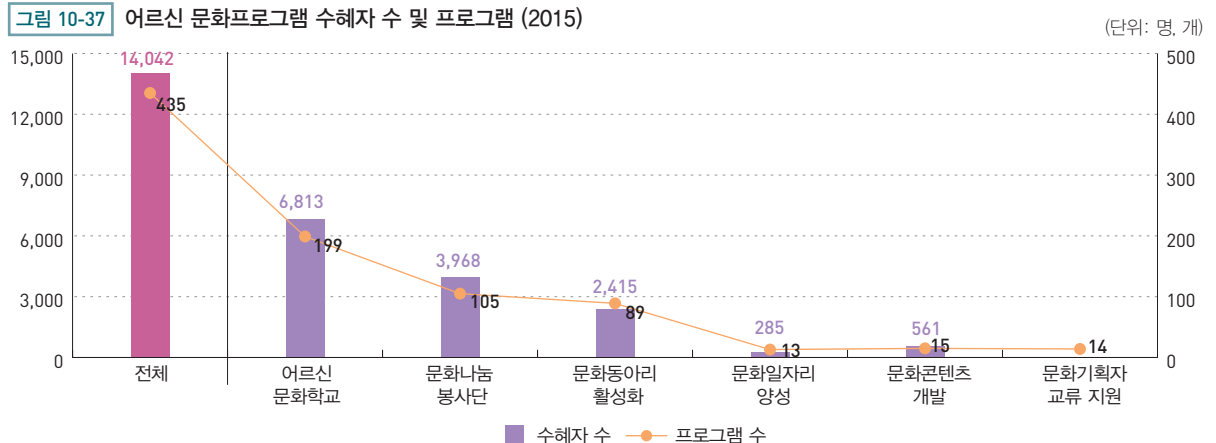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어르신 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연구, 2015

표 10-1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2015)

구분	수혜자 수	비율
성별	남자	4,003 (28.5%)
	여자	10,039 (71.5%)
권역별	서울/경기	4,284 (30.5%)
	강원/충청	2,203 (15.7%)
	영남	4,169 (29.7%)
	호남/제주	3,386 (2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 「지방문화원 어르신 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연구

그림 10-37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및 프로그램 (20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어르신 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연구, 2015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Benefit Rate of Disabled Sport Leaders Service

## 지표 정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수혜를 받은 비율로 정의된다.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확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자 수}}{\text{등록 장애인 수}} \times 100$$

과거 소외계층이었던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활에 만족해야 했으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기회의 확대로 인하여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주요 장애인체육시설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수혜자 수와 수혜율은 2010년 51.3만 명, 20.4%에서 2015년 113.0만 명, 45.3%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는 324명이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은 2,529개가 시행되었다. 지역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50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었고, 다음으로 경기(48명), 충남(34명)등의 순이었으며, 세종시는 4명으로 가장 적게 배치되었다. 프로그램 수는 서울이 33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북(288개), 충남(258개)의 순이었고, 세종시의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은 30개로 가장 적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보고	-	2015	1년
보건복지부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1989	2015	1년

### Checkpoint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국가와 지자체 매칭(50대 50)으로 2007년 21명이 최초 배치된 이후, 2015년 현재 324명이 전국에 배치되었으며, 장애인 1,130,411명(45.3%)이 수혜를 받았다. 이는 2014년도 보다 92,683명(3.7%p) 증가한 수치이다. 2013년도에는 세종시가 충남에 포함되어 통계가 제시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세종시의 통계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표 10-11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자 수와 수혜율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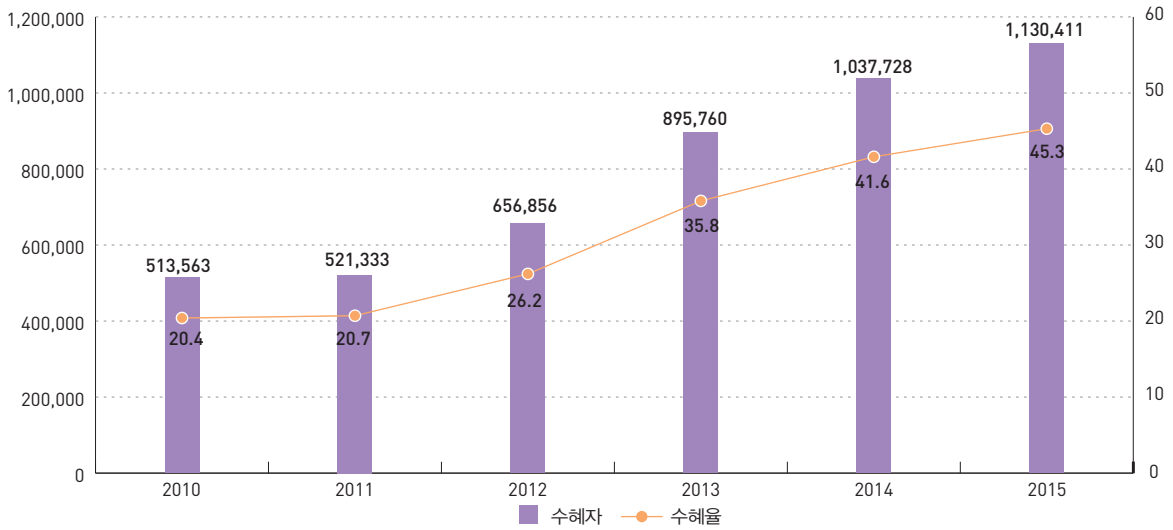
(단위: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혜자	513,563	521,333	656,856	895,760	1,037,728	1,130,411
수혜율	20.4	20.7	26.2	35.8	41.6	45.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보고

그림 10-38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혜자 수와 수혜율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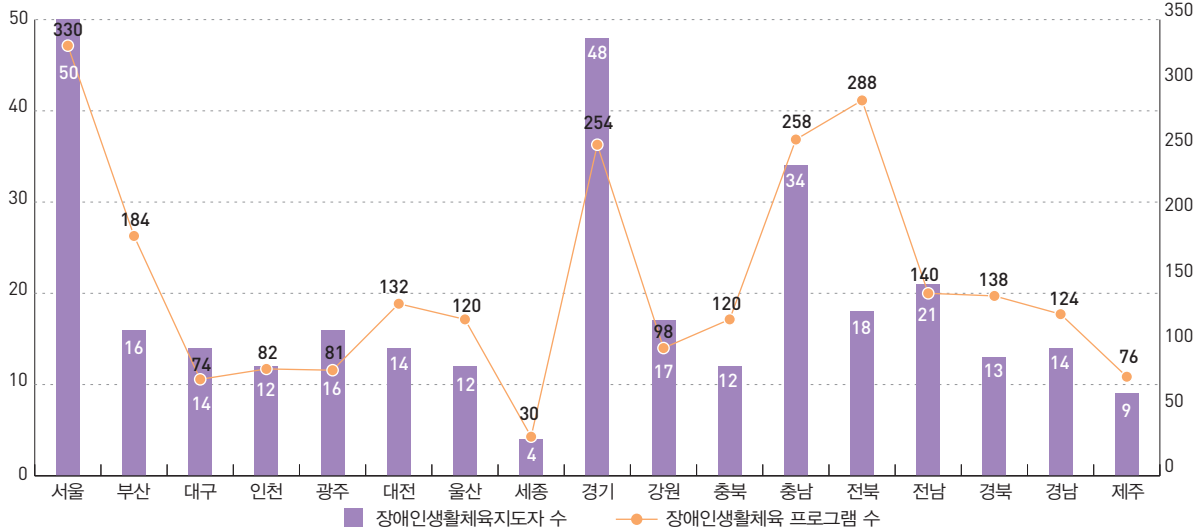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보고

그림 10-39 시도별 장애인 생활체육체육지도자 수와 장애인 프로그램 수 (2015)

(단위: 명, 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보고

# GDP 대비 문화예산

Cultural Budget for GDP

## 지표 정의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GDP로 나눈 값을 GDP 대비 문화예산\*으로 정의한다. GDP 대비 문화예산 비율을 통하여 정부예산 중 문화분야에 대한 지출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text{GDP}}$$

GDP 대비 문화예산은 문화 관련 정부지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은 2010년 3.9조에서 2015년에 6.1조로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다. GDP 대비 문화예산 비중 또한 2010년 0.31%에서 2015년 0.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좁은 의미의 정부의 문화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액은 2000년 0.9조에서 2015년 4.9조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예산 대비 비중은 2000년 (0.96%)에서 2009년(0.95%)까지 1%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1.54%에 이르렀다.

2015년도의 OECD의 GDP 대비 문화여가비 정부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은 1.20%이며 아이슬란드가 3.0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에스토니아가 2.00%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은 0.69%로 상대적으로 낮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 예산	-	2015	1년

###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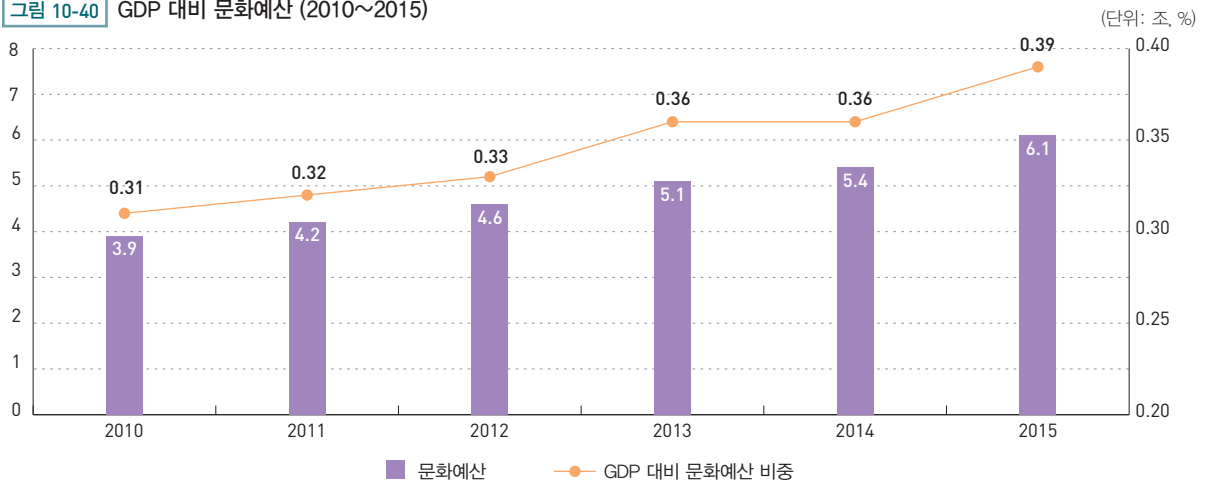
'GDP 대비 문화예산'은 GDP 대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비중으로 작성한다. 문화예산의 비중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에서 문화에 대한 투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산은 2014년 5.4조에서 2015년 6.1조로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보면 2014년 4.4조에서 2015년 5.8조로 크게 증가하였다.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문화여가비 정부지출을 보면 2015년도는 2014년도의 0.69%로 같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계정
- OECD. Stat Extracts DB

\*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미래부와 방통위의 일부 문화 관련 예산을 의미  
 \*\* 현재 작성할 수 있는 OECD DB의 자료는 2015년도가 최종임.

그림 10-40 GDP 대비 문화예산 (2010~2015)



자료: 기획재정부 분야별 예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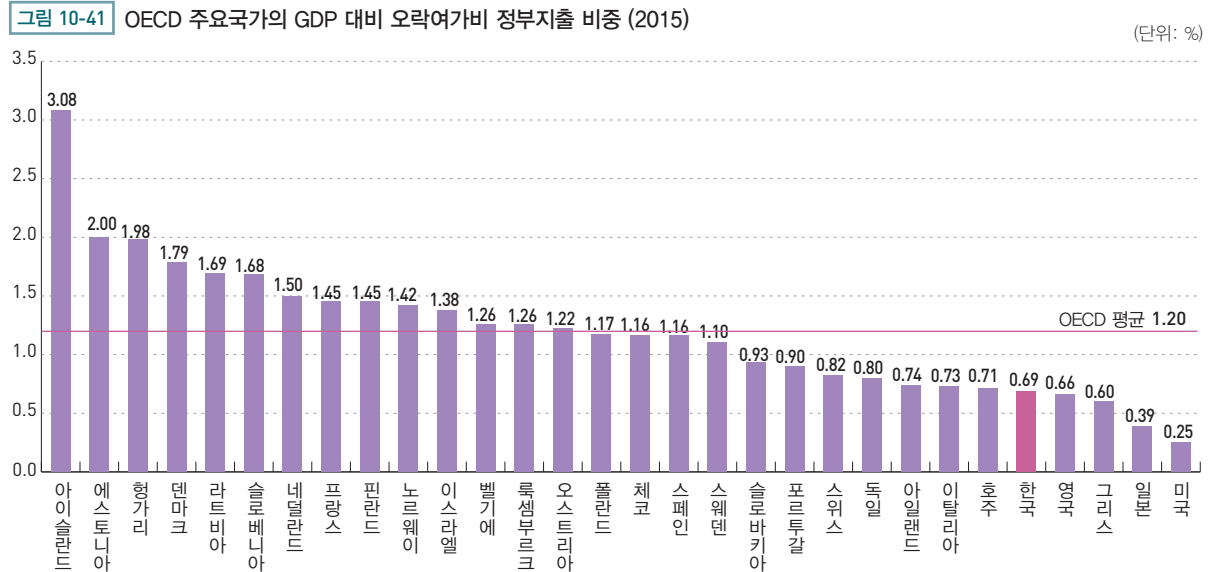
표 10-12 정부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2000~2015)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문화체육관광부(A)	0.9	1.0	1.1	1.1	2.0	2.2	2.3	2.3	2.6	2.9	3.2	3.5	3.7	4.1	4.4	5.8
정부(B)	94.9	106.1	116.1	116.0	196.9	209.6	234.7	233.7	262.8	301.8	292.8	309.1	325.4	342.5	355.8	375.4
비율(A/B)	0.96	0.91	0.95	0.99	1.00	1.06	0.98	0.97	1.00	0.95	1.08	1.12	1.14	1.20	1.24	1.54

주: 2015년도의 예산은 본예산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http://www.openfiscaldata.go.kr>);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http://www.mcst.go.kr/web/s\\_policy/plan2015w/html/index.html](http://www.mcst.go.kr/web/s_policy/plan2015w/html/index.html))

그림 10-41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오락여가비 정부지출 비중 (2015)



주: 일반정부 총지출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센터, OECD, Stat Extracts DB

#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Leisure Culture Expenditure for Household Consumption

## 지표 정의

실질 가계지출최종소비\* 중에서 오락, 문화 등의 명목 오락문화비 사용 비중을 산출하여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으로 정의한다.

가구에서 소비하는 지출 중 오락문화비 지출 비중의 실제 정도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전체 가구의 문화여가비 가계지출최종소비 금액}}{\text{전체 가구의 가계지출최종소비 금액}} \times 100$$

오락문화비의 지출규모는 국민들이 여가분야에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여가를 즐기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가계최종소비지출 대비 오락문화비 비중은 가계들의 소비규모 중에서 여가분야의 비중을 파악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소비비중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가계에서 지출하는 오락문화비와 가계최종소비지출 대비 오락문화비 비중은 2002년도 35조, 7.0%의 규모에서 2008년 48조, 8.3%의 규모로 계속 성장하였다. 2009년에 47조, 8.1%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의 경우 60조, 9.1%에 달한다.

2015년 OECD 주요 국가들과 오락문화비 세부항목별로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오락 및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이 55.6%로 매우 높았으며, 음향, 영상이 22.0%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단체여행과 오락문화 관련 내구재는 각각 0.5% 수준으로 매우 낮게 지출하고 있다.

2015년도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오락문화비 지출 비중\*\*의 평균은 4.6%이며 영국이 6.1%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6.1%), 핀란드(5.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3.9%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락문화비 지출 비중이 작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은행	국민계정	1953	2015	1년

### Checkpoint

새로 작성한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은 가계에서 지출하는 금액들 중 오락문화비로 지출하는 비중으로 산출되는 지표이다. 2014년도 오락문화비는 58.5조에서 2015년 60.0조로 증가하였으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GDP 대비 여가문화비 가계지출 비중은 2014년 4.0%에서 2015년도 3.9%로 다소 떨어졌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4.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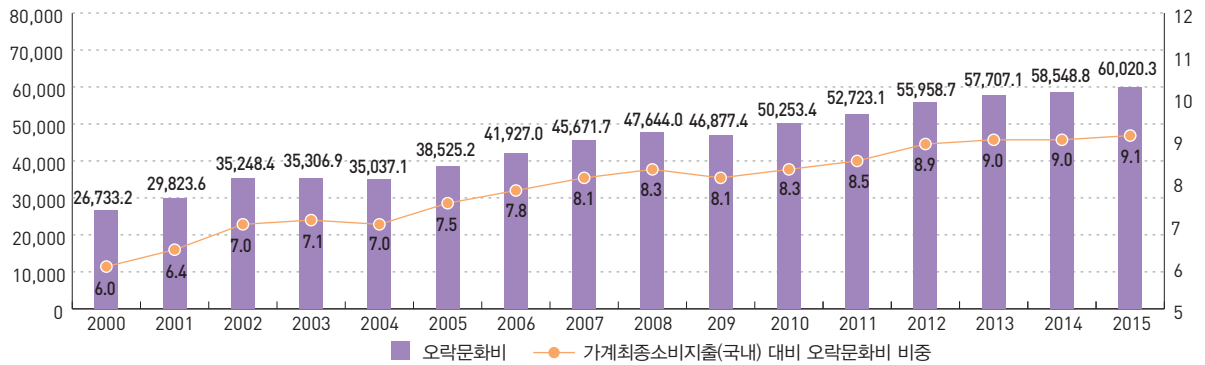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계정
- OECD, Stat Extracts DB

\* 실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대비 여가문화비 지출 비중을 파악하기 위하여 명목금액이 아닌 실질금액으로 산출하였음. 기준연도는 2010년.

\*\* 2015년도 OECD 자료는 17개국만 제시되어 있어 17개국만을 대상으로 자료 작성. 거주자국외소비 및 비거주자국내소비는 지출목적별로 구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문화비 산출 항목에서 제외

그림 10-42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추이 (2000~2015)

(단위: 십억 원, %)



주: 명목자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0-13 OECD 주요 국가별 오락문화비 세부항목별 가계지출 비중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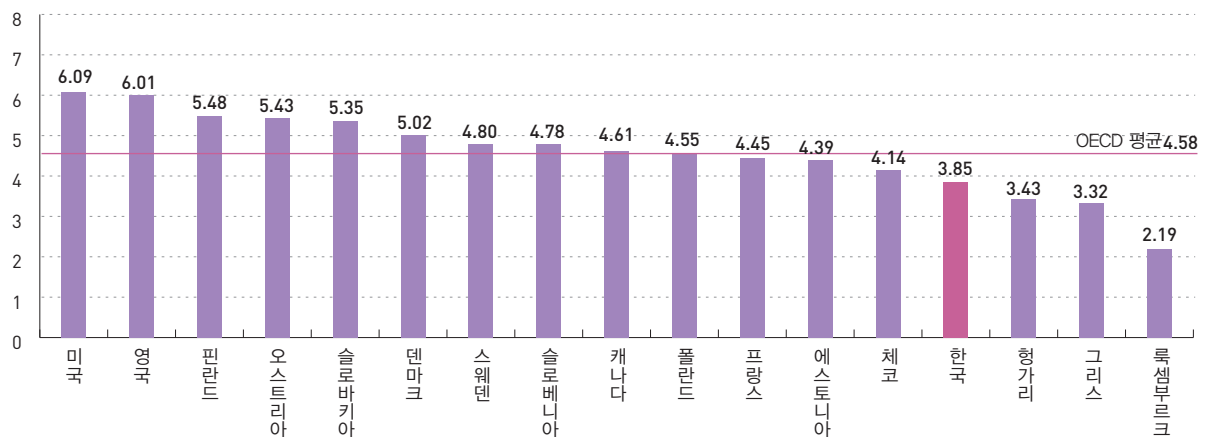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오락문화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음향·영상	22.0	28.5	14.8	13.1	15.7	12.7	12.9
오락문화 관련 내구재	0.5	5.2	10.9	7.4	4.8	5.6	2.6
오락용품 및 조경·애완동물	11.6	24.2	30.5	20.6	27.0	22.6	20.7
오락 및 문화서비스	55.6	29.3	34.0	35.9	35.0	40.1	40.9
신문·서적 및 문방구	9.9	11.9	9.8	12.3	15.3	8.9	11.5
단체여행	0.5	1.0	0.0	10.7	2.1	10.1	11.4

주: 2015년 기준. 단 한국은 2013년도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OECD, Stat Extracts DB

그림 10-43 OECD 국가들의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2015)

(단위: %)



주: 가계 최종소비지출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OECD, Stat Extracts DB

# 11

## 사회재정

- 01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 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 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 04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 05 공적연금수지
- 06 고용·산재보험수지
- 0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 08 사회복지·보건 조세지출 규모
- 09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 10 지방교육재정 유아 보육·교육 지출



통 계 로 보 는 사 회 보 장

# 2016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재원배분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사회보장 지출 구조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공적연금수지	
	고용·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사회복지·보건 조세지출 규모	
국제비교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생애주기별 재정	지방교육재정 유아 보육·교육 지출	

#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Central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of CG Total Spending)

## 지표 정의

국가재정통계 작성기준 16대 분야 기능 분류상 사회복지 · 보건 지출이 국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가의 사회보장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text{국가총지출}} \times 100$$

유의사항 국가란 행정주체로서의 국가를 의미하며 국가재정은 중앙부처 소관의 예산회계(일반회계 +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포괄한다. 한편, 예산과 결산상 재정규모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바, 이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2016년 국회확정 본예산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 보건 분야에 국가총지출 386.4조 원의 31.9%에 이르는 123.4조 원이 배분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각각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일반 · 지방행정(15.4%)과 교육(13.8%) 분야의 지출 비중이 높다. 2009년 이후 국가재정지출 추이를 보면, 국가총지출은 2009년 301.8조 원에서 2016년 386.4조 원으로 연간 3.6%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은 국가총지출 증가 속도보다 1.8배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계속 확대되어 지난 7년간 지출 비중은 5.3%p 높아졌다(2009년 26.6% → 2016년 31.9%).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결산보고서	1947 (2009년 기능 분류체계 개편)	2015	1년
기획재정부	예산안(내부자료)	-	2016	1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	2016	1년

### Checkpoint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은 전년대비 7.7조 원 증가하여 국가총지출 예산 증가분 11조 원 중 70%에 달한다.

표 11-1 국가 분야·부문별 지출 (2009~2016)

(단위: 조 원, 억 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증가율
사회복지·보건[A]	80.4	81.2	86.4	92.6	99.3	106.4	115.7	123.4	6.3
국가총지출[B]	301.8	292.8	309.1	325.4	349.0	355.8	375.4	386.4	3.6
비중[A/B]	26.6	27.7	28.0	28.5	28.5	29.9	30.8	31.9	-
[사회복지, 억 원]	734,196	739,162	788,926	847,715	904,712	972,051	1,052,815	1,128,641	6.3
기초생활보장	79,803	72,937	75,240	79,100	87,761	88,310	94,773	101,311	3.5
취약계층지원	24,055	15,212	13,427	13,946	16,849	17,987	23,688	24,989	0.5
공적연금	238,197	259,856	281,833	312,678	331,382	364,031	396,612	427,062	8.7
보육·가족·여성	19,567	23,694	28,759	33,847	45,431	57,156	54,278	57,654	16.7
노인·청소년	32,836	36,630	38,759	40,510	45,034	65,619	90,362	94,210	16.2
노동	146,846	122,935	126,180	131,242	140,362	144,588	155,162	172,950	2.4
보훈	33,597	36,094	38,737	40,541	43,152	44,576	46,376	48,181	5.3
주택	152,883	167,162	180,536	190,062	187,679	182,343	183,867	194,367	3.5
사회복지일반	6,412	4,642	5,455	5,789	7,062	7,440	7,697	7,917	3.1
[보건, 억 원]	69,955	73,304	75,000	78,589	88,213	92,203	104,009	105,339	6.0
보건의료	15,835	17,037	15,599	16,039	20,247	19,451	22,808	23,278	5.7
건강보험지원	52,040	53,827	57,102	60,113	65,131	69,665	77,442	77,860	5.9
식품의약품안전	2,080	2,440	2,299	2,437	2,835	3,087	3,760	4,201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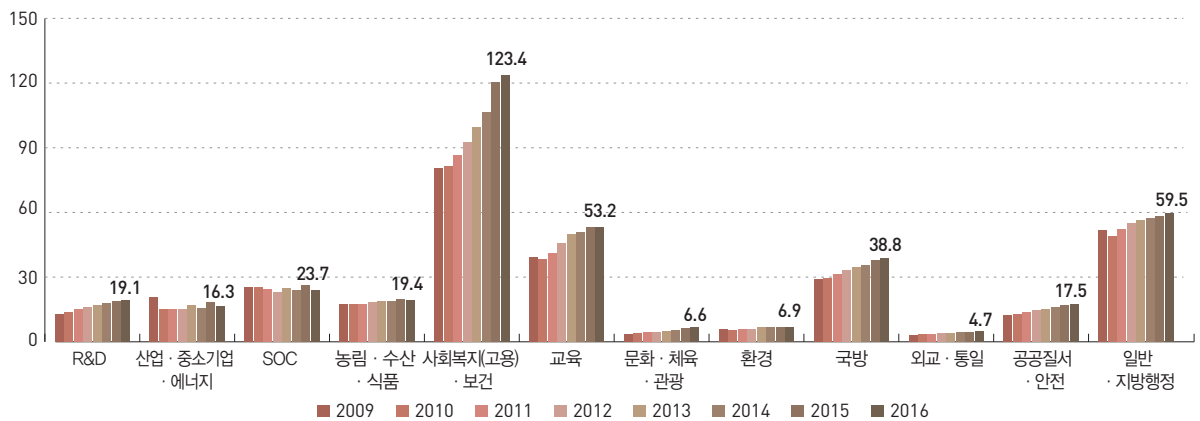
주: 2009년, 2013년 추경기준

2015년과 2016년은 소관부처의 추경포함 부문별 재원배분 규모 미제출로 본예산을 기준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 연도

그림 11-1 국가 분야별 재원배분 (2009~2016)

(단위: 조 원)



주: 그래프안의 수치는 2016년도 본예산 규모임.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 연도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Local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of LG Total Spending)

## 지표 정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 작성기준 15대\*\* 지출 분야 중 사회복지·보건 지출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자체 사회복지장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text{지자체 예산 규모}} \times 100$$

**유의사항**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일반재정(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과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지자체 일반재정 중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를 기준으로 지표를 작성하였다. 예산순계는 자치단체 내 회계 간(일반회계 - 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 중복계상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국 및 시도별 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이전을 비롯하여 지자체 및 회계 간 복잡한 재정관계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빈번한 추경편성이 이루어지므로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그리고 예산과 결산상 편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최종예산의 편성이나 결산정보가 상대적으로 늦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과의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하여 제시한다.

한편, [지표 11-1]과 [지표 11-2]의 행정주체별 지출 규모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이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각 지출 규모를 단순 합산하거나 그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16년도 당초예산 순계에 기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49,5조 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5.8% 증가한 규모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전체가 전년에 비해 6.5% 확대됨에 따라 전체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하락하여 26.8%로 나타난다. 부문별로는 2016년 현재 기초연금이 포함된 노인·청소년 부문이 전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의 28.7%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육·가족·여성(24.5%), 기초생활보장(22.6%), 취약계층지원(12.6%) 순으로 나타난다. 전년에 비해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의 지출 비중은 각각 0.1%p와 0.3%p 소폭 상승하였다. 반대로 노인·청소년 및 보육·가족·여성 부문의 지출 비중은 각각 0.1%p와 0.3%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들 부문의 지출은 2009년 이래 연평균 12.6%와 13.9%씩 증가하여 여전히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997 (2008년 기능분류체계 개편)	2016	1년

### Checkpoint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전년대비 2.7조 원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증가분 11.3조 원의 약 24%를 차지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며, 2014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1특별자치도, 8도)와 227개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총 244개 자치단체가 존재한다. 교육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비특별회계(교육재정)를 운용하고 있다.

\*\* 2014년부터 기존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13년 이전 13대분야 → '14년 이후 15대분야).

\*\*\* [지표 11-2]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초한 것으로 지표명이나 설명에 '지출' 대신 '세출'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지표 11-1,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과 관련한 재정범위가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에 기준한다는 점에서 세출 대신 지출로 표기하였고, 지표 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경우에도 '세출' 대신 '지출'을 사용한다.

표 11-2 지방자치단체 분야·부문별 세출 (2009~2016)

(단위: 조 원,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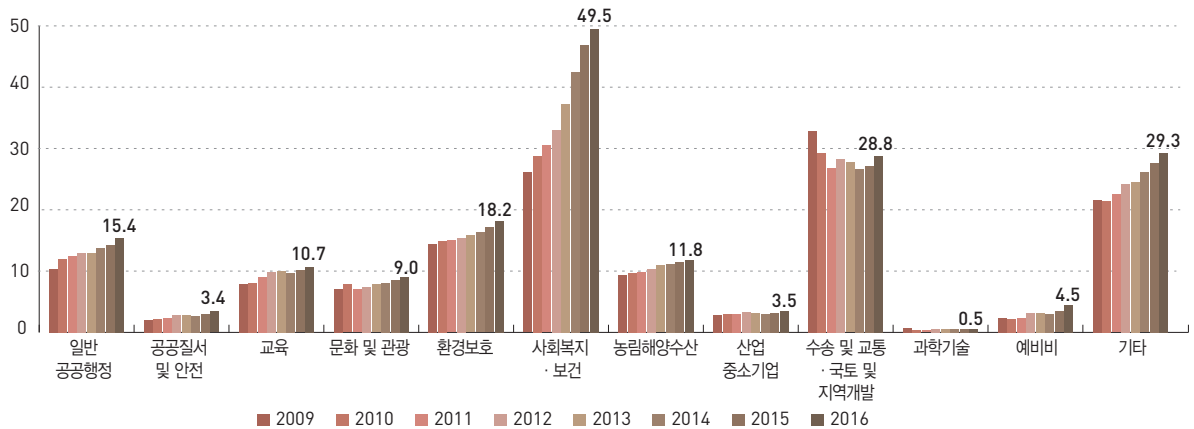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증가율
사회복지·보건[A]	26.1	28.8	30.5	33.0	37.3	42.5	46.8	49.5	9.6
지자체예산 규모[B]	137.5	139.9	141.0	151.1	156.9	163.6	173.3	184.6	4.3
비중[A/B]	19.0	20.6	21.6	21.8	23.8	26.0	27.0	26.8	5.1
[사회복지, 억 원]	241,455	265,342	284,632	309,157	349,921	400,832	440,629	466,075	9.9
기초생활보장	84,007	85,616	90,710	92,998	102,700	103,231	105,279	111,722	4.2
취약계층지원	31,955	35,119	38,873	43,786	47,401	52,644	57,547	62,253	10.0
보육·가족·여성	48,712	59,287	67,372	77,490	98,688	118,631	116,017	121,192	13.9
노인·청소년	61,848	66,494	68,791	70,836	76,976	102,545	134,884	142,234	12.6
노동	3,169	7,369	6,313	6,255	6,481	6,664	6,792	7,212	12.5
보훈	856	1,120	1,606	2,096	2,465	2,475	2,782	3,407	21.8
주택	7,912	7,126	7,553	12,214	11,655	10,164	12,640	13,019	7.4
사회복지일반	2,996	3,211	3,415	3,481	3,554	4,478	4,689	5,036	7.7
[보건, 억 원]	19,241	22,250	20,082	20,825	23,323	24,139	26,935	29,123	6.1
보건의료	18,923	21,929	19,664	20,329	22,699	23,415	25,935	27,965	5.7
식품의약품안전	317	321	418	496	624	724	1,001	1,158	20.3

주: 당초예산(순계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각 연도

그림 11-2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자원배분 (2009~2016)

(단위: 조 원)



주: 1) 당초예산 순계기준.

2) 그래프안의 수치는 2016년도 예산 규모임.

3) 수송교통분야와 국토및지역개발분야의 합계지출 규모를 표시하였음.

4)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지출로 2014년부터는 구분하여 제시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구, 예산개요), 각 연도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Subsidy Spending Ratio of Local Government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지표 정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세출사업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사업의 유형과 지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측정 산식

$$\frac{\text{보조사업비 규모}}{\text{지자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세출 예산}} \times 100$$

지방자치단체 지출분야별 보조사업 비중은 2016년 현재 사회복지 분야가 9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73.7%), 보건(73.7%) 순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평균 보조사업 비중은 전년대비 0.2%p 낮아진 90.3%로 전분야 평균 50.9%의 약 1.8배 수준이다. 사회복지·보건 각 부문별로는 기초생활보장(98.3%), 보육·가족 및 여성(93.8%), 노인·청소년(91.2%), 취약계층지원(88.8%), 사회복지일반(72.8%), 식품의약품안전(75.2%), 보건의료(73.7%), 주택(62.0%), 노동(57.9%), 보훈(32.0%) 순으로 보조사업 비중이 높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997 (2008년 기능분류체계 개편)	2016	1년

### Checkpoint

전체 보조사업 비중은 전년대비 1.5%p 하락하여 근래에 올수록 보조사업 비중의 하락추세가 뚜렷이 나타난다. 분야별로는 보건,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보조사업 비중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사회복지 분야 정책영역별로는 취약계층지원(1.1%p)과 보훈(4.7%p)을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 부문에서 전년보다 보조사업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표 11-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2016)

(단위: 억 원, %)

	보조사업(A)	자체사업(B)	보조사업비중 [A/(A+B)]	2015년도 보조사업비중
지자체 예산	767,527	740,369	50.9	52.4
사회복지·보건	445,762	47,948	90.3	90.5
사회복지	424,363	40,322	91.3	91.7
기초생활보장	109,681	1,899	98.3	98.4
취약계층지원	55,157	6,974	88.8	87.7
보육·가족·여성	113,433	7,501	93.8	94.4
노인·청소년	129,555	12,547	91.2	91.4
노동	4,177	3,033	57.9	60.9
보훈	1,091	2,315	32.0	27.3
주택	7,686	4,717	62.0	70.4
사회복지일반	3,583	1,335	72.8	73.0
보건	21,398	7,626	73.7	71.1
보건의료	20,528	7,339	73.7	71.1
식품의약품안전	870	287	75.2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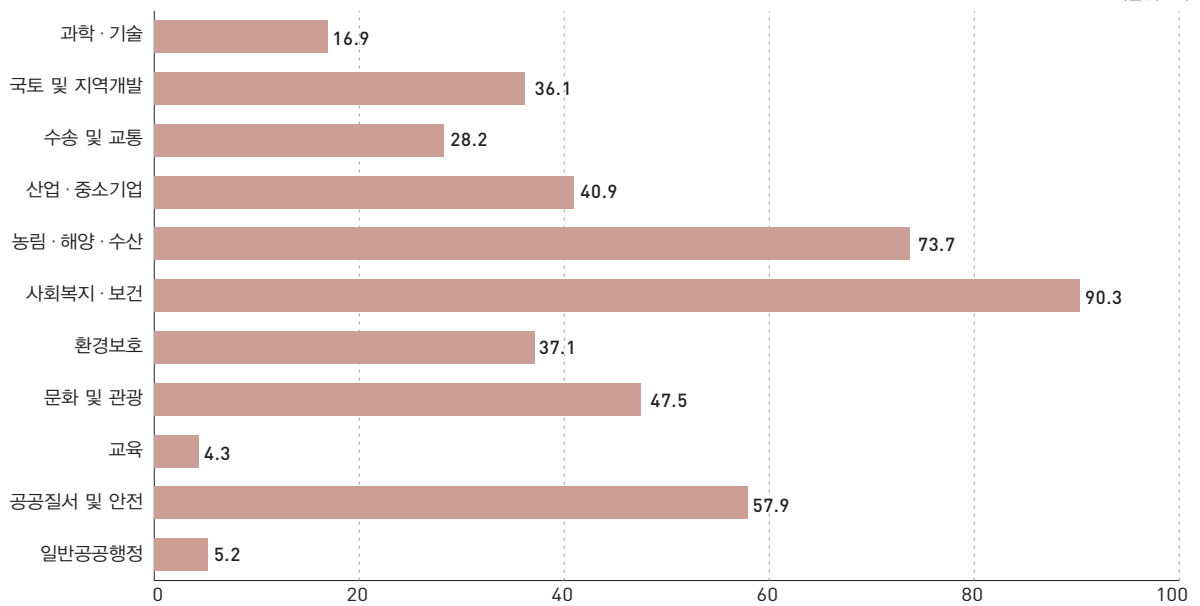
주: 1) 당초예산 순계 기준

2)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 등이 제외됨에 따라 [지표 11-2]의 분야 부문별 예산 규모와 차이가 있음.

자료: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그림 11-3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보조사업 비중 (2016)

(단위: %)



주: 당초예산 순계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Government Spending on 7 Major Benefit Programs

## 지표 정의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사업 즉,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재정규모로 국가-지자체 간 분담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 측정 산식

-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국비 + 지방비 합계임.

유의사항 단, 영유아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당되는 만 3세아 이상 보육료지원은 미포함된 규모임.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예산사업 7종의 2016년도 사업비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 증가한 29조 9,179억 원이다. 이중 국가의 부담은 22조 3,402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총액의 74.7%로 전년대비 약 1%p 상승하였다.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면, 기초연금급여와 의료급여가 각각 총 사업비의 34.4%와 2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를 포괄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19%), 영유아보육료(15.6%), 가정양육수당(6.2%), 장애인연금급여(2.8%), 장애수당급여(0.7%) 순으로 나타나 예산 규모 순위는 전년과 동일하다. 전년대비 예산 규모의 변화를 보면, 의료급여의 사업비 총액 증가율이 1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8.3%), 기초생활보장급여(6.1%), 기초연금급여(1.4%), 장애수당급여(1.0%), 영유아보육료(0.8%)순이다. 한편, 장애인연금급여의 경우 사업비 총액이 전년보다 51억 원 감소하여 유일하게 음의 증가율을 보인다.

표 11-4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 (2016)

(단위: 억 원)

구분	계(A)	국비(B)	지방비	국가분담률(B/A)
합계	299,179	223,402	75,777	74.7%
기초생활보장급여	56,739	45,853	10,886	80.8%
생계급여	(41,973)	(33,893)	(8,080)	(80.7%)
주거급여	(12,697)	(10,289)	(2,408)	(81.0%)
교육급여	(1,796)	(1,451)	(345)	(80.8%)
해산장제급여	(273)	(220)	(53)	(80.6%)
의료급여	63,904	48,192	15,712	75.4%
장애인연금급여	8,328	5,581	2,747	67.0%
장애수당급여	1,979	1,326	653	67.0%
기초연금급여	102,896	78,497	24,399	76.3%
영유아보육료	46,776	31,761	15,015	67.9%
가정양육수당	18,557	12,192	6,365	65.7%

주: 1) 지출 규모는 예산 기준임.

2)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이며,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지방비에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되는 누리보육(3세아 이상 보육료지원) 과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유아학비)예산은 제외됨.

3) 영유아보육료의 지방비는 편성 보조율에 따른 추계금액으로 실제 매칭비가 아님.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7대 사회복지 예산(내부자료)	-	2016	1년

## Checkpoint

국가분담률은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2.2%p, 1.8%p 와 1.4%p 상승한 반면에 의료급여의 경우 1.6%p 하락하였다.



# 공적연금수지

Fiscal Balance of Public Pension Funds

## 지표 정의

4대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상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회수 및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수지차의 합계로 정의한다.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건전성과 국가지원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 4대 공적연금 경상수입(자체수입 + 경상이전수입) - 경상지출(사업비지출 + 기금운영비)

유의사항 등 지표는 실적이 아닌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공적연금재정수지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4대 공적연금) 각각의 기금운용계획상 국가부담금, 보전금, 전입금, 공공자금예탁원리금 및 이자 등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운용이나 회수를 제외한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의 차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국민연금기금 37조 4,087억 원과 사학연금기금 1조 71억 원 흑자에 기대어 4대 공적연금 합계 27조 6,536억 원 수지흑자가 계획되어 있다. 4대 공적연금 전체 수지흑자 규모는 2015년에 비해 5조 4,450억 원 감소하였는데,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의 수지적자 폭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2016년에 8조 3,630억 원 수지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보다 6조 2,158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동 기금의 조달계획에 따르면, 2015년 9조 6,044억 원에 이르렀던 이자 및 재산수입 등이 올해는 3조 3,980억 원으로 2년 전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16년 현재 4대 공적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예산지원 총액은 전년대비 98% 폭증한 12조 9,505억 원에 이른다. 이는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상 2015년도에 비해 6조 2,058억 원 증가한 정부내부수입 계획에 크게 기인한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안(내부자료)	-	2016	1년

### Checkpoint

공무원연금기금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내부수입 총액은 9조 7,478억 원으로 2015년 3조 5,420억 원 대비 약 175% 대폭 증가하여 2014년 9조 772억 원 수준을 초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대 공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예산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6조 4,106억 원 증가한 12조 9,505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표 11-5 4대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2016)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수지차[A+B-D-E]	276,536	374,087	-83,630	-23,992	10,071
[조달]	1,381,415	1,045,618	198,729	30,867	106,201
자체수입(A)	695,171	566,597	71,093	5,813	51,668
기여금(보험료) 수입	480,545	411,819	37,113	5,673	25,940
이자 및 재산수입 등	214,625	154,777	33,980	140	25,728
경상이전수입(B)	608	-	6	61	541
정부내부수입(C)	129,505	100	97,478	23,993	7,934
국가부담금	76,361	-	66,033	10,328	-
보전금	44,986	-	31,321	13,665	-
전입금	8,050	100	16	-	7,934
공공자금예탁원리금 및 이자	108	-	108	-	-
여유자금회수	556,132	478,922	30,152	1,000	46,058
[운용]	1,435,415	1,045,618	198,729	30,867	160,201
사업비(D)	412,953	187,712	153,935	29,861	41,445
급여지출	374,777	185,488	132,448	29,861	26,980
경상지출	2,478	1,487	822	-	169
융자지출	27,623	342	12,985	-	14,296
자본지출	8,075	395	7,680	-	-
기금운영비(E)	6,290	4,798	794	5	693
여유자금운용	962,171	853,108	44,000	1,000	64,0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 경제·재정수첩 p166, 수정 인용

## 고용·산재보험수지

Fiscal Balance of the Employment-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unds

## 지표 정의

근로안전망으로 8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구성하는 고용·산재보험의 재정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 고용·산재보험기금 경상수입(보험료 + 기타) - 경상지출(사업비 + 기금관리비 등)

2016년도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을 제외한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합산 경상수지는 2조 9,788억 원 흑자가 계획되었다. 양 기금의 수입계획안 총액은 25조 4,483억 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이 전년대비 13.2% 증가한 16조 7,536억 원이다. 이러한 보험료 수입의 대폭 증가는 실업급여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고용보험료 수입이 전년보다 1조 5,871억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정부내부수입 중 전입금 총액은 전년도 계획과 동일하게 862억 원으로 고용보험기금운영 707억 원과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운영 155억 원으로 구성된다. 실업급여와 산재보험급여 등 사업비지출 총액은 14조 228억 원으로 이중 고용보험이 65.4%를 차지한다. 고용보험기금의 주요 사업비지출 항목은 고용정책(6조 459억 원), 직업능력개발(1조 8,283억 원), 고용평등실현(1조 2,994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산재보험의 사업비지출은 산재보험(4조 4,629억 원), 산업재해예방(3,863억 원), 고용노동행정지원(3,160억 원)등이다.

표 11-6 고용·산재보험 기금운용계획 (2016)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차[A+B-C-D]	29,788	14,150	15,638
[조달]	254,483	130,979	123,504
보험료(A)	167,536	101,868	65,668
기타(B)	10,662	5,039	5,623
정부내부수입(전입금)	862	707	155
여유자금회수	75,423	23,365	52,058
[운용]	254,483	130,979	123,504
사업비(C)	140,228	91,736	48,492
기금관리비 등(D)	8,182	1,021	7,161
여유자금운용	106,073	38,222	67,851

주: 소관부처 자료 미제출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기초하여 별도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16 기금운용계획안(2016.9)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안(내부자료)	-	2016	1년

## Checkpoint

고용·산재보험 수지흑자는 2015년도 당초계획 대비 9,727억 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지흑자 개선은 실업급여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수입의 대폭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Fiscal Balance of the National Health and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 지표 정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정의되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 측정 산식

-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상수입(보험료 + 기타) - 경상지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재정 외로 운용되는 사회보장성 보험이다. 2016년 양대 보험의 지출 합계는 3분기 현재 기준 39조 1,961억 원이다. 정부지원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지는 12조 2,498억 원 흑자로 나타나지만 이는 지출 규모가 불완전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을 위한 정부지원은 2015년도 예산 대비 3,643억 원 증가한 8조 3,796억 원에 이른다. 2012~2016년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 국가지원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3%와 3.5%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 (내부자료)	-	2016	1년

### Checkpoint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3분기까지의 지출만 반영된 것으로 수지흑자 규모를 과다 측정하여 보여주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는 2015년도 예산 8조 164억 원에서 4,825억 원 초과한 8조 4,989억 원을 기록하였다.

표 11-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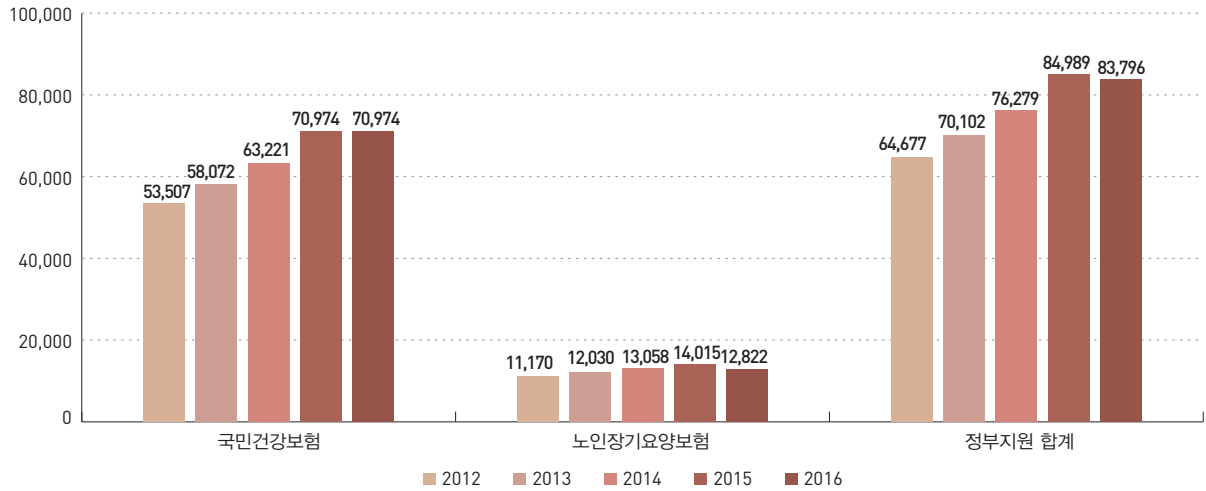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지차[A-B]	122,498	120,509	1,989
[수입]	598,255	548,658	49,597
보험료 및 기타(A)	514,459	477,684	36,775
정부지원	83,796	70,974	12,822
[지출] (B)	391,961	357,175	34,786

주: 국민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3분기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그림 11-4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규모 (2012~2016)

(단위: 억 원)



주: 2012~2015 결산기준, 2016년 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사회복지 · 보건 조세지출 규모

Tax Expenditures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지표 정의

사회복지 · 보건 분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총액으로 정의한다. 조세지출은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하지만 개인의 세후소득증가를 야기함에 따라 직접적인 정부이전지출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정부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파악할 때는 간접적인 조세지원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측정 산식

- 사회복지 · 보건 국세 및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총액

유의사항 국세와 지방세 실적집계와 정보공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가장 최근의 시점은 2013년임.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율은 '조세감면액/(조세징수액 + 조세감면액)'으로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한편,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관련 감면비율은 실제 징수된 조세수입 규모 대비 조세감면 규모의 단순 비율을 측정하여 보여주는 것임.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국세감면 실적 총액은 34,3조 원으로 국세수입 205,5조 원의 16.7% 수준이다. 이 중 사회복지 · 보건관련 감면 규모는 국세감면액의 35%에 이르는 12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6천억 원 가량 증가하였다. 한편, 지방세통계연감을 통해 확인되는 2014년도 지방세감면 실적 총액은 13조 원으로 지방세수입 61,7조 원 대비 21.1%이다. 이 중 사회복지 · 보건관련 지방세 감면 규모는 전년대비 약 1천억 원 증가한 5,5조 원으로 지방세감면 총액의 42.6%를 차지한다.

국세감면은 2012년 33조 3,809억 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4년 현재 34조 3,383억 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감면 규모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전환되면서 2013년 대비 3조 원 이상 감소함에 따라 조세수입 실적총액 대비 총조세 감면액 비율은 전년대비 1.8%p 하락한 17.7%를 기록하였다(취득세 감면총액 '13년 9조 3,003 억 원 → '14년 5조 6,942 억 원). 한편, 조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 보건관련 조세감면 비율은 전년과 같은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구 조세지출보고서)	2003	2014	1년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1986	2014	1년

### Checkpoint

사회복지 · 보건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규모는 7,870억 원 증가한데 그쳤지만, 지방세 감면 규모가 3조 730억 원 감소함에 따라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전보다 높아졌다('13년 33.6% → '14년 37.1%).

표 11-8 사회복지·보건 총 조세지출 (2009~2014)

(단위: 억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조세수입	합계(A)	2,097,085	2,268,782	2,446,813	2,569,530	2,556,854	2,672,448
	국세	1,645,407	1,777,184	1,923,812	2,030,149	2,019,065	2,055,198
	지방세	451,678	491,598	523,001	539,381	537,789	617,250
조세감면	합계(B)	460,891	448,103	469,341	488,095	499,109	473,412
	국세	310,621	299,997	296,021	333,809	338,350	343,383
	지방세	150,270	148,106	173,320	154,286	160,759	130,029
사회복지·보건 분야 조세감면	소계(C)	156,640	151,590	155,981	153,502	167,863	175,733
	국세	102,996	99,096	92,710	105,245	114,016	120,321
	지방세	53,644	52,494	63,271	48,257	53,847	55,412
	비중(C/B)	34.0	33.8	33.2	31.4	33.6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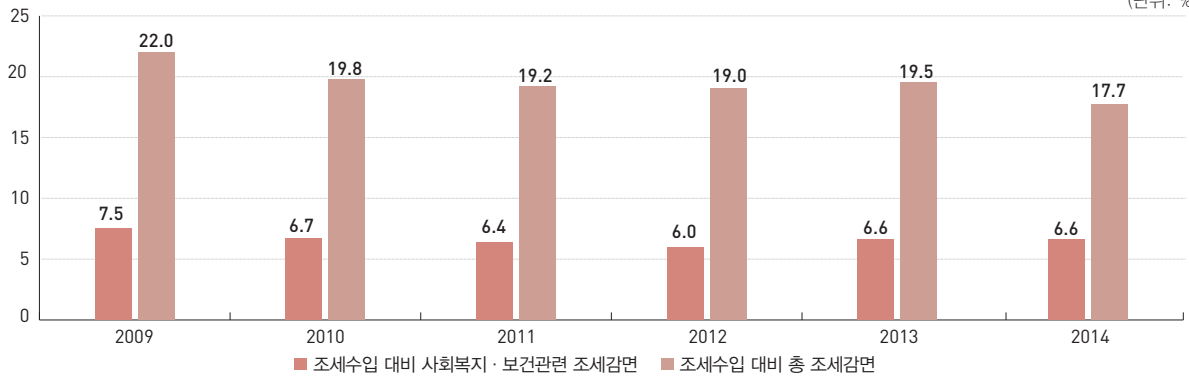
주: 연도별 국세감면 규모는 조세지출예산서 상 확인되는 연도별 실적 기준임.

분야 별 국세감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2011년도의 경우 관련 항목별 감면액을 별도로 합산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그림 11-5 조세수입 대비 사회복지·보건 조세감면 비율 (2009~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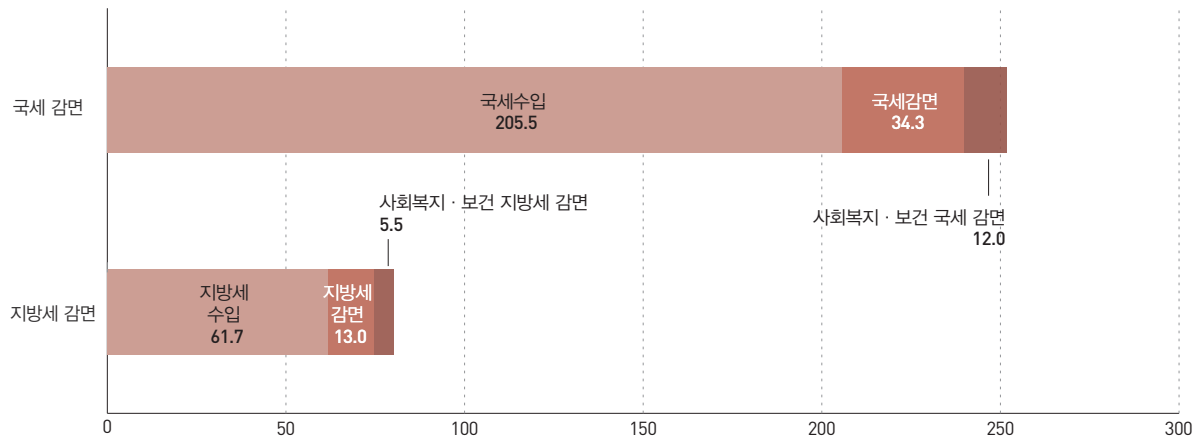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그림 11-6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현황 (2014)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6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2015

#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Composition of Public social expenditure(SOCX)

## 지표 정의

명목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중으로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국가 간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국제비교지표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SOCX-public}}{\text{명목 GDP}} \times 100$$

2016년 10월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2016년 GDP 대비 10.4%로 통계가 공개된 3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OECD 30개국 평균(GDP 대비 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나 연금제도 성숙과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근래에 올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2016년 OECD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연간 0.98%씩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우 5.4%로 OECD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인다.

공공사회지출 9대 정책영역별 비교가 가능한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지출은 GDP 대비 3.8%로 가장 높은 영역으로 확인되며, 이어서 노령(2.1%), 가족(0.8%), 근로무능력(0.6%), 기타(0.5%), ALMP(0.4%), 실업(0.3) 순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지출 수준은 OECD 평균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나, 기타 영역만 유일하게 OECD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타 영역에 기초생활급여, 긴급복지,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지원 등을 포함시켜 자료를 제출하는데 반해 다른 나라의 경우 주요 급여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특정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기타 영역에 해당하는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책영역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부문 지출은 전체 공공사회지출의 42.7%를 구성하고 있어 OECD 평균 29.1%보다 13.6%가 더 높다. 다음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는 영역은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한 노령지출로 전체 공공사회지출의 24.3%를 차지한다. 가족 영역의 구성비는 9.6%로 OECD 평균 10.3%에 근접한 비중을 보인다. 동 영역은 특히 2000년대 들어 심각하게 나타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보육지원을 중심으로 한 제도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장 두드러진 지출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2002~2012년까지 10년 기간 평균증가율 27.6%).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1990	2016	1년

### Checkpoint

2016년 10월 OECD SOCX 업데이트를 통해 2014~2016년 공공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SNA2008 계정에 맞추어 수정·공개됨으로써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5'에서 제시된 값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5'에서는 2014년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10.4%로 보고하였으나, 2016년 10월 업데이트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9.7%로 하향 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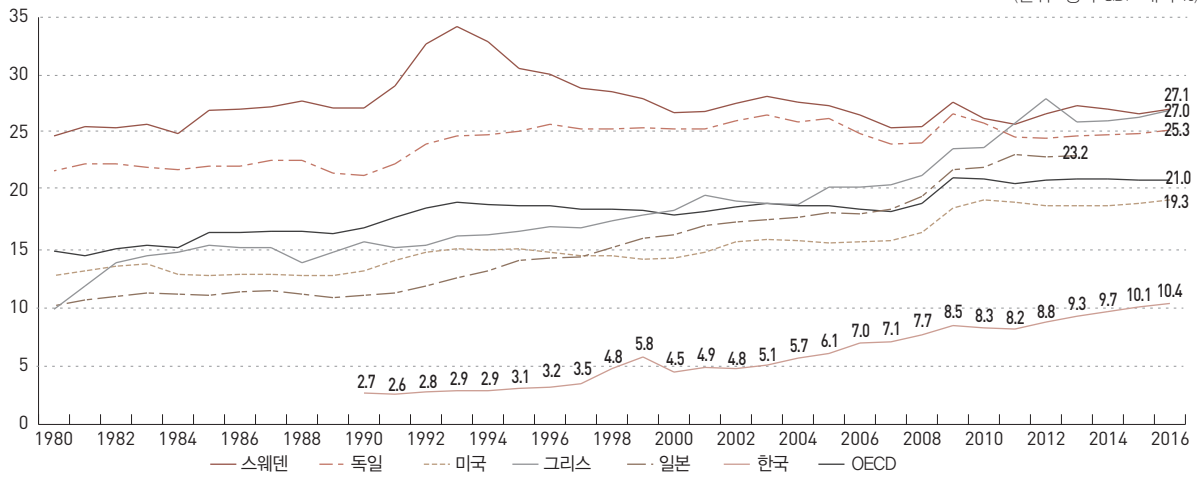
\* 일부 연구에서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OECD 용어에 충실하게 공공사회지출로 사용한다. 앞의 지표 11-1과 11-2의 국가 및 지자체 예산분류체계 상 사회복지와 보건을 구분하고 있으며, SOCX는 보건을 포함한 사회복지 급여지출 수준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공공사회지출'이 SOCX가 포괄하는 지출범위에 보다 부합하는 표현이다.

\*\* OECD 35개 가입국 중 멕시코가 항상 최하위 수준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멕시코 공공사회지출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림 11-7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198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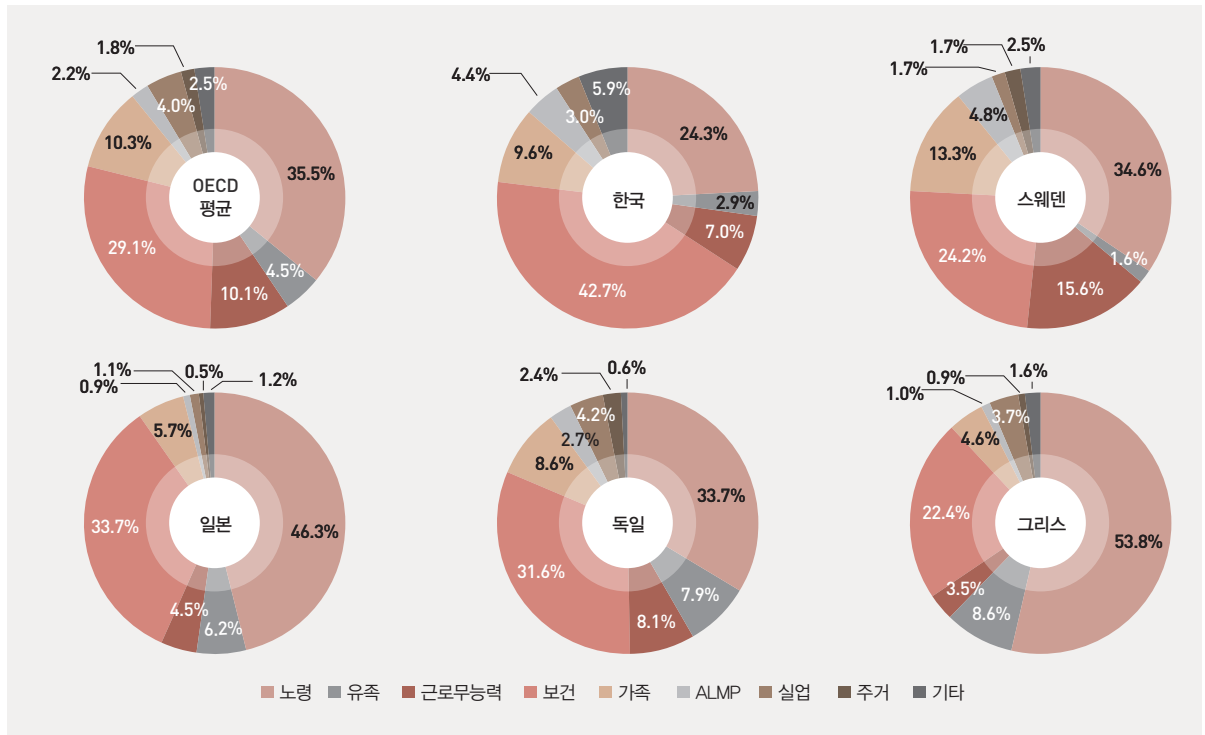
(단위: 명목 GDP 대비 %)



주: OECD SOCX의 각국자료는 1980~2016년까지의 자료임(단, 일본은 2013년까지, 한국은 1990년 이후 자료임).  
 자료: OECD 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자료 다운로드 2016.10.24, 11:26 UTC(GMT))

그림 11-8 공공사회지출 구조 국제비교 (2012)

(단위: 공공사회지출 대비 %)



자료: OECD 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자료 다운로드 2016. 10. 25. 00:38 UTC(GMT))

표 11-9 9대 영역별 공공사회복지출 (1990~2015)

(단위: 십억 원)

	공공사회복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5,303	1,166	-	-	298	563	2,830	60	51	-	-	-	335
1991	6,177	1,471	-	-	409	778	3,051	89	44	-	-	-	336
1992	7,679	2,028	-	-	452	988	3,669	111	103	-	-	-	328
1993	8,933	2,661	-	-	494	977	4,145	154	144	-	-	-	359
1994	10,541	3,317	-	-	569	1,275	4,719	185	114	-	-	-	363
1995	13,172	4,373	-	-	637	1,499	5,778	262	168	-	-	-	455
1996	15,525	4,651	-	-	720	1,746	7,297	337	184	10	10	-	580
1997	18,445	5,458	-	-	819	2,079	8,488	429	360	79	79	-	734
1998	25,353	8,931	-	-	874	2,071	9,625	549	1,627	799	799	-	876
1999	33,274	13,005	-	-	900	1,929	11,250	530	3,266	936	936	-	1,458
2000	28,774	7,570	-	-	1,072	2,272	12,804	665	2,313	471	471	-	1,607
2001	33,928	6,715	-	-	1,209	2,663	17,586	941	1,429	845	845	-	2,541
2002	36,554	7,325	-	-	1,400	3,160	18,502	1,018	1,342	835	835	-	2,971
2003	41,105	8,785	-	-	1,646	3,802	20,450	1,268	932	1,030	1,030	-	3,192
2004	50,124	11,241	-	-	1,825	5,070	22,452	1,654	939	1,448	1,448	-	5,496
2005	56,556	12,653	-	-	2,013	5,492	25,474	2,131	1,023	1,752	1,752	-	6,017
2006	67,683	14,182	-	-	2,235	6,214	29,649	4,753	1,074	2,074	2,074	-	7,501
2007	74,335	16,060	-	-	2,471	6,680	33,287	4,540	1,256	2,434	2,434	-	7,606
2008	84,491	19,813	-	-	2,667	7,255	36,218	6,241	2,706	2,865	2,865	-	6,725
2009	98,204	21,545	-	-	2,927	7,588	42,009	7,824	5,138	4,116	4,116	-	7,056
2010	104,800	24,139	-	-	3,035	7,188	47,368	8,553	4,030	3,687	3,687	-	6,801
2011	109,809	25,770	-	-	3,326	7,770	49,795	8,962	4,058	3,561	3,561	-	6,568
2012	121,513	29,584	-	-	3,576	8,461	51,909	11,680	5,397	3,677	3,677	-	7,229
2013	133,393	31,909	-	-	3,290	8,700	54,937	16,086	6,556	3,884	3,884	-	8,033
2014	144,314	37,208	-	-	3,605	9,006	58,231	16,558	6,818	4,156	4,156	-	8,732
2015	157,163	42,274	-	-	3,617	10,170	62,016	16,701	7,091	4,199	4,199	-	11,095

주: SOCX 산정·적용기준 변경에 따라 과거 시계열 자료가 조정되었다. 그 결과 <표 11-9>의 2000년 이후 수치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5'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료비 중 의료고정자본 제외, 학생급식비, 저소득층 학비,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탈북청소년지원, 농어촌전원학교 육성 등 제외, 공공임대주택지원 추계범위 변경으로 인한 융자금 삭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국고사업에 대한 매칭 펀드 반영 확대 등을 비롯하여 보건데이터베이스 및 교육데이터베이스 산정기준 변경 등으로 2011년 기준 사회복지지출액은 1.1% 감소하였다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fund structure

## 지표 정의

공공사회지출(SOCX)의 9대 기능별 지출구성을 보여주는 보조지표로 공공사회지출의 재원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 <표 11-10>의 지출 규모는 OECD SOCX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출된 것으로 앞서의 재정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지난 10년간 집행주체를 기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지출이 연평균 13.4%씩 증가하였고 그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매칭비 역시 빠르게 증가해왔다. 사회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공공사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나타난다(2015년 전체 공공사회지출의 59.3%). 공공사회지출의 9대 영역별 집행재원의 구성을 보면, 노령 영역에서는 당연히 4대 공적연금이 2015년 7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중앙정부(18.5%)와 지방정부(8.5%)순으로 나타난다. 유족영역에서도 역시 4대 공적연금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71.7%). 근로무능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지출이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이 각각 29%를 차지한다. 보건 영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국민건강보험 비중이 75%로 가장 높으며, 중앙정부(14%)와 지방(6%)이 보완하고 있다. 가족 영역에서는 중앙정부(63%)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 지원이나 육아휴직급여 등이 포함된 고용보험 지출(20%)과 지방(17%) 순으로 나타난다. 실업의 경우 고용보험지출로만 구성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포함된 기타 영역에서는 중앙정부(82.4%)의 지출이 가장 핵심적이다.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내부자료)	2016	2016	-

표 11-10 연도별 9대 영역별 공공사회지출의 재원구조

(단위: 백만 원)

기능	재원	2000	2005	2010	2015
<b>총액</b>	<b>총계</b>	28,774,138	56,555,604	104,800,057	157,163,072
	중앙정부	6,520,544	12,881,158	25,545,129	45,254,460
	지방정부-매칭비	2,201,922	4,362,921	10,122,877	14,607,784
	지방정부-자체사업비 <sup>1)</sup>		2,247,476	2,083,191	3,327,991
	지방교육청 <sup>2)</sup>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7,687,988	12,093,677	20,910,931	33,273,688
	사회보험-고용보험	988,839	2,288,458	5,364,047	6,328,941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1,460,071	3,048,243	3,549,120	4,415,317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9,776,163	19,227,380	34,780,541	46,386,437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1,830,043	2,763,510
	공기업	138,611	406,291	614,178	804,944
<b>노령</b>	<b>총계</b>	7,570,329	12,653,010	24,139,031	42,274,212
	중앙정부	70,839	584,825	3,173,205	7,967,872
	지방정부-매칭비	334,300	594,934	1,222,579	2,632,987
	지방정부-자체사업비		494,376	580,531	940,942
	지방교육청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7,074,315	10,716,826	18,785,905	30,196,899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공기업	90,875	262,050	376,811	535,512
<b>유족</b>	<b>총계</b>	1,071,530	2,013,164	3,034,681	3,616,891
	중앙정부 <sup>3)</sup>	516,494	880,704	1,303,899	1,020,788
	지방정부-매칭비	-	-	-	-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	-	-
	지방교육청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508,573	1,083,262	1,730,754	2,596,103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46,463	49,197	28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공기업	-	-	-	-
<b>근로무능력</b>	<b>총계</b>	2,271,519	5,492,187	7,187,509	10,169,908
	중앙정부	692,378	1,500,633	1,805,876	2,945,170
	지방정부-매칭비	402,673	877,439	1,886,855	2,525,732
	지방정부-자체사업비		427,923	119,964	399,361
	지방교육청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104,946	293,327	393,988	480,327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1,031,112	2,256,604	2,757,200	3,564,629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공기업	40,411	136,261	223,627	254,689
<b>보건</b>	<b>총계</b>	12,804,343	25,474,475	47,367,506	62,016,003
	중앙정부	1,804,839	3,787,747	6,959,831	8,389,053
	지방정부-매칭비	840,846	1,716,906	3,005,199	3,626,316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	-
	지방교육청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	-	-	-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기능	재원	2000	2005	2010	2015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428,959	791,639	791,920	850,688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9,729,699	19,178,183	34,780,513	46,386,437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1,830,043	2,763,510
	공기업	-	-	-	-
<b>가족</b>	<b>총계</b>	<b>664,909</b>	<b>2,131,329</b>	<b>8,553,279</b>	<b>16,701,343</b>
	중앙정부	437,014	1,085,090	4,274,066	11,315,035
	지방정부-매칭비	227,895	323,771	3,138,485	3,492,262
	지방정부-자체사업비		648,184	770,043	1,183,250
	지방교육청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	-	-	-
	사회보험-고용보험	-	74,283	370,685	710,525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	-
	공기업	-	-	-	271
<b>적극적노동시장</b>	<b>총계</b>	<b>2,313,351</b>	<b>1,022,514</b>	<b>4,030,093</b>	<b>7,090,584</b>
	중앙정부	1,795,304	560,313	2,723,260	4,469,239
	지방정부-매칭비	-	-	-	1,201,614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	-	-
	지방교육청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	-	-	-
	사회보험-고용보험	518,047	462,201	1,306,833	1,419,731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	-
	공기업	-	-	-	-
<b>실업</b>	<b>총계</b>	<b>470,792</b>	<b>1,751,974</b>	<b>3,686,529</b>	<b>4,198,685</b>
	중앙정부	-	-	-	-
	지방정부-매칭비	-	-	-	-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	-	-
	지방교육청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	-	-	-
	사회보험-고용보험	470,792	1,751,974	3,686,529	4,198,685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	-
	공기업	-	-	-	-
<b>주거</b>	<b>총계</b>	<b>-</b>	<b>-</b>	<b>-</b>	<b>-</b>
<b>기타</b>	<b>총계</b>	<b>1,607,364</b>	<b>6,016,951</b>	<b>6,801,430</b>	<b>11,095,445</b>
	중앙정부	1,203,675	4,481,845	5,304,994	9,147,302
	지방정부-매칭비	396,209	849,870	869,760	1,128,873
	지방정부-자체사업비		676,993	612,654	804,438
	지방교육청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154	263	283	360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	-
	공기업	7,325	7,980	13,740	14,472

주: 1) 자체사업비자료는 행정자치부의 예산개요 및 기금 운용개요(순계)(2004-2009년), e-호조system분석(2010년이후)에 기초함.

2) 지방교육청자료는 재원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매칭비)로만 구분된 것임.

3) 2013년 이후 국가보훈처의 유족급여는 SOCX의 '유족' 영역과 '기타' 영역(참정명예수당, 간호수당 등)으로 분류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지방교육재정 유아 보육 · 교육 지출

Local Government Education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 지표 정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7개 시·도의 교육 및 학예 경비의 별도 관리를 위해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지출로서 유아교육진흥 경비와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경비의 합으로 정의하며, 공립 유치원 관련 인건비 및 시설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지방교육재정의 유아 보육 · 교육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 측정 산식

- 17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진흥예산 + 누리과정 지원예산

17개 시·도 교육청 소관의 유아교육진흥예산과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2016년 현재 4조 3,555억 원으로 전년대비 439억 원 증가하였다. 유치원 운영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진흥예산은 전년에 비해 188억 원 증가한 3,598억 원이며,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3조 9,957억 원으로 전년보다 251억 원 증가하였다. 시·도 교육청 지출 분포를 보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경기도(26%)와 서울(15%)이 2016년 지방교육재정 유아 보육 · 교육 지출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15년 5% → 16년 6%), 제주(15년 2% → 16년 1%)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지출 비중 또한 전년과 동일하다.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을 보면, 경북(5.5%), 울산(4.6%), 충남(2.8%), 서울(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세종(-9.0%), 인천(-6.2%), 제주(-4.1%)에서는 전년보다 예산 규모가 감소하였다.

표 11-11 지방교육재정 유아 보육 · 교육예산 (2015, 2016)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내역사업	2015	2016	2015년 예산대비 증감
합계		43,116	43,555	439
유아교육진흥		3,410	3,598	188
	유아교육지원	186	179	-7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	812	903	91
	유치원교육여건 개선	129	128	-1
	사립유치원 지원	2,284	2,388	104
누리과정 지원		39,706	39,957	251
	만 3~5세 유아학비	18,451	18,963	512
	만 3~5세아 보육료	21,235	20,973	-263
	유아학비 부대경비	20	21	2

주: 1) 일부 시·도의 추경예산 미반영 자료로 결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15년 예산은 17개 시도교육청 제출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정정한 규모임.  
 자료: 각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17개 시·도 교육청)

##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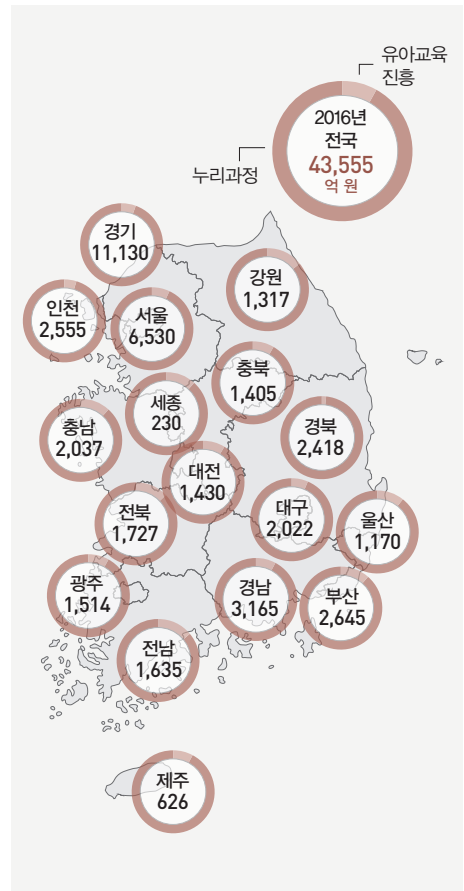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각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유아보육 · 교육 예산(내부자료)	2016	2016	-

### Checkpoint

2015년 만 3세아 누리과정 지원사업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촉발된 중앙정부와의 누리과정 재원 논란은 지방교육청의 2016년 예산 미편성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에 2016년 12월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의결과정에서 3년 한시의 특별회계 설치가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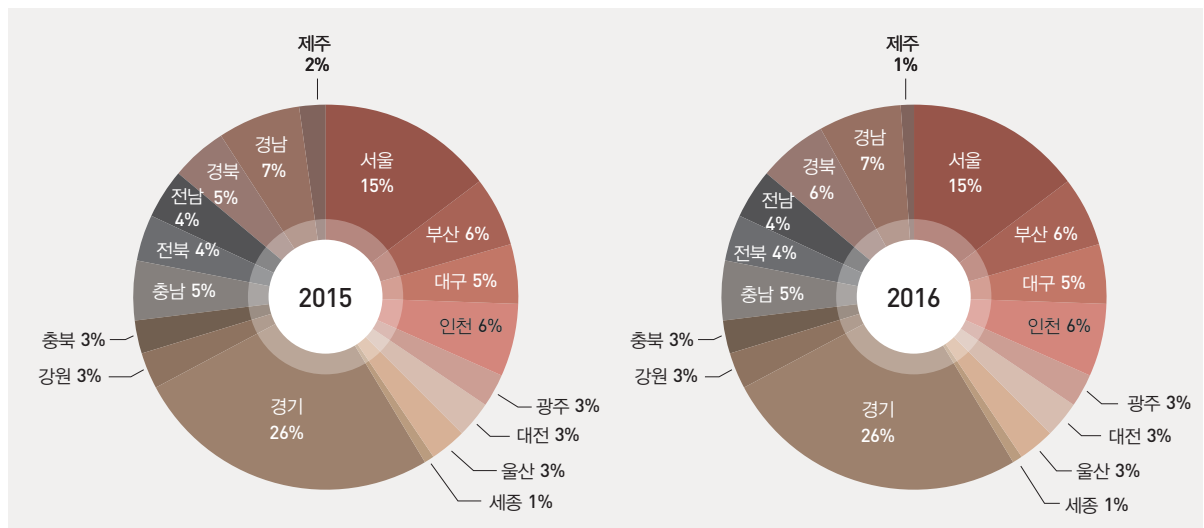
표 11-12 지방교육청별 유아 보육·교육예산 (2015, 2016)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15년 대비 증감률 (%) [(B-A)/A*100]
	유아교육진흥	누리과정	계(A)	유아교육진흥	누리과정	계(B)	
계	3,410	39,706	43,116	3,598	39,957	43,555	1.0
서울	448	5,912	6,360	445	6,085	6,530	2.7
부산	303	2,314	2,618	333	2,312	2,645	1.0
대구	136	1,866	2,002	126	1,896	2,022	1.0
인천	135	2,589	2,724	137	2,418	2,555	-6.2
광주	115	1,376	1,491	117	1,397	1,514	1.5
대전	125	1,305	1,430	141	1,289	1,430	0.0
울산	119	999	1,118	135	1,035	1,170	4.6
세종	30	223	253	13	217	230	-9.0
경기	551	10,465	11,016	565	10,565	11,130	1.0
강원	193	1,106	1,299	195	1,122	1,317	1.3
충북	98	1,289	1,387	107	1,298	1,405	1.3
충남	234	1,746	1,980	237	1,800	2,037	2.8
전북	221	1,479	1,700	241	1,486	1,727	1.6
전남	233	1,443	1,676	231	1,404	1,635	-2.4
경북	177	2,116	2,293	257	2,162	2,418	5.5
경남	243	2,873	3,116	265	2,900	3,165	1.6
제주	49	604	653	54	572	626	-4.1



주: 1) 유아교육진흥예산: 유아교육지원, 유치원방과후지원, 유치원교육여건 개선, 사립유치원 지원  
 2) 누리과정 지원예산: 만 3~5세 유아학비, 만 3~5세아 보육료, 유아학비 부담경비  
 3) 일부 시·도의 추경예산 미반영 자료로 결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2015년 예산은 17개 시도교육청 제출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정정한 규모임.  
 자료: 각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17개 시·도 교육청 취합)

그림 11-9 지역별 지방교육재정 유아 보육·교육 지출 구조 (2015, 2016)



주: 2015년 예산은 17개 시도교육청 제출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정정한 규모임.  
 자료: 각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17개 시·도 교육청)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부록

국제비교 색인

# 국제비교 색인

## 2 아동·노인·장애인

2-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그림 2-11	아동(14세 이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국제비교 (2013)	095
2-07	아동 빈곤율	그림 2-27	OECD 국가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아동 빈곤율 비교 (2013)	107
2-11	아동·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그림 2-41	OECD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2013)	130
		표 2-24	연도별 OECD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	131
		그림 2-42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 지출 (2013)	131
2-12	65세 기대여명	그림 2-44	OECD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134
2-18-1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그림 2-54	OECD 국가의 장기요양 수급률 (2014년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150
2-35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그림 2-89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2013)	211

## 3 보육 및 교육

3-09-1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표 3-9	OECD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투자비율 (2000~2012)	240
		그림 3-29	OECD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투자비율 (2012)	240
3-13	고등교육 이수율	표 3-21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2007~ 2015)	250
		그림 3-31	국가별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2015)	250

## 4 근로

4-01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4-3	OECD 주요국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15)	257
4-02	고용률	그림 4-6	OECD 주요국가 성별 고용률 (2015)	259
4-03	실업률	그림 4-9	OECD 주요국가 성별 실업률 (2015)	261
4-0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그림 4-12	OECD 노동시장 지출수준(GDP 대비 비중) (2014)	265
4-06	총 근로시간	그림 4-17	OECD 주요국가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2015)	268
4-08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그림 4-22	OECD 주요국가 임시직의 비율 (2015)	273
4-11	저임금근로자 비율	그림 4-25	OECD 주요국가 저임금근로자 비율 (2014)	279
4-12	시간급 최저임금	그림 4-28	OECD 주요국가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액 (2015)	281
		그림 4-29	OECD 국가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 (2014)	282

## 5 소득보장과 빈곤

5-03	상대적 빈곤율	그림 5-8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비교 (2013)	320
5-04	상대적 노인빈곤율	그림 5-10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 비교 (2013)	322
5-05	소득5분위배율	그림 5-12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 비교 (2013)	324
5-06	지니계수	그림 5-14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비교 (2013)	326

## 6 건강

6-01	기대수명(평균수명)	그림 6-2	OECD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1970~2014)	343
6-01-1	건강수명	그림 6-3	OECD 국가의 건강수명	344
6-02-1	연령표준화사망률	그림 6-7	OECD 국가의 표준화사망률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350
6-02-2	영아사망률	그림 6-8	OECD 국가의 영아사망률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351
6-02-3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그림 6-9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352
6-04	자살률	그림 6-13	OECD 국가의 자살률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359
		그림 6-14	OECD 국가의 자살률 변화폭 [1990년 대비 2014년(또는 최근 연도)]	359
6-05-4	당뇨병 유병률	그림 6-16	OECD 국가의 당뇨병 발생률 (2012년 또는 최근 연도)	368
6-06	현재 흡연율	그림 6-18	OECD 국가의 흡연율 (2013년 또는 최근 연도)	370
6-07-3	1인당 알콜소비량	그림 6-23	OECD 국가의 15세 이상 1인당 알콜소비량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378
6-08	비만율	그림 6-25	OECD 국가의 성인 인구 과체중 또는 비만율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380
6-09-1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그림 6-28	OECD 국가의 과일/채소 매일 섭취자 비율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386
6-10	평균 재원일수	그림 6-30	OECD 국가의 평균 재원일수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388
6-11-1	1인당 의사진찰 건수	그림 6-32	OECD 국가의 1인당 의사진찰 건수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390
6-12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그림 6-35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예방접종률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395
6-12-1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3세 대상	그림 6-36	OECD 국가의 DPT 예방접종률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396
6-15	의사 수	그림 6-41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404
6-15-1	면허의료인 현황	그림 6-42	OECD 국가의 인구 천만 명당 활동 간호사 수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405
6-16	병상 수	그림 6-44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병원 병상 수 (2013년 또는 최근 연도)	407
6-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그림 6-46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410

## 7 주거

7-04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그림 7-9	EU 28개국의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429
7-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그림 7-11	EU 28개국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431
7-05-1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그림 7-13	EU 국가의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433
7-08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그림 7-18	국가별 PIR 추이	440
		그림 7-19	국가별 PIR 변화 (2010년 대비 2015년 4사분기 수준)	440
7-09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그림 7-22	유럽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009)	443
7-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그림 7-29	OECD 국가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451

## 9 환경

9-02	하수도 보급률	그림 9-3	OECD 주요국의 하수도 보급률	477
9-06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그림 9-17	OECD 국가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2014)	491
9-06-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그림 9-20	OECD 국가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3)	493

## 10 문화

10-02-1	연간 독서율	표 10-2	OECD 가입 국가의 연평균 독서율 (2013)	508
		표 10-3	한국과 EU 국가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2013)	508
10-03-1	인구 100만 명당 유형별 문화시설의 수	표 10-4	해외 주요 문화선진국의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비교	512
10-14	GDP 대비 문화예산	그림 10-41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오락여가비 정부지출 비중 (2015)	535
10-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그림 10-43	OECD 국가들의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2015)	537

## 11 사회재정

11-09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그림 11-7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1980~2016)	555
		그림 11-8	공공사회지출 구조 국제비교 (2012)	555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Social Security Factboo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병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분야별 참여 전문가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최은희	LH토지주택연구원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황정원	한국교육개발원
박근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아	사회보장정보원
박규범	사회보장정보원
김성훈	사회보장정보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복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유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팀장

